

발 간 등 록 번 호

11-1543000-002411-01

Research Report



농촌다운 주거환경 조성 기술요소 개발 및 적용 방안 연구(Ⅰ)

A Study on the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the Technology Elements for Residential Environment in Rural Area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제 출 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농촌다운 주거환경 조성 기술요소 개발 및 적용 방안 연구” 1차년도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8년 12월

주관연구기관명 : 농어촌연구원

연구 지도 : 장중석

오수훈

연구 책임자 : 윤상헌

연구 원 : 임상봉

홍상원

이향미

김진환

공동연구기관 : 협성대학교·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 책임자 : 이상문

위촉연구 : 동명대학교

연구 책임자 : 김홍기

<요 약 문>

1.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농촌다운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기술요소를 도출하고 이를 농촌공간에 적용하기 위하여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음
 - 농촌 과소화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그간의 국내·외 과소화 대응 정책 및 사업을 살펴보았음
 - 농촌다운에 대한 개념 정립 및 평가, 농촌다운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기술요소 개발 그리고 이에 대한 적용 방안을 제시하였음

2. 연구 범위

- 농촌 과소화 실태 파악
 - 과소화 개념 및 유형
 - 과소화 관련 선행 연구
 - 과소화 현황 및 전망
- 과소화 대응 정책 및 사업 파악
 - 국내 과소화 및 주거환경 관련 정책, 법 및 사업
 - 국외(일본) 과소화 대응 정책, 법 및 사업
- 농촌다운에 대한 개념 정립 및 평가
 - 농촌다운 관련 선행 연구
 - 농촌다운 개념 정립
 - 농촌다운 평가 및 문제점 도출
- 농촌다운 주거환경 조성 기술요소 개발
 - 주거환경 조성 기술 관련 선행 연구

- 농촌다운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평가방법 및 기술요소 도출
- 농촌다운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현실 적합성 평가
- 농촌다운 주거환경 조성 기술요소 적용
 - 농촌중심지 적용방안
 - 농촌마을 적용방안

3. 연구결과 활용 및 기대효과

가. 활용 방안

-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과소마을 및 과소화마을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
 - 읍·면단위 중심지 활성화 사업, 마을단위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의 자료로 활용
- 농촌다운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계획 수립 및 기술 적용을 위한 자료로 활용

나. 기대 효과

- 그간 다양하게 논의되었던 농촌다운에 대한 개념 정립을 통해 농촌 지역개발 각 분야에 있어 농촌다운을 고려한 지역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방향성 제시
- 우리 농촌 현실에 적합한 농촌 주거환경 조성 기술요소 도출 및 적용 방안 제시를 통한 농촌의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

SUMMARY

1. Research Purpose

- This study examined the actual condition of rural depopulation for the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rural residential environment creation technology, and examined policies and projects for domestic and foreign depopulation.
- In addition, the conceptualization and evaluation of the concept of rurality(nongchondaum), the development of technical elements for the rural residential environment and application plan were described.

2. Research Contents

- Depopulation concept and type
- Depopulation Status and Prospect
- Domestic depopulation and residential environment policy, business investigation and analysis
- Overseas (Japan) Depopulation policy and business investigation and analysis
- The concept of rurality(nongchondaum)
- Development of the technological elements for creating rural residential environment
- Evaluation of conformity of technical elements of rural residential environment
- Application of technology elements to create rural residential environment

3. Expected effects & Utilization scope

- Utilization of data for improvement of residential environment of depopulation village
- Utilizing of data for planning techniques and technical application for creating a rural residential environment
- Contributing to the improvement of resident environment in rural areas through the elucidation of technical elements of rural residential environment and application plan

< 목 차 >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3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6
제3절 연구 추진 체계	8
제4절 연구 활용 및 기대 효과	9
제2장 선행 연구 동향	11
제1절 과소화 관련 연구 동향	13
제2절 농촌다움 관련 연구 동향	17
제3절 주거환경 조성기술 관련 연구 동향	25
제3장 농촌 과소화 실태	41
제1절 과소화 개념 및 유형	43
제2절 과소화 현황 및 전망	51
제4장 과소화 대응 정책 및 사업	65
제1절 과소화 및 주거환경 관련 정책	67
제2절 과소화 및 주거환경 관련 법	72
제3절 과소화 및 주거환경 관련 주요 사업	91
제4절 일본의 과소화 정책 및 사업	119
제5장 농촌다움의 개념 정립 및 평가	197
제1절 농촌다움 배경	199
제2절 농촌다움 개념	209
제3절 농촌다움 정책 주류화	246
제4절 농촌다움 인식적 평가방법 개발	251

제5절 농촌다움 인식평가	268
제6절 농촌다움 이미지 및 실제 현황	293

제6장 농촌다운 주거환경 조성 기술요소 개발 및 현실 적합성 평가 309

제1절 농촌다운 주거환경 조성 범위 설정	311
제2절 농촌다운 주거환경 조성 기술요소 평가방법 개발	316
제3절 농촌다운 주거환경 조성 기술요소 도출	325
제4절 현실적합성 평가방법 및 내용	373
제5절 개념별 기술 목표 우선순위 평가 결과	376
제6절 물리적 요소(시설) 중요도 평가 결과	382
제7절 핵심 기술요소 선정	402

제7장 농촌다운 주거환경 조성 기술요소 적용 방안 411

제1절 적용 방향	413
제2절 농촌중심지 적용 방안	416
제3절 농촌마을 적용 방안	432

참고자료 451

부 록 465

〈표 차례〉

(표 2-1) 농촌성에 대한 대중적 이미지 측정 항목	19
(표 2-2) 농촌다움 측정 척도와 요인분석 결과	20
(표 2-3) 농촌다움 속성과 해당 표현형용사	20
(표 2-4) 규모별, 유형별 주거환경 요소 분류	31
(표 2-5) 농촌 주거환경조성기술 관련 국내·외 연구현황	37
(표 2-6) 키워드 네트워크 중심성 분석 결과	38
(표 3-1) 과소의 사전적 정의	43
(표 3-2) 선행 연구자들의 과소(화) 및 과소화 지역에 대한 정의	44
(표 3-3) 일본에서의 한계마을 구분	47
(표 3-4) 한계마을 구분	49
(표 3-5) 가구 규모별 농어촌마을(행정리) 수	52
(표 3-6) 시·도별 과소화마을 수	53
(표 3-7) 읍·면 단위 과소화마을 현황	54
(표 3-8) 전국 및 16개 광역시·도별 소멸위험지수	61
(표 3-9) 소멸위험 시·군·구 수	61
(표 3-10) 소멸위험 읍·면·동 수	62
(표 3-11) 소멸위험 읍·면 상위 22개	62
(표 4-1)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메뉴(시설)	97
(표 4-2)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연도별 추진실적	99
(표 4-3) 농어촌주거환경 개선사업 농어촌 마을정비 연도별 추진실적	105
(표 4-4) 문화마을 조성사업 지역별, 연도별 추진실적	110
(표 4-5) 전원마을 조성사업 지역별, 연도별 추진실적	117
(표 4-6) 과거 과소법에 의한 사업실적	121
(표 4-7) 지방채 대상사업	129
(표 4-8) 과소지역자립촉진특별법과 과거의 과소 3법 개요	131
(표 4-9) 과소관계시정촌수, 인구, 면적	133
(표 4-10) 시정촌별 지자체수	134
(표 4-11) 시정촌 합병의 진척상황 및 과소지역수의 추이	134
(표 4-12) 과소, 비과소지역 인구 추이	135
(표 4-13) 과소지역세대수 및 세대 당 세대인원수	136
(표 4-14) 고령자 세대 비율	137
(표 4-15) 시정촌별 취락수 및 시정촌 당 평균 취락수	138

(표 4-16) 시정촌별 취락인구 및 취락 당 평균 인구	138
(표 4-17) 시정촌의 과소구분별 취락 수	138
(표 4-18) 과소지역 정주축진을 위한 택지정비 상황	139
(표 4-19) 과소대책사업의 항목별 사업비 실적액	148
(표 4-20) 도도부현계획 항목별 사업비 실적액	149
(표 4-21) 도도부현 사업 항목	150
(표 4-22) 시정촌계획 항목별 사업비 실적액	151
(표 4-23) 시정촌 사업 항목	152
(표 4-24) 자립축진 시정촌계획의 자립축진특별사업에 관한 계획금액	153
(표 4-25) 과소법에 의한 시책	154
(표 4-26) 과소화 대책의 구체적인 시책	155
(표 4-27) 과소지역 취락이전, 취락재편 실시시기	157
(표 4-28) 취락이전, 취락재편에 대한 의견	158
(표 4-29) 총무성의 최근 과소지역 취락재편 정비사업 실적	160
(표 4-30) 과소지역 유희시설 재정비사업 실적	167
(표 4-31) 「작은 거점」을 중심으로 한 「고향취락생활권」 형성추진사업 추진실적	172
(표 4-32) 과소지역 등 취락 네트워크권 형성 지원사업 실적	178
(표 4-33) 과소지역 등 자립 활성화 추진사업 실적	182
(표 4-34) 취락지원요원	186
(표 4-35) 지역부흥협력대	189
(표 5-1) 마을단위 농촌다움 지칭 어휘 인벤토리(전문가)	225
(표 5-2) 중심지 단위 농촌다움 관련 어휘 인벤토리(전문가)	227
(표 5-3) 1차로 도출된 농촌성의 개념 체계	237
(표 5-4) 지속가능성·향유·품격을 반영한 농촌다움의 서술	242
(표 5-5) 농촌성과 농촌다움 개념의 정합	243
(표 5-6) 최종 정립된 농촌다움 개념 체계	244
(표 5-7) 블로그에 나타난 농촌다움과 유사 키워드에 대한 주요 문장	253
(표 5-8) 블로그 데이터 수집량	256
(표 5-9) 각 주체별 농촌다움의 이미지 분석 과정	267
(표 5-10) 블로그 데이터에 나타난 ‘농촌다움’ 이미지 키워드	270
(표 5-11) 블로그 데이터에 나타난 ‘농촌다움’ 이미지의 특징	272
(표 5-12) 블로그데이터에 나타난 ‘농촌다움’의 이미지	274
(표 5-13) SNS분석을 통해서 추출된 농촌다움 이미지	276
(표 5-14) 전체설문 결과	277
(표 5-15) 설문조사에 나타난 ‘농촌’ 이미지	278

(표 5-16) 설문조사에 나타난 ‘농촌중심지’ 이미지	279
(표 5-17) 설문조사에 나타난 ‘농촌마을’ 이미지	280
(표 5-18) 설문조사에 나타난 ‘농가’ 이미지	281
(표 5-19) 설문조사에 나타난 농촌지역의 ‘정주매력’	282
(표 5-20) 설문조사에 나타난 농촌지역의 ‘문제점’	283
(표 5-21) REP 조사참가자 현황	284
(표 5-22) REP 조사결과에 대한 내용분석	285
(표 5-23) REP 조사에 따른 ‘농촌다움’ 현장 이미지	287
(표 5-24) 농촌다움 이미지 정리	291
(표 5-25) 농촌중심지별 주거환경요소	295
(표 5-26) 농촌마을별 주거환경요소	296
(표 5-27) 농촌다움 이미지와 실제 사례 비교	298
(표 6-1) AHP 의사결정 과정(5단계)	323
(표 6-2) 평가방법 및 분석대상	324
(표 6-3) 환경성 분야 기술 목표	325
(표 6-4) 공동체성 분야 기술 목표	326
(표 6-5) 자립성 분야 기술 목표	327
(표 6-6) 심미성 분야 기술 목표	328
(표 6-7) 향유성 분야 기술 목표	329
(표 6-8) 정주성 분야 기술 목표	330
(표 6-9) 평가 항목 구성을 위한 개념별 기술 목표 선정	347
(표 6-10) 2005-2010 농촌중심지 주거환경 요소 빈도 및 중심성 분석	350
(표 6-11) 2010-2018 농촌중심지 주거환경 요소 빈도 및 중심성 분석 ⁶	351
(표 6-12) 2005-2010 농촌마을 주거환경 요소 빈도 및 중심성 분석	352
(표 6-13) 2011-2018 농촌마을 주거환경 요소 빈도 및 중심성 분석	353
(표 6-14) 농촌중심지 주거환경 물리적 요소	354
(표 6-15) 농촌중심지 주거환경 물리적 요소 빈도 및 중심성 분석	357
(표 6-16) 농촌마을 주거환경 물리적 요소	359
(표 6-17) 생산환경 관련 마을 주거환경 물리적 요소 빈도 및 중심성 분석 결과	362
(표 6-18) 자연환경 관련 마을 주거환경 물리적 요소 빈도 및 중심성 분석 결과	365
(표 6-19) 생활환경 관련 마을 주거환경 물리적 요소 빈도 및 중심성 분석 결과	367
(표 6-20) 역사문화환경 관련 마을 주거환경 물리적 요소 빈도 및 중심성 분석 결과	370
(표 6-21) 경제활성화 관련 마을 주거환경요소 빈도 및 중심성 분석 결과	372
(표 6-22) 조사대상자 일반사항	373
(표 6-23) 농촌다운 주거환경 개념별 평가 항목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	377

(표 6-24) 환경성 평가기준의 상대적 중요도 (일관성 비율 0.012673)	378
(표 6-25) 공동체성 평가기준의 상대적 중요도 (일관성 비율 0.011441)	379
(표 6-26) 자립성 평가기준의 상대적 중요도 (일관성 비율 0.011441)	379
(표 6-27) 심미성 평가기준의 상대적 중요도 (일관성 비율 0.011441)	380
(표 6-28) 향유성 평가기준의 상대적 중요도 (일관성 비율 0.011441)	381
(표 6-29) 정주성 평가기준의 상대적 중요도 (일관성 비율 0.011441)	381
(표 6-30) 농촌중심지 시설의 중요도	382
(표 6-31) 농촌중심지 시설의 환경성 측면에서의 중요도	383
(표 6-32) 농촌중심지 시설의 공동체성 측면에서의 중요도	384
(표 6-33) 농촌중심지 시설의 자립성 측면에서의 중요도	384
(표 6-34) 농촌중심지 시설의 심미성 측면에서의 중요도	385
(표 6-35) 농촌중심지 시설의 향유성 측면에서의 중요도	386
(표 6-36) 농촌중심지 시설의 정주성 측면에서의 중요도	386
(표 6-37) 농촌마을 시설의 중요도	389
(표 6-38) 농촌마을 시설의 환경성 측면에서의 중요도	390
(표 6-39) 농촌마을 시설의 공동체성 측면에서의 중요도	391
(표 6-40) 농촌마을 시설의 자립성 측면에서의 중요도	393
(표 6-41) 농촌마을 시설의 심미성 측면에서의 중요도	394
(표 6-42) 농촌마을 시설의 향유성 측면에서의 중요도	395
(표 6-43) 농촌마을 시설의 정주성 측면에서의 중요도	396
(표 6-44) 농촌다운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핵심기술요소 및 공간요소	408
(표 7-1) 농촌다움을 지향한 주거환경 조성기술의 적용방향(중심지)	414
(표 7-2) 농촌다움을 지향한 주거환경 조성기술의 적용방향(마을)	415
(표 7-3) 주차장 도입가능 수목	431
(표 7-4) 마을회관 외부에 조성되는 휴게시설에 도입가능한 수목	436
(표 7-5) 경사(Slope) 기준	442
(표 7-6) 하천변 양안의 완충녹지대 폭 확보기준	446
(표 7-7) 구조적 저감시설 적용가능한 지역	447

〈그림 차례〉

〈그림 2-1〉 농촌주거환경 관련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39
〈그림 3-1〉 과소화마을 유형 분류 기준	50
〈그림 3-2〉 향후 인구추계 결과	58
〈그림 4-1〉 시정촌수, 인구, 면적	133
〈그림 4-2〉 과소지역의 연령별 인구 구성비 추이	136
〈그림 4-3〉 작은 거점 형성추진을 위한 포인트	142
〈그림 4-4〉 과소지역자립촉진특별조치법의 체계	147
〈그림 4-5〉 혼노무래와 구라츠지구	163
〈그림 4-6〉 분양지 구획도	164
〈그림 4-7〉 뉴타운 기호쿠 마을 풍경	166
〈그림 4-8〉 쿠루츠 렌 투 레벤 大三島	169
〈그림 4-9〉 히라야마 후모토 모습	170
〈그림 4-10〉 작은 거점, 취락생활권의 이미지	172
〈그림 4-11〉 기존 공공시설을 활용한 서비스 거점 정비 이미지	174
〈그림 4-12〉 취락 네트워크권 이미지	177
〈그림 4-13〉 도호카마치시 과소지역자립활성화사업	183
〈그림 4-14〉 나카쵸 과소지역자립활성화사업	184
〈그림 5-1〉 농촌다움의 기본 속성	218
〈그림 5-2〉 농촌다움의 미래지향성	240
〈그림 5-3〉 농촌다움의 지향성	241
〈그림 5-4〉 농촌어메니티를 대상으로 수행한 워드클라우드 예시	253
〈그림 5-5〉 SNS 데이터 분석의 과정	255
〈그림 5-6〉 농촌다움 이미지 도출을 위한 설문조사 과정	258
〈그림 5-7〉 REP데이터의 분석	260
〈그림 5-8〉 REP조사 사진	261
〈그림 5-9〉 고창군 위치	262
〈그림 5-10〉 고창군 지리적 현황	263
〈그림 5-11〉 고창군 전경	264
〈그림 5-12〉 양평군 위치	266
〈그림 5-13〉 양평군 전경	266
〈그림 5-14〉 블로그 데이터에 나타난 ‘농촌다움’ 이미지의 클러스터	269

<그림 5-15> 키워드의 민감도 분석	274
<그림 5-16> 조사지역 위치	293
<그림 5-17> 고창읍 농촌중심지 현황 도면	300
<그림 5-18> 고창읍 농촌중심지 주거환경요소 분류도	301
<그림 5-19> 무장면 농촌중심지 현황 도면	302
<그림 5-20> 무장면 농촌중심지 주거환경요소 분류도	302
<그림 5-21> 대산면 농촌중심지 현황 도면	303
<그림 5-22> 대산면 농촌중심지 주거환경요소 분류도	304
<그림 5-23> 해리면 농촌중심지 현황 도면	305
<그림 5-24> 해리면 농촌중심지 주거환경요소 분류도	305
<그림 5-25> 흥덕면 농촌중심지 현황 도면	306
<그림 5-26> 흥덕면 농촌중심지 주거환경요소 분류도	307
<그림 5-27> 다양한 주체가 인지한 농촌다움 이미지와 농촌다움 개념 비교	308
<그림 6-1> 농촌다운 주거환경의 범위	315
<그림 6-2> 농촌다운 주거환경 조성 기술요소 평가체계	318
<그림 6-3> 소셜네트워크분석 방법론의 주요 주제	320
<그림 6-4> 지식 응집 그룹 분석	321
<그림 6-5> 분야 간 융합 지식지도 분석 결과 사례	322
<그림 6-6> 2005-2010 농촌중심지 주거환경 요소 변화	349
<그림 6-7> 2011-2018 농촌중심지 주거환경 요소 변화	350
<그림 6-8> 2005-2010 농촌마을 주거환경 요소 변화	352
<그림 6-9> 2011-2018 농촌마을 주거환경 요소 변화	353
<그림 6-10> 농촌중심지 주거환경 물리적 요소 중심성 분석	356
<그림 6-11> 생산환경 관련 마을 주거환경 물리적 요소 중심성 분석	362
<그림 6-12> 자연환경 관련 마을 주거환경 물리적 요소 중심성 분석	364
<그림 6-13> 생활환경 관련 마을 주거환경 물리적 요소 중심성 분석	366
<그림 6-14> 역사문화환경 관련 마을 주거환경 물리적 요소 중심성 분석	369
<그림 6-15> 경제활성화 관련 마을 주거환경요소 중심성 분석	371
<그림 6-16> 농촌다운 주거환경 개념 우선순위 결과	376
<그림 6-17> 농촌중심지 생활환경 시설의 개념에 대한 중요도	388
<그림 6-18> 농촌마을 생산환경 시설의 개념에 대한 중요도	397
<그림 6-19> 농촌마을 자연환경 시설의 개념에 대한 중요도	398
<그림 6-20> 농촌마을 생활환경 시설의 개념에 대한 중요도	400
<그림 6-21> 농촌마을 역사문화환경 시설의 개념에 대한 중요도	400
<그림 6-22> 농촌마을 경제활성화환경 시설의 개념에 대한 중요도	401

<그림 7-1> 농촌다운 주거환경 조성기술 적용	414
<그림 7-2> 농촌중심지에 대한 적용방향	416
<그림 7-3> 농촌중심지에 대한 농촌다운 주거환경 기술 적용 가상도	418
<그림 7-4> 농촌중심지에서 단절된 녹지의 연속성 확보 개념	419
<그림 7-5> 농촌중심지 공원녹지 관련 시물레이션 1	419
<그림 7-6> 농촌중심지 공원녹지 관련 시물레이션 2	420
<그림 7-7> 농촌중심지 공원녹지 관련 시물레이션 3	420
<그림 7-8> 농촌중심지내 공원녹지관련 시물레이션 4	421
<그림 7-9> 농촌중심지 공원녹지 관련 시물레이션 5	422
<그림 7-10> 복합복지시설의 시설별 조닝계획	423
<그림 7-11> 문화복지시설 진입부의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423
<그림 7-12> 농촌중심지 문화복지시설 관련 시물레이션 1	424
<그림 7-13> 차도 및 보행로의 경계부 단차제거	425
<그림 7-14>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된 배수로 덮개	426
<그림 7-15> 중심가로 종합도	428
<그림 7-16> 농촌중심지 중심가로 관련 시물레이션	428
<그림 7-17> 농촌중심지 공용버스정류장 관련 시물레이션	430
<그림 7-18> 주차장 식재방식	431
<그림 7-19> 농촌중심지 버스정류장 관련 시물레이션	431
<그림 7-20> 농촌마을에 대한 적용방향	432
<그림 7-21> 농촌마을에 대한 농촌다운 주거환경 기술 적용 가상도	434
<그림 7-22> 마을회관에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435
<그림 7-23> 마을회관 경사지붕 구배	437
<그림 7-24> 마을회관 경사지붕 마감재 예시	438
<그림 7-25> 마을회관 경사지붕 기능	438
<그림 7-26> 마을회관 색채 예시	439
<그림 7-27> 농촌마을 마을회관 관련 시물레이션 1	440
<그림 7-28> 농촌마을 마을회관 관련 시물레이션 2	441
<그림 7-29> 마을회관 종합도	441
<그림 7-30> 마을숲에 대한 자연지형의 보전 1	442
<그림 7-31> 마을숲에 대한 자연지형의 보전 2	443
<그림 7-32> 마을입구 집중관리지역 설정 개념도	444
<그림 7-33> 농촌마을 하천 관련 시물레이션	450
<그림 7-34> 마을 하천 물순환도	450

제1장 서론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가. 기술적 측면

- 농촌 환경개선에 관한 기술개발 노력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트렌드 및 농정의 패러다임이 변화하면서 이에 맞는 기술개발이 시급해짐
- 특히, 농촌의 인구감소와 고령화 문제 심화로 인해 농촌마을에 공·폐가가 산재하고 생활기반이 노후화됨에 따라 농촌 정주공간의 변화 및 개선을 위한 새로운 환경조성 기술개발이 필요
- 농촌지역의 과소화가 진전됨에 따라 현재는 과소화 되지 않았으나 과소화가 될 수도 있는 마을 내지는 과소화가 진행되고 있는 마을의 진행 속도 완화를 위해서는 정부 및 지자체의 대응 정책의 추진과 병행하여 과소화 예방 및 대응 기술의 개발 및 적용이 필요함
- 과소화 예방 및 대응 기술의 개발·적용 분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삶의 터전인 주거공간 즉, 주거환경 임. 새로운 시각의 주거환경 개선 및 향상을 위한 기술 개발·적용을 통하여 현재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농촌을 떠나지 않고 편안하고 즐겁게 살 수 있고 도시의 생활에서 벗어나 농촌으로 유입된 귀촌인들이 다시 도시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며,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농촌을 동경하여 지속적으로 농촌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도시지역의 주거환경 조성 기술과는 달리 농촌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며 강점요소인 농촌다움의 가치를 적극 활용, 이에 대한 유지·보전을 바탕으로 도시의 주거 편리성에 버금가는 농촌형 주거환경 조성 기술(농촌다운 주거환경 조성 기술)의 개발이 요구됨

나. 경제적 측면

- 농촌인구 감소 및 고령화 추세가 지속되면서 농업생산력 증가세 둔화와 농촌사회의 경제적 활력 저하가 발생되고 있음
- 농촌다움을 바탕으로 한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을 통하여 농촌으로의 외부 유입인(귀농·귀촌인)을 적극 유도하여 기존 농촌 주민들이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어 농촌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성이 있음

다. 사회·문화적 측면

- 농촌마을의 과소화는 정주환경의 악화, 마을공동체 단위의 기능축소, 공공시설의 유지 및 관리의 어려움 등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인구유출의 가속화로 소멸의 위기까지 다다르고 있음
 - 20호 미만 마을의 경우, 거주인구가 62.7명(1995년) → 28.0명(2013년)으로 대폭 줄어들고 있어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 농촌주민 뿐 아니라 장래 농촌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서는 귀농·귀촌인들의 유입과 함께 외부 유입인이 기존 주민과 더불어 살 수 있는 마을 환경조성이 필요한 함

2.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농촌다운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농촌공간에 적용하기 위하여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이를 위해 우선 농촌 과소화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그간의 국내·외 과소화 대응 정책 및 사업을 살펴보고자 함
- 다음으로 농촌다운에 대한 개념 정립 및 평가, 농촌다운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기술요소 개발 그리고 이에 대한 적용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1. 연구 범위

가. 농촌 과소화 실태 파악

- 과소화 개념 및 유형
- 과소화 관련 선행 연구
- 과소화 현황 및 전망

나. 과소화 대응 정책 및 사업 파악

- 국내 과소화 및 주거환경 관련 정책, 법 및 사업
- 국외(일본) 과소화 대응 정책, 법 및 사업

다. 농촌다움에 대한 개념 정립 및 평가

- 농촌다움 관련 선행 연구
- 농촌다움 개념 정립
- 농촌다움 평가 및 문제점 도출

마. 농촌다운 주거환경 조성 기술요소 개발

- 주거환경 조성 기술 관련 선행 연구
- 농촌다운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평가방법 및 기술요소 도출
- 농촌다운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현실 적합성 평가

바. 농촌다운 주거환경 조성 기술요소 적용

- 농촌중심지 적용방안
- 농촌마을 적용방안

2. 연구 방법

가. 기술정보 수집

- 국내·외 관련 선행연구 조사·분석
- 관련 정책, 사업 및 사례 조사·분석
- 실태 파악을 위한 현장 조사
- 지역주민,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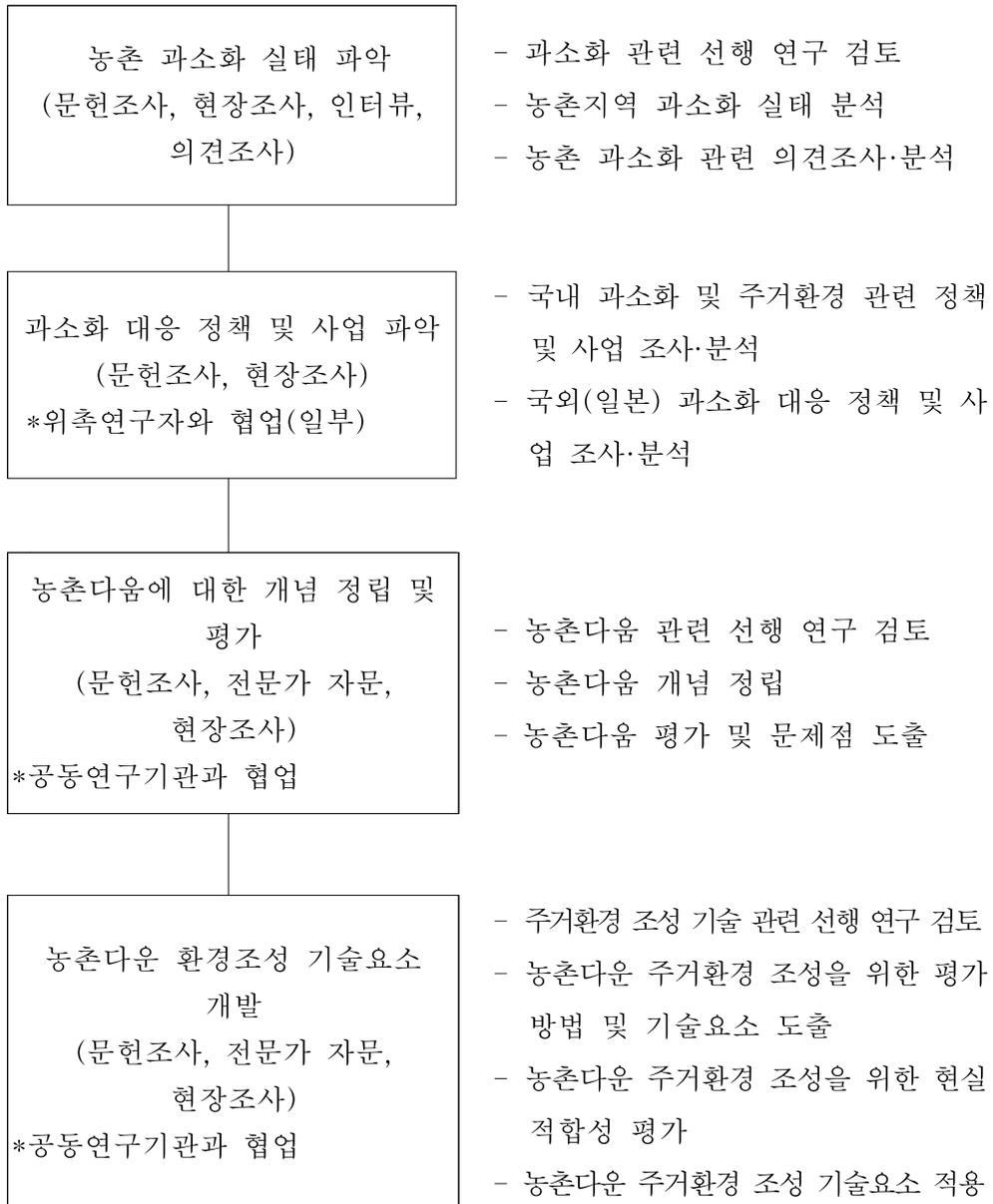
나. 문제해결을 위한 전문가, 수요기관 등과의 협조체제 구축

- 관련분야 전문가 및 연구진이 참여하는 연구협의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연구의 내실화 도모
-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시 자문위원회를 실시하여 연구결과물의 실용성 제고

다. 전문가·전문기관과의 공동연구 추진

- 연구 효율화 및 내실화를 위해 공신력 있고 경험이 풍부한 관련분야 전문가 및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협업) 추진

제3절 연구 추진 체계



제4절 연구 활용 및 기대 효과

1. 활용 방안

-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과소마을, 과소화마을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
 - 마을단위 리모델링 등 주거환경개선사업, 읍·면단위 중심지 활성화 사업 등의 자료로 활용

- 농촌다운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계획 기법 및 기술 적용을 위한 자료로 활용
 - 농촌다운 주거환경 조성 기술요소의 적용방안에 관한 지침(가이드라인) 개발

2. 기대 효과

- 과소화 현상 및 실태 파악을 통해 그간 추진된 정책 및 사업에 대한 반성 및 대응 방안 모색에 기여

- 그간 다양하게 논의되었던 농촌다운에 대한 개념 정립을 통해 농촌 지역개발 각 분야에 있어 농촌다운을 고려한 지역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방향성 제시

- 우리 농촌 현실에 적합한 농촌 주거환경 조성 기술요소 도출 및 적용방안 제시를 통한 농촌의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

제2장 선행 연구 동향

제2장 선행 연구 동향

제1절 과소화 관련 연구 동향

- 농촌다운 주거환경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과소화마을에 대한 진단 및 환경조성, 관리 등에 관한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하나, 일본에서 1970년대부터 과소화마을 또는 한계마을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진 것에 비해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 후반 농촌지역의 과소화 문제에 대한 연구를 시작함

- 정기환 등(1999)은 지형적 조건을 중심으로 읍면단위 과소화 지역의 유형을 구분하고 이에 대한 산업대책, 지역활성화 대책, 농촌정주환경 정비 등 기술제안보다는 정책대안을 제시함
 - 도시로부터의 거리에 의한 접근성, 경지율, 농작물 분포 등 3가지 지표를 중심으로 유형을 분류한 결과, 도시로부터의 거리에 의한 접근성, 논면적비율에 의한 과소화지역 유형구분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됨. 따라서 경지율 15% 이하인 산간지역, 15~30%인 중간지역, 30% 이상인 평야지역으로 과소지역의 유형을 구분하고 각각의 특성을 분석함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2012년부터 농촌지역의 과소화 마을에 대한 실증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였으며, 2015년부터 5년간 한국 농촌 마을의 변화실태와 중장기 발전방향이라는 연구를 진행하여 문헌연구, 통계자료분석, 사례지역과 마을에 대한 조사분석을 통해 기본적인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음

- 배연정 등(2013)은 2010년 농림어업총조사 자료의 지역조사 원자료를 사용하여 마을규모별 정주환경 지표의 변화를 비교·분석

하였으며, 그 결과 한계마을을 가구 20호 미만이 아니라 40호 미만으로 설정하는 것이 유의미함을 밝히고, 과소화 마을의 유형을 구분하는데 기초자료를 제시하고 있음

- 마을의 규모와 상관성이 높은 변인으로 중장년층의 인구구성, 작목반의 결성, 도농교류 등이 중요하며, 상대적으로 대중교통 간격, 학교, 농업생산시설 등은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분석됨
- 조영재 등(2013)은 농촌마을의 과소화, 고령화 등의 실태에 따라 차별화된 정책투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계마을 정책을 도입하기 위한 기초연구를 수행하였으며, 한계마을을 정량화와 표준화된 기준으로만 진단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도출함
 - 일본의 기준인 '65세 이상 인구 50% 이상'이라는 기준도 우리나라 실정에 맞지 않으며 '절대인구 50명'이라는 기준을 제안함
- 박경철(2014)은 한계마을의 특성과 시사점으로 고령화 비율보다는 인구규모와 밀접히 관련 있으나, 정량적 측면과 아울러 정성적 측면의 기준이 중요함을 확인함
- 이창우(2014)는 과소화 마을을 소프트웨어적인 여건에 대한 지표로 노령인구비율 50%, 하드웨어적인 여건에 대한 지표인 노후주택비율 50%를 기준으로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각 유형별 추진전략과 적용사업을 제안함
 - 노령인구가 많고 노후주택비율도 높은 유형으로 공동흡형, 노령인구가 많고 노후주택비율이 낮은 유형인 귀농유도형, 노후주택비율이 높고 노령인구 비율이 낮은 유형인 소규모 농촌 임대주택형, 노후주택비율도 낮고 노령인구비율도 낮은 적극

지원형으로 구분함

- 특히 공동흡형은 지속적으로 과소화 정도가 심해질 것으로 예측되어 출구전략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이에 대한 기술적 제안은 없었음
- 조영재 등(2014)은 농촌마을을 과소화·고령화의 정도에 따라 일반마을, 준한계마을, 한계마을로 구분하여 차별화된 정책을 추진할 것을 제안함
- 정원기·안영진(2016)은 과소·고령화마을과 비과소·고령화마을로 구분하여 전남 고흥군의 마을들을 분석하고 과소·고령화 마을을 한계마을에 가깝다고 보았으나, 정확한 기준은 제시하지 못함
- 성주인 등(2016)은 산간부 원격농촌마을과 평야부 일반농촌마을로 구분하여 사례조사를 실시하였고, 산간부 원격농촌마을은 배후 자연마을이 쇠퇴하고 공동화현상이 일어나고 있으므로 체계적 마을공간 정비가 필요하다고 제안하였으며, 평야부 일반농촌은 마을 후계인력 확보가 시급하다고 분석함
- 과소화 마을을 극복하고 농촌다운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농촌주민들과 귀촌·귀농인들의 수요에 맞는 마을환경조성에 관한 가이드라인 개발이 시급하나, 농촌중심지의 계획기법, 농촌주거 및 공공시설에 대한 바람직한 설계기준 등에 관한 연구가 일부 진행되고 있음
- 현재 정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농촌중심지에 관한 사업계획기법은 농어촌연구원을 중심으로 2016년 연구가 진행됨
 - 커뮤니티시설, 생활가로 및 공공공간, 경관개선, 재래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로컬푸드 직매장 활성화, 지역농협조직 연계 사업, 문화시설(작은 도서관, 영화관), 축제, 복지서비스 등 사업계획기법으로 개발되었음

- 이기용(2015)은 농촌마을 공동생활공간 모델을 개발하였고, 최병숙(2016)은 고령화시대에 대비한 농촌주거 및 삶의 질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공동생활홈, 노인주거 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여창환·조덕호(2016)는 인구 고령화에 맞춘 공공서비스 설치계획 등을 제안하였음

제2절 농촌다움 관련 연구 동향

1. 농촌다움 학술연구 동향

- 농촌경관, 농촌다움, 농촌 어메니티는 모두 농촌이 가지는 매력 혹은 가치를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됨.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1960년대 후반부터 경제성장과 산업화, 도시화를 중심으로 한 국토개발 과정에서 농촌이 그 정체성이 약화되고 파괴되었고, 그 과정에서 농촌이 가지는 다원적 기능은 상실되었으며, 이에 대한 문제 인식으로 출발하여 2000년대 후반부터 농촌공간에 있어서 농촌다움의 보전, 농촌어메니티자원의 가치창출에 대한 관심이 점차 증대되었음
- 박석희 외(2002)는 Willits et al.(1990)가 제시한 농촌다움 측정 항목을 토대로 한국적인 농촌상황에 맞게 수정하여, 국내 최초로 농촌다움의 척도개발을 실시함. 참고로, Willits et al.(1990)는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주민 1,241명을 대상으로 전화 및 우편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리커트(Likert) 항목 35개에 대한 응답을 가지고 요인분석으로 농촌 생활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 부정적 이미지, 반도시주의, 농업의 가치, 황야의 가치 5 가지 요소에 대해서 측정함
- 김강섭, 이상정(2004)은 1950년대부터 2003년까지 시행된 농촌지역 개발 정책의 변천과정을 시대별로 특성을 분석하고 향후 정책의 방향을 제시함
- 이정원 외(2006)는 농촌다움 표현형용사 선정을 위해 농촌주민, 도시민, 농촌전문가를 대상으로 개방형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도출된 36개의 형용사를 요인분석하여 총 9개(서정성, 심미성, 자연성, 규모성, 생산성, 안정성, 시간성, 인위성, 친근성)의 속성을 추출함

- 조영국(2009)은 수도권 한 대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농촌답다’와 ‘농촌성’이라는 용어에 대한 상징, 기호, 이미지를 파악해 농촌에 대한 사회적 표상과 인식을 고찰함
- 강영은 외(2010)는 보존대상으로서의 농촌 원형경관의 가치 평가를 위한 평가지표로 원형경관 가치속성을 이용함. 속성 도출을 위한 연구방법으로 관련 선행연구 및 법·제도 분석과 전문가 설문조사와 AHP 기법을 사용함
- 정현희(2014)는 도시민을 대상으로 하여 농촌마을의 어메니티 가치를 경제적 가치로서 평가함
- 농촌진흥청에서는 어메니티 창조를 위한 농촌 경관관리 지침서(농촌진흥청, 2005), 농촌의 전통경관 보전 길라잡이(농촌진흥청, 2013) 등의 지침 등을 제공하며 농촌다움을 살린 농촌경관, 농촌어메니티 보전을 위해서 노력하였음
- 이상의 연구들은 우리사회에서 농촌경관의 가치를 알리고, 또한 모범적인 농촌경관의 방향을 제시한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일반적인 농촌을 반영하기보다는 오히려 전통마을 등 특수한 농촌경관이나 일상생활과 떨어진 이상적으로 모범화한 농촌경관을 제시하는 경향이 있었음

(표 2-1) 농촌성에 대한 대중적 이미지 측정 항목

<p>긍정적인 농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은 살기 좋은 곳이다. - 농촌가족들은 다른 가족들보다 긴밀하게 뭉어져 있고 영속적이다. - 농촌생활은 자연에 가깝기 때문에 건강해 보인다. - 농촌사회는 살고, 일하며 놀 수 있는 가장 만족스러운 곳이다. - 농촌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도 당신을 좀 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것이다. - 친절과 호의는 다른 지역보다 농촌사회의 특징이다. - 농촌사회에서의 삶은 다른 지역에서의 삶보다 덜 스트레스를 받는다. - 다른 지역보다 농촌지역은 범죄와 폭력이 덜 하다. - 농촌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평화스럽고 조용하다.
<p>부정적인 농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사람들은 생각하는 것에 있어서 지역적이고 협소하다. - 농촌생활은 단순하고 지루하다. - 농촌사회는 새로운 경험에 대한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다. - 농촌지역에서 산다는 것은 현대 도시사회에 있어서 좋은 것이 없다는 것이다. - 농촌사람들은 말투, 행동, 옷차림에서 투박하고 비문화적이다. - 농촌사회는 개인에게 삶의 미래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거의 제공하지 않는다. - 농촌사람들은 그들과 같이 많은 사람들에게 의심이 많고 편견을 가지고 있다. - 농촌생활은 대단히 힘든 노동으로 특징 지워진다.
<p>반도시 주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생활은 복잡하고 빠르고 스트레스를 준다 - 도시지역에 있어 사람들 사이의 관계는 비인격적이다. - 도시생활은 돈과 지위에 대한 문제에 집중되어 있다. - 도시들은 살기에 복잡하고 더럽고 시끄러운 환경이다. - 정치적인 타락이 도시생활의 현실이다. - 도시들은 사람과 자연을 분리시키는 인공적인 무대이다. - 미국에 있어 범죄와 폭력은 도시생활을 특징짓는다.
<p>농업의 가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은 인간에게 자연적이고 훌륭한 생활이다. - 가족농장은 민주사회에 등뼈이다. - 농장은 가족을 세우는 이상적인 곳이다. - 농사 짓는 것은 기초적인 작업이다. - 농부는 독립과 자기 자금자족의 덕을 구현한다. - 농부와 농사는 우리 사회에 도덕적인 핵을 제공한다.
<p>황야의 가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람들은 도시의 매우 바쁜 속도를 균형화하기 위하여 시골의 고요함을 경험할 필요가 있다. - 자연에 가깝게 있는 것은 사람들을 좀 더 좋게 만든다. - 개방된 시골과 산림에서의 가능한 황야는 그곳에 간 사람들에게 평화를 가져다 준다. - 개방된 시골과 황야는 아름답고 방문하는 곳이다. - 황야지역은 우리 나라 유산의 중요한 부분이다.

자료 : 박석희 등(2002) 재인용, Willits, Bealer, and Timbers(1990).

(표 2-2) 농촌다움 측정 척도와 요인분석 결과

자연 및 경관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흄냄새를 맡아볼 수 있다. - 자연(새, 개구리, 풀벌레)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 - 계절감을 잘 느낄 수 있는 곳이다. - 소, 돼지, 닭, 개 등 가축들을 볼 수 있다. - 집집마다 농기구, 농기계 등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 마을주변에 산과 들이 있고 시냇물이 흐르고 있다.
낙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이 낙후되어 있다. - 문화시설이 부족하다. - 교통이 불편하다. - 논과 밭, 과수원이 있다.
유대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람들은 지역에 대한 애착심이 강하다. - 사람들은 지역에 대한 소속감이 강하다. - 사람들은 협동심이 강하다. - 친절과 호의감 넘친다.
안락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위가 한적하고 조용하다. - 분위기가 평화롭다. - 마음의 여유를 찾을 수 있는 곳이다. - 범죄와 폭력이 덜하다.
비경제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람들의 소득수준이 낮다. - 생활은 경제적으로 윤택하지 못하다. - 돈보다 정이 우선이다.
협소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람들의 생각은 지역적이고 협소하다. - 새로운 경험에 대한 기회가 거의 없다. - 정보수집 및 활용이 어렵다.

자료 : 박석희·이동기·윤상헌(2002).

(표 2-3) 농촌다움 속성과 해당 표현형용사

농촌다움 속성	표현형용사
서정성	정감있는, 한적한, 정겨운, 조용한, 순수한, 맑은, 따뜻한, 구수한
심미성	아름다운, 상쾌한, 평화로운, 여유로운, 쾌적한, 아늑한
자연성	자연적인, 푸르른, 복잡하지않는, 시원한, 안정된
규모성	푸근한, 넓은, 탁트인, 친숙한
생산성	풍요로운, 자연스러운
안정성	차분한, 인심좋은, 안전한
시간성	오래된, 편안한, 아담한
인위성	개발되지않은, 깨끗한
친근성	익숙한

자료 : 이정원·정윤희·임승빈(2006).

- 최근, OECD(2018)는 국제적인 농촌패러다임의 변화를 정책의 목적, 방법, 이해관계자, 접근적 측면에서 발표하는데, 2018년도에 발표된 Rural Policy 3.0에서는 농촌다움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New ruralism과 농촌의 다원적 기능에 초점을 두어 제안하였음
- 미국에서는 Kraus(2006)와 Moffat(2006)등에 의해서 도시 근교의 농촌지역이 가지는 가치를 담은 계획방향으로 농촌다움(New Ruralism)을 제시하였고, 여기서 말하는 농촌다움이란 모범적인 전통 농촌의 이미지를 추구하는 농촌성의 개념이 아니고, 지속가능한 정주공간으로서 농촌이 가지는 원칙을 난개발로 훼손된 도시 근교 지역을 대상으로 적용해보고 하는 노력이었음
- Viviers(2017)는 뉴어바니즘, 그린어바니즘과 같은 선상에서 농촌다움(New ruralism)을 논하며, 그 정의로 농업적 맥락의 전원도시, 농업과 생태, 자원 순환 관점에서의 자족도시, 적정 크기의 정주공간 및 개발, 자연에 기반하여 생태 보전지 및 서식지 보전에 기여하는 공간 등의 농촌이 가지는 긍정적 계획 원칙을 설명하며, 농촌다움이 가지는 다기능적 측면에서의 원칙을 제시함
- 최근 유럽에서도 농촌경관의 보전과 활용에 대한 연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Carlow(2017)는 도시화하는 현대사회에서 농촌지역을 만드는 계획방향으로서 농촌다움(Ruralism)의 적용 방안을 제안하였음. 기존의 도시와 농촌의 이분론을 넘어서서, 글로벌 어바니즘 안에서 다양한 위상으로 존재하는 농촌다움의 사례를 연구함. 또한 유럽적 맥락에서 농촌다움이 가치를 논의하며, 미래 도시 근교 및 농촌의 계획 비전을 제시함
- 이상의 내용으로 볼 때, 최근에 논의되는 농촌다움은 과거 농촌의 본 모습을 찾고자 하는 농촌성(Rurality) 측면에서의 농촌다움에서 확장되어, 자연기반, 커뮤니티 기반에서 지속가능한 정주공간으로서

농촌이 가지는 가치와 계획 방향성으로서 농촌다운(ruralism) 정주 공간과 그 원칙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

- 따라서 미래 농촌다움에 대한 연구는 도시화가 급격히 진행되는 가운데, 농촌적인 생활을 추구하는 도시인(Rurbanite)을 위한 공간, 그리고 국토 전체 혹은 세계적 관점에서 경쟁력 있는 매력적인 정주 공간으로서의 미래 농촌의 계획 방향 등을 담은 계획 원칙의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음

2. 농촌다움 정책연구의 동향

- 농촌다움 정책연구의 전체적인 흐름은 다음과 같다. 1990년대 후반 이후 농촌관광이 각광을 받기 시작하면서, 2000년에는 농촌어메니티 자원 발굴과 활용이 주요하게 다루어졌다. 2010년 이후에는 농촌지역의 개발과 보전이슈가 동시에 대두되었는데, 사업적으로 농촌중심, 권역단위, 마을단위 개발사업이 지방자치단체마다 추진됨에 동시에 농업유산 개념이 농촌정책에서 최초로 적용됨
- 1990년대 농촌정주권개발, 마을종합개발
 - 기초수요 이론에 기초한 정주기반 조성에 초점
 - 농가의 기계화, 영농 규모화 등 농업현대화를 측면 지원하는 정주환경 개발
 - 농촌성장과 주민복지를 동시에 달성하고자 했으나 농촌경제의 양적 불륨을 확장하려는 생산주의에 경도된 농촌 상에 기초한 정책으로 평가할 수 있음
- 1990년대 후반 이후 농촌관광
 - 도농교류를 통한 농촌경제 활성화에 초점(농촌 인구감소에 대한 대처 차원이자 농외 소득원 다양화 차원에서 최초 접근)

- 2000년대 중반 이후 농촌체험은 관광이란 측면보다는 농촌체험, 체험교육의 개념으로 전환. 농촌다움을 체득함으로써 도시민의 농촌 이해를 촉진하려는 목적도 내포
 - 농촌체험이 마을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 일자리 창출하는 기회로 인식. 이를 통해 공동체 활성화를 목표
 - 농촌체험관광이 농촌다움의 고유성을 발굴하고 계승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나 농촌다움이 지닌 다부문성, 총체성, 경과성, 온전성을 지키고 이끌어내는 데에는 한계를 나타냄
- 2000년대 농촌어메니티자원 발굴과 활용 연구
- 2000년도 WTO 농업협상 등 국제 농업환경 변화에 따라 경쟁력 있는 농촌환경정비 방향을 모색해야 했고, 지속가능한 농촌환경을 정비하기 위하여 농촌다움을 가지고 있는 농촌어메니티(Rural Amenity)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진행됨¹⁾
 - 농촌관광의 활성화를 위한 체험 콘텐츠 개발 차원
 - 농촌개발의 새로운 수단이자 도농교류 체험 테마로서 어메니티를 접근
 - 국내외 농업환경 변화 속에서 농촌지역의 자연적, 사회적, 문화적 유산들을 보호하고 이를 유지해나가는 것이 농촌공간정비의 주요 목표로 삼음
 - 어메니티 자원 발굴 정책은 농촌다움의 다부문성, 고유성을 인식시키는 성과를 가져왔으나 농촌다움의 핵심요소인 총체성과 온전성, 경과성을 간과한 채 농촌에 잔류하는 특색 자원만 발굴하면 어메니티자원으로서 가치를 다하는 것으로 오해한 측면이 있음

1) 당시 농업과학기술원 산하 농촌자원개발연구소에서 2002년부터 농촌 어메니티자원에 관한 연구가 시작됨

- 2010년대 농촌중심지, 권역단위, 마을단위 개발사업
 - 정주기반 확충과 함께 지역경제, 공동체, 복지활동 활성화 동시 도모
 - 정주기반 이외에 생태, 문화, 경관 생태 등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환경개발 정책
 - 농촌다움이 다부문적이고 총체적 국면을 지니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으나 현실 정책에서는 농촌다움의 보전과 발굴을 경관환경 부문에 국한돼 추진하는 한계를 노정

- 2010년대 중반 이후 농업유산 발굴과 활용
 - 전통 농업유산의 보전이란 측면에서 농촌정책에서 최초의 보전정책 시도
 - 어메니티 정책에서 농업유산으로의 선택적 발전

- 2018년 농촌다움 복원 사업
 - 농업유산을 포함한 지역 특색의 자연 및 문화자원 활용에 방점
 - 생태환경 문화환경의 체계적 보존을 위한 시행방안은 아직 불명확
 - 농촌다움이 보전가치가 있는 자원의 고유성 발굴에 초점이 맞추어짐. 즉 자연, 문화, 농업환경에 국한된 측면

제3절 주거환경 조성기술 관련 연구 동향

1. 농촌 주거환경의 미래 전망과 개발 방향

가. 패러다임의 전환에 선 농촌

- 농촌을 둘러싼 새로운 변화들은 농촌 주거환경에 대한 재인식과 방향 전환을 요구하고 있음
 - 현재 농촌은 귀농·귀촌 인구 유입, 다문화 가정 확대, 농촌체험관광 등 도농교류의 확산으로 마을의 인구 구성이 다양화되고 전통적 농촌 마을의 특성이 변화되고 있음
 - 이러한 변화는 농촌 주민의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던 주거환경과 공공시설의 쓰임새와 선호에 영향을 미침
- 한석중(2012)은 농촌은 도시적 요소와 농촌적 요소가 혼재되어 토지이용, 경관, 건축 등 물리적 공간의 혼합 및 문화 간 융합이 진행되고 있으며, 도시민과 농촌주민이 어우러진 새로운 커뮤니티의 탄생을 전망함
- 김영주(2012)는 지역 간, 주민 간의 양극화로 농촌은 더욱 세분화되고 복잡해지는 양상을 나타내며, 이에 농촌다움의 유지·보전 관리와 외부 유입 인구를 위한 지원시설 및 교육 정책의 강화 필요성을 제기함
-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0)은 「농업·농촌 2030/2050 비전과 과제」에서 미래 농촌공간이 국민 모두의 일터·삶터·쉼터로 변화될 것임을 강조함
 - 새로운 수요로 창작 공간, 고급전원주택, 휴양지 등이 출현해 다

- 양한 유형의 특화된 마을이 성립될 것이라고 예측함
- 경제적으로 경지 면적과 전통적 농업의 비중이 감소되면서 창조 산업과 서비스산업 등 6차 산업의 어메니티 공간 창출과 문화적 경관으로의 변화를 전망함
 - 구체적으로 계단식 논이나 마을 뒷산 등의 공간은 자연환경과 농업을 체험하는 장소, 교육의 장으로써 활용될 가능성이 높으며, 논과 밭 생산 경관, 산림·하천·습지 등 자연 경관, 전통적 산업 및 생활경관 등이 문화적 경관으로 지정되어 지역의 특징적인 보호자원으로서 가치를 지닐 것임을 예상함
 - 특히 생활환경은 고령화된 인구 수요에 맞춰 주거·의료·복지 향상을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이 보편화되고, 지역 사회 비상연락체계(community Alarm system), 주택 관리·수선프로그램(Care and Repair Program), 쾌적한 주거 공급프로그램(Amenity Housing) 등이 정착될 것으로 전망됨
 - 무엇보다 농촌다운 토지이용 및 경관 만들기를 추구하는 것과 문화적 경관의 보존·정비·활용, 자연과 조화되는 농촌주거환경 만들기 중요성을 강조함
- 성주인 외(2016)는 다양한 농촌의 인구 구성과 기능(문화, 여가, 교육, 서비스 등)들로 인해 농촌 공동체와 물리적 공간이 변화되는 현상을 실증 연구를 통해 밝히고 있음

나. 농촌다운 주거환경 조성 관련 주요 정책

- 농촌개발 및 정비와 관련한 법으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농어촌 정비법」, 「농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등과
- 농촌 경관 관련 주요 정책인 「농업·어업농촌대책(2004)」, 「농촌 경관개선 종합대책(2006)」, 「농촌다운 제고를 위한 오감 경관 추진 대책(2011)」²⁾ 등이 있음
 - 「농촌경관개선종합대책」은 “온 국민에게 사랑받는 쾌적한 농촌 공간 구현”을 비전으로 “先 농촌경관계획-後 농촌개발 시스템 정착”을 목표로 설정함
 - 「五感 경관대책」은 생태, 문화, 환경 등 다양한 농촌다운의 가치를 포괄하는 경관관리 방안으로서 농업인에게 살맛나는 거주 공간을 제공, 도시민들에게는 여가생활을 충족시키며, 농어촌 전통과 문화, 경관 가치의 보전 및 활용성을 제고함

다. 공간위계별 농촌 주거환경 구성요소 도출

- 정책적인 차원에서 인구 50,000명 이하의 군(읍·면)과 도농복합형태의 시를 농촌으로 규정함³⁾
 - 토지이용에 따라 도시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관리지역, 농림지역,

2) 오감경관대책의 목표는 “농촌다운 제고를 위한 오감경관 구현”이며 이를 위해 “다원적 가치 제고를 위한 계획 중심의 경관사업 추진”, “교육 등 역량 강화를 통한 자율적인 주민의 경관관리 유도”, “전통과 문화, 경관의 가치 발굴 및 보전”을 정책방향으로 설정하는 것임. 주요 추진 대책으로 계획 중심의 경관 시범사업, 경관보전직불제 내실화, 농어업 유산제도의 도입, 농어촌 문화환경·경관관리 사업, 농어촌 주택 경관개선, 교육 및 홍보 등이 있음.

3) 「지방자치법」에 의해 도농복합형의 시 안에서도 도시의 형태를 갖춘 지역은 동이며 그 밖의 비도시지역을 읍·면으로 규정함.

환경보전지역을 ‘비도시지역’으로 통칭하고, 이를 ‘농촌’으로 규정함

- 농촌의 주거환경은 규모에 따라 마을권역과 읍·면/시·군으로 구분되고, 이를 구성하는 공간요소는 마을단위에서 경관의 유형별, 기능별로 세분화됨
 - 농촌의 토지이용 및 계획 가이드라인, 농촌경관 관리 및 경관 가치평가, 농촌마을 정책 및 사업 등에 관한 연구에서 농촌 주거환경의 요소를 다각도로 제시하고 있음
- 이동근 외(2005)는 우리나라 농촌경관자원을 유형별(농촌 관광 기반형, 지역 특화형, 친환경 육성형, 전통 보전형 등)로 구분하고 인공·자연 공간에 해당하는 세부시설을 분류·평가함
 - 산업공간(농업생산시설, 축사시설 등), 생활공간(주택시설, 담장, 지붕, 벽채, 정원 등), 교류공간(마을회관, 마을공원, 마당, 레크레이션 시설, 노인정 등), 기반시설(농수로, 용수로, 농로 등), 생물서식공간(생태습지·하천, 생태공원, 철새도래지 등)으로 공간을 분류함
- 김상범 외(2006)는 9개 지역의 경관 요소를 분석하여 도출된 5개 영역(농지, 농업시설, 자연요소, 생활시설, 문화역사)을 크게 농업생산공간, 자연환경공간, 농촌생활공간으로 구분함
 - 각 영역별 25개 항목의 경관 구성요소(논밭, 목초지, 과수원, 농로, 저수지, 하천, 산, 농가, 공공시설, 사적·유적, 마을상징 구조물 등)를 도출하고, 전문가 분석을 실시해 농촌 경관요소의 중요도를 분석함
- 농림축산식품부는 창조적 마을 만들기, 기초생활 인프라 개선, 환경·경관·농업·농업유산 보전 등의 사업을 강조함

- 「농어촌경관계획수립요령(2008)」에서 농어촌 경관자원의 조사·분석 기준을 경관 유형별로 농어업경관(경작지, 생산시설), 생활경관(건축, 가로, 외부 공간, 시설물), 자연경관(산림, 하천)으로 구분함
- 최근에는 「지역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 지침(2014)」에 따라 농촌취락(지붕, 가로시설물, 담장), 녹화경관(산림, 마을녹화), 하천 및 해안 경관, 생산경관(농경지, 축사), 기타(도립공원, 천연기념물, 국가하천, 습지 등) 등의 강화된 기준을 적용함
- 최영완 외(2010)는 「농촌마을 정비 시 농촌공간특성별 정비유형 분석」 연구에서 농촌공간을 환경·생산·생활공간으로 구분하고 그에 따른 사업 매뉴얼과 시설의 적정 배치 전략 등을 농촌 마을 정비 방안으로 제시함
- 차주영·이상민(2012)은 「농어촌 경관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방향」 연구에서 농어촌 경관 요소를 자연경관(산림, 하천, 산책로, 습지 등), 생활경관(주거시설, 공공시설, 상업시설), 생산경관(농지, 농업시설, 어업시설), 역사문화경관(사적, 유적, 관광시설 등)으로 구분함
- 김상범 외(2014)는 지형과 주요 생산자원에 따라 농촌의 특징적인 경관이 형성된다는 관점에서 경관의 유형을 경관 요소와 농업생태 요소 2가지로 구분하고, 그에 해당하는 세부 시설을 자연요소, 농업 및 농촌요소, 생활요소, 역사문화요소, 생태요소로 분류함
- 농촌 공공공간 및 시설 평가와 관련하여 서주환 외(2016)은 농촌마을 구성요소를 물리적·사회적·경제적 측면에서 유형화함
 - 물리적 측면에서 자연환경요소(기후, 지형, 식생, 경관 등)와 주거

환경요소(토지이용, 주택, 교통, 시설, 입지 등), 사회적 측면에서 사회문화요소(복지, 교육시설, 역사문화시설 등)와 인구학적요소(주민특성, 인구구조와 변동 등), 경제·정책적 측면에서 경제구조요소(농업생산, 농지규모 등 생산기반 및 활동)로 구분함

- 그리고 최근 한국농어촌공사(2017)는 「농어촌마을 내 주택 및 생활환경 기반시설 취약성 진단지표 개발」 연구를 통해 농촌 마을에 필요한 생활환경 기반시설을 기능별, 사업별로 구분해 보다 다양하고 구체적인 대상을 폭넓게 명시함
 - 기능에 따라 주거, 문화, 생산, 교통, 경관생태, 체험 관광, 여가·체육·교육 시설 등 총 18개의 시설 용도를 구분하고 각 용도에 따라 총 46개의 세부 시설을 제시함

(표 2-4) 규모별, 유형별 주거환경 요소 분류

규모에 따른 시설 분류		
읍면/시·군 단위	탁아소/유치원, 초등학교, 우체국, 농협/은행, 약국, 보건진료소 보건지소·보건소/병·의원, 목욕탕, 이발소/미장원, 농기계수리점, 농약/비료/종묘구입처, 종교시설, 상업시설 등	
마을 단위	마을회관, 노인회관, 어린이놀이터, 정자목 공간, 마을마당, 공동작 업장, 공동집하장, 방앗간, 상점(마을단위소점포, 구판장) 등	
	버스정류장, 마을공원(쉼터), 공동빨래터, 공동우물, 공동건조장, 마 을숲, 성황당/산신제터/제각 등	
경관 유형에 따른 공간 분류		
자연 공간	산림, 구릉지, 하천, 호소, 습지, 산책로, 해안, 방풍림, 호수, 초지, 천연기념물 집단서식지, 생태습지, 생태하천, 생태공원, 철새도래지, 보호수, 야생화 군락지 등	
산업 공간	농업시설	비닐하우스, 유리하우스, 차양막, 농공단지 등
	축사시설	양계장, 양돈장, 양우장 등
	농경지	논, 밭, 과수원, 특용작물, 묘목장 등
	산업 기반시설	건조장, 농산물가공시설, 특산물판매장 등 저장·가공 시설, 농수로, 용수로, 배수로, 농로 등 생산기반시설
생활 공간	주택시설	주택(단층/복층), 창고, 담장, 벽체, 지붕, 정원
	교류시설	마을회관, 마을공원, 마을마당, 레크레이션시설, 노인 정 등
	생활 기반시설	의원, 약국, 보건소, 학교, 행정기관, 우체국, 출장소 등 행정·교육·금융·의료시설 등
	편의시설	마켓, 식당, 주유소, 교회, 이발소 등
	협오시설	쓰레기처리장, 소각장, 매립장 등
역사/문화 공간	고택, 사당, 전통구조물, 정자, 사찰, 비석, 서원, 솟대, 암자터, 기념 공원, 관광지 등	

자료 : 앞서 기술한 선행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종합

- 선행연구를 종합한 결과 농촌의 주거환경요소는 인공적인 것부터 생태자연적인 것, 사회·문화적인 것까지 종류가 다양하고 광범위함

- 또한 이용도가 낮고 관리·운영 방안이 문제시 되는 공공 공간 및 시설이 지속적으로 양성되고 있음
 - 농촌 공공시설 저활용 및 유희화의 원인으로 잘못된 주민 선호과 악에 의한 시설 공급과 접근성 문제 등이 지적됨
 - 여기에 지형·지세·수계 등 자연지리적인 제약 요건으로 인해 농촌의 주거환경은 소규모로 불규칙하게 분산·분포되어 체계적인 공간 활용이 어려운 실정임
- 따라서 전통적 마을 단위에 국한하지 않고 농촌 현안에 맞추어 보다 유연한 범위의 공간 설정이 필요함⁴⁾
- 무엇보다 농촌에 나타나는 다양한 현상과 이용자 특성, 주민 선호도의 변화를 고려하여 미래지향적이면서 농촌다운 주거환경요소를 도출하는 것이 중요함

라. 농촌 주거환경조성기술 개발

- 농촌 주거환경조성과 관련하여 국내에서는 농촌마을 정비 및 공공시설의 재배치 전략, 어메니티 자원 활용 및 정비계획 수립, 농촌경관디자인 가이드라인 및 지침 등을 제시하고 있음
- 조항원(2010)은 농촌 경관의 생태 환경적 접근 전략으로 저탄소 계획수립 지침을 제안함
 - 토지이용(기존지형보존, 경사지활용, 부지의 미기후와 조화된 설계, 일조량/풍향 등 고려한 건물배치, 적정밀도 배분)과 자원순환

4) 농촌지역은 도시민의 정주공간으로 변모해 가는 도시 근교 농촌, 생산 활동의 교외화로 인해 공장 등 신규 사업체 입지가 활발한 농촌마을, 특산물이나 경관 등을 이용하여 관광지로 변모하는 농촌마을, 과소화·고령화로 정주 기반이 약화되는 마을 등 다양한 형태의 분화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임(송미연, 2013).

(중수재활용)

- 녹색교통(보행자전용, 자전거전용, 에너지절약형신교통수단 등)과 신재생에너지(바이오매스 열병합발전, 농축산계바이오매스활용, 쓰레기 소각열/배기 및 배수의 폐열 활용)
 - 녹지체계(도로변 완충녹지: 탄소흡수공원조성, 녹지와 비오톱 연결, 다층구조식재, 경관림조성, 생물이동통로 등 고려)
 - 수자원체계(투수성 포장(주차장, 도로), 연못조성, 수자원 경계부 소동물 서식처 조성, 저습지조성, 자연형 하천 유지) 등에 관한 세부 계획(안)을 제시함
- 임승빈(2010)은 농촌마을 내 커뮤니티 공간 요소를 중심으로 규모와 기능에 관한 공간 계획 기준을 제시함
- 전체 공간 배치기준(안전성, 접근성, 연계성, 다양성, 주변 환경, 지형)
 - 건축물 내부공간기준(다양성, 성별공간분리, 연령공간분리, 관리상태, 집회 공간, 내부구조, 노후화)과 건축물 외부공간기준(조경 공간, 색채 및 재료, 위험요소, 여유 공간)
 - 옥외시설기준(다양성, 편의성, 계절 및 날씨변화, 수량, 규모, 색채 및 재료, 노후화, 관리상태) 등을 제시함
- 김정연(2012)은 농촌정주체계의 개편과 농어촌 중심지 재생을 위한 전략으로 농어촌지역 인구감소에 따른 압축적(compact)개발 전략을 수립함
- 농어촌마을의 재구조화 측면에서 마을의 입지, 규모, 노후도, 인구구성, 공동체의 범위와 특성, 사회경제적 특성, 농어촌중심지 및 다른 마을과의 관계, 여건의 변화 전망을 고려함
 - 마을 특성별로 다양한 정비방식을 적용, 지속적이고 주도적인 마을 정비를 위한 농어촌공동체의 강화를 강조함

- 김광선(2012)은 10년 후 미래를 고려한 농촌 공동시설의 수요조사(필수시설, 불필요한 시설 목록)를 통해 마을, 읍·면, 시·군별 반드시 필요한 주요 시설 배치(안)을 제시함
- 서주환 외(2016)는 자연·공간·생활·역사에 대한 가이드라인 등 부문별 세부 디자인 매뉴얼을 개발하고 실제 현장 적용 사례(안)을 제시함
 - 자연지형과 녹지의 활용, 경관의 연속성과 변화 고려, 가로경관 스케일, 건축물과 도로, 옥외설비 디자인, 수목보호, 역사적 건축물의 활용 및 조화 등 개발된 매뉴얼 가이드에 따라 세부 시설의 디자인 개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안함
- 국외의 경우 도시민의 농어촌 유입으로 서비스업 종사자나 퇴직 후 정착한 비경제활동인구 비율이 높아지면서 다양성을 갖춘 공간으로 변화시키는 구체적인 가이드를 마련함
- 영국은 지역의 특징, 주변경관, 야생동물에 대한 잠재적 영향과 건물형태, 규모의 적정성, 역사적·예술적으로 보존 필요성을 고려한 가이드라인을 정부에서 제공하고 있음
 - 농촌의 아름다운 경관을 보전하는 요구가 강해진 반면 주택, 각종 서비스 시설 등의 수요도 증가하였기 때문에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계획 전략을 갖추
 - 농촌 디자인과 지역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경관 요소별로 제시하고 있으며 자연적으로 뛰어난 경관은 법적으로 지정 관리함
- 프랑스의 경우 유입된 주민과 기존 주민 간에 공간 이용을 둘러싼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조정 역할을 하는 주체들의 기능을 강화함
 - 정치·경제·사회·문화·교육 부문 특히, 농어촌 내 의료서비스 확충

- 등에서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기본 인프라의 수준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있음
- 도시 근교지대와 산간지대, 목초지대, 숲, 습지 등 자연환경 특성에 따른 보호 프로그램 수립 등을 중요하게 생각함
- 독일은 농어촌지역의 특성이 다양하게 분화되면서 농촌 활성화 측면에서 휴양과 관광을 중심으로 발전하는 추세임
 - 기존 생활공간과 경제공간을 보전하고 구조적으로 취약한 지역을 개선하는 것에 주목함
 - 교통체계와 이동성 개선 및 거주지 인접 의료 공급의 보장, 에너지활용·바이오매스 개발, 기후변화 대응 등 환경적인 측면을 적극적으로 고려한 계획을 수립함
 - 그 밖에 미국은 건물과 건물주변에 대한 문화·생태 가이드라인과 요소별 가이드라인을 제시, 일본은 농촌경관을 보전 복원하는 가이드라인과 농촌 경관배려 실무 매뉴얼을 통해 정비사업 시 고려해야 할 내용과 추진 방법을 상세히 제시하고 있음
 - 선행연구를 종합한 결과 주거환경 조성기술 개발은 농촌생활권에 대한 정책변화와 신규 수요, 신산업 입지의 가능성 등 변화하는 농촌의 현실을 반영한 접근이 요구됨
 - 특히 농촌다움을 유지할 수 있는 주거환경의 표준적이고 기본적인 계획 기준과 적용 기술에 대한 현실 적합성을 평가하는 것이 중요함
 - 최근에는 6차 산업화로 인한 고부가가치 공간 변화와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농업(smart agriculture)의 보편화로 미래 지식농업의 기반을 구축하는 것에 관심이 높아짐

- 또한 삶의 질을 중시하는 가치관의 확산과 건강·휴양 등 고차원적 욕구의 증가로 다양한 시설과 생활방식을 수용하는 전략을 모색함
- 무엇보다 고부가가치의 농촌을 농촌답게 디자인 하려는 움직임이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주거환경 조성 기술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요구됨
 - 농지 및 산지가 생산공간에서 여가관광공간으로 변화되면서 농촌 마을의 형태가 다양화되고 주택형태도 최첨단 타운하우스, 탄소제로그린홈, 지능형 고품격 한옥 등으로 다변화되며, 교통시설 및 디자인이 변화될 것으로 예상됨

(표 2-5) 농촌 주거환경조성기술 관련 국내·외 연구현황

구분	국외	국내
경제적 · 산업적 측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 활성화를 위해 휴양과 관광을 중심으로 발전하는 추세 •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 사업에 대한 지원이 강화에 주력 • 농촌의 지속적인 활성화를 위해 커뮤니티 수요와 우선순위 파악 등 재원조달 방안을 면밀히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적 측면에서 창조산업과 서비스산업 등 6차 산업에 의한 고부가가치 어메니티 공간 및 기술 예측 • 도농복합적인 지역 확장에 따른 물리·사회적 융합을 위한 대안 필요성 강조
문화적 측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민의 유입으로 부유한 은퇴 고령자와 통근자들에 대한 서비스 수준 향상 강조(여가 활동 및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유입으로 Multi-Habitation 주거방식과 다양한 생활방식을 수용하게 되는 변화양상 예측
공간 · 시설적 측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 유입인구의 수준을 고려한 문화·상업시설을 적극 도입 • 기존 농촌모습을 지니고 있는 주택과 시설을 보전 또는 활용 • 두 가지 이상의 기능과 시설을 복합화 • 에너지활용·바이오매스 개발, 기후변화 대응 등 환경적인 측면을 고려한 시설계획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중심지정비, 농촌마을의 재구조화, 라반지역의 관리 등에 관한 추진 방향 제시 • 마을기능 축소 및 공동화 현상 예측 • 교통약자배려 신교통수단 확대, 시설의 복합화 등 사회복지전달 체계의 개선 필요성 강조 • 외부(도시민)유입에 의해 향후 요구되는 공동시설 수요조사 추진
환경적 측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관 속의 마을’이라는 컨셉으로 주변 경관 속에서 마을전체의 계획과 생태적인 계획을 추구 • 친환경적 개발방식도입, 경관 다양성 보존, 자연적 수계 및 종다양성 보호, 농업유지 등에 주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의 특색있는 경관 훼손 우려 및 농촌다움을 유지·보전할 수 있는 방안 필요성 강조 • 자연환경과 농업체험공간, 전통적 산업 및 생활경관 등 문화적 경관 지정의 필요

2.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keyword network analysis)을 통한 농촌 주거환경 관련 이슈

- 키워드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연구의 핵심키워드를 발견하고 그 키

워드와 관련된 세부 주제를 확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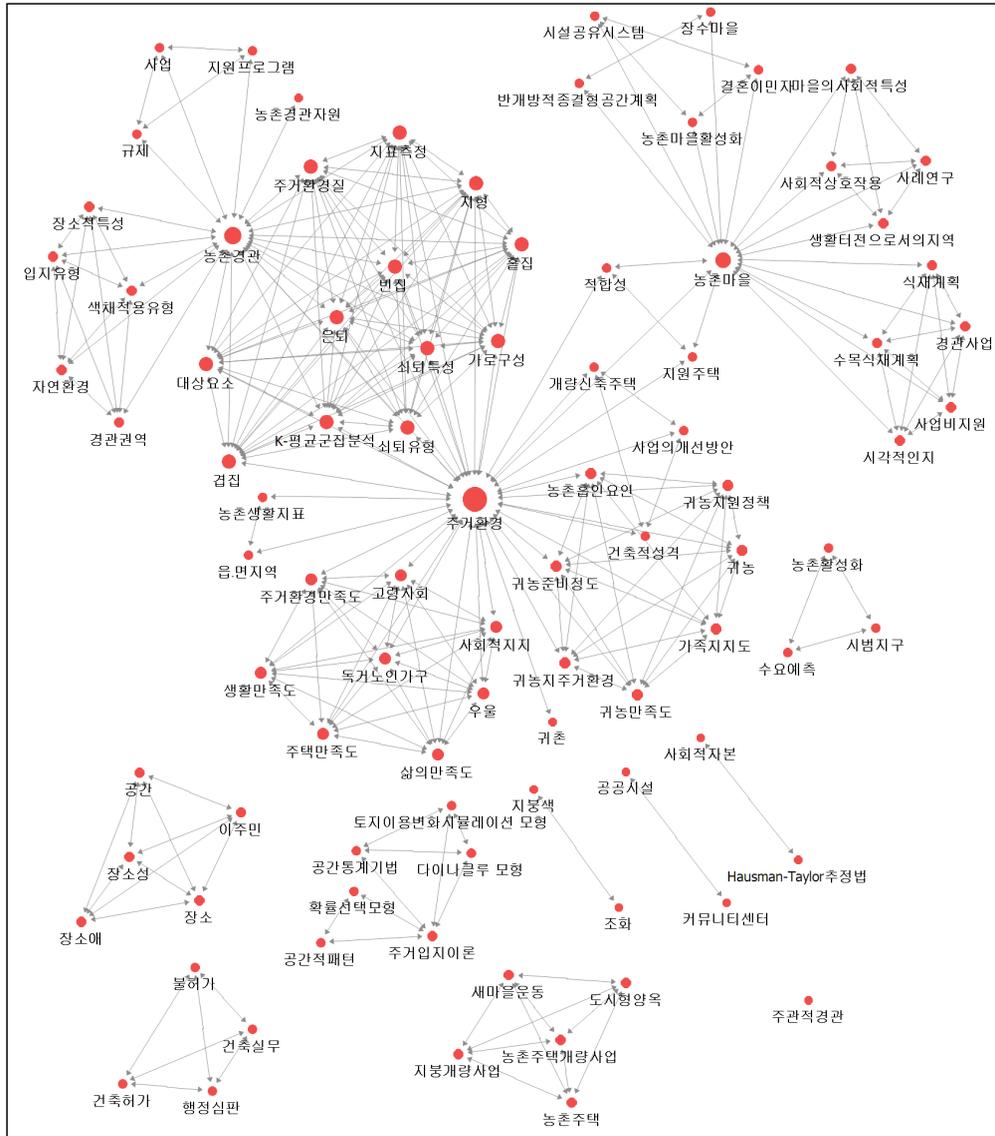
- 2006년에서 2017년 사이 농촌 관련 연구 동향과 주요 이슈를 파악함
- 농촌주거환경, 농촌마을, 농촌경관, 농촌어메니티, 농촌다운 등의 검색어로 관련 학술논문 및 보고서 등에 등장하는 키워드를 추출
- 농촌 관련 연구에서 높은 빈도와 중심성을 나타낸 키워드는 ‘주거환경’, ‘쇠퇴특성’, ‘농촌경관’, ‘농촌마을’ 등이며 ‘귀촌’, ‘고령사회’, ‘은퇴’, ‘독거노인’, ‘빈집’ 등이 주목받는 이슈로 도출됨

(표 2-6) 키워드 네트워크 중심성 분석 결과

주요 키워드	빈도**	Degree Centrality*	주요 키워드	빈도	Degree Centrality
주거환경	31	0.411111	독거노인 가구	6	0.088889
쇠퇴특성	23	0.144444	빈집	6	0.144444
농촌경관	18	0.244444	생활만족도	6	0.088889
농촌마을	14	0.188889	사회적지지	5	0.088889
귀농지 주거환경	9	0.077778	자연환경	4	0.055556
농촌흡인 요인	7	0.077778	식재계획	4	0.055556
고령사회	7	0.088889	이주민	4	0.044444
은퇴	7	0.144444	귀농만족도	3	0.077778
귀농준비 정도	6	0.077778	토지이용변화시물레이션 모형	3	0.033333

* Degree Centrality(연결중심성)가 높을수록 유사개념들과 가장 많이 연결된 키워드라는 의미이며, 이는 농촌주거 환경 연구를 대표하면서 하위 연구주제들과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는 영역임을 의미함

** 키워드의 출현빈도가 낮아도 연결중심성 또는 매개중심성이 높아 다른 주제와의 연결성이 강할 수 있음



* 각 노드(node)의 크기는 키워드의 출현빈도를 나타내고 링크(link)의 굵기는 키워드 간 연관된 수준을 의미함

<그림 2-1> 농촌주거환경 관련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제3장 농촌 과소화 실태

제3장 농촌 과소화 실태

제1절 과소화 개념 및 유형

1. 과소화 개념

가. 과소의 사전적 정의

- 주요 사전에서 ‘과소(過疎, Depopulation)’의 정의를 살펴보면 (표 2-1)과 같음

(표 3-1) 과소의 사전적 정의

사전	정의
Daum 사전	인구나 건물, 산업 따위가 어떤 곳에 지나치게 적은 상태. 과소화(過疎化, Depopulation Drain)는 인구나 건물, 산업 따위가 어떤 곳에 지나치게 적은 상태로 됨
두산백과사전	산업화나 도시화 등에 수반되는 인구 유출로 기존의 생활수준 또는 생활방식이 유지될 수 없는 상태. 주로 농어촌에서 인구의 급격한 이농(離農)·이촌(離村) 현상이 일어난 결과, 지역주민의 생산과 생활의 여러 기능이 마비되어 생활의 질서가 파괴된 상태

자료 : Daum 사전(<http://dic.daum.net>), 두산백과사전(<http://doopedia.co.kr>).

나. 과소화의 개념

- 선행 연구자들의 과소(화) 및 과소화 지역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음

(표 3-2) 선행 연구자들의 과소(화) 및 과소화 지역에 대한 정의

연구자	내용
정기환 외 (199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소(過疎)는 사전적으로 한 지역의 인구 따위가 지나치게 적다는 의미로써 상대적으로 기준이 되는 인구의 크기보다 작다는 의미 ▶ 과소는 결론적 개념으로 과소지역은 일정기간 동안 과도하게 감소한 지역을 의미하기도 하며, 진행형의 개념으로 한 지역의 인구가 일정기간 동안 급격하게 감소하면서 발생하는 불균형의 문제에 초점을 두기도 함
강유경 (20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소는 인구론적 과소와 지역론적 과소로 구분되는데, 인구론적 과소는 인구 재생산이 곤란한 인구구성 및 구조를 말함 ▶ 지역론적 과소는 다시 사회적 과소와 경제적 과소로 구분되는데, 사회적 과소는 지역사회의 기능이 마비되고 지역사회의 생활유지가 곤란한 상태를, 경제적 과소는 노동력 부족, 생산활동 저하 등의 현상을 초래하는 경우를 말함
조준범 (20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소화는 시간 개념이 포함된, 과소로 진행되는 과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구수 및 세대수의 감소, 증가량의 수준을 나타내는 정도로 규정 ▶ 과소화마을은 과소화에 따른 일정한 시점에서의 상태를 의미하는 개념으로 마을의 규모와 밀도 등과 관련됨
성주인· 채종현 (20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소화마을은 인구 규모가 마을 공동체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 아래로 떨어진 곳을 의미 ▶ 행정리당 가구 수가 20호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를 과소화 마을로 분류

자료 : 심재현·엄진영·민경찬(2017).

- 선행 연구자들의 정의를 종합해 보면, 과소는 결과론적인 개념이며 과소화는 진행형(시간의 흐름이 포함되어 현재 나타나는 상태)의 개념임. 그러나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기도 함

- 과소(또는 과소화)는 상대성을 지닌 개념으로서, 한 지역의 인구가 기준이 되는 어느 지역 또는 기준이 되는 인구의 크기보다 적다는 것을 의미 함. 따라서 기준에 따라 과소 내지는 과소화 수준은 다를 수 있음
- 과소화는 지역의 인구가 감소하여 그 지역의 사회 시스템이 종래의 수준을 유지할 수 없게 되어(농촌인구의 노령화, 농촌인구의 생물학적 균형 상실, 지역사회의 활력 상실, 지역경제의 위축, 농지와 산림자원의 유향화, 지역사회의 상대적 낙후, 이농 등) 주민이 여러 가지 생활상의 불편을 회피할 수 없게 되는 상태를 의미함

다. 과소화마을의 개념

1) 국내 과소화마을의 개념

- 과소화의 실체로서 과소화마을을 살펴보면, 국내에서 주로 통용되고 있는 과소화마을의 기준⁵⁾은 마을 당 20호 미만 임. 즉, 마을(행정리)의 공동체 기능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수준을 20호 미만으로 보고 있음
- 그러나, 과소화는 상술한 바와 같이 한 시점의 특정 인구 수 이하의 지역(마을)을 의미하지는 않음
 - 원래 마을이 작을 수도 있고, 20호 미만 일지라도 신규 마을이거나 젊은 귀촌자로 구성된 마을일 경우 과소화마을로 규정짓기는 어려움이 있음
- 보편적으로 과소화마을이라 하면 마을의 인구가 감소하고 고령자의

5) 성주인·채종현(2012).

비율이 높아 현재와 미래에 공동체의 기능 유지가 어려운 상태에 이른 마을이라 규정할 수 있음

- 지난 10년(2005년~2015년) 동안 마을의 가구 수가 감소하여 2015년 현재 20호 미만인 마을을 과소화마을이라 함⁶⁾
- 한편, 배연정 등(2013)은 2010년 농림어업총조사 자료의 지역조사 원자료를 사용하여 마을 규모별 정주환경 지표의 변화를 비교·분석하였는데, 그 결과 과소화마을을 20호 미만이 아니라 40호 미만으로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함

2) 일본 과소화마을의 개념

- 일본에서 ‘과소’라는 용어는 1967년 경제사회발전계획에서 처음 사용됨
 - 1960년대 중반 이후 생활수준, 교육수준의 향상과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따라 인구의 도시집중이 한층 더 진행되는 한편, 농산어촌에서는 인구유출이 진행되고 지역에 따라서는 지역사회의 기초적 생활조건의 확보에 지장을 초래 하는 즉, ‘과소현상’이 문제가 될 것이라고 기술함
- 일본은 1970년부터 ‘과소지역대책긴급조치법(1970년~1979년)’, ‘과소지역진특별조치법(1980년~1989년)’, ‘과소지역활성화특별조치법(1990년~1999년)’ 및 ‘과소지역자립촉진특별조치법(2000년~2020년 : 법 제정 당초기한에서 11년간 연장)’ 등 10년 한시법으로 과소지역 활성화를 위한 법을 지속적으로 제정·적용하고 있음
- 가장 최근의 과소화 대책법이라 할 수 있는 ‘과소지역자립촉진특별

6) 심재현·엄진영·민경찬(2017).

조치법'에서는 일정한 인구요건과 재정력 요건을 갖춘 시정촌을 과소지역으로 구분하고 있음(세부적인 내용은 제3장 제3절의 일본의 과소화 정책 및 사업 참조)

- 한편, 일본에서는 '한계마을(限界集落)⁷⁾'이란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1991년 일본의 농촌사회학자 오노아키라가 처음 사용한 개념으로, 단순히 인구의 '과소(過疎)'라기보다 사회경제적으로 지역공동체 기능 유지에 한계에 이른 상태를 뜻함
 - 한계마을은 인구 구성 비율에 따라 촌락을 분류하고 65세 이상의 인구비율이 50%이상 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며, 고령화가 진행되어 공동체의 기능을 유지하는데 한계에 달한 상태를 의미함
 - 이러한 기준에 의거, 생존마을(55세 미만 인구비율 50% 이상), 준한계마을(55세 이상 인구비율 50% 이상), 한계마을(65세 인구비율 50% 이상), 소멸마을(인구 0)로 구분됨

(표 3-3) 일본에서의 한계마을 구분

명칭	정의	내용
생존마을	55세미만 인구비율 50% 이상	후계자가 확보되어 있으며 공동체의 기능을 차세대에 계승할 수 있는 상태
준한계마을	55세 이상 인구비율 50% 이상	현재는 공동체의 기능을 유지하고 있지만 후계자 확보가 어려워지고 있고, 한계마을의 예비군이 되어 있는 상태
한계마을	65세 이상 인구비율 50% 이상	고령화가 진행되어 공동체의 기능유지가 한계에 도달해 있는 상태
소멸마을	인구 0	한때 주민들이 존재했지만 완전히 무주화되어 말 그대로 마을이 소멸된 상태

자료 : 농촌특별대책위원회(2009). 농촌정주기반 실태와 개선과제.

7) 일본에서는 集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용어이므로 마을이라는 말로 대체함.

- 한편, 오니시다까시 등은 2011년 발표한 논문에서 3가지의 공동화(인구공동화, 토지공동화, 촌락공동화)에 의해 촌락의 기능이 한계에 다다른 상태를 한계촌락으로 정의하였음
 - 초기에는 인구가 급감하지만 촌락의 기능은 크게 변하지 않고 유지되다가 촌락공동화 이후에 농업활동이 쇠퇴하고 고령인구의 사망과 이주에 의한 인구감소로 촌락의 기능이 쇠퇴·정지함

3) 유럽 과소화마을의 개념

- 유럽은 과소화 마을이라는 개념보다는 쇠퇴하는 농촌지역에 대한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음
- 쇠퇴하는 농촌지역이라 함은 NUTS III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인구 밀도가 1km² 당 100명 미만 또는 1985년도 이후 전체 고용 중 농업 고용 비중이 공동체 평균 최소 두 배 이상이며 1999년 이전 3년 이상의 평균 실업률이 공동체 평균 실업률보다 높거나 1985년 이후로 인구가 감소한 지역 임⁸⁾

2. 과소화 마을(지역) 유형 구분

- 과소화마을에 대한 유형 구분과 관련된 연구는 정기환 등(1999), 조영재, 이창우·정용한(2014) 등에 의해서 수행되었음. 유형 구분과 관련하여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정기환 등(1999)은 과소화지역(읍·면 단위)의 유형 구분을 위한 기준 지표(도시와의 접근성, 경지율, 논면적 비율) 중 경지율이 유형별 지역의 특성을 가장 잘 설명해줄 수 있는 것으로 판단

8) 김은경(2012).

하고 이를 바탕으로, ‘과소화 산간지역, 과소화 중간지역, 과소화 평야지역’ 등 3개 지역으로 구분하고 각 유형에 대하여 인구적 특성, 접근성, 농업적 특성 등을 기술하였음

- 과소화지역(읍·면 단위) 726개 중 산간지역은 206개(28.4%), 중간지역은 311개(42.8%), 평야지역은 209개(28.8)로 나타남
- 조영재 등(2013)은 고령화·과소화 등으로 인하여 마을의 다양한 기능유지가 한계에 달한 마을로 인구의 공동화, 경제기반의 공동화, 신규 커뮤니티의 공동화가 발생하는 마을을 ‘한계마을’로 규정하고, 한계마을을 중심으로 존속마을, 준한계마을, 소멸마을로 유형을 구분하였음

(표 3-4) 한계마을 구분

구분	기준
존속마을	인구 50명 초과 인구, 경제기반, 공동체의 기능 유지
준한계마을	인구의 공동화(인구 50명 이하) 경제기반의 공동화
한계마을	인구의 공동화 경제기반의 공동화 신규 커뮤니티의 공동화
소멸마을	인구, 세대수 없음

자료 : 조영재 등(2013).

- 이창우·정용한(2014)은 실태조사를 통해 나타난 전라북도의 20호미만의 과소화마을(446개)을 65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 노후주택이 차지하는 비율, 빈집이 차지하는 비율을 기준으로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음
- 각 유형별 특징을 살펴보면, A유형은 노령인구 비율과 노후주택 비율이 매우 높은 유형으로 사업 추진을 위한 젊은 사람이

부족하고 전 전반적인 마을의 주거환경이 노후화되고 빈집의 비율 또한 높음

- B유형은 노령인구의 비율이 높아 사업추진을 위한 젊은 사람들이 부족하나 노후주택 비율은 낮아 전반적인 마을의 주거환경이 양호한 상태임
- C유형은 노령인구 비율이 낮아 사업추진을 할 수 있는 젊은 사람들이 있으나 마을 내 노후주택 비율이 높아 전반적으로 주거환경이 노후화되어 있음
- D유형은 노령인구 비율, 노후주택 비율이 모두 낮아 사업추진을 위한 젊은 사람들이 있고 전반적으로 마을의 주거환경이 양호한 특징을 가지고 있음

	65세 인구 50% 이상	65세 인구 50% 이하
	유형 A	유형 C
노후주택 50% 이상 (빈집 9.23%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 추진을 위한 젊은 사람이 부족함 ·전반적인 마을의 주거환경이 노후됨 ·마을의 공공목적을 위해 사용 가능한 빈집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 추진을 위한 사람들이 있음 ·전반적인 마을의 주거환경이 노후됨 ·마을의 공공목적을 위해 사용 가능한 빈집이 있음
	유형 B	유형 D
노후주택 50% 이하 (빈집 9.23%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 추진을 위한 젊은 사람이 부족함 ·전반적인 마을의 주거환경이 양호함 ·마을의 공공목적을 위해 사용 가능한 빈집이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 추진을 위한 사람들이 있음 ·전반적인 마을의 주거환경이 양호함 ·마을의 공공목적을 위해 사용 가능한 빈집이 없음

자료 : 이창우·정용한(2014).

<그림 3-1> 과소화마을 유형 분류 기준

제2절 과소화 현황 및 전망

1. 과소화 현황

가. 일반 현황

- 농촌 인구는 2015년 현재 939만 2천 명으로 2010년(875만 8천명)에 비해 63만 5천명이 증가하였음
- 읍 지역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면 지역의 인구는 큰 폭으로 감소하다가 최근 소폭 증가하였음
 - 읍부 인구는 1970년 280만 명에서 2015년 462만 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
 - 면부 인구는 1970년 1,537만 명에서 2010년까지 456만 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나 2015년에 이르러 478만 명으로 증가하였음
- 이러한 농촌 인구의 증가는 귀농·귀촌 등과 같은 향촌 인구의 증가가 주요 요인이라 할 수 있으며, 외국인 인구의 증가가 농촌 인구 증가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파악됨
 - 귀농가구원수(귀농인수+동반가구원수) : 17,318명(13년) → 17,976명(14년) → 19,860명(15년)
 - 귀촌인수(귀촌가구주+동반가구원수) : 405,452명(13년) → 439,535명(14년) → 466,778명(15년)
 - 인구센서스의 늘어난 농촌 인구의 39%는 외국인 증가에 따른 것이며, 전국적으로 외국인 비율이 2.7%인 것에 반해 농촌은 외국인 비율이 4.0%(도시는 2.4%)에 이르고 있음
- 2015년 농림어업총조사 지역조사 집계 결과 농촌마을(행정리)의 수

가 증가하였으며, 마을을 구성하는 가구의 규모도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지역조사 집계 결과 농촌마을은 2010년 36,498개에서 2015년 36,792개로 증가
- 읍 지역에서는 486개 마을이 증가하였으며, 면 지역에서는 192개 마을이 감소

- 그러나 마을 단위(읍·면의 행정리 기준)로 집계하면 인구의 과소화·공동화는 지속되고 있는 상태임
- 2005년 2,048개(5.7%)로 집계된 20호 미만의 과소화마을의 수는 2010년 3,901개(8.5%)로 증가하였다가, 2015년에는 1,270개(3.5%)로 줄어 들었음

(표 3-5) 가구 규모별 농어촌마을(행정리) 수

(단위 : 개, %)

구분	20호 미만	20-59호	60-99호	100-149호	150호 이상	합계
2005년	2,048 (5.7)	17,780 (49.3)	8,174 (22.7)	3,253 (9.0)	4,786 (13.3)	36,041 (100.0)
2010년	3,091 (8.5)	19,281 (52.8)	7,291 (20.0)	2,525 (6.9)	4,308 (11.8)	36,496 (100.0)
2015년	1,270 (3.5)	15,593 (42.4)	9,150 (24.8)	4,192 (11.4)	6,587 (17.9)	36,792 (100.0)

주 : ()은 마을 수 대비 과소화마을 수 비중(%).

자료 : 통계청(각년도). 농림어업총조사.

나. 시·도별 상황

- 2015년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순으로 과소화마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전라북도는 전체 농어촌마을 중 9.9%가 과소화마을

(표 3-6) 시·도별 과소화마을 수

구분	2005년	2010년	2015년
광역시	15(1.6)	60(6.0)	23(1.9)
경기도	82(2.1)	148(3.7)	18(0.4)
강원도	87(4.0)	114(5.2)	32(1.4)
충청북도	164(5.8)	258(8.9)	70(2.3)
충청남도	106(2.4)	158(3.5)	46(1.0)
전라북도	714(14.1)	1,027(20.1)	515(9.9)
전라남도	505(7.7)	780(11.7)	338(4.9)
경상북도	161(3.1)	223(4.3)	112(2.1)
경상남도	212(4.4)	322(6.8)	116(2.4)
제주특별자치도	2(1.2)	1(0.6)	-
전체	2,048(5.7)	3,091(8.5)	1,270(3.4)

주 : ()은 시·도별 마을 수 대비 과소화마을 수 비중(%).

자료 : 통계청(각년도), 농림어업총조사.

다. 읍·면별 상황

- 2005년에는 과소화마을이 한 개 이상 분포하는 읍·면이 전체 읍·면 중 약 47%(661개)를 차지하였으나, 2010년에는 전체의 63%(884개)로 증가하였음
- 2010년 기준 전체 과소화마을 중 59.1%(1,827개)는 군부의 면 지역에 분포하고 있음. 면부에 속한 전체 마을 중 10.3%가 과소화 마을임

(표 3-7) 읍·면 단위 과소화마을 현황

(단위 : 개, %)

구분	도농복합시 지역			군 지역			전체
	읍	면	소계	읍	면	소계	
2005년	59 (1.9)	639 (5.6)	698 (4.8)	111 (2.5)	1,239 (7.3)	1,350 (6.3)	2,048 (5.7)
2010년	99 (3.3)	879 (8.4)	978 (7.2)	286 (5.5)	1,827 (10.3)	2,113 (9.2)	3,091 (8.5)

주 : () 안은 해당 지역 전체 마을 수 대비 과소화마을 수 비율

자료 : 성주인·채종현(2012)

2. 과소화 원인 및 과소화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

가. 농촌 과소화 원인⁹⁾

- 과소화는 소득문제, 기초적인 서비스 여건 취약 등의 이유로 인구의 외부 유출이 일어나면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임
- 우리 나라에 있어서 인구 이동(농촌에서 도시로의 유출)은 1960년대 후반 이후 본격화되기 시작하였으며, 1962년 이후 지속적으로 진행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결과라 할 수 있음
 - 우리 나라의 경제개발전략은 수출주도형 공업화 중심의 불균형성장 전략이었으며, 이와 같은 수출주도형 공업화 전략의 공간적 표출이 성장거점전략(growth pole strategy)이었음
 - 우리 나라는 공업 기반이 부족한 상태에서 공업화가 계획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공업기반이 비교적 잘 갖추어진 대도시를 중심으로 공업화가 이루어졌음
 - 이와 같은 개발전략은 경제발전론적, 지역개발론적 배경을 가지고

9) 정기환 등(1999). p.9-12를 바탕으로 정리하였음.

추진되었음

○ 경제발전론적 배경

- 농촌지역의 과잉 인구를 노동생산성이 높은 도시 비농업부문으로 이동시키면 도시의 비농업부문에 값싼 노동력을 공급하게 되어 공업이 성장하게 됨. 한편 농업부문은 과잉인구를 비농업부문으로 이동시킬 수 있기 때문에 농업부문의 생산성이 향상되고 발전된 공업부문으로부터 농업생산에 필요한 원자재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되어 농업이 발전할 수 있게 된다는 주장임
- 이러한 주장은 많은 제3세계의 농업발전과 경제성장 전략 수립에 영향을 미쳤고 우리 나라의 경제발전 전략도 이들의 영향을 크게 받았음. 이러한 논리에 의해서 농업부분의 과잉 노동력은 비농업부문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경제 구조의 틀이 만들어졌고 그 결과로 많은 농촌 인구가 1960년대 후반 이후 지속적으로 도시로 이동하게 되었음
- 그러나, 우리 나라 이농은 젊고 생산성 높은 노동력을 중심으로 나타나게 됨. 이농의 결과로 비농업부문에서는 생산성 높은 노동력을 값싸게 공급받을 수 있었지만 농업부문은 생산성 높은 인구가 도시 비농업부문으로 이동하고 나머지 노동력이 고령화되는 노동력의 질적 하락을 가져오게 됨
- 선택적 이농은 농업부분의 노동력을 질적으로 악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농가의 승계단절, 영농승계 단절을 가져와 농가의 소멸, 영농 중단, 농지 자원의 유희화라는 문제를 유발시키고 있음
- 한편, 급격한 인구 감소와 함께 나타나는 지역경제의 쇠퇴는 지역 사회 구조의 개편을 불가피하게 하는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음

○ 지역개발론적 배경

- 농촌의 과소화를 가져오는 지역개발론적 이론으로 성장거점이론을 들 수 있음

- 허쉬만(A. Hirschman)은 극점화현상(polarization)과 점적효과(trickle down effect)에 의해서 성장거점의 유리한 점을 설명하고자 하였음. 그는 개발투자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전 분야를 개발투자의 대상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성장 효과가 큰 몇 가지 분야에 투자가 집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 허쉬만의 주장은 제한된 자원을 이용할 때 투입과 산출의 극대화를 위한 효율성 증대가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에 성장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한다는 것임. 따라서 성장산업에 집중 투자하면 성장은 외부경제의 이익으로 인하여 한 지점을 정점으로 극점을 형성하게 되고 이러한 성장의 효과는 점적효과에 의해서 타 지역으로 확산된다고 하였음
- 이러한 성장거점이론은 페룩스(F. Perroux)와 보드빌(J. Boudevile) 등에 의해서 발전되었는데 특히 보드빌은 한 지역이 우월적 위치를 점하여 성장거점을 마련하려면 대규모 공단의 조성과 도시건설 및 그 확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 그러나 이와 같은 이론들에 의해서 추진된 성장거점은 그 성장의 효과를 주변지역으로 되돌려 주는데 실패했다고 지적되고 있음. 오히려 거점성장은 주변지역의 자원을 성장거점으로 이동시킴으로써 주변지역의 상대적 낙후를 초래하게 되었음이 지적되고 있음
- 우리 나라의 농촌 과소화 현상은 공업화 중심의 불균형성장 전략이 가져온 대표적인 결과라 볼 수 있음. 불균형성장 전략은 농업부문의 인력과 자본이 도시 비농업부문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경제의 틀을 세우고 대도시를 중심으로 공업화를 추진한 결과, 농촌지역의 인구와 자본이 도시의 비농업부문으로 대량 이동할 결과로 해석할 수 있음
- 허쉬만은 성장거점이 일정한 수준을 넘어서면 외부 비경제의 요인이 발생하여 장기적으로 성장거점에 투자를 계속하는 것이 불리하도 보고 있으며 중국에 가서는 균형과 국민화합을 위해 성장

거점에 대한 투자를 중단하고 저개발지역에 대한 투자를 증대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음. 즉, 주변 배후지역에서 생활필수품의 공급과 하부구조를 개선을 위한 투자가 계속되어야 하며 공업, 농업, 서비스업이 균형있게 발전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음

- 따라서 농촌지역의 과소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농촌지역의 인력과 자본이 더 이상 도시부문으로 이동하지 않도록 농촌지역을 도시의 개발 수준에 맞도록 균형개발하고 농촌지역의 젊은이들이 농촌지역에 정착하여 목표하는 직업과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해야 함

나. 과소화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

1) 마을 및 공동체의 기능 약화, 소멸

- 마을의 공동체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인구 계층(노년층-중장년층-청년층-유년층) 및 인구 수가 충족되지 않을 경우 마을의 공동체 기능은 약화되고 사라질 수 밖에 없음

2) 농촌의 다면적 기능의 약화, 상실

- 농촌의 다면적 기능인 식량 생산의 기능, 국토 보존의 기능, 전통문화 계승의 기능, 보건·휴양의 기능 등이 과소화로 인하여 축소·약화되거나 상실될 수 있음

3) 지역 고유의 전통과 문화의 소멸

- 마을별 특색을 가지고 수 천년에서 수 백년에 걸쳐 이어져 내려오는 전통문화가 계승 세대의 단절 및 공동 문화 형성을 위한 최소

한의 인구 유지의 어려움으로 소멸 초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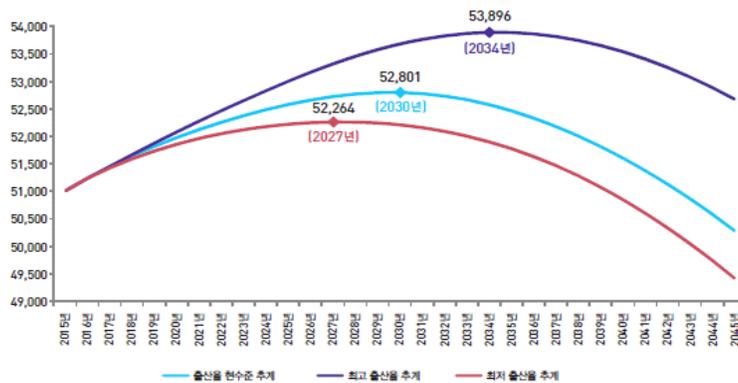
4) 실제 마을의 소멸

- 국토 정주체계의 가장 기초가 되는 단위라 할 수 있는 농촌마을의 소멸은 지역뿐만 아니라 국가의 정체성 상실과 정주체계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음

3. 과소화 전망

가. 국내 인구 변화 전망

- 2017년 통계청의 인구추계자료에 하면, 한국의 전체인구('18년 6월 현재 51,801천명)는 2031년부터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됨¹⁰⁾



자료 : 통계청, 인구추계.

<그림 3-2> 향후 인구추계 결과

10) 이런 전망은 합계출산율이 중위수준(2016년 1.18명-2050년 1.38명까지 증가)을 갖는다는 점을 전제로 산출된 것임. 그러나 2017년 합계출산율은 1.05명으로 나타남. 통계청에서는 현재의 추세를 따라갈 경우, 인구의 자연증가에 의한 정점이 2027년까지 빨라질 것으로 전망함.

- 그러나 문제는 인구감소가 지역적으로 다르다는 것임. 즉, 비수도권의 상대 인구 비중은 지난 20년 이상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수도권 대비 1993년 55.7%에서 2017년 50.6%까지 하락함. 특히 20~30대 비수도권의 청년인구 비중은 2004년 절반 이하로 떨어졌으며, 2017년 기준 수도권 대비 47.0%를 기록함

나. 농촌 인구 전망

- 정도채·심재현(2017) 연구에 의하면, 농촌의 인구는 2040년 경 최대 983만 1천명에서 최소 812만 8천명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 (시나리오 1-1) 외국인을 포함하고 최근 5년간 인구 이동률(고성장 시나리오)을 적용하면 2020년까지 인구가 증가하다가 감소하여 2040년 경 농촌인구는 983만 1천명이 될 것으로 추정
- (시나리오 1-2) 내국인만을 고려하고 최근 5년간 인구 이동률을 적용하면 2040년 경 농촌인구는 827만 4천명이 될 것으로 추정
- (시나리오 2-1) 외국인을 포함하고 최근 10년간 인구 이동률(평균 성장 시나리오)을 적용하면 2020년까지 인구가 증가하다가 감소하기 시작하여 2040년 경에는 926만명이 될 것으로 추정
- (시나리오 2-2) 내국인만을 고려하고 최근 10년간 인구 이동률을 적용하면 인구는 현재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40년 경 농촌인구는 812만 8천명이 될 것으로 추정
- (시나리오 3) 현재 귀농·귀촌의 열풍이 앞으로도 지속되지 못한다는 것을 가정하는 보수적인 평균 성장 시나리오 고려 시 농촌의 인구는 외국인 포함 여부와 상관없이 현재 인구 수준보다 낮을 것으로 추정

다. 지방 소멸위험지수를 통해서 본 전망

- 한국고용정보원은 국가통계포털의 주민등록인구통계를 활용해 '13년 ~'18년까지 전국 228개 시·군·구 및 3,463개 읍·면·동의 소멸위험지수¹¹⁾를 계산 함
- '18년 기준으로 전국 평균 소멸위험지수는 0.91이며, 매년 지속적으로 소멸위험지수는 낮아지고 있는 상황 임

- 16개 광역시·도별로 살펴보면, 전남이 0.47로서 가장 낮고 다음으로 경북(0.55), 전북·강원(0.58), 충남(0.67)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 광역시·도별 소멸위험지수는 매년 감소 추세에 있으나, 세종시만 유일하게 '17년 대비 '18년이 1.55에서 1.59로 다소 상승하였음
 - 전남은 22개 시·군 중 16개 시·군(72.7%)이, 경북은 23개 시·군 중 19개 시·군(82.6%)이, 전북은 14개 시·군 중 10개 시·군(71.4%)이, 강원은 18개 시·군 중 10개 시·군(55.5%)이, 충남은 15개 시·군 중 10개 시·군(66.6%)이 소멸위험지역에 포함되었음

- 시·군·구의 경우, 소멸위험지역은 '13년 75개(32.9%)에서 '18년 89개(39.0%)로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음
 - 소멸고위험지역은 의성군(0.151), 고흥군(0.161), 군위군(0.169), 합천군(0.171), 남해군(0.179), 청송군(0.184), 영양군(0.187), 청도군(0.194), 봉화군(0.197), 영덕군(0.198), 신안군(0.198) 등 11개 시·군인데, 경북이 7곳, 경남이 2곳, 전남이 2곳을 차지하고 있음

11) 소멸위험지수는 '한 지역의 20~39세 여성인구 수를 해당 지역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수로 나눈 값'이며 소멸위험지수가 0.5 미만이면 소멸위험지역이라고 정의됨 (1.5 이상 : 소멸위험 매우 낮음, 1.0~1.5미만 : 소멸위험 보통, 0.5~1.0 미만 : 주의단계, 0.2~0.5 미만 : 소멸위험진입 단계, 0.2 미만 : 소멸고위험 지역). 즉, 가입여성인구 수가 고령자 수의 절반이 안 되는 지역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로 공동체가 붕괴돼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것임.

(표 3-8) 전국 및 16개 광역시·도별 소멸위험지수

구분	소멸위험지수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전국	1.16	1.09	1.04	1.00	0.95	0.91
서울	1.42	1.33	1.26	1.20	1.14	1.09
부산	1.04	0.97	0.91	0.86	0.81	0.76
대구	1.18	1.09	1.02	0.98	0.92	0.87
인천	1.51	1.43	1.35	1.30	1.22	1.15
광주	1.44	1.34	1.27	1.20	1.13	1.08
대전	1.51	1.42	1.32	1.25	1.18	1.11
울산	1.77	1.65	1.54	1.45	1.34	1.23
세종	0.84	0.93	1.31	1.48	1.55	1.59
경기	1.51	1.43	1.35	1.30	1.23	1.18
강원	0.73	0.69	0.66	0.64	0.61	0.58
충북	0.91	0.86	0.83	0.81	0.76	0.73
충남	0.81	0.78	0.74	0.72	0.70	0.67
전북	0.72	0.68	0.65	0.63	0.60	0.58
전남	0.55	0.53	0.51	0.50	0.48	0.47
경북	0.71	0.67	0.64	0.62	0.58	0.55
경남	0.99	0.94	0.89	0.85	0.81	0.76
제주	0.94	0.92	0.90	0.89	0.87	0.86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2018).

(표 3-9) 소멸위험 시·군·구 수

구분	'13년 7월	'14년 7월	'15년 7월	'16년 7월	'17년 7월	'18년 6월
전체 시·군·구 수	228	228	228	228	228	228
소멸저위험	41	30	24	20	16	12
정상지역	57	63	62	61	54	51
소멸주의단계	55	56	62	63	73	76
소멸위험진입	73	76	76	79	78	78
소멸고위험	2	3	4	5	7	11
소멸위험지역 소계	75	79	80	84	85	89
(비중)	(32.9)	(34.6)	(35.1)	(36.8)	(37.3)	(39.0)

주 : 228개 기초지자체는 자치구를 기준으로 작성. 제주와 세종은 각각 1개 지역으로 계산.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2018).

- 읍·면·동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소멸위험지역이 '13년 1,229개(35.5%)에서 '18년 1,503개(43.4%)로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음

(표 3-10) 소멸위험 읍·면·동 수

구 분	'13년 7월	'14년 7월	'15년 7월	'16년 7월	'17년 7월	'18년 6월
전체 읍·면·동 수	3,463	3,463	3,463	3,463	3,463	3,463
소멸저위험	793	668	562	511	435	368
정상지역	723	741	744	718	672	627
소멸주의단계	718	776	823	852	919	965
소멸위험진입	696	676	667	676	678	689
소멸고위험	533	602	667	706	759	814
소멸위험지역 소계	1,229	1,278	1,334	1,382	1,437	1,503
(비중)	(35.5)	(36.9)	(38.5)	(39.9)	(41.5)	(43.4)

주 : 3,463개의 읍·면·동은 각 연도별 행정동의 신설, 폐지, 통합 등을 반영하여 연도간 공간적 범위가 일치하도록 연계한 것임. 행정동의 통폐합 기준은 통계청의 각 연도별 행정구역 분류 연계표를 이용하여 매칭함.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2018).

(표 3-11) 소멸위험 읍·면 상위 22개

순위	시·군	읍·면	'13년 7월	'14년 7월	'15년 7월	'16년 7월	'17년 7월	'18년 6월
1	철원군	근북면	0.069	0.066	0.100	0.069	0.067	0.049
2	의성군	신평면	0.054	0.045	0.048	0.047	0.050	0.054
3	거창군	신원면	0.109	0.093	0.078	0.082	0.073	0.056
4	상주시	은척면	0.118	0.105	0.082	0.080	0.076	0.068
5	의성군	안사면	0.075	0.065	0.060	0.060	0.061	0.069
5	군위군	산성면	0.103	0.082	0.087	0.066	0.068	0.069
7	군위군	고로면	0.100	0.083	0.082	0.071	0.070	0.071
7	영덕군	지품면	0.110	0.094	0.089	0.081	0.070	0.072
7	포항 북구	죽장면	0.116	0.102	0.097	0.086	0.079	0.072
10	영덕군	창수면	0.093	0.093	0.094	0.077	0.075	0.073
10	의성군	안평면	0.106	0.094	0.090	0.099	0.093	0.073

(표 계속)

순위	시·군	읍·면	'13년 7월	'14년 7월	'15년 7월	'16년 7월	'17년 7월	'18년 6월
12	의령군	유곡면	0.111	0.105	0.090	0.079	0.086	0.074
12	고흥군	영남면	0.099	0.106	0.101	0.094	0.081	0.074
12	서천군	문산면	0.121	0.112	0.099	0.093	0.083	0.074
12	포항 북구	기북면	0.109	0.100	0.102	0.108	0.091	0.074
12	삼척시	노곡면	0.093	0.093	0.100	0.082	0.080	0.074
17	예천군	개포면	0.143	0.118	0.096	0.086	0.077	0.075
17	울진군	매화면	0.116	0.100	0.086	0.083	0.086	0.075
17	합천군	쌍백면	0.090	0.093	0.084	0.076	0.078	0.075
17	옥천군	청성면	0.113	0.110	0.105	0.084	0.083	0.075
17	거창군	가북면	0.086	0.082	0.084	0.073	0.072	0.075
17	합천군	용주면	0.155	0.138	0.137	0.114	0.090	0.075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2018). 원자료.

- 한편, 유출 현황을 살펴보면 연령별 순유출은 20대가 17만명으로 가장 많았고, 30대 10만 9천명, 10대 이하 6만 3천명으로 30대 이하의 순유출 인원은 34만 2천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특히, 20대의 경우, 전체 이동 중 수도권으로의 유출이 37.4%를 차지했고, 50대는 소멸위험지역으로의 순유입이 6만 6천명이었음
 - 귀농·귀촌 등 고령자의 인구 유입은 소멸위험지역의 인구감소를 억제하는데 기여하고 있지만 인구유출의 흐름을 반전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제4장 과소화 대응 정책 및 사업

제4장 과소화 대응 정책 및 사업

제1절 과소화 및 주거환경 관련 정책

1. 정책 환경의 변화

- 농어촌지역은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교통·통신의 발달, 생활권의 광역화 등 사회·경제·문화적 변화에 따라 정주공간으로서의 기능이 변화되고 있음
- 최근의 농어촌지역은 지속적인 인구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쾌적하고 여유 있는 주거공간으로서 귀촌 수요와 새로운 인생 이모작을 위한 귀농 수요가 증대되고, 교통망 확충 등 접근성의 개선과 경제권·생활권의 광역화로 인해 일부 읍·면지역에서는 오히려 인구가 증가하는 현상도 발생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소화는 진행되고 있어 과소화에 따른 주거지원 필요성의 증가, 노령화로 독거노인 등 농어촌지역 영세계층에 대한 주거복지차원의 정책지원 필요성의 증가, 가구분화로 인한 수요의 증가, 농촌관광과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한 주택 등 주거환경 개선의 필요성 증가 등 복합적인 요인이 혼재되어 발생되고 있어 지역의 여건 및 특성을 고려한 주거환경 측면의 과소화 대응 정책의 필요성은 증대되고 있음
- 그러나,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과소화와 직접 관련된 별도의 법 제정 및 정책의 추진(일본의 경우, 1960년대부터 과소화 대책법이 제정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 및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은 이루어지

지 않고 있으며 농촌정책이라는 큰 틀 속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상황임

- 다만, 충남·전북 등 광역지자체를 중심으로 해당지역의 과소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태를 파악하고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을 통한 과소(화)마을 유형화 및 유형별 대응책 마련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임
- 농어촌지역을 둘러싼 정책 환경의 변화 속에서 삶의 기초공간으로서 주택을 포함한 주거환경의 공급과 주거복지 확대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며 혼주화, 고령화와 생활권 광역화 등 농어촌 지역 사회의 변화에 따라 과소화에 대응한 새로운 주거환경 조성을 농어촌 공간정책차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상황 임

2. 과소·고령마을에 대한 정책¹²⁾

가. 과소·고령마을에 대한 정책 유형

- 과소·고령마을 정책의 가장 기본이 되는 유형은 ‘재생, 재편, 소멸’ 정책으로 구분할 수 있음

1) 재생

- 극도의 과소(한계)화가 진행되더라도 마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어떠한 희생과 노력을 기울여서라도 회복시켜야 한다는 관점으로 마을 자원과 관련 주체의 협력에 의해 재생을 도모

12) 조영재·윤정미(2016)를 바탕으로 정리하였음.

2) 재편

- 마을 재생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사회적 비용의 투입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과소(한계)마을을 새로운 시각에서 공간적이거나 기능적으로 다시 구조적 조정을 하는 방법
- 재편 정책은 행정적 재편, 기능적 재편, 공간적 재편으로 세분화 될 수 있음

가) 행정적 재편

- 인근 마을과 통합·합병을 추진하거나, 중심마을이나 거점 기능을 수행하는 마을로 과소(한계)마을을 흡수시키고, 행정구역의 변경 등을 통하여 행정적 측면에서 재편성을 도모하는 방법

나) 기능적 재편

- 인근 중심마을의 기능을 강화하여 거점 기능을 담당하도록 하거나, 초등학교 등 지역생활권을 단위로 하는 복수의 마을을 묶어 각각의 마을에 차별화된 기능을 분담하도록 하고 상호 협력과 상호 보완의 관계 속에서 기능적 측면의 재편을 도모하는 방법

다) 공간적 재편

- 행정적 재편과 기능적 재편이 불가능한 경우, 마을의 공간적 이전 및 외부 인구의 유입을 통한 신규마을 조성 등의 재편성을 도모하는 방법

3) 소멸

- 어떠한 정책적 투입도 농어촌마을이 한계마을로 진행되는 것을 막

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가능성이 있는 마을을 중심으로 자원과 노력을 기울이고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소멸을 맞이하도록 함

나. 과소·고령마을에 대한 추진 정책

-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는 과소·고령화 대응 정책은 대부분 일반 농촌마을 및 지역개발정책과 차별화되지 못한 유사한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 즉, 과소·고령화 현상과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접근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보다는 기존의 정책추진 방식을 명칭만 바꾸어 단시간에 눈에 보이는 성과를 거두려고 하는 한계가 있음
- 재생 정책의 사례는 주로 물리적 환경에 집중되고, 일부 테마형 재생 정책이 추진됨
 - 재생 정책은 꽃길 조성, 담장 벽화 등 마을가꾸기, 주거환경 정비, 한천 정비 등 주로 물리적 환경에 집중되고 있음
 - 일부 에너지, 예술, 산촌유학 프로그램 등 테마형 재생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물리적 시설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 임
- 재편 정책은 공간적 재편 사례가 대부분이고, 소극적인 대응정책에 집중 됨
 - 재편 정책은 커뮤니티 일부 이전, 신규마을 조성 또는 기존마을 리모델링 등 주로 공간적 재편의 사례가 대부분임
 - 일부 소득원 및 일자리 창출, 귀농·귀촌인 유치 등 새로운 커뮤니티 창출을 위한 기능적 재편 정책이 추진되고 있음
 - 또한 과소·고령화 현상과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정책 보다는 복지, 의료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소극

적 대응정책에 집중되었으며, 기타 행정적 재편의 사례가 부재함

- 향후 일반 마을 정책과 차별화된 중장기적인 과소·고령마을 정책이 요구됨
 - 마을 재생 정책은 주민 공동체 활성화가 전제되어야 하며, 과소·고령화의 경향과 마을 특성에 따른 다양한 유형별 재편 정책이 마련되어야 함
 - 마을의 역량과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과소·고령마을은 일반마을과 동일한 경쟁방식에 의한 정책투입을 적용할 경우 정책적으로 소외 될 수 밖에 없고 성급한 성과를 거두려 하기 보다는 중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차별화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함
 - 기존 농촌마을 재생 정책이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한 원인 중의 하나는 주민 공동체의 활성화와 주민 주도의 동기 부여가 전제되지 않은 물리적 환경의 개선 및 조성에 목적을 두었기 때문임
 - 즉, 기존 농어촌지역개발사업을 마을재생을 위해 집중하되, 마을 만들기 등 주민이 주도하는 내발적 발전을 우선 도모하여야 함
 - 마을 재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마을 재편 정책을 추진 하되, 마을의 실정과 특성에 따라 기능적 재편, 공간적 재편, 행정적 재편의 다양한 적극적인 유형별 재편 정책이 마련되어야 함
 - 특히, 마을의 재생과 재편이 불가능하고 소멸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마지막까지 복지, 의료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소극적 재편 정책은 반드시 추진될 필요성이 있음

제2절 과소화 및 주거환경 관련 법

- 일본과 같이 과소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는 법(과소지역 자립촉진 특별조치법)은 부재하여 과소화 및 주거환경과 관련된 법으로서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농어촌 정비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대해 살펴보았음

1.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 본 법은 농어촌의 주거환경 및 노후·불량 주택을 계획적·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친환경적이며 지속 가능한 살기 좋은 농어촌마을을 만드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13년 6월 4일 제정됨('14년 6월 5일 시행)

가. 법의 구성

구분	법 조항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종합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제5조(농어촌마을 정비 종합계획의 수립), 제6조(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제7조(총괄계획가의 운영), 제8조(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 등), 제9조(정비구역 해제), 제10조(행위제한 등)
제3장 정비사업의 시행	제11조(사업시행자), 제12조(사업시행자 지정 특례), 제13조(농어촌마을 정비조합의 설립 및 추진위원회의 구성), 제14조(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등), 제15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제16조(실시계획의 작성 등), 제17조(다른 법률의 인·허가 등의 의제), 제18조(실시계획 승인의 특례), 제19조(임시수용시설의 설치 등), 제20조(손실보상),

(계속)

구분	법 조항
제3장 정비사업의 시행	제21조(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제22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 제23조(「주택법」 등의 적용 특례), 제24조(환지계획의 「도시개발법」의 준용), 제25조(지상권 등 계약의 해지), 제26조(소유자의 확인이 곤란한 농어촌주택 등에 대한 처분), 제27조(농어촌주택 등의 분양 등), 제28조(관리처분계획의 준용), 제29조(대지의 용도), 제30조(대지의 전매행위 제한 등), 제31조(건축물의 철거 등)
	제32조(정비사업의 준공인가), 제33조(정비기반시설의 설치 등), 제34조(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제35조(간선시설의 설치), 제36조(국유재산·공유재산의 처분 등), 제37조(국공유지의 무상양여 등)
제4장 정비사업을 위한 지원	제38조(농어촌주거환경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제39조(보조 및 용자), 제40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제5장 보칙	제41조(보고 및 검사 등), 제42조(정비사업성과의 평가), 제43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제6장 벌칙	제44조(벌칙), 제45조(양벌규정), 제46조(과태료)

나. 법의 주요 내용

○ 주요 용어 정의(제2조)

- 리모델링 :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향상 등을 위하여 증축·개축 또는 대수선을 하는 행위
- 정비구역 : 농어촌마을을 정비하기 위하여 지정·고시된 구역

- 정비사업 :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농어촌주택(이에 부속되는 건축물 및 토지 포함), 주거환경 및 농어촌경관 등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사업
 - ▶ 전면 재정비사업 : 정비기반시설과 노후·불량 농어촌주택이 극히 열악한 기존 마을과 연접한 지역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하여 새롭게 마을을 전면 정비하는 사업
 - ▶ 연계형 개발사업 :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한 기존 마을과 연접한 지역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하여 기존 마을의 정비기반시설을 확충·재정비하고, 노후·불량 농어촌주택을 정비하여 연접한 지역을 새로운 마을로 개발하는 사업
 - ▶ 유지보전형 개발사업 : 도시·군관리계획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기존 마을을 보전하면서 노후·불량 농어촌주택의 리모델링, 정비기반시설의 확충·재정비를 통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

- 노후·불량 농어촌주택 :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농어촌주택으로서 다음과 같은 주택
 - ▶ 슬레이트가 사용된 농어촌주택
 - ▶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및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농어촌주택
 - ▶ 건축물의 기능적 결함, 부실 시공 또는 노후화로 인한 구조적 결함 등으로 철거가 불가피한 농어촌주택
 - ▶ 시장, 군수, 광역시의 자치구 구청장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농어촌주택

- 정비기반시설 : 도로, 상수도·하수도 및 오수·폐수 정화시설

- 공동이용시설 :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마을회관·공동작업장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 정비구역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마을공동판매장, 농기계보관시설, 경로당, 어린이집,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로서 시, 군, 광역시의 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 공동형 농어촌주택 :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등 농어촌 취약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기존의 경로당, 폐교, 빈집 등을 활용한 공동생활형 주택

○ 농어촌마을 정비 종합계획의 수립(제5조)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다음 사항이 포함된 농어촌마을 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 정비사업의 기본방향
 - ▶ 정비사업 대상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은 제외)
 - ▶ 추정사업비
 -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비사업의 목표● 노후·불량 농어촌주택, 정비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 및 공동형 농어촌주택 등 각 분야별 정비사업의 기본방향● 농어촌 경관 및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
|---|

○ 농어촌주거환경지원센터의 설치·운영(제38조)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정비사업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농어촌주거환경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

- 농어촌주거환경지원센터는 농어촌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할 수 있음
 - ▶ 종합계획의 수립과 관련된 지원 업무
 - ▶ 정비계획의 수립과 관련된 지원 업무
 - ▶ 정비사업 성과의 평가와 관련된 지원 업무
 - ▶ 그 밖에 정비사업 지원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2. 농어촌정비법

- 본 법은 농업생산기반, 농어촌 생활환경,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및 한계 농지 등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정비·개발하여 농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을 촉진함으로써 현대적인 농어촌건설과 국가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1994년 12월 22일 제정됨(1995년 6월 23일 시행)
- 농어촌정비법 중 농어촌 생활환경을 중심으로 법의 구성 및 주요 내용을 살펴보았음

가. 법의 구성

구분	법 조항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2장 농어촌 정비를 위한 자원의 조사와 활용	제3조(자원 조사), 제4조(농어촌 정비 종합계획 등), 제5조(농어촌경관의 보전관리)
제3장 농업생산기반 정비	제6조~ 제51조

(계속)

구분	법 조항
제4장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제52조(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원칙), 제53조(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기본 방침), 제54조(생활환경정비계획의 수립), 제55조(생활환경정비계획의 내용), 제56조(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 제57조(마을정비조합의 설립 및 추진위원회의 구성), 제58조(생활환경정비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제59조(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제60조(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의 내용), 제61조(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의 변경), 제62조(생활환경정비사업의 환지), 제63조(사업시행자 지정 특례), 제64조(빈집 정비), 제65조(빈집 정비 절차 등), 제66조(자진 철거자에 대한 지원), 제67조(농어촌주택개량자금의 조성 등), 제68조(농어촌 주택 등의 분양 등), 제69조(조성용지의 용도), 제70조(조성용지의 전매행위 제한 등), 제70조의2(간선시설의 설치), 제71조(기술지원 등)
제5장 농어촌산업의 육성	제72조~제80조
제6장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개발과 한계농지등의 정비	제81조~제100조
제7장 마을정비구역	제101조(마을정비계획 수립 및 마을정비구역의 지정), 제102조(마을정비구역 지정 및 마을정비계획의 변경), 제103조(마을정비구역 지정의 제안)

(계속)

구분	법 조항
제8장 보칙	제104조(주민 등의 의견 청취), 제105조(사업지역·지구 구의 고시 등), 제10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07 조(다른 법령의 적용 특례), 제108조(자금지원), 제 109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제110조(토지 등의 수 용), 제110조의2(저수지 축조 등에 따른 피해주민 지 원), 제110조의3(구분지상권의 설정 등기 등), 제111 조(마을정비구역 등에서의 행위 등의 제한), 제112조 (국공유지의 양여 등), 제113조(선수금), 제114조(준 공검사 및 준공인가), 제115조(측량·설계·공사감리등 의 위탁), 제116조(허가 취소 등), 제117조(지정 해 제), 제118조(청문), 제119조(보고와 검사), 제120조 (측량·검사 또는 서류 등 열람), 제121조(토지 이동 의 신청 특례), 제122조(다른 등기의 정지), 제123조 (농어촌정비사업의 심의), 제124조(부처 간 협조체제 유지), 제125조(농어촌 정비협약), 제126조(수리계), 제127조(무단점용료의 징수), 제128조(불법시설물의 철거), 제129조(벌칙 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제9장 벌칙	제130조(벌칙), 제131조(양벌규정), 제132조(과태료)

나. 법의 주요 내용

○ 주요 용어 정의(제2조)

- 농어촌정비사업 : 다음의 사업

- ▶ 농업생산기반을 조성·확충하기 위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 ▶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 ▶ 농어촌산업 육성사업
- ▶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개발사업
- ▶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

- 생활환경정비사업 :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 생활 기반 및 편익시설·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하고 확충하며 농어업인 등의 복지를 향상하기 위한 다음 사업
 - ▶ 집단화된 농어촌 주택, 공동이용시설 등을 갖춘 새로운 농어촌 마을 건설사업
 - ▶ 기존 마을의 토지와 주택 등을 합리적으로 재배치하기 위한 농어촌마을 재개발사업
 - ▶ 분산된 마을의 정비사업
 - ▶ 간이 상수도, 마을하수도 및 오수·폐수 정화시설의 설치 등 농어촌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사업
 - ▶ 주민생활의 거점이 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개발하는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 ▶ 빈집의 정비
 - ▶ 농어촌 임대주택의 공급 및 관리를 위한 사업
 - ▶ 치산녹화 등 국토 보전시설의 정비·확충
 - ▶ 농어촌 주택의 개량(신축·증축·개축 및 대수선을 말함)사업
 - ▶ 슬레이트가 사용된 농어촌 주택·공동이용시설 등 시설물에 대한 슬레이트의 해체·제거 및 처리 사업
 - ▶ 그 밖에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 농어촌 주택 :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에 위치하고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이에 부속되는 건축물 및 토지를 포함)

- 빈집 : 시장·군수·구청장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농어촌 주택이나 건축물

- 마을정비구역 :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에서 농어촌정비사업을 종합적·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고시된 구역
- 공동형 농어촌주택 :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등 농어촌 취약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기존의 경로당, 폐교, 빈집 등을 활용한 공동생활형 주택
- 생활환경정비계획의 수립(제54조)
 - 시장·군수·구청장은 생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으면 5년마다 생활환경정비계획을 세워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군·구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의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생활환경정비계획의 내용(제55조)
 - 생활환경정비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 생활환경정비사업의 목적과 기본방향
 - ▶ 성과 목표 및 지표
 - ▶ 농어촌마을의 건설·재개발·정비 등 개발에 관한 사항
 - ▶ 빈집 정비에 관한 사항
 - ▶ 치산녹화 등 국토보전시설의 정비·확충에 관한 사항
 - ▶ 농어촌 주택의 개량에 관한 사항(제2조제10호차목에 따른 슬레이트의 해체·제거 및 처리 사업을 포함)
 - ▶ 도로, 상·하수도, 오·폐수처리시설 등 생활환경기반시설의 정비·확충에 관한 사항
 - ▶ 교육·문화·복지 시설의 정비·확충에 관한 사항
 - ▶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개발, 농공단지 등 농어촌사업 육성 및 다른 지역개발사업과 연계한 생활환경의 정비·확충에 관한 사항
 - ▶ 농어촌 용수 및 배수 시설의 정비·개발

- ▶ 농어촌마을 경관 및 자연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
-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제56조)
 - 생활환경정비사업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시행함.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생활환경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다음의 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음
 - ▶ 한국농어촌공사
 - ▶ 지방공기업
 - ▶ 마을정비조합
 - ▶ 시장·군수·구청장, 한국농어촌공사, 지방공기업 또는 마을정비조합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주택건설사업자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 ▶ 농어촌 주택의 소유자
- 생활환경정비사업 기본계획의 수립(제58조)
 - 시장·군수·구청장은 생활환경정비계획에 포함된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세부 사업별로 생활환경정비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음
- 빈집 정비(제64조)
 -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에 있는 빈집이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빈집의 소유자에게 철거, 개축,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이 경우 빈집의 소유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이내에 조치를 이행하여야 함
- 마을정비계획 수립 및 마을정비구역의 지정(제101조)

- 시·도지사는 농어촌정비사업을 종합적·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요청을 받아 마을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음
- 시장·군수·구청장은 마을정비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려면 농어촌마을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시·군·구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함

- 마을정비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 마을정비구역의 명칭·위치와 면적
 - ▶ 마을정비구역을 둘 이상의 사업시행지구로 나누어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그 지구분할에 관한 사항
 - ▶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 ▶ 새로운 농어촌마을의 건설 또는 기존 농어촌마을의 재개발에 관한 사항
 - ▶ 도로, 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 ▶ 농어촌 주택 개량에 관한 사항
 - ▶ 농어촌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 ▶ 환경보전 계획 및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 ▶ 마을 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 ▶ 농업생산기반 정비에 관한 사항
 - ▶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개발에 관한 사항
 - ▶ 농어촌산업 육성 및 개발에 관한 사항
 - ▶ 보건의료·교육·복지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 ▶ 지역특화발전에 관한 사항
 - ▶ 사업비의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 ▶ 사업의 시행 예정 기간
 - ▶ 사업의 시행 예정자 및 개발사업의 시행방식에 관한 사항
 -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물건·권리의 명세서
 -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본 법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02년 12월 30일 제정되었음('03년 7월 1일 시행)
- 2013년부터 본 법에 의해 120개 시·군 중 읍·면·동에 해당하는 지역(도시계획이 수립된 지역)은 주거환경정비구역을 지정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가. 법의 구성

구분	법 조항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 방침),
제2장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제4조(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기본계획의 내용), 제6조(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의견 청취 등), 제7조(기본계획의 확정·고시 등), 제8조(정비구역의 지정), 제9조(정비계획의 내용), 제10조(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제11조(기본계획 및 정비계획 수립 시 용적률 완화), 제12조(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안전진단), 제13조(안전진단 결과의 적정성 검토), 제14조(정비계획의 입안 제안), 제15조(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의견청취 등), 제16조(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고시), 제17조(정비구역 지정·고시의 효력 등), 제18조(정비구역의 분할, 통합 및 결합), 제19조(행위제한 등), 제20조(정비구역등의 해제), 제21조(정비구역등의 직권해제), 제22조(정비구역등 해제의 효력)

(계속)

구분	법 조항
제3장 정비사업의 시행	제23조(정비사업의 시행방법), 제24조(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 제25조(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의 시행자), 제26조(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의 공공시행자), 제27조(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의 지정개발자), 제28조(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의 사업대행자), 제29조(계약의 방법 및 시공자 선정 등), 제30조(임대사업자의 선정)
제3장 정비사업의 시행	제31조(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승인), 제32조(추진위원회의 기능), 제33조(추진위원회의 조직), 제34조(추진위원회의 운영), 제35조(조합설립인가 등), 제36조(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등), 제37조(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재사용의 특례), 제38조(조합의 법인격 등), 제39조(조합원의 자격 등), 제40조(정관의 기재사항 등), 제41조(조합의 임원), 제42조(조합임원의 직무 등), 제43조(조합임원의 결격사유 및 해임), 제44조(총회의 소집), 제45조(총회의 의결), 제46조(대의원회), 제47조(주민대표회의), 제48조(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제49조(민법의 준용)
	제50조(사업시행계획인가), 제51조(기반시설의 기부채납 기준), 제52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제53조(시행규정의 작성), 제54조(재건축사업 등의 용적률 완화 및 소형주택 건설비율), 제55조(소형주택의 공급 및 인수), 제56조(관계 서류의 공람과 의견 청취), 제57조(인·허가 등의 의제 등), 제58조(사업시행계획인가의 특례), 제59조(순환정비방식의 정비사업 등), 제60조(지정개발자의 정비사업비의 예치 등)

(계속)

구분	법 조항
제3장 정비사업의 시행	제61조(임시거주시설·임시상가의 설치 등), 제62조(임시거주시설·임시상가의 설치 등에 따른 손실보상), 제63조(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제64조(재건축사업에서의 매도청구), 제65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 제66조(용적률에 관한 특례), 제67조(재건축사업의 범위에 관한 특례), 제68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제69조(다른 법령의 적용 및 배제), 제70조(지상권 등 계약의 해지), 제71조(소유자의 확인이 곤란한 건축물 등에 대한 처분)
	제72조(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제73조(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 제74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제75조(사업시행계획인가 및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시기 조정), 제76조(관리처분계획의 수립 기준), 제77조(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제78조(관리처분계획의 공람 및 인가절차 등), 제79조(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처분 등), 제80조(지분형주택 등의 공급), 제81조(건축물 등의 사용·수익의 중지 및 철거 등), 제82조(시공보증)
	제83조(정비사업의 준공인가), 제84조(준공인가 등에 따른 정비구역의 해제), 제85조(공사완료에 따른 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제86조(이전고시 등), 제87조(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권리의 확정), 제88조(등기절차 및 권리변동의 제한), 제89조(청산금 등), 제90조(청산금의 징수방법 등), 제91조(저당권의 물상대위)
제4장 비용의 부담 등	제92조(비용부담의 원칙), 제93조(비용의 조달), 제94조(정비기반시설 관리자의 비용부담), 제95조(보조 및 용자), 제96조(정비기반시설의 설치), 제97조(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제98조(국유·공유재산의 처분 등), 제99조(국유·공유재산의 임대), 제100조(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면제), 제101조(국·공유지의 무상양여 등)

(계속)

구분	법 조항
제5장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제102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 제103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제한 등), 제104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위탁자와의 관계), 제105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결격사유), 제106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취소 등), 제107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한 조사 등), 제108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정보의 종합관리), 제109조(협회의 설립 등), 제110조(협회의 업무 및 감독)
제6장 감독 등	제111조(자료의 제출 등), 제112조(회계감사), 제113조(감독), 제114조(정비사업 지원기구), 제115조(교육의 실시), 제116조(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제117조(조정위원회의 조정 등), 제118조(정비사업의 공공지원), 제119조(정비사업관리시스템의 구축), 제120조(정비사업의 정보공개), 제121조(청문)
제7장 보칙	제122조(토지등소유자의 설명의무), 제123조(재개발사업 등의 시행방식의 전환), 제124조(관련 자료의 공개 등), 제125조(관련 자료의 보관 및 인계), 제126조(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 등), 제127조(노후·불량주거지 개선계획의 수립), 제128조(권한의 위임), 제129조(사업시행자 등의 권리·의무의 승계), 제130조(정비구역의 범죄 예방), 제131조(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재실시), 제132조(조합임원 등의 선임·선정 시 행위제한), 제133조(조합설립인가 등의 최소에 따른 채권의 손해액 산입), 제13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8장 벌칙	제135조~제138조(벌칙), 제139조(양벌규정), 제140조(과태료), 제141조(자수자에 대한 특례), 제142조(금품·향응 수수행위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나. 법의 주요 내용

○ 주요 용어 정의(제2조)

- 정비구역 :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고시된 구역

- 정비사업 :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다음과 같은 사업
 - ▶ 주거환경개선사업 : 도시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정비·개량하기 위한 사업
 - ▶ 재개발사업 :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 ▶ 재건축사업 :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 정비기반시설 : 도로·상하수도·공원·공용주차장·공동구, 그 밖에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열·가스 등의 공급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녹지
- 하천
- 공공공지
- 광장
- 소방용수시설
- 비상대피시설
- 가스공급시설
- 지역난방시설
-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하여 지정·고시된 정비구역에 설치하는 공동이용시설로서 사업시행계획서에 해당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관리하는 것으로 포함된 시설

- 공동이용시설 :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놀이터·마을회관·공동작업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판장·세탁장·화장실 및 수도
- 탁아소·어린이집·경로당 등 노유자시설
- 그 밖에 상술한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로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시설

○ 정비구역의 지정(제8조)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하여 정비계획을 결정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음

○ 정비계획의 내용(제9조)

- 정비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 정비사업의 명칭
 - ▶ 정비구역 및 그 면적
 - ▶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 ▶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 ▶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
 - ▶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 ▶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 ▶ 세입자 주거대책
 - ▶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 등

○ 정비사업의 시행방법(제23조)

-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다음의 방법 또는 이를 혼용하는 방법으로 함
 - ▶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토지등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보전·정비하거나 개량하는 방법

- ▶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용하여 주택을 건설한 후 토지등소유자에게 우선 공급하거나 대지를 토지등소유자 또는 토지등소유자 외의 자에게 공급하는 방법
- ▶ 사업시행자가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
- ▶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에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및 부대시설·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

- 재개발사업은 정비구역에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하여 공급하거나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으로 함

- 재건축사업은 정비구역에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부대시설·복리시설 및 오피스텔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으로 함. 다만, 주택단지에 있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지형여건·주변의 환경으로 보아 사업 시행상 불가피한 경우로서 정비구역으로 보는 사업에 한정함

○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제24조)

-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시장·군수등이 직접 시행하되, 토지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공람공고일 현재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함

- 제2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시장·군수등이 직접 시행하거나 다음의 정한 자에게 시행하게 할 수 있음

- ▶ 시장·군수등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사업시행자

로 지정하는 경우

· 토지주택공사등

·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공공기관이 총지분의 50/100을 초과하는 출자로 설립한 법인

▶ 시장·군수등이 상술한 자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공동시행자로 지정하는 경우

· 건설업자

·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 시장·군수등은 천재지변, 그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건축물이 붕괴할 우려가 있어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 및 세입자의 동의 없이 자신이 직접 시행하거나 토지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음. 이 경우 시장·군수등은 지체 없이 토지등소유자에게 긴급한 정비사업의 시행 사유·방법 및 시기 등을 통보하여야 함

제3절 과소화 및 주거환경 관련 주요 사업

- 농어촌지역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은 과거에서 부터 현재까지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는 바, 이를 권역단위, 마을단위로 구분하여 주요 사업을 살펴보고자 함

1. 권역단위 사업

가. 정주권개발사업

1) 사업개요

- 정주권개발사업은 농어촌지역의 기초생활환경, 문화·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확충하여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1990년부터 시작되었음. 정주권개발사업은 우리나라 면 지역의 대표적인 공간정책 사업으로 면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한 사업으로 정주권개발계획이라는 완결성이 높은 계획을 수립하여 면단위 정주권개발계획에 의거하여 사업이 추진되었음
- 정주권개발사업은 1986년부터 도농간의 격차 해소를 위해 실시된 시·군단위의 농어촌지역종합개발계획이 제도미비와 투자재원의 확보 어려움 등으로 실행되지 못함에 따라 1990년부터 면단위로 개발범역을 축소하여 농어촌정주생활권개발 사업으로 추진하게 됨
- 정주권개발사업의 법적 근거는 1990년에 제정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임. 그리고 UR협상에 따른 농산물 개방과 그로 인한 농촌의 활력저하를 방지하고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 1992년부터 도입된 42조 투자계획과 1993년부터 조성된 「농어촌특별세」 등의 재원이 마련됨에 따라 사업추진이 본격화되었음
- 정주권개발사업은 정주권개발계획이 수립된 정주권면을 대상으로

농촌정주기반 여건조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초생활환경 등 편의 시설을 정비하는 사업 위주로 추진되는 사업임. 주요 사업내용으로 마을기반정비, 농촌도로정비, 농촌경관개선, 문화복지시설, 환경보전시설, 주택정비 등의 물리적 사업 위주로 구성되어 있었음. 2000년대 이후에는 사회문화적 환경변화에 따라 농촌경관개선 관련 사업과 환경보전시설 관련 사업 등이 추가되어 사업내용이 점차 다양해 짐

- 정주권개발사업은 개발계획 수립면을 선정된 후 지역주민들의 개발수요와 의견수렴과정 및 시·군 농정심의회 심의를 거쳐 면단위 정주생활권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연차별로 사업을 추진하였음

2) 추진주체 및 정책대상

- 정주권개발사업은 농식품부 소관사업으로 면소재지를 포함한 정주권면 지역 전체를 대상지역으로 하는 종합개발사업으로 사업의 추진주체는 시장·군수임
- 정주권개발사업은 사업대상지와 대상사업의 선정과 관련하여 개략적인 가이드라인이 있을 뿐 구체적인 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시·군의 사업대상지와 대상사업의 선정에 대해 시·도나 농식품부에서 사전 검토나 사후 평가 절차가 명확하게 마련되어 있지 않았음. 그 결과 시·군은 정주권개발사업을 실시함에 있어서 사업대상지와 사업내용 선정에 상당한 자율권을 갖고 사업을 추진하였음
- 정주권개발사업은 사업실시 초기에 우리나라 면 전체 1,257개면 중 오지개발사업 403개면과 도서개발사업 53개면 그리고 주민비거주 지역 10개면을 제외한 790개면을 대상으로 하였음. 사업이 진행되면서 당초 790개 정주권개발사업대상면 중에 읍으로 승격되거나 오지면으로 변경된 면을 제외하고 반대로 오지면에서 정주권개발대상면으로 새로 편입되는 등 정책대상이 되는 정주권면은 조금씩 변화가 지속되어 정책대상이 되는 면의 정확한 숫자는 확정이 어

려운 실정임. 여하튼 정주권개발사업은 전국의 면지역중 상위 70%에 해당되는 면지역을 정책대상으로 하여 면지역의 정주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추진되었음

3) 추진실적

- 정주권개발사업은 면지역을 역할과 기능에 따라 중심마을과 배후마을로 구분하여 사업을 시행하되 중심마을을 우선 개발하고 점차 면지역 전체로 확대되는 단계별 추진 전략 하에 시행되었음. 그리고 각 사업 대상면은 2단계로 사업이 추진되며, 각 단계별로 면당 30억원을 배정받아 가급적 3년에 사업이 종료되도록 하고, 최종적으로는 2013년에 모든 사업 대상면이 2단계 사업까지 완료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되었음
- 정주권개발사업의 추진실적은 1990년의 16개 시범면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한 이후 1991년 137개면, 1992년 136개면, 그리고 1993년 195개면 등 이후 정주권개발사업이 전면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하였음
- 정주권개발사업은 1990년부터 2004년까지 전국의 770개 면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하여 농촌지역의 각종 생활환경시설 개선에 이바지하여 왔음. 2004년말 기준 약 3조원이 투자되었는데, 국비와 지방비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 2조 4,427억원(국비 1조 8,731억원, 지방비 4,762억원)으로 전체 투자액의 82%를 차지할 정도로 보조금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음. 융자사업은 농어촌 주택 신·증축에 지원되며 2004년말까지 약 5,231억원이 투입되었음
- 2004년 말을 기준으로 거의 모든 사업 대상면에서 개발계획 수립 및 1단계 보조사업이 추진되었고, 1단계 사업이 완료된 면은 743개면으로 전체 대상면의 약 93%에 달함. 한편, 2004년말 기준으로 2단계 정주권개발사업이 착수되었던 대상면은 196개면으로 전체 대상면의 약 25%에 해당함

나.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1) 사업개요

- 1990년대 이후 도·농간의 생활환경격차 해소차원에서 생활환경정비 위주의 정주권개발사업과 문화마을조성사업 등이 추진되어 도로, 상·하수도, 주거단지 조성·재정비 등 기초생활환경 정비와 주민편익 증진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그러나 하향식의 SOC 위주의 사업추진에 머물러 주민들의 전반적인 삶의 질과 소득의 향상이나 어메니티와 농촌다움(rurality)의 유지·보전에는 다소 미흡하였음
- 한편, 소득증가와 여가확대, 교통망 확충 등의 사회적 여건 변화로 농촌지역이 전원주거·휴양·관광 등의 기능을 갖춘 복합생활공간으로서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으며, 다른 측면에서는 참여정부 출범이후 지방화·분권화가 강조되며 지자체와 주민의 지역개발에 대한 역량강화와 지역개발에 대한 지자체와 주민의 참여가 강조되고 있었음
- 이러한 정책 환경의 변화에 따라 상향식의 추진방식을 도입하고 마을보다 광역적인 권역단위로 사업을 추진하며 지역역량강화 등 소프트웨어 사업을 강화한 5년간의 종합적인 농촌지역개발 사업으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 2004년부터 도입되었음
-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농촌마을의 경관개선, 생활환경정비 및 주민 소득기반확충 등을 통해 살고 싶고, 찾고 싶은 농촌정주공간을 조성하여 농촌에 희망과 활력을 고취함으로써 농촌사회 유지 도모함을 목적으로 추진되었음
- 사업의 추진방향은 “동일한 생활권·영농권 등으로 동질성을 가지며, 발전 잠재력이 있는 마을들을 상호 연계하여 소권역 단위로 개발, 지역주민과 지자체, 관련전문가 등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상향식으로 추진, 권역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개발, 농촌다움을 유지·보전하는 친환경적인 개발,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전문

가·주민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역할분담, 권역의 잠재자원을 소득과 연계하여 성장과 지속가능한 발전 도모, 평가체계를 도입하여 인센티브와 페널티제도 도입” 등을 추진하였음

-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 기존의 마을단위 사업들과 차별화되는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첫째, 지역주민과 지자체, 관련전문가 등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상향식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는 점 임. 주민들이 권역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공모를 통해 1차 심사를 거친 후 농식품부 차원에서 전국적인 예비타당성 조사·평가과정을 거쳐 최종심의를 통해 대상지를 선정¹³⁾하고 기본 계획을 수립함
 - 둘째, 기존의 소규모 마을단위에서 보다 광역화된 권역단위의 개발을 추진하고 있음.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동일한 생활권·영농권 등으로 동질성을 가진 마을들을 상호 연계하여 마을보다 광역화된 3-5개 마을을 하나의 소권역 단위로 규모의 경제효과를 고려한 종합개발을 추진하고 있음. 사업권역은 2007년에 3~5개 마을로 구성되는 소규모 권역에서 1개 법정리 이상으로 구성되는 소규모 권역으로 변화되어 권역의 범위설정에 융통성이 확대되었음
 - 셋째, 사업에 대한 중간평가제도와 단계별(1단계 : 1~3년차, 2단계 : 4~5년차) 사업추진 체계의 도입 임. 사업시행 1단계가 완료되는 중간과정에서 사업평가를 통해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통해 사업의 계속여부를 결정하는 단계별 사업추진 체계를 도입하여 사업의 책임성을 강화하였음¹⁴⁾

13) 2004년 사업초기에는 지역주민과 시장·군수가 수립한 예비계획에 대한 시·도 지역개발심의회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가 신청한 예정지를 대상으로 학계, 연구계, 농업관련단체 등 지역개발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중앙지역개발심의위원회에서 권역범위 설정의 적정여부, 지역자원현황 및 활용가능여부, 지역주민·지자체의 사업추진역량, 예비계획의 적정성 및 파급효과 등을 평가항목으로 조사·검토·평가하여 사업대상권역을 선정하였음.

14) 2008년에 권역별 사업 추진실적 점검과 중간평가를 실시하는 중간평가제도가 도입되

- 넷째, 소프트웨어를 강화한 종합적 개발을 추진하고 있음. 사업내용은 지역실정에 따라 기초생활시설, 문화·복지시설, 소득기반시설, 농촌관광시설, 경관시설 등 매우 다양하며 소득확충과 다원적 기능을 확충하고 농촌다움을 유지·보전하는 친환경적인 개발, 주민의 지역역량강화와 컨설팅, 마케팅 등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여 권역의 잠재자원을 소득과 연계하는 내발적 발전전략을 통해 권역의 종합적 개발을 추진하였음
- 사업지원 조건은 2004년 사업초기 권역당 3년간 70억원을 지원¹⁵⁾ 하는 것으로 하였으나, 2005년 사업기간이 권역당 3~5년간으로 변경되었으며, 2007년에는 권역설정의 융통성이 확대됨에 따라 권역의 규모를 감안하여 사업비 지원한도를 40~70억원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음¹⁶⁾
-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지역실정에 따라 기초생활시설, 문화·복지시설, 소득기반시설, 농촌관광시설, 경관시설 등과 소득확충, 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확충하는 소권역별 특성화시설의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구체적인 사업 메뉴는 시설과 지역역량강화로 세분되었음
- 농어촌지역의 정주공간 조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업내용은 인구유치시설로 주거단지 조성, 주택용지 조성, 향목과 기초생활시설의 주택관련 정비항목이 포함되어 있어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통해 필요에 따라 주택 건축 및 마을조성이 연계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음

였으며, 2단계 사업시행은 1단계 사업시행 종합평가 결과에 따라 시행여부가 결정됨.

15) 사업초기 년차별로 1년차에 20억, 2년차에 30억, 3년차에 20억의 사업비 배정이 계획되었음.

16) 권역의 규모산정에 있어 기준사업비는 55억원이며, 5개 마을(행정리), 350가구를 기준으로 하고 있음. 마을 수 또는 가구 수 규모에 따라 대, 중, 소로 구분하고 권역사업비를 기준사업비로부터 직선보간법으로 가감하여 산정하여 지원하도록 보완되었음.

(표 4-1)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메뉴(시설)

구 분	주 시설	세 부 내 용
기초생활시설	도 로	연결도로, 마을안길, 자전거길, 버스승강장, 주차장, 교량 등
	상하수도	상수도, 하수도 등
	주 택	주택신축, 주택개량, 빈집정비 등
	기 타	정보화시설, 전기·통신시설 등
문화·복지시설	문 화	다목적회관, 야외 소공연장, 마을박물관, 고인돌보존, 시골장터정비, 향토문화재(효열각, 효자문, 열녀문, 고택 등)·마을유래비 등
	복 지	건강관리시설, 어린이놀이터, 보육시설, 마을(복지)회관 등
소득기반시설	소득기반	농산물 공동가공·건조시설, 공동 집하장, 공동창고, 선별시설, 공동판매장, 공동 육묘장, 공동퇴비사, 정미소현대화, 톱밥발효시설, 움 저장고 등
농촌관광시설	관 광	야생화단지, 마을조형물, 권역 안내도, 장승, 방앗간복원, 빨래터조성, 정자·원두막, 간이천문대, 야영장, 관광안내소, 농촌체험시설, 생태학습장, 폐교활용 등
경관시설	경 관	마을 숲 조성, 지붕·담장 정비, 빈집정비, 경관수목 식재, 마을보호수 정비, 경관형성계획수립, 사립문 정비, 경관저해시설 정비, 경관주택정비, 고택정비 등
환경시설	환 경	오·폐수 처리시설, 쓰레기 처리시설, 생태공원, 야생화군락지 복원, 어류서식지 정비, 생태하천 정비, 대체에너지 시설 등
운동·휴양시설	운 동	운동시설(게이트볼장, 테니스장 등), 소규모 눈썰매장 등 레포츠시설
	휴 양	잔디광장, 산책로, 정자·원두막, 삼림욕장, 심신단련장 등
재해대비시설	생산기반	농로, 용·배수로, 관정시설, 옹벽, 취입보 정비 등
	재 해	소하천정비, 소방시설, 기타 안전시설 등
인구유치시설	주거단지	도시민·은퇴도시민 등을 유치하기 위한 기존마을 재개발·재정비, 전원주거단지 조성 등
	주택용지	도시민·은퇴도시민 등을 유치하기 위한 빈집, 유휴 토지 등을 활용계획 등

자료 : 농림부(2007).

2) 추진주체 및 정책대상

-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추진주체인 사업시행자는 시장·군수이지만 상향식 사업으로 인해 사업 추진 권역의 추진위원회가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며, 관련 행정기관과 전문가 등이 사업을 지원하는 체계로 되어 있음
-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대상지역은 동일한 생활권·영농권 등으로 동질성을 가지며, 발전 잠재력이 있는 마을들을 상호 연계하여 소규모 권역단위 개발을 추진하고 있음. 3~5개 마을을 하나의 (소) 권역으로 설정하여 마을별 특성(지리적, 생태적, 역사적, 문화적 잠재자원)을 고려하면서 농촌의 다원적 기능 확충을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마을보다 광역화된 소권역 단위의 종합개발을 추진하였음
-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2004년부터 10년간 농촌지역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할 1,000개의 소권역을 우선 지원 대상으로 설정하였음
- 사업대상지 선정은 권역 추진위원회에서 작성한 예비계획서를 바탕으로 시·군, 시·도 단위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비타당성 조사·평가를 통하여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음

3) 추진실적

- 마을종합개발사업은 2004년부터 2010년까지 10개 시도에서 301개 권역이 선정되어 추진되고 있으며 사업도입 초기에는 2013년까지 1,000개 권역을 조성하는 것으로 목표로 하였으나 재정투자 등의 문제로 사업기간을 연장하여 2004년~2013년까지 496개 권역을 조성하고 2014년~2017년까지 504권역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음
- 2010년 까지 일반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으로 선정된 권역은 277개이며, 거점면소재지 마을종합개발사업¹⁷⁾으로 선정된 권역은 24개로

17) 거점면소재지 마을종합개발사업은 면지역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면소재지의 서비스 기능이 위축됨으로서 배후 농촌마을의 쇠락을 방지하고, 도시 및 소도읍 지역과 농어촌마을을 연계할 수 있는 중간 거점공간으로서의 면소재지의 기능을 강화하여 국

서 총 301개 권역이 선정되어 추진되었음

- 시·도별 현황을 보면 전남이 51개 권역으로 제일 많으며 경북 48개 권역, 전북 38개 권역, 강원 36개 권역 순 임. 연도별 선정 현황은 20개 권역만이 선정된 2006년을 제외하고 매년 36~45개 권역이 선정되었음

(표 4-2)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연도별 추진실적

구 분	계	인천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77 (24)	2	17 (1)	36 (2)	19 (2)	31 (2)	38 (3)	51 (5)	48 (5)	28 (3)	7 (1)
'04	36	-	4	4	2	5	4	5	6	5	1
'05	40	-	4	3	4	3	4	8	7	6	1
'06	20	1	-	3	2	2	3	4	3	2	-
'07	36 (4)	-	1 (1)	6	3 (1)	3	4	8 (1)	6	4 (1)	1
'08	36 (4)	-	4	5 (1)	1	2 (1)	6 (1)	6	7 (1)	5	-
'09	45	1	1	7	2	6	6	8	9	3	2
'10	64 (16)	-	3	8 (1)	5 (1)	10 (1)	11 (2)	12 (4)	10 (4)	3 (2)	2 (1)

주 : ()내서 - 거점면소재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2012).

-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통한 신규 마을조성 등 정주공간 조성과 관련된 사업이 확대되었으며, 2007년부터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대상지 선정과정에서 도시민 유입 가능성을 평가항목에 도입함으로써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서 전원마을, 행복마을 등 정주공간 조성과 관련된 타 사업들과 연계하여 사업이 추진되는 경우가 증대되었음

토의 균형발전 및 서비스 기능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2. 마을단위 사업

가. 농어촌주거환경 개선사업

1) 사업개요

- 농어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은 1967년부터 시작된 농어촌지붕개량사업을 기반으로 1976년부터 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 농어촌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확대하여 농어촌주택 개량사업과 불량화장실 개량사업, 취락구조개선사업을 포괄하는 사업으로 추진되었음. 이후 입식부엌, 목욕탕 개량, 간이오수처리시설 등의 신규 단위사업들을 포함해 사업내용이 확대되기도 하고 단위사업이 폐지되거나 통합되면서 그 시기의 적정 수요에 부합되도록 사업내용이 지속적으로 변화되면서 추진되었음
 - 농어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낙후된 농어촌지역의 정주기반 조성을 위하여 당초 지붕개량에서 시작하여 노후·불량주택의 개량 및 부엌·화장실 개량, 마을 정비 등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가·확대시킴으로서 종합적인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발전하였음
 - 1995년부터는 간이오수처리시설, 마을기반정비, 주택신축 등 기존 단위 사업들을 연계하는 패키지 사업방식을 도입하여 마을단위의 종합개발을 추진하는 패키지 마을조성사업이 나타나고 이를 통해 마을단위 소규모 신규택지 조성과 마을기반정비 및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을 추진하게 됨
- 농어촌주거환경 개선사업 중 정주공간 조성과 관련된 사업은 취락구조개선사업으로 새마을운동이 한창이던 1976년부터 시행되어 우리나라 농촌의 주택·마을 정비사업의 주축을 이루었던 사업 임. 취락구조개선사업은 주택을 비롯한 생활시설 기반의 입지를 계획적으로 결정하고 과밀지구, 불량주택을 재배치하거나 이축함으로써 적정

생활공간의 확보와 농경지의 이용률을 높이는 동시에 가옥의 재배치를 통해 작업, 집회, 위락공간의 확보를 용이하게 한 사업 임

- 취락구조개선사업의 목표는 농촌주민의 정주의욕 고취, 자연과 도시적 편리함이 조화되는 환경개선, 변화된 영농방식과 생활양식에 걸맞는 주택구조개선, 깨끗하고 편리하게 정비된 기반시설을 완비하는 것임. 이를 위해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여 숙원사업을 우선으로 추진하되 시·군당 1개 자연마을을 시범마을로 선정하여 지자체 직영사업으로 추진토록 하였음
- 취락구조개선사업의 사업대상이 되는 자연마을의 조건은 영농 및 주민생활이 불편하고 생활기반시설이 취약한 마을, 수해·산사태 등 각종 재해 위험지역에 위치한 마을, 기타 필요에 의해 시장·군수가 취락구조개선을 결정한 마을 등으로 이들 조건을 만족하는 지역이 우선적으로 선정되었음
- 취락구조개선사업은 3가지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되었는데, 1977년에는 신촌형, 개선 및 합촌형, 정돈형의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되었고, 1978년에는 A형, B형, C형으로 재구분되었는데 이전의 3가지 유형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각각 신촌형, 개선 및 합촌형, 정돈형의 개념으로 포괄할 수 있는 유형구분¹⁸⁾으로 마을의 여건과 실정에 맞도록 선택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였음
- 신촌형은 과밀불량주택과 농경지내에 산재한 독립불량가옥을 개발함에 있어 기존마을 주변의 구릉지 등을 활용하여 신규마을을 조성하고 주택을 이전·신축하여 새로운 마을을 건설하는 방식으로 고속도로의 관통으로 마을과 농토가 절단되거나 수해 상습지역으로 전체 마을을 구릉지 등으로 이전하여 토지이용을 효율화하면서 새로운 마을을 조성하는 방식 임
- 개선 및 합촌형은 불량주택개량사업과 병행하여 기존마을의 취락

18) 이러한 농촌마을 조성방식의 유형구분은 이후 문화마을 조성사업의 유형구분에도 유사한 형태로 지속되어 농촌지역의 마을정비방식의 일반적인 유형구분으로 되었음.

구조를 정비하는 방식으로 현재의 마을위치에서 도로정비나 공공 시설을 배치하면서 일부 노후 불량주택의 개량과 함께 인근의 분산된 가옥을 합촌하여 정비하는 방식 임

- 정돈형은 기존 마을의 골격을 유지하면서 미관을 해치는 주택을 현지에서 이축하거나 개축하고 접도구역 내의 불량주택을 철거하도록 하는 개선방식으로 비교적 마을기반시설이 잘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마을구조의 개선이 별로 필요치 않은 마을에서 5-6동 가량의 소규모로 불량주택을 이축하고 개축하는 방식 임. C형인 정돈형의 경우 1976년과 1977년만 나타나고 이후에는 나타나지 않았음. 이는 개선 및 합촌형과 유사한 방식이기 때문에 개선 및 합촌형으로 포함되어 추진된 것으로 판단 됨
- 취락구조개선사업의 사업방식은 정책에서 제시하는 사업메뉴 중 주민이 선택하여 마을을 정비하는 주민현지개량방식을 채택하였음
- 취락구조개선사업은 1995년 까지는 근거 법령이 없이 내무부의 행정지침에 의해 사업이 시행되다가 1995년 12월에 농어촌주택개량 촉진법이 제정되어 근거법이 마련되어 법제화를 통해 제도적으로 사업추진을 뒷받침하였음
- 1995년부터는 법제화와 함께 패키지마을 조성방식이 도입되어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마을기반시설 정비사업, 농어촌빈집정비사업’ 등의 개별 단위사업을 패키지화하고 타 사업과의 연계를 추진하는 방식으로 시행되었음
- 패키지마을 조성은 지자체 마다 편차가 있었으며 경기도를 중심으로 문화마을과 유사한 형태의 신규마을 조성이 이루어졌으나, 이외의 지역에서는 주로 소규모의 주택신축·정비 위주로 추진되었음
- 이 시기 이후 농어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주택개량(주거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내 개축 또는 신축) 및 부엌·화장실의 개량을 기본으로 하여 마을내 도로정비, 마을단위에서 필요한 녹지공간의 마을정비, 마을하수도의 정비 등 마을의 여건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였음. 즉 주택개량을 기본으로 해서 주로 마을하수도과 마을내 도로 정비 등을 추가적으로 추진하며 신규택지 정주환경을 조성하는

-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되었음
- 농어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정책대상은 읍·면 지역 중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과 광역시 및 시에 소재하는 동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정주체계상 기초 자연마을 단위를 대상으로 하였음. 사업대상지 선정은 기존 자연마을을 대상으로 영농 및 주민생활에 불편하며, 생활기반시설이 취약한 마을, 수해, 산사태 등 각종 재해위험지역에 위치한 마을, 기타 필요에 의해 시장·군수가 취락구조개선을 결정한 마을을 선정토록 하였음
 - 1976년부터 2006년까지 행정안전부에 의해 추진되었던 농어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은 그 동안 부처 간 사업의 유사중복에 대한 문제제기가 많았고, 사업추진체계 정비를 일원화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2006년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주택과 마을정비 관련 사업은 농식품부로 사업이 이관되고 마을하수도 관련 사업은 환경부로 사업을 이관하였음. 이에 따라 근거법이었던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도 주관부서가 행정안전부에서 농림수산식품부로 변경되어 기존의 이원화되었던 농식품부와 행정안전부의 주택 개량 및 마을정비 관련 정책이 농식품부로 일원화되어 추진됨
 - 취락구조개선사업은 '90년대 중반까지는 마을 당 기반정비 사업비로 1억원이 보조¹⁹⁾되고, 간이오폐수처리사업비로 1억원이 연계되어 보조되고 주택개량사업이 연계되어 지원되었음. 이후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연계되면서 패키지 마을조성 등을 통해 사업비가 연계되면서 사업비가 확대되었고 지방비도 별도로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지자체도 나타나 전반적인 사업비는 마을당 14억원 수준까지 확대되었고 주택개량에 대한 자금융자금액도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음

19) 당시 재원은 지방비와 교부세인데 교부세 50%, 지방비(군비) 50%로 총 1억원의 기반 시설 사업비가 지원되었으며, 지역실정과 마을규모, 사업내용에 따라 신축적으로 운영되었음.

2) 추진주체 및 정책대상

- 농어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은 행정안전부에 의해 주도되었으며, 각 지자체는 행정안전부의 농어촌주거환경 개선사업 계획에 따라 지방비를 확보하고 주택신축·개량 등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음. 지자체는 사업비의 30%를 지방비로 부담하는 매칭펀드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되었음
- 농어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은 1995년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행정안전부의 행정지침에 의해 각 읍·면단위에서 주택개량과 마을정비에 대한 수요를 조사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에서 취합하여 농어촌 주거환경개선계획에 의해 사업이 추진되었음
- 행정안전부의 마을관련 사업 중 ‘취락구조개선사업’과 ‘폐키지마을’을 포괄하는 ‘농어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농어촌지역의 20세대 이상의 자연마을을 정책대상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주택개량 동수가 10동 이상인 마을을 선정하여 사업대상으로 분류된 전국 32,529개 마을에 지역실정에 적합한 마을하수도 시설을 설치하고, 마을의 진입로 및 안길 확·포장, 공동주차장 등 생활편의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계획으로 추진되었음

3) 추진실적

- 농어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의 농어촌마을정비 추진실적²⁰⁾은 1976년부터 시행된 취락구조개선사업부터 농식품부로 사업이 이관되기 전인 2006년까지 30여년의 기간 동안 총 6,346개의 자연마을을 정비하여 농어촌 정주공간 조성과 관련된 사업 중 물량적인 측면에서 가장 많은 추진실적을 나타내고 있음
- 농어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통한 주택개량은 520천동을 목표(농어촌주택 2,629천동의 19.8% 수준)로 하였으며, '06년까지 390,722동에 4조 3,380억원을 용자 지원하였음(목표의 74.2%). 또한 빈집정비

20) 1976년 취락구조개선사업부터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이며, 당초 A, B, C형의 세종류의 마을정비유형으로 시행되었는데, A형은 신촌형이고, B형은 개선 및 합촌형, C형은 정돈형 임. 그러나, C형은 '76년에 3개 마을, '77년에 88개 마을로 총 91개 마을이 정비된 후 그 이후에는 나타나지 않아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낮으므로 B형에 포함하여 정리하였음.

정책목표도 78,808동 중 '06년까지 252억원 사업비를 투입 65,813동
철거하여 농촌지역의 전반적인 정주환경개선에 기여하였음

(표 4-3) 농어촌주거환경 개선사업 농어촌 마을정비 연도별 추진실적
(단위 : 마을, 백만원)

구분 년도	사 업 량			사 업 비		
	계	A형	B형	계	지 원	주민부담
계	6,346	1,602	3,064	1,258,577 (100%)	1,038,670 (82%)	219,907 (18%)
1976	10	3	7	444	242	202
1977	247	69	178	16,992	8,895	8,097
1978	822	84	738	28,851	16,643	12,208
1979	1,023	264	759	48,281	17,073	31,208
1980	645	155	490	29,865	9,675	20,190
1981	200	85	115	5,793	3,607	2,186
1982	100	36	64	8,866	3,923	4,943
1983	101	38	63	8,166	3,750	4,416
1984	102	32	70	8,411	4,002	4,409
1985	104	39	65	8,902	3,580	5,322
1986	81	31	50	9,222	4,504	4,718
1987	61	36	25	7,787	2,934	4,853
1988	38	13	25	8,462	1,748	6,714
1989	22	15	7	7,674	1,123	6,551
1990	51	23	28	18,564	2,279	16,285
1991	98	41	57	36,113	10,296	25,817
1992	99	66	33	36,433	8,116	28,317
1993	107	63	44	42,361	8,890	33,471
1994	119	103	16	10,300	10,300	
1995	240	209	31	45,000	45,000	
1996	194	164	30	41,300	41,300	
1997	202	33	169	59,000	59,000	
1998	200	-	-	46,900	46,900	
1999	139	-	-	37,555	37,555	
2000	170	-	-	53,239	53,239	
2001	270	-	-	85,807	85,807	
2002	220	-	-	74,954	74,954	
2003	194	-	-	106,400	106,400	
2004	185	-	-	109,400	109,400	
2005	205	-	-	185,800	185,800	
2006	97	-	-	157,442	157,442	

나. 문화마을 조성사업

1) 사업개요

- 농어촌지역의 정주공간 조성과 관련된 정책은 1970년대 농촌근대화 물결과 함께 오늘날까지 꾸준히 변모하고 있음. 1980년대를 거치면서 농업생산기반 등 구조개선사업에 주력하여 농업생산성은 크게 향상되었으나 농어촌의 생활환경 개선에 대한 투자는 상대적으로 미흡하였음. 그 결과 농어촌의 생활환경은 도시에 비해 크게 낙후되어 젊은 후계인력의 농어촌 정착을 가로막는 원인 중의 하나로 인식되기 시작하였음. 따라서 농어촌이 쾌적한 삶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농업생산기반 조성과 함께 생활환경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현대식 농어촌마을을 조성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음. 이러한 시대적 배경을 바탕으로 새마을운동 이후 농어촌 정주공간 조성정책에 있어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한 사업이 문화마을 조성사업 임
- 문화마을 조성사업은 정주권면의 기초생활권의 중심이 되는 거점(중심)마을에 신규마을을 조성하여 주변의 배후마을 주민들의 이주를 유도하고 분산된 마을의 집단화를 통해 정주체계를 재편하고자 하는 목적을 내포하고 있었으며, 현대적 생활환경을 조성함과 동시에 농어촌의 생산성 향상과 농어촌 소득증대 사업을 연계 추진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과 소득이 연계된 미래지향적인 농어촌마을을 조성하고자 하였음
- 또한 농촌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환경보존형 마을을 조성하고자 신규마을을 조성하면서 면단위 광역하수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근시일내에 설치될 계획이 없는 마을의 경우에는 마을조성사업과 동시에 마을단위 하수도 사업을 병행해서 사업을 추진하였음
- 문화마을 조성사업은 사업초기에는 분산된 가옥을 집단화시키고

농어촌의 중심마을을 대상으로 하여 정주체계를 확립한다는 뜻에서 사업명칭을 『집단마을』로 사용하였음. 그러나 마을명칭에 대한 지역주민의 부정적인 여론에 따라 사업명칭을 『문화마을』로 변경하여 사업이 추진되었음²¹⁾

- 문화마을 조성사업은 1990년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이 제정·공포됨으로써 사업의 법적 토대가 처음 마련되어 면단위 정주생활권개발사업²²⁾의 일환으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만 명시되어 있었고, 농식품부의 행정지침에 의해 사업이 추진되어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았음. 그러나 1994년 12월 『농어촌정비법』이 제정됨에 따라 법적토대를 갖추게 되어 1995년부터 농어촌정비법에 의해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추진됨
- 문화마을 조성사업은 신규조성형, 기존마을 정비형, 혼합형의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는데, 사업초기에는 신규조성을 통한 마을개발이 일반적이었으나, 1998년 부터는 그동안 신규조성형에 대한 비판이 누적되어 정책방향이 신규조성형 위주에서 기존마을 정비형 위주로 변화하게 되고 기존 마을을 정비하면서 필요시 신규택지를 기존마을정비와 연계해서 일부 조성하는 방식으로 변화되어 추진됨
- 문화마을조성사업의 사업비는 3년 내외에 50억원 수준으로 지원(보조 20억원, 용자 30억원) 되었으며, 마을조성에 소요되는 기반시설비, 기존마을 정비비, 사업관리비 및 잡지출은 정부 보조(지방양여금 70%, 지방비 30%)로 지원²³⁾되었고 사업지구내 용지매수 및 보상비와 주택신축 용자금은 농특회계로 용자 지원되었음. 용지매수 및 보상에 소요되는 용자금은 2년 거치 2년 상환 년리 3% 조건으

21)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집단마을 조성사업이 농어촌정비법의 제정(1994.12.12)에 따라 이법에 근거한 농어촌생활환경 정비사업으로 편입되고,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의 공포(1995.6.23)와 함께 문화마을조성사업으로 명칭이 바뀌게 됨.

22) 1990년부터 정주생활권개발사업으로 시작되었으나 정주권개발사업, 정주기반확충사업으로 사업명칭이 변경되어 추진됨.

23) 사업비 부담도 당초 매칭펀드에 의해 국비와 지방비가 70 : 30의 비율이었으나 지자체의 지방비 부담이 과다하는 의견이 제기되어 80 : 20 정도로 완화되었음.

로 지원되었으며 주택건축 용자금은 5년 거치 15년 상환, 년리 5%로 호당 2천만원까지 용자 지원되었고 오폐수처리시설 사업비는 지구별 4억 내외로 전액 국고로 별도 지원되었음. 전체 소요사업비 중 보조지원액을 초과하는 사업비는 해당 시·군의 일반정주권 사업비²⁴⁾로 지원이 가능하였음

2) 추진주체 및 정책대상

- 문화마을 조성사업의 사업시행주체는 시장·군수 임. 사업시행주체인 시·군에서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일괄 위탁 시행하는 경우가 많았음
 - 한국농어촌공사가 위탁시행한 문화마을이 151개로 전체의 77%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시·군에서 직접 시행한 문화마을은 46개로 전체의 23% 수준으로 문화마을조성사업의 대부분을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일괄 위탁받아 시행한 경우가 일반적 임
- 문화마을 조성사업은 정주권면을 대상으로 면당 1곳의 문화마을을 조성하는 것을 정책목표로 추진하였으나 이후 광역시 지역의 군지역을 준농어촌지역으로 설정하여 광역시 군지역에도 문화마을이 조성될 수 있도록 대상지역이 확대되었음. 2000년대 들어서는 시·군내 모든 정주권면에 문화마을이 1개소씩 조성 완료된 시·군의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문화마을을 조성할 수 있도록 사업대상지역의 범위와 규모를 또 다시 확대하여 문화마을 조성사업에 대한 시·군의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 요건이 완화되었음
- 문화마을 조성사업은 정책대상 측면에서 농어민과 도시민 등 비농어민들의 혼주공간 조성을 목표로 하였으나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도시민에 대한 지원이라는 외부적인 비판이 제기되어 지역 농어민에게 분양 우선권을 주는 방향으로 변화되었음. 문화마을 조

24) 정주생활권개발사업은 일반정주권개발사업과 문화마을조성사업으로 나누어 추진되었음.

성사업의 입주대상은 단독주택의 분양 우선순위로 확인할 수 있는데 1순위는 본 사업에 가옥을 제공한 이주대상자, 2순위는 본 사업에 토지를 양도한 자, 3순위는 분양공고일 현재 1년 이상 해당 리(里)에 거주한 자, 4순위는 분양공고일 현재 1년 이상 해당 면(面)에 거주한 자, 5순위는 분양공고일 현재 1년 이상 해당 시·군에 거주한 자, 6순위는 기타지역 거주자로 설정하고 있음. 문화마을 택지와 용지의 분양가격은 용지의 용도와 분양 우선순위에 따라 조성원가, 감정가격 등으로 차등 적용하였음

- 문화마을 조성사업의 공간적 정책대상은 정주권면의 정주체계 상에서 중심마을을 주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음. 기초생활권의 중심이 되는 거점마을을 근간으로 자연마을 주택의 집단화를 통해 취락구조를 재정비하여 정주체계를 재편하고자 하는 정책의도에 따라 새롭게 조성, 공급되는 신규택지의 입지를 중심마을 이상으로 설정한 것임.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문화마을 조성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인식부족, 용지매수의 어려움, 분양문제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 당초 정책목표가 퇴색하는 변화를 맞게 됨. 즉 사업추진과정에서 중심마을이 아닌 입지에도 문화마을이 조성되는 경우가 나타남. 또한 면지역에 신규마을 조성에 대한 비판 여론이 대두되면서 '90년대 후반이후 기존마을 정비형이 주를 이루게 됨에 따라 문화마을 조성사업의 당초 정책취지도 퇴색되게 되었으며 이는 정주공간 재편이라는 당초의 목표보다는 기존마을의 생활환경개선 위주로 변화하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하였음

3) 추진실적

- 문화마을 조성사업은 당초 1개 지구당 2~3만평의 규모에 100~300호 규모의 현대식 주택, 상·하수도, 오폐수처리시설 및 생활편익시설을 설치하여 농어민뿐만 아니라 도시민도 함께 살 수 있는 전원도시로 개발하여 중소도시 수준의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추

진되었음. 또한 주거공간의 조성과 함께 2·3차 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통해 농어촌 생활환경정비와 생산·소득기반을 연계한 소득원개발사업과 연계추진을 추구하였으나 대부분의 경우 연계되지 못하고 시간이 흐를수록 생활환경 정비에 치중하는 경향이 나타나게 됨

(표 4-4) 문화마을 조성사업 지역별, 연도별 추진실적

지정 연도	계	경기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총계	197	16	19	25	28	30	26	27	21	5
1991	2		1		1					
1992	13	2		2	2	2	2	2	2	
1994	17		3	5	2	3	1	1	1	1
1995	19	2	4	2	3	4	2	1	1	
1996	21	1	2	4	2	4	3	1	3	1
1997	21	2	3	2	2	3	3	4	2	
1998	11	1		1	2	3	1	1	1	1
1999	10	1		1	1	1	1	2		
2000	23	1	2	3	3	2	4	4	4	
2001	17	1	1	2	2	2	2	3	4	
2002	18	2	2	1	3	2	2	3	2	1
2003	18	2			3	2	5	4	1	1
2004	7	1	1	1	2	1		1		

- 문화마을 조성사업은 당초 2004년까지 전국의 700여개의 정주권면에 1개소씩 문화마을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였으나 사업목표의 30%미만인 197개를 조성하는 것으로 마무리되고, 2004년부터 전원마을 조성사업으로 사업명칭과 사업목표 및 사업내용이 대폭 변화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음
- 문화마을 조성사업은 1991년 시범사업지구로 공주계룡 문화마을과 횡성우천 문화마을 2지구를 선정·추진한 이래, 1992년 13지구,

1994년 17지구, 1995년 19지구, 1996년 21지구, 1997년 21지구, 1998년 11지구, 1999년 10지구, 2000년 23지구, 2001년 17지구, 2002년 18지구, 2003년 18지구, 2004년 7지구가 선정되어 총 197개의 문화마을이 조성되었음

- 지역별로는 전북이 30개로 가장 많고, 충남 28개, 경북 27개, 전남이 26개를 차지하고 있음

- 문화마을의 정비유형은 신규마을 조성형과 기존마을을 재정비하는 기존마을 정비형 그리고 두 가지의 유형이 혼재된 혼합형의 3가지²⁵⁾로 세분되기도 하고, 크게는 신규마을 조성형과 기존마을 정비형의 2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

- 문화마을은 신규마을 조성형이 155개(전체의 78.7%)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1990년대 후반이후 신규조성형에 대한 비판이 증가되어 이후 집중적으로 추진된 기존마을 정비형도 42개(21.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문화마을 조성사업에 대한 선행연구결과에 의하면, 문화마을에 입주한 사람들의 입주전 거주지에 대한 항목은 동일 면지역내에서 이주한 사람이 전체의 6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동일 군지역내에서 이주한 사람은 13.2%, 기타 지역에서 이주해온 사람도 23.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문화마을에 입주한 사람들의 직업분포를 살펴보면 농민이 전체의 51.1%로 가장 많았고, 회사원 14.3%, 상업 13.4%, 기타 24.1% 등으로 나타났음

25) 신규마을 조성형과 혼합형의 명확한 구분이 현실적으로 어려움.

다. 전원마을 조성사업

1) 사업개요

-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2005년부터 시행된 사업으로 사업초기에는 맞춤형 전원주거단지, 체재형 주말농원, 은퇴농장의 세 가지 유형으로 추진되었는데 맞춤형 전원주거단지가 신규 정주공간 조성사업 임
-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농촌의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지역사회 유지가 어려운 현실에서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를 대비해서 도시민의 농촌이주 수요와 농촌의 도시인구 유입수요를 연결하여 농촌지역의 적정 인구유지와 지역활성화를 추진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도시민의 농어촌 주거공간 조성을 위한 신규 사업으로 추진되었음
- 전원마을 조성사업의 목적은 농어촌 지역에 쾌적하고 다양한 형태의 주거공간을 조성하여 도시민의 농어촌유입을 촉진함으로써 농어촌지역의 인구유지 및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임. 농어촌에서 쾌적하고 건강한 전원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환경을 정비하고 수요자의 취향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주거·체류공간을 확충하여 농촌지역에 인구유입을 유도함으로서 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취미영농과 전원주거가 결합된 형태로 농촌지역에 건전한 여가·휴양 및 주거 공간을 마련하여 도시은퇴자와 은퇴농업인 등이 영농활동을 통해 건강을 유지하면서 노후를 보내도록 유도함으로서 심화되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농어촌지역에서의 전원주거공간의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음
- 전원마을 조성사업의 정책목표는 시·군당 1~2개소의 전원마을을 조성하는 것임. 맞춤형 전원주거단지, 체재형 주말농장, 은퇴농장을 연간 30개소 정도로 하여 2013년까지 300개소를 조성함으로서 도시민 8,400세대의 유치를 목표로 하였음
- 전원마을 조성사업의 추진방향은 지역특성을 살린 전원마을을 조성하여 여유롭고 쾌적한 삶의 공간을 제공하고 마을과 숲이 조화

를 이루고 전통문화가 깃든 품격 있는 농촌마을을 조성하여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단지배치 및 농촌주택 건축 등을 유도²⁶⁾하여 이주한 도시민의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농어촌지역의 활성화와 지역 주민간 공동체 형성을 강화하여 마을의 지속적인 유지·발전을 도모하는 것임

- 전원마을 조성사업에 대한 사업비 지원은 전원마을조성 세부설계, 환경영향 평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경관형성계획수립비 등 계획수립비와 진입도로, 마을내 도로, 상·하수도, 오폐수처리시설, 전기·통신시설, 공동이용시설(공동주차장, 사면·공원, 녹지 등), 인근마을에 대한 기반시설 정비 등의 마을기반시설 사업비, 마을공동체 형성을 위한 마을회관 설치 및 마을운영·관리 프로그램 개발, 노인·장애자를 위한 시설 설치 등 공공성이 있는 사업비 등 크게 세 가지로 구분 됨
- 사업비 지원한도는 마을규모에 따라 30억원 범위 내에서 정액지원하고 있는데, 마을규모에 따라 20~29호는 10억원 이내, 30~49호는 15억원 이내, 50~74호는 20억원 이내, 75~99호는 25억원 이내, 100호 이상은 30억원 이내로 10~30억원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되고 있음. 사업비는 국비 70%, 지방비 30%이며 주택건축비는 용자 지원되고 있음
-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사업시행에 따라 공공기관 주도형, 입주자 주도형, 지방이전기업형의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나 지방이전 기업형은 2008년에 지정된 해남 무고 전원마을 1개에 불과해 크게는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음
 - 공공기관주도형은 시·군(한국농어촌공사)에서 용지확보, 입주자 모집, 마을기반시설을 추진하고, 입주자는 단지 내 부지정리, 조경, 입주민 공동편의시설 및 주택건축 등을 추진하는 사업추진 방식임.

26) 2007년 신규지구부터 기본계획에 마을기반설치 및 단지조성계획, 주택건축계획 등이 포함되도록 하였음.

- 필요에 따라서는 시·군(한국농어촌공사)에서 일괄 시행도 가능함
- 입주자 주도형은 민간에서 용지 확보 및 입주자 모집, 단지 내 부지 정리, 조경, 주민공동편의시설 및 주택건축 등을 추진하고, 시·군에서는 마을기반시설 추진을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임.²⁷⁾ 시·군에서는 기본계획 수립 및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마을정비구역 지정 등 행정지원을 하게 됨
 - 입주자 주도형 전원마을 조성은 입주자의 사업주체로서의 지위에 관한 규정이 없어 신뢰성 부족으로 입주자 모집 및 자금관리, 분쟁 발생시 사업 참여자에 대한 법적보호에 어려움이 있어 마을정비조합 제도를 도입하여 사업의 신뢰도를 높이고, 주민 주도에 의한 상향식 개발을 추진하도록 법적 뒷받침을 하고 있음
 - 마을정비조합은 설립인가 당시의 사업계획서상의 주택건설예정 세대수의 2/3이상을 조합원으로 구성하되, 조합원은 20명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음. 조합원의 자격은 정비구역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가지고 있는 세대주 임

2) 추진주체 및 정책대상

- 전원마을 조성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시장·군수·구청장 임.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생활환경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한국농어촌공사, 마을정비조합, 공동출자법인²⁸⁾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로 지정이 가능함.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농어촌공사, 토지주택공사,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음
-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농촌주민은 물론 도시민, 도시은퇴자 등의 농

27) 민간업자 또는 원토지소유자가 직접 개발하여 일반에 분양하는 형태의 맞춤형전원주거 단지조성은 보조지원에서 제외되며 이 경우 한계농지정비사업 등으로 추진될 수 있음.

28) 시장·군수·구청장, 한국농어촌공사, 마을정비조합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주택건설사업자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촌정주를 유도하기 위하여 친환경 마을정비 및 수요자의 요구에 맞춘 전원마을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존의 지역주민에게 도움을 주고 입주민과 지역주민 간 새로운 커뮤니티가 형성될 수 있는 마을, 농림업 관련 소득시설로 일자리를 창출하며 입주자가 지역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마을, 소도읍 및 중소 거점도시와 연계하여 의료, 문화,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마을, 관련부처 및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지역개발사업 간에 상호 연계를 강화하여 시너지효과를 높일 수 있는 마을을 조성하기 위해 시·군 및 한국농어촌공사 등 공공부문에서 전원마을 조성사업에 적극적인 참여를 하고 있음

- 전원마을 조성사업의 지원 대상지역은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면지역과 읍지역 중 성장촉진지역²⁹⁾으로 지정된 70개 시·군의 읍지역을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음. 전원마을은 사업후보지 선정에 있어 시장·군수가 사업제안서 및 기본계획을 검토하여 시·군에서 심의를 거쳐 사업후보지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2011년 신규 선정지구부터는 사업신청 시·군에 기존의 문화마을 조성사업, 전원마을 조성사업 추진지구가 있는 경우 주택건축 비율이 계획가구수의 60% 미만이거나 마을기반시설 사업추진이 부진한 곳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을 지양하도록 하고 있음
- 전원마을 조성사업을 통해 보조금을 투자하여 설치된 공공·공용시설에 대한 운영 및 유지관리는 시장·군수가 담당함을 원칙으로 하며, 주민 공동이용시설에 대하여는 민간(입주예정자)과 시·군 간에 협의하여 민간(입주예정자)이 관리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또한 민간(입주예정자)이 투자하여 설치된 공공·공용시설에 대한

29)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강원 태백, 삼척, 횡성, 영월, 평창, 정선, 양양, 충북 보은, 영동, 괴산, 단양, 옥천 충남 서천, 금산, 부여, 청양, 예산, 전북 남원, 김제,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정읍, 전남 나주, 담양, 곡성, 구례, 고흥, 보성, 화순, 장흥, 강진, 해남, 함평, 무안, 장성 완도, 진도, 신안, 영광, 경북 상주, 문경, 군위, 의성, 청송, 영양, 영덕, 청도, 고령, 성주, 예천, 봉화, 울진, 울릉, 영천, 영주, 경남 의령, 창령, 고성, 남해, 하동, 산청, 함양, 거창, 함천, 밀양 임(09년 6월 고시).

운영 및 유지관리는 민간(입주예정자)이 담당함을 원칙으로 하며, 공공성이 큰 시설에 대하여는 시·군과 협의하여 시·군에 기부채납 등을 통하여 시·군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3) 추진실적

- 전원마을 조성사업의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2004년부터 2010년 까지 총 139개 마을이 선정되었으나, 사업추진과정에서 16개 마을이 지정 취소되고 123지구에서 사업이 추진되었음
- 사업이 취소된 지구는 용지매수의 어려움, 군부대 인근 등 개발제한요인, 해당 지자체의 타 용도 전환, 입주자 모집의 어려움 등에 기인함
- 123개 전원마을 사업지구 중 '10년 신규로 선정된 17개 지구를 제외하고 '09년 11월 기준 사업이 추진 중인 63개 시·군의 106개 마을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계획수립중인 지구가 58지구, 기반공사 중인 지구가 23지구, 기반공사가 완료된 지구가 7지구 임. 주택이 건축 중인 지구가 13지구이고 주택건축이 완료된 지구가 5개 지구 임. 주택건축과 입주가 완료된 마을은 제천 애련(30가구), 서천 등고(34가구), 홍성 지정(20가구), 진안 학선(31가구), 남해 용소(21가구)의 5개 마을에서 136가구가 입주 완료된 상태 임
- 계획수립 및 기반공사 중인 81개 지구 중 20개 지구가 부진한 상태이며 주택건축 중이거나 완료된 18개 지구의 주택 건축비율은 전체의 36.9%(177/480가구)로 보고되고 있음³⁰⁾
- 지금까지 추진되고 있는 전원마을을 유형화시켜보면 입주자 주도형이 75개 마을로 가장 많고 공공기관 주도형이 47개 마을, 지방이전 기업형이 1개 마을 임

30) 한국농어촌공사(2010).

(표 4-5) 전원마을 조성사업 지역별, 연도별 추진실적

구분	'04	'05	'06	'07	'08	'09	'10
123지구	2지구	24지구	22지구	11지구	33지구	14지구	17지구
강원(20)		4	4	3	5	5	1
충북(11)		2	1	2	3	1	2
충남(10)			5	2	1	1	1
전북(15)		4	3	2	4	2	
전남(40)	1	5	4	1	12	7	11
경북(7)		1		1	3		2
경남(18)	1	6	5	1	5		
제주(2)		2					

라. 새뜰마을사업(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1) 사업개요

- 본 사업은 생활여건이 좋지 못한 마을을 대상으로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2015년도에 시작되었으나, 현재 신규 사업은 종료되고 기존정된 곳에 대한 사업이 진행 중에 있음
- 주요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안전마을 조성 : 산사태 위험지역 축대 정비, 급경사 및 위험계단 보수, 화재위험 예방, CCTV, 가로등 설치 등
 - 위생·생활기반시설 개선 : 상하수도, 공동화장실, 공동주차장, 재활용 쓰레기 수거장, 커뮤니티 공간조성 등
 - 노후 불량 주택 정비 : 슬레이트 지붕 개량, 저소득가구 노후주택 수리 등
 - 지역 일자리 창출, 복지 강화 : 돌봄 및 복지프로그램 운영, 생활 문화·체육활동, 마을가꾸기, 협동조합·사회적 기업 등 지역일자리 창출 지원

- 사업 추진 기간은 농어촌은 3년, 도시는 4년이며 사업비는 개소 당 국비지원 50억원(국비 70%, 지방비 30%) 이내에서 가구 수와 사업 내용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토록 하였음
 - 생활·위생 인프라, 안전관련 사업은 국비 80%까지 지원

2) 추진주체 및 정책대상

- 지역발전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관계부처와 지자체 사업을 연계·시행 하며, 기업 및 민간과 협력을 통해 사업을 추진토록 하였음
 - 취약계층의 주거문제 해소를 위해 환경부 슬레이트 철거 사업 등 연계추진
 - 지자체의 자체사업 연계 시행
 - 대학, 기업, NGO 등의 재능기부, 자원봉사 등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 사업효과 증대
- 본 사업의 대상지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비율이 높고, 슬레이트 주택 등 주거환경이 열악하며 안전 및 생활 인프라가 전반적으로 취약한 지역 임
 - 농어촌 : 30가구 이상 지역으로 노후주택 또는 슬레이트 주택 비율 50% 이상인 지역
 - 도시 : 노후주택 비율 70%, 하수도 및 도시가스 미설치 비율 30% 이상인 지역

3) 추진실적

- '15년부터 '17년 까지 202개소 선정(농어촌 134개소, 도시 68개소), 추진 중
 - '15년 85개소(농어촌 55개소, 도시 30개소)
 - '16년 66개소(농어촌 44개소, 도시 22개소)
 - '16년 51개소(농어촌 35개소, 도시 16개소)

제4절 일본의 과소화 정책 및 사업

1. 과소화 대응 정책 경위

가. 과소문제의 발생

- 일본은 1950년대 중반 이후 고도경제성장으로 인해 농산어촌 인구가 대도시로 유출되어 1960년 전후부터 농산어촌지역에 급격한 인구감소를 초래하였음
- 1967년 경제사회발전계획에서 「1960년대 중반이후 생활수준, 교육수준의 향상과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따라 인구의 도시집중이 한층 더 진행되는 한편, 농산어촌에서는 인구유출이 진행되고 지역에 따라서는 지역사회의 기초적 생활조건의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는 즉, 과소현상이 문제가 될 것이다」고 일본정부의 공식문서에서 「과소」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사용됨³¹⁾
- 1967년 경제심의회지역부회보고에 「도시로의 인구이동은 인구감소 지역에도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며, 인구감소 지역의 문제를 ‘과밀문제’의 반대의미로 ‘과소문제’로 부르고 ‘과소’를 인구감소로 인해 일정 생활수준을 유지하기 곤란한 상태, 예를 들면 방재, 교육, 보건 등 지역사회 기초적 조건 유지가 곤란하거나 자원의 합리적 이용이 곤란하여 지역의 생산기능이 현저하게 저하되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인구감소 결과 인구밀도가 낮아지고 연령구성의 노령화가 진행되어 종래의 생활패턴의 유지가 곤란해지고 있다」³²⁾고 과소문제를 언급하고 있음
- 이러한 과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970년 과소지역대책긴급조치법이 제정되고 이후 1980년에는 과소지역진흥특별조치법, 1990년에

31) 총무성(2018), 2016년도관 과소대책의 현황.

32) 총무성(2018), 과소대책의 경위·연혁.

는 과소지역활성화특별조치법, 2000년에는 과소지역자립촉진특별조치법이 제정되었음

나. 과소지역대책긴급조치법(1970년)

- 과소문제가 지역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면서 도도부현(都道府縣)³³⁾을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는 과소대책의 조기 확립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활동을 하면서 1970년 의원입법으로 10년간 한시법인 과소지역대책긴급조치법(이하 긴급조치법)이 제정되었음
- 긴급조치법의 목적(법 제1조)은 최근 현저한 인구 감소로 지역사회의 기반이 변동하여 생활수준 및 생산기능의 유지가 곤란한 지역에 대하여 긴급히 생활환경, 산업기반 등의 정비에 관한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대책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특별조치를 하여 인구의 과도한 감소를 방지하고 지역사회의 기반을 강화하여 주민복지 향상과 지역격차의 시정에 기여하는 것임
- 긴급조치법이 제정되면서 과소지역 시정촌(市町村)³⁴⁾ 및 과소지역이 있는 도도부현은 과소지역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근거로 교통통신체계, 교육 및 문화 시설, 생활환경, 산업진흥, 취락의 정비 등 각종 과소대책사업이 실시되었으며, 이에 필요한 제정, 행정, 금융, 세제상의 특별조치를 하였음. 긴급조치법을 근거로 주로 교통통신체계 정비, 정보화 및 지역 간 교류촉진에 관한 사업이 진행되었음
- 긴급조치법에 의한 각종 과소대책 사업으로 과소지역의 공공시설정비수준이 향상되었으며, 지역주민 커뮤니티활동의 거점인 집회시설도 시정촌 단위, 취락단위에서 정비가 진행되었음.

33) 일본의 광역자치단체.

34) 일본의 지방자치단체.

(표 4-6) 과거 과소법에 의한 사업실적

(단위 : 억엔, %)

구분		산업의 진흥	교통통신체계 정비, 정보화 및 지역 간 교류 촉진	생활환경의 정비	고령자 등의 보건, 향상 및 복지 증진	의료의 확보	교육문화의 진흥	취락 등 정비	기타	합계
긴급조치법 (1970-1979)	시정촌	7,584 (17.3)	16,488 (37.7)	8,498 (19.4)		639 (1.5)	9,339 (21.4)	190 (0.4)	1,001 (2.3)	43,739 (100.0)
	도도부현	9,940 (28.2)	22,709 (64.4)	447 (1.3)		314 (0.9)	131 (0.4)	0 (0.0)	1,738 (4.9)	35,279 (100.0)
	합계	17,524 (22.2)	39,197 (49.6)	8,945 (11.3)		953 (1.2)	9,470 (12.0)	190 (0.2)	2,739 (3.5)	79,018 (100.0)
진흥법 (1980-1989)	시정촌	22,061 (23.5)	35,319 (37.5)	17,173 (18.3)		1,430 (1.5)	16,263 (17.3)	402 (0.4)	1,422 (1.5)	94,069 (100.0)
	도도부현	26,196 (32.9)	50,623 (63.6)	810 (1.0)		1,027 (1.3)	822 (1.0)	10 (0.0)	112 (0.1)	79,600 (100.0)
	합계	48,257 (27.8)	85,942 (49.5)	17,983 (10.4)		2,457 (1.4)	17,085 (9.8)	412 (0.2)	1,534 (0.9)	173,669 (100.0)
활성화법 (1990-1999)	시정촌	48,341 (25.4)	47,332 (24.8)	53,063 (27.9)	10,437 (5.5)	3,769 (2.0)	22,579 (11.9)	744 (0.4)	4,227 (2.2)	190,491 (100.0)
	도도부현	58,262 (33.7)	95,341 (55.2)	10,994 (6.4)	871 (0.5)	2,442 (1.4)	2,286 (1.3)	442 (0.3)	2,157 (1.2)	172,795 (100.0)
	합계	106,604 (29.3)	142,673 (39.3)	64,057 (17.6)	11,308 (3.1)	6,211 (1.7)	24,864 (6.8)	1,186 (0.3)	6,384 (1.8)	363,286 (100.0)
실적 합계 (1970-1999)	시정촌	77,986 (23.8)	99,139 (30.2)	78,734 (24.0)	10,437 (3.2)	5,838 (1.8)	48,181 (14.7)	1,336 (0.4)	6,650 (2.0)	328,299 (100.0)
	도도부현	94,398 (32.8)	168,673 (58.6)	12,251 (4.3)	871 (0.3)	3,783 (1.3)	3,239 (1.1)	452 (0.2)	4,007 (1.4)	287,674 (100.0)
	합계	172,384 (28.0)	267,812 (43.5)	90,985 (14.8)	11,308 (1.8)	9,621 (1.6)	51,419 (8.3)	1,787 (0.3)	10,657 (1.7)	615,973 (100.0)

주 : 1. 총무성 조사.

2. ()는 구성 비율

3. 과소계획은 종합적인 계획으로 과소지역에 관련된 시책이 폭넓게 포함되어 있음. 또한 하드웨어사업과 소프트웨어사업 모두가 포함되어 있음

자료 : 총무성(2018), 2016년도판 과소대책의 현황.

다. 과소지역진흥특별조치법(1980년)

- 1970년대 중반부터 인구감소율은 둔화 경향을 보였으나 과거 인구 유출에 의한 지역사회 기능은 계속 저하되었으며 각종 공공시설의 정비는 타 지역과 비교하여 낮은 수준이고 젊은 층의 인구유출은 지역의 고령화를 초래하였음. 이에 대응하기 위해 1980년 의원입법으로 10년 한시법인 과소지역진흥특별조치법(이하 진흥법)이 제정되었음
- 진흥법의 목적(법 제1조)은 인구의 현저한 감소로 지역사회 기능이 저하되고 생활수준 및 생산기능이 다른 지역에 비해 저하된 지역에 대해 생활환경, 산업기반 등의 정비에 관한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대책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지역의 진흥을 도모하고 주민복지 향상, 고용증대 및 지역격차의 시정에 기여하는 것임
- 진흥법이 제정되면서 재정, 행정, 금융, 세제상의 특별조치는 기본적으로 진흥법에 계승되었으나 진흥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노인복지의 증진, 소규모학교의 교육 충실,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확보에 관한 규정 등이 신설되었음
- 진흥법에 의한 과소대책 사업이 다방면에서 추진되었으나 주로 도로를 중심으로 하는 교통통신체계의 정비가 이루어짐

라. 과소지역활성화특별조치법(1990년)

- 20년 동안 과소대책은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으나 많은 과소지역의 인구가 감소하고 고령화가 진행되어 지역사회의 활력이 저하됨. 또한 공공시설의 정비도 타 지역과 비교하여 낮은 수준이고 빈약한 재정기반 등 새로운 과소문제가 발생함. 이를 배경으로 1990년 의원입법으로 10년 한시법인 과소지역활성화특별조치법(이하 활성화

법)이 제정되었음

- 활성화법의 목적(법 제1조)은 인구의 현저한 감소로 지역사회의 활력이 저하되고 생산기능 및 생활환경의 정비 등이 타 지역과 비교하여 낮은 지역에 대해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대책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 주민복지의 향상, 고용의 증대 및 지역격차의 시정에 기여하는 것임
- 과소대책 사업에 의해 과소지역의 기반정비가 이루어지고 전국과의 격차가 축소되었으며 과소지역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의 편리성이 크게 향상됨과 동시에 도시와의 교류촉진에도 기여하였음³⁵⁾
- 활성화법에 의한 사업은 교통통신체계정비 등이 39.3%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긴급조치법, 진흥법에 의한 사업보다 비중이 감소한 반면 산업의 진흥, 생활환경의 정비 등의 비중이 증가하였음

2. 과소지역자립촉진특별조치법

가. 과소지역자립촉진특별조치법의 제정

- 1970년 이후 2000년까지 4차에 걸친 과소입법을 근거로 30년간 과소대책을 시행한 결과, 주민의 생활기반인 공공시설 등의 정비는 상당부분 추진되었으나 주민생활의 기본적인 부분은 아직 커다란 격차가 남아 있음³⁶⁾. 인구감소도 사회감소에서 자연감소로 변화하고 지역경제도 과거 기간산업이었던 농림수산업이 정체한 데 이어 경제 환경의 악화로 제조업 등 기업의 입지도 곤란한 상황임
- 한편 다양하고 아름다운 풍경 있는 나라 만들기에 기여, 국민이 새로운 생활양식을 실현할 수 있는 장으로서의 역할, 장수고령화 사

35) 총무성(2018), 2016년도관 과소대책의 현황.

36) 총무성(2018), 2016년도관 과소대책의 현황.

회의 선구자 역할 등 21세기 과소지역의 새로운 가치, 역할 등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음. 과소지역의 생활기반 정비를 도모하는 시점에서 과소지역과 도시의 교류를 통해 상호보완관계에 있는 새로운 생활공간을 확보하여 자립적인 지역사회를 구축하고 아름다운 풍경 있는 국토 형성에 기여하기 위해 2000년 의원입법으로 10년 한시법인 과소지역자립촉진특별조치법(이하 자립촉진법)이 제정됨

- 2010년 자립촉진법의 실효기한을 맞이하여 과소대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자립촉진법을 확충·연장하는 법률안이 제출되어 2010년 실효기한을 6년간 연장하는 법률개정이 이루어짐
- 2016년 3월 31일을 기한으로 하는 자립촉진법이 시행되었으나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이 발생하여 피해 시정촌이 사업을 전개하기 곤란한 상황임을 감안하여 2012년 자립촉진법의 기한을 2021년 3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는 법률개정이 이루어짐
- 또한 2010년 국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과소지역의 요건 추가 및 과소대책사업채의 대상시설을 추가하는 내용인 자립촉진법 개정이 시행되었음. 이후 2015년 국세조사 결과를 근거로 현행법의 재검토를 실시하여 과소지역의 요건 추가, 과소대책사업채의 대상 시설 확충, 감가상각의 특례 및 지방세의 과세 면제에 따른 조치의 확충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자립촉진법 개정이 이루어져 현재에 이르고 있음

나. 과소지역자립촉진특별조치법의 개요

1) 자립촉진법의 목적

- 현저한 인구감소에 의해 지역사회의 활력이 저하되고 생산기능 및 생활환경 정비 등이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낮은 수준인 지역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대책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특별조치를 강구함으로써 지역의 자립촉진을 도모하고 주민복지의 향상, 고용의 증대, 지역격차의 시정 및 아름답고 풍경 있는 국토형성에 기

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법 제1조)

- 활성화법에서는 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하다」로 되어 있으며 자립 촉진법에서는 「자립촉진을 도모하다」 외에 「아름다운 풍격 있는 국토형성에 기여하다」로 되어 있음. 이것은 지금까지의 과소대책 성과와 과소지역의 현황을 고려하면 새로운 과소대책으로서 변화하고 있는 시대조류 속에서 최소한의 수준(national minimum)인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생활을 확보한다는 지금까지의 생각에다가 전국적인 시야에서 과소지역의 새로운 가치·의의를 인정하여 풍부한 자연환경이나 광활한 공간 속에서 다양한 거주·생활양식을 실현하는 장으로 정비하는 것임. 또한 교류를 통해 도시와 상호보완 관계에 있는 새로운 생활공간을 확보함과 동시에 아름다운 경관의 정비, 지역문화의 진흥이나 다양한 지역산업의 진흥 등으로 과소지역이 개성을 발휘하면서 자립할 수 있는 지역사회 구축을 목적으로 함³⁷⁾

2) 과소지역의 요건

- 과소지역이란 다음의 (가)(나)(다)(라) 중에서 인구요건과 재정력요건을 만족하는 시정촌 구역을 말함. 지방세 수입 이외의 정령에서 정하는 수입액이 정령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시정촌은 제외함 (법 제2조)

(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고 1996년도~1998년도의 3년간 평균 재정력지수가 0.42이하이며, 공영경기수익이 13억엔 이하(시행령 제1조). 단, ①②③에 해당하는 경우 1970년~1995년(25년간)의 인구증가가 10% 미만

① 1960년~1995년의 인구감소율이 30% 이상

② 1960년~1995년의 인구감소율이 25% 이상,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24% 이상

37) 총무성(2018), 2016년도판 과소대책의 현황.

- ③ 1960년~1995년의 인구감소율이 25% 이상, 15세 이상 35세 미만의 인구비율이 15% 이하
- ④ 1970년~1995년의 인구감소율이 19% 이상

(나)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고 2006년도~2008년도의 3년간 재정력지수가 0.56이하이며, 공영경기수익이 20억엔 이하(시행령 제1조). 단, ①②③에 해당하는 경우 1980년~2005년(25년간)의 인구증가가 10% 미만

- ① 1960년~2005년의 인구감소율이 33% 이상
- ② 1960년~2005년의 인구감소율이 28% 이상.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29% 이상
- ③ 1960년~2005년의 인구감소율이 28% 이상. 15세 이상 35세 미만의 인구비율이 14% 이하
- ④ 1980년~2005년의 인구감소율이 17% 이상

(다)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고 2010년도~2012년도의 3년간 재정력지수가 0.49이하이며, 공영경기수익이 40억엔 이하(시행령 제1조). 단, ①②③에 해당하는 경우 1985년~2010년(25년간)의 인구증가가 10% 미만

- ① 1965년~2010년의 인구감소율이 33% 이상
- ② 1965년~2010년의 인구감소율이 28% 이상.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32% 이상
- ③ 1965년~2010년의 인구감소율이 28% 이상. 15세 이상 35세 미만의 인구비율이 12% 이하
- ④ 1985년~2010년의 인구감소율이 19% 이상

(라)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고 2013년도~2015년도의 3년간 재정력지수가 0.5이하이며, 공영경기수익이 40억엔 이하(시행령 제1조). 단, ①②③에 해당하는 경우 1990년~2015년(25년간)의 인구증가가 10% 미만

- ① 1970년~2015년의 인구감소율이 32% 이상
- ② 1970년~2015년의 인구감소율이 27% 이상.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36% 이상
- ③ 1970년~2015년의 인구감소율이 27% 이상. 15세 이상 35세 미만의 인구비율이 11% 이하
- ④ 1990년~2015년의 인구감소율이 21% 이상

(마) 시정촌의 폐치분합이 있는 경우의 특례

- 과소지역 시정촌의 폐치분합 또는 경계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폐치분합 또는 경계변경에 의해 새롭게 설치되거나 경계가 변경된 시정촌의 구역으로 총무성령, 농림수산성령,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해진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는 과소지역으로 보고 법률의 규정을 적용함(법 제33조제1항)
- 합병 시정촌 중에서 합병 관련 시정촌에 과소지역 시정촌이 포함되는 경우는 해당 합병 시정촌 구역 중 해당 시정촌의 합병일 전날 과소지역이었던 구역을 과소지역으로 간주하여 이 법률의 규정을 적용함(법 제33조제2항)

3) 과소지역자립촉진계획

- 도도부현은 해당 도도부현 과소지역의 자립촉진을 위해 과소지역자립촉진방침(이하 자립촉진방침)을 정할 수 있음(법 제5조). 또한 도도부현은 자립촉진방침에 근거하여 과소지역 자립촉진을 위해 과소지역자립촉진도도부현계획(이하 도도부현계획)을 수립할 수 있음(법 제7조)
- 과소지역 시정촌은 자립촉진방침에 근거하여 해당 시정촌 의회 의결을 거쳐 과소지역자립촉진시정촌계획(이하 시정촌계획)을 수립할 수 있음(법 제6조). 시정촌계획에는 자립촉진의 기본방침, 산업의 진흥 및 관광개발, 교통통신체계의 정비, 지역의 정보화 및 지역간 교류 촉진, 생활환경의 정비, 고령자의 보건과 복지향상 및 증진, 의료의 확보, 교육의 진흥, 지역문화의 진흥, 취락의 정비 등의

사항 등을 정할 수 있음

- 자립촉진법에서는 자립촉진방침, 도도부현계획, 시정촌계획을 책정하는 것이 의무였으나 자립촉진법이 개정되면서 2010년 4월 1일부터 책정의 의무가 폐지되고, 시정촌이 도도부현에 대한 시정촌계획의 책정에 있어서 사전협의의 내용을 재검토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가 강구되고 있음. 단, 자립촉진법에 근거한 재정상의 특별조치 및 그 외 특별조치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계획의 책정이 필요함

4) 과소지역 자립촉진을 위한 재정상 특별조치

(가) 국가보조의 인상³⁸⁾

- 시정촌계획에 근거한 사업 중에서 교육시설, 아동복지시설, 소방시설에 필요한 경비에 대한 국가의 부담 또는 보조 비율이 인상되었음
 - 통합에 의한 초중학교 교사 등 : 1/2→5.5/10(공립학교시설정비 부담금)
 - 공립보육소 : 1/2→5.5/10
 - 공립 이외의 보육소 : 1/2→2/3(보육소등정비교부금)
 - 소방시설 : 1/3→5.5/10
 - 통합에 의한 교직원 주택의 건축 :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5.5/10 (학교시설환경개선교부금)

(나) 과소지역 자립촉진을 위한 지방채

- 과소지역 시정촌은 시정촌계획을 근거로 하여 지역산업 관련 사업 또는 관광, 레크리에이션에 관한 사업의 재원으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음(법 제12조)
- 대상사업으로는 크게 산업진흥시설, 후생시설, 교통통신시설, 교육문화시설, 자연에너지를 이용하기 위한 시설, 취약재편정비, 과소지역자립촉진특별사업(소프트대책사업)이 있음. 2010년 자립촉진법의 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 중심 사업이 과소채의 대상에 포함됨

38) 총무성(2018), 2016년도판 과소대책의 현황(개요판).

(표 4-7) 지방채 대상사업

<p>산업진흥시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산업, 관광, 레크리에이션 관련 사업을 하는 법인에 대한 출자 - 산업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시정촌 도로 및 시정촌이 관리하는 도도부현 도로, 농도, 임도·어항시설·항만시설 - 지역산업진흥 시설 - 중소기업의 육성 또는 기업 유치 혹은 기업축진을 위해 시정촌이 개인 또는 법인, 기타 단체가 사용하기 위한 공장 및 사업소 - 관광, 레크리에이션 시설 - 농림어업의 경영 근대화 시설 - 상점가진흥에 필요한 공동이용시설 	<p>후생시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수처리 시설 - 일반 폐기물처리 시설 - 화장장 - 소방시설 - 고령자 보건 또는 복지 향상 또는 증진 시설 - 장애인 또는 장애아의 복지 증진 시설 - 보육소, 아동관 - 인정유치원 - 시정촌 보건센터 및 모자건강 포괄지원센터 - 진료시설 - 간이수도시설
<p>교통통신시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정촌 도로 및 시정촌이 관리하는 도도부현 도로·교량 - 농림도로 - 전기통신시설 - 교통편을 제공하기 위한 자동차, 선박시설 - 주민 교통수단 확보 또는 지역 간 교류를 위한 철도시설 및 철도차량, 패도시설 및 패도차량 - 제설기계 	<p>교육문화시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립초등학교, 중학교 및 의무교육학교 또는 시정촌립 유치원, 고등학교, 중등교육학교 및 특별지원학교 - 공립초등학교, 중학교 혹은 의무교육학교 또는 시정촌립 중등교육학교의 전기 과정 또는 특별지원학교의 학교급식시설·설비 - 공립초등학교, 중학교 혹은 의무교육학교 또는 시정촌립 고등학교, 중등교육학교 혹은 특별지원학교의 교직원 주택 - 도서관 - 공민관, 기타 집회시설 - 지역문화 진흥 시설
<p>과소지역자립촉진특별사업(소프트대책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의료 확보, 주민의 일상적인 이동을 위한 교통수단 확보, 취락의 유지 및 활성화, 기타 주민이 향후 안전하게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지역사회 실현을 위해 특별히 지방채를 재원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기금적립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에너지를 이용하기 위한 시설 - 취락재편정비 	

자료 : 총무성, 과소지역자립촉진특별조치법의 개요(2000년-2010년).

5) 과소지역 자립촉진을 위한 기타 특별조치

- 기간도로의 정비 : 시정촌 기간도로 및 시정촌이 관리하는 기간농도, 임도 및 어항관련 도로의 신설, 개축에 대하여 도도부현계획에

- 근거하여 도도부현이 행할 수 있음(법 제14조)
- 공공하수도 간선 관거 정비 : 시정촌이 관리하는 공공하수도 중에서 간선 관거, 종말처리시설 및 펌프시설의 설치를 도도부현계획에 근거하여 도도부현이 행할 수 있음(법 제15조)
 - 의료의 확보, 고령자의 복지 증진, 교통의 확보, 정보 유통의 원활화 및 통신체계의 충실, 교육의 충실에 관한 배려, 지역문화의 진흥 등에 관한 배려 규정, 농지법 등에 의한 처분의 배려, 국유임야의 활용에 대해 적절히 배려해야 함(법 제16조-법 제25조).
 - 주식회사 일본정책 금융광고 또는 오키나와 진흥개발 금융광고는 과소지역의 농업(축산업 포함), 임업 혹은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법인에 대해 농림어업의 경영개선 또는 진흥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대부함(법 제26조)
 - 오키나와 진흥개발 금융광고는 취락정비를 위해 시정촌의 주민이 하는 주택건설 혹은 구입 또는 주택건설 혹은 구입에 따른 토지 혹은 차지권(借地權) 취득이 원활이 이루어지기 위해 필요한 자금의 대부에 적절히 배려해야 함(법 제28조)
 - 과소지역 이외의 지역에 있는 사업용 자산을 양도하고 과소지역 내에 있는 사업용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조세특별조치법에 의해 특정 사업용 자산교체의 경우 과세의 특례가 적용됨(법 제29조)
 - 지방자치단체는 과소지역 내 제조업, 농림수산물 등 판매업 혹은 여관업의 설비를 신설 혹은 증설하는 경우 신설 또는 증설이 과소지역 내의 고용증대에 기여한다고 인정될 때 신설 또는 증설에 따라 새롭게 취득, 제작 혹은 건설한 기계 및 장치, 건물 및 부속시설에 대해 감가상각을 할 수 있음(법 제30조)
 - 과소지역 내에서 사업용 자산을 취득한 제조업, 농림수산물 등 판매업, 여관업의 사업세, 부동산취득세, 고정자산세와 개인이 하는 축산업, 수산업의 사업세에 대해 조례를 근거로 과세 면제 또는 불균일과세를 한 경우 지방세 감수의 75%를 보통교부세로 보전 조치함(법 제31조)

(표 4-8) 과소지역자립촉진특별법과 과거의 과소 3법 개요

법률명	과소지역대책긴급조치법 (1970년 4월 24일 법률 제31호)	과소지역진흥특별조치법 (1980년 3월 31일 법률 제19호)	과소지역활성화특별조치법 (1990년 3월 31일 법률 제15호)	과소지역자립촉진특별조치법 (2000년 3월 31일 법률제15호)
기간	1970년도-1979년도	1980년도-1989년도	1990년도-1999년도	2000년도-2020년도 (법 제정 당초기한에서 11년간 연장)
시대적 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도경제성장으로 농산어촌지역의 급격한 인구감소 인구감소로 지역사회의 기초여건 유지가 곤란한 과소현상이 사회문제로 대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구감소율은 둔화경향을 보이거나 젊은 층의 인구 유출로 고령화 가속, 광산폐갱 등 취락기능저하, 취락문제 표면화 장기적이고 많은 인구유출에 의해 과소지역의 지역사회 기능저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구유출의 구조는 수몰이주로 인한 전 세대 유출에서 도시로의 젊은층의 유출로 변화 지역사회 리더 감소에 의한 활력 저하 지방 활성화 필요성 대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구감소 요인의 중심이 사회감소에서 자연감소로 변화 농림수산업의 극심한 정체 반면 산업의 다양화나 지역특성·자원을 활용한 창업 시작 경제사회의 글로벌화나 교통체계, 정보통신수단의 발달, 지역 간 경쟁 본격화, 가치관의 다양화, 지방분권 등 시대조류 변화
과소대책의 의의 및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활환경의 내셔널미니멈 확보 인구의 과도한 감소 방지 지역사회 붕괴와 시정촌 재정파탄 방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하위에 있는 사회기반 정비 과소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이 매력과 편안함을 느끼면서 지역진흥에 기여하기 위한 적극적인 진흥책이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사회·경제 전체의 약화에 대응 필요성 지방의 자주성·자율성을 존중하고 지방이 지혜를 내고 중앙이 지원하는 대책의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전·안심생활의 확보 다양하고 아름다운 풍격 있는 나라 만들기에 기여 국민이 새로운 생활양식을 실현할 수 있는 장으로서의 역할 장수고령사회의 선구자 역할
목적 (법제1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구의 과도한 감소 방지 지역사회 기반 강화 주민복지의 향상 지역격차의 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소지역의 진흥 주민복지의 향상 고용의 증대 지역격차의 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소지역의 활성화 주민복지의 향상 고용의 증대 지역격차의 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소지역의 자립촉진 주민복지의 향상 고용의 증대 지역격차의 시정 아름답고 풍격 있는 국토 형성
법의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소대책에 관한 종합적인 입법 과소지역에 대한 긴급조치가 목적 인구유출이라는 동태적 조건을 기초로 하여 대상지역을 다룸 법률이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되면 자동적으로 과소지역 시정촌 합병 등의 특정의 경우를 제외하고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간 중 과소단체지역은 변경되지 않음 과소대책의 주체는 시정촌이며 자주성을 존중 한시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소지역의 현상에 맞추어 ①고령자복지 증진을 위한 집회시설의 건설보조 ②산업진흥에 관한 새로운 시책 ③의료의 확보를 위한 시정촌 사업에 국가·도도부현의 배려 ④소규모 초등학교의 교육충실을 위한 국가·도도부현의 배려라는 점에서 지역의 확충강화를 강구. 긴급조치법에 의한 과소 시정촌에서 본 법에서 대상외가 된 시정촌(졸업시정촌)에 대해 도로의 대행정비 등에 관한 경과조치를 강구 과소대책의 주체는 시정촌이며 자주성을 존중 한시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소지역의 요건에 대해 고령자비율과 젊은 층 비율 채용 ①지역의 개성을 살리고 지역의 주체성과 창의성을 기반으로 한 지역 만들기 ②기초적인 하드정비에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종합적인 지역의 발전을 중시하면서 민간 활력의 활용도 강구가 목표 과소채의 대상사업범위 확충(지역산업을 선도하는 제3섹터에 출자, 고령자복지센터 정비) 도도부현 대행제도의 확충(과소지역과 그 외 지역을 연결하는 기간도로도 대상으로 하고 광역적 견지에서 배려) 그 외 특별조치에 대해 확충 모든 졸업 시정촌에 대해 도로의 대행정비 등에 관한 경과조치 강구 한시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창업의 촉진, 정보화 및 지역 간 교류의 촉진, 아름다운 경관 정비와 지역문화의 진흥 등을 도모하여 개성 있는 지역사회의 형성이 새로운 목표로 규정 과소채의 대상사업 범위 확충(개호노인보건시설의 정비 등) 세계상의 특별조치의 대상사업에 소프트사업 추가 과소지역시정촌을 포함한 합병의 경우 합병 후의 신 시정촌이 요건이나 성령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도 구 과소지역 시정촌 구역을 과소지역으로 보는 특별조치 적용 졸업 시정촌에 대해서 ①국고보조율의 인상 ②도도부현 대행정비사업 ③과소대책사업체에 대하여 경과조치 강구 한시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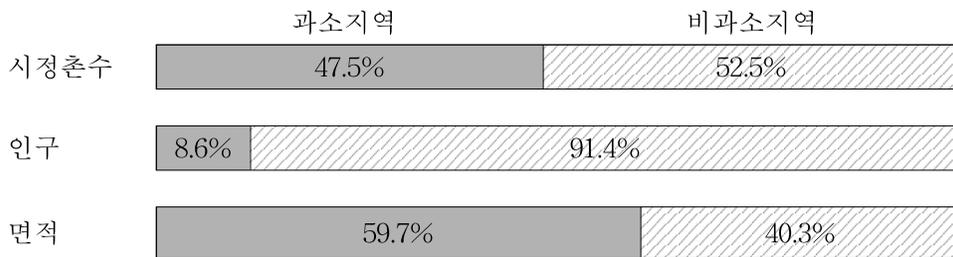
과소지역의 요건 (인구요건 재정력요건)	○ 인구요건 1960년~1965년(5년간) 인구감소율 10% 이상	○ 인구요건 1960년~1975년(15년간) 인구감소 율 20% 이상	○ 인구요건 ① 1960년~1985년(25년간) 인구감 소율 25% 이상 ② 인구감소율이 25%이상이고 1985년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16%이상 ③ 인구감소율이 20%이상이고 1985년 15세 이상 30세미만인 구의 비율이 16%이하	○ 인구요건(다음 중 하나에 해당)			
	○ 재정력요건 • 1966~1968 재정력지수의 평균 치가 0.4미만	○ 재정력요건 • 1976~1978 재정력지수의 평균 치가 0.37이하 • 공영경기수익이 10억엔 이하	○ 재정력요건 • 1986~1988 재정력지수의 평균 치가 0.44이하 • 공영경기수익 10억엔 이하	<2000.4.1.~> ① 1960년~1995년 인구감소율 30% 이상 ② 인구감소율이 25%이상이고 1995년 65세 이상 인구비율 이 24%이상 ③ 인구감소율이 25%이상이고 15세 이상 30세미만인구의 비율이 15%이하 ※①-③은 1970년부터 25년간 인구가 10%이상 증가한 지 자체는 제외 ④ 1990년~2015년 인구감소율 21%이상	<2010.4.1.~> ① 1960년~2005년 인구감소율 33% 이상 ② 인구감소율이 28%이상이고 2015년 65세 이상 인구비율 이 29%이상 ③ 인구감소율이 28%이상이고 15세 이상 30세미만인구의 비율이 14%이하 ※①-③은 1980년부터 25년간 인구가 10%이상 증가한 지 자체는 제외 ④ 1980년~2005년 인구감소율 17%이상	<2014.4.1.~> ① 1965년~2010년 인구감소율 33% 이상 ② 인구감소율이 28%이상이고 2015년 65세 이상 인구비율 이 32%이상 ③ 인구감소율이 28%이상이고 15세 이상 30세미만인구의 비율이 12%이하 ※①-③은 1985년부터 25년간 인구가 10%이상 증가한 지 자체는 제외 ④ 1985년~2010년 인구감소율 21%이상	<2017.4.1.~> ① 1970년~2015년 인구감소율 32% 이상 ② 인구감소율이 27%이상이고 2015년 65세 이상 인구비율 이 36%이상 ③ 인구감소율이 27%이상이고 15세 이상 30세미만인구의 비율이 11%이하 ※①-③은 1990년부터 25년간 인구가 10%이상 증가한 지 자체는 제외 ④ 1990년~2015년 인구감소율 21%이상
특별조치	• 국가보조 인상(2/3) ①교육시설 ②아동복지시설 ③소 방시설 ④공립 초중등학교에 근무 하는 교직원주택 • 과소대책사업체 • 기간도로의 도도부현 대행 • 의료의 확보: 도도부현은 무의 지구에 진료소 설치 • 교통의 확보(면허허가·인가)	• 국가보조 인상(2/3) ①교육시설 ②아동복지시설 ③소 방시설 ④공립 초중등학교에 근무 하는 교직원주택 • 과소대책사업체 • 기간도로의 도도부현 대행 • 의료의 확보 • 노인복지증진 • 교통의 확보(면허허가·인가)	• 국가보조 인상(5.5/10) ①교육시설 ②아동복지시설 ③소 방시설 ④공립 초중등학교에 근무 하는 교직원주택 • 과소대책사업체 • 기간도로의 도도부현 대행 • 하수도사업의 도도부현 대행 • 의료의 확보 • 고령자복지 증진 • 교통의 확보(면허허가·인가)	• 국가보조 인상(5.5/10)) ①교육시설 ②아동복지시설 ③소방시설 ④공립 초중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주택 • 과소대책사업체 • 기간도로의 도도부현 대행 • 하수도사업의 도도부현 대행 • 의료의 확보 • 고령자복지 증진 • 교통의 확보(면허허가·인가) • 통신체계의 충실 • 소규모학교의 교육 충실 • 지역문화의 진흥 • 농지법에 의한 처분 배려 • 국유임야의 활용 • 주택금융공고의 자금 대부 •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확보 • 농림어업금융공고의 자금 대부 • 세법상의 특별조치	• 과소대책사업체 • 기간도로의 도도부현 대행 • 하수도사업의 도도부현 대행 • 의료의 확보 • 고령자복지 증진 • 교통의 확보(면허허가·인가) • 통신체계의 충실 • 소규모학교의 교육 충실 • 지역문화의 진흥 • 농지법에 의한 처분 배려 • 국유임야의 활용 • 주택금융공고의 자금 대부 •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확보 • 농림어업금융공고의 자금 대부 • 세법상의 특별조치	• 과소대책사업체 • 기간도로의 도도부현 대행 • 하수도사업의 도도부현 대행 • 의료의 확보 • 고령자복지 증진 • 교통의 확보(면허허가·인가) • 통신체계의 충실 • 소규모학교의 교육 충실 • 지역문화의 진흥 • 농지법에 의한 처분 배려 • 국유임야의 활용 • 주택금융공고의 자금 대부 •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확보 • 농림어업금융공고의 자금 대부 • 세법상의 특별조치	
공시 시정촌 수 (과소시정촌/ 전시정촌)	당초(1970.5.1.) 776/6,280 최종 1,093/3,255	당초(1980.4.1.) 1,193/3,255 최종 1,157/3,245	당초(1990.4.1.) 1,143/3,245 최종 1,230/3,229	법 개정 당초(2000.4.1.) 1,171/3,229 추가(2012.4.1.) 1,210/3,218 법연장전(2010.3.31.)718/1,727	법 개정 당초(2010.4.1.) 776/1,727 2013.4.1.현재 775/1,719	법 개정 당초(2014.4.1.) 797/1,719	법 개정 당초(2017.4.1.) 817/1,719

자료 : 총무성, 과소대책의 경위·연혁 / 총무성, 지금까지의 과소대책법에 대하여, 재구성.

3. 과소지역의 현황

가. 과소관계시정촌수, 인구, 면적

- 2017년 4월 1일 현재, 과소관계시정촌은 817개 시정촌(시 279, 정 410, 촌 128)이며 전체의 47.5%를 차지함. 과소지역의 인구는 전체의 8.6%를 차지하고 있으나 면적은 국토의 약60%를 차지함
- 과소관계시정촌은 과소시정촌(과소지역자립촉진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이 647개, 과소지역으로 간주되는 시정촌(동법 제33조제1항)이 25개, 과소지역으로 간주되는 지역을 포함하는 시정촌(동법 제33조제2항)이 145개 임



자료 : 총무성(2018), 2016년도관 과소대책의 현황

<그림 4-1> 시정촌수, 인구, 면적

(표 4-9) 과소관계시정촌수, 인구, 면적

(단위 : 지자체, 명, km², %)

구분	시정촌	인구	면적
과소지역	817(47.5)	10,878,797(8.6)	225,468(59.7)
비과소지역	902(52.5)	116,215,948(91.4)	152,503(40.3)
전국	1,719(100.0)	127,094,745(100.0)	377,971(100.0)

1. 시정촌수는 2017년 4월 1일 현재, 과소지역 시정촌수는 과소관계시정촌수
2. 인구는 2015년 국세조사에 의함
3. 면적은 2015년 국세조사에 의함. 단 일부 과소지역의 면적은 2000년 국세조사에 의함
4. 동경도 특별구는 1지자체로 간주
5. ()는 구성 비율

자료 : 총무성(2018), 2016년도관 과소대책의 현황(개요판).

(표 4-10) 시정촌별 지자체수

(단위: 지자체, %)

구분	시	정	촌	계
과소지역	279(34.15)	410(50.18)	128(15.67)	817(100.0)
비과소지역	513(56.87)	334(37.03)	55(6.10)	902(100.0)
전국	792(46.07)	744(43.28)	183(10.65)	1,719(100.0)

1. 시정촌수는 2017년 4월 1일 현재, 과소지역 시정촌수는 과소관계 시정촌수.

2. 동경도는 1지자체로 간주

3. ()는 구성 비율

자료 : 총무성(2018), 2016년도판 과소대책의 현황.

(표 4-11) 시정촌 합병의 진척상황 및 과소지역수의 추이

	전시정촌수	과소지역수 (과소관계 시정촌) (a+b+c)	과소 시정촌 (a)	과소지역으로 간주되는 시정촌 (b)	과소지역으로 간주되는 구역을 포함하는 시정촌 ◎
2000.4.1	3,229	1,171	1,171	0	0
2001.4.1	3,226	1,171	1,171	0	0
2002.4.1	3,218	1,210	1,210	0	0
2003.4.1	3,190	1,203	1,194	2	7
2004.4.1	3,100	1,167	1,149	5	13
2005.4.1	2,395	899	780	33	86
2006.4.1	1,820	739	513	71	155
2007.4.1	1,804	738	508	72	158
2008.4.1	1,788	732	500	73	159
2009.4.1	1,777	730	497	72	161
2010.4.1	1,727	776	582	35	159
2011.4.1	1,724	776	582	34	160
2012.4.1	1,719	775	581	34	160
2013.4.1	1,719	775	581	34	160
2014.4.1	1,719	797	616	30	151
2015.4.1	1,718	797	616	30	151
2016.4.1	1,718	797	616	30	151
2017.4.1	1,718	817	647	25	145

자료 : 총무성(2018), 2016년도판 과소대책의 현황.

나. 과소지역의 인구·세대

1) 과소지역의 인구 동향

- 과소지역의 인구는 1960년에 20,515천명으로 총인구의 21.8%를 차지하였으나 2015년에 10,879천명으로 총인구의 8.6%를 차지하여 과소지역의 인구비율이 점점 감소하고 있음

(표 4-12) 과소, 비과소지역 인구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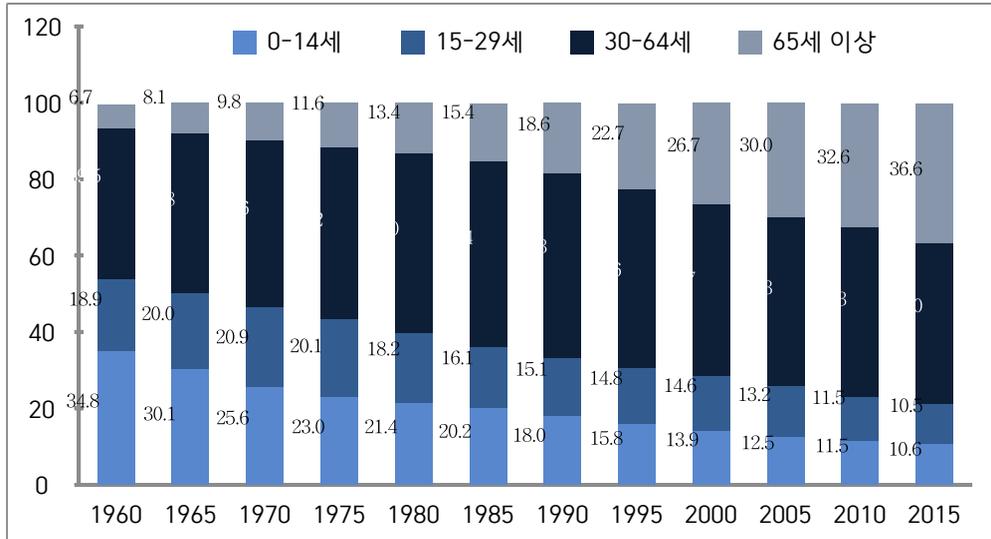
(단위 : 천명, %)

연도	총인구	과소지역 인구	비과소지역 인구	과소지역 인구비율
1960	94,302	20,515	73,787	21.8
1965	99,209	18,706	80,503	18.9
1970	104,665	16,976	87,689	16.2
1975	111,940	16,098	95,842	14.4
1980	117,060	15,774	101,286	13.5
1985	121,049	15,385	105,664	12.7
1990	123,611	14,642	108,969	11.8
1995	125,570	14,066	111,504	11.2
2000	126,926	13,453	113,473	10.6
2005	127,768	12,720	115,048	10.0
2010	128,057	11,842	116,215	9.2
2015	127,095	10,879	116,216	8.6

1. 국세조사에 의함
2. 과소지역은 2017년 4월 1일 현재
자료 : 총무성(2018), 2016년도관 과소대책의 현황.

2) 인구구성

- 1960년부터 2015년까지 연령별 인구 추이를 보면 0세에서 14세의 구성비는 34.8%에서 10.6%로 크게 감소하였으며 생산연령인 15세에서 29세까지의 구성비도 감소하고 있음. 한편 65세 이상 고령자 구성비가 6.7%에서 36.6%로 크게 증가하였음



1. 국세조사에 의함
 2. 과소지역은 2017년 4월 1일 현재
 자료 : 총무성(2018), 2016년도판 과소대책의 현황(개요판), 제작성.

<그림 4-2> 과소지역의 연령별 인구 구성비 추이

3) 과소지역 세대 동향

-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세대수의 변화를 보면 전국에서는 2.9% 증가하고 있는 반면 과소지역에서는 3.6% 감소하고 있음. 2015년 현재 전국의 세대 당 인원수는 2.33명인데 반해 과소지역의 세대 당 인원수는 2.46명으로 전국보다 0.13명 많음

(표 4-13) 과소지역세대수 및 세대 당 세대인원수

(단위 : 세대, 명)

구분	세대수			세대당 세대인원수		
	2010년	2015년	증감율	2010년	2015년	증감율
과소지역	4,430,271	4,270,488	-3.6	2.59	2.46	-5.1
전국	51,842,307	53,331,797	2.9	2.42	2.33	-3.8

1. 국세조사에 의함
 2. 과소지역은 2017년 4월 1일 현재.
 자료 : 총무성(2018), 2016년도판 과소대책의 현황, 재구성.

- 과소지역의 고령자세대는 31.1%로 그 중 고령자단신세대(65세 이상 고령자가 1인뿐인 세대)는 15.7%, 고령부부세대(남편 65세 이상 부인 60세 이상 부부세대)는 15.4%임

(표 4-14) 고령자 세대 비율

(단위: 세대, %)

구분	총세대수	고령자단신 세대수(a)	고령자부부 세대수(b)	고령자세대수 계(a+b)
전국	53,331,797(100.0)	5,927,686(11.1)	6,079,126(11.4)	12,006,812(22.5)
과소지역	3,853,564(100.0)	604,450(15.7)	593,713(15.4)	1,198,163(31.1)
비과소지역	49,478,233(100.0)	5,323,236(10.8)	5,485,413(11.1)	10,808,649(21.9)

1. 2017년 국세조사에 의함
 2. 과소지역은 2017년 4월 1일 현재, 일부 과소지역 미포함. 비과소지역은 일부 과소지역 시정촌 포함
 3. 고령단신세대는 65세 이상인 고령자 1명만으로 이루어진 일반세대(다른 세대원 없음), 고령부부세대는 남편이 65세 이상, 부인이 60세 이상인 부부 한 쌍의 일반세대(다른 세대원 없음)
 4. ()는 총세대수에 대한 구성비
- 자료 : 총무성(2018), 2016년도판 과소대책의 현황

다. 취락의 현황

- 2015년 총무성과 국토교통성이 공동으로 「과소지역 등 조건불리지역 취락현황파악조사」를 실시함. 조사대상은 2015년 4월 1일 현재, 과소지역 시정촌 외 과소지역활성화특별조치법에 근거한 과소지역 시정촌, 산촌진흥법에 근거한 진흥산촌 시정촌, 낙도진흥법에 근거한 낙도진흥대책실시지역 시정촌, 반도진흥법에 근거한 반도진흥대책실시지역 시정촌, 흑설지대대책특별조치법에 근거한 특별흑설지대 시정촌. 단 동일본대지진에 의한 원자력사고피해지역 중 2015년 4월 30일 현재 전 지역이 피난지시구역에 속해 취락실태조사가 곤란한 5정촌(2정촌은 과소지역)은 조사대상에서 제외
- 이 조사에서 취락이란 일정 토지에 여러 세대가 사회적 통합이 형성된 주민생활의 기본적인 지역단위이며 시정촌 행정에서 다루는 행정구의 기본단위를 말함

- 시정촌별 취락수를 보면 시가 48,584취락(64.2%), 정이 24,110취락(31.9%), 촌이 2,968취락(3.9%)로 60% 이상이 시에 속해 있음. 시정촌 당 평균 취락 수는 73.6개 임

(표 4-15) 시정촌별 취락수 및 시정촌 당 평균 취락수

	시	정	촌	취락수 계	시정촌당 평균 취락수
취락수	48,584	24,110	2,968	75,662	73.6
비율(%)	64.2	31.9	3.9	100.0	

자료 : 총무성(2016), 2015년도 과소지역 등 조건불리지역의 취락현황파악조사 보고서.

- 시정촌별 취락인구 비율을 보면 시가 69.7%로 가장 많고 취락 당 평균 인구를 보면 시는 220.8명, 정은 175.9명, 촌은 140.1명 임

(표 4-16) 시정촌별 취락인구 및 취락 당 평균 인구

	시정촌별 취락인구				합계	시정촌별 취락 당 평균인구			
	시	정	촌			시	정	촌	전체
인구	10,727,314	4,240,126	415,819		15,383,259	220.8	175.9	140.1	203.3
비율(%)	69.7	27.6	2.7		100.0	(48,584)	(24,110)	(2,968)	(75,662)

※시정촌별 취락 당 평균인구의 ()는 인구의 회답이 있었던 취락 수

자료 : 총무성(2016), 2015년도 과소지역 등 조건불리지역의 취락현황파악조사 보고서.

- 과소시정촌의 취락은 전 취락의 61.9%를 차지하고 있으며 과소구분별 평균 취락 수는 과소지역으로 간주되는 과소 시정촌이 48.6취락으로 가장 많음

(표 4-17) 시정촌의 과소구분별 취락 수

	과소구분별 취락수					합계	과소구분별 평균 취락수			
	과소	간주 과소	일부 과소	비과소			과소	간주 과소	일부 과소	비과소
취락수	45,831	6,751	8,337	13,743		75,662	44.5	48.6	28.5	46.1
비율(%)	61.9	8.9	11.0	18.2		100.0	(45.3)	(48.3)	(33.7)	(31.0)

()는 이전 조사

자료 : 총무성(2016), 2015년도 과소지역 등 조건불리지역의 취락현황파악조사 보고서.

- 인구증가 및 지역 담당자 확보를 위해서는 U, I턴자 또는 해당 지역의 젊은이들을 위한 질이 높고 저렴한 주택 및 택지를 정비하는 것이 중요함. 이를 위해 과소관계시정촌에서는 정주 촉진을 위한 주택정비를 실시함. 2000년에서 2016년까지 정비한 택지는 33,073구획이며 형태별 구획수를 보면 택지 및 주택을 시정촌이 정비하고 임대하는 경우는 16,836건으로 전체의 50.9%를 차지함. 다음으로 택지를 분양하고 주택은 개인이 건설하는 경우는 14,911건으로 45.1%를 차지함

(표 4-18) 과소지역 정주촉진을 위한 택지정비 상황

	지자체수	세대수 (구획수)	택지분양, 주택 개인 건설	택지, 주택 정비, 분양	택지 임대, 주택은 개인이 건설	택지, 주택 정비, 임대
2000년	273	2,724	1,444	106	13	1,161
2001년	288	3,128	1,542	19	70	1,497
2002년	286	3,727	1,850	33	96	1,748
2003년	238	3,217	1,567	44	136	1,470
2004년	168	2,492	1,247	172	59	1,014
2005년	141	2,262	1,158	70	71	963
2006년	92	1,081	422	26	72	561
2007년	113	1,772	456	0	27	1,289
2008년	104	1,761	944	0	82	735
2009년	114	2,050	494	0	28	1,528
2010년	100	928	319	0	12	597
2011년	117	1,130	561	1	6	562
2012년	122	1,449	381	11	34	1,023
2013년	129	1,947	1,312	3	3	629
2014년	108	1,197	572	0	11	614
2015년	141	1,154	397	20	13	724
2016년	134	1,054	245	8	80	721
계	2,668	33,073	14,911	513	813	16,836

자료 : 총무성(2018), 2016년도판 과소대책의 현황, 재구성.

4. 과소화 대응 정책 및 주요 사업

가. 과소화 대책 최근 동향

1) 취락대책

- 총무성에서는 과소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식경험자들의 의견교환의 장으로서 과소문제간담회를 개최하고 있음. 또한 정부 전체에서는 2014년 12월 27일에 「지역·사람·일자리창생 장기비전」 「지역·사람·일자리창생 종합전략」이 국무회의에서 결정된 이후 지방창생에 관한 대응이 가속화됨
- 과소문제간담회에서는 2013년도 말부터 취락대책 워킹그룹을 설치하고 논의를 거듭하여 2015년 3월 31일 「과소지역 등 향후 취락대책방안에 관한 제언」을 정리하였음. 주요 내용은 과소취락의 현황과 과제, 취락 네트워크권의 필요성, 취락 네트워크권 설정, 취락 네트워크권 활동의 포인트, 취락 네트워크권 추진에서 기대되는 역할 등으로 이루어짐
- 총무성에서는 2015년 3월 31일 과소문제간담회의 제언을 바탕으로 「과소지역 등 취락 네트워크권 형성 지원사업」을 창설함. 사업의 목적은 기간취락을 중심으로 주변취락과의 사이에 취락 네트워크권을 형성하여 생활의 영위(일상생활지원기능) 확보와 생산의 영위(지역산업)을 진흥하기 위해 지역운영조직이 행하는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취락의 유지·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임
- 과소문제간담회에서는 취락대책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여 「과소지역 등 취락대책방안에 대한 제언」을 정리하였음. 내용은 과소지역 취락의 현황, 취락 네트워크권 및 취락지원요원제도의 재고, 향후 취락대책에서 중요한 시점 등을 포함하고 있음
- 취락지원요원은 지역의 실정을 잘 알고 취락대책의 추진에 관한 노하우·지식을 갖춘 인재가 지방자치단체의 위촉을 받아 행정과 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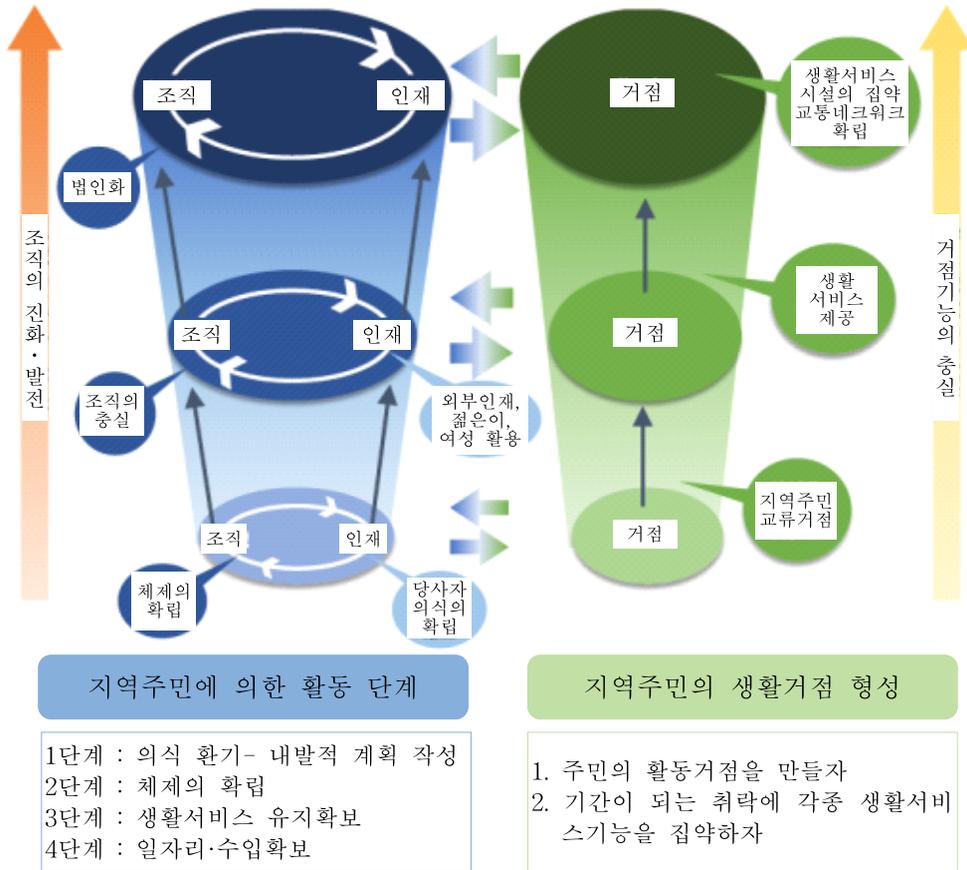
하고 주민과 함께 취약점검, 주민과 주민, 주민과 행정과의 사이에서 취약의 현황, 과제 등에 대해 의견교환을 촉진함. 지방자치단체는 취약지원요원을 설치하고 취약지원요원과 협력하여 취약대책을 추진함

- 2017년 6월 9일에 국무회의에서 결정된 「지역·사람·일자리창생 기본방침 2017」에 중산간지역에서는 일상 생활권을 구성하고 있는 취약생활권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향후 지속적으로 지역주민이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운영조직을 형성하고 생활서비스기능을 집약시키며 취약생활권 내외를 교통네트워크로 연계하는 작은 거점 형성을 추진함으로써 편리한 지역 만들기를 도모함

(가) 작은 거점 형성

- 2008년 7월 지역에 따라서는 인구감소, 고령화가 심각하여 유지·존속이 위협한 취약이 있음을 처음으로 국토형성계획에서 언급함. 과소취락의 주민생활 안정을 위해서는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작은 거점 형성의 필요성이 제기됨. 2013년 3월 국토교통성에서는 작은 거점 만들기 가이드 북을 작성하고 2014년 7월 「국토 그랜드디자인 2050」에서 취락이 산재하는 지역에서는 상점, 진료소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시설이나 지역 활동의 장을 도보권 내에 집약시켜 주변지역과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작은 거점」을 형성한다고 언급함. 작은 거점 형성은 내각부 지방창생실, 총무성, 국토교통성이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음
- 작은 거점 형성이란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극심한 중산간지역 등 취약생활권(복수의 취락을 포함하는 생활권)에서 안심하고 생활하는데 필요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지자체, 사업자, 각종단체와 협력하면서 생활지원기능을 집약·확보하거나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여 일자리·

수입 확보를 도모하는 것을 말함



자료 : 내각부 지방창생추진실(2016), 정든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생활하기 위하여- 지역생활을 지탱하는 작은 거점 만들기 매뉴얼.

<그림 4-3> 작은 거점 형성추진을 위한 포인트

- 작은 거점 형성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민 스스로가 지역을 지탱하기 위한 활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생활에 필요한 기능이나 서비스를 보완해 가는 것이 필요함. 이를 위해서는 활동을 담당하는 「인재」, 활동주체가 되는 「조직」, 두 번째 지역주민의 생활을 위한 「거점」을 만드는 것이 필요함. 또한 지역주민의 생활, 활동, 교류의 거점이 되는 장소를 만드는

것과 취약기능, 생활서비스 제공에는 복합화하거나 만물상과 같이 기능이나 서비스를 집약하는 것도 필요함

○ 지역주민에 의한 활동 단계

<1단계>의식의 환기-내발적 계획 작성 : 주민 스스로가 취약에 대한 문제를 직시하도록 하고, 워크숍 등의 방법으로 지역주민의 토론의 장 마련, 지역의 장래 비전(지역디자인)을 작성

<2단계>체제의 확립 : 1단계에서 작성한 지역디자인을 바탕으로 지역의 문제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체제의 확립(지역운영조직의 형성). 조직타입은 기존자치회, 주민출자에 의한 주식회사나 NPO법인 설립, 지역 NPO법인과 주민 등이 협력 운영. 활동의 범위는 구 초등 학교구의 범위에서 합병 전 구 정촌(町村) 영역까지 다양함

<3단계>생활서비스의 유지 확보 :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생활서비스 제공. 예를 들면 장보기 서비스(식품품이나 일용품 상점 운영, 장보기대행 서비스, 휘발유 등 연료제공), 복지서비스(고령자보호, 배식서비스, 복지개호시설 운영), 상호부조 서비스(제설작업, 정원손질, 미화활동, 관혼상제 도우미), 교통서비스(커뮤니티버스 운행, 송영서비스), 산업지원(농산물 출하대행, 유흥농지 관리, 공동출하, 가공품 공동생산), 기타(행정업무 대행, 공공시설관리, 방법·방재활동, 빈집·묘지관리)

<4단계>일자리·수입 확보 : 지역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수입을 확보하여 정주 촉진

○ 지역주민의 생활 거점 형성

<거점형성1>주민의 활동거점 : 지역주민이 활동·교류하는 거점이 되는 장소 만들기가 필요. 거점타입은 길의 역(미치노 에키, 道の驛)에 병설하는 형태로 정비, 공공유희시설 활용, 빈집이나 빈 점포 활용, 공공시설 지정관리자로서 시설운영 및 시설을 활동거점으로 활용

<거점형성2>기간이 되는 취락에 생활서비스 기능을 집약 : 활동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개개의 생활서비스와 각 취락에서의 생활서비스를 유지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복수 취락을 연계, 역할분담, 생활서비스의 기능을 집약하여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지역재생계획(지방자치단체 작성, 내각총리대신인정)을 책정하면 거점 만들기에 대한 재정적 지원(지방창생추진교부금)·법령적인 지원(지역재생거점형성 시 시설정비에 관한 개발허가, 농지전용허가의 특례조치)을 받을 수 있음. 또한 지역재생계획을 인정받은 경우, 자가용 유상여객 운송자에 의한 소량화물운송도 가능

- 2017년 5월 현재, 시정촌관 종합전략(시정촌 지역·사람·일자리창생 종합전략)에 의해 작은 거점이 형성된 곳은 908개소(258시정촌)이며 2016년 10월말 시점과 비교하면 186개소 증가하였음³⁹⁾. 그 중 172개소에서 지역재생계획을 바탕으로 지방창생교부금을 활용하여 추진함. 입지하는 주요시설은 버스정류장, 우체국, 식료품 및 일용품판매점, 운동시설, 음식점, 초등학교 순으로 많음. 83%에서 지역운영조직이 형성되어 있음
- 시정촌관 종합전략 없이 작은 거점이 형성된 곳은 598개소(166시정촌) 임. 향후 작은 거점 형성이 예정된 곳은 시정촌관 종합전략을 기반으로 한 것은 337개소(160시정촌), 시정촌관 종합전략 없이 작은 거점이 예정된 곳은 87개소(40시정촌)임⁴⁰⁾
- 작은 거점 1개소 당 취락생활권 인구는 전국 평균 2,620.8명이며 작은 거점 취락 수는 전국적으로 13,941취락, 작은 거점 1개소 당 취락 수는 전국 평균 15.4취락임⁴¹⁾

39) 내각부 방창생추진사무국(2017), 2017년도 작은 거점 형성에 관한 실태조사 조사결과.

40) 내각부 방창생추진사무국(2017), 2017년도 작은 거점 형성에 관한 실태조사 조사결과.

41) 내각부 방창생추진사무국(2017), 2017년도 작은 거점 형성에 관한 실태조사 조사결과.

(나) 지역운영조직 형성

- 지역운영조직이란 지역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지역에서 생활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지역의 다양한 관계주체가 참가하는 협의조직이 정한 지역경영의 지침을 바탕으로 지역과제 해결을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조직임⁴²⁾. 또한 종합전략에서는 지속가능한 지역을 만들기 위해 지역디자인을 바탕으로 지역주민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지역주민이나 지역사업체와 의견교환 후 각각의 역할을 명확히 하면서 생활서비스 제공이나 외부로 부터의 수입확보 등의 지역과제해결을 위한 사업에 대해 다기능형의 대응을 지속적으로 하는 조직으로 정의하고 있음
- 지역자치조직이나 지역자주조직 등 지역에 따라 명칭이 다를 수 있음. 취약 네트워크권의 활동을 담당하는 지역운영조직은 자치회나 반상회의 연합조직과는 다른 성격의 조직으로 지역운영조직이 있는 시정촌은 609개 시정촌이며 지역운영조직의 조직 수는 3,071개 임⁴³⁾
- 작은 거점과 지역운영조직형성을 위한 지역의 지원으로서는 크게 정보지원, 인재지원, 재정지원이 있음. ① 정보지원에는 효과를 가시화하여 우수사례를 홍보하고 정보발신과 교류를 위한 포털사이트를 개정, 지원을 위한 플랫폼 만들기, 도도부현과 연계한 전국각지에서 실시한 설명회 개최 등을 지원함 ② 인재지원으로는 지방창생대학 등을 활용한 인재 육성, 지역운영조직 활동 지원을 위한 범인화 촉진, 지역운영조직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 육성 ③ 재정지원으로는 각 부처와 지방재정조치 세제조치 등 종합적인 지원을 함. 구체적으로는 내각부의 지방창생추진교부금, 총무성의 과소지역 등 취약 네트워크권 형성지원사업, 국토교통성의 작은 거점을 핵으로 한 고향취락생활권형성추진사업, 농림수산성의 농산어촌진흥교부금

42) 총무성 지역력창조그룹지역진흥실(2017), 지역운영조직의 형성 및 지속적인 운영에 관한 조사연구사업보고서.

43) 총무성 지역력창조그룹지역진흥실(2017), 지역운영조직의 형성 및 지속적인 운영에 관한 조사연구사업보고서.

등이 있으며, 지방운영조직의 지속적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방 재정계획에 계상하고 2016년부터 작은 거점 형성에 기여하는 사업을 하는 주식회사에 출자하는 경우 세제우대를 함

2) 이주·정주 대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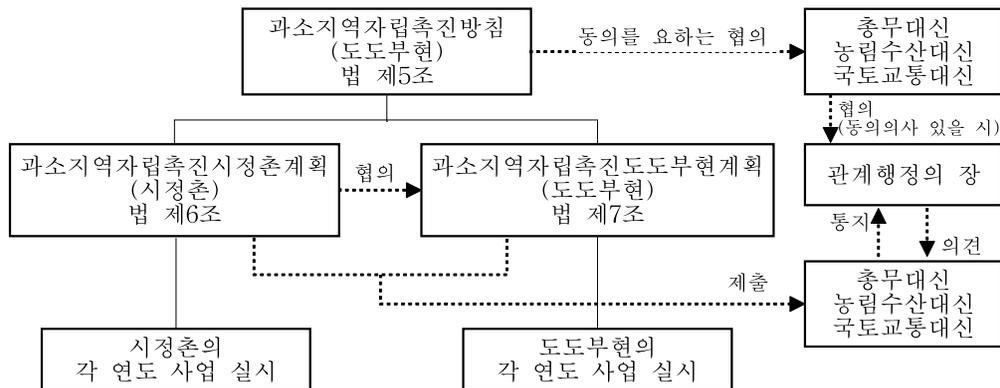
- 지방자치단체는 3대 도시권 등 도시지역에서 과소지역에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생활의 거점을 옮긴 사람을 지역부흥협력대로 위촉하여 지역협력활동에 종사하면서 해당지역에 정주·정착을 도모하는 지역부흥협력대를 배치함
- 총무성에서는 지역으로의 이주를 독려하기 위해 관련 행정과 연계하고 지자체와 공동으로 전국의 일자리, 주택 등의 데이터를 일원화한 전국 이주네비(네비게이션)를 개설함. 세미나 안내, 일자리 정보, 주택정보, 생활·교통정보 등을 제공함
- 동경역 부근에 이주관련정보를 제공하고 상담지원을 일원화한 이주·교류정보가든을 개설함. 전국 이주네비를 활용한 상담, 지자체와의 연계, 후생노동성이나 농림수산성과 연계하여 일자리 정보, 귀농지원정보, 지자체의 이주·교류에 관한 팸플릿 등 관람코너를 설치함

나. 지방자치단체의 과소화 대책

1) 과소지역 자립촉진계획 체계

- 과소대책의 주축은 시정촌이며 도도부현이 협력하고 국가가 특별조치로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음. 도도부현은 과소지역자립촉진방침(이하 자립촉진방침)을 책정하고 이를 근거로 도도부현은 과소지역 자립촉진 도도부현계획(이하 도도부현계획), 시정촌은 과소지역 자립촉진 시정촌계획(이하 시정촌계획)을 책정함
- 자립촉진방침 책정 시에는 총무대신, 농림수산대신, 국토교통대신

(이하 3대신)과 협의하고 동의를 얻어야 함. 시정촌계획은 일부 항목을 제외하고 도도부현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음. 도도부현계획과 시정촌계획은 3대신에게 제출되지만 3대신은 관계행정 기관장에게 내용을 통지하고 관계행정 기관장은 계획에 대한 의견을 3대신에게 제출할 수 있음



자료 : 총무성(2018), 2016년도판 과소대책의 현황.

<그림 4-4> 과소지역자립촉진특별조치법의 체계

2) 자립촉진방침

- 자립촉진방침은 각 지역의 특성을 살리고 각 지역의 자주성, 주체성, 창의성 등을 고려하여 과소지역 자립촉진을 위한 기본방향을 정하는 것
- 자립촉진방침은 ① 기본적인 사항 ② 산업의 진흥 및 관광 개발 ③ 교통통신체계의 정비, 정보화 및 지역 간 교류의 촉진 ④ 생활환경의 정비 ⑤ 고령자 등 보건 및 복지향상 및 증진 ⑥ 의료의 확보 ⑦ 교육의 진흥 ⑧ 지역문화의 진흥 ⑨ 취락의 정비 등 9개의 항목에 대해 책정함

3) 자립촉진계획 사업비

(가) 전체 사업비

- 2016년도의 자립촉진계획에 의한 항목별 실적을 보면 산업의 진흥이 전체의 33.7%를 차지하고 교통통신체계의 정비, 정보화 및 지역간 교류의 촉진 26.9%, 생활환경 정비 16.2% 순으로 높음

(표 4-19) 과소대책사업의 항목별 사업비 실적액

(단위 : 억 엔, %)

구분	산업의 진흥	교통통신체계 정비, 정보화 및 지역간 교류 촉진	생활 환경의 정비	고령자 등의 보건 및 복지 향상 증진	의료의 확보	교육의 진흥	지역 문화의 진흥	취락 등 정비	기타	합계	
긴급조치법 (1970-1979)	17,524 (22.2)	39,197 (49.6)	8,945 (11.3)		953 (1.2)	9,470 (12.0)		190 (0.2)	2,739 (3.5)	79,018 (100.0)	
진흥법 (1980-1989)	48,257 (27.8)	85,942 (49.5)	17,983 (10.4)		2,457 (1.4)	17,085 (9.8)		412 (0.2)	1,534 (0.9)	173,670 (100.0)	
활성화법 (1990-1999)	106,603 (29.3)	142,673 (39.3)	64,057 (17.6)	11,308 (3.1)	6,211 (1.7)	24,865 (6.8)		1,186 (0.3)	6,384 (1.8)	363,287 (100.0)	
자립 촉진법	(2000- 2009)	69,629 (28.4)	91,919 (37.5)	49,657 (20.3)	9,521 (3.9)	5,330 (2.2)	13,298 (5.4)	2,142 (9.9)	1,003 (0.4)	2,629 (1.1)	245,128 (100.0)
	(2010- 2015)	44,553 (29.1)	44,892 (29.3)	26,802 (17.5)	11,002 (7.2)	7,106 (4.6)	14,247 (9.3)	1,810 (1.2)	1,007 (0.7)	1,778 (1.2)	153,197 (100.0)
	(2016)	9,956 (33.7)	7,361 (26.9)	4,433 (16.2)	2,146 (7.9)	1,079 (4.0)	2,657 (7.9)	381 (1.1)	272 (1.0)	342 (1.3)	27,314 (100.0)
자립촉진법계 (2000-2016)	124,138 (29.0)	144,172 (33.9)	80,892 (19.0)	22,669 (5.3)	13,515 (3.2)	30,202 (7.0)	4,333 (1.0)	2,282 (0.5)	4,749 (1.1)	425,639 (100.0)	
합계 (1970-2016)	296,522 (28.4)	411,984 (39.6)	171,877 (16.5)	33,977 (3.3)	23,136 (2.2)	81,622 (7.8)	4,333 (0.4)	4,070 (0.4)	15,406 (1.5)	1,045,453 (100.0)	

1. 총무성 조사.
2. ()는 구성 비율
3. 과소계획상 분야별 하드웨어사업과 소프트웨어사업 합계
4. 긴급조치법, 진흥법에서 합산되어 있는 생활환경의 정비와 고령자등 보건 및 복지향상 및 증진 실적액은 합계에서 생활환경의 정비로 계산. 또한 교육의 진흥과 지역문화의 진흥 실적액은 합계에서 교육의 진흥으로 계산
5. 2016년도는 큐슈북부지역 호우로 후쿠오카현(福岡縣) 아사쿠라시(朝倉市)는 제외
자료 : 총무성(2018), 2016년도관 과소대책의 현황.

(나) 도도부현계획 관련 사업비

- 2000년부터 2016년까지 자립축진법에 의한 항목별 실적을 보면 교통통신체계, 정보화 및 지역 간 교류의 축진이 47.1%를 차지하고 산업의 진흥이 39.0%를 차지하여 2가지 항목이 전체의 86.1%로 비율이 높음

(표 4-20) 도도부현계획 항목별 사업비 실적액

(단위 : 억 엔, %)

구분	산업의 진흥	교통·통신· 정보화·지역 간 교류 축진	생활·환경의 정비		고령·자 등의 보건·복지 향상·증진	의료·의 확보	교육의 진흥	지역·문화의 진흥	취락·등 정비	기타	합계
긴급조치법 (1970-1979)	9,940 (28.2)	22,709 (64.4)	447 (1.3)		314 (0.9)	131 (9.4)	0 (0.0)	1,738 (3.5)	35,279 (100.0)		
진흥법 (1980-1989)	26,196 (32.9)	50,623 (63.6)	810 (1.0)		1,027 (1.0)	822 (1.0)	10 (0.0)	112 (0.1)	79,600 (100.0)		
활성화법 (1990-1999)	58,262 (33.7)	95,341 (55.2)	10,994 (6.4)	871 (0.5)	2,442 (1.4)	2,286 (1.3)	442 (0.3)	2,157 (1.2)	172,795 (100.0)		
자립 축진법	(2000- 2009)	41,837 (35.8)	61,106 (52.3)	7,788 (6.7)	1,253 (1.1)	1,789 (1.5)	1,783 (1.5)	441 (0.4)	189 (0.2)	616 (0.5)	116,802 (100.0)
	(2010- 2015)	28,689 (42.9)	26,867 (40.2)	4,404 (6.6)	2,466 (3.7)	1,992 (3.0)	1,399 (2.1)	444 (0.7)	135 (0.2)	434 (0.6)	66,830 (100.0)
	(2016)	6,013 (47.7)	4,436 (35.2)	856 (6.8)	453 (3.6)	332 (2.6)	299 (2.4)	89 (0.7)	47 (0.4)	80 (0.6)	12,605 (100.0)
자립축진법계 (2000-2016)	76,539 (39.0)	92,409 (47.1)	13,048 (6.6)	4,172 (2.1)	4,113 (2.1)	4,113 (2.1)	3,481 (1.8)	974 (0.5)	1,130 (0.6)	196,237 (100.0)	
합계 (1970-2016)	171,131 (35.3)	361,082 (539)	25,531 (53)	5,212 (1.1)	7,952 (1.6)	6,731 (1.4)	968 (0.2)	832 (0.2)	5,206 (1.1)	485,019 (100.0)	

1. 총무성 조사
 2. ()는 구성 비율
 3. 과소계획상 분야별 하드웨어사업과 소프트웨어사업 합계
 4. 긴급조치법, 진흥법에서 합산되어 있는 생활환경의 정비와 고령자등 보건 및 복지향상 및 증진 실적액은 합계에서 생활환경의 정비로 계산. 또한 교육의 진흥과 지역문화의 진흥 실적액은 합계에서 교육의 진흥으로 계산
- 자료 : 총무성(2018), 2016년도판 과소대책의 현황.

(표 4-21) 도도부현 사업 항목

구분	항목	
1. 산업의 진흥	① 농업의 진흥 ② 임업의 진흥 ③ 수산업의 진흥 ④ 지역산업의 진흥 ⑤ 기업의 유치 대책	⑥ 창업의 촉진 ⑦ 상업의 진흥 ⑧ 관광 또는 레크리에이션 ⑨ 기타
2. 교통통신체계의 정비, 정보화 및 지역 간 교류의 촉진	(1) 기간적인 시정촌 도로정비	① 시정촌 도로 ② 농도 ③ 임도 ④ 어항관련 도로
	(2) 도도부현 도로정비	① 국도 ② 도도부현 도로 ③ 농도 ④ 임도 ⑤ 어항관련 도로
	(3) 교통 확보 대책	
	(4) 기타	① 전기통신시설 정비 ② 기타
3. 생활환경 정비	① 공공하수도 사업 ② 기타	
4. 고령자 등의 보건 및 복지 향상 및 증진	① 고령자생활복지센터 ② 기타	
5. 의료의 확보	(1) 무의지구 대책	① 병원, 진료소 정비 ② 환자수송차(배) 정비 ③ 순회진료 ④ 보건지도 등 ⑤ 기타
	(2) 기타	
6. 교육의 진흥 7. 지역문화의 진흥 8. 취락의 정비 9. 기타 지역의 자립촉진에 필요한 사항		

자료 : 홍무성(2018), 2016년도판 과소대책의 현황, 재구성.

(다) 시정촌계획 관련 사업비

- 자립촉진법에 의한 항목별 사업실적을 보면 생활환경의 정비가 전체의 29.6%로 가장 비율이 높고 교통통신체계, 정보화 및 지역 간 교류의 촉진이 22.6%, 산업의 진흥이 20.4%를 차지함

(표 4-22) 시정촌계획 항목별 사업비 실적액

(단위 : 억 엔, %)

구분	산업의 진흥	교통통신체계 정비, 정보화 및 지역 간 교류 촉진	생활 환경의 정비		고령자 등의 보건 및 복지향 및 증진	의료의 확보	교육의 진흥	지역 문화의 진흥	취락 등 정비	기타	합계
긴급조치법 (1970-1979)	7,584 (17.3)	16,488 (37.7)	8,498 (19.4)			639 (1.5)	9,339 (21.4)		190 (0.4)	1,004 (2.3)	43,739 (100.0)
진흥법 (1980-1989)	22,061 (23.5)	35,319 (37.5)	17,173 (18.3)			1,430 (1.5)	16,263 (17.3)		402 (0.4)	1,422 (1.5)	94,070 (100.0)
활성화법 (1990-1999)	48,341 (25.4)	47,332 (24.8)	53,063 (27.9)	10,437 (5.5)	3,769 (2.0)	22,579 (11.9)		744 (0.4)	4,227 (1.2)	190,492 (100.0)	
자립 촉진법	(2000- 2009)	27,792 (21.7)	30,813 (24.0)	41,869 (32.6)	8,268 (6.4)	3,541 (2.8)	11,515 (9.2)	1,701 (1.3)	814 (0.6)	2,013 (1.6)	128,326 (100.0)
	(2010- 2015)	15,864 (18.4)	18,025 (20.9)	22,398 (25.9)	8,536 (9.9)	5,114 (5.9)	12,848 (14.9)	1,366 (1.6)	872 (1.0)	1,344 (1.6)	86,367 (100.0)
	(2016)	3,203 (21.8)	2,925 (19.9)	3,577 (24.3)	1,693 (11.5)	747 (5.1)	1,853 (12.6)	224 (1.5)	225 (1.5)	262 (1.8)	14,709 (100.0)
자립촉진법계 (2000-2016)	46,859 (20.4)	51,763 (22.6)	67,844 (29.6)	18,497 (8.1)	9,402 (4.1)	26,216 (11.4)	3,291 (1.4)	1,911 (0.8)	3,619 (1.6)	229,402 (100.0)	
합계 (1970-2016)	125,391 (22.4)	151,187 (27.0)	147,754 (26.4)	28,941 (5.2)	15,321 (2.7)	74,891 (13.4)	3,365 (0.6)	3,270 (0.6)	10,314 (1.8)	560,434 (100.0)	

1. 총무성 조사
2. ()는 구성 비율
3. 과소계획상 분야별 하드웨어사업과 소프트웨어사업 합계
4. 긴급조치법, 진흥법에서 합산되어 있는 생활환경의 정비와 고령자등 보건 및 복지향상 및 증진 실적액은 합계에서 생활환경의 정비로 계산. 또한 교육의 진흥과 지역문화의 진흥 실적액은 합계에서 교육의 진흥으로 계산
5. 2016년도는 규슈북부지역 호우로 후쿠오카현(福岡縣) 아사쿠라시(朝倉市)는 제외
자료 : 총무성(2018), 2016년도관 과소대책의 현황.

(표 4-23) 시정촌 사업 항목

구분	항목	
1. 산업의 진흥	① 농업의 진흥 ② 임업의 진흥 ③ 수산업의 진흥 ④ 지역산업의 진흥 ⑤ 기업의 유치 대책	⑥ 창업의 촉진 ⑦ 상업의 진흥 ⑧ 관광 또는 레크리에이션 ⑨ 과소지역자립촉진특별사업 ⑩ 기타
2. 교통통신체계의 정비, 정보화 및 지역 간 교류의 촉진	① 시정촌 도로 ② 농도 ③ 임도 ④ 어항관련 도로 ⑤ 철도시설 등 ⑥ 전기통신시설 등 정보화 시설	⑦ 자동차 등 ⑧ 선박시설 ⑨ 도로정비기계 등 ⑩ 지역 간 교류 ⑪ 과소지역자립촉진특별사업 ⑫ 기타
3. 생활환경 정비	① 수도시설 ② 하수도처리시설 ③ 폐기물처리시설 ④ 화장장	⑤ 소방시설 ⑥ 공영주택 ⑦ 과소지역자립촉진특별사업 ⑧ 기타
4. 고령자 등의 보건 및 복지향상 및 증진	① 고령자복지시설 ② 개호노인보건시설 ③ 아동복지시설 ④ 인정어린이집 ⑤ 장애인복지시설	⑥ 모자복지시설 ⑦ 시정촌 보건센터 및 모자건강포괄지원센터 ⑧ 과소지역자립촉진특별사업 ⑨ 기타
5. 의료의 확보	① 진료시설 ② 특정 진료과 관련 진료시설 ③ 과소지역자립촉진특별사업 ④ 기타	
6. 교육의 진흥	① 학교교육관련시설 ② 유치원 ③ 집회시설, 체육시설 ④ 과소지역자립촉진특별사업 ⑤ 기타	
7. 지역문화의 진흥	① 지역문화진흥시설 등 ② 과소지역자립촉진특별사업 ③ 기타	
8. 취락의 정비	① 과소지역취락채정비 ② 과소지역자립촉진특별사업 ③ 기타	
9. 기타 지역의 자립촉진에 필요한 사항	① 자연에너지이용시설 ② 과소지역자립촉진특별사업 ③ 기타	

자료 : 총무성(2018), 2016년도판 과소대책의 현황, 재구성.

(라) 시정촌계획에 관한 과소지역 자립촉진 특별사업

- 2010년 4월 1일 자립촉진법 개정으로 과소대책사업체의 대상이 과소지역자립촉진특별사업(소프트사업)으로 확충됨. 과소지역 자립촉진 특별사업은 9개의 모든 항목에 대하여 시정촌 계획에 포함됨
- 2017년도 사업별 구성비를 보면 고령자 등 보건의료 및 복지 향상 및 증진에 관한 사업비의 비율이 26.3%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산업의 진흥, 교통통신체계의 정비, 정보화 및 지역 간 교류의 촉진, 의료의 확보 순으로 높음

(표 4-24) 자립촉진 시정촌계획의 자립촉진특별사업에 관한 계획금액

(단위 : 백만 엔, %)

구분	산업의 진흥	교통통신체계 정비, 정보화 및 지역 간 교류 촉진	생활환경의 정비	고령자 등의 보건의료 및 복지향상 증진	의료의 확보	교육의 진흥	지역문화의 진흥	취락 등 정비	기타	합계
2010년도	33,775 (23.5)	24,785 (17.2)	7,346 (5.1)	36,598 (25.4)	17,195 (11.9)	11,216 (7.8)	1,909 (1.3)	5,670 (3.9)	5,498 (3.8)	143,992 (100.0)
2011년도	36,792 (23.1)	24,541 (15.4)	8,676 (5.4)	39,623 (24.9)	19,910 (12.5)	11,925 (7.5)	2,308 (1.4)	7,090 (4.5)	8,375 (5.3)	159,240 (100.0)
2012년도	39,536 (24.8)	25,473 (16.0)	7,993 (5.0)	38,875 (24.4)	14,936 (9.4)	14,923 (9.3)	4,038 (2.5)	7,060 (4.4)	6,812 (4.3)	159,646 (100.0)
2013년도	41,428 (23.2)	27,343 (15.3)	10,610 (5.9)	46,191 (25.9)	18,570 (10.4)	16,237 (9.1)	3,055 (1.7)	7,910 (4.4)	7,056 (4.0)	178,400 (100.0)
2014년도	45,571 (23.2)	29,659 (15.1)	11,788 (6.0)	49,868 (25.4)	21,097 (10.7)	18,618 (9.5)	3,694 (1.9)	8,212 (4.2)	7,736 (3.9)	196,225 (100.0)
2015년도	49,708 (23.4)	31,033 (14.6)	14,271 (6.7)	52,667 (24.8)	20,734 (9.8)	20,975 (9.9)	4,573 (2.2)	9,891 (4.7)	8,613 (4.1)	212,465 (100.0)
2016년도	67,663 (25.4)	34,848 (13.1)	17,525 (6.6)	67,729 (25.4)	24,893 (9.3)	25,961 (9.7)	4,135 (1.6)	12,463 (4.7)	11,091 (4.2)	266,298 (100.0)
2017년도	68,368 (23.6)	37,925 (13.1)	20,930 (7.2)	76,142 (26.3)	30,926 (10.7)	27,329 (9.4)	4,346 (1.5)	14,115 (4.9)	9,987 (3.4)	289,667 (100.0)

1. 총무성 조사. 조사시점에 미 책정 지자체도 있음
 2. 과소지역자립촉진특별사업이란 소프트사업으로 주민이 향후 안전하게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지역사회실현을 위해 특별히 지방채를 재원으로 하는 사업으로 시정촌계획에 정해진 것을 말함
 3. 2016년도는 구마모토(熊本) 지진 피해지인 구마모토현(熊本縣) 미나미아소무라(南阿蘇村), 고사마치(甲佐町), 야마토쵸(山都町)는 제외
 4. 2017년도는 큐슈(九州) 북부지역 호우로 후쿠오카현(福岡縣) 아사쿠라시(朝倉市)는 제외
- 자료 : 총무성(2018), 2016년도판 과소대책의 현황, 재구성.

다. 국가의 과소화 대책

- 자립촉진법은 도도부현계획과 시정촌계획에 의해 실시하는 사업에 대해 재정, 행정, 금융, 세제상의 특별조치를 강구하고 있음
- 자립촉진법에 의한 시책뿐만이 아니라 다른 법령을 근거로 과소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시책, 과소지역과 관련이 있는 시책 등도 강구되고 있음. 과소법에 의한 시책은 자립촉진법에 의한 시책이며 과소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시책은 과소지역을 법률·정령·요강 등에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시책으로 자립촉진법에 의한 시책을 제외함. 과소지역에 관련된 시책은 과소지역이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 시책을 말함

(표 4-25) 과소법에 의한 시책

구분	과소법 조문	종류
재정상의 특별조치	제10조·제11조	○ 국가 부담 또는 보조비율 특례 - 적정규모로 통합하는 초·중등학교 교사·실내운동장 신축, 교직원 주택 건축, 보육소, 소방시설
	제12조 제13조	○ 자립촉진을 위한 지방채(과소대책사업채) ○ 자금 확보 등
행정상의 특별조치	제14조	○ 기간적 시정촌 도로·농도·임도, 어항관련 도로 정비(도도부현 대행제도)
	제15조	○ 공공하수도 간선관거 등 정비(도도부현대행제도)
	제16조·제17조	○ 의료의 확보
	제18조·제19조	○ 고령자의 복지 증진
	제20조	○ 교통의 확보
	제21조	○ 정보의 유통 원활화 및 통신체계 충실
	제22조	○ 교육의 충실
	제23조	○ 지역문화의 진흥 등
	제24조 제25조	○ 농지법 등에 의한 처분에 대한 배려 ○ 국유임야의 활용
금융상의 특별조치	제26조	○ 주식회사일본정책금융공고 등의 자금 대부
	제27조	○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의 확보
	제28조	○ 오키나와진흥개발금융공고의 자금 대부
세제상의 특별조치	제29조	○ 사업용 자산교체 과세특례(소득세, 법인세)
	제30조	○ 감가상각 특례(소득세, 법인세)
	제31조	○ 지방세 감세면제 또는 불균일 과세에 따른 조치

자료 : 총무성(2018), 2016년도관 과소대책의 현황.

(표 4-26) 과소화 대책의 구체적인 시책

항목	과소법에 의한 시책	과소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시책	과소지역 관련 시책
재정상 주요 시책	-자금의 확보 등(법제13조) -과소지역자립추진을 위한 지방채(법제12조) -국가의 부담 또는 보조율 특례(법제10, 11조)	- 농림수산물관계 사업의 실시요건 완화(농림수산성)	- 벽지대책사업채(총무성) - 지방교부세(총무성)
산업의 진흥		- 농림어업진흥시책(농림수산성) - 지역산업의 진흥·기업유치시책(경제산업성)	- 농림어업진흥시책(농림수산성) - 지역산업의 진흥·기업유치시책(경제산업성) - 관광 또는 레크리에이션시설정비(환경성, 국토교통성, 농림수산성) - 산림·산촌대책(총무성, 농림수산성) - 농산어촌지역활성화대책(총무성, 농림수산성)
교통통신체계의 정비, 정보화 및 지역 간 교류 촉진		- 도로정비사업(국토교통성) - 임도 정비에 관한 보조제도(농림수산성) - 버스운행대책(지역 내 피더계통확보유지)(국토교통성) - 무선 시스템보급 지원사업(총무성) - 정보통신이용 환경정비추진사업(총무성) - 정보통신기반 정비유지사업(총무성) - 전기통신에 관한 시설유지 관리지원(총무성)	- 지방자치단체의 도로정비사업(국토교통성) - 농도 및 임도 정비 보조제도(농림수산성) - 어항관련도로 정비 보조제도(농림수산성) - 버스운행대책(지역 간 간선계통유지확보) - 낙도항로 등 인프라정비 보조제도(국토교통성) - 낙도항로대책(국토교통성) - 낙도항공로대책(국토교통성) -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관리자이고 전국항로 네트워크기능을 보완하는 공항 정비(국토교통성) - 철도궤도정비비 등 보조금(국토교통성) - 철도시설 안전대책사업 등 보조금(국토교통성)
생활환경의 정비	- 소방시설에 대한 국가의 부담 또는 보조율 특례(법제10조)	- 빈집재생 등 추진사업(국토교통성)	- 우수처리시설 관련 사업(국토교통성, 농림수산성, 환경성) - 간이수도 등 시설정비사업(후생노동성, 국토교통성, 내각부) - 생활저수지정비사업(국토교통성) - 눈대책 사방(砂防) 시범사업(국토교통성) - 눈사태대책사업(국토교통성) - 바람에 쓰러진 나무 또는 지진에 의한 피해가 극심한 지역의 급경사지붕괴대책사업(국토교통성)
고령자 등의 보건, 복지향상 및 증진	- 고령자의 복지 증진(법제18,19조) - 보육소에 대한 국가 부담 또는 보조비율 특례(법제10조)(후생노동성)	- 낙도 등 서비스 확보대책 사업(후생노동성)	- 벽지 보육 추진(내각부) - 사회복지시설 등 시설 정비비 보조금제도(후생노동성)
의료의 확보	- 의료의 확보(법제16,17조)		- 벽지보건의료대책(후생노동성)
교육의 진흥	- 학교통합에 따른 교사 및 실내운동장의 신·증축에 대한 국가의 부담 비율 특례(법제10조)(문부과학성) - 학교통합에 따른 교직원주택의 건축에 대한 국	- 공립학교시설정비사업(문부과학성)	- 벽지집회시설 등 정비(문부과학성) - 벽지아동생도원조비 등 보조금(문부과학성) - 사립고등학교 등 경상비조성비 보조금(문부과학성)

	가의 교부금 산정비율 특례(법제11조)(문부과 학성)		
취락의 정비		- 과소지역 취락재편 정비사업(총무성) - 작은 거점을 핵으로 한 고향취락생활권 형성추진사업 (국토교통성) - 과소지역 유희시설 재정비사업(총무성)	- 낙도진흥 특별사업(국토교통성)
기타		- 과소지역 등 취락 네트워크권 형성지원사업(총무성) - 과소지역 등 자립활성화 추진사업(총무성)	- 지역고용개발대책(후생노동성) - 출가노동자 안정취업대책(후생노동성)
행정상 특별조치	- 기간 시정촌 도로·농도·임도·어항관련도로의 정비(법제14조) - 교통의 확보(법제20조) - 정보유통의 원활화 및 통신체계의 충실(법제21 조) - 하수도사업의 도도부현 대행제도(법제15조) - 고령자 복지의 증진(법제18,19조) - 의료의 확보(법제16,17조) - 교육의 충실(법제22조) - 지역문화의 진흥 등(법제23조) - 농지법 등에 의한 처분 배려(법제24조) - 국유임야의 활용(법제25조)	- 자가용 유상 여객 운송(국토교통성)	
금융상 특별조치	- 자금 확보 등(법제13조) - 주식회사 일본정책금융공고 등의 자금 대부(법 제26조) -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의 확보(법제27조) - 오키나와진흥개발금융공고의 자금 대부(법제28 조)	- 농업개량자금 등 대부(농림수산성) - 농촌지역에 공업 등 도입 시책(농림수산성)	- 임업취업촉진자금의 대부(농림수산성)
세제상 특별조치	- 사업용 자산 교체의 경우 과세 특례(법제29조) - 감가상각 특례(법제30조) - 지방세 과세면제 또는 불균일과세에 따른 조치 (법제31조)	- 특별토지보유세의 비과세조치(지방세법제586조) - 농촌지역에 공업 등 도입 시책(농림수산성)	
기타		- 과소지역대책조사연구	

자료 : 총무성(2018), 2016년도관 과소대책의 현황, 관련부처 삽입.

라. 주요시책

1) 과소지역 취락재편 정비사업

- 과소지역 취락재편은 1960년대 이전부터 실시되었으며 아키타현(秋田縣) 타시로마치(田代町, 현 오다테시 大館市)가 1966년 12월 일본에서 처음으로 「벽지 소규모취락해소촉진조례」를 제정하고 취락이전 사업에 착수하였음⁴⁴⁾. 아키타현은 취락재편성사업에 필요한 조성을 하기 위해 1969년 9월 「아키타현 취락재편성 사업추진요강」을 제정하였음. 부동산취득세 면제, 이전비 보조 인상 등을 실시한 결과 1969년부터 1973년까지 5년 동안 337세대가 이전하고 20개 시정촌에서 78취락이 소멸되었음⁴⁵⁾. 1971년 국토교통성(당시 국토청)은 인구감소가 현저한 과소지역을 대상으로 과소지역취락재편성사업에 착수하고 취락재편에 대한 조성책을 구체화 하였음
- 취락이전의 경우 1970년에서 1979년 사이에 60% 이상이 실시되었으며, 취락재편은 취락이전 보다 많지 않지만 1990년 이후 취락이전과 취락재편이 거의 동일하게 실시되었음

(표 4-27) 과소지역 취락이전, 취락재편 실시시기

	취락이전		취락재편	
	건수	비율	건수	비율
1959년 이전	1	0.9%	1	2.3%
1960년-1969년	8	7.0%	3	7.0%
1970년-1979년	73	64.0%	9	20.9%
1980년-1989년	13	11.4%	12	27.9%
1990년-1999년	19	16.6%	18	41.9%
계	114	100.0%	43	100.0%

자료 : 총무성(2009), 2008년도판 「과소대책의 현황」에 대하여(개요판), 제작성.

44) 아키타현, 지금까지의 주요 시책 검증.

45) 아키타현, 지금까지의 주요 시책 검증.

- 취락이전이란 기초여건이 열악한 취락을 기간취락 등에 이전시키는 것이며 취락재편이란 이전 없이 취락의 합병·통합·신행정구 설정 등에 의해 기간취락의 강화와 적정규모취락의 육성을 도모하는 것을 말함⁴⁶⁾
- 취락이전의 주요 배경 및 이유는 효율적인 행정서비스 제공, 고령화나 인구유출에 따른 자연소멸의 가능성, 적설에 의한 취락고립화 해소이며, 취락재편의 경우 고령화나 인구유출에 의한 자연소멸의 가능성, 지역커뮤니티 강화를 들고 있음⁴⁷⁾
- 취락이전 및 취락재편의 평가에서 실제로 취락이전 및 취락재편을 한 취락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취락이전의 경우 ‘이전하여 좋았다’는 답변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취락재편의 경우 약 50%가 좋았다고 답변함

(표 4-28) 취락이전, 취락재편에 대한 의견

	취락이전		취락재편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이전, 재편해서 좋았다	72	81.8%	48	49.0%
이전, 재편 전이 좋았다	2	2.3%	6	6.1%
어느 쪽도 아니다	11	12.5%	41	41.8%
무응답	3	3.4%	3	3.1%
계	88	100.0%	98	100.0%

자료 : 총무성(2009), 2008년도판 「과소대책의 현황」에 대하여(개요판), 제작성.

- 현재 과소지역 취락재편정비 사업은 총무성 시책으로 취락이전, 정주촉진단지 정비, 정주촉진 빈집활용, 계절거주단지 정비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

46) 총무성(2009), 2008년도판 「과소대책의 현황」에 대하여(개요판).

47) 총무성(2009), 2008년도판 「과소대책의 현황」에 대하여(개요판).

사업명	과소지역 취락재편 정비사업
사업목적	과소지역에서 기초적인 조건이 현저히 저하되어 취락이나 고립 산재하는 주거를 기간취락 등에 이전하는 것, 지역 정주를 촉진하기 위해 주택단지를 조성하는 것, 지역 정주를 촉진하기 위해 기간취락에 점재하는 빈집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주택을 정비하는 것, 점진적인 취락이전을 유도하기 위해 계절거주단지를 조성함으로써 취락의 재정비를 도모
사업주체	과소지역 시정(市町)
채택요건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취락 등 이전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통여건이 나쁘고 의료, 교육, 교육 등 기초적인 공공서비스의 확보가 곤란하고 인구감소나 고령화가 극심한 경우 (2) 취락이전은 5세대 이상, 벽지분산주거이전은 3세대 이상이 이전하고 단지를 형성하는 경우 2. 정주촉진단지 정비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주를 촉진하기 위한 주택단지를 정비하는 경우 (2) 5세대 이상이 단지를 형성하는 경우 3. 정주촉진 빈집활용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역의 정주를 촉진하기 위해 기간 취락에 산재하는 빈집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2) 정비세대수가 3세대 이상인 경우 4. 계절거주단지 정비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통여건이 나쁘고 의료, 교육 등 기초적인 공공서비스의 확보가 곤란한 지역에 존재하는 주거인 경우 (2) 이전지역에 점진적인 취락이전을 유도하기 위해 겨울동안 계절거주 등을 위한 단지를 형성하는 경우 (3) 전체 계절거주 세대수가 3세대 이상인 경우
교부대상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취락 등 이전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전 경비, 단지조성비, 이주지 주택건설 등 조성비, 생활관련 시설 정비비, 산업기반시설 정비비 2. 정주촉진단지 정비사업 및 계절 거주단지 정비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임대분: 단지조성비, 생활관련시설 정비비, 산업기반시설 정비비 (2) 분양분: 생활관련시설 정비비, 산업기반시설 정비비 3. 정주촉진 빈집활용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빈집수리에 필요한 경비(양도 예정은 제외)

교부 한도액	1. 교부대상경비 한도액 (1) 취락이전사업, 벽지분산주거이전사업: 6,144천엔×이전 세대수 (2) 정주촉진단지 정비사업: 3,877천엔×단지 내 세대수 (3) 정주촉진 빈집활용사업: 4,000천엔×정비 세대수 (4) 계절거주단지 정비사업: 4,738천엔×단지 내 세대수(해당 단지에 고령자 커뮤니티센터를 건설하지 않는 경우 3,877천엔×단지 내 세대수 2. 교부율 교부대상경비*1/2
실시기간	1개년도 이내 원칙. 복수연도에 걸친 사업이라 하더라도 교부대상이 되는 것은 연도 내에 실시하는 사업으로 한정
사업 개시 연도	1994년
관련부처	총무성 자치행정국 과소대책실

자료 : 총무성(2018), 2016년도판 과소대책의 현황.

총무성(2018), 과소지역취락재편정비사업 및 과소지역유희시설재정비사업 모집요령.

(표 4-29) 총무성의 최근 과소지역 취락재편 정비사업 실적

(단위 : 지자체수, 천엔)

	취락 등 이전사업	정주촉진단지 정비사업	정주촉진 빈집활용사업	계절거주단지 정비사업	계
2015년도	-	4(44,000)	3(19,000)	-	7(63,000)
2016년도	-	4(64,399)	3(19,994)	-	7(84,393)
2017년도	-	5(69,417)	4(23,645)	-	9(93,062)
2018년도	-	4(87,774)	3(18,000)	-	7(105,774)

1. ()는 교부 결정액

자료 : 총무성, 2015년도-2018년도 과소지역 등 자립활성화추진교부금 교부결정.

사례1) 가고시마현(鹿兒島縣), 아쿠네시(阿久根市) 혼노무레(本之牟礼)지구⁴⁸⁾

○ 혼노무레지구 개요

- 시의 중심(시청)에서 도로 거리로 10km 떨어진 곳에 위치하며 산

48) 제2회 규슈권의 지역존속·재생에 관한 조사검토위원, 성공사례조사결과보고서4, 내용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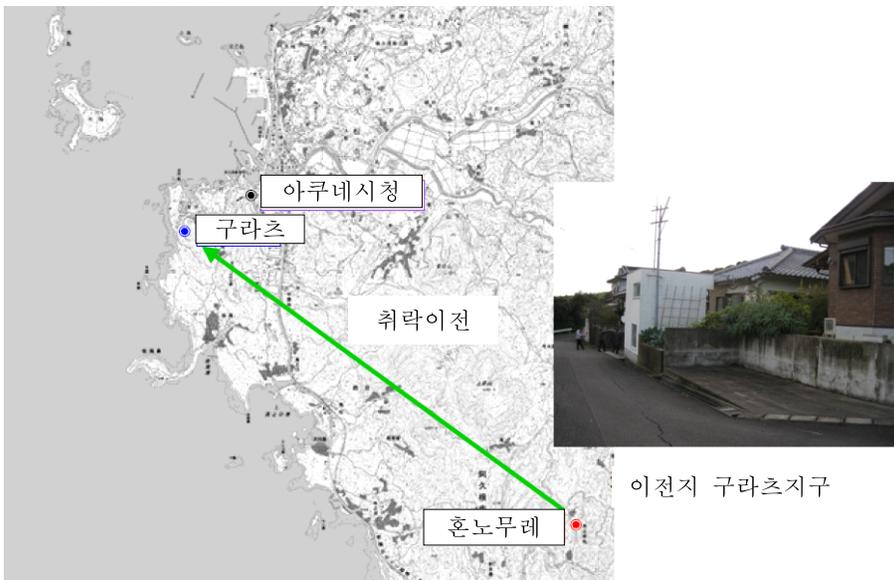
간부에 산재하는 농업취락

- 넓이는 남북 약 1km, 동서 약 0.8km이며 지형적으로 대규모 농업이 곤란한 지역
 - 쌀 생산량 조정정책과 야생금수 피해로 논밭을 만들 수 없게 되어 전출자가 증가하고 고도경제성장에 의해 젊은이가 유출됨
 - 1963년에는 세대수 71세대, 인구 227명, 그 중 아동은 27명이었으나 1989년에는 세대수 10세대, 인구 20명으로 감소하였음
- 1971년 집중호우로 절벽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생활이 곤란해져 경제사정이 허락하는 세대는 스스로 환경이 좋은 곳으로 이전함. 이전 전 취락의 상황은 연결도로가 좁고 구불구불했으며 통학통근이 불편한 상황이었으며 공공교통기관이 없고 자가용 보유율도 낮았음. 의료기관 등에는 택시를 이용하고 10세대는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이전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 10세대의 직업은 연금수급자와 영세농민, 고령화에 의해 취락으로서 유지도 곤란한 상황이었음
- 취락 주민 중 한 사람이 시의회의원에게 취락유지가 곤란함을 상담한 것을 계기로 총무성의 과소지역 취락재편정비 사업을 활용하여 시의 정식적인 사업이 됨. 시의 사업으로 취락이전사업을 시작하여 1987년 4번째 후보지인 구라츠(倉津)지구로 이전지를 결정함. 토지, 건물 취득비용은 이주자가 부담하고 차입금 이자는 시가 보조를 함. 1988년 이전지 조성공사에 착수하여 1989년 이전을 시작했으며 이전 당시 10세대 중 7세대가 집단이전을 하고 3세대는 시가지에 이전함
- 이전지인 구라츠(倉津)지구 개요
- 시 중심부(시청)에서 서쪽으로 약 1km로 가까운 곳
 - 근처에 버스노선은 없지만 구라츠단지 주민 대부분은 자가용을 소유하고 이용하기 때문에 불편은 없음

- 이전 단지는 원래 구라츠지구 주민 거주지에서 조금 떨어진 곳이며 '구라츠지구와 혼노부레지구 주민은 동일한 철에 다니면서 원래부터 친했기 때문에 이전지 주민과의 트러블은 없었음
 - 시는 공영주택용지로 토지개발공사에서 선행 취득하고 토지개발공사에서 조성 후 시가 매입하였으며 조성 단계에 인프라 정비를 완료하였음
- 아쿠네시는 과소지역 취락재편정비 사업을 근거로 아쿠네시 과소지역취락 등 정비 사업비 보조금 교부제도를 제정하여 보조함. 이전 당시에는 국토청의 사업이었음
 - 취락이전의 원활화에 필요한 비용 보조: 생활보상을 필요로 하는 주거 이전자가 시내에 남을 경우 세대당 2,004천엔 이내, 생활보상을 필요로 하지 않는 주거 이전자가 시내에 남을 경우 세대당 660천엔 이내로 보조
 - 이전지 주택건설 보조 : 시가 정한 단지에서 주택건설 또는 구입자금 차입금 이자 보조(한도액 2,340엔 중 주택 1,840천엔 이내, 토지 500천엔 이내),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가산됨
 - 토지 대부 : 시가 정한 단지에서 용지를 빌려 거주하는 것도 가능함
- 이전에 따른 취락 관리
 - 공동자산은 이전하지 않고 주민이 관리하고, 폐교된 분교는 시의 보통자산으로서 도예가에게 임대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집회소는 시가 철거함.
 - 가옥, 논밭 등 사유재산은 원 소유자가 소유·관리하며 고정자산세와 상속세가 발생함. 가옥, 논밭 등은 양도가능하며 돌아와서 사는 것도 가능함. 이농을 전제로 한 이전이기 때문에 논밭에는 시가 삼나무·노송나무 등을 식재하고 묘의 이전은 개인이 부담함
 - 시의 토지개발공사가 도로, 수도, 전기 등 인프라를 조성하고 공원 및 생활배수처리시설은 조성 단계에 정비 완료하였음. 오수처리는

각 가정에서 재래방식 또는 간이 수세방식, 전기 등 인프라도 정비 완료. 인프라 정비에는 개인부담 없음

- 이전 전 취락에서 개최했던 축제, 전통문화 계승
- 이전과 동시에 지역커뮤니티에 가입
- 취락에 남아 있는 배수지와 정수장은 하류에 있는 거주자를 위해 시가 유지, 관리함. 따라서 혼노무레 취락에서는 도로, 전기설비 등의 인프라가 유지되어 이용 가능함



자료 : 제2회 큐슈권의 지역존속·재생에 관한 조사검토위원회, 성공사례조사결과 보고서4.

<그림 4-5> 혼노무레와 구라츠지구

사례2) 에히메현(愛媛縣) 기호쿠쵸(鬼北町) 정추축진단지

○ 기호쿠쵸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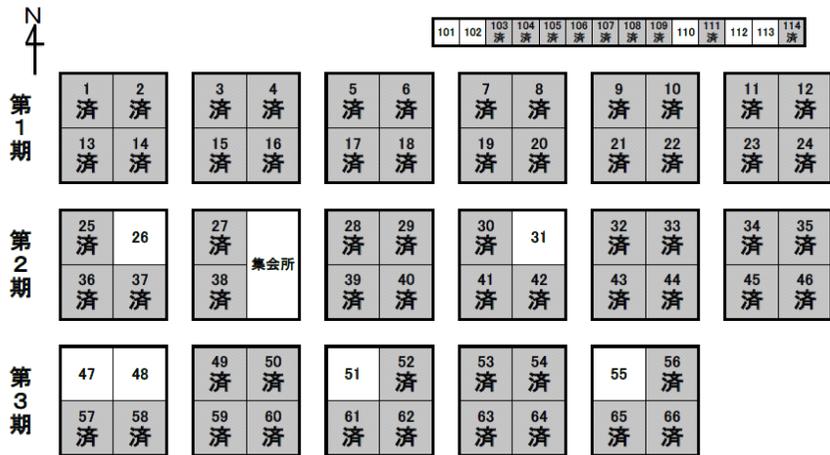
- 에히메현은 기후가 온난하고 재해가 적으며, 다양한 산업이 존재하는 매력 있는 지역이지만 인구감소가 전국 평균보다 높은 편임
- 기호쿠쵸는 에히메현 남부의 중산간지대에 위치하는 마을로 2018년 4월 1일 현재 인구 10,154명으로 1970년에 16,788명에서 지속적

인 인구감소 추세에 있음

- 인구감소에 의해 지역을 지탱하는 사람들도 감소하고 있으며 지역 커뮤니티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도시기능(병원, 상점 등)을 잃어가고 있음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지역으로부터의 인구촉진지원, 다른 지역으로의 인구유출 억제 정책을 시행함

○ 정주촉진단지 뉴타운 기호쿠 마을 정비⁴⁹⁾

- 과소화, 고령화가 진행되어 도시부로부터의 U·I턴자를 위한 정주촉진단지 「뉴타운 기호쿠 마을」 정비
- 뉴타운의 총면적은 3.4ha 전 66구획으로 이루어짐.
- 제1기 24구획(분양개시 2009년~)
- 제2기 22구획(분양개시 2010년~)
- 제3기 20구획(분양개시 2014년~)
- 2018년 6월 28일 현재 제1기는 분양 완료, 제2기는 2구획, 제3기는 4구획이 미분양으로 분양 중에 있음



平成30年6月28日 時点

자료 : 기호쿠초 홈페이지

<그림 4-6> 분양지 구획도

49) 기호쿠초 홈페이지.

- 정주축진단지 뉴타운 기호쿠 마을 분양지의 개요⁵⁰⁾
 - 위치는 자동차전용도로 인터체인지까지 10km, 인접하는 우와지마시(宇和島市)까지 15km로 입지조건이 좋고 생활거점으로 좋은 지역임
 - 교통, 쇼핑, 교육, 의료 등 생활에 편리한 시설이 주변에 입지하고 있음
 - 도시계획구역 내, 용도지역 미지정, 방화지역 미지역
 - 폭 6m~12m로 포장이 되어 있으며 보도를 포함한 너비, 사도의 부담 없음
 - 건폐율 70%(모서리 획지는 80%), 용적율 200%
- 분양신청 자격
 - 실제 거주를 위한 주택 건설을 위해 택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
 -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에 주택을 건설하고 계속 거주할 사람. 위반할 경우 20%의 위약금을 징수함
 - 신청 시 연령이 만 20세 이상
- 뉴타운 기호쿠 마을 정비의 특징⁵¹⁾
 - 젊은 세대의 구입이 용이하도록 연령별 비율 설정. 35세 미만 30%, 35세~45세 미만 20%, 45세~55세 미만 10%
 - 마을 이외의 구입자에게 이전비 지원: 동일 현의 경우 10만엔, 다른 현일 경우 50만엔
 - 주택에 설치하는 태양광발전시스템에 대하여 보조금 교부: 태양전지 최대 출력치×12만엔, 50만엔 한도
 - 마을 중심에 뉴타운을 건설하여 양육세대가 많고 마을 중심부 인구역지에 기여하고 있음

50) 기호쿠초 홈페이지.

51) 정주 등 지원을 위한 주택단지 정비(기호쿠초).



자료 : 정주 등 지원을 위한 주택단지 정비(기호쿠쵸)

<그림 4-7> 뉴타운 기호쿠 마을 풍경

2) 과소지역 유희시설 재정비사업

- 과소지역 시정촌을 대상으로 과소지역의 유희시설을 재활용하여 지역진흥이나 도시주민과의 지역 간 교류를 도모하는 사업에 지원함. 지역의 거점이 되는 시설을 정비하는데 활용가능하며 산업진흥, 관광·교류, 교육·인재육성, 마을 만들기 등의 사업 분야가 있음

사업명	과소지역 유희시설 재정비사업
사업목적	과소지역의 폐교사, 빈집 등을 활용하여 지역진흥이나 도시주민과의 지역 간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생산가공시설, 자료전시시설, 교육문화시설, 지역예능·문화체험시설 등의 정비에 필요한 경비 보조
사업주체	과소지역 시정촌(市町村)
교부사업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재 사용되지 않는 가옥, 폐교사, 기타 본래 용도를 폐지한 시설 등 유희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2. 사람·문화·정보 등 도시부와 지역 간 교류를 도모하고, 교류 시 도시부와 연계할 것. 또는 지역 진흥에 기여하는 경우 3. 일체화된 개념으로 지역의 기존시설과 조화를 이루고 이러한 시설과 연계하여 교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4. 자연환경이나 마을경관에 배려하는 경우 5. 문화, 역사 등 지역의 특성·매력을 활용하는 경우
교부대상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요시설 수리비 유희시설 수리에 필요한 경비, 단 청사 등 공용으로 제공하는 부분

	은 제외 2. 기능 확장과 관련된 부대시설, 설비 (1) 시설비: 아틀리에·갤러리, 임대점포(판매시설, 체험공방 등), 경관정비시설(경관의 유지, 향상에 기여하는 안내판, 유도로, 조명 등) (2) 설비비: 정보통신설비(단 청사 등 공용으로 제공하는 부분은 제외)
교부 한도액	교부대상경비*1/3 (사업 당 60,000천엔)
실시기간	1개년도 이내 원칙. 복수연도 사업이라 하더라도 교부대상이 되는 것은 당해 연도 내에 실시하는 사업에 한함
사업 재시 연도	2010년
관련부처	총무성

자료 : 총무성, 과소지역 등 자립활성화추진교부금 교부요강(안).

총무성, 과소지역취락재편정비사업 및 과소지역유휴시설재정비사업 모집요령.

(표 4-30) 과소지역 유휴시설 재정비사업 실적

	시정촌수	교부 결정액(천엔)
2015년도	2	13,351
2016년도	6	66,259
2017년도	2	10,833
2018년도	3	28,939

자료 : 총무성, 2015년도-2018년도 과소지역 등 자립활성화추진교부금 교부결정.

사례1) 쿠루츠 랜 투 레벤 오오미시마(大三島)⁵²⁾⁵³⁾

- 오오미시마는 동서로 긴 세토(瀬戸)내해의 중앙에 위치하고 예로부터 규슈(九州)지역과 긴키(近畿)지역을 연결하는 해로의 중간지점으로 발달했던 곳임. 이 섬은 관광지로 유명한 곳으로 전국에서 방문자가 많이 찾는 곳임

52) 유휴시설 활용지원제도 및 활용사례에 대하여, 내용 요약.

53) 이주체험시설 쿠루츠 랜 투 레벤 오오미시마, 내용 요약.

- 오오미시마는 저출산 고령화가 극심하고 유희농지나 경작방치지가 증가하고 있어 농지의 유효활용을 도모하여 도시주민과의 이주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폐교사를 활용하여 체류형농원시설 「랜 투 레벤 大三島」를 오픈함
- 전국적으로 이주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시설을 이용하고 있으며 이주촉진으로 이어지고 있음. 이 시설은 모두 16동으로 입주하면 최장 5년 동안 체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빈집이 생기기 어렵고 빈집이 생겨도 신청자가 많아서 경쟁률이 높음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이 시설에 인접하는 구보육원을 활용하여 지역의 농업, 어업체험이 가능하고 단기간 체류할 수 있는 이주체험시설(최장 2주간 체제)인 「쿠루츠 랜 투 레벤 大三島」을 오픈함. 쿠루츠 랜 투 레벤은 독일어로 단기 농촌생활을 의미함
- 쿠루츠 랜 투 레벤이 있는 장소는 처음에 초등학교였으나 1985년 폐교가 된 후 목조건물의 교사는 철거되고 보육원이 건설되지만 2011년 3월 폐원이 됨. 보육원을 쿠라츠 랜 투 레벤으로 활용하자고 제안한 것은 랜 투 레벤의 관리조합으로 체류형농원시설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문제점이나 이주희망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2012년에 수리를 하여 2013년 4월에 오픈함. 연면적은 375㎡, 욕실, 화장실이 있는 7평의 방 1개와 10평 방 2개, 공동조리실 등을 정비함
- 숙박은 최장 2주일이며 이용료는 첫날 3000엔(초등학생 이하 2000엔), 2일째 이후는 하루 2000엔(초등학생 이하 1000엔)으로 원칙은 7일전에 신청해야 함



쿠루즈 렌 투 레벤 大三島 전경



방 내부



연수실

자료 : 이마바리(今治市)시 홈페이지.

<그림 4-8> 쿠루즈 렌 투 레벤 大三島

사례 2) 시마네현(島根縣) 마스다시(益田市) 마사고(眞砂)지구⁵⁴⁾

- 마사고지구 지역자치조직은 2001년 중학생 이상의 주민을 대상으로 지역에 대한 요구사항을 조사한 결과 지구 내에 음식점이나 카페가 없어 주민이 언제든 모일 수 있는 장소가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아서 이를 계획에 반영함
- 지구자치조직은 공민관과 초중학교가 모여 있는 지구 중심부에 유희시설인 JA지소에 착목하여 JA로부터 저가로 건물을 임차하고 총무성의 교부금을 활용하여 수리한 후 2016년 11월에 교류거점시설을 오픈함. 시설의 명칭은 지역주민의 공모에 의해 결정한 것으로

54) 산인중앙신문 마스다 마사고 「히라야마 후모토」 오픈 주민운영교류카페, 내용 요약.

마을에서 바라보는 일상적인 산을 의미함

- 매주 화, 금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셀프서비스 카페로 개점, 지역 농가 약 10명이 교대로 쌀이나 계절채소를 이용한 향토음식을 제공하는 농가 레스토랑을 비정기적으로 운영하고 고령자를 위한 교류살롱으로도 개방하고 있음



자료 : 산인중앙신문(2017.2.23.)

<그림 4-9> 히라야마 후모토 모습

- 3) 「작은 거점」을 중심으로 한 「고향취락생활권」 형성 추진사업
 - 작은 거점 형성에 기여하는 국토교통성의 취락활성화추진사업. 정든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생활서비스 기능 등이 도보권 내에 집약되고 주변 취락과 네트워크가 정비된 작은 거점 형성이 필요함
 -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공익서비스기능을 제공하기 위해 유희시설을 활용하고 원스톱서비스 실현 및 서비스비용의 저감을 도모하는 사업이 대상(기존시설을 활용하는 경우에만 설계, 부대시설 정비도 포함). 하드웨어적 시설정비에 중점을 두고 지역진흥에 관한 특산품 개발 등 소프트웨어 사업, 생산가공시설 등은 대상에서 제외함
 - 2015년부터 계획 작성 및 사회실험에 2년간 한도, 연간 300만엔 정액보조가 신설되었으나 2018년 현재는 시설의 재편·집약에 필요한 시설의 정비(조사, 설계, 측량, 시험, 공사시공, 공사감리, 부대시설

정비)에 직접 필요한 경비, 또는 시설정비와 일체화된 시설정비를 전제로 한 조사 등에 보조. 단 사업주체가 시정촌 이외의 경우 해당 경비에 대한 시정촌의 보조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함.

사업명	작은 거점을 중심으로 한 고향취락생활권 형성 추진사업
사업목적	인구감소나 고령화가 선행, 가속하는 지방 조건불리지역에서 공익서비스, 생활서비스, 지역 활동 등의 유지확보를 위해 필요하게 되는 기존 시설을 활용하여 시설을 정비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여 취락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
사업주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지역을 포함하는 시정촌(市町村), • 작은 거점 형성에 기여하는 활동을 하는 것이 목적인 비영리활동법인 혹은 지방자치단체가 인정한 마을만들기 협의회(NPO)
사업 대상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낙도진흥법에 의해 지정된 낙도진흥대책실시지역 • 후설지대대책특별조치법에 의해 지정된 후설지대 • 산촌진흥법에 의해 지정된 진흥산촌 • 반도진흥법에 의해 지정된 반도진흥대책실시지역 • 과소지역자립특별촉진법 규정에 의해 공시된 지역
보조대상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존 공공시설의 재편, 집약을 위한 사업 2. 1의 사업과 병행하여 작은 거점을 포함하는 생활권에서 소실 또는 소실 가능성이 있는 기능 중에서 해당 생활권을 유지, 재생하는데 필요한 기능(생활필수기능)이 있는 시설 정비를 도모하는 사업 3. 기존 공공시설의 재편·집약을 도모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복수의 생활권필수기능이 있는 시설을 정비하는 사업(해당 생활권에서 재편·집약을 도모할 기존공공시설이 없는 경우에 한함) 4. 기존공공시설의 재편·집약에 의해 폐지가 되는 시설의 철거, 철거지 활용을 위한 철거 후 부지정리 사업
보조율	시정촌은 2분의 1 이내, NPO법인 등은 3분의 1 이내(간접보조)
사업기간	3개년 이내
사업 개시연도	2008년
관련부처	국토교통성

자료 : 취락활성화추진사업은 국토교통성, 「작은 거점」을 핵으로 한 「고향취락생활권」형성추진사업실시요령. 보조율은 국토교통성, 「작은 거점」을 핵으로 한 「고향취락생활권」형성추진사업 취락활성화추진사업보조금교부요령.



2017년도 작은거점 형성에 관한 실태조사(2017년 8월 내각부지방창생추진사무국)에서 답변한 작은 거점 908개소의 각 조사항목(대상범위, 주요시설 등)의 과반수를 차지한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 자료 : 내각부(2018), 작은 거점·지역운영조직의 형성에 관한 대응.

<그림 4-10> 작은 거점, 취락생활권의 이미지

(표 4-31) 「작은 거점」을 중심으로 한 「고향취락생활권」 형성추진사업 추진실적

구분	건수	집행금액(천엔)
2013년도	10	285,000
2014년도	11	214,000
2015년도	10	318,000
2016년도	12	259,000
2017년도	3	122,000

자료 : 국토교통성, 2016년도-2017년도 행정사업 리뷰시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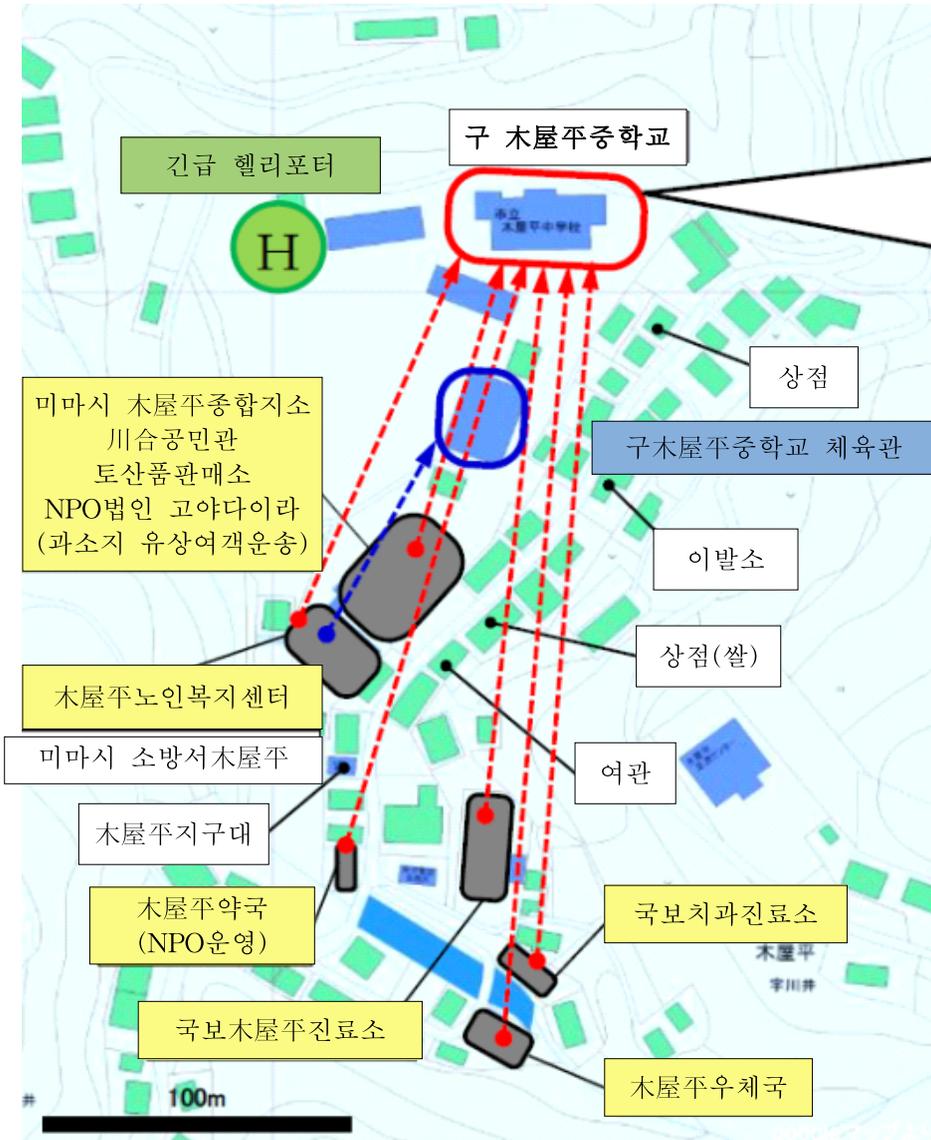
사례1) 도쿠시마현(徳島縣) 미마시(美馬市) 고야타이라(木屋平)지구

- 고령화가 진행되는 산간부 지역에서 폐교가 된 중학교를 활용하여 행정, 쇼핑, 의료 등 일상생활서비스 기능을 집약. 주민 유지에 의해 설립된 NPO법인이 유상여객운송에 의한 고령자 이동서비스나

안부확인, 생활상담 등 돌봄, 농림작업 도우미 등 사업 실시

사업명	작은 거점을 핵으로 한 고향 취락생활권 형성추진 사업
사업기간	2014년-2016년도
지구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취락, 715명(402세대) • 고령화: 고령화율 58%(2015년 7월 1일 현재) • 시 중심부까지 약 30km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5년 합병 전 중심부(관청 소재지)였던 취락에 상점, 진료소, 우체국 등이 입지(지소 등 시설 노후화)
주요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공공시설(구 중학교)를 활용한 서비스 거점 정비 • 수리 후 시설(예정) <p>1층 : 진료소, 약국, 우체국, 직판장(상점기능) 등 2층 : 시 종합지소, 치과진료소 등 3층 : 공민관 기능(회의실, 도서실, 조리실), NPO법인사무실 체육관 지하: 소방서 분소</p>
사진	

자료 : 국토교통성, 기존공공시설의 활용추진 「작은 거점」을 핵으로 한 「고향취락생활권」 형성추진사업.



자료 : 국토교통성, 기존공공시설의 활용추진 「작은 거점」을 핵으로 한 「고향취락생활권」 형성추진사업.

<그림 4-11> 기존 공공시설을 활용한 서비스 거점 정비 이미지

사례2) 교토후(京都府) 난탄시(南丹市) 미야마초(美山町) 히라야(平屋)지구

- 미야마초는 교토후의 거의 중앙에 위치하는 마을로 자연이 풍부한 농산촌지역임. 히라야지구에는 길의 역(미치노에키,道の驛)에 JA의 점포가 있었으나 JA광역합병이 진행되면서 점포폐쇄가 결정됨. 주민자치조직이 중심이 되어 지구주민들과 논의하여 지역활성화에 활용하는 조건으로 행정의 JA로부터 점포를 취득하여 사업이 시작됨

사업명	작은 거점을 핵으로 한 고향 취락생활권 형성추진 사업
사업기간	
지구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취락, 855명, 333세대(2010년 10월 1일 현재) • 2000년에 JA점포(음료, 일용품 판매업)이 폐지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유지 87명이 출자하여 JA점포 업무를 계승하기 위해 (유)네트워크 히라야 설립 • 미야마초(당시)는 JA로부터 점포를 매수하고 수리하여 상회사에 무상 대여 • ATM, 농업진흥종합센터(관광협회안내소 포함), 고령자커뮤니티센터 등 설치 • 전국에서 보기 드물게 기존시설을 활용한 길의 역(미치노에키 道の驛)으로 등록 • 주변에는 진료소, 보건복지센터 설치 • 주민들을 위한 식료, 일용품 외에 관광객을 위한 상품도 취급하는 점포로 재생 • 민간버스, 커뮤니티버스 정류장이 안전하고 디맨드택시 운행도 실시하여 거점과 각 취락과의 교통수단 확보
사진	

자료 : 국토교통성(2015), 작은 거점 만들기에 관한 국토교통성의 대응.

4) 과소지역 등 취약 네트워크권 형성 지원사업

- 작은 거점, 지역운영조직 형성을 위한 총무성의 시책. 「마을·사람·일자리창생 종합전략의 「작은 거점」 형성관련 사업. 이 사업은 종전의 「과소취락 등 자립재생 대책사업」을 발전시켜 2015년에 과소지역 등의 지속적인 취락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신설된 사업. 국토교통성의 보조금을 활용하지 않는 소프트웨어 사업에 한정되어 있음

사업명	과소지역 등 취약 네트워크권 형성지원사업
사업목적	과소취락에서 심각하고 긴급한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기간취락을 중심으로 주변 취락 사이에 취락 네트워크권을 형성하여 생활의 영위(일상생활 지원 기능)를 확보하고 생업의 영위(지역산업)를 진흥하기 위해 지역커뮤니티조직 등의 활동을 국가가 지원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취락을 유지·활성화시키는 것
사업주체	지역커뮤니티조직
대상지역	<p>다음의 지역을 포함하는 지역으로 복수 취락으로 구성되어 주민의 일체성이 확보된 지역에서 의료·복지대책, 일상생활 교통 확보, 지역산업·생업의 진흥, 지역전통문화의 계승·진흥 등 취락기능을 유지 및 활성화를 공동으로 행하는 지역(취락 네트워크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소지역자립특별촉진법 규정에 의해 공시된 지역 • 특정농산촌지역의 농림업 등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정비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시된 특정 농산촌지역 • 산촌진흥법에 의해 지정된 진흥산촌 • 반도진흥법에 의해 지정된 반도진흥대책실시지역 • 낙도진흥법에 의해 지정된 낙도진흥대책실시지역 • 혹설지대대책특별조치법에 의해 지정된 혹설지대 • 오키나와진흥특별조치법이 규정하는 오키나와 • 아미미군도진흥개발특별조치법이 규정하는 아미미군도 • 오가사와라제도진흥개발특별조치법이 규정하는 오가사와라제도 • 벽지공공시설 종합정비를 위한 재정상의 특별조치법이 규정하는 벽지 • 기타 상기에 준하는 지역과 총무대신이 인정하는 지역

교부대상	1. 취락 네트워크권 계획 책정 2. 지역커뮤니티조직의 체제 확립 3. 지역커뮤니티조직에 의한 활성화계획 책정 4. 지역커뮤니티조직이 활성화계획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사업(소프트웨어 사업이 중심)
교부 한도액	사업 당 500만엔~2,000만엔
실시기간	1개년도 이내 원칙
사업 개시 연도	2015
관련부처	총무성

자료 : 총무성, 과소지역 등 취락 네트워크권 형성지원사업 실시요강(안).

총무성, 과소지역 등 자립활성화추진교부금교부요강(안).



관공서 소재 지역 (지역내외)
(관공서, 병원, 상점가, 사업소, 역)

자료 : 총무성(2017), 과소지역 등 자립활성화추진사업 교부금에 대하여.

<그림 4-12> 취락 네트워크권 이미지

(표 4-32) 과소지역 등 취약 네트워크권 형성 지원사업 실적

	시정촌수	교부 결정액(천엔)
2015	40	494,000
2016	34	443,000
2017	29	408,728
2018	18	271,720

자료 : 총무성, 과소지역 등 자립활성화추진교부금 교부결정.

사례1) 니시우치(西内)지구 취약 네트워크권 나가노현(奈良縣) 우에다시
무라(上田市)

- 2016년도 과소지역 등 취약 네트워크권 형성지원사업의 지역과제에
종합적으로 대응한 사례

사업명	웰컴 싱글맘 온천이주 새로운 행복실감 사업
총사업비	20,000천엔
네트워크권의 개요·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취락(약 320세대, 약 690명) • 고령화(고령화율 약 41%) • 아동 수 감소(2006년 89명→2015년 47명) • 지구 내 중심지에 있는 온천 방문객 감소 경향 • 온천관광객의 감소로 온천가 중심가로 폐업 점포 증가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아세대를 주 대상으로 하는 이주자 촉진 • 이주자를 포함한 다세대에 의한 지역만들기와 전통문화계승
주요사업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온천이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천 중심거리의 빈집을 수리하여 지역주민이나 이주자, 관광객이 교류할 수 있는 거점 정비 • 인터넷을 활용하여 이주희망자에게 실제로 지구 내에서 숙박하는 이주체험 실시 • 이주자나 교류자의 만족도 향상을 목적으로 한 연수 실시 2. 전통문화계승과 매력 있는 지역만들기 촉진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의 전통예술인 일본 북을 수도권 주민과 교류하는 수단

	<p>으로 연주체험을 통한 교류 추진</p> <p>3. 지역 활성화계획의 재검토, 책정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지역 활성화 계획을 검증하여 새로운 계획 책정 <p>4. 도시주민과의 교류 촉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지 캠프장을 재생하여 자연체험활동, 도시 간 교류 및 모임의 장으로 이용함으로써 지역주민과의 교류 촉진 • 보이스카우트단체 등에 관광 홍보 <p>5. 특산품 개발, 판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로운 야생금수의 가죽이나 나무, 대나무를 이용한 디자인 가공품을 개발 및 판매 <p>6. 향토음식의 보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작 방치지를 재생하여 재래작물(고구마) 생산 및 판매 • 재래작물을 이용한 향토요리 개발 및 판매
사진	

자료 : 총무성(2018), 2016년도관 과소대책의 현황, 재작성.

총사업비, 사진 : 총무성, 2016년도 과소지역 등 자립활성화추진교부금 과소지역 등 네트워킹권 형성지원사업개요일람.

사례2) 츠바키(椿)지구 취락 네트워크권 야마가타현(山形縣) 이데정(飯豊町)

- 2016년도 과소지역 등 취락 네트워크권 형성지원사업의 지역과제에 종합적으로 대응한 사례

사업명	츠바키지구 전원공간 재생사업
총사업비	15,552천엔
네트워크권의 개요·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취락(약 370세대, 약 1,190명) • 고령화(고령화율 약 29.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구 내에는 생선식품가게가 없음 • 지구 내의 거류거점이었던 노포과자점이 타 지역으로 이전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빈 점포를 활용한 주민의 활동, 교류의 장이 되는 거점시설 설립 • 창업 80여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츠바키된장의 품질향상, 판로 확대
주요사업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산업진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빈 점포를 거점시설로 정비한 농산물직판장 「산지직송호프관 츠바키」 개업 • 거점시설 내에 가공소 기능을 추가하고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특산품 개발 • 냉장시설이나 포장기기 정비로 츠바키된장의 안정적인 공급량과 품질 확보 2. 생활의 안전·안심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대 간 교류를 위한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 카페기능을 부가하거나 사회복지협의회와 협력하여 건강교실 「따뜻한 살롱」 실시 검토
사진	

자료 : 총무성(2018), 2016년도판 과소대책의 현황, 재작성.

총사업비, 사진 : 총무성, 2016년도 과소지역 등 자립활성화추진교부금 과소지역 등 네트워킹권 형성지원사업개요일람.

5) 과소지역 등 자립 활성화 추진사업

- 과소지역 시정촌을 대상으로 과소지역의 산업진흥, 생활의 안심·안전 확보대책, 정주촉진대책 등 긴급한 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을 지원하는 것. 과소지역의 긴급한 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사업에 의한 대책과 과소지역 시정촌이 실시하는 선진적이고 과급효과가 있는 모델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중심 내용

사업명	과소지역 등 자립 활성화 추진사업
사업목적	과소지역의 매우 중요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실시하는 소프트사업에 필요한 경비 보조
사업주체	과소지역 시정촌 등
대상사업	1. 산업진흥(스몰 비즈니스 진흥) 2. 생활의 안심·안전 확보 대책 3. 취락의 유지·활성화대책 4. 이주·교류·젊은이 정주촉진 대책 5. 지역문화 전승대책 6. 환경공헌시책의 추진
교부대상 경비	1. 조사비 과소지역의 긴급한 과제의 대책에 필요한 조사연구사업 경비 2. 자립 활성화 추진비 (1) 산업진흥(특산품 개발·판매촉진 PR사업 등) (2) 생활의 안심·안전 확보대책(커뮤니티버스·디맨드 교통시스템 정비, 의사확보, 순회의료 등) (3) 취락의 유지·활성화 대책 (4) 지역문화 전승 대책 (5) 환경공헌 시책의 추진 (6) 기타 3. 시정촌 등 사무비 조사연구사업 또는 자립 활성화 사업 실시에 필요한 직원 여비, 소모품비, 인쇄비, 통신운반비 등 사무적 경비
교부 한도액	사업 당 1,000만엔 이내
실시기간	1개년도 이내 원칙.
사업 개시 연도	2010
관련부처	총무성

자료 : 총무성(2018), 2016년도판 과소대책의 현황.

(표 4-33) 과소지역 등 자립 활성화 추진사업 실적

구분	시정촌수	교부 결정액(천엔)
2010	32	320,000
2011	30	300,000
2012	29	290,000
2013	14	140,000
2014	24	240,000
2015	8	80,000
2016	11	110,000
2017	18	177,029
2018	29	284,219

자료 : 총무성, 과소지역 등 자립활성화추진교부금 교부결정.

사례1) 니가카현(新潟縣) 도호카마치시(十日町市)⁵⁵⁾

- 개요
 - 인구 : 54,917명(2015년)
 - 고령자비율 : 36%(2015년)
- 1년 중 3분의 1 이상이 적설기간이라는 전국 유수의 혹설지대인 도호카마치시는 주변이 산으로 둘러싸인 중산간지역으로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과소, 고령화가 심하고 빈집과 폐교가 증가하는 등 취락의 커뮤니티 활력의 저하가 과제.
-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의 자원이나 매력을 재발견하는 것이 지역활성화의 실마리라고 생각함. 지역 이외의 사람들과 협력하여 자립하는 지역을 지향하기 위해 국제전 「대지의 예술제」를 개최함
- 이것을 계기로 빈집, 폐교 활용, 재생한 미술관, 레스토랑, 숙박시설의 운영, 계단식논 보전활동, 상품개발 등 취락과 지역기업이 함께 참여하여 지역의 자립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음. 아트 프로그램과 계단식논 보전활동을 통해 도시와 지역이 협력함으로써 종합적으로 지역을 매력을 높이고 있음

55) 2017년도 과소지역자립활성화 우수사례표창 내용 요약.



자료 : 2017년도 과소지역자립활성화 우수사례표창

<그림 4-13> 도호카마치시 과소지역자립활성화사업

사례2) 도쿠시마현(德島縣) 나카초(那賀町)⁵⁶⁾

- 개요
 - 인구 : 8,402명(2015년)
 - 고령자비율 : 46.9%(2015년)
- 도쿠시마현은 신을 모시는 신사 경내에 설치된 농촌무대가 현재에도 각 지역에 남아 있음. 대부분 메이지시대에 건축되어 취락 주민들의 오락의 장으로서 전통인형극이 열림. 나카초는 이러한 농촌무대가 가장 많이 남아 있는 지역으로 약 40동이 있음
- 산간지역에 있는 나카초는 과소, 고령화가 진행되고 산업이나 전통문화활동에 있어서도 후계자 부족이 심각한 상황임. 마을에 남아 있는 인형극을 위한 농촌무대가 전국에서 가장 많고 마을에 유일하게 남아 있는 무대가 고령화에 의해 존속이 위험한 상황임
- 지역청년모임이 중심이 되어 인형극모임을 결성하고 인형극을 통해서 전통예술을 계승하고 농촌무대를 중심으로 지역이 계승해 온 역사적 문화자원의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고 지역주민과 연계하여 활용함으로써 지역의 매력을 높이고 교류인구 증가에 기여하고 있음 현재는 행정기관과 연계하여 인형극 뿐만 아니라 음악이벤트나 레스토랑으로 활용하는 등 새로운 가능성을 추구하고 있음

56) 2017년도 과소지역자립활성화 우수사례표창 내용 요약.



자료 : 2017년도 과소지역자립활성화 우수사례표창

<그림 4-14> 나카초 과소지역자립활성화사업

6) 취락지원요원 제도

- 취락지원요원은 지역의 실정을 잘 알고 취락대책의 추진에 관한 노하우·식견을 갖춘 인재가 지방자치단체의 위촉을 받아 행정과 연계하고 주민과 함께 취락을 점검하거나, 주민과 주민, 주민과 행정 사이에서 취락의 현황, 과제 등에 대해 의견교환을 촉진함. 과소문제 간담회에서 제안되어 2008년도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입하였으며 2013년 「과소지역 등 취락대책 추진요강」을 제정하여 취락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취락대책
 - 취락점검 :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실정을 파악하는 것과 취락주민 스스로가 취락의 현황과 과제를 재인식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 인구·세대수 동향, 의료·복지 서비스 수급 상황이나 생활물자조달 방법 등 생활환경, 청소활동이나 눈 처리 등 취락 내에서 상호부조현황, 농지·산림·공공시설 등 관리상황, 취락의 유형·무형자원, 다른 취락과의 협력 가능성 등에 대해 지역을 조사, 관리하는 활동
 - 의견교환 촉진 : 취락 점검의 결과를 활용하여 주민과 주민이나 지방자치단체 사이에서 취락의 현황 및 과제, 향후 방향성에 대해

의견교환을 촉진하는 활동.

- 유지·활성화 대책 : 취락점검이나 의견교환을 통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취락의 유지·활성화 대책을 적극적으로 실시함. 예를 들면 생활교통 확보, 돌봄 서비스, 전통문화계승, 특산품을 활용한 지역 재생, 복수취락 연계 등
- 지방자치단체가 「과소지역 등 취락대책 추진요강」에 근거하여 취락지원요원을 활용하는 경우, 취락지원요원 1인당 350만엔을 한도로 특별교부세조치를 할 수 있음. 자치회장 등이 취락지원요원을 겸무하는 경우에는 40만엔을 한도로 함
- 취락점검 실시에 필요한 경비, 취락의 방향성에 관한 의견교환 등의 실시에 필요한 경비(의견교환을 위한 자료인쇄비, 코디네이터의 사례금, 여비 등), 지역실정에 따라 취락의 유지·활성화 대책에 필요한 경비(출장비, 소모품, 취락지원요원의 연수비, 외부전문가 초청에 필요한 경비 등)에 재정지원을 함
- 2017년도 현재, 취락지원요원을 설치한 도도부현 및 시정촌은 3부현 300시정촌이며, 전임 취락지원요원 수는 1,195명, 겸임 취락지원요원 수는 3,320명임⁵⁷⁾
- 취락지원요원 수는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예를 들면, 2008년 이와테현(岩手縣) 타노하타무라(田野畑村)에서는 촌내 24취락 중 3취락에 3명의 취락지원요원(지역코디네이터) 설치. 2010년 군마현(群馬縣)의 경우 전체 14개 과소지역 시정촌 중 2시정, 5지구를 모델사업대상지구로 선정하고 3명의 취락지원요원을 설치함
- 2017년 10월 31일 현재, 2017년도에 활동하는 취락지원요원을 조사한 결과 전임요원은 남성이 62%로 여성보다 많지만 연령별로 보면 20대~40대에 여성지원요원이 60%이상을 차지함⁵⁸⁾. 또한 취락지원요원의 배치상황은 고령화율이 높은 지역이 가장 많고 취락

57) 총무성, 2017년도 취락지원요원 설치현황.

58) 총무성 지역력창조그룹과 소대책실(2018), 취락지원요원에 관한 데이터 분석.

지원요원 배치를 희망하는 취락, 취락의 인구와 세대수가 적은 취락 순으로 많음

(표 4-34) 취락지원요원

	전임지원요원	겸임지원요원	실시지자체수	도도부현수	
				시정촌수	시정촌수
2008년	199	약2,000	77	11	66
2009년	449	약3,500	122	9	113
2010년	500	약3,600	147	13	134
2011년	597	약3,700	158	9	149
2012년	694	3,505	192	6	186
2013년	741	3,764	196	7	189
2014년	858	3,850	221	5	216
2015년	994	3,096	241	3	233
2016년	1,158	3,276	281	4	277
2017년	1,195	3,320	303	3	300

자료 : 총무성, 취락지원요원, 재구성.

사례1) 시마네현(島根縣) 마스다시(益田市) 취락지원요원

- 마스다시의 취락지원요원 설치 목적은 지역의 전통적인 음식문화나 지역자원을 테마로 하여 농촌체험이벤트 실시, 취락행사, 작업 도우미를 외부에서 모집하는 자원봉사제도를 운영하여 방문객이 지역의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하여 단기체류, 장기체류, 정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
- 성과로서는 자원봉사제도에 의해 지역주민의 생활 편리성 향상, 전통적인 행사나 풍습에 대한 가치 재인식, 농촌체험 이벤트에 의해 지역에 다양한 보물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자부심이나 자신감 회복, 젊은이들과의 교류 확대, 자원봉사제도에 의해 취락이 유지될 수 없었던 공동 작업이 가능해짐

益田市 데이터	인구(2018.3.31. 현재)	46,224명
	표준재정규모(2009년도)	14,457,960천엔
	지역진흥관련법 지정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소지역자립촉진특별조치법 지정지역 • 산촌진흥법지정지역 • 낙도진흥법지정지역
시책 데이터	시책명	마을만들기 코디네이터제도 사업
	활동인원	1명
	사업개시연도	2008년 4월부터
	예산	4,000천엔
모집방법	모집인원	10명
	활동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발신 • 정주대책 • 취락대책 • 가공 그룹 육성 • 관광대책 • 자원봉사 활동지원

자료 : 재단법인 자치연합센터(2011), 외부인재 등 활용에 관한 조사연구회 보고서, 재구성.

사례2) 홋카이도(北海道) 니세코초(ニセコ町)

- 니세코초는 고령화, 인구감소에 의해 지역활동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음. 주민과 행정의 협력이 지역의 실정이나 시대에 대응한 취락의 유지, 활성화대책을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특히, 기간산업인 농업의 지원을 중시하고 외부인재가 아닌 농업개량보급원의 성격을 갖는 행정직원 OB인 주민을 취락지원요원으로 위촉함
- 취락재편준비위원회를 서포트하여 취락합병을 실현시킴. 취락재편 협의를 계기로 취락의 현황이나 장래상을 인식하고 의견교환을 함. 취락지원요원으로서 마을 조직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설명을 하고 지역모임에 참가하면서 마을을 순회함

二七〇町 데이터	인구(2010.7.1.현재)	4,667명
	표준재정규모(2009년도)	2,635,659천엔
	지역진흥관련법 지정현황	• 과소지역자립촉진특별조치법 지정지역
시책 데이터	시책명	니세코초 취락지원요원
	활동인원	1명
	사업개시연도	2010년 4월부터
	예산	4,000천엔
모집방법	모집인원	1명
	활동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과 행정, 취락과 취락의 연락조정 • 취락의 추진체제, 연계체계 만들기 지원 • 취락 유지활성화 대책 지원 • 영농지도, 경영지도, 신규 취농지원 • 농업행정 지도, 조언

자료 : 재단법인 자치연합센터(2011), 외부인재 등 활용에 관한 조사연구회 보고서, 재구성.

7) 지역부흥협력대

- 2008년 「지역력창조플랜」의 핵심제도로 제창되어 2009년도부터 총무성에서 제도화 함.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지역에서 과소지역 등 조건불리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생활의 거점을 옮긴 사람을 1년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지역부흥협력대로 위촉 가능함
- 지역부흥협력대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면서 지역브랜드나 지역 특산품 개발·판매·홍보, 농림수산업에 종사하거나 주민의 생활지원 등 지역협력활동을 수행하면서 해당 지역에 정주·정착하도록 함
- 지역부흥협력대는 자신의 재능 및 능력을 활용할 수 있고 이상적인 생활이나 보람을 느낄 수 있으며, 지역은 젊은 외부인의 참신한 시점과 대원의 열정과 행동력으로 자극을 받을 수 있음,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에서 할 수 없었던 유연한 지역재생이나 주민이 증가함으로써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경비에 대해 특별교부세와 보통교부세에 의해 재정 지원을 함
 - 대원 1인당 보수는 연간 200만엔~250만엔, 활동비는 연간 150만엔~200만엔으로 최대 400만 엔을 상한으로 하여 대원의 능력 및 지리적 조건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
 - 지역부흥협력대 등의 창업·사업 계승에 필요한 경비는 최종연차 또는 임기만료 전년도에 창업하는 사람 또는 사업을 계승하는 사람은 최대 1인당 100만 엔을 지원하고 지역부흥협력대 모집에 필요한 경비는 1단체 당 최대 200만 엔 지원함
 - 도도부현이 실시하는 지역부흥협력대를 대상으로 하는 연수 등에 필요한 경비는 2016년도부터 보통교부세에 의해 재정 지원함
- 2017년 현재 지역부흥협력대로 4,976명, 997단체가 활동하고 있으며, 대원의 약 40%는 여성, 대원의 약 70%는 20-30대, 임기종료 후 약 60%가 해당 지역에 정주하고 있음⁵⁹⁾

(표 4-35) 지역부흥협력대

	대원수	지자체수
2009년	89	31
2010년	257	90
2011년	413	147
2012년	617	207
2013년	978	318
2014년	1,511(1,629)	444
2015년	2,625(2,799)	673
2016년	3,978(4,090)	886
2017년	4,830(4,976)	997

- 총무성의 지역부흥협력대추진요강에 근거한 대원수
 - ()는 명칭을 통일한 「시골활동대원(농림수산성)」의 대원수를 합산한 인원
 자료 : 총무성, 지역부흥협력대에 대하여, 제구성.

59) 총무성, 지역부흥협력대에 대하여.

사례1) 홋카이도(北海道) 기모베츠초(喜茂別町) 지역부흥협력대

- 기모베츠초는 기간산업인 농업의 일손 부족, 고령화, 인구감소, 지역행사나 커뮤니티 쇠퇴 및 약화, 고령자의 일상생활 불안, 경작 방치 증가 등이 과제
- 지역부흥협력대 설치 성과로서는 지역주민의 생활의 편리성(쇼핑, 통원지원 등) 향상, 커뮤니티 유지나 생활지원에 의해 지역에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는 지역에 대한 자부심 회복,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해 순회점검을 실시하여 지역 환경 개선, 지역주민의 연대감 증가

喜茂別町 데이터	인구(2018.3.31.현재)		2,244명	
	표준재정규모(2009년도)		1,714,929천엔	
	지역진흥관련법 지정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소지역자립촉진특별조치법 지정지역 • 산촌진흥법지정지역 	
시책 데이터	시책명		취락지원 활용비	
	활동인원		10명	
	사업개시연도		2010년 4월부터	
	예산	총액	36,400천엔	
		내역	일반재원	36,400천엔
모집방법	모집기간		2010.4.15.-2010.5.7.(1차 모집) 2010.6.25.-2010.7.5.(추가 모집)	
	모집인원		10명	
	활용한 매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모집광고 •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이외(이주촉진기구) 모집광고 • NHK, 지방방송국의 방송, 지방신문기사 	
	선발방법		1차 서류심사, 2차 적성검사, 3차 집단면담과 집단토론	

활동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행사 등 커뮤니티활동 지원 • 지역단체 활동지원 • 고령자 등 생활지원 • 연수활동 • 농업지원 • 취락 순회 및 청소 활동 • 간담회, 문화활동, 신문발행 등 기획사업 • 창업, 취업활동
------	--

자료 : 재단법인 자치연합센터(2011), 외부인재 등 활용에 관한 조사연구회 보고서, 재구성.

사례2) 시가현(滋賀縣) 다카시마시(高島市) 지역부흥협력대

- 다카시마시는 젊은이들의 유출에 의한 인구감소, 지역산업(농업·벼농사)의 후계자 부족, 지역 활동의 축소, 지역 폐색감의 만연화 등이 과제
- 지역부흥협력대 설치 성과로서는 지역의 생활환경이나 행사, 풍습을 지역교과서로 정리함으로써 지역의 가치를 재인식하고, 지역주민의 지역에 대한 자부심이 높아졌으며, 이주, 교류자 수용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였음

高島市 데이터	인구(2018.4.1.현재)		48,132명		
	표준재정규모(2009년도)		17,553,859천엔		
	지역진흥관련법 지정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소지역자립촉진특별조치법 지정지역 • 산촌진흥법지정지역 		
시책 데이터	시책명		젊은이정주촉진프로젝트		
	활동인원		2명		
	사업개시연도		2008년 6월부터		
	예산	총액		34,461천엔	
		내역	현비		14,578천엔
일반재원			19,883천엔		

모집방법	모집기간	2009.8.12.-2009.9.14
	모집인원	2명
	활용한 매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 홍보지, 전 세대 배포 •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모집광고 •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이외(이주촉진기구) 모집광고 • 고향회귀페이지에서 배포 • 전국지 지역신문에 기사
	선발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문(지역부흥협력대 활동 취지 부합여부 판단) • 지자체 직원과의 면담
	활동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교과서 만들기 • 다카시마 개더링(gathering) 기획, 운영

자료 : 재단법인 자치연합센터(2011), 외부인재 등 활용에 관한 조사연구회 보고서, 재구성.

마. 시사점

- 기존의 농촌관련 정책과 차별화된 과소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중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과소대응 정책이 필요함
 - 일본은 1970년 과소지역대책긴급조치법 제정 이후 현재까지 4차례에 걸쳐 과소관련 법률에 근거한 과소대책으로 주민들의 생활을 뒷받침하는 교통기반, 정보통신기반, 하수도 등의 정비, 의료·복지의 확보, 산업진흥 등 일정의 성과를 올리고 있음.
 - 4차례에 걸친 과소법의 제정과 이를 근거로 한 과소대응 정책에 도 불구하고 과소지역의 인구는 감소추세에 있으나 인구요건, 재정력요건을 기준으로 하는 과소지역의 요건, 이에 따른 과소대응 정책이 시대의 조류에 맞춰 지속적인 변화를 보이면서 과소대응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아직 과소지역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나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는 상태로 과소지역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고

과소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며, 기존의 농촌관련 정책과는 차별화된 과소지역의 실정에 맞는 중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과소대응 정책이 필요함

- 지역의 실정을 고려한 지역맞춤형 과소대책이 필요함
 - 일본의 과소법은 지방자치단체(시정촌)가 주체가 되고 도도부현이 협력하고 국가가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음.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해 추진함으로써 지역의 특색과 상황을 고려한 과소대책을 모색할 수 있음

- 하드웨어 사업과 함께 소프트웨어 사업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과소대책이 필요함
 - 일본은 1970년, 1980년대는 생활기반정비 등 하드웨어 중심 정책에서 1990년대부터는 공공시설의 정비뿐만 아니라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지원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과소대응 정책으로 확대되었고, 이후에는 과소지역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 등 지속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음
 - 주요한 소프트웨어 사업으로는 과소지역 등 자립활성화 추진사업, 취약지원요원, 지역협력부흥대 등이 있으며 하드웨어 사업과 소프트웨어 사업이 함께 진행되는 사업으로는 과소지역 등 취약 네트워크 형성 지원사업, 작은 거점을 중심으로 한 고향취락 생활권 형성 추진사업 등으로 하드웨어 정비에도 지원을 하지만 소프트웨어 사업에 지원을 확대하고 있음
 - 과소대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이 정든 고향에서 풍요롭게 생활하는 것으로 일시적인 관광객, 이주자의 증가로 이익을 창출하는 것은 안정적인 생활을 실현하기 어려움. 주민이 안심하고 자립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공공시설의 정비 등 물리적인

환경의 개선이나 조성 이외에 산업의 진흥, 의료의 확보, 생활의 안심·안전 확보, 고령자 보건 및 복지, 정주 촉진, 생활환경의 정비 등 소프트웨어를 지원하는 정책이 함께 이루어지는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음

- 과소지역 중심지와 주변마을로 구성되는 생활거점(네트워크권) 형성이 필요함
 - 일본의 중산간지역에 있는 취락은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진행되어 취락의 기능이 저하되어 유지가 곤란한 취락이 증가하고 있으며 소멸의 가능성이 있는 취락도 많음
 - 한편, 취락은 주거의 장으로서 뿐만이 아니라 국토의 보전, 지역문화의 전승 등 다양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며 국민들에게는 소중한 고향이므로 취락을 유지, 보전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음
 - 우리나라도 마을의 사정은 일본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취락의 가치를 보전하고 정든 고향에서 지속적으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단일 취락으로는 다양한 문제 해결이 곤란하므로 중심이 되는 기간취락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능을 집적시키고 주변취락과 교통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것이 필요함
- 취락에 대한 지속적인 현황조사를 통해 기초데이터를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한 과소대책 마련이 필요함
 - 일본은 과소지역의 취락에 대한 조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취락지원요원제도를 활용하여 지역조사 및 유지관리에 노력하고 있음. 취락지원요원은 시정촌 직원과 협력하고 주민과 함께 상시적으로 취락의 점검을 실시하고 주민과 주민, 주민과 시정촌 사이에서 취락의 문제 및 향후의 방향성에 대한 의견교환을 충분히 함으로써 그 지역의 실정을 고려한 지역맞춤형

정책추진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음

- 일본의 과소소지역 취락 현황조사와 같이 마을의 인구·세대수 동향, 의료·복지 서비스 수급 상황이나 생활물자조달 방법 등 생활환경, 청소활동 등 상호부조현황, 농지·산림·공공시설 등 관리상황, 취락의 유형·무형자원, 다른 취락과의 협력 가능성 등의 조사를 통해 취락의 현황 및 과제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지역의 실정에 맞는 과소마을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과소대응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외부인적자원의 유치 및 활용이 필요함
 - 외부인적자원의 유치는 및 활용은 지역 활성화에 매우 중요한 시책이라 할 수 있음. 외부인적자원은 자신의 재능 및 능력을 활용할 수 있고 이상적인 생활이나 보람을 느낄 수 있으며, 지역은 지역 이외의 사람, 젊은이들의 참신한 시점과 열정, 행동력은 주민의식의 변화에 자극이 되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에서 할 수 없었던 유연하고 다양한 활동 등을 통해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음. 일본의 지역협력대원제도의 실시 후 현재까지 지역협력대원 임기 종료 후 약 60%가 그 지역에 정주하고 있어 외부인적자원이 취락을 지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정주로 이어져 지역의 과소화 방지 및 지역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제5장 농촌다움의 개념 정립 및 평가

제5장 농촌다움의 개념 정립 및 평가

제1절 농촌다움 배경

1. 농촌다움의 담론 형성

가. 이론적 논의에서 농촌다움 배태 과정

- 외생적 쇄신론: 농촌다움의 이식과 재편
 - 논의 기초 : 농촌 (근)현대화를 위한 정부주도 성장론과 하향식 개발론
 - 배경 이론 : 중심지론, 지역쇄신론, 기초수요이론, 도농통합 정주권론, 성장의 극(growth pole)인 도시를 중심으로 한 지역성장과 서비스 공급 전략
 - 농촌다움의 양태 : 물적 환경을 중심으로 도시다움을 모방하면서 산업화된 경관을 획일적으로 양산함으로써 근대적 지향을 완성하는 것으로 인식
 - 외생 농촌다움의 이식 : 엘리트가 창출해낸 농촌다움을 새로운 계층의 준칙으로 현시하면서 재래의 농촌다움과는 결별. 전승된 농촌다움을 훼손시킨 위에 관료나 자본이 만들어낸 농촌 이미지를 새 규범으로 반복 복제

- 자생적 발전론: 내재된 농촌다움의 재발견과 적응적 진화
 - 기초 : 공동체 주도과 주민참여에 의한 농촌발전
 - 이론 : 내생적 농촌발전론
농촌에 내재된 전통성, 지방성, 향토성 등 장소적 정체성을 총체적으로 보전하면서 이를 발전 추동의 자산으로 삼으려는 전략.

장소의 자산화와 발전의 모멘텀을 만드는 주체로서 공동체를 상징. 지역 권력을 공동체 단위로 분산함으로써 직접 민주제와 일상적 복지를 완성하려는 바 이를 위해 풀뿌리의 역량이 먼저 강화돼야 한다는 접근법

- 신내생적 발전론 : 농촌다움의 지속가능성과 현대적 재진화
 - 신내생론에서는 농촌 정체성을 보전하면서도 동시대적 개발, 통제에 의한 외생적 개발을 수용하고, 공동체 만들기에서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허용. 발전 과제에 따라 공동체보다 각 주체들의 연대와 협치를 중요시, 즉 집단적 대오보다 개별적 돌파력에 방점을 두는 입장
 - 기존 내생론이 공동체는 상수로 조건화하고 내부 농촌다움 진전에 방점을 두었다면 신내생론은 내외부 공생을 위해 공동체와 농촌다움의 공진화로 확장
 - 포용적 성장론과의 유사성 : 재래 산업의 생태계 구성과 첨단산업의 창발성 유인을 통해 지역혁신을 도모하고, 도심의 혁신적 재생과 마을공동체의 활력을 동시에 견인. 장소 기반 또는 범공간적 형태의 커뮤니티 비즈니스 적극 독려

- 세계도시(world city) 체제론 : 신농촌주의(neo-ruralism) 논의
 - 메트로폴리스, 메가시티 등 인구 1천만명 이상의 대도시권 출현 : 전 세계와 하루 생활권으로 연결된 대도시권에 모든 하위 중심지나 농촌이 포섭되고 역내 생산과 생활에서 통합된 활동권을 형성
 - 다국적 자본이 입지한 대도시권은 교통, 통신, 물류, 산업, 문화, 의사결정 등에서 유기적 망을 형성하여 대도시권 간에 범지구적 네트워크 체제 형성
 - 전통적 도농 이원론(urban-rural dichotomy)이 제시한 지리 구분

의 명징성은 사라지고, 도농 스펙트럼 하에서 국지적 장소성과 공동체의 다양성을 어떻게 살려갈 것인가에 관한 논의 진행. 즉 세계화라는 보편 흐름에서 지방적 정체성을 확보하고 이를 세계인과 공유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 목도

- 세계도시체제의 완성과 함께 범지구적 지역발전론으로서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 현명한 성장(smart growth), 성장관리(growth management), 압축도시(compact city), 탄소중립도시(carbon free city) 등의 담론이 주류 형성. 환경 측면에선 현명한 이용(smart use) 논의 대두, 이것이 신도시주의(new urbanism) 계획론으로 표출, 이를 통해 전통, 다양성, 인본, 환경, 지방성, 생활세계, 보행권, 전 연령 배려 등이 새로운 계획언어로 등장
- 농촌에서는 지속가능한 농업(sustainable agriculture), 도시민의 농촌체류 상시화, 로컬 푸드 체인, 세계인과 연결된 주민의 일상, 현명한 이용(토지이용, 환경), 저탄소 농촌, 전통적 농촌 표상의 소비(향수), 거대도시-농촌중심지-마을의 통합권, 귀촌의 일상화 등이 보편화되는 추세에 대한 새로운 관점 형성
- 농촌 주민의 삶을 성장주의자가 추구해왔던 경제적 소득, 물질 기반 확충보다는 행복, 웰빙, 향유, 이웃관계, 연대, 공유 등으로 이해하려는 흐름 형성

나. 국제적 논의에서 농촌다움 담론 형성

- UN의 보전 정책: 농촌다움에 대한 인식 계기와 저변 확대
 - 1945 UNESCO 문화자연유산 보호 정책 : 공간·환경자산 보전의 길잡이 역할. 세계유산 목록 발표. 생물권, 문화다양성 이외 과학 지식, 교육, 정보통신 등과 관련된 보편적 개념을 전 세계에 유통

- 1992 지속가능성 선언 이후 농촌정책 : ‘농촌=저개발’로 인식, 개발에 치중했던 관행에서 벗어나 농촌의 다원적 가치와 보전 필요성을 각성한 계기
 - 1993 생물다양성협약과 농촌보전 : 농촌을 광역 생태계(생물지역, bioregion)로 이해하고, 생태네트워크 개념에 입각해 중요 생태자원을 우선 보전하는 계기
 - 2001 문화다양성협약과 농촌보전: 농촌을 문화공간-인간-생활양식이 총체적으로 집적된 문화자산으로 인식하고 환경과 문화를 통합 접근하게 만들
 - 2015 신기후체제 이후 농촌정책 : 탄소흡수, 자원순환 등 저탄소 기지이자 기후적응 보루로서 농촌 재발견. 현명한 토지이용과 자연재해·복원(resilience)에 대해 숙고
 - 과거 농촌개발이 산업, 소득원, 주체 양성, 인프라 조성, 생활환경 등 사회경제적 측면에 치중했다면, 90년대 이후 보전론적 담론이 유입되면서 경관, 생태, 공동체, 문화, 에너지, 자원 등 다부문으로 확장되는 과정을 보임. 동시에 부문활동 간에 연계성과 부문주체 간 협치가 성립해가는 과정도 목격됨
- 농업·농촌 관련 국제 논의 : 농촌다움의 개념 스코핑(scoping) 과정
- 1986~93 우루과이라운드(UR, 다자간 무역협정) 이후 농업 위기설 : 농산물 시장 개방 요구에 대한 자국 농산물 보호의 논리로서, 그리고 외국 농산물 대량 유입에 따른 국내 농업붕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농업기반을 영구히 지키는 논리로서 ‘농업의 다원적 기능’ 개념이 널리 유포됨. 농업을 통해 농촌의 역사와 문화, 공동체 그리고 환경과 토지자산이 보전된다는 논리는 농업이 농촌다움을 만드는 근간임을 일깨우는 효과가 있었음. 이로써 ‘농업 유지=농촌다움 보전’이란 개념을 널리 각인시킨 첫 논의
 - 1990년대 농업에서 농촌으로 다원적 기능 개념의 확장: 농업 위

기설이 만연한 상황에서 가장 먼저 만들어진 논리가 국민의‘식량 안보(food safety)’개념이었고 이는 농업을 국민생명산업으로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음. 이어 등장한 것이 ‘다원적 기능론’이었음. 이는 처음에 농업 분야에 국한된 개념이었으나 그 대상이 국토 공간이면서, 역사·문화·공동체 등을 아우른다는 면에서 농업에서 농촌으로 외연이 확장되는 결과로 가져옴. 현재는 다원적 기능 개념이 농업과 농촌에서 두루 혼용돼 사용되고 있음.

- 1990년대 지속가능 이념 파급 이후 : 지속가능성은 환경·공동체·문화·경제 등 다부문적으로 접근하는바, 농촌에선 다원적 기능이 대상으로 하는 부분과 거의 일치. 따라서 지속가능성은 다원적 기능을 보호하고 장려하는 정책으로 나아감.

- EU 농촌개발 프로그램: LEADER I(1991-93)/II(94-99)/+(2000-06)
 - 지역단위, 다부문, 상향식, 민관파트너십, 혁신과 통합, 지방-광역 조직 네트워킹, 그룹들 간 협력, 공동체, 인적 역량강화 등 강조
 - 농업 다각화, 창의적 비지니스, 농촌휴양관광, 농촌서비스, 환경자원과 유산보전, 공동체 활동, 교육훈련, 유지운영 등 총체적 접근 시도
 - 공동체 주도 사업 제안과 다양한 이해관계자 연대에 의한 사업 운영
 - 농촌 고유의 자원 발굴·사업화와 지역의 정체성(장소성) 확립
- EU/미국 농촌 어메니티 발굴과 활용
 - EU의 경우 LEADER 프로그램 추진하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천하기 위해 환경자원과 공동체유산 보전에 상당한 예산과 노력을 투입
 - 보전가치가 높은 역사적 유산 이외에 농촌 고유의 정체성을 보전하는 차원에서 자연·문화적 어메니티 가치를 평가하고 이를 보

호·활용하는 사업 실행

- FAO/한국 농업유산 지정 및 보전 제도
 - 지역에서 오랜 기간 형성시켜온 유무형의 농업자원 중에서 보전할 가치가 높은 농업자원은 해당 국가에서 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하여 보전
 - 역사성, 지속성, 고유성, 다양성을 지닌 농업기술·문화·경관·환경 등 대상
 - 유산자원 발굴, 보전관리 및 활용을 위한 예산을 해당 국가에서 지원
 - 현재 우리나라에선 유산이 지정된 지자체가 유산 보전과 환경개선, 유산가치 제고 등과 관련된 사업계획을 수립하면 국가가 예산을 지원
 - 농업 분야에 국한되었지만 농촌다움을 보전하려는 최초의 정책으로 평가됨

다. 최근 연구에서 농촌다움 관련 논의

- 최근의 농촌 변화는 농촌에 대한 재인식과 접근 방향 전환을 요구
 - 현재 농촌은 확대된 도시생활권에 편입 가속, 귀농·귀촌인구 유입, 다문화 가정 확대, 도농교류의 확산, 산업시설 유입 등으로 인구구성이 다양화되고 전통적 농촌 마을의 특성이 변화되고 있음
 - 이러한 변화는 농촌 주민의 일상에서 중요 기능을 담당하던 주거, 공동시설, 문화프로그램 등 농촌서비스의 쓰임새와 선호에 영향을 미침
-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0)은 「농업·농촌 2030/2050 비전과 과제」

에서 미래 농촌공간이 국민 모두의 일터·삶터·쉼터로 변화될 것임을 강조함

- 새로운 수요로 창작 공간, 고급전원주택, 휴양지 등이 출현해 다양한 유형의 특화된 마을이 성립될 것이라고 예측함
 - 경제적으로 경지면적과 전통적 농업의 비중이 감소되면서 창조산업과 서비스산업 등 6차 산업의 어메니티 공간 창출과 문화적 경관으로의 변화를 전망
 - 구체적으로 계단식 논이나 마을 뒷산 등의 공간은 자연환경과 농업을 체험하는 장소, 교육의 장으로써 활용될 가능성이 높으며,
 - 논과 밭 생산 경관, 산림·하천·습지 등 자연 경관, 전통적 산업 및 생활경관 등이 문화적 경관으로 지정되어 지역의 특징적인 보호자원으로서 가치를 지닐 것임을 예상함
 - 특히 생활환경은 고령화된 인구 수요에 맞춰 주거·의료·복지 향상을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이 보편화되고, 지역 사회 비상연락체계, 주택 관리·수선프로그램, 쾌적한 주거 공급프로그램(Amenity Housing) 등이 정착될 것으로 전망함
 - 무엇보다 농촌다운 토지이용 및 경관 만들기를 추구하는 것과 문화적 경관의 보존·정비·활용, 자연과 조화되는 농촌주거환경 만들기 중요성을 강조함
- 김영주(2012)는 지역 간, 주민 간의 양극화로 농촌은 더욱 세분화되고 복잡해지는 양상을 나타내며, 이에 농촌다움의 유지·보전 관리와 외부 유입 인구를 위한 지원시설 및 교육 정책의 강화 필요성을 제기함
- 성주인 외(2016)는 다양한 농촌의 인구구성과 기능(문화, 여가, 교육, 서비스 등)들로 인해 농촌 공동체와 물리적 공간이 변화되는 현상을 실증 연구를 통해 밝히고 있음

2. 농촌다움을 접근하는 관점들

가. 생산주의 관점

- 경제 지상주의 : 농업생산·산업기반 조성, 생산지원 공간으로서 마을 개선
- 생산성(효율, 효과)에 정향된 기능주의적 농촌계획론
- 공공 주도에 의한 기초 수요(basic needs) 공급: 주민자율 마을만들기 미작동
- 서비스 공급자의 효율성 논리에 경도된 정주 개발
 - 기반시설 조성, 마을개발, 주거환경개선, 도농통합 정주권 개발

나. 내생주의 관점

- 내생적 발전론 : 자율적 자원 동원, 공동체 연대 중시
- 자치주의 : 분권론, 지방자치, 주민자치
- 공동체주의, 참여주의, 숙의형 의사결정 과정
 - 농촌어메니티, 농촌체험, 주민자율 지역(마을)만들기/일본 마찌쓰꾸리 사례들

다. 다원주의 관점

- 농촌이 고유하게 지닌 다원적 가치에 대한 세계적 인식
- 농촌 발전을 위한 다원주의적 접근은, 공적 자원의 공급과 배분에 있어 국가에 의한 개입을 우선시 하느냐 민간 자원의 시장을 중시 하느냐 하는 극단적 논쟁을 뛰어넘어 다양한 주체가 모여 공적 영역을 만들어나가는, 즉 새로운 공적 영역으로서의 공동체를 중시하는 거버넌스 이론에 기반하고 있음. 이는 엘리너 오스트롬(E.

Ostrom)이 주창한 공유 자원의 개발과 관리, 이익의 향유에 있어 행위 주체들이 연대한 다중심적 거버넌스론에 기반을 두고 있음. 국가라는 일극 중심에서 벗어나 다양한 공동체가 공공의 주체로 나서는 다중심성 사회-생태체제를 상정하고 있음

- 다부문적 접근, 농촌발전을 견인하는 다양한 분야들의 차별성과 통합성 문제
 - 농촌다움 관계자의 다양성, 접근 방법의 다양성, 실현 방식의 다양성 인지

라. 포스트모더니즘 관점

- 지구를 포위한 세계도시체제에서 농촌발전 : 도농 연속 스펙트럼에서 다양한 로컬리티(locality)가 발현되는 장소로서 농촌성(rurality) 이해. 급속히 만들어진 도시의 탈근대 체제는 농촌의 탈근대화도 가속 견인하는 양상. 세계도시권에서의 농촌은 지방에 갇힌 농촌이 아니라 세계에 연결된 농촌이라는 표상을 만들어냄(전통 농촌 담론과의 차이 주시 필요)
- 탈근대는 탈생산과 탈중심(권력작용에서 중앙이 아닌 지방이, 집단이 아닌 개인이 이니셔티브를 갖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이는 농촌을 생산이 아닌 재생산 공간으로, 개인주의를 허용하는 주민자치의 장으로 이해하는 관점 형성
- 소비미학의 관점에서 본 농촌 : 농촌도 하나의 기호에 불과(기호를 통해 농촌이 상품화되고 소비된다). 다만 보편적으로 소비하는 기호는 아님. 즉 농촌이 지닌 건강성, 자연성, 공동체성의 표상의 동원이 필요할 때 상품에 농촌다움의 이미지를 부가하여 판촉하고

수용자는 이를 소비함. 영상물, 콘텐츠, 스토리 등 문화산업 전반과 기업 마케팅에서 농촌다음의 특정 부분을 기호화하고 대중매체를 통해 개인이 소비

- 농촌에 대한 몸현상학(메를로퐁띠)적 접근, 세계의 표현으로서의 신체와 농촌환경이 만나는 접점(생활세계)에 관한 이야기 : 농촌에서의 체험 건강 치유 먹거리 육아 가족 취미에 관한 대중적 담론을 시대 현상으로 수용

제2절 농촌다움 개념

1. 농촌다움의 여러 개념 층위

가. 표상(表象, representation)으로서의 농촌다움

- 농촌 환경에 대한 감각, 주관적 심상, 정서적 반영, 회고적 반추나 환기, 미래적 투사, 기억, 감각의 재현

1) 이미지로서의 농촌다움

- 목가적 전원적 자연적 정서적 감각 내지 심상을 반영

① 시각적 매체에 담겨진 농촌다움: 사진, 영상, 아이콘, 회화(풍경화), 편집 이미지

- 사실적 기록
- 가공된 이미지

② 언어적 술어(rhetoric)에 비쳐진 농촌다움: 시, 산문, 소설, 신문

- 은유(metaphor), 환유, 제유, 비유, 직유

③ 소리 등 지각 매체를 통해 드러나는 농촌다움: 음악, 효과음

2) 향수(기억)로서의 농촌다움

- 과거 농촌에 존재했던 물적 공간이나 상황(사건, 사태, 국면)에 대한 체험을 단순 환기(reminisce)하거나 공동체 내부에서 오랜 전통으로 계승된 어떤 전형(model)을 현재 소환(recall)함으로써 농촌을 인지하는 주체(subject)가 농촌이란 대상(object)과 동일시(identification)하는 과정
- 여기서 농촌다움은 농촌을 경험했던 자가 갖고 있는 어떤 이야기나 생활의 국면이 그가 활동하는 농촌이나 농촌을 포함한 세계의

총체 속에서 일관되게 서술(narration)되거나 설명(explanation)될 수 있게 하는 능력으로 기능하며, 과거에 존재했던 개인의 주관적 경험이 그의 생활세계와 연속성을 갖게끔 해주는, 즉 과거를 현재와 일관되게 해주는 과정이자 과거를 현재에서 객관화시키는 과정

- ① 과거 반추(반영)
- ② 서술적 능력

3) 상상으로서의 농촌다움

① 초월로서의 농촌다움

- 초현실, 현실 이탈, 현실이 제거된 상상 속의 농촌
- 가상세계에 존재하는 농촌: 가상현실
- 고된 농촌 현실을 체념하거나 비켜간, 현실과는 거리가 먼 가짜 농촌

② 비전으로서의 농촌다움

- 권위자(혹은 절대자)가 던지는 메시지로서의 농촌다움. 성경의 에덴동산
- 현재의 미래적 투영. 미래에 대한 상상
- 첨단기술이 적용된 농촌
- 이상화된 농촌

나. 규범(norm)으로서의 농촌다움

1) 이념(ideology)으로서의 농촌다움

- 개인의 인식과 행동을 집단의 목표에 위치시키는 긍정적 영향력으로서의 농촌다움.
- 국가나 지역사회의 구성원이 농촌이 제공하는 편익을 긍정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자신의 안전과 번영 그리고 행복이 지속되리라는 희

망을 공고히 하게 되고 이를 통해 개인의 사고와 태도를 집단의 그것과 통합시켜나가는데 필요한 지향적 가치. 과거에 그 존재가 발현되어 현재는 성숙의 과정에 있으며 미래에는 더욱 발전된 형태로 존재할 이데아적 절대

- 공동체의 의지를 수렴하고 유인해가는 비전으로서의 농촌다움
- 의지로서의 농촌다움, 태도를 유발하는 농촌다움
- 정치가나 행정가의 언설에 모습을 감추고 있는 농촌다움
- 이념은 언어로서 권능을 드러냄 : 이념적 구호, 정치적 선언 속의 농촌다움
- 현실 권력 앞에 소환된 농촌다움: 이념으로 존재하는 농촌다움
- 풍요로운 농촌, 잘사는 농촌, 돌아오는 농촌, 도시와 상생하는 농촌의 모습
- 아주 이상화된 농촌 즉 이상향으로서의 농촌.
- 역사적으로 사회적 개혁을 꿈꾸던 자나 그룹이 제시했던 이상촌
- 1880년대 하워드 가든 시티(전원 도시)

2) 제도적 준거(standard)로서의 농촌다움

- 현실에서 농촌과 관련된 다종의 행동을 일관되게 유도 통제 유인하는데 필요한 공인된 잣대로서의 표상
- 농촌주택 표준설계도, 표준주택 조감도
- 정부 등 공적 영역이 홍보매체를 통해 제시하는 미래 농촌 청사진 등 지각적 표상들
- 농업기반시설, 농촌정주기반 등이 확충된 농촌의 모습을 담은 홍보물
- 정부 농촌개발사업 과정에서 산출되는 마스터플랜과 조감도
- 제도권이 제공하는 시지각적 표상에 직접 표출되거나 잠재돼 있는 반복된 메시지

3) 인지적 기준(scheme)로서의 농촌다움

- 개인이 어떤 대상을 감지하거나 표상을 떠올려서 그것이 농촌 그 자체이거나 혹은 농촌과 연관된 어떤 속성임을 확인하고자 할 때 판단의 기준이 되는 인지적 형식

다. 효용으로서의 농촌다움

1) 가치재로서의 농촌다움

- 생산재로서의 농촌다움
 - 생산에 투입되는 재화로서 토지
 - 생산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토지의 합리적 이용. 효율성을 중시하는 토지이용 패턴을 통해 추구하고자 했던 농촌의 가치는 바로 생산적 가치에 다름 아님
 - 패턴화된 공간 배열을 통해 물적 토대의 산업적 생산이 가능한 체제가 농촌의 지배적 경관을 형성
 - 일정 기준에 의해 대량으로 구획된 농경지. 표준화된 농촌도로. 기능적으로 통일된 주거공간. 전통적이면서 토착적인 공간형식을 일소하면서 현대적이고 기능적인 공간형식에 긍정적 의미를 부여
 - 따라서 현대화된 농촌공간이 지닌 기능주의적 가치에다 농촌다움이라는 미학적 동기를 부여. 즉 농촌의 기능과 농촌의 미를 동일시하려는 노력이 태동
 - 기능주의 미학에 의해 통일되고 표준화된 공간적 형식, 대량생산이 가능하게 간소화된 공간형식에 대한 미학적 관점의 형성. 기능적 농촌공간을 아름다움의 정서로 수용하는 태도의 형성과 이것의 고착화
- 시장재로서의 농촌다움
 - 시장에서 거래되는 농촌적 가치

- 농업, 농촌, 공동체 관련 상품의 판촉에 유리함을 가져다주는 원천가치로서의 농촌다움(특산물 판촉에 필요한 향토성/유일성/고유성, 농산물 판촉을 촉진하는 자연성/원생성/건강성)
 - 농촌의 긍정적 가치에 기대어 농촌을 연상시키는 상품에 깃든 농촌다움. 즉 파생가치의 원천으로서의 농촌다움
- 공공재로서의 농촌다움
 - 외부효과로서의 농촌다움
 - 시장 외부에 있으면서 불특정 다수에게 직간접적 효용을 가져다주는 원천
 - 시장 외부에 있으면서 시장의 실패를 교정하거나 시장을 보완하는 기능
 - 사회적 자본
 - 공공재인 자연이나 문화, 역사를 활용한 특정 그룹의 농촌관광사업(외부효과의 내부화)
 - 미래 자산으로서의 농촌다움
 - 잠재된 가치를 현재화하여(즉 시장에서 내부화하여) 이용하지 않고, 미래 후손을 위해 온전히 보존해야만 하는 자연유산, 문화유산, 농업유산
 - 생물다양성, 문화다양성 측면에서 보전가치가 높은 자연자산이나 문화자산
- 2) 향유 자산으로서의 농촌다움 : 어메니티
- 향유는 특정 대상에 대한 정서적 경험과 활동으로서 안락 여유 즐거움 쾌감 친밀감 유대감 등 심리적으로 행복감을 유발하는, 긍정적인 기대를 불러일으키는 정념적 작용
 - 주민이나 도시민이 접근하여 즐기고 누릴 수 있는 유무형의 자원

의 총체이자 그것에 대한 인간의 정서적, 정념적 반응

- 어메니티는 인간의 감정 영역에 포착된 자원의 속성이자 감정 그 자체로서 인간과 환경이 교집합하는 영역에 이원적으로 존재.
- 즉, 양태에 있어 물질성과 정신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음. 이것이 어메니티의 실체 파악을 어렵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
- 가치재인 동시에 비가치재이고 시장 내외부 도처에 존재
- 어메니티의 일반적 특성 : 고유성, 비가역성, 불확실성
- 어메니티가 지닌 고유성으로 인해 자원 공급과 수요에서 특정 장소에 국한된 적소 시장(niche market)이 형성되며, 비가역성은 환경보존의 필요성을 말해주고, 불확실성 때문에 어메니티 자원에 대한 선호의 변화가 생겨남

① 가치재적 성격

- 이용가치, 선택가치, 존재가치(외부 효과), 유산가치(미래 자산)
- 유익한 효용을 창출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시장에서 내부화할 수 있는 가치
- 농촌 환경으로부터 유용한 가치를 추출하여 이용자가 사용하거나 적소 시장에 존재시킴으로써 어메니티의 상품화를 촉진하고 시장에서의 유통을 유인할 수 있음

② 비가치재적 성격(재화로 귀결시킬 수 없는 자원)

- 그 효용성을 가치로서 현재화할 수 없는 주관적 인식, 정서, 장소감 등을 형성하는 원천 자원으로 존재하는 경우
- 농촌다움의 정신성 측면에 연원하는 특성. 예) 애향심 신비성 치유
- 농촌다움의 무형적 가치가 사용되고 교환되는 영역, 곧 거래 메카니즘이 형성되는 곳은 바로 어메니티 시장임. 농촌관광, 건강산업, 지식산업, 문화산업 등에서 농촌어메니티 특성을 활용한 판촉 전략이 여기에 해당함

- 농촌다움은 유형 무형을 막론하고 자원, 비자원 모든 형태로 존재하지만 어메니티는 주로 자원이란 관점에서 추출된 농촌다움의 정서적 측면으로 이해

2. 농촌다움의 기본 속성

가. 양면성 : 고유성과 보편성

- 편재(偏在)와 편재(遍在) : 농촌은 특정 지역이나 장소에만 편재(偏在, maldistribution)하지만 농촌다움은 모든 곳에 두루 편재(遍在, omnipresence)함. 농촌은 도시지역을 벗어난 특정 공간에 치우쳐 존재하지만, 농촌다움은 도시와 농촌을 막론하고, 지역과 세계를 구분하지 않고 농촌을 이루는 지구 모든 곳에 비슷한 양상으로 존재하고 있음. 따라서 농촌다움은 장소에서 비롯된 특정성과 비장소적 보편성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음

(예시) 전 세계 일반적으로 보이는 농촌다움: 야외 경작, 온정, 소박함, 순치되지 않음, 자연과의 융합, 공동체, 성긴 정주패턴 등

- 고정성(fixity) 및 유동성(fluidity) : 농촌은 공간에 기반하고 있는 속성으로 인해 도시가 아닌 특정 지역에 확정적으로 존재하지만, 농촌다움은 이미지나 언어, 시장재의 형태로서 농촌을 벗어나 도시는 물론 전 세계에 유동적으로 흘러 다니고 있음. 농촌다움은 일차적으로 장소 기반 자원으로서 특정 마을이나 지역에만 나타날 수도 있지만, 농촌을 담은 표상이나 규범이 어떤 효용을 가지게 될 때, 그 효용을 담은 재화나 자산이 존재하거나 유통되는 모든 곳에 가치들을 연쇄적으로 파생시키고, 바로 그 파생의 과정에 농촌다움은 유동적으로 존재하게 됨. 즉 농촌다움은 그것이 출현한

원천지와 중간 경유지 그리고 최종 전달지에 연쇄적으로 그리하여 때로는 동시에 존재하는 양상이 나타나게 됨

- 어메니티의 고유성과 농촌다움의 양면성 : 농촌 어메니티는 특정 장소에서만 형성되어 고유성을 지닌 자원이나 외부적 효과로 인식되고 있음. 일반적으로 어메니티는 쾌적한 환경을 뜻하는데, 때로는 그 환경에서 흘러나온 긍정적 정서를 지칭하기도 함. 어떤 의미이건 어메니티는 특정 환경에서 잉태된 고유한 자산이나 감성적 효과로 인식되고 있음. 즉 어메니티는 농촌다움의 고유성 측면을 강조하는 것으로 이해됨. 예를 들어 일본과 한국의 어느 농경지에서 발견된 농촌다움은 범세계적 영농 표준화로 인해 양측이 유사성 즉 보편성을 가지고 있지만, 농경지의 세부 공간형태의 차이나 주변 환경적 특징으로 인해 차별성 즉 고유성을 지니고도 있음. 이에 비해 양측 어메니티는 두 장소의 환경적, 정서적 고유함으로 인해 그것을 감지하거나 인식함에 있어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나. 비가역성

- 농촌다움의 가치를 만드는 원천 중 특정한 대상이나 지역은 한번 훼손되면 그 원형을 복원하기가 어렵고 설사 동일 가치의 유사 기능을 가진 형태로 복원된다 하더라도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된다. 특히 농촌의 토지 개발이 광역에 걸쳐 강하게 이루어지는 경우 훼손된 농촌다움의 원천은 영구히 복구되지 않음

다. 다원성

- 농촌다움은 접근하는 사람마다 다르게 인식하고 다르게 가치를 실현

- 다부문적 접근 : 농촌에 접근하는 영역마다 농촌다움에 대한 이해 방식과 추구 가치가 각기 다르고, 그 다름을 인식하고 협력하는 것이 농촌다움이 지향하는 바임
- 주민 단체활동가 행정가 정치가 기업가 전문가 방문객 학생 노인 아동 취미애호가 등

라. 총체성

- 농촌의 상황과 국면을 이루는 주민, 환경, 사건, 기억 등 제 요소들이 각기 분절되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닌 총체적으로 결합하여 상호 침투하고 수용되었을 때 농촌다움의 가치가 드러나게 됨
- 농촌의 제반 요소들이 농촌이라는 전체 상황과 결합할 때 비로소 농촌다움이라는 총체적 가치가 발현됨
 - 농기구, 농민, 농작물, 농작업, 농지 등 농업이란 총체적 상황과 결합될 때만이 농촌다움을 발현하는 요소로 의의를 지님
 - 마을 정자나무는 진입로, 주변 농경지, 어귀마당, 가옥 등 마을이라는 총체적 국면 속에 존재할 때만 농촌다움의 이미지를 형성.
 - 신도시 개발 시에, 이전에 있던 마을 정자나무를 그대로 존치시킨 소공원도 농촌다움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음

마. 구조성(온전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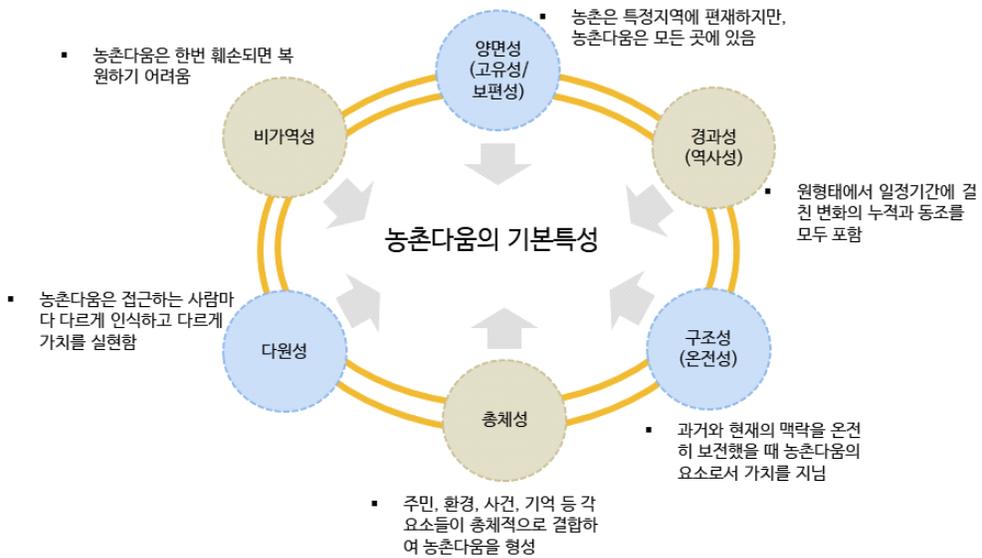
- 농촌다움은 농촌다움의 가치를 지닌 각 요소의 총체적 결합에서 비롯되고, 동시에 각 요소는 과거와 현재의 맥락을 온전히 보전했을 때 농촌다움의 요소로서의 가치를 지님
 - 다락논은 일정 구역에 집단적으로 존재했을 때 다락논으로서의 가치를 지님. 그렇지 않고 다락논이 개발되어 다 훼손되고 몇 띄

기 논배미만 남았을 경우엔 농촌다움을 지닌 다락논으로서의 가치를 상실

- 몇 그루 나무만으로 마을숲이 가진 숲다움을 드러내진 못함. 숲이 온전한 숲이었을 때 마을숲으로서의 기능과 가치를 지니게 됨. 돌담, 골목이 다 사라지고 몇 채의 집들만 남은 제주도 애월읍 어촌 마을

바. 경과성(역사성)

- 시간의 연속적 경과(단절이 아닌)
- 원형태에서 일정 기간에 걸친 변화의 누적과 동조(변화와 원형이 상호 동화되는 시간의 경과)



<그림 5-1> 농촌다움의 기본 속성

3. 농촌다움의 언어적 이해

가. 사전적 이해

- ‘다움’은 ‘답다’라는 형용사를 만드는 접미사의 명사형 : being
- 농촌다움(being rural)은 농촌답다(be rural)의 명사형
 - ‘답다’ : 사람에게는 자격이나 품격(품성), 사물에게는 상태나 상황의 설명을 나타내는 말. 사전적으로는 ‘성질이나 특성이 있음’의 뜻을 더하는 형용사를 만드는 접미사로 되어 있음
 - ‘답다’는 사람이나 사물을 지각했을 때 그 대상의 성질이나 특성을 확인하여 현재적으로 인정하는 인지적 과정으로 이해. 즉 대상(A)을 그 대상의 성질(a)과 동일함을 확인하여 인정함(A=a)을 나타낸 말
 - 길동이의 행동이나 상태를 보고 ‘길동이 답다’라고 표현
 - 누군가 시골을 방문하여 그 동네의 상태나 상황을 보면서 ‘시골답다’라고 표현
 - 옛말로서 ‘답다’는 ‘같다’라는 뜻을 지님. 즉 한 대상이 ‘답다’라는 것은 그 대상과 동일하다는 것을 사후적으로 인정하는 말이라 하겠음
- 유사한 말로 ‘스럽다’가 있는데, 이 또한 성질이나 특성이 나타나는 뜻을 지닌 형용사
 - 그런데 ‘스럽다’는 특정 대상(A)을 특정 대상의 성질(a)로서 동일시해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대상(B)이 특정 대상(A)과 유사한 특성(a)이 있을 때 사용하는 용어임
 - 그러니까 B의 a 스러움을 나타낸 말이라 하겠음
 - 철수의 행동이나 상태를 보고 ‘철수는 길동이 스럽다’

- ‘시골스럽다’ ‘촌스럽다’. 시골이 아닌 도시의 어느 장소를 두고 ‘시골스럽다’, 농민이 아닌 도회지 어느 사람을 놓고 ‘촌스럽다’라고 표현
- ‘-다워지다’, ‘-다워져라’는 사물이나 사람이 미래에 그리되기를 요청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말

나. 농촌다움 유사 용어

- 농촌성(rurality): 농촌이 과거에서부터 현재로 존속해오면서 지리적 형태로 고착화된 물적 특징, 또는 농촌에 대한 사람의 인식에서 고정적으로 표상되는 이미지나 언어 체계를 의미. 도시성과 대비되어 농촌만이 고유하게 가진 공간적 특징이나 경관적 속성, 농촌의 차별적 생활양식이나 가치관의 특이성을 반영하고 있는 언술 체계로 농촌성이 연구되고 있는 상황임
- 농촌주의(ruralism): 농촌이 그리되길 기대하는 이상화된 모습, 즉 이념적 지향으로서 일반인이 현재 이후에 농촌에서 실현되기를 바라면서 미래에 투사시킨 가치나 표상 혹은 준거를 말함. 농촌주의는 각 시대별로 그 양태가 달리 표방되며 근대적 농촌주의는 생산주의와 국가주의의 이념이 반영된 모습으로 나타났음. 근대 농촌주의는 전근대적 농촌이 지닌 생산공동체의 유기적 인적망과 자연-농업공간의 일체성을 전면 해체하여 생산과 생활의 분리, 자연과 농업의 결별에 기초하여 농업의 산업화, 농촌의 도시화를 촉진하려는 이념적 규범임. 농촌 자체가 하나의 산업기지가자 도시화 예정지로서 국가가 내세운 생산성 내지 효율성이 실현될 기능적 공간으로 기술과 자본의 침투가 용이하게 사회 및 공간의 구조를 변모하고자 하였음. 국가에 봉사하는 소수 엘리트 내지 관료가 만든,

지역성과 개성이 탈색된 청사진에 기초하여 획일화된 공간 즉 생산 지상적 공간을 반복적으로 양산하였음. 이에 의하면 마을이나 공동체는 생산 극대화라는 국가적 과제를 충실히 실현하기 위한 일련의 부속 공간으로서, 생산이 연장된, 즉 생산성을 재충전하기 위한 재생산의 공간에 불과한 것임. 그래서 농촌의 구조는 국가에 의해 표준화된 양식이 적용되어 산업적 대량 생산이 달성되는 현장으로 틀 지워졌음. 탈근대를 지향하는 요즘 시기의 농촌주의는 탈생산과 탈중심(탈국가)의 특징으로 수렴되면서 개인주의적 생활양식과 가치관, 첨단기술과 세계도시 체계가 투영된 토지이용과 정주구조, 지역자치와 공동체에 기반하면서도 세계화-지방화의 이중적 정체성을 갖는 장소로서의 농촌 변화상을 맞이하고 있음

- 신농촌주의(new ruralism): 재래적 농촌주의가 전형성을 가진 농촌 내부에 기대하는 바를 표면화한 것이라면 신농촌주의는 전 세계가 거대도시를 중심으로 공간구조가 재편되면서 도시 주변부 특히 대도시권 주변부 농촌에서 일반인이 지향하는 바가 반영된 생활가치나 행동적 경향을 지칭할 때 사용하는 용어임. 1990년대 이후 지속가능성이 정주개발 이념으로 천명된 이후 도시 내부에서는 도시건축 전문가 및 행정가들에 의해 뉴어바니즘(new urbanism)이 표방되어 친환경, 인본주의, 보행환경, 개성 있는 장소, 역사문화 환경의 보전, 공동체 참여 등이 중시되는 공간계획 철학이 정착되어가는 추세에 있음. 이러한 뉴어바니즘에 부응하여 도시와 농촌이 접변하는 지역, 즉 도시인과 농촌주민의 물적, 인적 교류가 일상이 된 주변부에서 지속가능성을 실현하면서 개인의 삶의 질과 행복, 공동체 번영을 조화시킬 수 있는 생활양식, 여가활동, 토지이용, 안전한 먹거리, 전원적 공간디자인 등에 관한 아이디어들이 집합적으로 수렴된 바가 신농촌주의라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음. 이러한 신농촌주의적 생활 및 공간조영 방식은 기존 농촌 내부로까지 파급

되어 전통 농촌주의(근대적 농촌주의)를 대체하는 이념으로 발전하고 있음

- 전통성 : 전통은 집단에서 공동체에서 지난 시대에 이미 이루어져 계통을 이루며 전하여 내려오는 사상 관습 행동 따위의 양식을 말함. 전통성은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이어져 온 계통과 유산을 보존하면서 미래에도 지속적으로 계승시켜야 할 공동체적 자산으로서의 특성을 이룸. 전통성은 계통, 시간의 경과, 계승, 전승 대상 등을 통해 점진적으로 형성되어 최적화된 전형을 이루어가게 됨. 농촌다움은 전통을 보존하고 계승하는 핵심적 주체인 동시에 전통성을 간직한 주요 객체로서 농촌다움을 통해 사람들은 전통을 접하고 이해하게 됨. 즉 농촌다움은 전통을 이해하는 중요한 창구이자 이해 경로로 기능하고 있음
- 한국적·한국다움 : 한국에서만 찾아 볼 수 있는 전통이나 현재적 특징. 한국의 사람, 환경, 활동, 역사 등을 통해 한국적인 것이 창출되며 무수한 한국적인 것들 중에서 긍정적인 의미에서 전형성과 차별성을 획득한 경우엔 한국다움으로 불리지기도 함. 농촌다움은 한국다움을 만드는 중요 인자 중 하나이며 농촌이 가진 자원, 역사, 문화, 마을, 농업, 환경을 통해 농촌다움이 구성되며 농촌다움의 고유성과 지역성을 통해 한국다움이 발현됨
- 지역성·지역주의(regionalism) : 지역의 인구구조, 경제성장, 산업구조, 사회활동, 지리적 특성 등의 차이에 대한 구분을 인식하고 지역간 균형, 내생적 발전이란 차원에서 차이를 최소화하면서 고유의 발전 정책을 전개하려는 노력. 주로 국토정책에서 균형 발전, 지역정책에서 외생 혹은 내생적 발전을 논의하고자 할 때 지역성과 지역주의가 많이 논의됨. 더러 정치적 구호에서 지역주의가 등장하는

데 이는 경제나 기반시설 등의 지역적 차이를 부각하여 지역민에게 균형 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정념적 언술로 이해됨. 지역성이 농촌다움과 연관되는 것은 농촌이 위치한 지역에 따라 지리적 특성, 경관, 농업생산, 취락구조 등에서 차이가 발생하고 이것이 농촌다움의 지역 간 차이를 형성하는 요인의 하나로 작용하는 부분임

- 지방성(locality) : 오랜 시간 지역에 누적되어 고착된 특성. 지역성이 지역의 현재적 특성에 기초하여 지역 간의 차이를 비교할 때 주요 사용하는 용어임에 비해 지방성은 국가나 중앙이 지닌 전체성이나 보편성에 비교하여 지방적 차이 강조할 경우에 언급되는 용어임. 지방은 중앙에 대비하여 쓰이는 것에서 유추해 보면 지방성은 국가적 전체성이나 세계적 보편성의 대척점으로 지방적 구체성이나 특수성 정도로 이해할 수 있음. 특정 지역의 역사, 문화, 언어, 환경, 산업활동 등을 통해 지방성이 드러나게 됨. 농촌다움은 국가적 전체성이나 세계적 보편성을 떠는 동시에 지방적 구체성이나 고유성도 동시에 지니고 있음. 그래서 농촌다움은 고유성·보편성이라는 이중적 속성을 갖고 있음
- 향토성(homelandness) : 향토는 사람이 태어나서 자란 땅, 즉 고향 땅을 말하는 것이며 달리 시골을 지칭하기도 함. 시골이 도회지와 상대되는 용어임을 감안하면 향토는 고향이 지닌 특수하고도 사적인 정서나 유대감을 표현하고 있으며, 또 그러한 감성(a feeling of homelandness)이 어린, 그리하여 회귀적 회원의 대상이 되는 고장을 지칭함. 향토에서 발원되는 문화적·공간적·정서적 특성의 에토스적 표현을 향토성이라 칭할 수 있겠음. 향토성은 농촌다움을 발신하는 기원이며 농촌다움이 지닌 근원 회귀적 속성의 바탕이 되는 성질임. 특히 향토성을 이루는 인자 중에서 ‘향수’라는 정서는

농촌다움을 실제적으로 표상시키는 중요 원천임

다. 연구진 브레인스토밍에 의한 농촌다움 표상 어휘 목록화

1) 마을 상징 농촌다움 표상 어휘 목록화

- 농촌다움은 표상이자 규범이고 동시에 효용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농촌다움이란 개념은 모두 언어를 통해 현실의 실제적 대상을 지칭하고 언어로써 외형적 특성과 성질이 형상화됨. 농촌다움을 드러내는 이미지, 정서, 경관, 이념, 준거, 효용성 등이 구체성을 갖건 추상성을 갖건 모두 언어로써 표상화 되고 언어라는 소통 과정을 통해 농촌다움이란 가치의 공통성을 획득하게 됨
- 따라서 농촌과 관련되어 발설되거나 서술되는 어휘 속에는 농촌의 현재적 모습뿐만 아니라 미래적 지향까지 두루 담겨 있게 되고, 이것은 농촌다움이 표상하려는 구체적 대상과 추상적 가치 일체를 함유하고 있음
- 농촌 관련 어휘를 정리함에 있어 먼저 개념화시킨 과거에서 현재까지의 모습으로서 ‘농촌성’, 현재는 물론 미래적 지향까지를 함축하는 ‘농촌다움’이란 두 가지를 구분하여 접근하고, 각기의 하위 범주에는 자연, 경관, 생산, 향토, 공동체, 생활로 나누어 인벤토리를 구성함
- 농촌다움 지칭 어휘 인벤토리 작성
 - 구두로 발화되거나 문장으로 서술된 어휘는 그 성격이 긍정, 중립, 부정으로 삼분될 수 있는데, 긍정적 어휘는 그러한 성질을 계속 살려나가길 희망하는 것이며, 부정은 그런 특성을 개선하거나 폐지하여 새로운 특성으로 발전하길 바라는 기대치가 담긴 것으로 이해됨

- 농촌다움 어휘를 가치 지향 측면에서 긍정, 중립, 부정으로 나눈 이유는 농촌다운 주거환경을 조성할 경우 긍정적 잠재력은 북돋우고, 부정적 요소는 정비하기 위한 지침을 만드는데 참조하기 위한 것임
- 본 연구를 진행하는 농촌 전문가 10인이 모여 농촌성과 농촌다움의 개념에 대해 충분한 자유토론을 통해서 그 개념을 명확히 이해한 다음, 농촌다움과 관련된 단어를 자유롭게 기술하고 이를 정리하는 워크숍을 진행했음
- 농촌을 마을 단위와 중심지 단위로 구분하여 관련된 이미지, 정서, 경관적 특성 그리고 공동체나 생활양식 등을 나타내는 어휘를 무제한으로 기술해 보았음. 이렇게 찾아진 어휘는 일차적으로 어휘가 지칭하는 현상적(현실적) 대상을 기준으로 범주를 나누어 보았음
 - 어휘가 가리키는 대상을 기준으로 자연, 경관적 이미지, 농업 생산, 향토, 공동체, 정주 생활로 범주화했음
- 마을단위에서의 농촌다움 어휘를 보면 자연 및 향토와 관련된 것은 긍정적 어휘가 대부분을 차지한 반면 정주와 관련된 것은 부정적 어휘가 주를 이루었음. 그리고 경관, 생산, 공동체는 긍정 중립 부정이 두루 나타났음

(표 5-1) 마을단위 농촌다움 지칭 어휘 인벤토리(전문가)

대상	긍정적	중립적	부정적
자연	자연적(흙길, 하천, 도랑, 녹색) 푸릇푸릇한 환경이 건강하다 환경이 맑은 깨끗한		

	공기가 맑은 청량한 전원적인		
이미지 (경관)	개방적인(확 트인) 설 수 있는 경치가 아름다운 경치가 다양한 조용한 아늑한/포근한 고즈넉한 평화로운	고유한 농경지가 펼쳐진 단순한 작은 낮은 시선 (저층주거, 담장) 소박한(투박한) 방송에 나오는 먹는 방송	촌스러운 불결한 냄새나는 거름냄새 나는 어두운 지루한 오염된/비점오염 공장이 건설되는
생산 (농업)	목가적인 농사짓는 먹거리를 제공하는 농업이 영위되는 도시 배후농촌 풍요로운	녹색체험/농업체험 체험적 육체적	소득이 적은 노동이 힘든 몸이 고된 재정이 비효율적인 개발되기 쉬운
향토 (지역 역사)	그리운 토착적/민속적 매주가 걸린 고향의 감성적 어머니같은 유년기 추억이 깃든	역사적 시골스런	
공동체 (관계)	온정적 상부상조하는 서로 잘 아는 공유하는	지연(地緣)적 집단적인 정자목이 있는 공공공간이 있는 유희공간이 있는	치안이 안 좋은 억지로 속한 아기 울음이 그친 노인만 있는 인구가 적은 빈집이 많은
생활 (정주 공간)		정부가 시설을 다 만들어주는	시설이 낡은 살기 불편한 주거가 불량한 벌레가 많은 걷기 불편한 시설이 낙후된 (슬레이 트 지붕, 비포장도로) 문화시설이 부족한

* 연구진 10명이 장시간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농촌 관련 어휘 서술 목록을 작성하여 분류한 것임

2) 중심지를 대상으로 한 농촌다움 표상 어휘 목록

- 읍면 소재지를 상정하여 농촌다움을 나타내는 어휘를 적어보면 자연과 향토적 역사와 관련된 리스트는 나타나지 않고, 정주공간과 관련된 어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중심지를 정주권의 거점으로 특화하여 인식하고 있음을 잘 알 수 있음. 달리 말해 중심지는 마을과 달리 자연 공동체 경관 농업 등과의 연관성을 찾기가 어렵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음
 - 아울러 중심지의 이미지는 무질서를 연상시키는 부정적 어휘가 많고 생활은 각종 이용시설로 인해 편리하긴 하지만 여전히 편의시설이 부족하여 불편한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음

(표 5-2) 중심지 단위 농촌다움 관련 어휘 인벤토리(전문가)

대상	긍정적	중립적	부정적
자연			
이미지 (경관)	-	정체성이 모호한(도시인지 농촌인지)	간판이 촌스런 간판이 조화롭지 않게 화려한 주차가 무질서한 지저분한 이질적인(프랜차이즈) 체계가 안잡힌 복잡한(혼잡한) 부조화된
생산	직업(일자리)이 있는 상권이 형성된	사업이 다양한	부동산 개발에 비효율적인 상가가 오래된
향토 (지역 역사)	-	-	-
공동체 (관계)	-	사람들 정이 넘치는	-
생활 (정주 공간)	편의시설이 있는 학교가 있는 버스가 출발하는	아파트가 우뚝 선	불편한 안전하지 않은 문화시설이 부족한

	재래시장이 열리는 5일장이 서는 거점성(시장, 은행, 우체국, 파출소, 농약판매점, 식당, 다방, 술집 등이 있는)		도서관, 운동시설이 부족한
--	---	--	-------------------

3) 브레인스토밍 어휘 추출 결과 확인된 농촌다움의 개념 구성

- 연구진이 추출한 어휘들의 범주를 다시 개념적 범주로 변환하기 위한 작업을 수행하였음. 현실 농촌과 관련된 어휘는 구체적 대상을 지칭하고 있기 때문에 어휘들을 구분하는 범주도 현실의 영역을 기준으로 나누어진 것임. 그러나 농촌다움은 현실을 반영하면서도 미래를 투사하는 추상적 영역을 암시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농촌다움 범주는 다소 추상의 정도를 높이는 단어로 바꾸어 범주를 명명하였음

- 농촌다움 개념을 구성하는 주요 분야의 도출
 - ① 자연 영역 → 환경성
 생태적 건강, 자연 순환되는 환경, 청정하고 쾌적 환경
 - ② 역사 및 공동체 영역 → 역사·공동체성
 지역의 역사 계승, 서로 돕고 친근한 이웃, 노령화되는 인구
 - ③ 농업 및 산업 영역 → 자립성
 농업 생산, 귀농 귀촌 현상, 비농업 활동의 증가
 - ④ 경관 및 감성 영역 → 심미성
 자연 농경지 마을의 어우러짐, 아름다운 산야 풍경, 추억을 간직한 장소, 지역 고유의 느낌과 향수
 - ⑤ 문화 및 농촌관광 영역 → 향유성
 지역 특색의 놀이, 농촌체험 방문과 도농교류, 다양한 여가 활동, 다문화가정
 - ⑥ 생활 및 정주공간 영역 → 정주성

정주 여건과 생활서비스, 정부의 농촌개발 사업, 안전과 최신 수요와 관련된 생활환경

라. 전문가집단이 생각하는 농촌다움

1) 과거 및 현재의 모습으로서 농촌성(rurality)

- 농촌 전문가 집단 30명을 대상으로 한 농촌다움 어휘 목록 조사
 - 과거나 현재의 농촌을 떠올렸을 때 생각나는 단어나 문구를 1인당 7개 이상을 서술하도록 설문 조사 실시
 - 농촌의 과거 및 현재적 모습으로서 농촌다움: 농촌성(The state or quality of being rural in the past or present: **Rural as is or as was**)
- 특징 : 농촌을 연상할 경우에 가장 많이 떠올리는 것은 농촌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자연환경, 농업생산, 경관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음

() 안의 숫자는 어휘 빈도수를 나타냄

영역	전문가 서술 어휘		세분류 언어	중분류 언어
	긍정·중립적	부정적		
환경성 (55)	산과 물(18). 둠벙		산수(19)	생태성 (39)
	자연(4). 별. 구름. 진달래. 아지랑이. 보름달. 소리(새 물 바람)		무생물 (13)	
	다양한 동식물. 곤충(2). 귀뚜라미. 풀벌레. 반딧불. 말뚝구리 건강하다		생물(7)	
	맑은 공기(4). 쾌적하다(2). 맑다	쓰레기. 비닐하우스 썩은 물. 집단축사	청정(11)	쾌적성 (16)
	푸르다(4). 초록의.		녹색(5)	

역사성 (31)	부모님(2). 귀향(2). 어머니. 고향. 조상. 친지. 외갓집. 산소	사라지는 고향	근원(11)	회귀성 (19)
	향수(2). 추억. 그리움. 흠내음. 화로불. 지계와 나뭇집		향수(8)	
	명절(2). 전통역사와 문화. 전통. 전통 한 옥.		전승(10)	전통성 (12)
	보존. 보수적 성격이 강한 집단		보존(2)	
공동체 성 (32)	인정(8) 인심(2) 친절하다. 따뜻하다. 보 고 싶은. 친근하다		온정(14)	관계성 (22)
	품앗이(3) 이웃(2) 계 공동체 친구		유대(8)	
		노인(5) 고령화(3) 농촌노령화	고령화 (9)	인구지 속성 (10)
		지속적인 과 소화로 소멸 하는 마을	과소화(1)	
자립성 (46)	논밭(9) 과수원(2) 목장 들녘		농지(13)	영농성 (27)
	소/송아지(5). 영농(2). 기계화 영농. 경 운기(3). 노작. 노동. 쟁기질		경작(14)	
	농작물(6). 벼. 가축대량사육	토종(재래종 고유종)이 사라짐	농축산물 (10)	경제성 (19)
	풍요롭다. 농부(2). 농업(2). 풍요롭다(3). 추수. 황금들녘	빈곤하다	생산(9)	
심미성 (36)		난개발(3). 무질서하다.	정돈(4)	관리성 (4)
	조용한 시골길(3). 시골(2). 구획되지 않 은 주택. 소박함. 촌스럽다. 비포장 흙길. 흙길		소박미 (10)	경관미 (21)
	아름다움(2). 좋은 경치. 마음이 편안하 다. 다랭이논. 넓은 농경지. 펼쳐진 평야 지대. 농촌의 식재. 초가집 풍경. 기와집. 새마을주택		풍경미 (11)	
	마을 어귀의 정자목. 아이가 놀던 동네마 당. 뛰어놀던 뒷동산. 돌담. 물레방앗간. 빨래터. 원두막. 공동우물		마을유산 (8)	장소성 (15)

	연기가 피어오르는 굴뚝. 장독대. 집 샘터. 가마솥이 있는 부엌. 뜨끈뜨끈한 구들방. 안마당		거주기억(6)	
향유성 (23)	휴식(2). 족대. 쥐불놀이. 화로불에 익어가는 통돼지. 축제		휴식(7)	여가성 (14)
	막걸리(2). 먹거리. 손맛. 김치. 밥		음식(7)	
	사회문화활동. 문화의 공간. 설, 보름, 추석		놀이형식(5)	문화성 (9)
	아이들에게 자연과 더불어 살수 있는 교육장소. 행복. 비합리성. 건강하다		인성(4)	
정주성 (27)	농가주택(5). 마을회관(3). 학교(2). 마을. 마을안길. 소재지 모습. 어르신들의 놀이터 마을회관	불편(2). 낙후(3). 낡고 오래됨. 슬레이트지붕	시설(21)	편의성 (27)
	5일장. 살고 싶다. 미래를 위해 보존해야 할 공간	취약한 접근성(2). 느리다	주거(6)	

- 2) 현재를 투영하면서도 바람직한 미래 모습으로서 농촌다움(ruralism)
- 전문가 집단이 서술한 농촌의 미래상 또는 현재 개선해야 할 모습
 - 현재를 감안하면서 미래 농촌을 상정했을 때 바람직한 농촌의 모습에 적합한 단어나 문구를 1인당 7개 이상 서술하도록 설문 조사
 - 현실의 농촌이라기보다는 미래의 농촌 혹은 바람직하게 구현되어야 할 농촌, 즉 어떤 규범적 이념에 의해 당위적으로 만들어져야 할 농촌의 모습으로 농촌다움을 상정
 - 농촌의 미래 모습으로서 농촌다움: 농촌성(The state or quality of being rural in the future reflecting the present: *Rural as be*)
 - 특징 : 미래를 투사한 농촌다움에는 부정적 서술이 없음. 현재의 농촌은 부정적 인식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을지라도 당위적으로 구현해야 할 농촌은 밝은 면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안의 숫자는 어휘 빈도수를 나타냄

영역	전문가 서술 어휘	세분류 언어	중분류 언어
환경성 (30)	주변 지형과 어우러진 아늑한 농촌. 자연과 교감하는 농촌. 자연과 살아갈 수 있는 공간. 친환경 농촌마을	자연과 조화 (4)	생태성 (14)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자연과 살아가는 농촌(3). 다양한 생명체(동식물)가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공간. 소하천에 다양한 물고기들이 서식하는 모습. 마을 뒷산이 잘 간별되어 산림생태계가 유지되는 모습. 생태계가 존재하는 공간. 자연환경 보존. 자연환경 보존 공간. 환경 보존	생물 다양성 보전 (10)	
	기후변화 대응 농촌. 청정에너지	순환성 (2)	쾌적성 (16)
	쾌적함(2). 깨끗함(2). 깨끗하고 맑은 물과 공기. 맑은 공기와 맑은 물이 넘쳐나는 곳. 무농약 유기농의 농촌. 수질개선(저수지, 소류지, 시냇가 등). 가축분뇨의 효율적인 처리방안을 통한 위생환경 제고. 축사 없고 조수 피해 없는 마을. 깔끔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쾌적한 생활공간. 비닐하우스(시설원예)가 줄어들고 노지재배가 늘어나는 모습	청정(14)	
	녹색이 살아 넘치는 농촌. 푸르른 농촌	녹색(2)	
공동체성 (45)	전통이 살아있는 농촌(2) 전통 속에서 한국적인 특성을 파악하고 현실에 적용. 무형자원 복원. 민요 판소리 전래동화 복원. 역사문화 공간 보존. 한국적 농촌 공간의 창조. 한국적인 가옥(한옥, 벽돌집 등) 특색 살려 서구권 주택과 차별화. 지켜야 할 곳(후세대에게 잘 물려줘야 할 공간)	전통성 (11)	역사성 (15)
	어머니 품과 같은 농촌(2). 고향. 가족	회귀성 (4)	
	함께 어울려 잘 사는 공동체(4). 공동체 의식 회복. 마을공동체가 살아 움직이는 농촌. 소규모 커뮤니티를 통한 공동체 활성화. 다양한 사회공동체. 공동의 목표를 가진 마을. 자립성 있는 공동체. 동일작물 농가의 연대·정보공유. 자조 활동	유대(12)	연대성 (15)

	훈훈한 농촌. 이웃 간의 정이 살아있는 주거지. 서로 돌보고 아끼는 행복이 충만한 곳	온정(3)	
	청년이 돌아오는 농촌. 젊은이들의 새로운 일터. 젊은 농촌. 넉넉한 농촌인구. 젊은이의 일자리가 풍부하여 자연스러운 인구 유입이 될 수 있는 곳. 젊은이와 어린아이 울음이 넘치는 농촌. 부활하는 초등학교. 어린이들	젊은 농촌(8)	인구지속성 (15)
	귀농귀촌(5). 이도향촌. 고향을 떠난 출향민들이 고향으로 돌아와 농촌마을이 건전하게 유지되는 모습	귀농 귀촌(7)	
자립성 (34)	기계화. 신품종. 특화작물 성장. 농작물지도. 우리나라 식품산업의 원천. 정밀 농업의 본격적 도입. 다양한 작물의 토종(재래종, 고유종) 발굴. 유리온실과 같은 사계절 생산환경. 고품화를 극복할 농기계 또는 시설. 수경재배	다변화 (10)	농업성 (24)
	약이 되는 먹거리. 안전한 먹거리. 안전한 농산물 생산공간. 안전 농산물. 안전 먹거리. 유기농업	안전먹거리(6)	
	식품공장. 첨단농법. 로봇농기계의 도입.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농업의 기계화로 농업 모델의 변화. 스마트팜 형식의 식료 공장화 필요. 스마트팜과 같은 ICT기술로 운영되는 농장. 스마트팜 등의 보급 활성화. 무인농업	첨단화 (8)	
	그린 투어리즘의 농촌. 농가소득이 높고 도농교류가 활발한 잘 사는 농촌. 도시와 농촌이 잘 연결되어 상시도농교류가 이루어지는 농촌. 농촌에 살고 도시로 출퇴근하는 사람들	도농교류(4)	도농연계성 (4)
	미래 일자리 창출(2).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혁신을 선도하는 농촌. 4차 산업혁명과 친화적. 농업융통한계성을 줄여 도시와 격차 줄이기. 마을에서 자급자족할 수 있는 곳	혁신을 통한 경제활성화(6)	지역혁신성 (6)
심미성 (28)	정돈된 농촌마을길. 정돈된 경작지. 분산입지한 공간이 잘 정리된 농촌. 난개발 방지. 잘 정비된 녹색 주거 공간. 주거환경 정비. 생산과 주거분리. 도시의 팽창을 억제하고 환경을 보존하는 허파 역할	정돈된 개발(8)	관리성 (13)
	공간계획에 의거한 농촌개발 추진. 체계적 개발.	계획적	

	농촌공간의 토지이용에 있어서 계획적인 관리. 농촌공간의 분리적인 접근이 아닌 종합적인 접근(산, 들, 마을, 수공간)	접근(5)	
	아름다운 경관. 아름다운 농촌 모습. 아름다운 전원. 경관이 아름다운 농촌. 경관농업. 경관농업. 경관작물 재배. 감성적인 경관. 우리 정서에 맞는 농촌주택의 개량.	아름 다움(9)	경관미 (9)
	특색 있는 마을. 지역 특징을 살려 경쟁력 높이기. 지역 특화를 이루어 경쟁력을 갖춘 곳. 개성 있는 자원이 보전된 농촌. 특색 있는 농촌중심지와 마을공간의 계획. 농촌다움이 보전된 개성 있는 공간	지역 개성(6)	장소성 (6)
향유성 (12)	휴식과 휴양(4). 여유(2). 치유. 마음의 휴식	휴양	여가성 (5)
	잘 보존된 휴양공간. 힐링 마을. 휴식처. 여가휴양공간. 농촌여가시설 확충	여가 공간(5)	
	다문화가정과 어우러지는 농촌(3). 외국인	다문화 가정(4)	다양성 (4)
	도시적 문화환경을 차별 없이 누릴 수 있는 농촌. 주민들이 위트가 있고 만족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곳. 도시보다 행복지수가 높은 농촌	생활 만족(3)	문화성 (3)
정주성 (37)	기반시설이 잘 구비된 중심지(생활편의, 문화시설 등)(4). 주민자치의 독자적 작은 생활권 확립(2). 생활편의 시설 개선으로 살기 편한 농촌. 생활편의 시설에 불편이 없는 곳. 사는데 불편 없는 농촌. 주민이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많은 것이 갖춰진 곳. 문화 및 복지시설 완비. 생활밀착형 SOC 지원 확대. 교육 환경	편의 시설(13)	편리성 (22)
	온라인 접근. 오프라인 접근. 중심지 및 대도시와 쉽게 오갈 수 있는 양호한 접근성	서비스 접근성 (3)	
	살기 좋은 정주환경 유지. 친환경적인 정주환경. 첨단화로 살기 편한 전원주거지. 공동홈(공동주거단지)으로 통한 빈집 정비. 오래토록 살고 싶은 곳. 전원 주거공간	주거 공간(6)	
	사고 및 범죄로부터 안전. 재해 안전 마을	안전(2)	신뢰성 (8)
	노인들이 살고 싶어 하는 농촌. 어르신이 여생을	노인	

	즐겁게 지낼 수 있는 곳. 노인 친화적인 주거환경. 초고령 사회. 양극화(발전하고 인구가 늘어나는 마을 vs. 주민 없는 마을)	배려(6)	
	드론 활용(2). ICT가 접목된 생활환경. 첨단 스마트시스템이 구축된 농촌. ICT와 접목한 고령자 주거환경	첨단 서비스 (5)	수용성 (7)
	문화 복지 수요를 수용할 수 있는 곳. 독거노인 복지서비스 제공	새 수요 대응(2)	

4. 농촌다움의 개념 체계

가. 농촌다움의 정의 및 개념 입체화

1) 농촌다움의 정의

농촌다움이란 농촌의 환경에서 생산 문화 공동체 주거 등의 활동이 오랜 시간에 걸쳐 이루어지면서 구조적으로 형성된 이미지·정서·생활·경관의 특성으로, 농촌을 인식하거나 구현함에 있어 규범이 되고, 농촌을 직간접 향유하며 얻는 효용의 원천으로서 인류가 보편적으로 누려야 할 자산을 말한다.

키워드 : 환경·경과·통합·구조·이미지·정서·경관·규범·향유·자산

2) 농촌다움 개념 입체화

- 대상 체계 : 농촌다움은 농촌의 제반 환경과 활동을 망라하여 대상으로 삼되 양자의 관계에는 구조적 특징이 있고 그것이 농촌다움을 형성하는 원천이 됨
 - 자연 : 생태계

- 경관 : 이미지, 표상
 - 산업 : 농업, 산업, 생산
 - 지역 : 전통, 토착, 역사
 - 공동체 : 문화, 집단, 인적망
 - 생활 : 마을시설, 주거지(주택), 개인 및 공동 활동
- 시간 체계 : 농촌다움은 과거부터 미래까지의 시간 축에서 누적되어 형성
- 현재와 그 이전 : 과거부터 현재까지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시간 축에서 공간·사물·활동이 융합·누적되어 객관적 현실로 구현된 ‘농촌성(rurality: rural as is)’으로서의 농촌다움
 - 현재를 기점으로 미래 : 공간과 사물을 매개로 일정한 의지적 활동이 투입되어 미래 어느 시점에 실현될 ‘농촌만들기’ 또는 ‘농촌주의(ruralism: rural as to be)’로서의 농촌다움
- 위계성 : 농촌다움은 상위 추상에서 하위 현실에까지 개념적 위계를 갖고 있으며, 상위 범주는 하위 개념 요소를 포괄하게 됨
- 농촌다움은 추상과 구체가 복합된 개념으로 추상의 정도가 높고 범위가 포괄적일수록 상위 개념으로, 추상의 정도가 낮고 범위가 좁을수록 하위 개념으로 체계화하여 개념의 위계성을 형성할 수 있음
 - 상위 지향 : 추상을 지시
 - 하위 지향 : 구상을 지시(구체화)
- 술어 체계 : 농촌다움은 현실태와 당위적 모습을 나타내는 어휘들로 기술될 수 있으며, 서술문은 농촌다움의 표상과 규범 그리고 효용성을 나타내게 됨
- ① 단순 서술 : 형용사적 표상

- ② 어휘적 구성 : 형용사와 명사의 병치
- ③ 관계적 구성 : 문장으로 상황을 구성(주어와 술어 등장)

다. ‘농촌다움’의 현재적 바탕으로서 ‘농촌성’ 개념

1) 연구진이 1차로 마련한 농촌성 개념 체계

- 농촌성의 개념 체계 정립
 - 상술한 바와 같이 연구진 10명이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목록화한 농촌 관련 어휘를 기초로 농촌성을 구분하는 개념적 범주를 6가지로 도출함
 - 범주 : 환경성(생태성 건강성), 이미지(재현성 심미성), 생산성(농업성 산업성), 지역성(역사성 향토성 회귀성/향수), 공동체성(관계성 공동성), 정주성(거주성 구조성 일상성/생활)

(표 5-3) 1차로 도출된 농촌성의 개념 체계

개념 범주	하위 개념 요소	
환경성	생태성	청정성... 깨끗함, 쾌적함 생태성... 토양, 공기, 햇빛, 하늘, 물
	건강성	순응성... 자연동화, 자연음식, 먹거리
이미지	재현성	실상... 사진, 영상, 사실주의 풍경화 연상... 부분 묘사, 모조, 이발소 그림, 아이콘, 문학 가상... 가상 농촌(디지털), 조감도, 무대배경, 만화
	심미성	개방성... 트인 경관, 개활지(전답, 목초지) 검박성... 단순한 경관, 소박함, 투박함, 지루함 개성... 다양성(자연-인공 섞임), 변화상, 마을특화 조화성... 마을-주변 어우러짐, 지형 조화, 균제미 (균형/정돈/비례)
생산성	농업성	쌀주식... 동아시아, 쌀문화, 비축미 풍요성... 수확, 풍년, 한가위 계절성... 절기, 농번기/농한기

지역성	역사성	전통성... 지방사, 전설, 구전, 인간전승, 전통종교
	향토성	토속성... 토박이, 민속, 풍수, 지명, 전승놀이, 방언
	회귀성	향수... 고향, 그리움, 실향, 전통가요(트로트) 기억... 집단기억, 개인추억, 장소기억 귀소... 아늑함, 유년기, 어머니 품, 명절귀향
공동체성	관계성	유착성... 혈연(집성촌, 친척), 지연, 이웃사촌, 동네 온정성... 다정다감, 포용성, 할머니, 축제
	공동성	집단성... 공동활동, 작목반, 마을회의(대동계) 공유성... 시설공유, 마을회관 공동생활
정주성	거주성	편의성... 마을시설, 공공서비스(교통/복지/문화 등) 혼주성... 귀농귀촌, 도시화, 비농업인
	구조성	통합성... 취락구조(농지-마을-자연 일체화), 반복된 형태(패턴화) 독립성... 마을단위 주거 완결성, 시가지와 독립 저밀성... 인구/시설 저밀도, 산재(散在), 소규모
	일상성	안전성... 평온함, 조용함, 느릿함, 일/계절주기성

2) 연구진이 2차로 마련한 ‘농촌성’ 개념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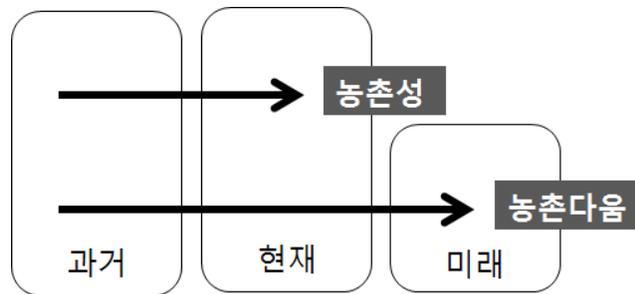
- 농촌 전문가 30명을 대상으로 농촌성을 나타내는 어휘 목록 조사에 기초하여 농촌성의 개념 체계를 구성
 - 농촌성 7가지 범주: 환경성(생태성 쾌적성), 역사성(회귀성 전통성), 공동체성(관계성 인구지속성), 농업성(영농성 경제성), 심미성(관리성 경관미 장소성), 향유성(여가성 문화성), 정주성(편의성)

농촌성 영역	중분류	세분류	구성 요소
환경성	생태성	산과 물	산, 강, 하천, 호소, 지형
		무생물	토양, 기상 현상, 공기, 하늘
		생물	다양한 동식물, 풀벌레

	쾌적성	청정	깨끗함, 쾌적함
		녹색	푸르름 초록
역사성	회귀성	근원	뿌리 의식, 조상, 부모, 어머니님, 명절, 귀향
		향수	고향, 그리움, 친구, 보고 싶은
	전통성	전승	전통 생활양식, 전통 주거양식 계승
		보존	역사문화 환경 및 활동 보존
공동체성	관계성	온정	인심, 친절, 따뜻한 인정
		유대	전통 공동체 조직·활동, 지·혈연
	인구지속성	고령화	고령화, 농촌의 인구적 특징
		과소화	빈집, 과소화 마을
농업성	영농성	농지	논 밭 과수원 목초지 들녘
		경작	경작 활동·도구, 쟁기질
	경제성	농축산물	농작물, 가축
		생산	수확, 농민 빈곤, 농업 영세성
심미성	관리성	정돈	난개발, 무질서한 경관, 정비, 계획, 디자인
		경관미	소박미 풍경미
	장소성	마을유산	추억의 마을장소, 어귀, 동네마당, 정자목 등
		거주기억	특정적 주택공간(우물, 안마당, 마루, 방 등)
	향유성	여가성	휴식
음식			음식에 대한 기억, 체감을 갖는 음식
문화성		놀이형식	통과의례, 문화행사,
		인성함양	행복, 심리적 만족, 교육
정주성	편의성	시설	농촌 기반시설, 각종 생활서비스
		거주	농촌 생활의 특징, 접근성 취약

라. 미래 지향으로서 ‘농촌다움’의 개념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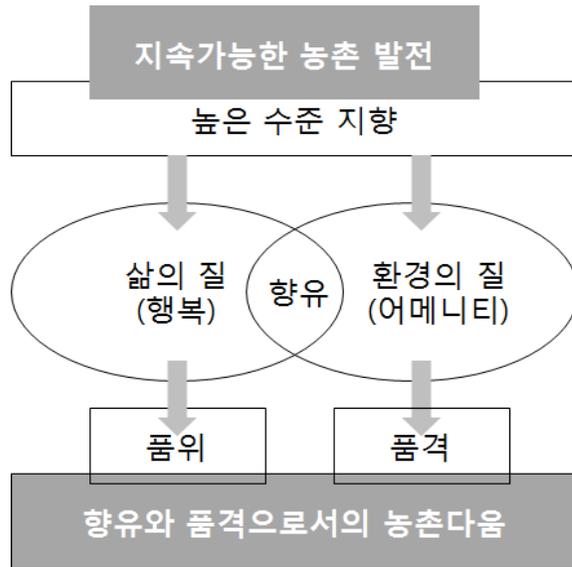
- 농촌의 미래 발전을 지향하는 개념으로서 농촌다움 접근
 - 농촌성 : 과거로부터 이어지면서 구조화되어 현재 온전히 드러나는 농촌적 특성의 총체
 - 농촌다움 : 과거에서 현재를 거치는 사이에 존재했거나 미래로 자연스럽게 투사되는 또는 의지를 통해 이루려는 농촌적 표상·규범·효용



<그림 5-2> 농촌다움의 미래지향성

- 지향성 : 현재 전 세계 및 우리나라 농촌이 미래 성취하려는 발전 전략 3가지
 - ① ‘지속가능한 발전’: 세계적 발전 이념이자 전략
 - ☞ 경제, 공동체, 환경의 지속가능성 확보
 - ② ‘삶의 질(quality of life)’: 농업·농촌 발전의 기본 전략
 - ☞ 품위 있는 삶 지향
 - ③ ‘환경의 질(quality of environment)’: 농촌에 대한 기본 전략
 - ☞ 품격 있는 공간
 - 일반적으로 ‘환경의 질’은 ‘삶의 질’을 창출하기 위한 하위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농촌 분야에선 환경의 질 그 자체만으로도 분야가 방대하고 막대한 재정과 인력이 투입되는 특성을 고려하

여 환경의 질을 위한 별도의 전략을 수립하여 정책 역량을 집중하는 있는 상황



<그림 5-3> 농촌다움의 지향성

- ‘농촌다움’ 개념을 통해 지향하는 농촌의 발전상
 - ① 지속가능한 농촌 : 전 세계적 보편 이념
 - ② 향유와 품격의 농촌 : 기존 지속가능성 개념에 없는 새로운 가치
 - 농촌다움 개념을 도출하기 위한 3가지 이념 축은 지속가능성, 삶의 질, 환경의 질이고, 여기에서 농촌다움을 만드는 근간으로서 지속가능성, 향유, 품격이란 개념을 이끌어 냄
 - 향유는 탈근대주의(포스터모더니즘) 시기에 공동체와 개인이 조화를 이루면서 생활이 이제 기초적 생존에서 벗어나 안정과 여유로움을 누리려는 새로운 경향을 적극 수용한 개념임. 공동체와 개인 모두 품위 있는 활동과 삶을 영위하길 기대하는 가치를 반영한 것이 향유라 할 것임
 - 품격은 현재 농촌이 가진 부정적 이미지, 특히 무질서, 불결, 불편

- 등을 개선하여 정돈되고 청정하며 안락하고 아름다운 농촌으로 거듭나길 지향하며 제안된 개념. 농촌주민이 품위와 향유를 가졌다면 농촌환경이 품격을 갖추길 희망하는 목표적 개념이라 할 것임
- ‘향유’는 포스트모더니즘 대두 이후 경제적 성취나 물질적 풍요보다는 개인의 감성과 행복, 생활세계의 일상적 현상을 중시하는 자유주의적 가치로서, 탈근대와 탈집단주의를 지향하면서도 공동체적 연대와 타인에 대한 배려를 중시하는 새로운 세계시민의 담론

(표 5-4) 지속가능성·향유·품격을 반영한 농촌다움의 서술

지속가능한 농촌	환경적으로 건전한 농촌	자연생태계가 건강한 농촌 탄소중립을 지향하는 농촌 오염이 없는 쾌적한 농촌 기초시설 수요를 충족시키는 농촌
	공동체 기반이 온전한 농촌	지역의 역사문화가 살아있는 농촌 사회적 안전망이 구비된 농촌 상호 연대하고 참여하는 농촌 인구절벽·과소화에 대응하는 농촌
	경제적으로 자립가능한 농촌	생명과 사회를 살리는 농업 혁신·향토산업이 공존하는 농촌 도농이 교류·상생하는 농촌
향유와 품격의 농촌	스스로 만든 아름다운 농촌	난개발을 예방·치유하는 계획된 농촌 협력하여 가꾸어가는 아름다운 농촌 지방특색의 장소성을 만들어가는 농촌
	믿고 배려하는 감성 농촌	여성·육아·노약자 친화적인 농촌 사건사고로부터 자유로운 안전한 농촌 다문화가정에 먼저 다가가는 농촌
	여유롭고 즐거운 농촌	여가공간이 잘 구비된 농촌 전연령대 향유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농촌 사회적·공유경제에 즐거워하는 농촌
	스마트한 생활서비스를 누리는 농촌	지능화된 생활서비스가 잘 구현된 농촌 주민수요맞춤형 생활SOC가 구비된 농촌 주거환경에 감성지능이 부가된 농촌

- 현재적 ‘농촌성’과 미래적 ‘농촌다움’의 정합(상호 대응)
 - 농촌의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실상을 보여주는 농촌성과 현재부터 미래로 나아가려는 농촌다움 간에는 시간 축 상의 차이가 존재하고 또한 지향하는 바에도 약간의 차이가 있음
 - 그러나 미래를 투사하는 농촌다움도 현재에서 시작하고, 과거와 현재를 품고 있는 농촌성도 현재를 기점으로 하고 있으므로, 양자의 개념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현재라는 기준에서 보면 두 개념 간에는 연결고리가 생기게 됨
 - 농촌성과 농촌다움 모두 환경성, 공동체성, 자립성, 심미성, 향유성, 정주성이란 6가지 하위 개념은 공통된 범주로서 존재

(표 5-5) 농촌성과 농촌다움 개념의 정합

미래로서의 농촌다움 구성		현재로서의 농촌성 요소	
환경성	자연생태계가 건강한 농촌 탄소중립을 지향하는 농촌 오염이 없는 쾌적한 농촌	생태성 자원순환성 에너지자립성 청정성	생태성 환경성 청정성
공동체성	지역의 역사문화가 살아있는 농촌 사회적 안전망이 구비된 농촌 상호 연대하고 참여하는 농촌 인구절벽·과소화에 대응하는 농촌	전통성 토속성 회귀성 복지시혜 연대성 인구대응성	전통성 토속성 회귀성 유착·온정·집단성
자립성	생명과 사회를 살리는 농업 혁신·향토산업이 공존하는 농촌 도농이 교류·상생하는 농촌	농업성 혁신성 도농연계성	쌀주식 풍요 계절성 혼주성
심미성	난개발 예방·치유하는 계획 농촌 협력하여 가꾸어가는 아름다운 농촌	디자인 토지이용	통합·저밀·독립성 개방·검박·조화성

	지방특색의 장소성을 만드는 농촌	경관미 인간미 장소성	향토성 회귀성
향유성	여가공간이 잘 구비된 농촌 전연령대 향유프로그램 참여 농촌 사회적·공유경제에 즐거워하는 농촌	여가성 자아실현 사회적경제 공유경제 비영리공동체	공동성 관계성 공유성
정주성	지능화된 생활서비스가 구현된 농촌 주민수요맞춤형 생활SOC 구비 농촌 주거환경에 감성지능이 부가된 농촌 기초시설 수요를 충족시키는 농촌 안전하고 노약·여성·소수자 친화적인 농촌	지능성 수요대응성 감성융합성 편의성 안전성 사회취약성	독립성 일상성 편의성 안정성 공유성 온정성 혼주성

- 최종 정립된 농촌다움 개념 체계와 지향 어휘 서술
 - 농촌다움은 지향 가치로서 그 지향하는 바의 표상과 이념, 효용성을 목표적인 어휘로 서술할 수 있음
 - 농촌다움은 6대 영역, 20개 항목으로 구성됨
 - 농촌다움의 6대 영역은 환경성(3개 항목), 공동체성(4개 항목), 자립성(4개 항목), 심미성(3개 항목), 향유성(3개 항목), 정주성(3개 항목)으로 이루어짐

(표 5-6) 최종 정립된 농촌다움 개념 체계

영역	항목	지향 어휘
환경성	생태성	자연생태계가 건강한 농촌
	순환성	자원순환과 에너지자립을 이루는 농촌
	쾌적성	오염이 없는 쾌적한 농촌
공동체성	역사성	지역의 전통과 기억을 계승하는 농촌
	복지접근성	사회적 안전망이 완비된 농촌

	연대성	상호 연대하고 참여하는 농촌
	인구지속성	인구절벽·과소화에 대응하는 농촌
자립성	농업성	생명과 사회를 살리는 농업
	지역혁신성	혁신·향토산업이 공존하는 농촌
	도농연계성	도농이 교류·상생하는 농촌
	포용성장성	사회적·공유경제와 함께 성장하는 농촌
심미성	관리성	난개발 없이 섬세하게 관리되는 농촌
	경관미	고유한 감성을 가꾸어가는 아름다운 농촌
	장소성	지역정체성을 간직한 개성 있는 농촌
향유성	여가성	여가공간과 활동이 완비되어 여유로운 농촌
	다양성	출신·연령·성별 상관없이 다양한 활동이 한데 어우러지는 농촌
	문화성	즐거운 체험과 생활로 큰 만족을 얻는 농촌
정주성	편리성	생활서비스가 충족된 편리한 농촌
	신뢰성	안전하고 노약·여성·소수자 친화적인 농촌
	수용성	주민 현요구와 첨단기능이 조화된 활기찬 농촌

제3절 농촌다움 정책 주류화

1. 농촌정책에서 농촌다움의 표상과 준거 변화

- 1970-1980년대 정부주도 새마을운동과 농촌산업화
 - 농촌 근대화 시동과 재래 주거환경 개조: 표준화된 주택, 취락구조 개선
 - 생산기반 전면 정비: 경지정리를 통한 획일화된 농업환경·경관 양산
 - 농외소득원 개발, 농공단지 등 산업기능 도입 촉진: 이질적 경관 형성
 - 행정주도 주민동원에 의한 마을개발 추진과 관제 농촌주택·마을 표준계획이 제시한 근대적 농촌다움의 전형(prototype)을 전국민에게 집단 이식(‘재래농촌=열등, 근대농촌=선진’이란 이데올로기를 주입, 전통적 농촌다움의 훼손을 선진적인 행동으로 인식하게끔 계몽교육 시행)

- 1990년대 농촌정주권개발, 마을종합개발
 - 기초수요 이론에 기초한 정주기반 조성에 초점
 - 농가의 기계화, 영농 규모화 등 농업현대화를 측면 지원하는 정주환경 개발
 - 농촌성장과 주민복지를 동시에 달성하고자 했으나 농촌경제의 양적 불륨을 확장하려는 생산주의에 경도된 농촌 상에 기초한 정책으로 평가할 수 있다

- 1990년대 후반 이후 농촌관광
 - 도농교류를 통한 농촌경제 활성화에 초점(농촌 인구감소에 대한 대처 차원이자 농외 소득원 다양화 차원에서 최초 접근)
 - 2000년대 중반 이후 농촌체험은 관광이란 측면보다는 농촌체험,

체험교육의 개념으로 전환. 농촌다움을 체득함으로써 도시민의 농촌 이해를 촉진하려는 목적도 내포

- 농촌체험이 마을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 일자치 창출하는 기회로 인식. 이를 통해 공동체 활성화를 목표
- 농촌체험관광이 농촌다움의 고유성을 발굴하고 계승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나 농촌다움이 지닌 다부문성, 총체성(농촌다움은 여러 자원이 총화되었을 경우 체득 효과가 극대화되는 특성), 경과성(오랜 시간에 걸쳐 농촌다움을 형성하는 특성), 온전성(자원의 일부분이 원형지에서 떨어져선 온전한 농촌다움을 구현하지 못하는 특성)을 지키고 이끌어내는 데에는 한계를 나타냄

○ 2000년대 농촌어메니티자원 발굴과 활용 연구

- 농촌관광의 활성화를 위한 체험 콘텐츠 개발 차원
- 농촌개발의 새로운 수단이자 도농교류 체험 테마로서 어메니티를 접근
- 어메니티 자원 발굴 정책은 농촌다움의 다부문성, 고유성을 인식시키는 성과를 가져왔으나 농촌다움의 핵심요소인 총체성과 온전성, 경과성을 간과한 채 농촌에 잔류하는 특색 자원만 발굴하면 어메니티로서의 가치를 발견하는 것으로 오해한 측면이 있음(어메니티와 자원을 등치관계로 인식한 오류)

○ 「농촌 경관개선 종합대책(2006)」, 「농촌다움 제고를 위한 오감경관 추진 대책(2011)」⁶⁰⁾ : 어메니티를 농촌다움으로, 그것도 경관에 국한된 편향 이해

60) 오감경관대책의 목표는 “농촌다움 제고를 위한 오감경관 구현”이며 이를 위해 “다원적 가치 제고를 위한 계획 중심의 경관사업 추진”, “교육 등 역량 강화를 통한 자율적인 주민의 경관관리 유도”, “전통과 문화, 경관의 가치 발굴 및 보전”을 정책방향으로 설정하는 것임. 주요 추진 대책으로 계획 중심의 경관 시범사업, 경관보전직불제 내실화, 농어업 유산제도의 도입, 농어촌 문화환경·경관관리 사업, 농어촌 주택 경관개선, 교육 및 홍보 등이 있음.

- 「농촌경관개선종합대책」은 “은 국민에게 사랑받는 쾌적한 농촌 공간 구현”을 비전으로 “先 농촌경관계획-後 농촌개발 시스템 정착”을 목표로 설정함
 - 「五感 경관대책」은 생태, 문화, 환경 등 다양한 농촌다움의 가치를 포괄하는 경관관리 방안으로서 농업인에게 살맛나는 거주공간을 제공, 도시민들에게는 여가생활을 충족시키며, 농어촌 전통과 문화, 경관 가치의 보전 및 활용성을 제고함
 - 정책 오류 : ① 환경에 대한 체험적 특성을 지닌 ‘농촌어메니티’를 환경은 물론 경제·사회·문화까지 포괄하는 ‘농촌다움’으로 확대 해석한 오류. ② 어메니티를 범 환경이 아닌 경관 부분으로 편향시킨 오류
- 2010년대 농촌중심지, 권역단위, 마을단위 개발사업
 - 정주기반 확충과 함께 지역경제, 공동체, 복지활동 활성화 동시 도모
 - 정주기반 이외에 생태, 문화, 경관 생태 등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환경개발 정책
 - 농촌다움이 다부문적이고 총체적 국면을 지니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으나 현실 정책에서는 농촌다움의 보전과 발굴을 경관환경 부문에 국한돼 추진하는 한계를 노정
 - 2010년대 중반 이후 농업유산 발굴과 활용
 - 전통 농업유산의 보전이란 측면에서 농촌정책에서 최초의 보전정책 시도
 - 어메니티 정책에서 농업유산으로의 선택적 발전
 - 2018년 농촌다움 복원 사업
 - 농업유산을 포함한 지역 특색의 자연 및 문화자원의 활용에 방

- 점. 주목할 만한 별도의 환경자원을 발굴, 이용하는데 주력(농촌 관광과 연계 의도 워힘)
- 생태·문화환경의 체계적 보존을 위한 방침은 불명확. 주민이 생활하는 마을 내부에서 농촌다움을 복원하는 과제(주민에겐 가장 중요한 요소)는 빠져있음
- 농촌다움의 총체성과 온전성을 발굴·보전하기 보다는 자원의 고유성에 주안점이 맞춰졌고, 생활환경에서 농촌다움을 복원하는 내용은 누락돼 있음

2. 농촌다움의 주류화

가. 주류화의 방향

- 성취해야 할 표상으로서 농촌다움의 전(全)방위적 추구하고 확산
 - 현재 활용할 가치가 있는 환경이나 농업유산을 보전하기 위해 농촌다움 복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음(협회의 농촌다움)
 - 농촌다움은 자연·문화·정주 등 환경은 물론 경관, 공동체, 농업, 지역경제 등 관련 분야 전반에서 총체적으로 이룩해야 할 상위 과제
 - 농촌정책 전 과정에서 농촌다움 확산: 정책의 구상, 계획·프로그램·사업, 그리고 모니터링의 전 단계에 걸쳐 농촌다움의 개념과 요소 침윤
- 다부문 농촌정책의 보편적 목표로서 광의의 농촌다움 규범화
 - 농촌다움은 농촌정책이 지향할 보편적 조건이자 목표: 상위 이념인 동시에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할 일상적 과제임
 - 정주환경(마을·중심지), 체험소득, 산업융복합화, 농촌서비스 등 농촌정책 프로그램 및 사업 전반에서 농촌다움 요소를 도입한 계획 수립

- 내생적 방식에 기초하되 수직·수평 협력을 통한 농촌다움 성취
 - 지역단위 주민-행정-읍저버(전문가·지역단체·중간조직·사무장 등) 연대에 기초해 농촌다움을 발굴하고 보전·활용하는 방안 마련
 - 농촌다움 실현을 위한 중앙과 지방의 역할 분담,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투입 및 성과 평가 방식 마련

나. 정책 주류화를 위한 과제

- 농촌다움을 다부문, 내생적 방식, 지역연대, 종합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과제
 - ① 제도화 : 광의의 농촌다움 정책 추진 근거 법령·지침 제·개정
 - ②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체험휴양마을사업 등 농촌개발사업 전반에 농촌다움 진단·보전·활용을 위한 계획 및 프로그램 포함토록 지침화
 - ③ 지역단위 농촌계획(농업농촌기본계획, 삶의 질 계획 등)과 개별사업계획에서 농촌다움을 실현하는 방안(계획 목표·전략·과제·내용에 농촌다움 포함)
 - ④ 현행 농촌다움 복원사업을 확대 시행하되 농촌다움의 진단·발굴, 자원화, 보전, 활용 등 총체적 접근에 의한 사업으로 방향 전환
 - ⑤ 정주기반·주거·생산기반·경관·농업환경·산업기반 등 물적 서비스, 농촌관광·농촌산업·지역경제·공동체·문화활동 등 비물적 서비스 전반에서 농촌다움을 구현하는 방안 마련
 - ⑥ 주민·공무원·관계자 역량강화, 농촌전문가 육성, 대학 등 교육과정에서 농촌다움 과정 신설 운영
 - ⑦ 마을·중심지 등 정주위계별, 시설·콘텐츠 등 서비스 단위별 농촌다움을 구현할 수 있는 방안(계획·설계기법, 시행기술, 운영방안 등)에 대한 다학제적 연구 추진

제4절 농촌다움 인식적 평가방법 개발

- 본 연구의 핵심 과제인 ‘농촌다움 이미지’를 통한 농촌다움 개념을 정립하고자 다양한 자료와 계층을 분석하여 반영함
- 농민/농촌중심지 거주민/귀농/귀촌인 등과 함께 SNS데이터를 이용한 일반대중들의 인식을 조사함
- 본 과업에서는 최근 주목받는 SNS데이터를 이용한 분석과 전통적으로 사용해온 설문조사를 발전시킨 형태로 ‘농촌다움 이미지’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함
- 농촌다움에 대한 대중의 인식은 도시에 거주하는 도시민들을 잠재적 귀촌·귀농인들로 설정하고 농촌에 대한 구체적인 이미지를 도출하고자 함
- 농촌다움에 대한 농촌거주민들의 인식은 농촌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주체인 농촌거주민들의 인식을 통해 농촌다움의 관리요소를 도출하고자 함
- 농촌다움에 대한 귀농·귀촌인들에 대한 인식은 농촌의 축소, 인구감소의 측면에서 향후 농촌다움을 만들어갈 주체인 귀농·귀촌인들의 인식을 파악하고자 함
- 최종적으로 도출한 농촌다움에 대한 이미지를 현상의 실태와 비교하여 검토하는 과정을 수행함

1. SNS 데이터를 활용한 ‘농촌다움’에 대한 이미지 분석

가. SNS 분석의 특징

- 기술의 발달로 정형데이터 외에 비정형데이터가 증가하고 있으며,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다양한 분석방법이 등장하고 있음⁶¹⁾

61) HanChen et al.,(2016).

- 빅데이터는 양적 측면 외에도 데이터가 보유한 다양성 및 질적 가치에 있어서 주목받고 있음⁶²⁾
 - 비정형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은 기존의 주관성이 개입되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장점이 부각되어 많은 관련 연구가 수행되고 있음⁶³⁾
- 다양한 유형의 빅데이터 중 비정형데이터인 블로그는 이용자의 일상, 정보 등을 기록한 게시물을 보유한 개인적 감정과 생각이 표현된 공간임⁶⁴⁾
- 블로그 데이터는 여타 비정형데이터와 다르게 개인이 체험한 사실에 기반하여 사진과 글을 통해 견해를 서술함⁶⁵⁾
 - 따라서 블로그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은 일반 대중이 느끼는 농촌에 대한 이미지를 파악하는 방법이 될 수 있어, 본 연구에서는 블로그 데이터를 다량 활용하여 텍스트가 내포하고 있는 특징을 분석하고자 함
 - 본 연구에서는 NetMiner 4.0을 활용하여 키워드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아래 그림과 같이 시각화함

62) Daniel(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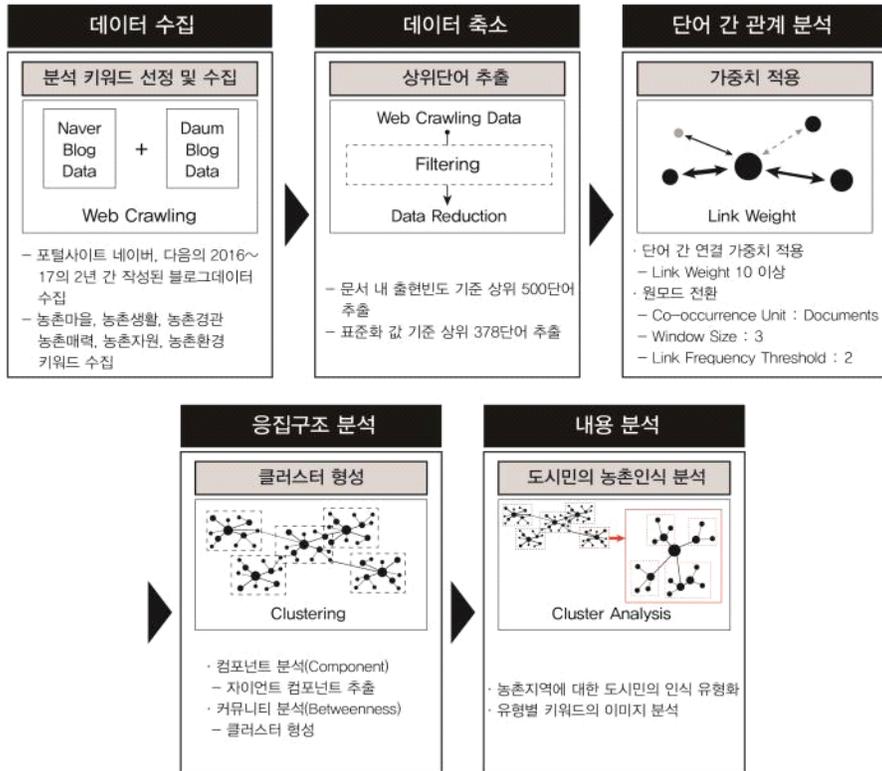
63) Guo et al.,(2016).

64) 장현미 외(2012).

65) 이정훈, 정희선(2014).

		업이다. 전남 화순군이 올해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기 위해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34억 원을 투입한다.
농촌 마을	297,714	한적했던 서산시 성연면 농촌마을이 생활환경 개선으로 산뜻하고 쾌적한 경관으로 바뀌며 예전의 활기를 되찾게 됐다. 농촌마을의 과소화는 읍면 과소화를 거쳐 시군 과소화로 이어지면서 농촌사회의 붕괴를 불러온다.
농촌 생활	25,639	계절마다 즐기는 먹거리나 꽃은 농촌생활의 즐거움이다. 농촌 노인들을 대상으로 요가 등 건강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단조로운 농촌생활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고 있다.
농촌 관광	13,403	농촌융복합산업과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토론의 장이 열렸다. 전남 진도군이 특색있는 경관작물을 재배해 농촌관광자원으로 활용, 볼거리와 연계한 농촌관광을 활성화한다.
농촌 경관	28,846	아름다운 농촌경관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함으로써 지역축제 등과 연계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농촌재능나눔 사업으로 나이가 들어가는 농촌주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농촌 경관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촌 매력	24,052	농촌경관 사진 공모전은 사진을 통해 아름답고 매력적인 농촌 모습을 국민에게 알리고 농촌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2007년부터 실시됐다. 농촌여행스텝프를 통해 우리 농촌의 매력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기를 기대한다.
농촌 자원	81,909	완주군의 다양한 농촌자원을 활용한 진로 탐색 농촌체험을 발굴·운영, 청소년들에게는 꿈과 끼를 찾아주고 농촌지역에는 활력을 높이는 데 앞장서겠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의 지원을 받은 시·군이 주체가 돼 지역의 특색 있는 농촌자원과 관광자원을 연계한 체험·관광·식사·숙박이 어우러진 여행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농촌 어메니티	2,138	농촌마을 주민들의 주도로 농촌을 깨끗하고 아름답게 가꾸고 보존·유지하여 단순한 환경개선을 넘어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고 도시민의 휴식처가 되는 농촌 어메니티의 가치를 높일 것이다.
농촌 다움	2,517	농촌재생은 말 그대로 주민이 불편 없이 살만한 곳으로 효율적으로 정비하는 것을 말한다. 한 걸음 더 나아가면 경관과 생태, 역사, 문화 등 다양한 유무형 자산을 활용해 농촌다움(Rurality)을 복원하고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농촌재생의 출발점이다.

자료 : 네이버 블로그 2018년도 09월 19일 검색결과.



<그림 5-5> SNS 데이터 분석의 과정

- 소셜빅데이터를 통해 일반 대중의 농촌이미지 파악을 목적으로 블로그를 중심으로 데이터 수집을 실시함
 - 블로그데이터 수집에는 ‘텍스툼(Textom)’사이트를 통해 웹크롤링(Web-crawling)을 수행함
 - 데이터 수집을 위한 키워드는 6개(농촌마을, 농촌생활, 농촌경관, 농촌매력, 농촌자원, 농촌환경)를 선정하였으며, 수집된 데이터의 양은 아래 표와 같음
 - 데이터의 수집기간은 2016년 1월 1일에서 2017년 12월 31일의 2년간 게시된 블로그 글을 대상으로 함
 - 본 연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전체 데이터의 모수 확대와 일반적 데이터 수집을 목적으로 블로그데이터의 수집은 2회 이상

중복하여 실시함

- 웹 크롤링 결과 블로그의 제목, 요약문에 대한 데이터를 확보하였으며, 각 데이터는 문장의 길이 및 포함된 내용 등에 있어서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음
 - 본 연구에서는 농촌의 이미지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전반적 흐름 파악을 위해 블로그데이터의 제목을 분석에 활용함
- 블로그데이터에 나타난 농촌 이미지와 관련된 주제 및 단어의 추출
- 블로그데이터와 같은 문장형데이터는 비정형데이터로서 분석을 위해 정제하는 작업이 필요하며⁶⁶⁾, 이를 통해 불필요한 기호, 구두점 및 유사어를 처리함
 - 본 연구에서는 농촌에 대한 이미지와 관련된 키워드 파악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관련되는 명사, 형용사 등을 출현빈도 기준으로 상위 500개 단어를 추출함

(표 5-8) 블로그 데이터 수집량

수집일	포털 사이트	키워드	농촌 마을	농촌 생활	농촌 경관	농촌 매력	농촌 자원	농촌 환경
2018. 10.01.	네이버	검색량	107,344	61,376	9,524	6,806	23,345	89,334
		요약문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다음	검색량	163,000	81,000	11,200	10,000	25,900	185,000
		요약문	649	934	920	776	825	741
	총 수집량		10,845					
2018. 10.15.	네이버	검색량	106,975	61,074	9,491	6,779	23,267	89,024
		요약문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다음	검색량	162,000	80,700	11,200	9,970	25,900	184,000
		요약문	960	967	880	744	755	741
	총 수집량		11,047					

66) Karl, Wisnowski & Rushing(2015), Lucas et al.,(2015).

다. 데이터 분석의 방법

- 정제가 완료된 블로그데이터의 텍스트를 중심으로 빅데이터 분석기법의 하나인 사회연결망분석(SNA: Social Network Analysis)의 클러스터분석(Cluster Analysis)을 실시함
 - 클러스터분석은 네트워크에 나타난 개체의 도달 가능성을 기반으로 응집구조를 분석함
 - 클러스터분석기법의 하나인 컴포넌트(Component) 분석을 활용하여 키워드의 파티션 값을 표기한 후, 자이언트 컴포넌트를 추출함
 - 본 연구에서는 추출된 키워드를 중심으로 특정 노드가 네트워크 내에 위치한 다른 노드를 연결하는 최단거리 경로에 존재하는 빈도를 측정하는 매개중심성(Betweenness Centrality)분석을 실시하여 키워드의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유형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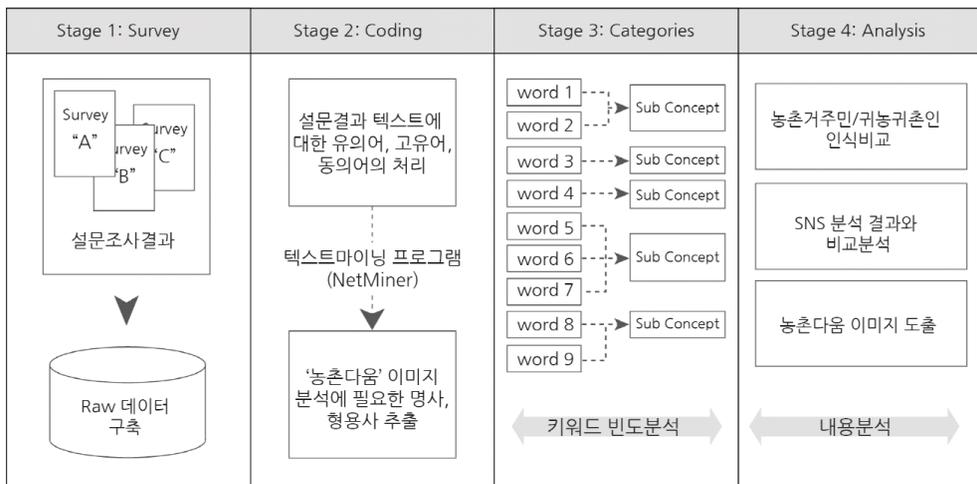
2. 농촌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현장조사(설문조사)

가. 설문조사 개요

- 농촌다움에 대한 개념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농촌의 이미지를 만들어가는 주체인 주민들의 인식을 현장에서 조사하는 것이 필수적 요소임
- 설문조사는 농촌지역 원주민, 귀농·귀촌인을 구분하여 실시하여 각 그룹별로 나타나는 농촌에 대한 이미지를 파악하고자 하였음
- 설문조사는 2018년 09월 05일에 이천시 농업기술센터에서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018년 09월 14부터 16일까지는 전라북도 고창군에서 마을 거주민, 중심지 거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
- 조사결과 총 98명(농촌지역거주민 59명, 귀농귀촌인 39명)을 대상

으로, 농촌지역 주민에게 545개의 키워드, 귀농·귀촌인에게 416개의 농촌이미지에 관련한 키워드를 수집함

- 수집된 단어를 가지고 내용분석을 실시하여 농촌지역 주민과 귀농·귀촌인이 인식하는 농촌다움 이미지를 정리하고자 함
- 일반적인 리커드 척도에 의한 설문조사 방법이 많은 샘플수를 확보하고 통계를 내기에는 용이하나, 주민들이 느끼는 농촌다움에 대한 구체적인 이미지나 내용이 미흡하거나 연구자가 설계한 문항과 보기로 주민들의 생각을 한정 지을 수 있음
- 본 연구에서는 반구조화된(Semi-Structure)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주민들이 생각을 쉽고 자유롭게 나열할 수 있도록 유도함
- 설문조사의 과정은 아래 그림과 같음



<그림 5-6> 농촌다움 이미지 도출을 위한 설문조사 과정

나. 설문조사 문항의 구성

- 농촌다움 이미지를 조사하기 위한 설문에서는 일반인들도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키워드’나 ‘문장’을 기재하도록 함
- 조사방법은 제시된 질문에 대한 답을 조사지에 서술하는 형식으로

- 참여자가 직접 작성하기 어려운 경우 조사자가 대신 기술하도록 함
- 설문지 1~4번 문항은 참여자가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농촌’, ‘농촌 중심지’, ‘농촌마을’, ‘농가’에 대한 키워드나 문장을 적게 하고, 5~6번 문항은 농촌지역에 대한 경험(정주매력, 문제점)을 서술하게 함
- 설문지 1~4번 문항의 결과는 농촌의 일반적인 이미지를 도출하기 위한 문항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은 1개부터 10개까지 작성하도록 함
- 설문지 5~6번 문항의 결과는 피험자의 경험을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농촌지역의 현실적인 이미지를 도출하는 역할을 함
- 추가적으로 기본적인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그룹별 특징을 분석함

3. 농촌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현장조사(REP조사)

가. REP조사 개요

- REP(Residents Employed Photography)는 현장에서 직접 촬영한 경관사진 데이터와 사진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집하는 방법으로 본 연구에서는 어떠한 경관이 주민들에게 ‘농촌다움’으로 인식되는지를 조사하고자 사용함
- REP조사는 2018년 11월 2일 경기도 양평군 보릿고개마을에서 마을 거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함
- 조사결과 마을 거주민 18명을 대상으로, 마을 경관 이미지 155장과 이에 대한 의견을 수집함

나. REP조사 분석

- 조사를 통해서 생성된 사진과 사진에 대한 의견을 문서로 정리하고 코딩작업을 진행함
- 코딩작업은 사진을 참고하면서 사진에 대해서 진술한 주민들의 의

견을 유형화하는 것으로서 아래 그림과 같이 1차~3차 코딩작업을 통해 최종적으로 구분된 유형별 특징을 정리함

- REP조사에 대한 분석 내용은 앞서 설문조사한 농촌다움의 이미지와 비교하면 현장에 기반한 실제 경관이미지에 대한 분석이므로 ‘농촌다움’의 현재를 파악하는데 용이한 방법임

연번	참가지고번호	사진번호	사진별 인터뷰 내용	1차정제	2차정제	분류	3차정제	요소1	요소2
#10	#B01	B01_10	노인정. 겨울에 마을 노인 4~50명이 모여 있으면 다같이 밥을 먹으면서 지낸다. 200년 정도 된 느티나무. 여름에 느티나무 그늘 밑에 있으면 시원하고 주민들이 모여 쉬는 장소	함께 밥을 지어먹는 노인정	노인정	공동체성	커뮤니티활동	노인정	
#14	#B05	B05_06	마을사람들의 건강을 위해서 만든 운동장	마을사람들의 건강을 위해서 만든 운동장	마을사람들의 건강을 위해서 만든 운동장	공동체성	커뮤니티활동	운동장	
#14	#B05	B05_04	마을사람들의 건강을 위해서 만든 운동장	마을사람들의 건강을 위해서 만든 운동장	마을사람들의 건강을 위해서 만든 운동장	공동체성	커뮤니티활동	운동장	
#10	#B01	B01_06	법광사. 전도제를 주로 지내며 신도들은 시내에서 많이 온다. 멀리서 오는 신도들이 쉬수있게 숙소도 만들어놓았다.	외지에 사는 신도들이 많이 찾는 법광사	외지인이 방문하는 종교시설	공동체성	커뮤니티활동	절	
#02	#A02	A02_17	마을 주민이 많이 모이는 노인정 ; 주로 마을 주민들의 활동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인식하고 있 교회. 최근 80주년 행사를 했다. 주민들의 의식	주민들이 자주 모이는 노인정	노인정	공동체성	커뮤니티활동	노인정	

<그림 5-7> REP데이터의 분석

다. REP조사 과정

- 거주민들의 마을에 대한 인식조사를 위한 REP조사에서는아래 그림과 같이 일반인들도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미리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함
- 마을주민과 연구원이 한 조를 이루어 조사를 실시하며, 서로 인사를 나누고 지도를 보면서 팀별로 REP조사 동선을 설정함
- 조사동선은 본인 집, 마을의 대표적 경관, 좋아하는 경관, 자랑스러운 경관, 문제가 있거나 관리가 필요한 경관, 활용하고 싶은 경관 등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음
- 설정한 동선에 맞게 걸으면서 경관에 대한 사진과 의견을 수집함 (경관사진과 의견 8~10개 이내, 연구원의 카메라와 녹음기 활용)
- 이후 마을회관에 도착하여 추가적인 의견이 있는지 확인 후 조사종료



<그림 5-8> REP조사 사진

다. 조사사례지 선정

1) 고창군

가) 선정배경

- 연구를 통해 파악한 ‘농촌다움’의 이미지가 양호하게 남아있으며 농·산·어촌이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는 고창군을 대상지로 선정하여 실제 농촌에서 ‘농촌다움’이 어떻게 구현되는지 파악함
- 고창군은 현재 농촌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인구감소, 고령화, 낙후된 생활환경, 부족한 기반시설 등의 문제점이 나타남
- 반면, 전형적인 농촌의 특성뿐만 아니라 활용 가능한 자연·역사·문화 자원이 많아 농촌다움의 특성을 부각함과 동시에 향후 발전 가능성이 많은 지역으로 분석됨
- 고창군 내의 농촌중심지(고창읍, 무장면, 대산면, 해리면, 흥덕면)와 농촌마을(안현마을, 하전마을, 고인돌마을, 목교마을, 가라마을)을 조사하여 ‘농촌다움’의 특성과 연관된 어메니티와 경관자원들의 유형과 실제 현황을 파악함
- 고창군의 위치현황은 아래 그림과 같음



자료 : 국토지리정보원(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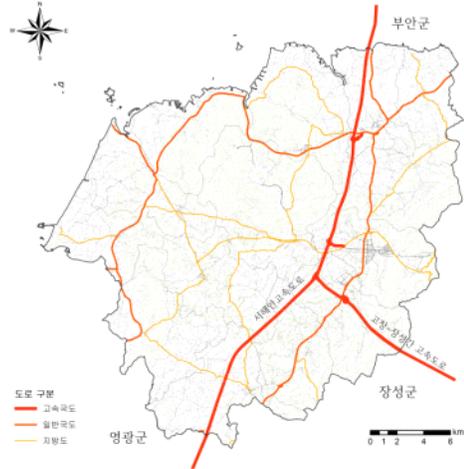
<그림 5-9> 고창군 위치

나) 주요 현황

- 고창군은 아래 그림과 같이 전라북도의 서남부, 전주와 광주의 중간지점에 위치하고, 동쪽으로는 정읍시, 전남 장성군, 영광군에 인접함
- 지형적으로 호남평야, 서해의 해안지역, 선운산·방장산 등의 산림이 있어, 농촌, 어촌, 산촌 등의 다양한 마을 형태가 나타남
- 고창군은 행정상 고창읍, 고수면, 아산면, 무장면, 공음면, 상하면, 해리면, 성송면, 대신면, 심원면, 홍덕면, 성내면, 신림면, 부안면 총 1읍 13면으로 구성되고, 농촌중심지를 중심으로 4개의 생활권역으로 구분됨



표고 분석



도로망 분석

자료 : 국토지리정보원(2017)

<그림 5-10> 고창군 지리적 현황

○ 인구 현황

- 고창군은 매년 출산율이 감소하고, 노인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초고령사회로 접어들고 있음
- 2000년 이후로 지역 활성화와 농업의 발전으로 귀농·귀촌인이 증가하면서 인구감소율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 인구유출이 안정화 단계에 이른 것으로 보임

○ 문화·관광자원 현황

- 고창군은 2013년 국내 최초로 행정구역 전체가 유네스코 지정 생물권보전지역으로 등재됨
- 생물다양성이 풍부하고, 역사·문화적으로 가치가 높은(운곡습지, 고창갯벌, 동림저수지 야생동물보호구역, 고인돌 유적지, 선운산 도립공원) 지역을 생물권보전지역 5대 핵심지역으로 지정하여 보전하고 있음
- 그 외, 고창읍성(모양성), 동학농민혁명의 중심지였던 공음면, 청

보리 밭으로 유명한 학원농장도 볼 수 있음

○ 주요 시설 현황

- 고창군에는 총 6개의 전통시장이 있으며, 고창읍·무장면·상하면·해리면·대산면·홍덕면에 각각 있음
- 의료시설은 고창읍에만 종합병원이 있고, 다른 농촌중심지에는 소규모 의원이 다수 위치함
- 고등학교는 총 6개로 고창읍, 무장면, 해리면, 홍덕면에 각각 있음
- 고창군의 중심지와 농경지는 아래 그림과 같은 전경을 지니고 있음



해리면 전경



대산면 농경지 전경

자료 : 손용훈(2018)

<그림 5-11> 고창군 전경

2) 양평군

가) 선정배경

- 양평군은 농촌마을의 고유한 전통문화 자원을 활용한 관광자원 개발로 농업인 소득향상과 농촌공동체 문화 함양을 위해 다양한 농촌체험마을을 조성하고 있음
- 농촌체험마을은 각각의 특성을 갖추고 365일 도심의 방문객을 맞

이하며, 수도권에 지리적으로 가까우면서 도시민들에게 농촌의 체험기회를 제공하여 크게 각광받고 있음

- 양평군에서 운영하는 농촌체험마을은 크게 녹색농촌체험마을, 농촌 전통테마마을, 슬로푸드마을, 산촌생태마을로 나뉨
- 녹색농촌체험마을로는 청운면 신론리 외갓집체험마을, 농촌전통테마마을로는 용문면 연수리 보릿고개마을 등이 있음

나) 주요 현황

- 양평군은 경기도의 북동부에 위치하였으며, 북동쪽으로는 강원도 홍천군, 남동쪽으로는 강원도 원주시, 서쪽으로 경기도 남양주시와 맞닿아있음
- 양평군은 아래 그림과 같이 양평읍, 강상면, 강하면, 양서면, 옥천면, 서종면, 단월면, 청운면, 양동면, 지평면, 용문면, 개군면으로 총 1읍 11면으로 구성되어 있음
- 양평군의 면적은 877.69km²로 경기도에서 가장 크며, 서울시의 1.45배에 해당됨
- 양평군의 인구는 주민등록인구 기준 116,209명으로 집계되었으며 (2018년 10월, 양평군청 제공), 광역시를 제외하고 군 단위 인구증가율 전국 1위를 달성함
- 친환경정책 등으로 살기 좋은 도시로 꼽혀 지속적으로 인구가 증가함
- 수도권에 인접해 있으면서도 아래 그림과 같이 농촌의 특색이 살아있어 농촌체험마을을 통한 관광이 큰 인기를 끌고 있음
- 문화·관광자원 현황의 경우에는 양평은 서울과 가깝고 두물머리를 중심으로 북한강과 남한강 물줄기가 지천으로 펼쳐져 있고, 용문산을 포함한 등산코스가 잘 갖추어져 있음
- 자연자원 외에도 다양한 테마를 가진 박물관이나 갤러리, 양평전통시장이나 리버마켓과 같은 장터 등이 많아서 1년 내내 즐길거리가

있는 지역임



자료 : 국토지리정보원(2017)

<그림 5-12> 양평군 위치



농촌중심지(문호리)



농촌마을(보릿고개마을)
자료 : 김연정, 이예술(2018)

<그림 5-13> 양평군 전경

4. 농촌다움 평가에 대한 연구과정

- 본 과업의 핵심과제인 농촌다움을 평가하기 위해서 [표 4-3]과 같이 설정된 목적과 범위를 설정함
- 농촌다움 평가의 주요한 결과는 현장실태를 반영한 농촌다움 이미지의 설정이므로, 수집된 온/오프라인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였음
- 새롭게 정립된 농촌다움 이미지를 현장조사를 통해 현장에 투영함으로써 최종적인 농촌다움 이미지를 설정함

(표 5-9) 각 주체별 농촌다움의 이미지 분석 과정

연구의 내용			
목적	- 농민/농촌중심지 거주민/귀농/귀촌인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농촌다움'이 갖는 주요이미지 분석		
▼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다움에 대한 대중의 인식 - 농촌다움에 대한 농촌거주민, 귀촌인들의 인식 - 농촌다움 이미지의 선정 - 농촌다움 이미지의 현장 검토 		
▼			
데이터 수집 및 분석	- SNS에서 나타난 대중적인 농촌다움에 대한 인식 조사	▶	- 블로그 텍스트 데이터 수집 -> 빈도분석, 에고네트워크 분석, 클러스터 분석
	- 주민,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농촌다움에 대한 인식 및 이미지 조사	▶	- 반구조화설문 실시 -> 내용 분석에 따른 결과의 유형화 실시
	- 현장에 기반한 실제 경관 인식에 대한 조사(REP조사 방법실시)		- REP조사 실시 -> 경관사진과 의견 수집 -> 유형 분류 및 내용 분석
▼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출된 농촌다움 이미지의 현장 검토 - 추출된 농촌다움 이미지를 농촌다움 개념의 틀에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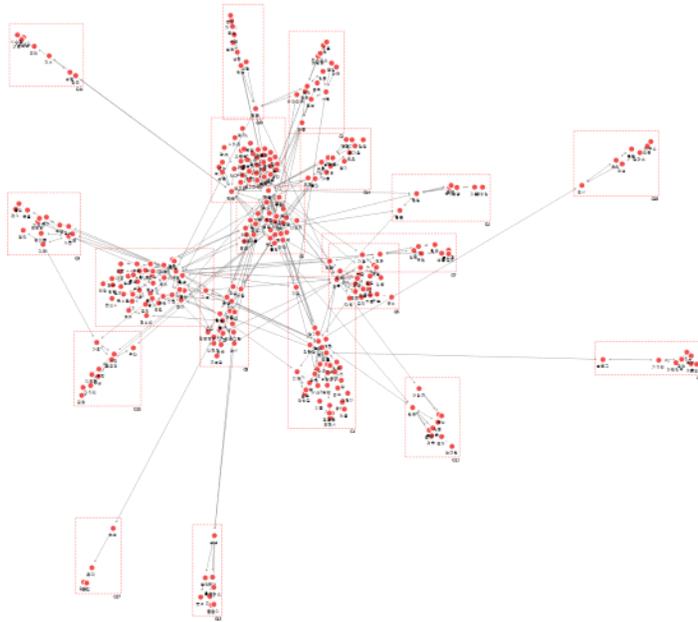
제5절 농촌다움 인식평가

1. SNS 데이터를 활용한 ‘농촌다움’에 대한 이미지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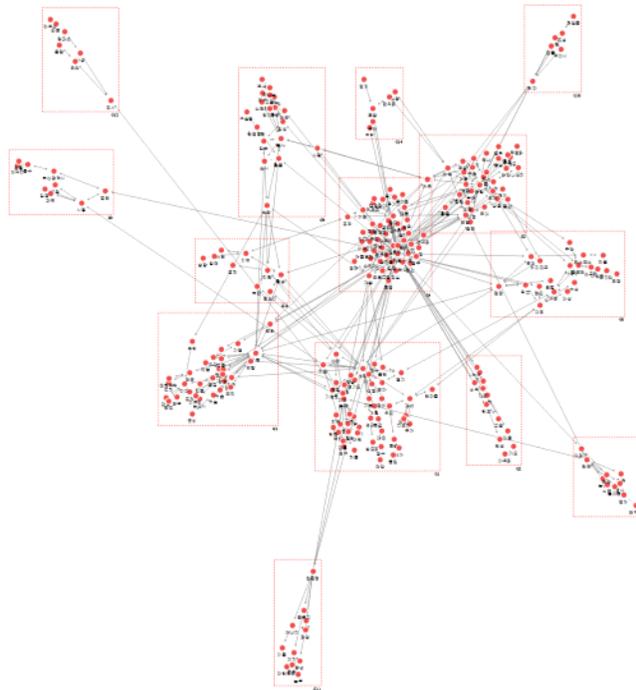
가. 수집된 블로그데이터에 나타난 ‘농촌다움’의 이미지

- 데이터 모수의 양을 증가시키고,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2차례에 걸쳐 클러스터링을 실시함
 - 데이터 수집에는 6개(농촌마을, 농촌생활, 농촌경관, 농촌매력, 농촌자원, 농촌환경) 키워드를 활용함
 - 수집된 블로그데이터는 검색일을 기준으로 취합하였으며, 상위 500개 단어를 추출함

- 추출된 상위 500개 단어를 중심으로 아래 그림과 같이 클러스터링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농촌다움’의 이미지는 아래 표와 같이 분류함
 - 수집된 블로그데이터에 나타난 ‘농촌다움’의 이미지는 각각 18개(1차)와 14개(2차)의 클러스터가 형성되었으며, 287개(1차)와 262개(2차)의 키워드가 추출됨



[1차 수집 데이터]



[2차 수집 데이터]

<그림 5-14> 블로그 데이터에 나타난 ‘농촌다움’ 이미지의 클러스터

(표 5-10) 블로그 데이터에 나타난 ‘농촌다움’ 이미지 키워드

1차 수집 데이터			
그룹	키워드	응집성	키워드 수
A1	농업, 진흥, 지도, 미래, 친환경, 깨끗한, 연구, 식량, 치유, 가치, 지속, 에너지 등	0.555	33
A2	풍경, 힐링, 활용, 둘레길 등	0.167	7
A3	축제, 가을, 테마파크, 정보, 전국, 코스모스, 경쟁, 정취 등	0.420	14
A4	체험, 관광, 휴양, 아이, 녹색, 여름휴가, 시골, 농원, 행사, 이색, 딸기, 김장, 상품, 치즈, 가정, 스테이, 공간, 명소, 다양, 전통문화 등	0.364	38
A5	여행, 코스, 선정, 추천, 테마, 가족, 투어, 여행지, 전통, 주말, 나드리 등	0.335	24
A6	교육, 농장, 문화, 귀농, 귀촌, 양성 등	0.398	20
A7	강화, 역량, 농진청 등	0.343	9
A8	봉사, 개발, 활동, 일손, 프로그램, 자연, 환경정화, 센터 등	0.422	18
A9	개선, 주거, 실천, 지도자, 연합회, 정비, 클린, 추진, 운동 등	0.421	13
A10	사진, 공모전, 수상, 디자인 등	0.204	10
A11	거버넌스, 네트워크, 시스템, 조건 등	0.250	7
A12	사업, 중심지, 유치, 활성화, 발전, 지역, 육성, 지원, 산업, 계획 등	0.514	39
A13	농림, 축산, 식품, 농어촌, 공사, 경제, 연구원 등	0.364	10
A14	휴가, 휴가지, 휴가철, 여름, 겨울, 방학, 캠핑 등	0.385	13
A15	도농, 상생, 교류, 방안, 분석 등	0.383	8
A16	청년, 정책, 브리핑 등	0.258	8
A17	캠퍼스, 타운, 도시, 하우스 등	0.319	7
A18	생태, 학습, 수변, 저수지 등	0.281	9
2차 수집 데이터			
그룹	키워드	응집성	키워드 수
B1	농업, 사업, 진흥, 개선, 산업, 지도, 운동, 지도자, 건강, 추진, 기술, 정비, 깨끗한, 계획 등	0.567	47
B2	여주, 농원, 자연, 학교, 녹색, 야유회, 학교 등	0.358	12
B3	여행, 관광, 코스, 투어, 가족, 힐링, 여행지, 주말, 국내, 나드리 등	0.403	31
B4	체험, 개발, 여름, 생태, 프로그램, 아이, 여름휴가, 캠핑, 시골, 딸기, 수확 등	0.413	47
B5	교육, 농장, 귀농, 문화, 여성, 귀촌, 강화, 전원주택, 모집, 역량, 양성 등	0.526	30
B6	사진, 공모전, 축제, 테마파크, 학습, 현장, 대회, 개최 등	0.505	19
B7	식품, 농어촌, 공사, 축산, 농림, 경제, 연구원 등	0.364	10
B8	정보, 시험, 현황, 저수지, 용수 등	0.426	9
B9	봉사, 활동, 일손, 센터, 실시, 환경정화 등	0.422	18
B10	테마, 조성, 공원, 전통 등	0.167	6
B11	친환경, 청년, 농부, 희망, 정책, 농법, 에너지 등	0.455	11
B12	도시, 하우스, 타운, 캠퍼스 등	0.319	7
B13	활성화, 지역, 지원, 중심지, 사회, 발전, 복합, 정착 등	0.398	9
B14	휴양, 협의회, 숙박, 유아 등	0.260	6

*Modularity(1차 : 0.676, 2차 : 0.67)

나. 키워드분석에 나타난 ‘농촌다움’ 이미지의 특징

- 유의한 수준의 응집성이 나타난 클러스터를 대상으로 유형화를 실시하였으며, 블로그데이터에 나타난 ‘농촌다움’의 이미지는 [표 4-5]와 같이 12가지 유형(G1, G2, G3, G4, G5, G6, G7, G8, G9, G10, G11, 기타)으로 분류함
 - 각 유형은 농촌지역 축제 및 사진 공모전(G2), 가족단위 국내여행지(G3), 농촌체험활동(G4)과 같은 농촌관광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룸
 - 이와 함께 농촌의 기반산업인 농업의 지속성과 자연성을 고려한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업 및 주거환경을 정비하는 것(G1)에 관한 유형이 나타남
 - 농촌 정주환경 개선을 모색하는 국가지원이 포함된 사업(G7) 유형에는 농촌지역 활성화에 대한 사항이 포함되었으며, G5 유형의 경우 귀농·귀촌인 대상의 농촌지역 정착지원 활동이 주를 이룸
 - 봉사활동(G6) 유형에는 농촌지역 환경봉사활동에 대한 내용이 포함됨
 - 농촌관련 국가기관(G10) 유형에는 농어촌공사, 농림축산식품부 등의 키워드가 포함됨
 - G11 유형은 캠퍼스타운에 대한 내용이 포함됨
 - G8, G9 그룹은 유형으로 형성되었으나, 포함된 키워드가 내포하는 의미가 낮아 해석에 적합하지 않음
 - 기타 유형의 경우 1·2차 수집데이터에 중복되어 출현하지 않은 그룹을 분류하여 분석에서 제외함

(표 5-11) 블로그 데이터에 나타난 ‘농촌다움’ 이미지의 특징

유형	내용	수집 데이터		도출 키워드
		1차	2차	
G1	농촌 정비와 친환경 개발	A9	B1	운동, 한마음, 지도자, 추진, 개선, 정비, 주거, 전개, 연합회
		A1		농업, 진흥, 지도, 깨끗한, 박람회, 공무원, 채용, 연구, 경기도, 치유, 기술원, 지속, 학원, 국립, 가능, 경남
			B11	에너지, 이용, 친환경
G2	지역축제	A3	B6	테마파크, 축제, 하동
		A10		개최, 사진, 공모전, 디자인, 스크랩, 주간, 이벤트, 포장, 수상, 대상
G3	농촌테마여 행지와 힐링	A2	B3	활용, 힐링
		A5		용인, 추천, 양평, 부여, 선정, 으뜸, 태안, 코스, 주말, 충남, 국내, 나드리, 가족, 여행지, 영광, 공모, 투어, 제주, 홍천
			B10	테마, 전통
G4	농촌체험 관광	A4	B2	녹색, 넓다, 여주, 농원, 바위
			B4	체험, 청양군, 인기, 천안, 연구회, 아이, 이색, 김장, 치즈, 공주, 시골, 스테이, 여름휴가, 행사, 완주군, 다양, 가정, 공간, 전남, 딸기, 울산
		A14		여름, 휴가철, 좋다, 포착, 휴가지, 기회, 수확, 휴가, 방학, 향기, 레포즈, 캠핑
G5	귀농귀촌 교육	A6	B5	준비, 교육, 귀농, 여성, 과정, 품질, 수미, 귀촌, 교사, 인증, 적응, 문화, 모집, 가평, 하늘, 리더, 전문
G6	농촌활동센 터와 운영프로그 램	A8	B4	개발, 장려, 교실, 운영, 프로그램
			B9	봉사, 활동, 센터, 일손, 환경정화, 사랑, 구슬땀, 실시, 신천지
G7	농촌 육성사업	A12	B1	기본, 산업, 건강, 장수, 평가, 사업, 기술, 육성, 성과, 발표회, 계획, 시범, 분야, 모델, 대전, 신청, 종합, 접수
			B13	활성화, 지원, 정착, 지역, 복합, 방향, 중심지, 사회, 발전
G8	역량강화	A7	B5	강화, 역량
G9	시험	A3	B8	과목, 경쟁, 시험, 정보, 일정
G10	공공기관	A13	B7	한국, 농림, 농어촌, 식품, 공사, 경제, 축산, 어린이, 연구원, 건축
G11	캠퍼스타운	A17	B12	하우스, 유쾌, 캠퍼스, 도시, 동행, 안성, 타운

다. 블로그데이터에 나타난 '농촌다움' 이미지

-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키워드 추출을 위해 아래 그림과 같이 민감도 분석을 실시함
 - 키워드의 민감도는 수집 시기별 출현빈도가 높은 키워드를 기준으로 (1차 키워드 순위 - 2차 키워드 순위)²을 통해 나타난 값을 분석함
 - 분석의 결과 370번째 키워드까지 유효한 것으로 나타나 분석에 활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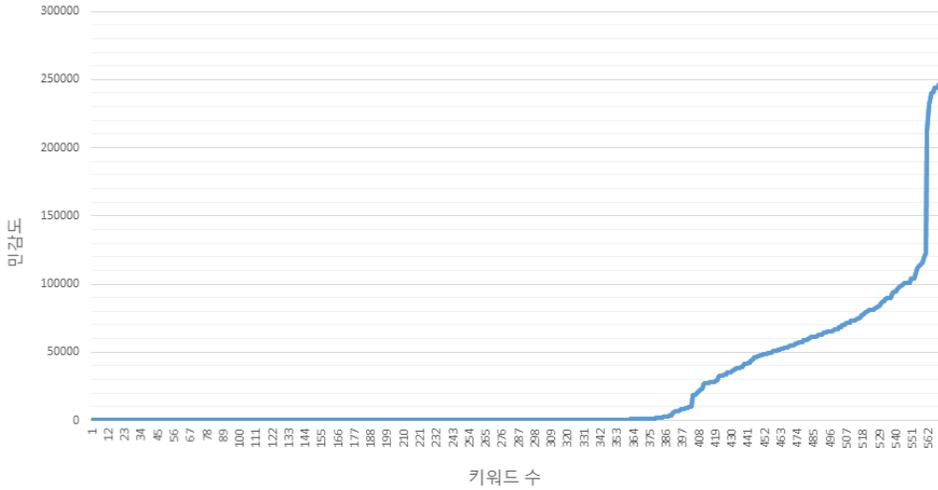
- 민감도 분석을 통해 추출된 키워드는 아래 표와 같은 용어특성이 나타남
 - 1·2차 블로그데이터 수집 시 나타난 키워드 빈도의 평균을 기준으로 순위를 선정함
 - 키워드의 이미지는 10가지 대항목(향유성, 심미성, 자연성, 규모성, 관리성, 생산성, 공동체성, 기반성, 편리성, 자립성)과 기타(장소, 계절, 기관, 시설 등)로 구분함
 - 이 중 11가지 대항목에는 188개의 키워드가 나타남

- 아래 표와 같이 블로그 데이터에서 농촌다움에 대해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키워드들은 체험, 여행, 관광, 휴양, 축제 등 농촌체험관광, 테마 여행과 관련된 내용이 많았음

- 농촌체험관광, 테마 여행의 대상지로 농촌은 향유성, 심미성과 관련된 이미지가 강함

- 그 외에도 친환경, 귀농, 귀촌, 지도자, 기술 대학교, 일자리, 공동체 등 농촌정비, 귀농·귀촌, 농촌활성화 등에 관련한 키워드가 많이 등

장하고 있음



*민감도 = (1차 수집 데이터 키워드 순위 - 2차 수집 데이터 키워드 순위)²

<그림 5-15> 키워드의 민감도 분석

(표 5-12) 블로그데이터에 나타난 '농촌다움'의 이미지

No.	키워드	빈도	No.	키워드	빈도
1	체험	2841	23	산업	188
2	여행	919.5	24	투어	181.5
3	농업	706.5	25	센터	181
4	관광	592.5	26	테마	177.5
5	교육	552.5	27	학습	173.5
6	봉사	420.5	28	지원	158.5
7	수미	398	29	자연	147.5
8	휴양	335.5	30	운동	137
9	진흥	323	31	사랑	135
10	축제	310.5	32	이야기	133.5
11	개발	298	33	학교	132.5
12	활동	289.5	34	행복	131.5
13	도시	266	35	프로그램	131.5
14	코스	265.5	36	중심지	127
15	일손	244	37	여성	123.5
16	개선	234.5	38	대회	117.5
17	활성	228	39	생태	117

18	지역	212.5	40	귀촌	116.5
19	테마파크	206	41	지도자	115
20	문화	198.5	42	건강, 친환경	112
21	가족	193	43	순두부, 힐링	112
22	귀농	188.5	44	아이	110
45	희망	104	81	학원	40.5
46	강화	102.5	82	일자리	40
47	맛집	102	83	견학	39.5
48	사회	101.5	84	캠페인	39
49	기술	100.5	85	김장, 디자인, 공동체, 산골	38.5
50	청년	98	86	지속	38
51	녹색	95.5	87	상품, 향기	37.5
52	여름휴가, 수상, 조성	91.5	88	환경정화, 특별	37
53	주택	91	89	넓다, 관리	36.5
54	정비	83	90	치즈, 영농, 밭상, 시설	36
55	깨끗	82.5	91	농사, 지구, 참여, 가정	35
56	시골, 전국	82	92	스테이	34.5
57	여행지	81	93	소득, 교류, 마음	34
58	벽화	80	94	캠프	33.5
59	계획, 전통	78	95	근교	32
60	수확	65.5	96	으뜸	31.5
61	주거	62	97	에너지	30.5
62	시범	61.5	98	하우스	30
63	공모	60.5	99	농협	29.5
64	축산	60	100	여행기, 어르신, 박람회, 명소	29
65	도농	58.5	101	나드리, 타운	28.5
66	어린이, 해피	58	102	안전	28
67	농가, 파티	52.5	103	옛날, 촌마을	27.5
68	주민, 인증	51	104	창업, 어촌	27
69	권역	50	105	고향, 어메니티	26.5
70	사람	49.5	106	유쾌, 텃밭, 작물, 레포츠, 연꽃	26
71	육성	48.5	107	스토리, 탐방	25.5
72	연합회	47.5	108	맑다, 휴가철, 투자, 전원생활, 도심, 도시민, 단체, 고구마	25
73	치유, 휴가, 역량, 행사	47	109	인기, 정착, 연구회, 동행, 두부, 농산물	24
74	대학생	45.5	110	젊다, 농민, 사과, 영화, 건축	23.5
75	채용	45	111	예술, 풍요, 생명, 나무, 전시회, 재배, 관광지	23
76	하늘	44.5	112	리더, 협동조합	22.5
77	빈집, 모습, 경제, 양성	44	113	먹거리, 휴가지, 푸드	22

78	도민, 대학교, 활력	42	114	오감, 마당	21.5
79	이색	41.5	115	캠퍼스, 초등, 서비스, 감자	21
80	추억	41	116	거리	20

*빈도 수 = 2회 조사 빈도수의 평균 값

(표 5-13) SNS분석을 통해서 추출된 농촌다움 이미지

이미지	SNS 분석
향유성	체험, 여행, 관광, 휴양, 코스, 문화, 가족, 이야기, 행복, 순두부, 힐링, 희망, 여름 휴가, 전통, 해피, 치유, 휴가, 활력, 추억
심미성	모습, 이색, 디자인, 특별, 명소, 어메니티, 연꽃
자연성	자연, 생태, 친환경, 녹색, 깨끗
규모성	도시, 지역, 센터, 중심지, 시골, 전국, 권역
관리성	진흥, 개발, 개선, 강화, 수상, 조성, 주택, 정비, 시범, 공모, 농가
생산성	농업, 수미, 축제, 활동, 산업, 테마, 프로그램, 맛집, 기술, 수확, 여행지, 축산
공동체성	봉사, 일손, 귀농, 사랑, 여성, 귀촌, 지도자
패적성	교육, 운동, 주거, 빈집
편리성	학습, 학교, 대학교, 농협
자립성	대회, 아이, 청년, 계획, 어린이, 주민, 사람, 대학생, 채용

2. 농촌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 결과

가. 전체 설문결과(농촌마을)

1) 전체 설문조사 데이터 구축

- 농촌거주민 59명 귀농·귀촌인 39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음
- 설문조사를 통해 아래 표와 같이 농촌지역 주민에게 총 341개의 답변과 1586개의 키워드를 수집하였으며, 귀농·귀촌인에게는 197개의 답변과 997개의 키워드를 수집하였음
- 설문조사 결과 농촌 주민들이 인식하는 ‘농촌마을’에 대한 이미지는 농업, 농사 등의 일과 관련된 단어들 많이 등장함
- 종합결과 농촌거주민의 농촌에 대한 이미지는 구체적이고 ‘생산성’이 주요하게 나타난 것과 달리, 귀농귀촌인의 경우에는 농촌에 대한 이미지가 좀 더 추상적으로 나타남

(표 5-14) 전체설문 결과

문항		농민거주민		귀농귀촌인	
		답변(개)	키워드(개)	답변(개)	키워드(개)
()하면 떠오르는 키워드나 문장	‘농촌’	59	337	39	280
	‘농촌중심지’	59	302	36	175
	‘농촌마을’	58	287	35	186
	‘농가’	57	320	30	147
농촌지역	정주매력	55	176	28	93
	문제점	53	164	29	116
합계		341	1586	197	997

나. 문항별 설문조사 결과

1) ‘농촌’하면 떠오르는 키워드나 문장은 무엇입니까?

- ‘농촌’에 대한 이미지는 아래 표와와 같이 나타남
- ‘농촌’의 이미지는 ‘생산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으며,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인한 농사일의 힘들이가 주요 요인으로 나타남
- 귀농·귀촌인이 인식하는 ‘농촌’에 대한 이미지는 ‘향유성’과 ‘자연성’이 주로 드러나며, 농촌거주민이 농촌을 ‘일터’로서 인식하는 것과 다르게 귀농·귀촌인은 ‘농촌’을 ‘향수’를 일으키는 선망의 대상으로 인식함

(표 5-15) 설문조사에 나타난 ‘농촌’ 이미지

‘농촌’ 이미지											
농촌거주민(n=39)						귀농귀촌인(n=59)					
No.	키워드	빈도	No.	키워드	빈도	No.	키워드	빈도	No.	키워드	빈도
1	농사가 힘든	17	23	먹을것이 많은	4	1	시골	6	23	풍경	2
2	외국인노동자	15	24	한적한	3	2	농사	6	24	푸른	2
3	일	14	25	편한	3	3	논	6	25	풍성함	2
4	공기	13	26	짓는	3	4	농사가 힘든	5	26	전원주택	2
5	농사	12	27	조용한	3	5	할머니	5	27	자유로운	2
6	젊은사람	11	28	시골	3	6	산	5	28	자연	2
7	농사짓는	10	29	부족한	3	7	밭	5	29	이웃사촌	2
8	노령화	10	30	부농	3	8	공기	5	30	식물	2
9	도시	8	31	복분자	3	9	편안한	4	31	소박함	2
10	살기좋은	7	32	바쁜	3	10	들관	4	32	삶	2
11	수박	6	33	문화생활	3	11	고향	4	33	마을회관	2
12	사람이 없는	8	34	무	3	12	정겨운	4	34	들	2
13	농사일	6	35	들	3	13	허수아비	3	35	도시	2
14	인심	5	36	논밭	3	14	하늘	3	36	느티나무	2
15	지원	4	37	노인	3	15	푸르른	3	37	농부	2
16	정겨운	4	38	고향	3	16	포근함	3	38	꽃	2
17	인구감소	4	39	고추	3	17	주택	3	39	깨끗한	2
18	벼농사	4	40	고령화	3	18	조용한	3	40	기쁨	2
19	먹고사는	4	41	건강문제가 많은	3	19	벼	3	41	그리움	2
20	농산물	4				20	가을	3	42	공기맑은	2
21	귀농인	4				21	희망	2	43	건강한	2
22	환경	4				22	할아버지	2			

- 2) ‘농촌중심지’하면 떠오르는 키워드나 문장은 무엇입니까?
- ‘농촌중심지’에 대한 이미지는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남
 - ‘농촌중심지’의 이미지는 농촌거주민과 귀농·귀촌인에서 유사하게 나타났는데, 중심지의 ‘편리성’이 주요하게 나타남
 - 차이점으로는 농촌거주민의 경우에는 노령화로 인하여 병원에 대한 인식이 높았고, 귀농귀촌인은 상대적으로 연령대가 낮아 시장, 마트, 행정기관에 대한 인식이 높게 나타남
 - 결과적으로 ‘농촌중심지’는 농촌지역에 필요하거나 부족한 시설들이 배치되어, 농민이나 귀농·귀촌인들이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함

(표 5-16) 설문조사에 나타난 ‘농촌중심지’ 이미지

‘농촌중심지’ 이미지											
농촌거주민(n=39)						귀농귀촌인(n=59)					
No.	키워드	빈도	No.	키워드	빈도	No.	키워드	빈도	No.	키워드	빈도
1	병원	15	16	학교	3	1	재래시장	6	16	건강	2
2	마트	10	17	친구	3	2	면사무소	5	17	읍사무소	2
3	시장	8	18	중심지	3	3	도로	5	18	움직이는	2
4	교통	7	19	젊은사람	3	4	마트	4	19	약국	2
5	사람이 많은	6	20	인구감소	3	5	의료시설	4	20	쉼터	2
6	편리한	6	21	모임	3	6	학교	3	21	소통	2
7	물건구매	6	22	면	3	7	파출소	3	22	버스 터미널	2
8	면사무소	6	23	농협	3	8	은행	3	23	마을	2
9	장사	5	24	편의시설이 많은	3	9	식당	3	24	돈	2
10	농촌에 필요한	4	25	방문하기 힘든	3	10	불편한	3	25	녹색들판	2
11	은행	4	26	편한	2	11	병원	3	26	교회	2
12	외국인 노동자	4	27	편의시설	2	12	농협	3	27	공원	2
13	석정온천	4	28	판매	2	13	교통시설	3	28	공공시설	2
14	모양성	4				14	중심	2	29	고령화	2
15	한적한	3				15	정겨운	2	30	경찰서	2

3) ‘농촌마을’하면 떠오르는 키워드나 문장은 무엇입니까?

- ‘농촌마을’의 이미지는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남
- 농촌거주민이 인식하는 농촌마을에 대한 이미지는 ‘생산성’과 ‘공동체성’이 주요하게 나타났으며, 노령화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노인, 젊은 사람, 농사가 힘든, 아이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이미지로 나타남
- 귀농·귀촌인이 인식하는 ‘농촌마을’에 대한 이미지에서는 농촌이 갖는 ‘자연성’이 주로 드러났는데, 자연적인 경관요소를 지칭하는 밭, 논, 산, 마을회관 등을 지칭함
- 실제로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농촌마을’에 대해서 농촌의 현실이나 농업에 관한 이미지를 떠올렸다면, 귀농·귀촌인은 농촌을 구성하는 물리적 요소나 장터, 먹거리와 같은 요소들을 떠올림

(표 5-17) 설문조사에 나타난 ‘농촌마을’ 이미지

‘농촌마을’ 이미지											
농촌거주민(n=39)						귀농귀촌인(n=59)					
No.	키워드	빈도	No.	키워드	빈도	No.	키워드	빈도	No.	키워드	빈도
1	마을회관	15	16	노인이 많은	3	1	밭	8	16	이웃	2
2	노인	14	17	편안한	3	2	논	6	17	외로운	2
3	젊은사람	8	18	정겨운	3	3	산	5	18	양계장	2
4	농사가 힘든	7	19	외국인	3	4	불편한	4	19	함께하는	2
5	이팝나무	6	20	에어컨	3	5	하우스	3	20	삶	2
6	아이	6	21	어르신	3	6	직거래 장터	3	21	마을관광	2
7	농사	6	22	시골	3	7	먹거리	3	22	들	2
8	집	5	23	버스	3	8	마을회관	3	23	계곡	2
9	지원	5	24	밥	3	9	마을	3	24	건강	2
10	일	4	25	바쁜	3	10	친구	2	25	가을	2
11	시설	4	26	들	3	11	집	2			
12	복분자	4	27	동네	3	12	주택	2			
13	돈	4	28	단합	3	13	정자	2			
14	깨끗한	4	29	귀농 귀촌인	3	14	자연	2			
15	공기	4	30	교통	3	15	인심	2			

- 4) ‘농가’하면 떠오르는 키워드나 문장은 무엇입니까?
- ‘농가’의 이미지는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남
 - 농촌거주민이 인식하는 ‘농가’에 대한 이미지는 ‘자립성’과 ‘생산성’이 주요하게 나타났으며, ‘농촌마을’ 문항의 결과보다는 구체적으로 농촌을 구성하는 물리적 요소를 지칭하는 이미지가 도출됨
 - 귀농·귀촌인이 인식하는 ‘농가’에 대한 이미지에서는 ‘향유성’이 주로 드러났는데, 농촌거주민 인식과는 반대로 농촌에 대한 추상적인 키워드가 주를 이룸
 - 다른 ‘농촌’이나 ‘농촌마을’ 문항의 결과에서는 농촌과소화에 대해서 인구의 감소에 대한 이미지가 나타났다면, ‘농가’ 문항에서는 ‘빈집’과 같은 물리적인 농촌과소화 이미지가 나타남

(표 5-18) 설문조사에 나타난 ‘농가’ 이미지

‘농가’ 이미지								
농촌거주민(n=39)						귀농귀촌인(n=59)		
No.	키워드	빈도	No.	키워드	빈도	No.	키워드	빈도
1	집	20	21	빈집이 많은	3	1	마당	4
2	농사	19	22	혼자사는	3	2	편안한	4
3	시설	11	23	편리한	3	3	할아버지	3
4	키우는	7	24	과	3	4	할머니	3
5	좋아진	7	25	태양광	3	5	지붕	3
6	빈집	7	26	지원	3	6	불편한	3
7	모습	7	27	일	3	7	농가	3
8	삶	6	28	양과	3	8	강아지	3
9	깨끗한	5	29	새로지은	3	9	농사가 힘든	2
10	고추	5	30	불편한	3	10	허름한	2
11	가축	5	31	복분자	3	11	풍요로움	2
12	텃밭	4	32	배	3	12	풀	2
13	창고	4	33	먹고사는	3	13	시골밥상	2
14	젊은사람	4	34	도시	3	14	소박한	2
15	옛날	4	35	단호박	3	15	불편함	2
16	시골	4	36	노인	3	16	부족한	2
17	수박	4	37	깨	3	17	벌레	2
18	살기좋은	4	38	기계	3	18	물	2
19	사라지는	4	39	고령화	3	19	공기	2
20	사람이 없는	3	40	개	3			

5) 농촌지역의 ‘정주매력’은 무엇입니까?

- 농촌의 ‘정주매력’에 대한 응답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남
- 농촌거주민이 인식하는 농촌지역의 ‘정주매력’은 ‘향유성’이 주요하게 나타나 농촌지역의 자연과 함께하는 삶, 맑음, 도시에 비해서 여유 있는 삶에 대한 이미지가 두드러짐
- 귀농·귀촌인이 인식하는 농촌지역의 ‘정주매력’ 또한 농촌거주민이 인식하는 것과 유사하게 ‘향유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귀농·귀촌인들이 귀농 혹은 귀촌을 선택할 때 농촌의 자연과 더불어 사는 삶, 텃밭을 가꾸는 여유 있는 삶과 같은 도시와는 다른 생활에 대한 이미지를 떠올리는 것을 볼 수 있음

(표 5-19) 설문조사에 나타난 농촌지역의 ‘정주매력’

농촌지역의 ‘정주매력’								
농촌거주민(n=39)						귀농귀촌인(n=59)		
No.	키워드	빈도	No.	키워드	빈도	No.	키워드	빈도
1	공기	21	20	챙겨주는	2	1	텃밭	4
2	바다	9	21	차	2	2	여유로운	3
3	살기좋은	5	22	지원	2	3	삶	3
4	조용한	4	23	자유	2	4	공기	3
5	정	4	24	자연	2	5	행복한	2
6	옛날	4	25	일	2	6	한가로운	2
7	산	4	26	이웃	2	7	편안한	2
8	농사	4	27	오염되지 않은	2	8	직접	2
9	한가로운	3	28	소득	2	9	조용한	2
10	걱정없는	3	29	함께하는	2	10	정겨운	2
11	삶	3	30	살만한	2	11	여유있는	2
12	깨끗한	3	31	부지런한	2	12	함께하는	2
13	가까운	3	32	모양성	2	13	살기좋은	2
14	환경	2	33	먹고사는	2	14	먹는	2
15	행복한	2	34	마음	2	15	마음	2
16	필요한	2	35	농사짓는	2	16	기쁨	2
17	편안한	2	36	고추	2			
18	욕심없는	2	37	겨울	2			
19	여유있는	2						

6) 농촌지역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 농촌지역의 ‘문제점’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남
- 농촌거주민이 인식하는 농촌지역의 문제점은 농촌과소화와 관련된 ‘자립성’이 주요하게 나타났는데, 농촌거주민들의 고령화에 따른 농사일의 힘들과 편의시설의 부족으로 인한 문제점이 두드러짐
- 귀농·귀촌인이 인식하는 농촌지역의 문제점은 ‘생산성’과 ‘편리성’이 두드러지는데, 사람이 부족하여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부족한 점과 문화시설이 부족한 것을 주요한 문제점으로 인식함

(표 5-20) 설문조사에 나타난 농촌지역의 ‘문제점’

농촌지역의 ‘문제점’								
농촌거주민(n=39)						귀농귀촌인(n=59)		
No.	키워드	빈도	No.	키워드	빈도	No.	키워드	빈도
1	농사가 힘든	19	12	시설이 부족한	3	1	일손부족	4
2	고령화	9	13	장사	3	2	문화생활 부족	4
3	외국인	7	14	어려움	3	3	교통이 불편한	2
4	노인	7	15	소득이 적은	3	4	풀	2
5	일손이 적은	5	16	병원	3	5	책임	2
6	사람이 없는	5	17	도시가 편한	3	6	병원	2
7	노인이 많은	5	18	농사짓는	3			
8	필요한	4	19	공간	2			
9	교통이 불편한	4						
10	먼	4						
11	불안정한 농산물 가격	4						

3. 현장에 기반한 실제 경관이미지에 대한 조사(REP조사)

가. 전체 REP 조사결과

- REP 조사는 아래 표와 같이 양평균 보릿고개마을 주민 18명을 대상으로 오전 9명, 오후 9명씩 나누어 2회에 걸쳐 실시함

(표 5-21) REP 조사참가자 현황

참여자 (n=18)	원주민 여부	생활권	연령	성별	거주기 간	직업	조사데이터	
							사진 수	단어수
A	원주민	마을 내	70대 이상	남자	20년 이상	농업	9	210
B	원주민	마을 내	60대	여자	20년 이상	농업	10	219
C	원주민	마을 내	70대 이상	남자	20년 이상	농업	9	134
D	귀촌인	읍면 소재지	50대	남자	5년 미만	농업 외	10	170
E	귀촌인	마을 내	70대 이상	남자	20년 이상	축산업	8	134
F	귀농인	마을 내	60대	남자	20년 이상	농업	10	171
G	원주민	읍면 소재지	60대	남자	20년 이상	농업	9	206
H	원주민	마을 내	60대	남자	20년 이상	농업	9	183
I	원주민	마을 내	70대 이상	남자	20년 이상	무직	8	113
J	원주민	마을 내	60대	여자	20년 이상	농업	10	169
K	귀농인	마을 내	50대	남자	20년 이상	농업	10	116
L	귀농인	마을 내	70대 이상	남자	20년 이상	농업 외	8	95
M	원주민	마을 내	60대	여자	20년 이상	농업	8	91
N	원주민	읍면 소재지	70대 이상	남자	20년 이상	농업	8	78
O	귀촌인	읍면 소재지	70대 이상	남자	20년 이상	펜션 운영	9	73
P	원주민	마을 내	70대 이상	남자	20년 이상	농업	7	51
Q	원주민	마을 내	70대 이상	남자	20년 이상	농업	4	31
R	원주민	읍면소 소재지	60대	여자	20년 이상	무직	10	111

나. REP 조사결과에 대한 내용분석

- 농촌다움에 대한 REP조사 데이터 155개를 유형화한 결과는 아래 표와 같음
- REP 결과분석 과정에서는 155개의 사진과 사진에 대한 의견을 10개의 농촌다움 이미지에 따라 1차 유형화하고, 다시 19개의 상위범주로 2차 유형화를 실시함
- 2차 유형화 내용을 토대로 하위범주와 경관요소를 추출하여 정리함

(표 5-22) REP 조사결과에 대한 내용분석

이미지	상위범주	빈도	하위범주	경관요소
향유성	마을의 대표경관	22	아름다운 산, 대표적인 경관, 아름다운 물길, 마을안의 종교시설, 어울리지 않는 경관, 아름다운 마을경관, 활기찬 마을	백운봉, 상원사, 절, 그네, 산, 정원, 느티나무, 연수천, 메주, 체험시설, 정자, 개울
	오래된 마을경관	23	오래된 이야기, 오래된 길, 오래된 교회, 옛스러운 돌담, 오래된 집, 오래된 느티나무	교회, 동산, 주택, 용문산, 오솔길, 마을입구, 장승, 느티나무
	사람들이 좋아하는 시설	22	아름다운 물길, 체험시설, 긍정적인 체험시설, 잘 이용되는 체험시설, 깨끗한 체험시설, 정돈된 체험시설	매실체험장, 송어체험장, 계곡, 뱃목체험장, 계곡, 절, 운동장, 물길, 정자, 미륵상, 숲체험길, 느티나무, 고구마밭
심미성	아름다운 마을경관	20	정돈된 길, 아름다운 체험시설, 정돈된 돌담, 아름다운 산, 아름다운 체험시설, 정돈된 돌담, 정돈된 주택	돌담, 징검다리, 매실체험장, 용문산, 주택, 산길, 백운봉, 배따기체험장
	경관을 저해하는 시설	5	경관상 좋지 않은 주차장, 개발부지, 경관을 해치는 절, 경관을 해치는 오래된 집	주차장, 산, 절, 주택, 펜션
자연성	맑고 풍부한 자연	4	아름다운 물길, 조성된 자연	물길, 계곡, 연수천, 잣나무

	오염된 자연	3	오염된 물길	물길, 펜션
규모성	산에 둘러싸인 마을경관	4	아름다운 마을경관, 아름다운 산	산, 백운봉, 용문산
관리성	관리가 필요한 경관	8	관리가 필요한 기반시설, 관리가 필요한 체험시설, 관리되지 않은 경작지, 관리가 필요한 노인정, 관리되지 않은 집, 관리되지 않은 외부인집	소하천, 송어체험장, 외부인밭, 느티나무, 정자, 체험관, 마을회관, 주택
	잘 관리된 경관	7	관리된 경작지, 긍정적인 체험시설, 관리된 돌담, 관리된 마을경관, 긍정적인 펜션	고추, 배추, 벽화, 돌담, 밭, 나무, 길, 펜션
	방치된 폐가	5	마을경관을 훼손하는 폐가	빈집, 폐가
생산성	부족한 경작지	3	부족한 경작지	경작지
	힘든 농사일	1	힘든 과수농사	과수
공동체성	커뮤니티 활동	8	잘 이용되는 노인정, 긍정적인 교회, 외지인이 방문하는 종교시설, 잘 이용되는 교회, 잘 이용되는 모임장소, 잘 이용되는 체험시설	노인정, 절, 교회, 느티나무, 운동장
쾌적성	깨끗한 마을경관	6	깨끗한 마을환경, 깨끗한 체험시설, 깨끗한 외지인 집, 깨끗한 정자	돌담, 쓰레기장, 송어체험장, 외지인집, 정자
편리성	부족한 편의 시설	2	하나밖에 없는 마트, 관리가 필요가 체험시설	마트, 마을숲체험장길
	잘 이용되고 있는 시설	6	깨끗한 마을환경, 편리한 다리, 버스종점, 배창고	도로, 돌담, 징검다리, 버스종점, 교량, 창고
	새로운 경관	2	개발될 부지	펜션, 길
자립성	마을 발전	4	귀촌자 주택	귀촌자 주택, 주택

다. REP 조사에 따른 현장 이미지 도출

- REP조사에 따른 결과는 현장에서 직접 ‘농촌다움’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을 조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도출된 결과로 농촌마을의 사례인 ‘보릿고개마을’의 전체적인, 세부적인 이미지를 아래 표와 같이 유형화함

(표 5-23) REP 조사에 따른 ‘농촌다움’ 현장 이미지

이미지	상위범주	사진	내용
향유성	마을의 대표경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들이 인식하는 마을의 주요한 요소 • 마을을 둘러싼 자연환경(산, 물길)과 마을입구에서 보여지는 느티나무와 연수천의 모습
	오래된 마을경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거부터 이용되어 온 길, 교회, 돌담, 주택의 이미지 장소에 얽힌 과거의 이야기에 대한 이미지
	사람들이 좋아하는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문객이 많이 찾는 장소(물길, 체험시설)에서 주민과 방문객들이 활동하는 모습

심미성	아름다운 마을경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름다운 마을의 돌담, 주택, 산, 징검다리의 모습이나 계절에 따라서 나타나는 꽃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
	경관을 저해하는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연과 조화되지 않는 개발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자연성	맑고 풍부한 자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물줄기가 마을을 가로질러 흐르는 생기있고 긍정적인 이미지
	오염된 자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로, 교량, 펜션과 같은 시설개발에 따른 오염과 관리되지 않은 하천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규모성	산에 둘러싸인 마을경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을을 둘러싼 용문산과 백운봉 자락의 웅장한 이미지
관리성	관리가 필요한 경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후한 주택이나 체험 시설과 토지를 잘 관리하지 않는 소유주(외지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잘 관리된 경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작물을 규칙적으로 심어서 재배하는 경관이나 지원사업을 통해서 정비된 돌담과 체험시설의 긍정적인 이미지
	방치된 폐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람이 살지 않고 방치된 폐가가 주는 부정적인 이미지 과소화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을 대표하는 이미지
생산성	부족한 경작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돌이 많아서 농사짓기가 힘들었던 토지의 부정적 이미지와 줄어드는 논에 대한 이미지
	힘든 농사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힘든 농사일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공동체성	커뮤니티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들이 자주 찾는 모임장소(느티나무, 절, 노인정, 교회, 운동장)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
쾌적성	깨끗한 마을경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맑고 깨끗한 자연, 잘 관리된 쓰레기장, 주민들이 깨끗하게 관리하고 있는 시설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

편리성	부족한 편의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의 유일한 슈퍼로 편의시설의 부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부정적인 이미지
	잘 이용되고 있는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의 정비로 잘 이용되고 있는 도로, 돌담, 교량, 버스정류장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
	기반시설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의 개발로 인한 주변지역 주택증가
자립성	마을 발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령화, 과소화에 대비되는 현상인 외지인의 유입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

4. 인식평가 결과에 따른 농촌다움 이미지 도출

- 농촌다움에 대한 이미지는 조사결과(SNS, 설문조사, REP) 도출된 키워드의 내용분석을 통해서 키워드를 유형화함
- 이를 통해 아래 표와 같이 농촌다움에 대한 기대이미지 7가지, 개선이미지 3가지 이미지를 도출함

(표 5-24) 농촌다움 이미지 정리

이미지	SNS 분석	설문조사		REP조사
		농촌주민	귀농귀촌자	
향유성	체험, 여행, 관광, 휴양, 코스, 문화, 가족, 이야기, 행복, 순두부, 힐링, 희망, 여름휴가, 전통, 해피, 치유, 휴가, 활력, 추억	농촌, 조용한, 한적한, 먼, 노인, 마을회관, 집, 편안함, 개, 옛날, 행복한, 부지런함, 살기좋은, 한가로운, 매력	정겨움, 농촌, 허수아비, 편안한, 고향, 포근함, 조용함, 풍성함, 그리움, 희망, 친근함, 건강, 풍요로움, 시골밥상, 기쁨, 여유로운	마을의 대표경관(느티나무, 연수천, 산, 숲, 바위, 정자, 정원, 골짜기, 절, 마을뒷산, 마을입구, 상원사, 개울, 백운봉, 그네, 매주, 교회, 체험시설) 사람들이 좋아하는 시설(고구마밭, 멧목체험장, 매실체험장, 송어체험장, 숲체험길, 운동장, 물길, 느티나무, 정자, 계곡, 미륵산, 절) 오래된 마을경관(주택, 사금매기, 동산, 당제터, 교회, 용문산, 오솔길, 돌담, 느티나무, 마을입구, 길, 장승)
심미성	모습, 이색, 디자인, 특별, 명소, 어머니티, 연꽃		풍경, 푸른, 푸르른, 밭, 논, 산	경관을 저해하는 시설(절, 주택, 산, 주차장, 펜션) 방치된 폐가, 아름다운 마을경관(돌담, 용문산, 산길, 백운봉, 징검다리, 매실체험장, 배따기체험장, 주택)

자연성	자연, 생태, 친환경, 녹색, 깨끗	공기, 깨끗한, 이팝나무, 바다, 산	느티나무, 공기 맑은, 산, 들판, 꽃, 자연	오염된 자연(물길, 펜션), 맑고 풍부한 자연(물길, 계곡, 연수천), 푸르른 자연(갯나무)
규모성	도시, 지역, 센터, 중심지, 시골, 전국, 권역	도시, 마을, 시골	시골, 하늘, 들판	산에 둘러싸인 마을경관(백운동, 산, 용문산)
관리성	진흥, 개발, 개선, 강화, 수상, 조성, 주택, 정비, 시범, 공모, 농가		주택, 집, 농가, 지붕	관리가 필요한 경관(주택, 체험관, 송어체험장, 외부인밭, 소하천, 마을회관, 외부인집, 느티나무, 정자), 잘 관리된 경관(고추, 배추, 돌담, 밭, 나무, 길, 벽화, 펜션)
생산성	농업, 수미, 축제, 활동, 산업, 테마, 프로그램, 맛집, 기술, 수확, 여행지, 축산	농사, 벼농사, 농산물, 복분자, 마뽕, 수박, 고추산	벼, 농사, 하우스, 직거래장터, 먹거리, 양파, 키우는, 텃밭, 직접	부족한 경작지, 힘든 농사일(과수)
공동체성	봉사, 일손, 귀농, 사랑, 여성, 귀촌, 지도자	정, 인심, 사람, 귀농귀촌인, 챙겨주는, 이웃	정, 이웃사촌, 할머니, 할아버지, 소통	커뮤니티 활동(노인정, 느티나무, 운동장, 절, 교회)
쾌적성	교육, 운동, 주거, 빈집	지원, 편리한, 빈집, 태양광	부족한, 별레	깨끗한 마을경관(쓰레기장, 외지인집, 정자, 송어체험장, 돌담)
편리성	학습, 학교, 대학, 농협	부족한, 문화생활, 병원, 마트, 시장, 교통, 면사무소, 물건구매, 농협, 학교, 마을회관	재래시장, 면사무소, 도로, 마트, 학교, 파출소, 은행, 식당, 불편한, 병원, 농협, 교통시설, 정, 공원, 약국, 버스터미널, 학교, 컴퓨터	새로운 경관(길, 펜션), 유일한 시설(슈퍼), 잘 이용되고 있는 시설(창고, 버스종점, 징검다리, 교량, 도로, 돌담) 잘 이용되지 않는 시설(마을숲체험장길)
자립성	대회, 아이, 청년, 계획, 어린이, 주민, 사람, 대학생, 채용	힘든, 사람, 외국인노동자, 젊은사람, 고령화, 먹고사는, 인구감소, 장사, 돈, 아이, 소득, 어려움	힘든, 고령화, 돈	마을 발전(외지인집, 주택)

제6절 농촌다움 이미지 및 실제 현황

1. 농촌다움의 이미지와 현재의 모습

- 앞의 조사 내용과 같이 농촌다움의 이미지는 기대이미지 7개와 개선이미지 3개로 그 이미지를 정리할 수 있음
- 도출된 10개의 이미지를 전라북도 고창군을 사례조사지로 하여, 이미지와 실제 현황을 조사함

2. 고창군 개요

가. 고창군의 조사 개요



자료 : 국토정보플랫폼(2017)

<그림 5-16> 조사지역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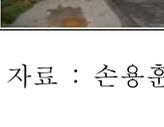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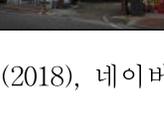
- 본 연구에서는 아래 그림과 같이 고창군의 농촌중심지(고창읍, 무

장면, 대산면, 해리면, 흥덕면)와 농촌마을(안현마을, 하전마을, 고인돌마을, 목교마을, 가라마을)을 대상으로 공통적인 주거환경요소를 파악하고, 농촌다움 이미지 틀에서 해당하는 경관을 추출하여 분석함

나. 고창군 농촌중심지의 주거환경요소

- 고창군의 농촌중심지에서 나타나는 주거환경요소는 아래 표와와 같이 생활경관에 해당하는 행정·금융·의료시설, 교육시설, 문화·복지/체육시설, 종교시설, 가로교통시설, 상업시설이 분포함
- 행정·금융·의료시설에는 면사무소, 농협, 신협, 파출소, 의원 등이 분포하고 교육시설로는 초등학교, 중학교가 나타남
- 종교시설은 교회가 있었으며, 가로교통시설로는 터미널, 주차장 등 교통시설이 위치함
- 상업시설로는 전통시장이 있으며, 조사한 5개 읍면의 중심에 필수적으로 위치함
- 답사결과 중심지에는 농촌주민들에게 행정·교육·상업·금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공통된 거점시설들이 나타남
- 고창군의 4개의 생활권역에서 중심이 되는 고창읍, 무장면, 대산면, 해리면, 흥덕면 중에서도 인구가동이 많은 고창읍, 흥덕면을 제외하고는 쇠퇴한 양상을 보임
- 각 농가마다 차량보급이 많아지면서 가까운 중심지보다 규모가 큰 중심지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중심지 내에서 주차장이 큰 규모로 설치된 곳이 많았음

(표 5-25) 농촌중심지별 주거환경요소

구분		고창읍	무장면	대산면	해리면	흥덕면
생활경관	행정·금융·의료시설					
						
	교육시설					
						
	문화·체육시설					
						
	종교시설					
						
	가로교통시설					
						
						
상업시설						

자료 : 손용훈(2018), 네이버 로드뷰(2017)

다. 고창군 농촌마을의 주거환경요소

- 고창군 농촌마을에서 나타나는 주거환경요소는 [표 4-20]과 같이 생활경관에 해당하는 주택시설, 문화·복지시설이 있으며, 생산경관인 경작지가 나타남
- 농촌마을은 대부분 정주공간과 농경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농경지에서 대부분의 생산 활동을 함
- 정주공간은 낮은 담장과 좁은 골목길을 통해 편안하고 조용한, 이웃과의 정이 느껴지는 서정적 이미지가 나타남
- 농업공간은 생산활동과 관련한 풍부, 풍족함의 이미지와 동시에 농촌인구 감소와 노령화로 인한 노동인구 감소에 따라서 자립성 부족의 이미지가 나타남
- 그 외 마을 공동체공간으로 있는 마을회관과 정자 등에서 마을 주민들의 커뮤니티가 형성됨

(표 5-26) 농촌마을별 주거환경요소

구분		안현마을	하전마을	고인돌마을	목교마을	가라마을
생활 경관	주택 시설					
	문화· 복지 시설					
생산 경관	경작 지					
혼합 경관						

자료 : 손용훈(2018), 네이버 로드뷰(2017)

3. 고창군 농촌중심지 및 마을에서 나타난 농촌다움의 이미지

- 농촌다움에 대한 기대를 나타내는 이미지 중 향유성이 가장 인식이 높게 나타났으며, 대표적인 이미지로는 농촌중심지 재래시장의 모습과 농촌마을의 마을길이 나타남
- 심미성과 자연성의 경우에는 농촌중심지와 농촌마을이 유사하게 나타났는데, 탁 트인 개방감 있는 이미지나 산을 바라보는 이미지가 주로 나타남
- 규모성과 관리성의 경우에는 멀리서 중심지를 바라보는 이미지나 넓게 펼쳐진 논과 마을벽화 등 정돈되고 관리된 이미지가 도출됨
- 생산성과 공동체성에 대한 이미지에서는 농사를 짓는 농민들의 모습이 두드러졌으며, 공동체성에서는 마을의 행사나 모임장소가 주요 이미지로 도출됨
- 농촌다움을 인식할 때 개선이 필요한 이미지에서는 쾌적성이 높이 인식되었는데, 오래되고 낙후된 시설에 대한 지적이 많았음
- 편리성의 경우에는 교통과 같은 기반시설 이미지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일상생활의 불편함과 동시에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함
- 자립성은 농촌의 현실을 반영하는데, 고령화된 사회의 이미지가 대표적임
- 고창군에 나타난 농촌다움의 이미지는 아래 표와 같음

(표 5-27) 농촌다움 이미지와 실제 사례 비교

이미지	사례		주요 내용
	농촌중심지	농촌마을	
향유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감으로 느끼는 농촌의 정취 • 조용한, 한적한 한가로움 • 그 외 농촌에 관한 향수, 이미지
심미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경관이 가지는 아름다움 • 주로 시각적인 요소로 숲, 논 등의 자연자원과 전통 요소 등 문화자원에 기반함
자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에서 가까이 접하는 자연자원, 생태자원 등 • 친환경적, 생물다양성 등 생태적, 환경적으로 양호한 상태도 포함
규모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에서 볼 수 없는 개방성 • 펼쳐진 조망과 통일적인 패턴 • 마을에서는 아늑하고 인간적인 스케일
관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상적으로 잘 관리되고 있는 모습 • 자연환경과 인간의 행위가 일정 균형을 이루고 있는 모습 • 농촌정비사업으로 정돈된 모습
생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활동이나 유통 등 농촌에서 이루어지는 생산활동이 잘 드러나는 모습 • 경제적 풍요로움과 활기 • 정주지의 경제적 지속가능성
공동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 주민들의 활발한 커뮤니티 활동 및 이를 상상하게 하는 경관 • 마을주민들이 모이는 축제나 모임 장소 • 주민들의 교류, 커뮤니티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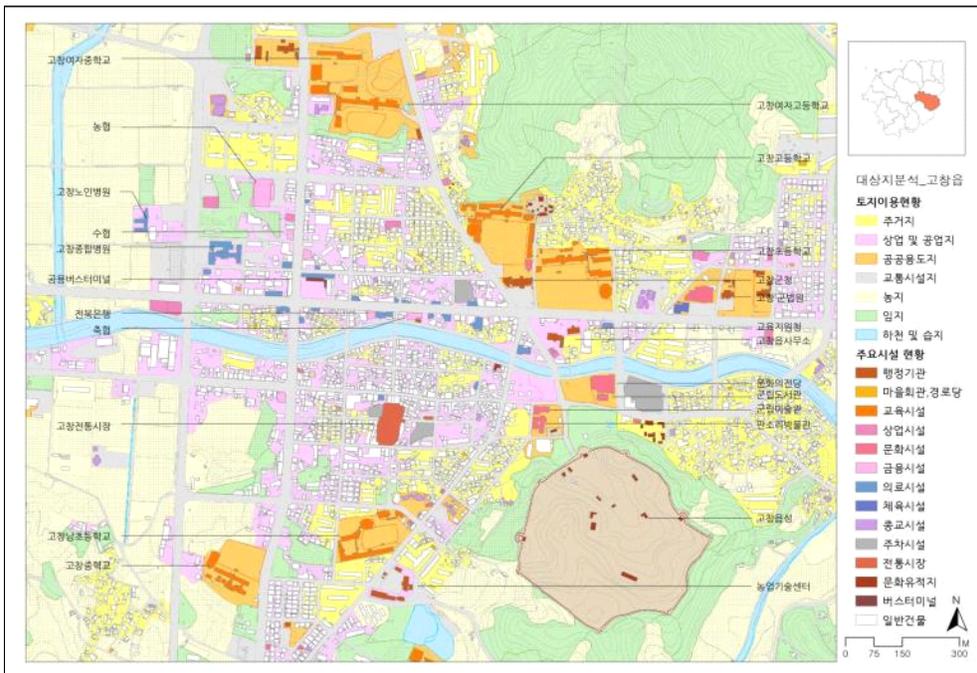
<p>쾌적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 생활에서 느껴지는 어메티니 요소 • 안정, 활기, 밝은 분위기, 환경의 질
<p>편리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의 기반이 되는 물적 요소의 충족도 • 교통, 문화기반시설, 여가기반시설, 생활기반시설의 충족도
<p>자립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정된 인구 구조 • 생활환경에 관한 각 요소들이 구조적으로 결핍이 없이 연결되고 작동됨

자료 : 손용훈(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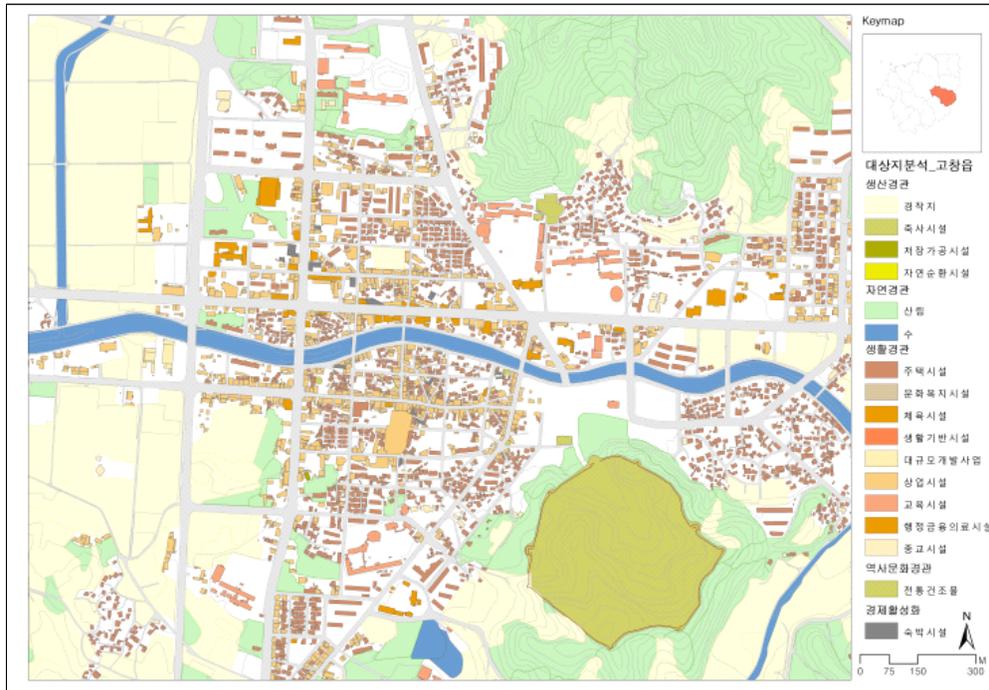
4. 사례 대상지별 주거환경요소의 공간분포

1) 고창읍

- 고창읍은 아래 그림과 같이 군의 중추 업무 기능의 역할을 하는 중심지로 시가지화가 가장 높으며, 주요 행정기관(고창군청, 법원, 교육지원청)이 있음
- 전통시장의 규모가 고창군에서 가장 크며, 주변으로 상업시설이 밀집해 있음
- 군내에서 유일하게 병원(고창종합병원, 석정병원)이 있고 시외터미널을 통해 다른 시도로의 이동이 용이함
- 문화재·유적으로는 고창읍성(모양성)과 고인돌 세계문화유산이 있음
- 고창읍의 농촌중심지 주거환경요소를 기준으로 분류한 결과는 아래 그림과 같음



<그림 5-17> 고창읍 농촌중심지 현황 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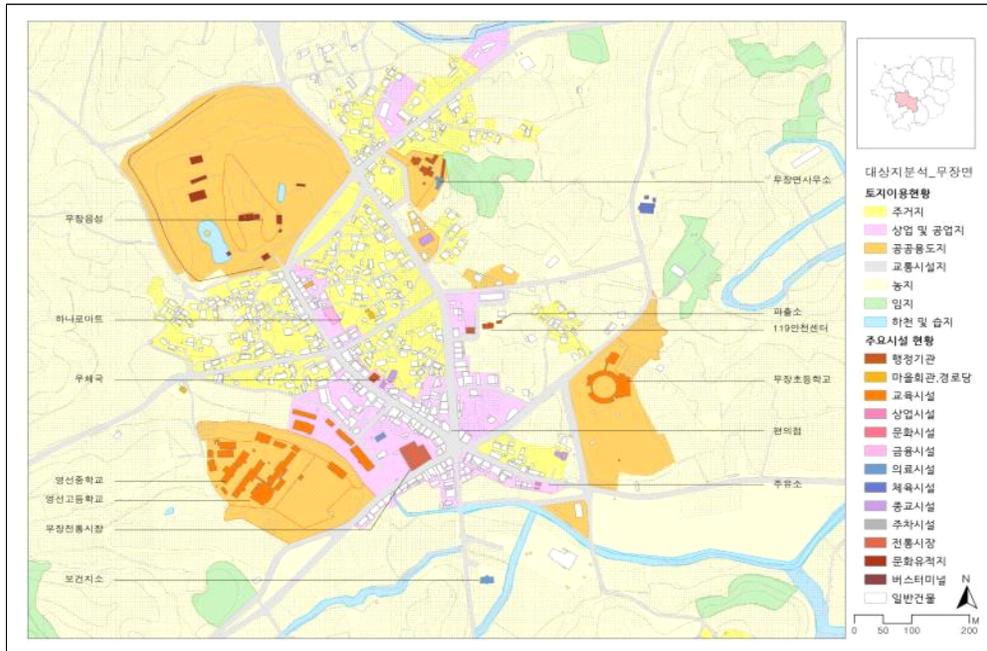


자료 : 국토정보플랫폼(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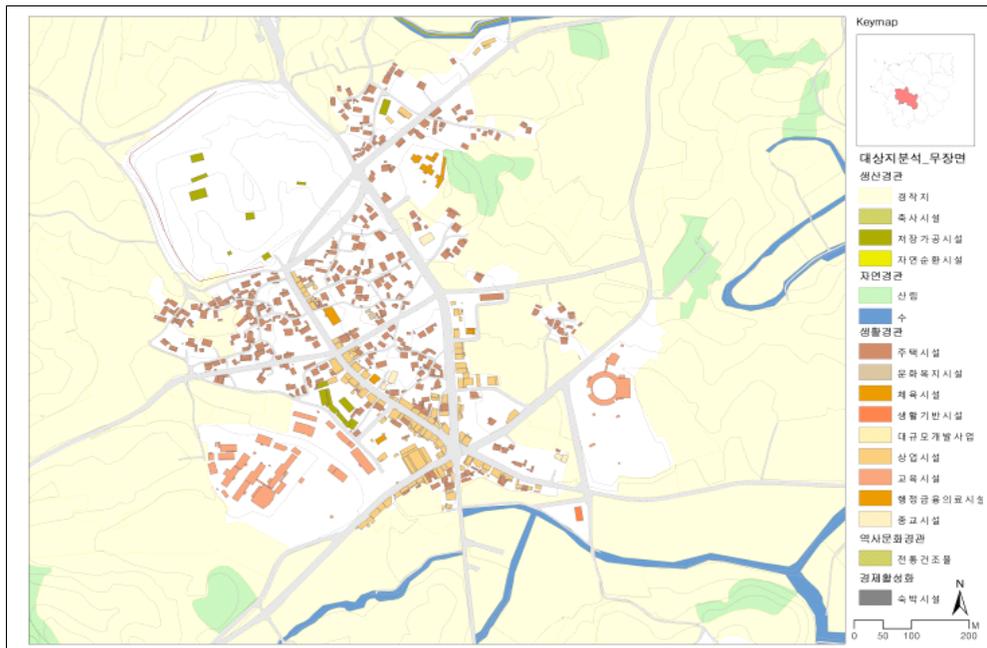
<그림 5-18> 고창읍 농촌중심지 주거환경요소 분류도

2) 무장면

- 무장면은 고창읍과 함께 과거 조선 시대 현의 중심지 역할을 하였으나 이후 면의 기능이 다소 축소되어 남부권역에서 대산면과 함께 농촌중심지로서 주변 여러 농촌마을 주민들의 각종 상업활동을 지원하고 있음
- 다른 농촌중심지와 동일하게 전통시장과 초·중·고등학교와 유치원 등의 교육시설을 갖추고 있음
- 과거 버스정류장이 있었으나, 현재는 사라지고 전통시장 앞 버스정류장을 시외버스정류장으로 사용함
- 문화·유적지로 무장읍성이 있으며, 주민들과 외부방문객에게 어메니티를 제공함
- 무장면의 농촌중심지 현황 및 주거환경요소에 따라 주요 시설은 아래 그림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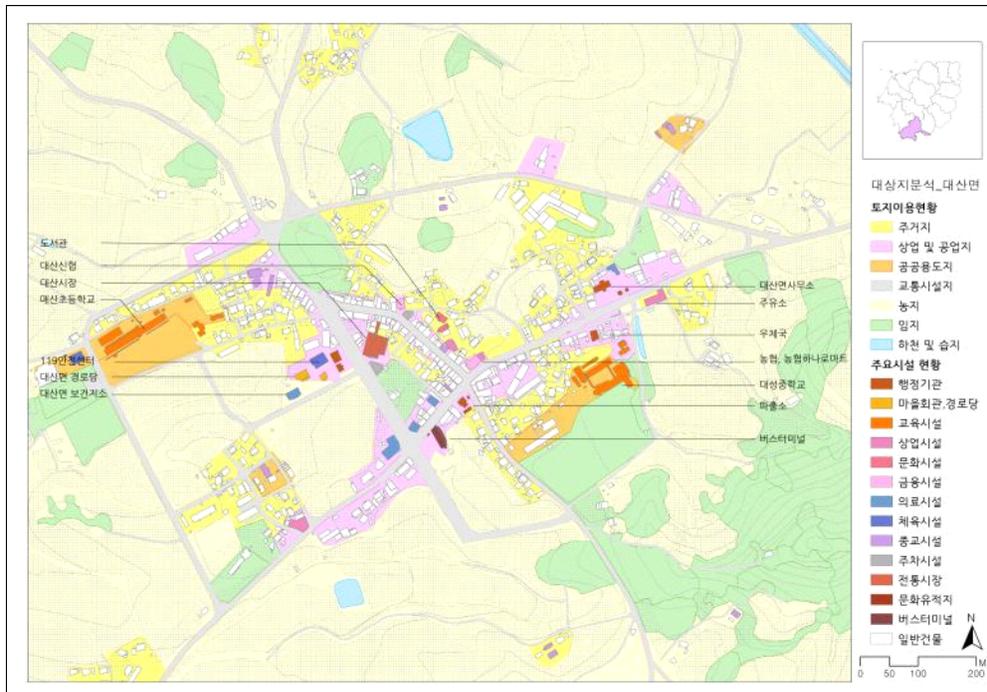
<그림 5-19> 무장면 농촌중심지 현황 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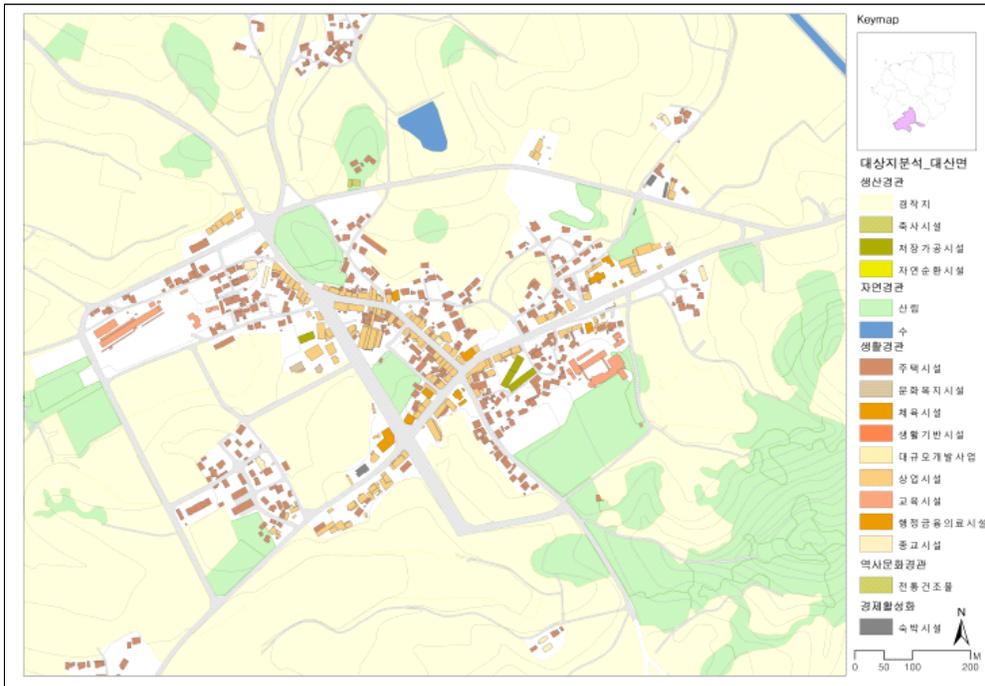
<그림 5-20> 무장면 농촌중심지 주거환경요소 분류도

3) 대산면

- 서해안 고속도로에 인접해 주변지역의 접근성이 용이하여, 주변 남부권역의 마을의 중심지 역할을 함
- 기존 상업시설이 밀집한 중심가로 이외에 새로 신설된 공음대산로 주변으로 행정기관이 이전되고 상업시설들이 새로 생겨나고 있음
- 대산면의 농촌중심지 현황 및 주거환경요소에 따라 주요 시설은 아래 그림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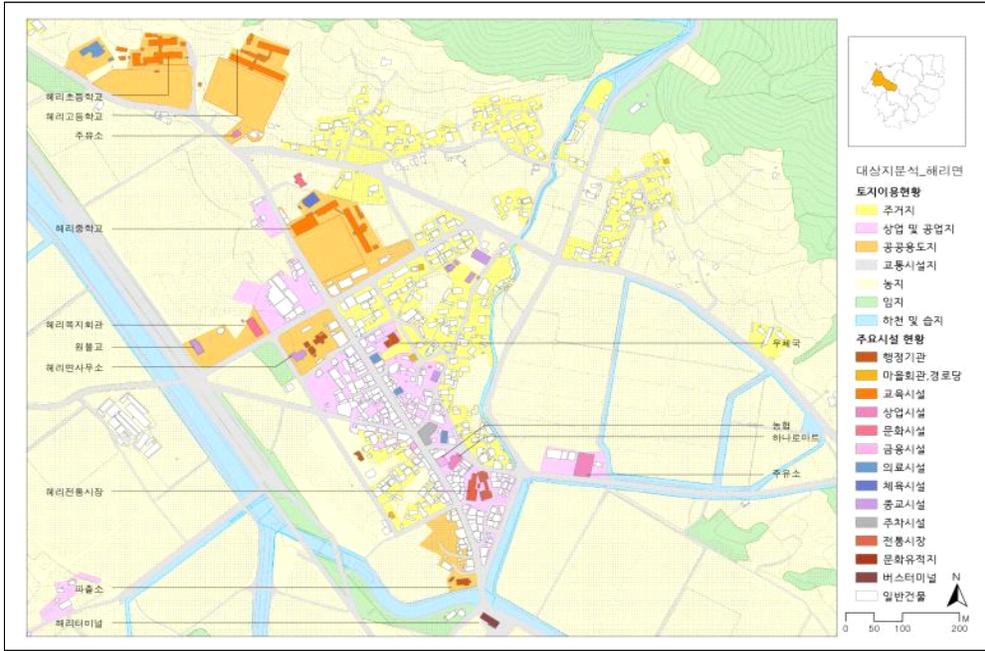
<그림 5-21> 대산면 농촌중심지 현황 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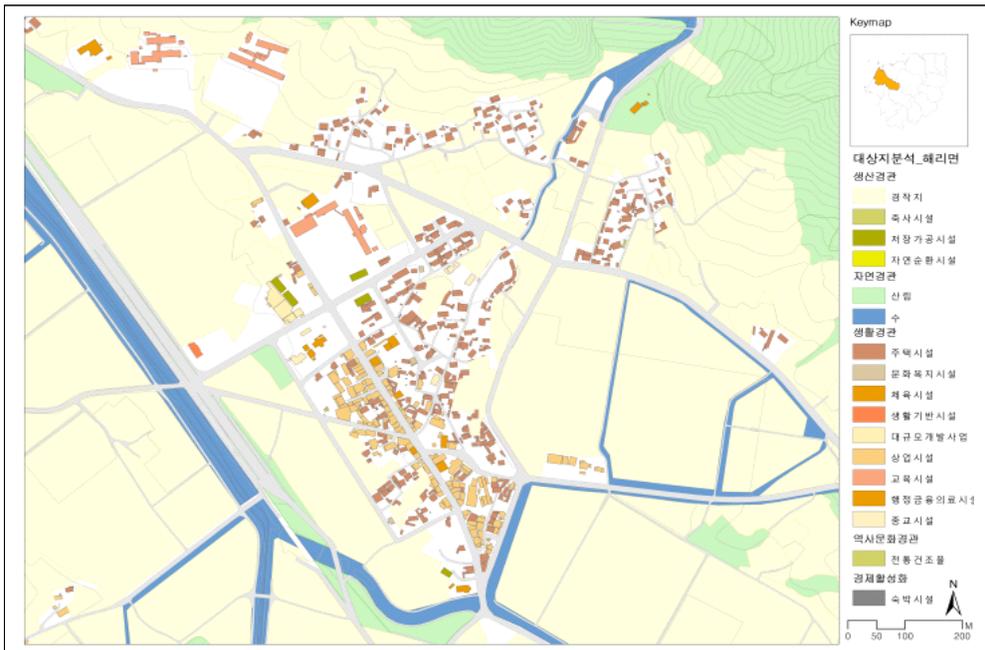
<그림 5-22> 대산면 농촌중심지 주거환경요소 분류도

4) 해리면

- 서부권역의 중심지로 다른 농촌중심지와 동일한 거점시설들을 통해 주변 농촌마을에 교육, 상업, 금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
- 해리면의 농촌중심지 현황 및 주거환경요소에 따라 주요 시설은 아래 그림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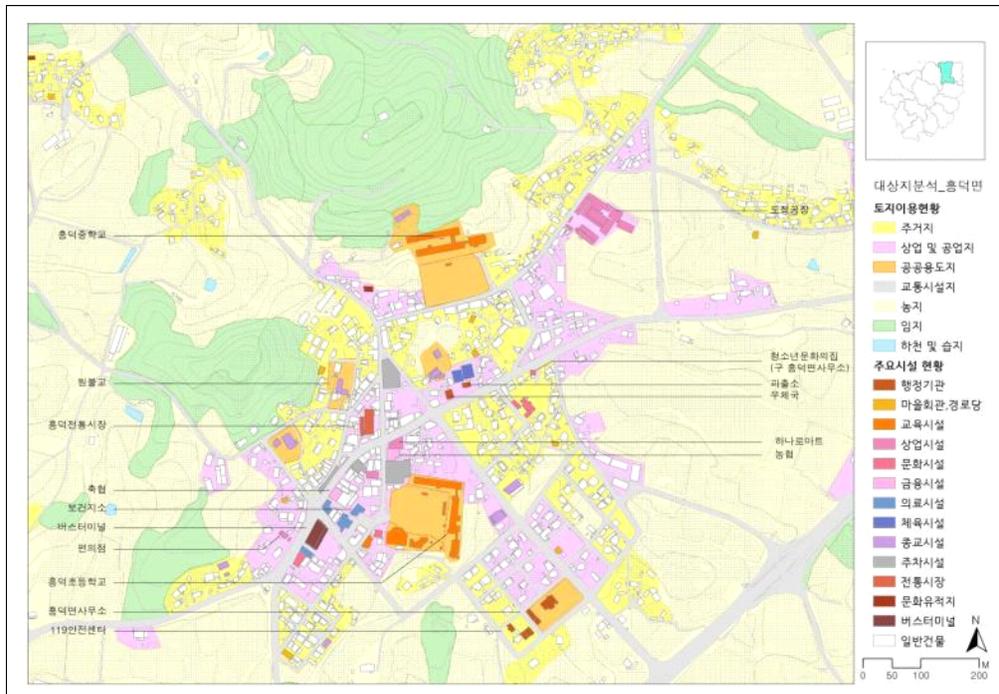
<그림 5-23> 해리면 농촌중심지 현황 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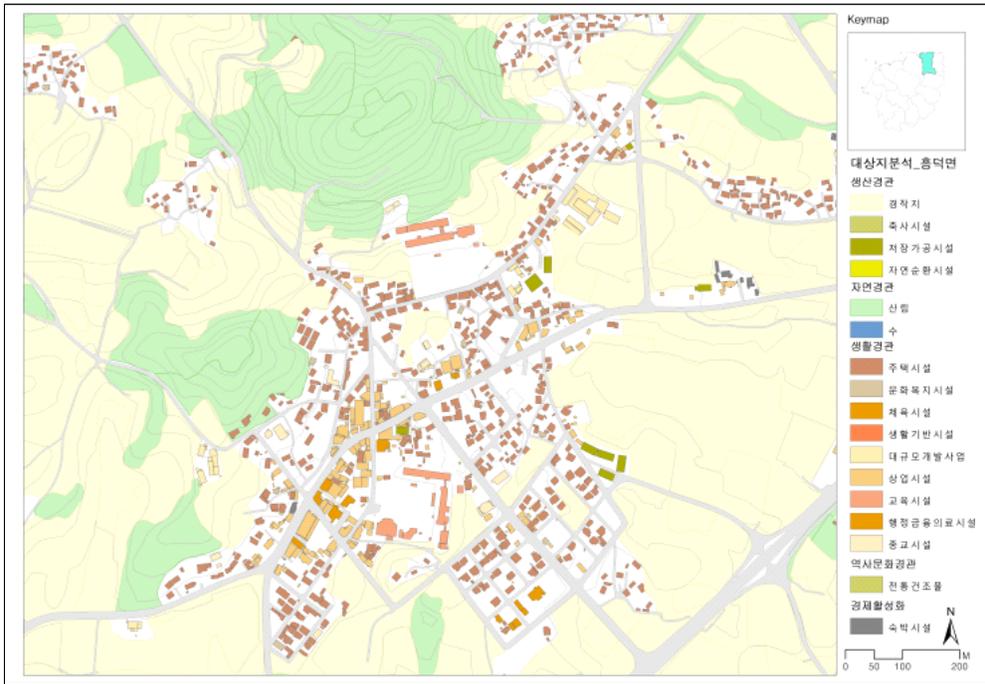
<그림 5-24> 해리면 농촌중심지 주거환경요소 분류도

5) 홍덕면

- 서울로 직행하는 버스가 있으며, 그 주변으로 중심가도가 형성되어 있음
- 택지조성사업으로 문화마을을 조성하면서 행정기관을 이전함
- 정부미를 도정하는 공장이 있으며 농협 소속의 비료창고가 있음
- 홍덕면의 농촌중심지 현황 및 주거환경요소에 따라 주요 시설은 아래 그림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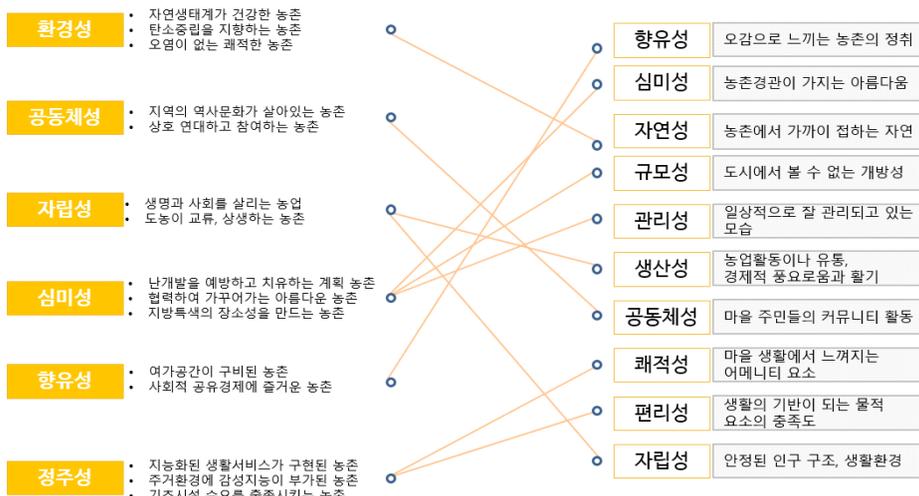
<그림 5-25> 홍덕면 농촌중심지 현황 도면



<그림 5-26> 홍덕면 농촌중심지 주거환경요소 분류도

5. 농촌다움 이미지와 개념의 연결

- 본 장에서는 아래 그림과 같이 일반인, 농촌주민, 귀농·귀촌인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농촌다움에 대한 이미지 현장조사와 SNS 조사를 분석하여 앞서 정립한 농촌다움의 개념(6 원칙)과 비교함
- 일반인, 농촌주민, 귀촌자별, 일반 농촌 및 근교 농촌별로 농촌다움 이미지에 대해서는 각각 인식의 차이가 존재했지만, 향유성, 심미성, 자연성, 규모성, 관리성, 생산성, 공동체성, 쾌적성, 편리성, 자립성의 이미지 유형 내에 정리함
- 상술한 농촌다움의 개념과 비교하면, 농촌다움의 내용이 전체 이미지를 포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특히 이미지 측면에서는 심미성, 자립성, 정주성 등이 많이 언급되었고, 심미성은 개방감, 전경 등 경관 규모(Visual Scale)와 잘 관리된(Cues to care) 등을 포함하며, 자립성에는 농업 경쟁력 등 생산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었음
- 정주성에 대해서는 생활환경의 심리적 쾌적성, 이용시설의 편리성에 대한 불편함이 농촌을 대표하는 이미지로 주로 제시되고 있음



<그림 5-27> 다양한 주체가 인지한 농촌다움 이미지와 농촌다움 개념 비교

제6장 농촌다운 주거환경 조성 기술요소 개발 및 현실 적합성 평가

제6장 농촌다운 주거환경 조성 기술요소 개발 및 현실 적합성 평가

제1절 농촌다운 주거환경 조성 범위 설정

1. 농촌다운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기술요소 개발 필요성

- 2000년을 전후하여 도시민의 농촌 이주 증가로 기존 농촌마을의 동족부락적인 성격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윤원근, 2014).
 - 이천, 양평, 가평 등 수도권 인근의 농촌에서는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 은퇴자⁶⁷⁾의 유입으로 귀농·귀촌 인구가 늘어나고 있으며, 일부 농촌마을의 경우에는 도시로부터의 귀촌인이 기존의 원주민보다 비중이 높은 곳도 나타나고 있음(박대식·권인혜, 2011)
 - 귀촌가구주의 연령은 50대(29.5%), 40대(22.0%), 30대(19.6%) 순으로 장년층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음(박대식·남승희, 2015)
- 귀농·귀촌인은 원 거주민과 달리 장소에 대한 미적이고 기능적인 질에 관심이 높은 경향을 보여(Burholt, 2006), 농촌의 주거환경에 대한 인식을 ‘쾌적한 생활환경 선택’의 문제로 봄
 - 귀농·귀촌인이 통상적으로는 우수한 자연환경을 선호하고, 주거환경의 쾌적성을 중시하는 특징이 있음(이해진 외, 2013)
 - 주거 선택 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은 자연환경, 의료시설, 문화시설 등의 이용편리성을 강조(김한수·박혜지, 2014)

67) 이들의 대다수는 삶의 뿌리를 농촌에 두고 있으며, 전통적인 한국의 농촌문화를 경험하였음(이해진, 2013).

- 농촌 주거환경의 질은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요소로서 (Paquette·Domon, 2003; Domon, 2011), 새로운 인구를 유입시키는 동인으로 작용
 - 거주민의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하던 시기의 주거환경 인식에 비해 현재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거주민 그룹이 생기고 이로 인에서 주거환경에 대한 인식 또한 다양하고 복잡해지고 있음

- 농촌의 고령화 추세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농촌으로 이주하는 도시민들의 대다수도 노인 인구임
 - 노인을 위한 주거지는 일반적인 주거지의 경우보다 주변 환경의 안전성, 편의성, 쾌적성 등이 더욱 세밀하게 검토되어야 함
 -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에 위치한 1,485개의 마을을 대상으로 조사된 고령친화마을의 핵심 분야는 물리적 접근성 및 근접성⁶⁸⁾, 안전, (주택)구매능력, 사회적 통합으로 나타났음(Plouffe et al., 2010)

- 따라서 농촌에 있어서 주거환경은 이전과는 다른 인식기반 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새로운 농촌다운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기준 제시와 이를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개발이 시급함

2. 농촌다운 주거환경의 범위 설정

가. 농촌 주거환경 관련 개념 및 지표 검토

1) 유사개념

- 일반적으로 농촌 주거환경은 농촌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쾌적한 환

68) 노인들이 일상생활을 위한 편의시설의 근접성에 대하여 미국의 건축가 카스텐스(Carstens)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음. 필수시설로는 식료품, 약국, 대중교통 정류장이 있고, 필수조건은 아니더라도 희망시설로는 백화점 또는 옷가게, 은행, 병원, 이·미용실, 음식, 우체국을 들 수 있음.

경에서 높은 삶의 질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 환경으로 정의하고 있음(김대식 외, 2010)

- 여기서 주거환경(residential environment 또는 neighborhood environment)이란 개별 주거지를 둘러싼 일단의 주거지역의 생활환경조건의 총체를 말하며, 넓은 의미에서는 사회, 경제, 문화, 자연 환경의 물리·비물리 측면을 포함하며, 좁은 의미에서는 주로 물리적 환경의 측면을 말함
- 주거환경의 물리적 요소는 가장 근본으로 자연인 조건(지형, 경사, 지질, 하천 등)의 제약 속에서 토지이용계획, 기반시설, 대지 및 건축물 등으로 구성되며, 이러한 물리적 요소와 그곳에서 거주하는 거주자(는 활동하는 방문자)의 행태 요소가 상호작용하면서 성과(performance)가 나타나게 됨

○ 최근에는 사회취약계층을 포함한 거주자에게 양질의 맞춤형 주거 서비스를 확대시키자는 논의가 되고 있음

- 주거 서비스란 주택의 수요와 공급이라는 단순한 시장원리의 경제재(economic goods)에 대한 주택수요(housing demand)만이 아닌 인간생활에 필요한 기본욕구인 주거욕구(housing needs)를 충족시키기 위해 제공되어야 하는 사회적 개념의 서비스로 정의되고 있음(국토연구원, 2014)
- 주거서비스의 구성요소는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1차적 구성요소는 가옥 등 건물(house or housing) 내에서 발생하는 재화, 2차적 구성요소는 건물이 속해있는 토지 등 주거단지(housing complex), 3차적 구성요소는 환경적 입지(location environment)임(윤주현 외, 2005)

○ 한편, 일반적인 주거환경의 기본 조건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음

-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적용하고 있는 주거의 조건을 보면 안

정성(safety), 보건성(health), 편리성(convenience), 쾌적성(amenity)을 거주환경의 4개 이념으로 제시하고 있음

- 일본에서는 주거환경평가를 위한 속성으로는 안전성, 보건성, 편리성, 쾌적성, 지속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음(소천, 1985 재인용)
- 서울시(2008)에서 주거환경의 질 평가를 위해 안전성(교통안전, 생활안전, 방범, 소방, 침수방지 등), 편리성(교통 및 생활편의시설), 쾌적성(녹지·수변, 개방성, 소음, 대기 질 등), 자원절약성(에너지, 온도, 환경부하 등에 대한 대처) 4가지로 설정하였음

2) 관련 평가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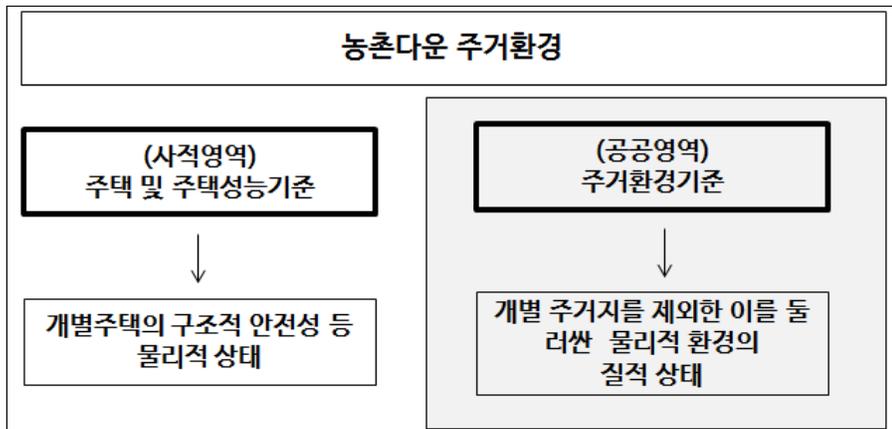
- 구체적으로 농촌 주거환경과 관련 주요 평가지표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음
 - 국토연구원(2007)은 4개부문(인구사회, 산업경제, 공간입지, 생활여건), 15개 항목(인구정주성, 인구활력성, 고용기반, 소득기반, 토지이용, 도농혼재, 도농교류, 접근성, 주거서비스, 교통편의, 정보기반, 기초환경, 의료·복지, 교육, 문화·관광), 38개 진단지표로 구성
 - 김대식 외(2010)은 5개 부문(인적자원 구성, 주민건강 및 삶의 질, 산업경제기반, 생활여건환경자원, 정주기반기본시설), 13개 항목(기본현황, 경제활동인구, 주민건강, 삶의 질 만족, 산업경제시설, 농가소득환경, 도농교류기반, 교통접근성, 어메니티자원, 환경저해요인, 주거 및 공동시설, 공급처리시설, 의료복지 및 교육문화시설), 40개 진단지표로 구성
 - 송희중·김대식(2013)의 마을경관과 주변마을경관 2개로 구분하여 10개 항목(주거지, 건축물, 공공가로, 편의시설, 식생, 문화, 농지, 녹지·지형, 동식물, 물환경), 20개 진단지표로 구성
 - 국립농업과학원(2016)은 농촌마을 정주여건 진단 지표의 구성을 중심마을(10개 진단 분야)과 배후마을(9개 진단 분야)로 구분하여 기본지표 39개, 공공편의 서비스 진단을 위한 서비스 지표 22개

로 총 61개 지표로 구성

- 한국농어촌공사(2017)는 현황지표 3개 부문(인구구조, 가구구조, 서비스접근성)에서 12개 평가지표를, 평가지표 5개 부문(주거기반, 문화기반, 경관생태기반, 산업기반, 역량강화기반)에서 39개 총 51개로 구성

나. 농촌다운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범위 설정

- 이상의 논의를 통해 본 연구에서 농촌다운 주거환경의 범위는 개별 주거지(사적영역)를 제외한 이를 둘러싼 공공영역의 물리적 환경으로 설정하고자 함



<그림 6-1> 농촌다운 주거환경의 범위

제2절 농촌다운 주거환경 조성 기술요소 평가방법 개발

1. 평가방법 개발의 필요성

- 기존의 농촌 주거환경을 평가하는 연구들의 상당수는 미래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현재의 농촌 주거환경 실태를 진단하는데 그치고 있는 상황임
 - 농촌지역 특성의 진단지표 개발(김창현 외, 2007), 농촌마을단위 정주환경진단지표 개발(김대식 외, 2010), 농촌공공공간 및 시설 배치 매뉴얼(서주환 외, 2015), 농촌환경 취약성 진단지표 개발(농어촌연구원, 2017) 등의 연구들이 이에 해당함
 - 이러한 연구들은 관련 자료 및 사업 분석을 통해 지표를 도출하거나 통계 분석을 통해 빈도가 높은 시설 요소를 도출하는 방식으로 접근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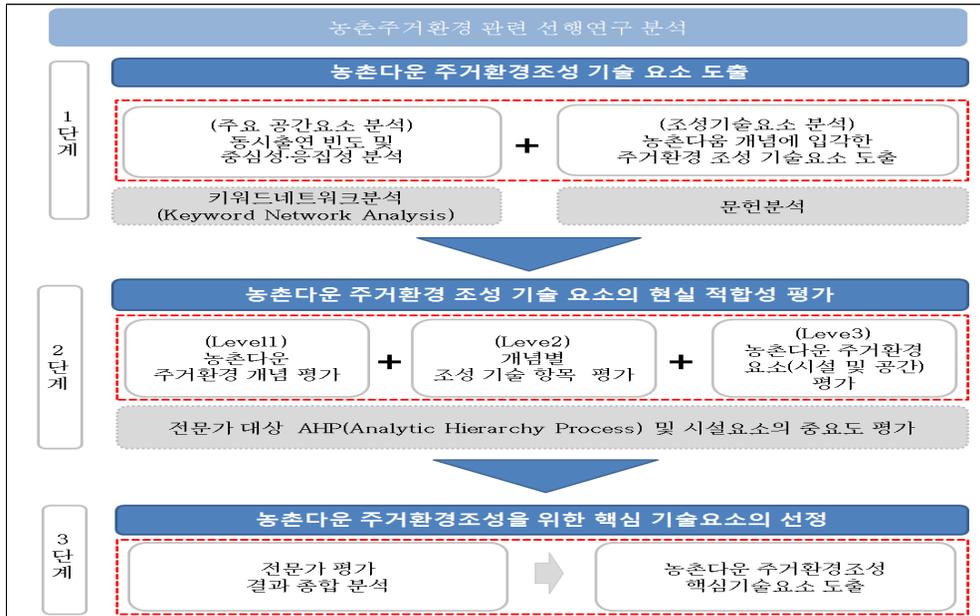
- 이외 다수의 연구들은 특정지역의 농촌 주거환경을 중심으로 자원을 발굴하고 이를 부문별 시설자원으로 유형화 하여 부문별 계획안을 제공하나,
 - 농어촌 경관계획수립요령(2009), 농촌마을 어메니티 계획 매뉴얼(2005), 농촌마을리모델링기법(2007), 농촌마을디자인가이드라인(2011) 등의 연구가 이에 해당됨
 - 주로 사용하는 분석방법은 전문가, 일반인 대상 경관의식 조사와 유형별 빈도, 통계학적 분석을 통한 가치평가가 일반적임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들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3차례의 분석 단계를 거쳐 평가항목의 객관성을 확보함은 물론 미래 수요에 대응하는 농촌다운 주거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어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하는 핵심 기술요소는 무엇인지를 파악하고자 함

- 특히 최근 주목받고 있는 빅데이터 분석방법을 활용하여 지난 10여년 간의 농촌 주거환경과 관련된 다량의 데이터를 단순빈도 뿐만이 아니라 동시출현빈도, 중심성, 응집성 분석 등을 다각도로 실시하여 기존 연구에서 파악하기 힘든 시설간, 경관간의 연계 구조를 파악하고자 함
 - 또한, 전문가를 대상으로 평가항목에 대한 현실 적합성 평가를 실시하고자 함
- 이는 향후 농촌다운 주거환경 조성과 관련된 정책적 판단 및 사업을 실시할 때 전략적인 우선순위를 제시하여 농촌마을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2. 평가체계 구축

- 평가체계는 아래 그림과 같이 총 3단계로 구성됨
- 이러한 평가체계에서 주로 사용되는 방법은 아래와 같음
 - 농촌다운 주거환경조성 기술요소 도출 및 현실 적합성 평가 과정에서 빅데이터 분석과 전문가 평가 방법을 적용하여 분석 결과의 객관성 확보
 - 문헌정보를 근거로 한 키워드네트워크분석과 전문가 대상 AHP 평가를 단계적으로 실시



<그림 6-2> 농촌다운 주거환경 조성 기술요소 평가체계

가. (1단계) 농촌다운 주거환경조성 기술 요소 도출

- 농촌다운 주거환경 조성에 우선 고려해야 할 공간 요소 도출
 - 동시출연빈도 분석을 통해 기능별 주거환경 요소의 유형화
 - 중심성·응집성 분석을 통해 규모별 주거환경 요소 간 연계구조 파악
- 농촌다운 개념에 입각한 주거환경 조성 기술 목표 및 기술 요소 도출
 - 상술한 농촌다운의 개념별(환경성, 공동체성, 자립심미성, 향유성, 정주성) 기술목표와 기술요소 도출
- 핵심 기술요소 선정을 위한 평가 항목 설정

나. (2단계) 농촌다운 주거환경 조성 공간 요소 및 기술 요소의 현실 적합성 평가

- 전문가 대상 AHP 및 중요도 평가 실시
 - 농촌다운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고려해야 할 개념과 개념별 기술 항목 우선순위 평가
 - 개념별 농촌다운 주거환경 공간 및 시설요소 중요도 평가

다. (3단계) 농촌다운 주거환경조성을 위한 핵심 기술요소의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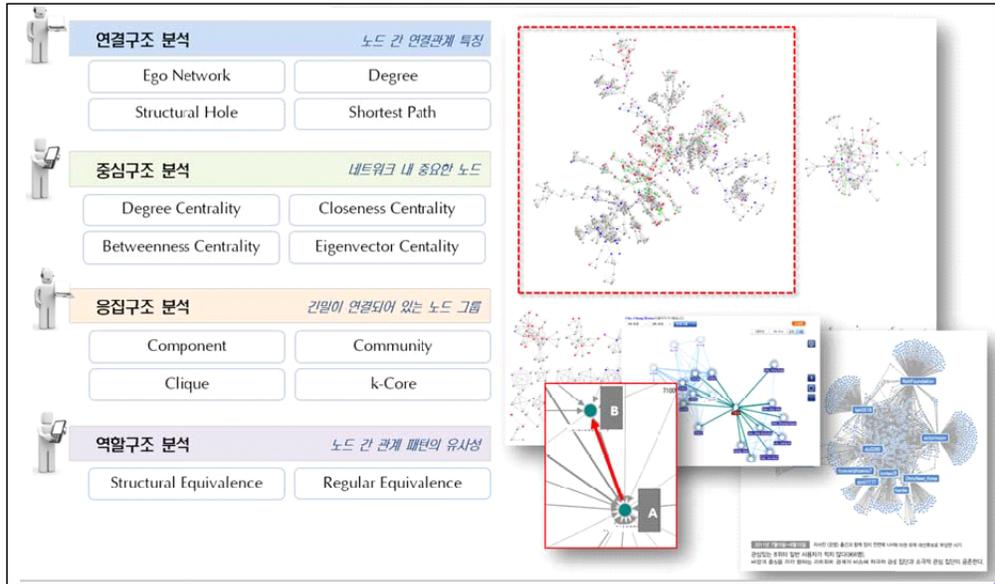
- 전문가 평가 결과를 종합 분석
- 농촌다운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핵심 기술요소 선정

3. 분석방법

가. 분석방법에 대한 이해

1) 키워드네트워크분석(Keyword Network Analys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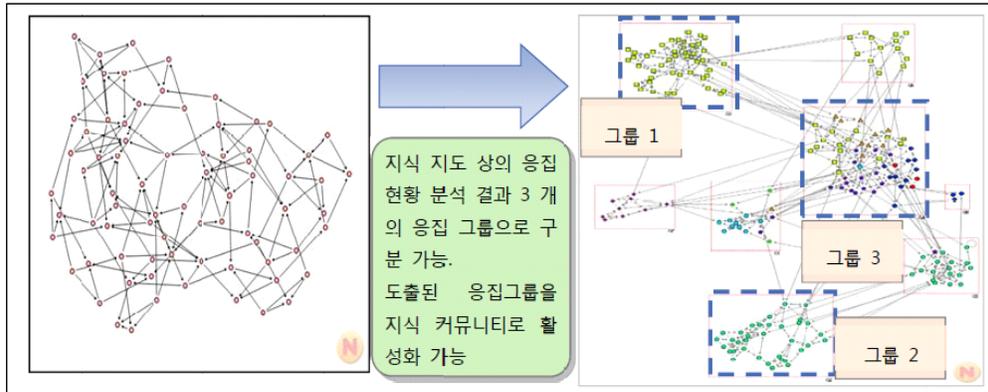
- 키워드네트워크분석은 사회과학 전반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기술, 시각화, 모델링 등을 통해 연결망 구조를 분석하고 이해할 수 있는 방법임
 - 구성원, 조직, 지역, 키워드 등의 상호작용(interaction), 사회적 관계(social relations), 흐름(flows), 유사성(similarities) 등을 분석할 수 있음



자료 : ㈜사이람, 소셜네트워크분석 활용백서 지식지도구축.

<그림 6-3> 소셜네트워크분석 방법론의 주요 주제

- 복잡하고 방대한 데이터를 직관적인 데이터로 재구성함
- 연구동향 및 특정이슈 파악, 키워드 간 연결 관계, 자주 함께 등장한 키워드 간 그룹화 등 기존 개별단위의 통계분석 결과에서 파악할 수 없는 구조적인 관계를 정밀하게 분석함
- 최근에는 빅데이터 분석 방법의 하나로 대규모 정보의 흐름과 확산 구조를 종합적으로 파악하는데 활용됨
 - 문서의 키워드를 지식 지도로 시각화하여 그간 축적된 지식 현황을 한눈에 파악하고 탐색할 수 있도록 함
 - 시계열 변화를 분석해 특정 주제에 대한 경향을 파악하거나, 새롭게 떠오르는 신기술 및 지식 이슈를 도출함
 - 또한 분야 간 융합 흐름과 특정 주제에 관한 기관·연구자·기술의 영향력 측정이 가능함



자료 : (주)사이람, 소셜네트워크분석 활용백서 지식지도구축.

<그림 6-4> 지식 응집 그룹 분석

-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누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동시 출현빈도’와 ‘연관성’을 계량적으로 분석하고, 주요 항목을 종합 분석하여 농촌주거환경 조성기술의 변화 흐름과 최신 경향 및 핵심요소를 파악함
- 결과는 자주 등장한 키워드(node) 간의 연결 관계(link)를 나타내는 키워드 지도로 표현됨
 - 각 노드(node)의 크기는 키워드의 출현빈도를 나타내고 링크(link)의 굵기는 키워드 간 연관된 수준을 의미함
 - 연결중심성(degree centrality)이 높은 것은 직접 연관된 키워드가 많다는 것을 의미함
 - 매개중심성(betweenness centrality)이 높은 것은 여러 주제의 방향으로 확장성이 높아 다양한 분야를 포괄할 수 있는 주제어라는 의미임
 - 키워드의 출현빈도가 낮아도 연결중심성 또는 매개중심성이 높아 다른 주제와의 연결성이 강할 수 있음

쌍대비교를 통한 평가기준의 중요도를 정하고, ④ 각 평가기준에 대하여 대안의 중요성(우선도)을 평가한 후 마지막으로 ⑤ 최종 목표에 대한 대안의 평가로 환산함

(표 6-1) AHP 의사결정 과정(5단계)

단계	단계명	내용
1단계	해결과제 정의	- 다수의 판단기준이 포함된 해결과제의 파악 - 판단기준의 대안의 규명
2단계	문제의 계층화	- 해결 과제를 규정하는 계층 구조도 구축
3단계	Scaling System(척도 체계)의 결정 및 쌍대비교 판정에 의한 중요도 설정	- 평가기준 가중치 측정 - 대안간 선호도 측정(설문조사) - 선호도 측정(설문) 결과 쌍대비교를 통한 중요도 설정(각 평가기준과 각 대안 비교 /평가기준의 중요도에 대한 쌍대비교) - 쌍대비교 과정에서 일관성 지수(C.I. :consistency index)를 통해 환류과정(feed-back)을 거침(응답자 설문이 적정한가를 판단)
4단계	대안의 우선도 판단 (우선순위의 종합)	- 전체 목적을 위한 판정의 종합화 - 최선의 대안 식별
5단계	결정의 검증	- 직관에 의한 최선의 대안을 검증 - 민감도 분석(Sensitivity Analysis) 수행

나. 분석대상 및 자료수집

- 분석대상은 크게 기술요소 도출을 위한 분석과 현실적합성 평가로 구분됨
- 먼저, 공간 및 시설요소 분석을 위한 문헌은 ‘농촌경관, 농촌마을, 농촌주거, 농촌환경, 농촌어메니티, 농촌공간’의 키워드로 검색한 50개의 자료를 사용
 - 검색년도는 2005년부터 2018년도까지로 하며, KISS, DBPIA 등 국내 대표 검색저널 사용

- 다음으로 현실적합성 평가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온라인 배포를 통해 자료 수집
 - 문헌분석을 통해 도출한 항목을 근거로 설문지 작성

(표 6-2) 평가방법 및 분석대상

구분	평가대상		평가방법	내용	
	대상	선정기준			
기술요소분석	문헌	약 50건	· 기간: 2005-2018 · 검색저널: _KISS, DBPIA, 학술교육원, 농어촌연구원 · 검색키워드: _농촌경관, 농촌마을, 농촌주거, 농촌환경, 농촌어메니티, 농촌공간	문헌분석, 키워드네트워크분석 (Keyword Network Analysi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도별주요키워드분석 · 동시출현빈도분석 · 중심성분석 · 주거환경조성기술요소도출
현실적합성평가	전문가	약 30명	· 농어촌공사, 농촌중간조직, 연구소 및 학계 전문가로 구성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평가, 중요도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다운 주거환경 개념 및 개념별 내용에 대한 우선순위 평가 · 주거환경 공간 및 시설요소에 대한 중요도 평가

제3절 농촌다운 주거환경 조성 기술요소 도출

1. 농촌다운 세부 구성에 따른 주거환경 기술 목표 설정

- 기술 목표는 기존 연구에서 도출된 시설별 계획내용을 고려하여 앞서 도출된 6가지 농촌다운 개념(환경성, 공동체성, 자립성, 심미성, 향유성, 정주성) 및 구성항목을 토대로 설정하였음

가. 환경성 분야

- 환경성 분야는 3개의 영역(자연생태계가 건강한 농촌, 자원순환과 에너지 자립을 이루는 농촌, 오염이 없는 쾌적한 농촌)에서 총 9개의 기술 목표를 설정하였음

(표 6-3) 환경성 분야 기술 목표

영역	항목	기술 목표
자연생태계가 건강한 농촌	주변 지형과 어우러진 마을 특이 지형과 지질적 특성이 보존된 농촌	지형 연속성 확보 지형·지질 특이성 보전
	취락 내외부 녹지에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는 농촌	생태계·종 다양성 유지
	넓은 자연생태계를 중심으로 농지와 취락의 녹지가 연속적 망을 형성한 농촌	생태계 연결성·연속성 향상
자원순환과 에너지 자립을 이루는 농촌	자원의 사용량이 감축되고 동시에 폐자원이 재활용되는 농촌	자원 순환시스템 구축
	부존 및 준치 자원을 활용한 공간재생 시스템 구축	준치재료 재이용 시스템 구축
	에너지 생산과 소비를 지역단위에서 자립하는 농촌	에너지 자립 기반 구축
오염이 없는 쾌적한 농촌	쓰레기가 널려 있지 않은 깨끗한 농촌	자연부락 쓰레기 수거 시스템 완비
	오폐수가 없는 푸르른 하천·저수지	오폐수처리시스템 완비

나. 공동체성 분야

- 공동체성 분야는 3개의 영역(사회적 안전망이 구비된 농촌, 상호 연대하고 참여하는 농촌, 인구절벽·과소화에 대응하는 농촌)에서 총 6개의 기술 목표를 설정하였음

(표 6-4) 공동체성 분야 기술 목표

영역	항목	기술 목표
사회적 안전망이 구비된 농촌	농촌의 자생적인 노인 돌봄 공동체 구축	농촌노인의 안전생활 네트워크 구축
	농촌주민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는 사회복지서비스 확대	사회복지인프라 확충
상호 연대하고 참여하는 농촌	공동참여 증진을 위한 다양한 시설의 구비	마을 내 공동시설 확보
	귀농·귀촌인이 함께하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방안마련	귀농·귀촌인 활성화 지원시스템 구축
인구절벽·과소화에 대응하는 농촌	농촌인구 구조변화에 대응한 농촌 경제 활성화 방안	빈집, 폐교 등 유휴시설 활용한 지역문화공간 조성
	마을들을 연계한 거버넌스 체계 구축	지역 단위의 주민활동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 체계 구축

다. 자립성 분야

- 자립성 분야는 4개의 영역(생명과 사회를 살리는 농업, 혁신·향토산업이 공존하는 농촌, 도농이 교류·상생하는 농촌, 사회적 공유경제가 함께하는 농촌)에서 총 12개의 기술 목표를 설정하였음

(표 6-5) 자립성 분야 기술 목표

영역	항목	기술 목표
생명과 사회를 살리는 농업	환경 친화적 농업 기술을 활용한 청정농촌	유기농업 기술 개발 및 지원 확대 복지·의료와 연계한 농업 사업 확대 저비용·고효율의 농촌 산업 확대
혁신·향토산업이 공존하는 농촌	새로운 농업비즈니스 모델 구축	경제 활성화 시설 확대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한 식물농장 활성화 로컬푸드시스템 도입 혁신적 축사(Cow Garden) 개발
도농이 교류·상생하는 농촌	누구나 함께하는 열린 농촌	도농교류를 위한 시설 및 프로그램 확대 농업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 모델 개발
사회적 공유경제가 함께하는 농촌	농촌의 전문성을 살리는 공유경제 육성	협동조합·사회적 기업 활성화 사회 농업 (Social Farming) 도입 인재육성의 신모델 개발

라. 심미성 분야

- 심미성 분야는 3개의 영역(난개발 없이 섬세하게 관리되는 농촌, 고유한 감성을 가꾸어가는 아름다운 농촌, 지역 정체성을 간직한 개성 있는 농촌)에서 총 9개의 기술 목표를 설정하였음

(표 6-6) 심미성 분야 기술 목표

영역	항목	기술 목표
난개발 없이 섬세하게 관리되는 농촌	난개발을 예방하고 치유하는 농촌 토지이용 체계 완비	통합 토지이용계획 체계 구축
	농촌지역 특성에 맞추어 정교하게 설계되는 농촌	공간디자인 운용시스템 확립
고유한 감성을 가꾸어가는 아름다운 농촌	경관미를 복독우고 고향의 아늑함이 배어있는 색깔이 있는 마을	농촌형 경관색채 기술 도입
	농촌 고유의 파노라마 경관미가 살아있는 마을	수직 시설물의 시각적 영향 최소화
	산·마을·하천·농지 등 경관 조망이 단절되지 않는 온전한 농촌	배경-마을길-전면으로 구성된 경관의 구조성 보
	자연친화적 수공간 조영으로 수경관과 어우러진 농촌마을	수경관의 자연성 확보
	개별 공간미가 통합 조영되어 정취가 가득한 농촌중심지	중심 가로망의 경관 정체성과 통합성 확보
지역 정체성을 간직한 개성 있는 농촌	지역 고유의 정체성을 살린 개성미 넘치는 농촌	지역 정체성 발굴 및 디자인 기법
	기억을 간직하고 장소성이 살아있는 농촌	마을의 장소성 발굴과 유지
	마을 핵심 공간이 보존·복원되어 전통을 만들어가는 농촌	마을 공간의 맥락과 패턴 보전

마. 향유성 분야

- 향유성 분야는 3개의 영역(여가공간과 프로그램이 잘 구비되어 여유로움이 가득한 농촌, 출신·연령·성별 상관없이 다양한 활동이 한데 어우러지는 농촌, 즐거운 체험과 생활로 큰 만족을 얻는 농촌)에서 총 9개의 기술 목표를 설정하였음

(표 6-7) 향유성 분야 기술 목표

영역	항목	기술 목표
여가공간과 프로그램이 잘 구비되어 여유로움이 가득한 농촌	농촌 여가활동을 위한 다양한 시설의 구비	여가 시설 및 프로그램의 다양성 확보
	여가시설 및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성이 보장된 농촌	여가시설의 접근성 향상
	주민 여가수요에 적절 대응하는 생활 만족이 높은 농촌	농촌 여가수요 및 요구도 분석 시스템 도입
	도시민의 농촌 상시 방문과 체험을 고려한 도농교류 시설·프로그램 완비	도시민의 농촌 향유 수요에 대한 대응력 향상
출신·연령·성별 상관없이 다양한 활동이 한데 어우러지는 농촌	농촌 향유서비스에서 다양한 사회층이 참여하는 포용하는 농촌	향유서비스의 다양성 평가
즐거운 체험과 생활로 큰 만족을 얻는 농촌	첨단 문화기술을 통해 생활이 풍성한 농촌	농촌프로젝트에 문화기술(High CT) 도입

바. 정주성 분야

- 정주성 분야는 3개의 영역(생활서비스가 충족된 편리한 농촌, 안전하고 약자·소수자 친화적인 농촌, 첨단 서비스 기술도 원활히 수용하는 활기찬 농촌)에서 총 9개의 기술 목표를 설정하였음

(표 6-8) 정주성 분야 기술 목표

영역	항목	기술 목표
생활서비스가 충족된 편리한 농촌	사회복지·문화·교육·의료 등이 서비스가 완비되어 일상이 행복한 농촌	생활서비스 접근성 향상
	생활서비스가 정주계층별 규모성과 적합성을 갖춘 편리한 농촌	생활서비스 적정성 평가 및 계획
	서비스의 품질 유지를 통해 주거 품위를 가꾸어가는 농촌	서비스시설의 통합품질관리(TQM) 시스템 도입
안전하고 약자·소수자 친화적인 농촌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한 농촌	농촌 안전사고 예방 체계 확립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	농촌 레질리언스 체계 도입
	여성과 어린이를 항상 배려하는 농촌	농촌 공간개발의 여성친화성 평가
	고령 친화적 주거환경 조성을 통해 이웃을 섬기는 농촌	고령자 배려 공적공간의 포용성 확보
첨단 서비스 기술도 원활히 수용하는 활기찬 농촌	다문화가정에 먼저 다가가는 따뜻한 농촌	농촌 복지문화편의 서비스에서 다문화성 평가
	노령화 농촌에 적시적인 서비스 수요 파악을 위한 스마트 시스템 활용	노령자 친화적 첨단서비스 주거환경 구축
	첨단 ICT/AI /로봇산업 등 4차 산업혁명에 뒤쳐지지 않는 스마트한 농촌	생활서비스에 스마트 시스템 도입

2. 농촌다운 주거환경 기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술 요소 도출

가. 환경성

1) 자연생태계가 건강한 농촌

- 주변 지형과 어우러진 마을: 자연지형 훼손 최소화

<기술 목표 : 지형 연속성 확보>

- 급경사면에 대한 공사나 옹벽 토공 회피
- 지형 변곡점에 해당하는 마을 인접 산 가장자리 절개 회피
- 마을 배경 능선(공제선)이나 봉우리-마을로 이어지는 지형 연속성 단절 회피
- 마을 입구부가 넓은 평지인 경우 마을 평균 층수보다 높은 흙쌓기 토공(마을 입구부를 횡으로 가리는 토공) 회피

- 특이 지형과 지질적 특성이 보존된 농촌

<기술 목표 : 지형·지질 특이성 보전>

- 단층, 절리, 함몰지, 풍화암, 바위지대, 쇄석대, 용암흔적, 산지습지 등 특이 지형 보전
- 지질적 특이성이 있는 토양층을 주변 지형과 함께 연속적으로 보존

- 취락 내외부 녹지에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는 농촌

<기술 목표 : 생태계·종 다양성 유지>

- 산림, 하천, 호소, 농지, 습지, 인공 녹지 등 다양한 생물서식처 보전
- 법정 보호 동식물이 서식하는 생태계와 주변 녹지대의 보전
- 마을 녹지 조경에서 수종 다양성과 다층 식재구조의 유지
- 종 다양성은 높은 산림 외연부, 수공간 연결부 등 생태가장자리(edge) 훼손 회피

- 넓은 자연생태계를 중심으로 농지와 취락의 녹지가 연속적 망을 형성한 농촌

<기술 목표 : 생태계 연결성 및 연속성 향상>

- 산림, 강, 호소, 습지 등이 넓은 면적을 가진 생태거점을 중심으로 녹지망 형성
- 산림-마을, 수환경-마을의 식물종 구성과 수림 구조에서 연속성 유지
- 주변 하천-농수로-마을 싁개천-인접 산곡수 수환경의 생태적 연속성 유지

2) 자원순환과 에너지자립을 통해 지구환경을 지키는 농촌

- 자원의 사용량이 감축되고 동시에 폐자원이 재활용되는 농촌

<기술 목표 : 자원 순환시스템 구축>

- 농업, 생활 등 쓰레기 종류별로 수거되고 재활용되는 자원순환 시스템의 구비
- 주택, 마을, 행정구역 단위별로 쓰레기 수거장 설치와 쓰레기 발생량의 원천적 감소
- 음식물 쓰레기는 콤포스트 등을 통해 퇴비화하여 영농 재료로 재이용

- 부존 및 존치 자원을 활용한 공간재생 시스템 구축

<기술 목표 : 존치재료 재이용 시스템 구축>

- 건축 조경 토목설계 및 시공과정에 지역 부존 향토재료 투입 체계 마련
- 공사과정 발생 건설폐자재를 활용한 시설 설계 및 공사 기법 개발과 도입
- 기존 건축물, 구조물, 조경물의 리모델링 기술 개발과 현장 적용

- 에너지 생산과 소비를 지역단위에서 자립하는 농촌

<기술 목표 : 에너지 자립 기반 구축>

- 건축물 열손실 방지, 스마트 에너지 사용 등을 통해 비효율적 에너지 사용 최소화
- 마을회관, 문화시설 등 공공 건축물에 일정 비율 이상 신재생에너지 시스템 구축
- 유희지를 활용한 적정 규모의 자연경관 조화 신재생에너지 생산 단지 구축
- 지역-마을단위 신재생에너지 생산 및 공급 체계 구축

3) 오염이 없는 쾌적한 농촌

- 쓰레기가 널려 있지 않은 깨끗한 농촌

<기술 목표 : 자연부락 쓰레기 수거 시스템 구축>

- 마을 단위 쓰레기 분리수거장(clean house) 설치와 수거장의 미관 개선
- 영농 구역 단위 농업쓰레기 집하장(임시 보관시설) 설치와 시설의 미관 개선
- 마을 혹은 근린 단위 친환경 음식물 찌꺼기 수거 위생 퇴비장 설치

- 오폐수가 없는 푸르른 하천·저수지

<기술 목표: 오폐수처리시스템 완비>

- 마을 단위 생물학적 간이오수처리시스템 도입
- 생태하천 및 농수로 정비
 - 하안 식생매트 등 자연녹화공법 도입
 - 소, 여울, 어류서식 식생대, 식생 음영대, 섬, 우회수로 등 수생태 공간 복원
- 호소 변에 정화능력이 높은 수생식물대를 일정 규모 이상으로 조성

-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결된 마을 하수관거 확대 설치
- 축사장 단위 오폐수 및 악취 발생 예방 수처리 시설 설치

나. 공동체성

1) 사회적 안전망이 구비된 농촌

- 농촌마을의 자생적인 노인 돌봄 공동체 구축

<기술 목표 : 농촌노인의 안전생활 네트워크 구축>

- 농촌의 공동체문화를 이용한 농촌노인 안전체계 운영지침 개발
- 노인이 안전한 농촌마을 주거환경 평가시스템 개발

- 농촌주민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는 사회복지서비스 확대

<기술 목표 : 사회복지인프라 확충>

- 농촌의 사회복지시설 접근성과 균형배치를 위한 계획기법
- 사회복지시설 공공공간 가이드라인 수립

2) 상호 연대하고 참여하는 농촌

- 공동참여 증진을 위한 다양한 시설의 구비

<기술 목표 : 마을 내 공동시설 확보>

- 마을 공동시설 활용증대를 위한 위탁 운영 및 관리 프로세스 구축
- 특색 있는 농촌재생을 위한 공동시설 조성 계획 기법 개발 및 적용

- 귀농·귀촌인이 함께하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방안마련

<기술 목표 : 귀농·귀촌인 활성화 지원시스템 구축>

- 지역민과 귀농·귀촌인이 함께하는 마을공동사업 및 협업사업 비즈니스 모델 발굴
- 지역단위 체류형 귀농·귀촌지원센터 확대

3) 인구절벽·과소화에 대응하는 농촌

○ 농촌인구 구조변화에 대응한 농촌 경제 활성화 방안

<기술 목표 : 빈집, 폐교 등 유휴시설 활용한 지역문화공간 조성>

- 농촌 유휴시설 유형별 계획·설계 기법 개발
- 지역의 ‘작은 거점’으로서의 유휴시설 재생 모델 개발

○ 마을들을 연계한 거버넌스 체계 구축

<기술 목표 : 지역 단위의 주민활동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 체계 구축>

- 마을간 협력시스템 구축을 위한 지역단위 중간지원조직 육성 방안 마련
- 현장밀착형 지역단위 중간지원조직 운영·관리 프로세스 구축

다. 자립성

1) 생명과 사회를 살리는 농업

○ 환경 친화적 농업 기술을 활용한 청정농촌

<기술 목표 : 유기농업 기술 개발 및 지원 확대>

- 유기적으로 병충해를 방제하는 생물농약 개발
- 빛에너지 조명기술을 활용한 병충해 방제 기술 도입

<기술 목표 : 복지·의료와 연계한 농업 사업 확대>

- 취약계층 건강증진을 위한 돌봄농업(care farming) 도입
- ‘치유의 숲’ 삼림테라피 환경 조성

<기술 목표 : 저비용·고효율의 농촌 산업 확대>

- 환경농업을 지원하는 거점시설(예: 지역자원 리사이클 센터) 조성
- 농축산계 바이오매스활용, 쓰레기 소각열/배기 및 배수의 폐열 활용기술 도입
- 축산분뇨, 바이오가스에서 배출되는 물질 및 에너지를 활용한 기술 도입

- 풀(草)자원의 이용(GRASSA): 섬유질은 종이 재료 또는 단백질은 사료로 사용

2) 혁신·향토 산업이 공존하는 농촌

○ 새로운 농업비즈니스 모델 개발

<기술 목표 : 경제 활성화 시설 확대 >

- 유희농지 등 농지임차경영 확대
- 식품기업과 농업 간 연계 강화
- 지역에서 생산한 물건 등의 지역 내 소비를 촉진

<기술 목표 :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한 식물농장 활성화>

- 인공광(光)을 이용한 식물농장 대규모화 및 생산비용절감 운영체제 구축
- 식량과 원예생산, 가공, 유통, 관광 등의 다목적 농업이 가능한 빌딩농장(Building Farm) 조성

<기술 목표 : 로컬푸드 시스템 도입>

- 청정농산물의 브랜드화 및 판매시스템 확보
- 지역 향토 음식점과 연계한 채소공장 도입 및 파머스 마켓 지원

<기술 목표 : 혁신적 축사(Cow Garden) 개발>

- 축사 바닥재의 혁신: 배수성이 뛰어나고, 부드러운 소재의 바닥재를 이용하여 노는 바로 바닥으로 빠지도록 시설 개선
- 축분 청소 로봇 도입
- 축사의 녹색화 및 두당 면적의 확대: 전통적인 7~8㎡에서 15㎡로 규모 확대, 축사의 지붕, 들레 등에 나무를 심어 미관 개선

3) 도농이 교류·상생하는 농촌

○ 누구나 함께하는 열린 농촌

<기술 목표 : 도농교류를 위한 시설 및 프로그램 확대>

- 귀농·귀촌인을 위한 소규모 가족농 지원 확대

- 직거래장터(産直市) 축제·이벤트 활성화를 통한 교류 확대
- 도시의 각종 시민 단체 및 NPO 조직과 농촌의 지방자치단체, 주민 조직간의 네트워킹 강화

<기술 목표 : 농업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모델 개발>

- 유희공간을 시민 임대농원 확대
- 체인형 체험농업 도입 : 렌탈체험 농업으로 가족 체제형 농장 활성화
- 생산자와 함께하는 체험농원 확대 : 도농교류이벤트, 농원 내 레스토랑 이용, 농업기술 교육 등 농업콘텐츠 제공
- 유희지를 활용한 농촌정원 프로젝트 도입 : 축제 활성화를 통한 도시 수요 증진
-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지역농특산물의 판매 강화, 농촌관광 산업의 육성

4) 사회적 공유경제가 함께하는 농촌

- 농촌의 전문성을 살리는 공유경제 육성

<기술 목표 : 협동조합·사회적 기업 활성화>

- 생활협동조합 활성화
- 농업경영과 연계된 농업컨설팅과 농산물마케팅, 농업종사인력육성사업 육성
- 혁신네트워크 사업 도입 : 도시민과 농업인 연계하여 아이디어 현실화 노하우를 제공

<기술 목표 : 사회농업(Social Farming) 도입>

- 농업펀드 도입
- 취약계층 대상 농업 직업교육 및 농업생산 활동 참여 확대

<기술 목표 : 인재육성의 신모델 개발>

- 새로운 인재육성 및 경영지원 비즈니스 활성화: 신규 취농, 기업의 농업 진입, 농가의 법인화 등 새롭게 농업으로 진출하는 주체

들을 대상으로 한 컨설팅 사업 확대

- 전문성 있는 민간 기업을 활용한 인재 매칭(matching) 프로그램 및 농산물판매지원
- 협력농가 리더와 연수생을 연계 프로그램 확대
- 신규 취농 희망자를 대상으로 한 농업인턴제 도입
- 농지리스계약을 이용한 ‘챌린지 팜’을 개설: 실천적 농업을 배울 수 있는 기회 제공
- 도시민이 중심이 되는 농업학교 설립

라. 심미성

1) 난개발 없이 섬세한 관리의 손길(stewardship)이 닿은 농촌

- 난개발을 예방하고 치유하는 농촌 토지이용 체계 완비

<기술 목표 : 통합 토지이용계획 체계 구축>

- 농지 취락 산지 등 농촌공간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토지이용 체계 확립
- 농촌 공간계획과 개발행위를 연계하는 계획-개발 조정 시스템 도입
- 도시관리계획과 농촌 공간계획의 연동 시스템 구축

- 농촌지역 특성에 맞추어 정교하게 설계되는 농촌

<기술 목표 : 공간디자인 운용시스템 확립>

- 농촌 토지이용계획과 공간단위별 디자인 간의 연계 시스템 마련
- 지역 경관계획·녹지계획과 공간단위 디자인 간의 정합적 운영 시스템 구축
- 농촌개발사업 단위별 디자인 조정 및 총괄계획가·건축가 활용 체계 확립

2) 고유한 감성을 가꾸어가는 아름다운 농촌

- 경관미를 북돋우고 고향의 아늑함이 배어있는 색깔이 있는 마을

<기술 목표 : 농촌형 경관색채 기술 도입>

- 농촌개발사업의 기본·실시계획에서 경관색채 프로그램 및 기법의 도입
- 공간요소별 경관색채의 적용 : 주조색, 보조색 구성 등 지역맞춤 컬러 팔레트 구축
- 담장, 바닥포장, 지붕, 시설물 외관, 축사·창고 등 농업용 시설

- 농촌 고유의 파노라마 경관미가 살아있는 마을

<기술 목표 : 수직 시설물의 시각적 영향 최소화>

- 집중 조망지인 마을 전면부의 돌출 구조물 높이 조정 시스템 도입
- 시각적 취약도가 높은 지대의 건축물 높이·입면차폐도 조정 시스템 마련
- 돌출 건축물·구조물의 색채, 재질, 형태, 입면차폐에 관한 경관디자인 기법 도입

- 산·마을·하천·농지 등 경관 조망이 단절되지 않는 온전한 농촌

<기술 목표 : 배경-마을길-전면으로 구성된 경관의 구조성 보전>

- 농촌개발사업 추진 시 취락 경관구조를 훼손하는 계획 회피 시스템 마련
- 농업생산기반, 도로 등 설계 시에 마을 뼈대-출입-전면을 훼손하는 대규모 토공설계 회피·조정 시스템 도입

- 자연친화적 수공간 조영으로 수경관과 어우어진 농촌마을

<기술 목표 : 수경관의 자연성 확보>

- 산곡수-실개천-농수로-소하천-합수부 등 농촌 수경관의 계기적 (sequential) 체계 확보

- 저수지, 호소 주변 경관영향 저감 디자인 시행
- 농촌 주거·자연·문화경관과 융화되는 수공간 디자인 기법 도입

○ 개별 공간미가 통합 조영되어 정취가 가득한 농촌중심지

<기술 목표 : 중심 가로망의 경관 정체성과 통합성 확보>

- 중심지 생활가로 주변 공공건축물 외관 재질 색채 조명 간판 조경의 통합성 확보
- 중심가로의 보도 차도 가로수 간판 편의시설의 통합적 설계와 운영 체계 마련
- 중심가로에서의 빈집, 폐교 등 유휴시설 관리
- 가로 주변 지역 고유의 장소감각을 살린 오픈스페이스 조영 기법과 네트워크 구축
- 지구단위계획-가로설계-건축·조경설계-시설물 환경디자인 간의 통합 운영 시스템 완비

○ 주민이 설계와 시공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가꾸어가는 농촌

<기술 목표 : 주민 참여형 설계·시공기술 확대>

- 마을만들기 계획 과정에 다양한 주민참여 디자인 기법 적용
- 마을만들기 공사 과정에 엔지니어-주민 협력 시공 기술 도입
- 주민참여 설계·시공 기법 및 적용 대상의 다양성 확대

3) 지역 정체성을 간직한 개성 있는 농촌

○ 지역 고유의 정체성을 살린 개성미 넘치는 농촌

<기술 목표 : 지역 정체성 발굴 및 디자인 기법>

- 지역 자원의 발굴과 자원 정체성에 입각한 환경·제품 디자인 기법 도입
- 마을 고유 자원에 기초한 콘텐츠 개발 및 가치 증진 기술
- 마을의 자연-역사문화-공동체 환경이 상호 융합하는 조경설계 기

법 개발

- 지역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는 건축양식 분석과 건축물 유형별 농촌다움을 간직한 다양한 건축설계 사례 발굴과 개발

- 기억을 간직하고 장소성이 살아있는 농촌

<기술 목표 : 마을의 장소성(sense of place) 발굴과 유지>

- 장소성을 온전히 간직한 공간의 형태·배치·맥락화·조경 기법의 확립
- 마을 입구부의 장소성을 실현하는 보전 및 복원 기법 확립
- 전통적 마을 공간구조 및 시퀀스(공간연결의 연속성) 정비 체계 마련
- 마을의 역사문화적 스토리텔링에 기반한 공간디자인 기법 도입

- 마을 핵심 공간이 보존·복원되어 전통을 만들어가는 농촌

<기술 목표 : 마을 공간의 맥락과 패턴 보전>

- 안길-셋길, 동네마당-공동시설, 마을숲-마을목-진입로, 실개천-소하천 등 공간적 패턴을 보전하는 건축·조경설계 기법 확립
- 마을 핵심 공간(진입로·어귀·마당·안길·셋길·위요산지 등)의 보전·복원에 의한 맥락성 확보와 맥락에 기초한 점진적 공간정비 기법 확립
- 정비 대상 공간의 복원 절차 및 설계·시공 기법 확립과 이의 농촌 현장 적용

마. 향유성

- 1) 여가공간과 프로그램이 잘 구비되어 여유로움이 가득한 농촌

- 농촌 여가활동을 위한 다양한 시설의 구비

<기술 목표 : 여가 시설 및 프로그램의 다양성 확보>

- 중·소 생활권 체계별 여가시설 종류와 규모 배치·운영 시스템 마련

- 인구 특성과 이용행태 분석에 기초한 여가시설·프로그램 도입 계획 마련
- 이용자 활동 분석에 의한 농촌형 여가공간 계획·설계 기법 개발과 보급

○ 여가시설 및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성이 보장된 농촌

<기술 목표 : 여가시설의 접근성 향상>

- 여가시설 및 활동에 대한 물리적 접근성 향상 방안 마련
- 노약자, 다문화가정, 여성, 장애인 등 접근제한 그룹 배려 프로그램 마련
- 여가공간 배리어 프리 디자인(유니버설 디자인) 기법 도입

○ 주민 여가수요에 적절 대응하는 생활 만족이 높은 농촌

<기술 목표 : 농촌 여가수요 및 요구도 분석 시스템 도입>

- 온라인,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스마트 시스템을 통한 실시간 여가수요 분석 기법 도입
- 혼주화되는 농촌에서 주민 층별 여가 요구도 분석 기법 개발

○ 도시민의 농촌 상시 방문과 체험을 고려한 도농교류 시설·프로그램 완비

<기술 목표 : 도시민의 농촌 향유 수요에 대한 대응력 향상>

- 도시민 농촌 여가수요에 대한 적시·적지성 및 활동 적실성 분석 기법 도입
- 실시간 대응력 향상을 위한 스마트 시스템 이용 수요 및 요구도 분석
- 일시·장기 방문자의 층별 특성에 기초한 농촌 향유 프로그램 개발
- 농촌체험마을과 일반마을에 각기 맞춘 농촌 향유 공간·프로그램 개발

- 농촌에서 생산되는 향유서비스의 체계적 발굴과 관리 시스템 마련

<기술 목표 : 농촌발(發)⁶⁹⁾ 향유서비스 개발·관리 시스템 구축>

- 농촌발 향유서비스의 분류 시스템 개발과 서비스 목록화
- 농촌 향유 자원의 존재형태, 이용형태, 서비스 전달 경로 분석
- 대국민 농촌 향유서비스 전달 및 품질관리 시스템 구축
- 향유 서비스의 자본재화 방법과 부가가치 창출 체계 마련

2) 출신·연령·성별 상관없이 다양한 활동이 한데 어우러지는 농촌

- 농촌 향유서비스에서 다양한 사회층이 참여하는 포용하는 농촌

<기술 목표 : 향유서비스의 다양성 평가>

- 연령층, 성별, 출신국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향유 활동 개발
- 인구적 특성을 감안한 향유서비스 전달 체계 마련
- 농촌 향유프로그램의 개발: 프로그램 다양성 평가

3) 즐거운 체험과 생활로 큰 만족을 얻는 농촌

- 첨단 문화기술을 통해 생활이 풍성한 농촌

<기술 목표 : 농촌프로젝트에 문화기술(High CT) 도입>

- 주민 일상생활에 접목 가능한 문화기술 범주화 및 시설별 타당성 분석
- 주민 공동공간에 문화기술 도입 경로 및 장비·소프트웨어 설치 방법
- 농촌체험 방문객을 위한 문화기술 도입과 활용 방안 마련

69) 농촌발 향유서비스 : 농촌에 존재하는 유무형의 자원을 직접 방문하여 체험하거나 자원을 취득·채록 또는 가공하여 농촌 외부에 그 기능이나 가치를 전달함으로써 농촌 주민은 물론 전 국민이 향유(생활의 만족을 도모)할 수 있는 서비스. 예) 농촌 생태계 서비스, 농촌다움 발굴에 의한 지적자산 서비스, 농촌여가·관광

바. 정주성

1) 생활서비스가 충족된 편리한 농촌

- 사회복지·문화·교육·의료 등이 서비스가 완비되어 일상이 행복한 농촌

<기술 목표 : 생활서비스 접근성 향상>

- 생활서비스 접근 동선(교통) 확보
- 온라인(모바일 포함)을 통한 가상서비스 접근 기술 개발
- 노약자 및 소수자를 위한 서비스 접근 체계 확보

- 생활서비스가 정주계층별 규모성과 적합성을 갖춘 편리한 농촌

<기술 목표 : 생활서비스 적정성 평가 및 계획>

- 중심지 구비 생활서비스 적정성 평가 및 계획 기법 개발
- 마을 단위 구비 생활서비스 적정성 평가 및 계획 기법 개발
- 주택단위 공급 서비스 적정성 평가 및 계획 기법 개발
- 생애주기·성·사회그룹별 생활서비스 적합도 평가와 서비스 조정 체계 마련

- 서비스의 품질 유지를 통해 주거 품위를 가꾸어가는 농촌

<기술 목표 : 서비스시설의 통합품질관리(TQM) 시스템 도입>

- 서비스 시설 종류별 일정 품질관리 기준 마련
- 시설의 품질유지를 위한 정주단위별 관리시스템 확립
- 생활서비스 항목별 품질유지를 위한 모니터링 기술 개발

2) 안전하고 약자·소수자 친화적인 농촌

-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한 농촌

<기술 목표 : 농촌 안전사고 예방 체계 확립>

- 보행자 안전과 편의를 구비한 도로구조 설계 기준 마련

- 노인 및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편의 시설 설치 기준 마련
 - 농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행동 가이드라인 적용
 -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
 - <기술 목표 : 농촌 레질리언스 체계 도입>**
 - 홍수 범람 예방 하천 설계 기술 마련
 - 자연재해로부터 복원력(resilience) 향상 기술 전면 도입
 - 여성과 어린이를 향시 배려하는 농촌
 - <기술 목표 : 농촌 공간개발의 여성친화성 평가>**
 - 여성·아동친화 보행환경 조성 기준 및 디자인 가이드라인 마련
 - 여성·아동친화 공공시설물 조성 기준 및 디자인 가이드라인 마련
 - 여성·아동친화 마을주거공간 조성 기준 및 디자인 가이드라인 마련
 - 고령 친화적 주거환경 조성을 통해 이웃을 섬기는 농촌
 - <기술 목표 : 고령자 배려 공적공간의 포용성 확보>**
 - 고령자 행동 특성에 기초한 보행환경 및 가로 편의시설 디자인
 - 고령자 친화적 유니버설 디자인 기법의 농촌 현장 적용
 - 고령자를 위한 주민공동이용시설의 공간형태 및 배치시스템 마련
 - 다문화가정에 먼저 다가가는 따뜻한 농촌
 - <기술 목표 : 농촌 복지문화편의 서비스에서 다문화성 평가>**
 - 농촌 공공시설 및 주민공동이용시설에 다문화가정 접근성 제고
 - 언어, 습관, 접근 등 다문화를 고려한 공공시설 배분 및 운영프로그램 마련
- 3) 첨단 서비스 기술도 원활히 수용하는 활기찬 농촌
- 노령화 농촌에 적시적인 서비스 수요 파악을 위한 스마트 시스템

활용

<기술 목표 : 노령자 친화적 첨단서비스 사용 환경 구축>

- 노령자 친화적 스마트 시스템 인터페이스 환경 구축
 - 과소화 노령 인구에 적합한 원격 생활서비스 시스템 모델 구축
 - 노령화 대비 마을·중심지 단위별 첨단 통신환경 구축
- 첨단 ICT/AI /로봇산업 등 4차 산업혁명에 뒤처지지 않는 스마트한 농촌

<기술 목표 : 생활서비스에 스마트 시스템 도입>

- 생활서비스 정책의 과학적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빅데이터 구축 및 활용
- 농촌 생활서비스 수요의 적정성 파악을 위한 빅데이터 시스템 구축과 활용
- 농촌 서비스 단위별 스마트 시스템 도입 모델 및 장단기 마스터 플랜 수립
- 운영 중인 생활편의 시설 및 프로그램에 스마트 시스템 도입 타당성 분석 및 장단기 계획 수립

3. 평가 항목 구성을 위한 개념별 기술 목표 선정

- 농촌다운 주거환경 6가지 개념에 해당하는 평가 항목은 앞서 기술 목표 및 기술 요소에서 연구진이 1차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기술 목표를 평가 항목으로 아래 표와 같이 설정하였음
- 이는 WHO나 일본, 서울시 등에서 제시하고 있는 주거환경 조건과 농촌만의 특수한 여건과 이슈들이 고루 반영되도록 한 것임

(표 6-9) 평가 항목 구성을 위한 개념별 기술 목표 선정

개념	기술 목표
환경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지형 훼손 최소화를 위한 지형 연속성 확보 • 지역단위의 환경적 지속성 증진을 위한 에너지 자립 기반 구축 • 주거지 주변의 쓰레기 수거 및 오폐수 처리시스템 완비
공동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안전망 확보를 위한 사회복지인프라 확충 • 공동참여 증진을 위한 공동시설 확보 • 빈집, 폐교 등 인구과소화에 따른 유희시설 활용
자립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적 지속성 증진을 위한 경제활성화 시설 확대 • 도농교류를 위한 시설 및 프로그램 확대 • 사회적 지속성 증진을 위한 협동조합 · 사회적 기업 활성화
심미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입지와 규모 적정성 등을 고려한 통합 토지이용계획 체계 구축 • 주택, 시설의 노후정도 및 가로 녹지의 연속성 등 중심 가로망의 경관 정체성과 통합성 확보 • 어메니티 자원 등 마을의 장소성 발굴과 유지
향유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원, 휴게시설 등 여가시설 다양성 확보 • 다문화지원시설 등 향유서비스의 다양성 증진 • 문화기술(High CT) 도입한 문화·판매시설 구축
정주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중교통의 편리 및 주요도로·의료교육 등 생활서비스의 접근성 향상 • 자연재해 및 일상생활 위협으로부터의 안전사고 예방 체계 확립 • 노령자 친화적 첨단서비스 주거환경 구축

4. 평가 항목 구성을 위한 물리적 요소 도출

가. 개요

- 문헌분석과 키워드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물리적 요소(시설)를 도출함
 - 농촌주거환경 관련 선행연구를 종합 검토하여 분석에 반영할 주거환경요소 데이터를 수집함
 - 빈도분석 및 키워드네트워크 분석(연도별 키워드분석, 동시출현빈도 분석, 중심성 분석 등)을 다각도로 실시함

- 검색포털: KISS, DBPIA, 학술교육원, 농어촌연구원 등
- 발행연도: 2005-2018
- 검색어: 농촌경관, 농촌마을, 농촌주거, 농촌환경, 농촌어메니티, 농촌공간

나. 농촌 주거환경 관련 이슈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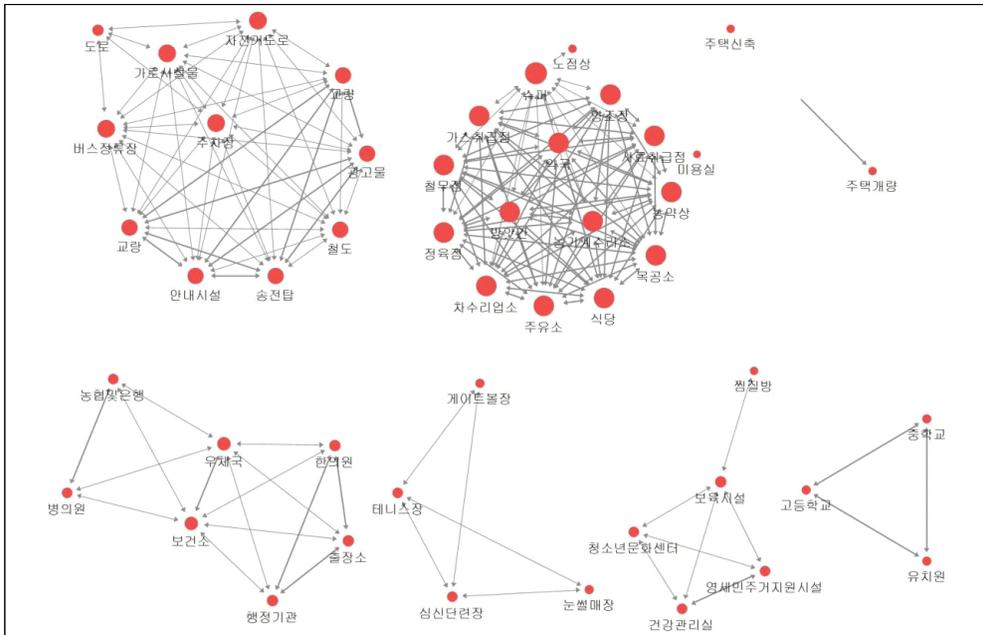
- 약 10년간의 농촌 관련 연구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높은 빈도와 중심성을 나타낸 키워드는 ‘주거환경’, ‘쇠퇴특성’, ‘농촌경관’, ‘농촌마을’ 등이며 ‘귀촌’, ‘고령사회’, ‘은퇴’, ‘독거노인’, ‘빈집’ 등이 주목받는 이슈로 도출됨
- 2017년 이후 최근에는 물리적 환경 요소보다 공동체 활성화, 주민의식, 커뮤니티리더, 주민참여실태, 주민역량, 귀농귀촌의 사회적 자본 형성 등의 비물리적 환경에 관한 주제가 다수 연구되고 있음

1) 농촌중심지

- 2005년부터 2010년 농촌중심지는 가로교통시설, 상업시설 등 기초 기반시설의 중심성(Centrality)이 높음
- 2011년부터 최근 분석 결과에서는 게이트볼, 체육관, 테니스 장 등

건강시설과 복지센터, 도서관, 문화교육센터, 커뮤니티센터 등 문화복지시설의 중심성이 높아졌으며, 교육시설 역시 농어업인교육장, 평생교육시설 등 다양한 계층을 수용하는 시설로 확장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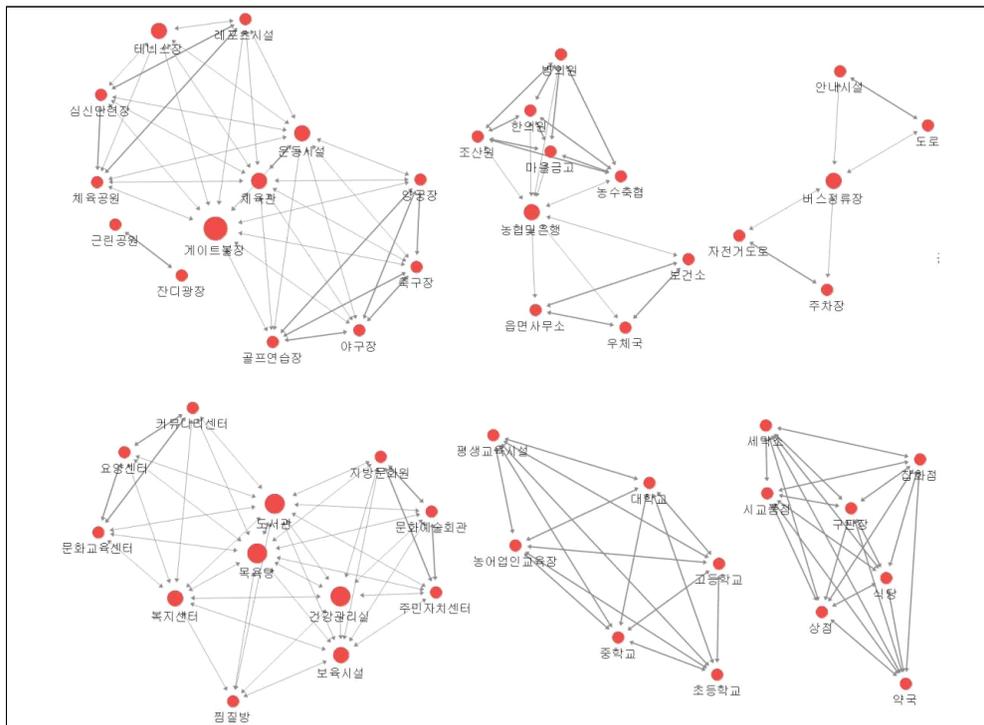
- 농촌의 새로운 수요와 농촌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녹지공간과 건강·문화시설이 증가하는 추세로 확인됨



<그림 6-6> 2005-2010 농촌중심지 주거환경 요소 변화

(표 6-10) 2005-2010 농촌중심지 주거환경 요소 빈도 및 중심성 분석

주요키워드	빈도	Degree Centrality*	주요키워드	빈도	Degree Centrality*
잡화점	14	-	건강관리실	2	0.06383
도로	10	0.085106	유희토지	2	-
병의원	5	0.06383	자전거도로	2	0.212766
읍면사무소	4	-	심신단련장	2	-
커뮤니티센터	4	-	교량	2	0.191489
주차장	3	0.212766	기차역	2	-
청소년문화센터	3	0.06383	안내시설	1	0.191489
가로시설물	2	0.191489	약국	1	0.276596
버스정류장	2	0.212766	농기계수리소	1	0.2765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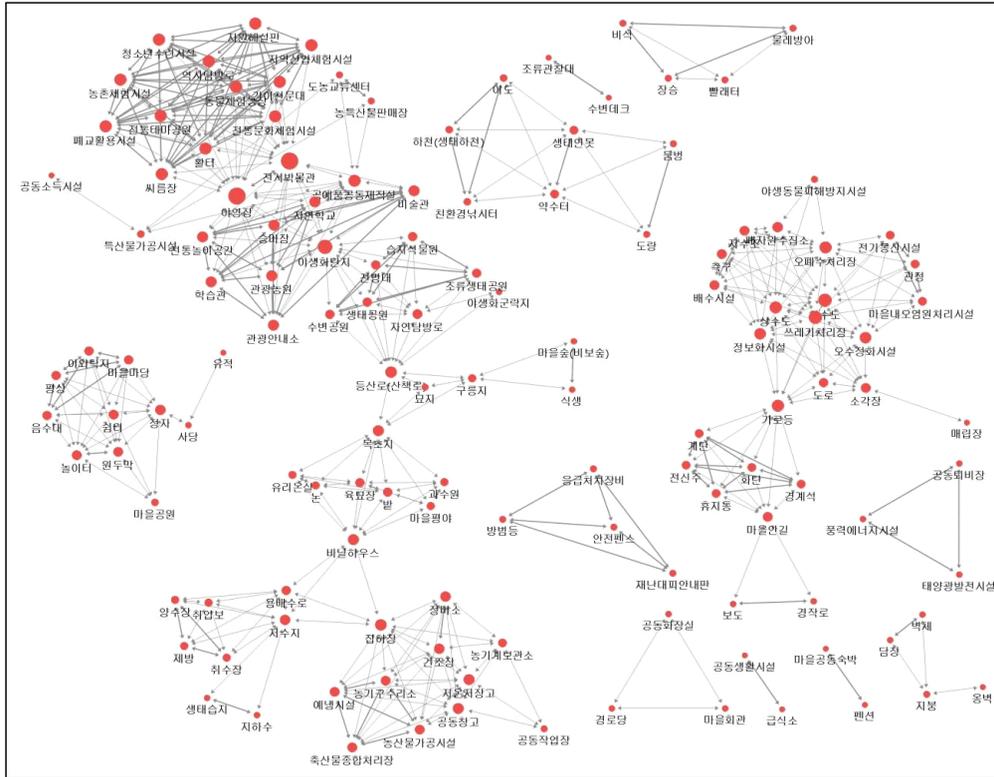
<그림 6-7> 2011-2018 농촌중심지 주거환경 요소 변화

(표 6-11) 2010-2018 농촌중심지 주거환경 요소 빈도 및 중심성 분석6

주요키워드	빈도	Degree Centrality*	주요키워드	빈도	Degree Centrality*
복지센터	9	0.142857	농협맞은행	2	0.142857
체육공원	7	0.107143	보육시설	2	0.142857
건강관리실	6	0.142857	체육관	2	0.178571
보건소	6	0.053571	운동시설	2	0.178571
게이트볼장	4	0.178571	버스정류장	2	0.071429
도서관	3	0.196429	테니스장	2	0.107143
건강관리실	3	0.142857	골프연습장	1	0.107143
목욕탕	3	0.196429	문화예술회관	1	0.107143
안내시설	3	0.035714	농어업인교육장	1	0.089286
주차장	3	0.035714	평생교육시설	1	0.089286

2) 농촌마을

- 2005년부터 2010년 농촌마을은 산림, 수, 생태체험시설 등 자연환경과 경작지, 저장가공시설 등 생산환경의 요소간 연결성(link)과 중심성(Centrality)이 높게 나타남
- 2011년부터 최근 분석 결과에서는 도농교류시설, 체험관광시설, 휴양시설 등의 경제활성화 요소와 쓰레기오폐수 처리장, 상하수도, 정보화 시설, 화단, 가로등, 마을길 등 생활환경에 관한 요소의 비중이 높아짐
- 그밖에 체험관광시설과 연결성이 높은 폐교활용시설과 안전재해시설, 태양발전, 풍력에너지 등 자원순환시설 등은 농촌 과소화와 저탄소에너지, 안전 등의 새로운 이슈에 맞춰 도입된 시설로 확인됨



〈그림 6-9〉 2011-2018 농촌마을 주거환경 요소 변화
 (표 6-13) 2011-2018 농촌마을 주거환경 요소 빈도 및 중심성 분석

주요키워드	빈도	Degree Centrality*	주요키워드	빈도	Degree Centrality*
관광안내소	14	0.070922	논	6	0.035461
농촌체험시설	11	0.092199	관정시설	6	0.042553
농기계보관소	9	0.042553	생태습지	4	0.014184
전기통신시설	9	0.042553	놀이터	4	0.056738
벤치	8	-	경로당	3	0.014184
버스정류장	8	-	공예품 공동제작실	2	0.092199
습지공원	8	0.049645	전시박물관	2	0.156028
조형물	7	-	마을공원	2	0.028369
상수도	7	0.092199	특산물 가공시설	2	0.028369

다. 공간위계별 농촌 주거환경 물리적 요소 분류 및 빈도·중심성 분석

- 농촌중심지의 관계망을 구조적으로 살펴보면 전체 네트워크 안에서 크게 5개의 그룹(clusters)이 형성됨
 - 그룹 1은 버스정류장, 주차장, 도로 등 가로·교통시설, 그룹 2은 목욕탕, 다목적회관, 건강관리소 등의 문화복지시설, 그룹 3은 병의원, 출장소, 행정기관 등의 행정·금융·의료시설, 그룹 4은 농기계 수리점, 식당, 구판장 등의 상업시설, 그룹 5는 게이트볼장, 체육관, 레포츠시설 등 체육시설이 각 요소 간 중심성(Centrality)과 연결성(link)이 높게 나타남.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주거환경 요소를 종합한 후, 중복성 및 유사성을 고려하여 재분류함
 - 농촌주거환경의 물리적 요소를 중심지 단위와 마을 단위로 구분함
 - 농촌중심지는 소분류 11개, 시설 110개
 - 농촌마을은 대분류 5개, 소분류 23개, 시설 141개

1) 농촌중심지

① 농촌중심지 주거환경 물리적 요소 분류

(표 6-14) 농촌중심지 주거환경 물리적 요소

소분류	물리적 요소
주택시설	단독주택, 공동주택, 도시형주택
문화복지시설	다목적회관, 목욕탕, 보육시설, 찜질방, 복지센터, 도서관, 주민자치센터, 커뮤니티센터, 문화교육센터, 요양센터, 문화예술회관, 지방문화원, 영세민주거지원시설, 건강관리실
체육시설	운동장, 게이트볼장, 체육공원, 눈썰매장, 테니스장, 축구장, 야구장, 심신단련장, 양궁장, 체육관, 레포츠시설, 골프연습장
안전재해시설	소방서, 경찰서
놀이휴게시설	근린공원, 파고라, 야외광장, 잔디광장
가로교통시설	도로, 버스정류장, 기차역, 철도, 교량, 자전거도로, 주차장, 송전탑, 안내시설, 광고물

유희 및 대규모 개발시설	공장, 군부대시설, 주택개발, 주택신축, 폐광
상업시설	슈퍼, 상점, 구판장, 약국, 전통장터, 시장, 식당, 잡화점, 양조장, 주유소, 복덕방, 비디오가게, 사료취급점, 농약상, 학원, 당구장, 탁구장, 목공소, 철물점, 차수리업소, 농기계수리소, 닭집, 문방구, 오락실, 방앗간, 정육점, 주점, 미용실, 이발소, 다방, PC방, 철물점, 가스취급점, 세탁소, 시교품점
교육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농어업인교육장, 평생교육시설
행정·금융·의료시설	보건소, 읍면사무소, 시군청, 한의원, 우체국, 농협맞은행, 조산원, 행정기관, 병의원, 마을금고, 축협출장소, 농협지출장소, 농조출장소, 산림조합출장소, 농수축협
종교시설	교회, 절, 무속인집

- 농촌중심지의 관계망을 구조적으로 살펴보면 전체 네트워크 안에서 크게 5개의 그룹(clusters)이 형성됨
 - 버스정류장, 주차장, 도로 등 가로·교통시설(그룹 1), 목욕탕, 다목적회관, 건강관리소 등 문화복지시설(그룹 2), 병원, 출장소, 행정기관 등 행정·금융·의료시설(그룹 3), 농기계 수리점, 식당, 구관장 등 상업시설(그룹 4), 게이트볼장, 체육관, 레포츠시설 등 체육시설(그룹 5)이 각 그룹 내에서 요소 간 연결성(link)이 높음
 - 요소별 중심성(centrality) 분석결과는 식당, 잡화점(0.15534), 건강관리실, 보건소(0.135922), 게이트볼장, 병원(0.126214), 보육시설, 목욕탕, 슈퍼, 복지센터, 한의원(0.116505) 등 순으로 나타남
 - 빈도 분석결과 주차장, 도로(14), 건강관리실(11), 버스정류장(10), 보건소(9), 안내시설, 보육시설(8) 등 순으로 나타남

(표 6-15) 농촌중심지 주거환경 물리적 요소 빈도 및 중심성 분석

주요키워드	빈도	Degree Centrality*	주요키워드	빈도	Degree Centrality*
주차장	14	0.087379	고등학교	3	0.058252
도로	14	0.097087	교량	3	0.038835
건강관리실	11	0.135922	다목적회관	3	0.058252
버스정류장	10	0.067961	전통장터	3	0.067961
보건소	9	0.135922	소방서	3	0.009709
안내시설	8	0.058252	복지센터	3	0.116505
보육시설	8	0.116505	도서관	3	0.106796
상점	7	0.067961	운동시설	3	0.106796
자전거도로	7	0.067961	한의원	2	0.116505
게이트볼장	7	0.126214	잡화점	2	0.15534
목욕탕	6	0.116505	철도	2	0.038835
구관장	5	0.07767	군부대시설	2	0.009709
테니스장	5	0.087379	광고물	2	0.058252

슈퍼	4	0.116505	읍면사무소	2	0.048544
공장	4	0	약국	2	0.067961
심신단련장	4	0.07767	공공편의시설	2	0
야외광장	4	0.019417	단독주택	2	0.009709
병의원	3	0.126214	짬질방	2	0.048544
우체국	3	0.106796	눈썰매장	2	0.067961
식당	3	0.15534	커뮤니티센터	2	0.087379
근린공원	3	0.019417	청소년문화센터	2	0.038835
가로시설물	3	0.058252	영세민주거지원 시설	2	0.038835
농협맞은행	3	0.087379	체육공원	2	0.106796
초등학교	3	0.058252	체육관	2	0.106796
중학교	3	0.058252	대학교	2	0.058252
유치원	3	0.058252	레포츠시설	2	0.097087
행정기관	1	0.07767	시군청	1	0.038835
산림조합출장소	1	0.07767	주민자치센터	1	0.067961
축협출장소	1	0.07767	문화예술회관	1	0.067961
농협지출장소	1	0.07767	지방문화원	1	0.067961
농조출장소	1	0.07767	시장	1	0.009709
양조장	1	0.106796	축구장	1	0.067961
주유소	1	0.106796	야구장	1	0.067961
사료취급점	1	0.106796	양궁장	1	0.067961
농약상	1	0.106796	골프연습장	1	0.067961
목공소	1	0.106796	농어업인교육장	1	0.058252
철물점	1	0.106796	평생교육시설	1	0.058252
차수리업소	1	0.106796	폐광	1	0.009709
농기계수리소	1	0.106796	문화교육센터	1	0.058252
가스취급점	1	0.106796	요양센터	1	0.058252
교회	1	0	도시형주택	1	0
송전탑	1	0.019417	체력단련장	1	0.019417

교량	1	0.009709	파고라	1	0
공동생활시설	1	0	방앗간	1	0.009709
노점상	1	0.009709	공동주택	1	0.009709
의료시설	1	0	잔디광장	1	0.019417
운동장	1	0	세탁소	1	0.058252
미용실	1	0.009709	조산원	1	0.058252
유희토지	1	0.019417	마을금고	1	0.058252
주택신축	1	0.019417	농수축협	1	0.058252
주택개량	1	0.019417	경찰서	1	0.009709
기차역	1	0.019417			

주 : Degree Centrality(연결중심성)가 높을수록 다른 시설과의 연계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함.

2) 농촌마을

① 농촌마을 주거환경 물리적 요소 분류

(표 6-16) 농촌마을 주거환경 물리적 요소

▶ 생산환경

소분류	물리적 요소
경작지	논, 밭, 과수원, 목초지, 육묘장, 비닐하우스, 유리하우스, 토종꿀농장
생산기반시설	용배수로, 취입보, 차양막, 저수지, 제방, 관정시설, 양수장, 취수장, 토지개량시설, 축사폐기물관리시설
축사시설	양계장, 양돈장, 양우장
저장가공시설	저온저장고, 건조장, 농산물가공시설, 집하장, 농기계보관소, 공동창고, 농기구수리소, 정미소, 곡물제조창고, 예냉시설, 축산물 종합처리장
유통시설	산지유통센터, 출하시설, 생산단지
자원순환시설	공동퇴비장, 발효시설, 축사분뇨자원화시설, 태양광발전시설, 풍력에너지시설

▶ 자연환경

소분류	물리적 요소
산림	산, 구릉지, 마을숲(비보숲), 목초지, 야생화군락지, 나지, 묘지, 등산로(산책로), 절벽, 바위, 봉
수	폭포, 계곡, 생태습지, 하천(생태하천), 생태연못, 호수, 어도, 둠벙, 도랑, 약수터, 온천, 친환경낙시터, 철새도래지
생태체험시설	전망대, 자연탐방로, 조류관찰대, 생태통로, 수변데크,

▶ 생활환경

소분류	물리적 요소
주택시설	전통주택, 단독주택, 전통농가, 경사지주택, 전원주거단지, 간이형주택, 지붕, 흙담, 돌담, 생울타리, 담장, 출입구, 정원, 벽체, 창고
문화복지시설	마을회관, 공동화장실, 경로당, 공동생활시설, 급식소,
안전재해시설	방범등, 재난대피안내판, CCTV, 보안등, 응급처치장비, 안전펜스
놀이휴게시설	마을마당, 놀이터, 쉼터, 원두막, 벤치, 마을공원, 정자, 야외탁자, 평상, 음수대
가로교통시설	마을안길, 마을진입로, 보도, 조형물, 화단, 가로등, 경작로, 농로, 전신주, 계단, 휴지통, 경계석, 법면, 옹벽, 방향유도판
생활기반시설	쓰레기처리장, 상수도, 하수도, 오폐수처리장, 오수정화시설, 소각장, 폐자원수집소, 매립장, 배수시설, 관정, 야생동물피해방지시설, 측구, 저수조, 정보화시설, 전기통신시설, 마을홈페이지
유희 및 대규모 개발시설	폐가, 폐교, 빈집, 노후건물, 유희토지

▶ 역사문화환경

소분류	물리적 요소
전통건조물	고택, 전통건축물, 사적, 서원, 유적, 문화재보호시설, 사당, 정자, 사찰, 향교, 암자터, 기념공원, 성곽, 부속사
신앙공간	사신당, 민간신앙, 성황당, 당산목
상징시설물	장승, 물레방아, 돌무덤, 보호수, 솟대, 유래비, 우물, 빨래터, 상징탑, 비석, 정자목, 경관수목, 석탑

▶ 경제활성화환경

소분류	물리적 요소
체험관광시설	야생화단지, 간이친문대, 야영장, 관광안내소, 농촌체험시설, 폐교활용, 전시박물관, 승마장, 공예품공동제작실, 캠핑장, 씨름장, 자원해설관, 관광농원, 동물체험농장, 활터, 지역산업체험시설, 전통문화체험시설, 눈썰매장, 낚시터, 테마로
휴양시설	잔디광장, 삼림욕장, 야외소공연장
지역특화산업시설	직거래장터, 특산물판매장, 공동소득시설, 특산물가공시설, 홍보및전시시설, 도농교류센터
숙박시설	게스트하우스, 청소년수련시설, 펜션, 민박농가

② 농촌마을 주거환경 물리적 요소 빈도 및 중심성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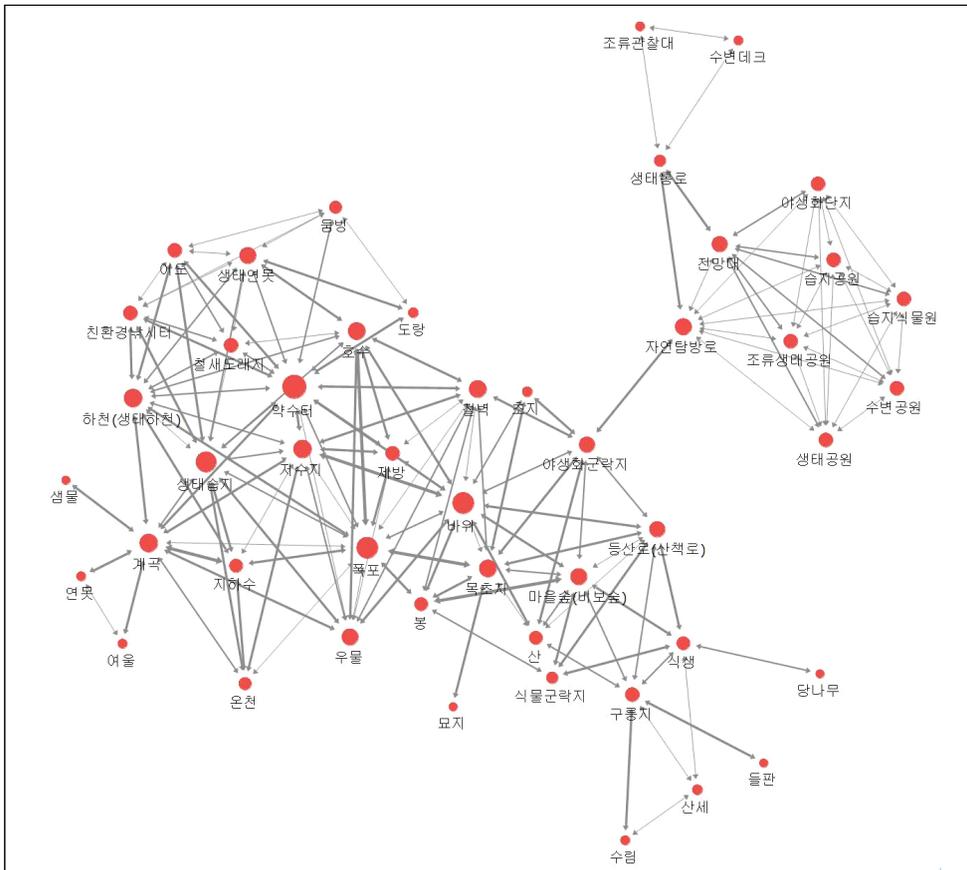
○ 생산환경

- 생산환경은 크게 3개의 그룹(clusters)으로 형성됨. 경작지와 생산기반시설은 요소 간 연결성(link)이 강해 하나의 그룹을 형성하고, 저장가공시설은 중심성(centrality)이 높게 나타남. 자원순환시설은 중심성과 연결성이 다소 낮으나 최근 친환경 농업기반 환경이슈와 더불어 주목받는 요소임
- 요소별 중심성 분석결과는 농산물가공시설, 저온저장고(0.264151), 건조장, 정미소(0.245283), 비닐하우스(0.207547) 등 순으로 나타남
- 빈도 분석결과 용배수로(20), 논(18), 밭(17), 공동창고(15), 과수원(14), 집하장(13), 저수지(11), 비닐하우스, 목초지(10) 등 순으로 나타남

관정시설	7	0.113208	출하시설	1	0.150943
정미소	6	0.245283	곡물제조창고	1	0.150943
마을평야	5	0.056604	미곡 종합처리장	1	0.150943
저온저장고	5	0.264151	토지개량시설	1	0.037736
건조장	5	0.245283	축산폐기물 관리시설	1	0
농산물 가공시설	5	0.264151	블루베리 육묘장	1	0
농기계보관소	5	0.188679	선별장	1	0.018868
육묘장	5	0.09434	축사분뇨 자원화시설	1	0
차양막	4	0.169811	예냉시설	1	0.113208
제방	4	0.113208	축산물 종합처리장	1	0.113208
취입보	4	0.113208	산지유통센터	1	0
농기구수리소	3	0.037736	양수장	1	0.075472
유리온실	2	0.113208	취수장	1	0.075472
농수로	2	0.09434	퇴비장	1	0.056604
공동작업장	2	0.075472	태양광 발전시설	1	0.056604
공동퇴비장	2	0.018868	풍력 에너지시설	1	0.056604

○ 자연환경

- 자연환경은 크게 2개의 그룹(clusters)으로 형성됨. 산, 구릉지, 마을 숲 등 산림경관과 계곡, 생태습지, 생태하천 등이 요소 간 연결성(link)이 강해 하나의 그룹을 형성하고, 자연탐방로를 중심으로 다양한 생태체험시설이 조성됨
- 요소별 중심성(centrality) 분석결과는 약수터(0.333333), 폭포, 바위(0.291667), 습지공원, 생태공원(0.291666), 생태습지(0.270833), 하천, 저수지, 계곡(0.229167) 등 순으로 나타남
- 빈도 분석결과 하천(22), 마을숲(20), 등산로(17), 생태습지(16), 산(13), 구릉지(9) 등 순으로 나타남



<그림 6-12> 자연환경 관련 마을 주거환경 물리적 요소 중심성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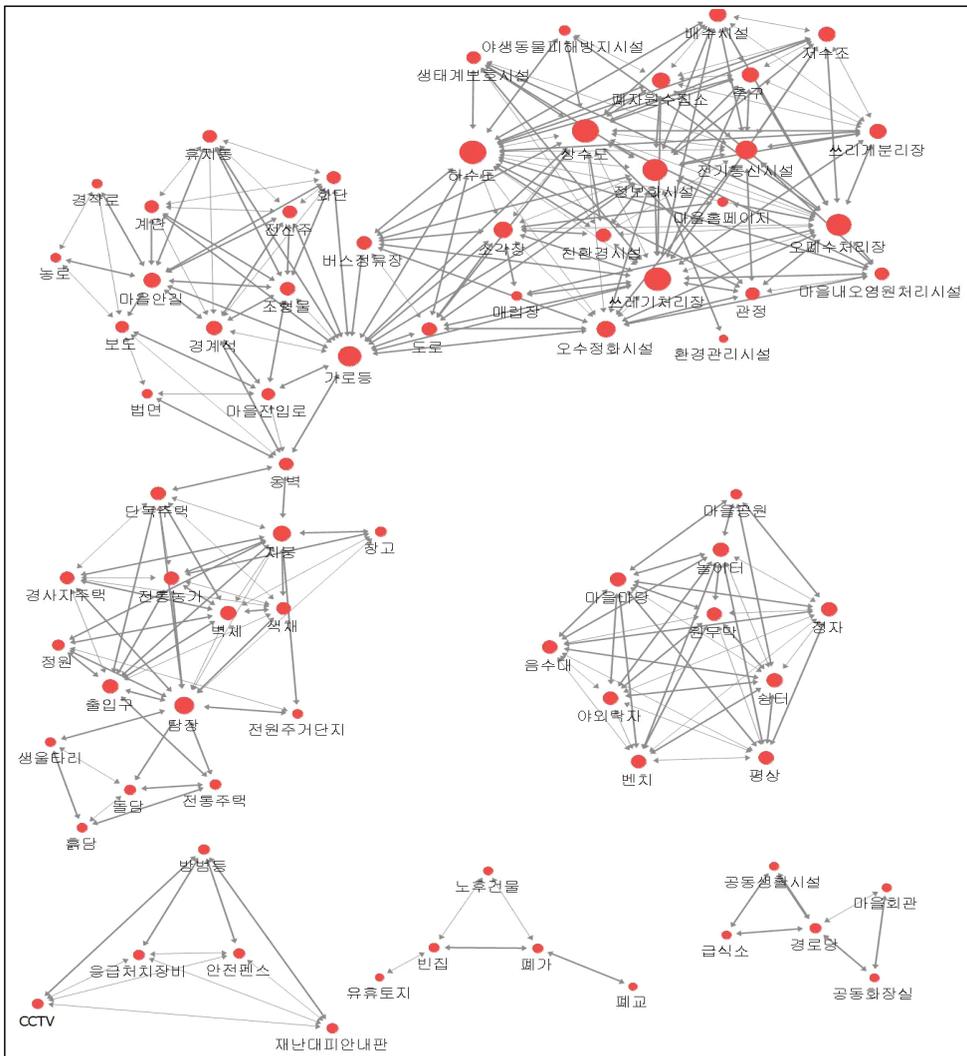
(표 6-18) 자연환경 관련 마을 주거환경 물리적 요소 빈도 및 중심성 분석 결과

주요키워드	빈도	Degree Centrality*	주요키워드	빈도	Degree Centrality*
하천(생태하천)	22	0.229167	자연탐방로	3	0.1875
마을숲 (비보숲)	20	0.1875	둠벙	3	0.104167
등산로 (산책로)	17	0.166667	식물군락지	3	0.083333
생태습지	16	0.270833	산세	3	0.0625
산	13	0.125	조류관찰대	3	0.041667
구릉지	9	0.145833	수변데크	3	0.041667
저수지	7	0.229167	우물	2	0.1875
계곡	7	0.229167	붕	2	0.125
생태연못	7	0.1875	온천	2	0.104167
약수터	6	0.333333	습지공원 (식물원)	2	0.291666
목초지	6	0.208333	생태공원	2	0.291666
호수	6	0.208333	수변공원	1	0.145833
야생화군락지	6	0.166667	제방	1	0.145833
폭포	5	0.291667	야생화단지	1	0.145833
철새도래지	5	0.145833	초지	1	0.0625
바위	4	0.291667	도랑	1	0.0625
전망대	4	0.166667	수림	1	0.041667
어도	4	0.145833	여울	1	0.041667
친환경낙시터	4	0.145833	연못	1	0.041667
식생	4	0.125	당나무	1	0.020833
지하수	4	0.125	들관	1	0.020833
생태통로	4	0.083333	샘물	1	0.020833
절벽	3	0.208333	묘지	1	0.020833

주 : Degree Centrality(연결중심성)가 높을수록 다른 시설과의 연계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함.

○ 생활환경

- 생활환경은 크게 7개의 그룹(clusters)으로 형성됨. 상하수도, 오폐수처리장, 정보화시설 등 생활기반시설과 도로, 버스정류장, 마을길 등 가로·교통시설 간의 연결성(link) 강하고, 가로교통시설의 진입로, 가로등 옹벽 등의 요소와 지붕, 벽체 등 주택시설 요소 간의 연결성이 높게 나타남



<그림 6-13> 생활환경 관련 마을 주거환경 물리적 요소 중심성 분석

- 그밖에 원두막, 쉼터, 마을공원 등 놀이휴게시설과 마을회관, 경로당, 급식소 등 문화복지시설, 안전재해시설, 빈집, 폐가, 폐교 등 유휴 및 대규모 개발시설 등이 각각 중심성(centrality) 높은 그룹을 형성함
- 요소별 중심성 분석결과는 하수도, 상수도, 쓰레기처리장(0.263158), 정보화시설, 오폐수처리장(0.25), 가로등(0.223684), 전기통신시설(0.197368), 담장(0.171053) 등 순으로 나타남
- 빈도 분석결과 마을회관(18), 정보화시설(14), 경로당(13), 하수도(12), 상수도, 담장(12), 놀이터(11), 오폐수처리장(10)등 순으로 나타남

(표 6-19) 생활환경 관련 마을 주거환경 물리적 요소 빈도 및 중심성 분석 결과

주요키워드	빈도	Degree Centrality*	주요키워드	빈도	Degree Centrality*
마을회관	18	0.026316	매립장	2	0.039474
정보화시설	14	0.25	폐교	2	0.013158
경로당	13	0.052632	전통농가	2	0.105263
하수도	13	0.263158	생울타리	2	0.039474
상수도	12	0.263158	환경관리시설	2	0.013158
담장	12	0.171053	단독주택	2	0.105263
놀이터	11	0.118421	경계석	2	0.118421
오폐수처리장	10	0.25	벤치	2	0.105263
쓰레기처리장	9	0.263158	야외탁자	2	0.105263
쉼터	9	0.118421	생태계보호시설	2	0.092105
전통주택	8	0.052632	폐자원수집소	2	0.144737
소각장	8	0.157895	마을홈페이지	1	0.039474
마을마당	8	0.118421	노후건물	1	0.026316
마을안길	7	0.131579	법면	1	0.039474
지붕	7	0.144737	경사지주택	1	0.092105

돌담	6	0.052632	색채	1	0.092105
방법등	6	0.052632	유휴토지	1	0.013158
공동생활시설	6	0.026316	전원주거단지	1	0.039474
정자	6	0.118421	야생동물피해 방지시설	1	0.052632
흙담	5	0.039474	계단	1	0.092105
오수정화시설	5	0.157895	휴지통	1	0.092105
벽체	5	0.118421	화단	1	0.092105
전기통신시설	5	0.197368	배수시설	1	0.131579
마을공원	4	0.052632	측구	1	0.131579
옹벽	4	0.092105	저수조	1	0.131579
창고	4	0.052632	평상	1	0.105263
가로등	4	0.223684	음수대	1	0.105263
조형물	4	0.105263	버스정류장	1	0.105263
정원	3	0.065789	도로	1	0.105263
보도	3	0.078947	농로	1	0.039474
폐가	3	0.039474	경작로	1	0.039474
전신주	3	0.092105	관정	1	0.092105
친환경시설	3	0.105263	마을내오염원 처리시설	1	0.092105
빈집	3	0.039474	급식소	1	0.026316
출입구	3	0.118421	CCTV	1	0.052632
마을진입로	3	0.078947	응급처치장비	1	0.052632
공동화장실	3	0.026316	안전펜스	1	0.052632
원두막	3	0.105263	재난대피안내 판	1	0.052632

주 : Degree Centrality(연결중심성)가 높을수록 다른 시설과의 연계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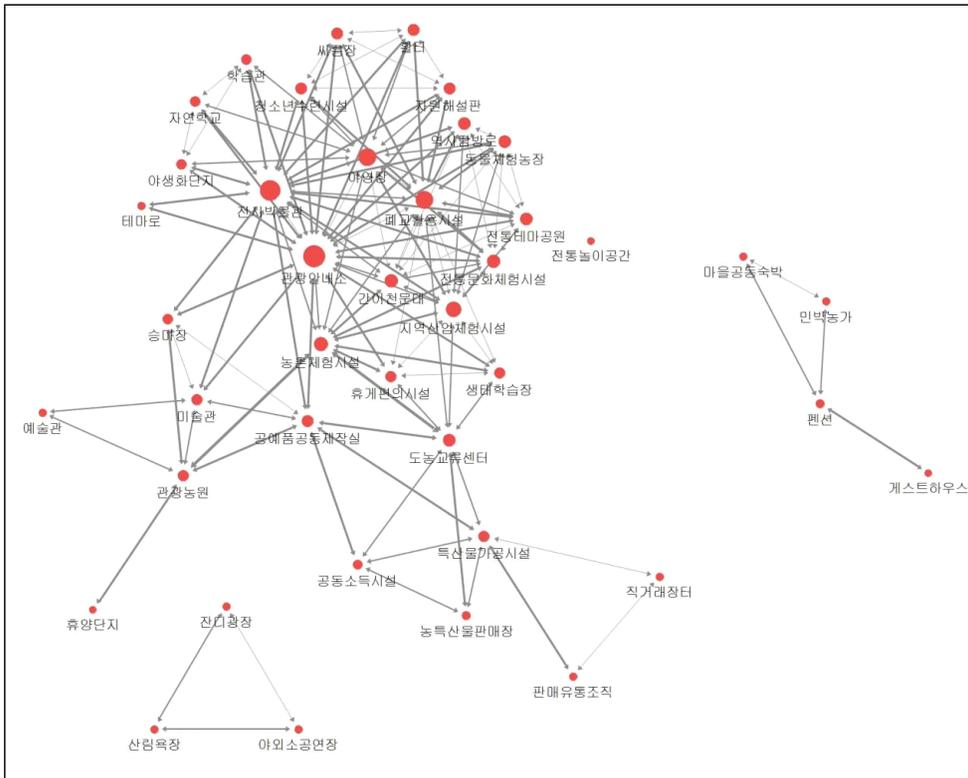
(표 6-20) 역사문화환경 관련 마을 주거환경 물리적 요소 빈도 및 중심성 분석 결과

주요키워드	빈도	Degree Centrality*	주요키워드	빈도	Degree Centrality*
장승	12	0.175	유적	3	0.075
숫대	11	0.175	우물	3	0.05
성황당	9	0.1	빨래터	3	0.075
사당	8	0.35	사적	2	0.125
보호수	8	0.175	제각	2	0.15
정자	7	0.35	신양공간	2	0.025
향교	7	0.375	정자목	2	0.15
돌무덤	6	0.275	암자터	1	0.2
전통건축물	5	0.2	기념공원	1	0.2
사찰	5	0.275	사신당	1	0.025
서원	5	0.275	석탑	1	0.15
당산목	5	0.075	민간신앙	1	0.025
문화재	4	0.15	비	1	0.15
마을안내석	4	0.15	탑	1	0.15
사적	4	0.075	부속사	1	0.025
마을상징물	3	0.075	자적	1	0.125
고택	3	0.2	유래비	1	0.05
비석	3	0.175	경관수목	1	0.05
물레방아	3	0.175	상징탑	1	0.025
성곽	3	0.15	산진제터	1	0.025

주 : Degree Centrality(연결중심성)가 높을수록 다른 시설과의 연계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함.

○ 경제활성화환경

- 경제활성화 환경은 전시박물관, 야영장, 폐교활용시설 등 체험관광시설을 중심으로 하나의 중심성(centrality)높은 그룹(clusters)이 형성됨. 체험관광시설은 도농교류센터를 매개로 특산물가공시설, 직거래장터, 공동소득시설 등과 연결성(link)이 높음
- 요소별 중심성 분석결과는 삼림욕장(0.560976), 관광안내소(0.512195), 폐교활용시설, 야영장(0.414634), 지역산업체험시설(0.317073) 등 순으로 나타남
- 빈도 분석결과 농촌체험시설(15), 농특산물판매장(10), 관광안내소, 펜션, 전시박물관(7), 도농교류센터, 관광농원(6) 등 순으로 나타남



<그림 6-15> 경제활성화 관련 마을 주거환경요소 중심성 분석

(표 6-21) 경제활성화 관련 마을 주거환경요소 빈도 및 중심성 분석 결과

주요키워드	빈도	Degree Centrality*	주요키워드	빈도	Degree Centrality*
농촌체험시설	15	0.268293	직거래장터	2	0.04878
농특산물판매장	10	0.073171	예술관	2	0.04878
관광안내소	7	0.512195	마을공동숙박	2	0.04878
펜션	7	0.04878	동물체험농장	1	0.219512
전시박물관	7	0.04878	전통테마공원	1	0.219512
도농교류센터	6	0.219512	역사탐방로	1	0.219512
관광농원	6	0.146341	청소년수련시설	1	0.170732
폐교활용시설	5	0.414634	씨름장	1	0.170732
특산물가공시설	5	0.146341	활터	1	0.170732
야영장	4	0.414634	자원해설관	1	0.170732
공동소득시설	4	0.097561	승마장	1	0.121951
민박농가	4	0.02439	야생화단지	1	0.121951
산림욕장	3	0.560976	자연학교	1	0.121951
지역산업체험시설	3	0.317073	학습관	1	0.121951
간이천문대	2	0.243902	판매유통조직	1	0.04878
전통문화체험시설	2	0.243902	테마로	1	0.04878
공예품공동제작실	2	0.195122	야외소공연장	1	0.04878
미술관	2	0.146341	잔디광장	1	0.04878
휴게편의시설	2	0.146341	게스트하우스	1	0.02439
생태학습장	2	0.146341	전통놀이공간	1	0
휴양단지	2	0.073171			

주 : Degree Centrality(연결중심성)가 높을수록 다른 시설과의 연계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함.

제4절 현실적합성 평가방법 및 내용

1. 개요

- 조사대상자는 농촌계획 및 지역개발 등과 관련된 5년 이상 종사한 전문가 30명으로 선정하였으며, 이들의 평균 경력기간은 약 17년임
- 조사방법 및 기간은 온라인 배포방식으로 2018년 10월 16일-22일 까지 수행

(표 6-22) 조사대상자 일반사항

번호	전문분야	번호	전문분야
1	농촌개발	16	지역계획
2	지역개발, 농촌계획	17	환경생태
3	농촌경관, 농업유산	18	중간지원조직구성
4	농촌개발	19	농업정책
5	조경계획 및 설계	20	농업 및 농업공동체
6	농촌계획	21	농업
7	농촌관광	22	마을만들기
8	지역계획	23	농업 및 농업공동체
9	농촌계획	24	행진
10	건축 및 도시설계	25	퍼실리테이터
11	마을만들기	26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
12	농촌현장포럼, 마을만들기	27	농촌개발
13	지역개발/농촌관광	28	농촌계획
14	지역계획 / 농업유산	29	농촌계획
15	농촌개발	30	농촌개발
계			30명

2. 평가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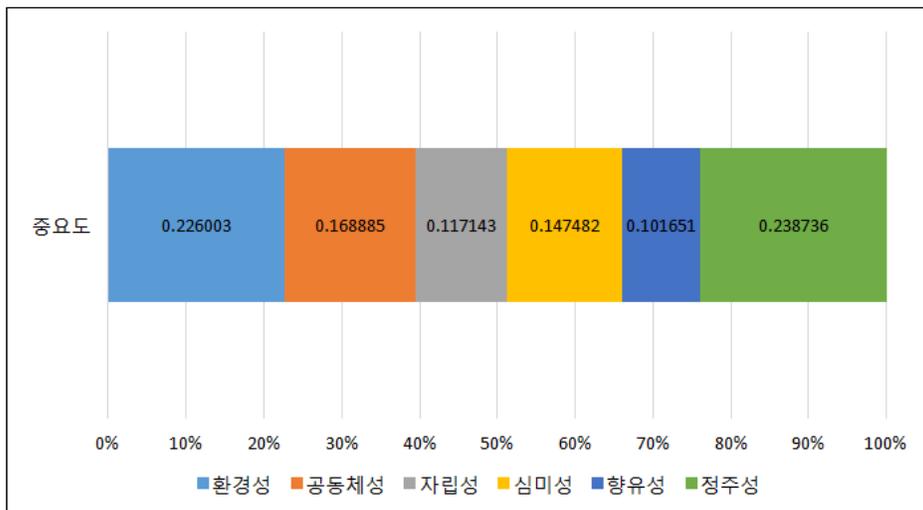
- 기술 요소에 대한 우선순위 평가를 위해 상위 항목(6개의 농촌다움 개념)과 상위 항목별 3개의 하위 항목으로 계층구조도를 구성하고, 상위 항목간 쌍대비교, 상위 항목내 하위 항목간 쌍대비교를 실시함
 - 상위항목(6개)은 환경성, 공동체성, 자립성, 심미성, 향유성, 정주성
 - 하위항목(18개)은 환경성에서 ‘자연지형 훼손 최소화를 위한 지형 연속성 확보’, ‘지역단위의 환경적 지속성 증진을 위한 에너지 자립 기반 구축’, ‘주거지 주변의 쓰레기 수거 및 오폐수 처리시스템 완비’, 공동체성에서는 ‘사회적 안전망 확보를 위한 사회복지인프라 확충’, ‘공동참여 증진을 위한 공동시설 확보’, ‘빈집, 폐교 등 인구과소화에 따른 유휴시설 활용’, 자립성에서 ‘경제적 지속성 증진을 위한 경제활성화 시설 확대’, ‘도농교류를 위한 시설 및 프로그램 확대’, ‘사회적 지속성 증진을 위한 협동조합 · 사회적 기업 활성화’, 심미성에서 ‘시설입지와 규모 적정성 등을 고려한 통합 토지이용계획 체계 구축’, ‘주택, 시설의 노후정도 및 가로 녹지의 연속성 등 중심 가로망의 경관 정체성과 통합성 확보’, ‘어메니티 자원 등 마을의 장소성 발굴과 유지’, 향유성에서 ‘시설입지와 규모 적정성 등을 고려한 통합 토지이용계획 체계 구축’, ‘주택, 시설의 노후정도 및 가로 녹지의 연속성 등 중심 가로망의 경관 정체성과 통합성 확보’, ‘어메니티 자원 등 마을의 장소성 발굴과 유지’, 정주성에서 ‘대중교통의 편리 및 주요도로·의료교육 등 생활 서비스의 접근성 향상’, ‘자연재해 및 일상생활 위험으로부터의 안전사고 예방 체계 확립’, ‘노령자 친화적 첨단서비스 주거환경 구축’
- 설문 응답은 쌍대비교(1:1비교)를 통해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각각의 값은 ‘1 : 동등, 3 : 약간 중요, 5 : 분명히 중요, 7 : 매우 중요’ 그리고 사이의 값은 각각의 중간 값으로 평가하도록 함

- 물리적 요소에 대한 중요도 파악하기 위해 ‘마을(27개)’과 ‘중심지(10개)’로 시설을 구분하여 6가지 개념별로 5점 척도로 평가함
 - 마을은 생산환경(5개)에서 기반시설(용배수로/관정시설/차양막), 경작지(논/밭/과수원), 저장가공시설(공동창고/집하장/농산물가공시설/저온저장고/건조장등), 에너지자원활용시설(태양광/풍력발전시설/발효시설/축사분뇨자원화시설 등) 등, 자연환경(5개)에서 생태하천/생태습지/생태연못, 마을숲(비보숲), 등산로(산책로)/자연탐방로/약수터, 자연경관(호수/산/구릉지/계곡/폭포/바위/절벽), 생태체험시설(습지공원/조류생태공원/수변공원 등), 생활환경(7개)에서 문화복지시설(마을회관/경로당), 주택 경계부(담장(흙담,돌담)/지붕/출입구/벽체/옹벽), 이휴게시설(마을공원/놀이터/마을마당/쉼터/정자), 보행시설(마을안길/보도/가로등/조형물), 정보화시설(전기통신/인터넷), 안전시설(방범등/CCTV), 생활기반시설(상하수도/오폐수/쓰레기처리장/정화시설/소각장), 역사문화환경(4개)에서 상징시설물(장승/숫대), 전통건조물(고택/사당/사찰/서원/암자터), 마을수목(보호수/당산목/정자목), 문화재(사적/유적/돌무덤), 경제활성화환경((6개)에서 체험시설(농촌체험시설/관광농원/지역산업체험시설/전통문화체험시설), 지역특화산업시설(도농교류센터/농특산물판매장/공동소득시설), 관광안내시설, 문화관광시설(전시박물관/미술관), 휴양시설(산림욕장/야영장), 유희시설(빈집/폐가/폐교)
 - 중심지는 생활환경(10개)에서 가로교통시설(주차장/도로/대중교통), 의료복지시설(병원/보건소/요양센터/건강관리실), 교육/보육시설(초중고/농업인교육/평생교육), 운동시설(체육관/게이트볼장/테니스장/심신단련장), 문화복지시설(목욕탕/다목적회관/커뮤니티센터), 공원녹지시설(근린공원/야외광장/잔디광장), 사회복지시설(취약계층 및 영세민주거지원시설/청소년지원시설), 상업시설(상점/식당/시장), 금융시설(농협및은행), 유희 및 대규모 개발시설(공장/폐광활용)

제5절 개념별 기술 목표 우선순위 평가 결과

1. 상위 항목

- 농촌다운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항목을 순위별로 정리하였음
- 상위항목(개념)에 대한 가중치 분석 결과 1순위는 정주성(0.239), 2순위는 환경성(0.226), 3순위는 공동체성(0.169), 4순위는 심미성(0.147), 5순위는 자립성(0.117), 6순위는 향유성(0.102) 으로 나타남
- 하위항목에 대한 가중치 분석 결과 1순위는 대중교통의 편리 및 주요도로·의료교육 등 생활서비스의 접근성 향상(0.106), 2순위는 주거지 주변의 쓰레기 수거 및 오폐수 처리시스템 완비(0.102), 3순위는 자연지형 훼손 최소화를 위한 지형 연속성 확보(0.092) 등 순으로 나타남



<그림 6-16> 농촌다운 주거환경 개념 우선순위 결과

(표 6-23) 농촌다운 주거환경 개념별 평가 항목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

상위항목			하위항목			전체	
개념	중요도	순위	평가항목	중요도	순위	중요도	순위
환경성	0.226	2	지형 연속성 확보	0.406	2	0.092	3
			에너지 자립 기반 구축	0.145	3	0.033	15
			주거지 주변의 쓰레기 수거 및 오폐수 처리시스템 완비	0.449	1	0.102	2
공동체성	0.169	3	사회복지인프라 확충	0.311	2	0.052	7
			공동시설 확보	0.530	1	0.090	4
			유희시설 활용	0.159	3	0.027	16
자립성	0.117	5	경제활성화 시설 확대	0.420	1	0.049	9
			도농교류시설 및 프로그램 확대	0.167	3	0.020	17
			협동조합 · 사회적 기업 활성화	0.413	2	0.048	10
심미성	0.147	4	통합토지이용계획 체계 구축	0.360	1	0.053	6
			중심 가로망의 경관 정체성과 통합성 확보	0.291	3	0.043	13
			마을의 장소성 발굴과 유지	0.349	2	0.051	8
향유성	0.102	6	여가시설 다양성 확보	0.372	2	0.038	14
			향유서비스의 다양성 증진	0.187	3	0.019	18
			문화기술(High CT) 도입한 문화·판매시설 구축	0.441	1	0.045	12
정주성	0.239	1	생활서비스의 접근성 향상	0.443	1	0.106	1
			안전사고 예방 체계 확립	0.361	2	0.086	5
			노령자 친화적 첨단 서비스 주거환경 구축	0.196	3	0.047	11

2. 하위항목별

가. 환경성

- 환경성 부문에서는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하위 항목은 1순위 주거지 주변의 쓰레기 수거 및 오폐수 처리시스템 완비(0.449) 2순위 자연지형 훼손 최소화를 위한 지형 연속성 확보(0.406), 3순위 지역단위의 환경적 지속성 증진을 위한 에너지 자립 기반 구축(0.145)으로 나타남

(표 6-24) 환경성 평가기준의 상대적 중요도 (일관성 비율 0.012673)

하위 항목	중요도	우선순위
자연지형 훼손 최소화를 위한 지형 연속성 확보	0.406	2
지역단위의 환경적 지속성 증진을 위한 에너지 자립 기반 구축	0.145	3
주거지 주변의 쓰레기 수거 및 오폐수 처리시스템 완비	0.449	1

나. 공동체성

- 공동체성 부문에서는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하위 항목은 1순위 공동참여 증진을 위한 공동시설 확보(0.530), 2순위 사회적 안전망 확보를 위한 사회복지인프라 확충(0.311), 3순위 빈집, 폐교 등 인구과소화에 따른 유휴시설 활용(0.159)으로 나타남

(표 6-25) 공동체성 평가기준의 상대적 중요도 (일관성 비율 0.011441)

하위 항목	중요도	우선순위
사회적 안전망 확보를 위한 사회복지인프라 확충	0.311	2
공동참여 증진을 위한 공동시설 확보	0.530	1
빈집, 폐교 등 인구과소화에 따른 유휴시설 활용	0.159	3

다. 자립성

- 자립성 부문에서는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하위 항목은 1순위 경제적 지속성 증진을 위한 경제활성화 시설 확대(0.420), 2순위 사회적 지속성 증진을 위한 협동조합·사회적 기업 활성화(0.413), 3순위 도농교류를 위한 시설 및 프로그램 확대(0.167)로 나타남

(표 6-26) 자립성 평가기준의 상대적 중요도 (일관성 비율 0.011441)

하위 항목	중요도	우선순위
경제적 지속성 증진을 위한 경제활성화 시설 확대	0.420	1
도농교류를 위한 시설 및 프로그램 확대	0.167	3
사회적 지속성 증진을 위한 협동조합·사회적 기업 활성화	0.413	2

라. 심미성

- 심미성 부문에서는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하위 항목은 1순위 시설입지와 규모 적정성 등을 고려한 통합 토지이용계획 체계 구축(0.360), 2순위 어메니티 자원 등 마을의 장소성 발굴과 유지(0.349), 주택, 3순위 시설의 노후정도 및 가로 녹지의 연속성 등 중심 가로망의 경관 정체성과 통합성 확보(0.291)로 나타남

(표 6-27) 심미성 평가기준의 상대적 중요도 (일관성 비율 0.011441)

하위 항목	중요도	우선순위
시설입지와 규모 적정성 등을 고려한 통합 토지이용계획 체계 구축	0.360	1
주택, 시설의 노후정도 및 가로 녹지의 연속성 등 중심 가로망의 경관 정체성과 통합성 확보	0.291	3
어메니티 자원 등 마을의 장소성 발굴과 유지	0.349	2

마. 향유성

- 향유성 부문에서는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하위 항목은 1순위 문화기술(High CT) 도입한 문화·판매시설 구축(0.441), 2순위 공원, 휴게시설 등 여가시설 다양성 확보(0.372), 3순위 다문화지원시설 등 향유서비스의 다양성 증진(0.187)로 나타남

(표 6-28) 향유성 평가기준의 상대적 중요도 (일관성 비율 0.011441)

하위 항목	중요도	우선순위
공원, 휴게시설 등 여가시설 다양성 확보	0.372	2
다문화지원시설 등 향유서비스의 다양성 증진	0.187	3
문화기술(High CT) 도입한 문화·판매시설 구축	0.441	1

바. 정주성

- 정주성 부문에서는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하위 항목은 1순위 대중교통의 편리 및 주요도로·의료교육 등 생활서비스의 접근성 향상(0.443), 2순위 자연재해 및 일상생활 위험으로부터의 안전사고 예방 체계 확립(0.361), 3순위 노령자 친화적 첨단서비스 주거환경 구축(0.196) 로 나타남

(표 6-29) 정주성 평가기준의 상대적 중요도 (일관성 비율 0.011441)

하위 항목	중요도	우선순위
대중교통의 편리 및 주요도로·의료교육 등 생활서비스의 접근성 향상	0.443	1
자연재해 및 일상생활 위험으로부터의 안전사고 예방 체계 확립	0.361	2
노령자 친화적 첨단서비스 주거환경 구축	0.196	3

제6절 물리적 요소(시설) 중요도 평가 결과

1. 농촌중심지

가. 전체 시설 중요도

- 농촌중심지 시설(10개)에서 우선 고려해야할 중요한 시설을 아래 표로 정리하였음
 - 농촌다운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농촌중심지에서 중요하게 고려해야하는 시설은 공원녹지시설(근린공원/야외광장/잔디광장)(3.98)과 문화복지시설(목욕탕/다목적회관/커뮤니티센터)(3.90), 가로교통시설(주차장/도로/대중교통(버스정류장,철도))(3.80) 등 순으로 높게 도출됨

(표 6-30) 농촌중심지 시설의 중요도

번호	시설 항목	평균
1	공원녹지시설(근린공원/야외광장/잔디광장)	3.98
2	문화복지시설(목욕탕/다목적회관/커뮤니티센터)	3.90
3	가로교통시설(주차장/도로/대중교통(버스정류장,철도))	3.80
4	교육/보육시설(초중고/농업인교육/평생교육)	3.74
5	운동시설(체육관/게이트볼장/테니스장/심신단련장)	3.72
6	의료복지시설(병원/보건소/요양센터/건강관리실)	3.67
7	상업시설(상점/식당/시장)	3.56
8	사회복지시설(취약계층/영세민주거지원/청소년지원)	3.41
9	금융시설(농협 및 은행)	3.27
10	유희 및 대규모 개발시설(공장/폐광활용)	2.84

나. 개념별 시설 중요도

1) 환경성

- 환경성 부문에서는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시설은 공원녹지시설(근린공원/야외광장/잔디광장)(4.13), 가로교통시설(주차장/도로/대중교통(버스정류장,철도))(3.43), 유희 및 대규모 개발시설(공장/폐광활용)(3.20) 등 순으로 높게 도출됨

(표 6-31) 농촌중심지 시설의 환경성 측면에서의 중요도

번호	시설 항목	평균	표준 편차
1	공원녹지시설(근린공원/야외광장/잔디광장)	4.13	0.507
2	가로교통시설(주차장/도로/대중교통(버스정류장,철도))	3.43	0.898
3	유희 및 대규모 개발시설(공장/폐광활용)	3.20	1.126
4	운동시설(체육관/게이트볼장/테니스장/심신단련장)	3.13	0.776
5	교육/보육시설(초중고/농업인교육/평생교육)	3.07	0.828
6	문화복지시설(목욕탕/다목적회관/커뮤니티센터)	3.03	0.850
7	의료복지시설(병원/보건소/요양센터/건강관리실)	3.00	0.871
8	상업시설(상점/식당/시장)	3.00	0.871
9	사회복지시설(취약계층/영세민주거지원/청소년지원)	2.90	0.960
10	금융시설(농협및은행)	2.45	0.827

2) 공동체성

- 공동체성 부문에서는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시설은 문화복지시설(목욕탕/다목적회관/커뮤니티센터)(4.33), 교육/보육시설(초중고/농업인교육/평생교육)(4.10), 운동시설(체육관/게이트볼장/테니스장/심신단련장)(4.10) 등 순으로 높게 도출됨

(표 6-32) 농촌중심지 시설의 공동체성 측면에서의 중요도

번호	시설 항목	평균	표준 편차
1	문화복지시설(목욕탕/다목적회관/커뮤니티센터)	4.33	0.606
2	교육/보육시설(초중고/농업인교육/평생교육)	4.10	0.618
3	운동시설(체육관/게이트볼장/테니스장/심신단련장)	4.10	0.548
4	사회복지시설(취약계층/영세민주거지원/청소년지원)	4.07	0.868
5	공원녹지시설(근린공원/야외광장/잔디광장)	4.00	0.695
6	의료복지시설(병원/보건소/요양센터/건강관리실)	3.90	0.803
7	가로교통시설(주차장/도로/대중교통(버스정류장,철도))	3.60	0.894
8	상업시설(상점/식당/시장)	3.27	0.785
9	금융시설(농협및은행)	3.17	0.699
10	유희 및 대규모 개발시설(공장/폐광활용)	2.63	0.928

3) 자립성

- 자립성 부문에서는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시설은 상업시설(상점/식당/시장)(3.87), 금융시설(농협및은행)(3.80), 문화복지시설(목욕탕/다목적회관/커뮤니티센터)(3.63) 등 순으로 높게 도출됨

(표 6-33) 농촌중심지 시설의 자립성 측면에서의 중요도

번호	시설 항목	평균	표준 편차
1	상업시설(상점/식당/시장)	3.87	0.937
2	금융시설(농협및은행)	3.80	0.805
3	문화복지시설(목욕탕/다목적회관/커뮤니티센터)	3.63	0.89
4	가로교통시설(주차장/도로/대중교통(버스정류장,철도))	3.57	0.817
5	교육/보육시설(초중고/농업인교육/평생교육)	3.53	0.776
6	의료복지시설(병원/보건소/요양센터/건강관리실)	3.50	0.861
7	운동시설(체육관/게이트볼장/테니스장/심신단련장)	3.43	0.774
8	공원녹지시설(근린공원/야외광장/잔디광장)	3.30	0.794
9	사회복지시설(취약계층/영세민주거지원/청소년지원)	3.10	0.923
10	유희 및 대규모 개발시설(공장/폐광활용)	2.87	0.973

4) 심미성

- 심미성 부문에서는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시설은 공원녹지시설(근린공원/야외광장/잔디광장)(4.17), 가로교통시설(주차장/도로/대중교통(버스정류장,철도))(3.67), 문화복지시설(목욕탕/다목적회관/커뮤니티센터)(3.57) 등 순으로 높게 도출됨

(표 6-34) 농촌중심지 시설의 심미성 측면에서의 중요도

번호	시설 항목	평균	표준 편차
1	공원녹지시설(근린공원/야외광장/잔디광장)	4.17	0.531
2	가로교통시설(주차장/도로/대중교통(버스정류장,철도))	3.67	0.802
3	문화복지시설(목욕탕/다목적회관/커뮤니티센터)	3.57	0.935
4	상업시설(상점/식당/시장)	3.33	0.844
5	교육/보육시설(초중고/농업인교육/평생교육)	3.27	0.868
6	의료복지시설(병원/보건소/요양센터/건강관리실)	3.17	0.95
7	운동시설(체육관/게이트볼장/테니스장/심신단련장)	3.10	0.845
8	휴식 및 대규모 개발시설(공장/폐광활용)	3.03	1.066
9	사회복지시설(취약계층/영세민주거지원/청소년지원)	2.90	0.96
10	금융시설(농협및은행)	2.77	0.971

5) 향유성

- 향유성 부문에서는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시설은 문화복지시설(목욕탕/다목적회관/커뮤니티센터)(4.40), 운동시설(체육관/게이트볼장/테니스장/심신단련장)(4.27), 공원녹지시설(근린공원/야외광장/잔디광장)(4.23) 등 순으로 높게 도출됨

(표 6-35) 농촌중심지 시설의 향유성 측면에서의 중요도

번호	시설 항목	평균	표준 편차
1	문화복지시설(목욕탕/다목적회관/커뮤니티센터)	4.40	0.724
2	운동시설(체육관/게이트볼장/테니스장/심신단련장)	4.27	0.907
3	공원녹지시설(근린공원/야외광장/잔디광장)	4.23	0.774
4	가로교통시설(주차장/도로/대중교통(버스정류장,철도))	4.00	0.743
5	교육/보육시설(초중고/농업인교육/평생교육)	4.00	0.871
6	의료복지시설(병원/보건소/요양센터/건강관리실)	3.90	0.96
7	상업시설(상점/식당/시장)	3.76	0.912
8	사회복지시설(취약계층/영세민주거지원/청소년지원)	3.63	0.999
9	금융시설(농협및은행)	3.43	0.858
10	유휴 및 대규모 개발시설(공장/폐광활용)	2.67	1.028

6) 정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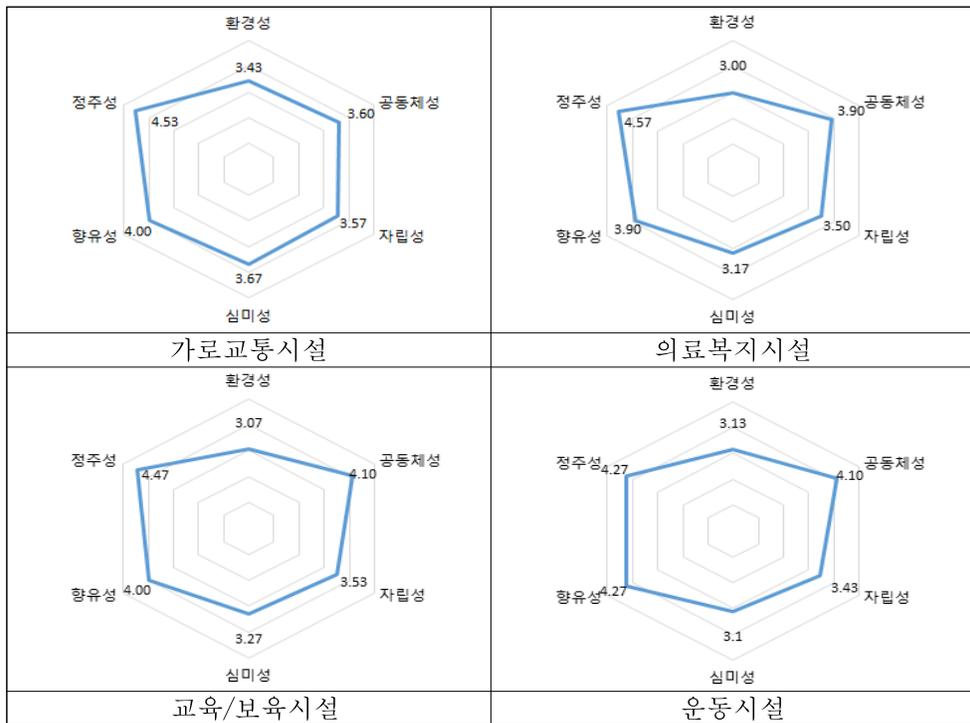
- 정주성 부문에서는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시설은 의료복지시설(병원/보건소/요양센터/건강관리실)(4.57), 가로교통시설(주차장/도로/대중교통(버스정류장,철도))(4.53), 교육/보육시설(초중고/농업인교육/평생교육)(4.47) 등 순으로 높게 도출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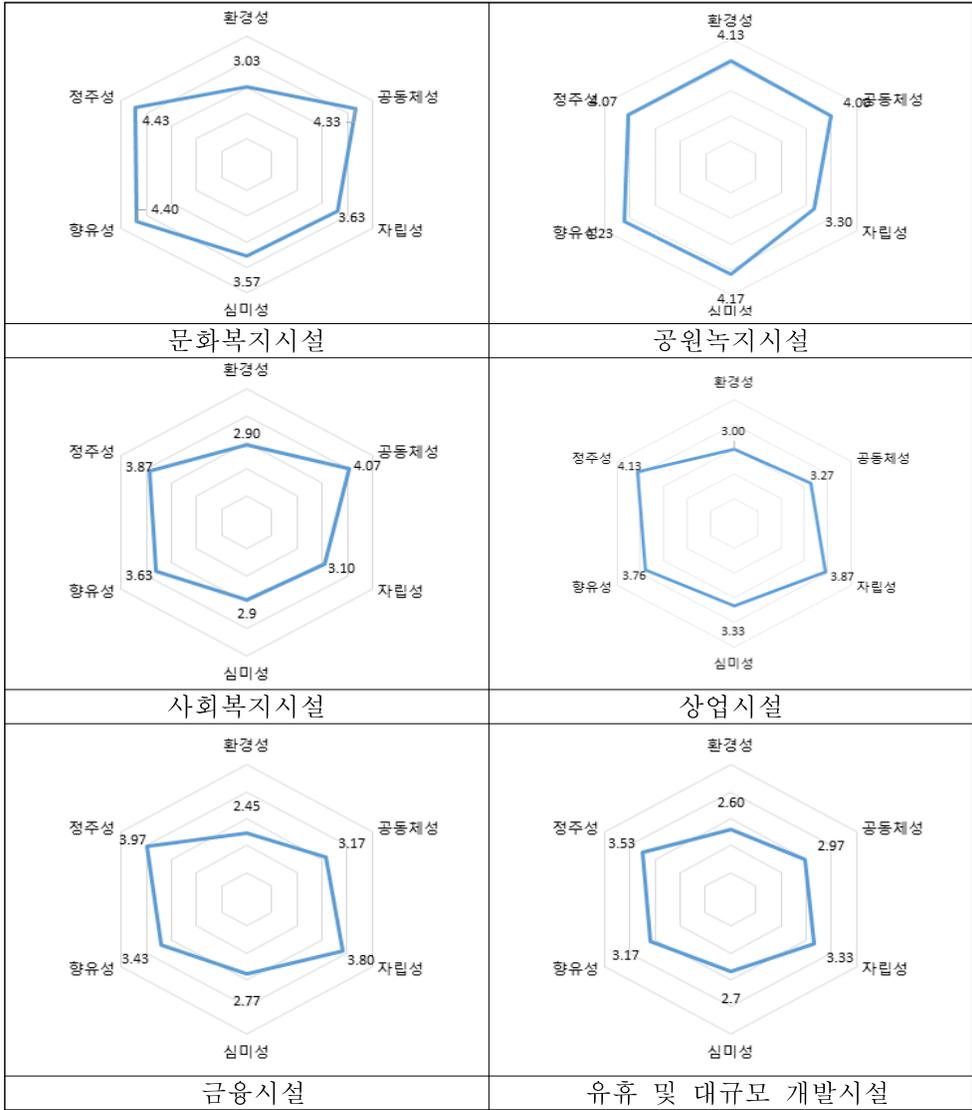
(표 6-36) 농촌중심지 시설의 정주성 측면에서의 중요도

번호	시설 항목	평균	표준 편차
1	의료복지시설(병원/보건소/요양센터/건강관리실)	4.57	0.504
2	가로교통시설(주차장/도로/대중교통(버스정류장,철도))	4.53	0.571
3	교육/보육시설(초중고/농업인교육/평생교육)	4.47	0.681
4	문화복지시설(목욕탕/다목적회관/커뮤니티센터)	4.43	0.626
5	운동시설(체육관/게이트볼장/테니스장/심신단련장)	4.27	0.583
6	상업시설(상점/식당/시장)	4.13	0.73
7	공원녹지시설(근린공원/야외광장/잔디광장)	4.07	0.74
8	금융시설(농협및은행)	3.97	0.731
9	사회복지시설(취약계층/영세민주거지원/청소년지원)	3.87	0.86
10	유휴 및 대규모 개발시설(공장/폐광활용)	2.63	1.033

다. 각 시설의 개념과의 연관성

- 생활환경 시설의 중요도조사 결과 가로교통시설(4.53), 의료복지시설(4.57), 교육/보육시설(4.47), 문화복지시설(.43), 상업시설, 금융시설(3.97), 유희 및 대규모 개발시설(3.53)에서는 정주성이, 운동시설(4.27), 공원녹지시설(4.23)에서는 향유성이, 사회복지시설(4.07)는 공동체성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생활환경 시설에서 정주성과 향유성, 공동체성이 높게 나타나며, 이는 자연스러운 결과로 볼 수 있음. 반면, 전반적으로 환경성과 심미성은 크게 낮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음





<그림 6-17> 농촌중심지 생활환경 시설의 개념에 대한 중요도

2. 농촌마을

가. 전체 시설 중요도

- 농촌마을 시설 28개의 중요도 전문가(30인)가 선택한 빈도결과를 토대로, 우선 고려해야할 중요한 시설을 순위별로 정리하였음
- 농촌다운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농촌마을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하는 시설로는 마을숲(비보숲)(3.84)과 문화복지시설(마을회관/경로당)(3.79), 생태하천/생태습지/생태연못/생태통로(3.77) 등 순으로 높게 도출됨

(표 6-37) 농촌마을 시설의 중요도

시설 항목		평균
생산환경 (5개)	기반시설(용배수로/관정시설/차양막)	3.23
	경작지(논/밭/과수원)	3.43
	저장가공시설(공동창고/집하장/농산물가공시설/저온저장고/건조장등)	3.32
	자연기반시설(저수지/목초지/마을평야 등)	3.66
	에너지자원활용시설(태양광/풍력발전시설/발효시설/축사분뇨자원화시설 등)	3.17
자연환경 (5개)	생태하천/생태습지/생태연못/생태통로	3.77
	마을숲(비보숲)	3.84
	등산로(산책로)/자연탐방로/약수터	3.63
	자연경관(호수/산/구릉지/계곡/폭포/바위/절벽)	3.65
	생태체험시설(습지공원/조류생태공원/수변공원 등)	3.65
생활환경 (7개)	문화복지시설(마을회관/경로당)	3.79
	주택시설(담장/흙담,돌담)/지붕/출입구/벽체/옹벽)	3.43
	놀이휴게시설(마을공원/놀이터/마을마당/쉼터/정자)	3.67
	보행시설(마을안길/보도/가로등/조형물)	3.56
	정보화시설(전기통신/인터넷)	3.09
	안전시설(방범등/CCTV)	3.16
	생활기반시설(상하수도/오폐수/쓰레기처리장/정화시설/소각장)	3.58
역사문화 환경	상징시설물(장승/숫대)	3.26
	전통건조물(고택/사당/사찰/서원/암자터)	3.39

(5개)	마을수목(보호수/당산목/정자목)	3.64
	문화재(사적/유적/돌무덤)	3.31
	기타(비석/물레방아/우물/빨래터)	3.14
경제활성화 환경 (6개)	체험시설(농촌체험시설/관광농원/지역산업체험시설/전통문화체험시설)	3.62
	지역특화산업시설(도농교류센터/농특산물판매장/공동소득시설)	3.57
	관광안내소	2.87
	문화관광시설(전시박물관/미술관)	3.20
	휴양시설(산림욕장/야영장/펜션)	3.56
	빈집/폐가/폐교/유휴토지 활용시설	3.43

나. 개념별 시설 중요도

1) 환경성

- 환경성 부문에서는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시설은 생태하천/생태습지/생태연못/생태통로(4.60), 자연경관(호수/산/구릉지/계곡/폭포/바위/절벽)(4.41), 마을숲(비보숲)(4.43) 등 순으로 높게 도출됨

(표 6-38) 농촌마을 시설의 환경성 측면에서의 중요도

시설 항목		평균	표준 편차
생산환경 (5개)	기반시설(용배수로/관정시설/차양막)	3.60	0.894
	경작지(논/밭/과수원)	3.93	0.785
	저장가공시설(공동창고/집하장/농산물가공시설/저온저장고/건조장등)	3.07	0.868
	자연기반시설(저수지/목초지/마을평야 등)	4.27	0.74
	에너지자원활용시설(태양광/풍력발전시설/발효시설/축사분뇨자원화시설 등)	3.83	1.085
자연환경 (5개)	생태하천/생태습지/생태연못/생태통로	4.60	0.498
	마을숲(비보숲)	4.41	0.568
	등산로(산책로)/자연탐방로/약수터	3.90	0.712
	자연경관(호수/산/구릉지/계곡/폭포/바위/절벽)	4.43	0.568
	생태체험시설(습지공원/조류생태공원/수변공원 등)	3.93	0.907
생활환경 (7개)	문화복지시설(마을회관/경로당)	2.90	0.96
	주택시설(담장(흙담,돌담)/지붕/출입구/벽체/옹벽)	3.63	0.718
	놀이휴게시설(마을공원/놀이터/마을마당/쉼터/정자)	3.53	0.681

	보행시설(마을안길/보도/가로등/조형물)	3.47	0.819
	정보화시설(전기통신/인터넷)	2.40	0.855
	안전시설(방범등/CCTV)	2.57	0.971
	생활기반시설(상하수도/오폐수/쓰레기처리장/정화시설/소각장)	4.20	0.761
역사문화 환경 (5개)	상징시설물(장승/솟대)	3.17	1.085
	전통건조물(고택/사당/사찰/서원/암자터)	3.63	0.89
	마을수목(보호수/당산목/정자목)	4.10	0.845
	문화재(사적/유적/돌무덤)	3.70	1.022
	기타(비석/물레방아/우물/빨래터)	3.37	0.809
경제활성화 환경 (6개)	체험시설(농촌체험시설/관광농원/지역산업체험시설/전통문화체험시설)	3.27	0.868
	지역특화산업시설(도농교류센터/농특산물판매장/공동소득시설)	2.97	0.718
	관광안내소	2.67	0.959
	문화관광시설(전시박물관/미술관)	3.10	0.96
	휴양시설(산림욕장/야영장/펜션)	3.73	0.944
	빈집/폐가/폐교/유희토지 활용시설	3.80	0.887

2) 공동체성

- 공동체성 부문에서는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시설은 문화복지시설(마을회관/경로당)(4.53), 놀이휴게시설(마을공원/놀이터/마을마당/쉼터/정자)(4.03), 마을수목(보호수/당산목/정자목)(4.03) 등 순으로 높게 도출됨

(표 6-39) 농촌마을 시설의 공동체성 측면에서의 중요도

시설 항목		평균	표준 편차
생산환경 (5개)	기반시설(용배수로/관정시설/차양막)	2.83	0.747
	경작지(논/밭/과수원)	2.83	0.699
	저장가공시설(공동창고/집하장/농산물가공시설/저온저장고/건조장등)	3.73	0.785
	자연기반시설(저수지/목초지/마을평야 등)	3.33	0.661
	에너지자원활용시설(태양광/풍력발전시설/발효시설/축사분뇨자원화시설 등)	2.97	0.890

자연환경 (5개)	생태하천/생태습지/생태연못/생태통로	3.10	0.885
	마을숲(비보숲)	3.70	0.750
	등산로(산책로)/자연탐방로/약수터	3.30	0.837
	자연경관(호수/산/구릉지/계곡/폭포/바위/절벽)	2.90	0.885
	생태체험시설(습지공원/조류생태공원/수변공원 등)	3.33	0.994
생활환경 (7개)	문화복지시설(마을회관/경로당)	4.53	0.507
	주택시설(담장/흙담,돌담)/지붕/출입구/벽체/옹벽)	3.13	0.819
	놀이휴게시설(마을공원/놀이터/마을마당/쉼터/정자)	4.03	0.669
	보행시설(마을안길/보도/가로등/조형물)	3.53	0.819
	정보화시설(전기통신/인터넷)	3.40	0.814
	안전시설(방범등/CCTV)	3.66	0.857
	생활기반시설(상하수도/오폐수/쓰레기처리장/정화시설/소각장)	3.77	0.817
역사문화 환경 (5개)	상징시설물(장승/숫대)	3.63	0.669
	전통건조물(고택/사당/사찰/서원/암자터)	3.50	0.900
	마을수목(보호수/당산목/정자목)	4.03	0.809
	문화재(사적/유적/돌무덤)	3.67	0.884
	기타(비석/물레방아/우물/빨래터)	3.43	0.898
경제활성화 환경 (6개)	체험시설(농촌체험시설/관광농원/지역산업체험시설/전통문화체험시설)	3.70	0.702
	지역특화산업시설(도농교류센터/농특산물판매장/공동소득시설)	3.79	0.726
	관광안내소	2.77	0.898
	문화관광시설(전시박물관/미술관)	2.87	0.900
	휴양시설(산림욕장/야영장/펜션)	3.17	0.834
	빈집/폐가/폐교/유휴토지 활용시설	3.47	0.900

3) 자립성

- 자립성 부문에서는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시설은 체험시설(농촌 체험시설/관광농원/지역산업체험시설/전통문화체험시설)(4.23), 지역 특화산업시설(도농교류센터/농특산물판매장/공동소득시설)(4.17), 저장가공시설(공동창고/집하장/농산물가공시설/저온저장고/건조장 등)(4.00) 등 순으로 높게 도출됨

(표 6-40) 농촌마을 시설의 자립성 측면에서의 중요도

시설 항목		평균	표준편차
생산환경 (5개)	기반시설(용배수로/관정시설/차양막)	3.47	1.008
	경작지(논/밭/과수원)	3.77	1.040
	저장가공시설(공동창고/집하장/농산물가공시설/저온 저장고/건조장등)	4.00	0.830
	자연기반시설(저수지/목초지/마을평야 등)	3.20	0.761
	에너지자원활용시설(태양광/풍력발전시설/발효시설/축 사분뇨자원화시설 등)	3.37	0.999
자연환경 (5개)	생태하천/생태습지/생태연못/생태통로	3.03	0.890
	마을숲(비보숲)	2.97	0.906
	등산로(산책로)/자연탐방로/약수터	3.03	0.928
	자연경관(호수/산/구름지/계곡/폭포/바위/절벽)	3.00	1.017
	생태체험시설(습지공원/조류생태공원/수변공원 등)	3.33	0.959
생활환경 (7개)	문화복지시설(마을회관/경로당)	3.61	0.956
	주택시설(담장/흡담,돌담)/지붕/출입구/벽체/옹벽)	2.93	0.740
	놀이휴게시설(마을공원/놀이터/마을마당/쉼터/정자)	2.87	0.776
	보행시설(마을안길/보도/가로등/조형물)	2.80	1.064
	정보화시설(전기통신/인터넷)	3.47	0.937
	안전시설(방범등/CCTV)	3.03	0.928
	생활기반시설(상하수도/오폐수/쓰레기처리장/정화시설/ 소각장)	3.17	0.950
역사문화 환경 (5개)	상징시설물(장승/숫대)	2.80	0.925
	전통건조물(고택/사당/사찰/서원/암자터)	3.03	0.964
	마을수목(보호수/당산목/정자목)	3.03	0.964
	문화재(사적/유적/돌무덤)	2.93	1.015
	기타(비석/물레방아/우물/빨래터)	2.63	0.964
경제활성화 환경 (6개)	체험시설(농촌체험시설/관광농원/지역산업체험시설/ 전통문화체험시설)	4.23	0.626
	지역특화산업시설(도농교류센터/농특산물판매장/공 동소득시설)	4.17	0.747
	관광안내소	3.17	1.053
	문화관광시설(전시박물관/미술관)	3.33	1.061
	휴양시설(산림욕장/야영장/펜션)	3.90	0.803
	빈집/폐가/폐교/유휴토지 활용시설	3.40	0.814

4) 심미성

- 심미성 부문에서는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시설은 생태하천/생태습지/생태연못/생태통로(4.30), 자연경관(호수/산/구릉지/계곡/폭포/바위/절벽)(4.28), 마을숲(비보숲)(4.27) 등 순으로 높게 도출됨

(표 6-41) 농촌마을 시설의 심미성 측면에서의 중요도

시설 항목		평균	표준편차
생산환경 (5개)	기반시설(용배수로/관정시설/차양막)	3.13	0.860
	경작지(논/밭/과수원)	3.70	0.794
	저장가공시설(공동창고/집하장/농산물가공시설/저온저장고/건조장등)	2.90	0.860
	자연기반시설(저수지/목초지/마을평야 등)	4.00	0.830
	에너지자원활용시설(태양광/풍력발전시설/발효시설/축사분뇨자원화시설 등)	2.97	1.066
자연환경 (5개)	생태하천/생태습지/생태연못/생태통로	4.30	0.651
	마을숲(비보숲)	4.27	0.640
	등산로(산책로)/자연탐방로/약수터	3.80	0.714
	자연경관(호수/산/구릉지/계곡/폭포/바위/절벽)	4.28	0.649
	생태체험시설(습지공원/조류생태공원/수변공원 등)	3.93	0.740
생활환경 (7개)	문화복지시설(마을회관/경로당)	3.13	0.819
	주택시설(담장/휴담,돌담)/지붕/출입구/벽체/옹벽)	3.63	0.809
	놀이휴게시설(마을공원/놀이터/마을마당/쉼터/정자)	3.40	0.621
	보행시설(마을안길/보도/가로등/조형물)	3.50	0.820
	정보화시설(전기통신/인터넷)	2.50	0.731
	안전시설(방범등/CCTV)	2.57	0.858
	생활기반시설(상하수도/오폐수/쓰레기처리장/정화시설/소각장)	3.17	1.147
역사문화 환경 (5개)	상징시설물(장승/솟대)	3.80	0.887
	전통건조물(고택/사당/사찰/서원/암자터)	3.83	0.950
	마을수목(보호수/당산목/정자목)	4.07	0.868
	문화재(사적/유적/돌무덤)	3.73	0.980
	기타(비석/물레방아/우물/빨래터)	3.60	0.932
경제활성화 환경 (6개)	체험시설(농촌체험시설/관광농원/지역산업체험시설/전통문화체험시설)	3.37	0.809
	지역특화산업시설(도농교류센터/농특산물판매장/공동소득시설)	3.23	0.817
	관광안내소	2.90	0.803
	문화관광시설(전시박물관/미술관)	3.27	1.081
	휴양시설(산림욕장/야영장/펜션)	3.60	0.932
	빈집/폐교/폐교/유�휴토지 활용시설	3.43	0.971

5) 향유성

- 향유성 부문에서는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시설은 문화복지시설(마을회관/경로당)(4.17), 놀이휴게시설(마을공원/놀이터/마을마당/쉼터/정자)(4.03), 등산로(산책로)/자연탐방로/약수터(4.00) 등 순으로 높게 도출됨

(표 6-42) 농촌마을 시설의 향유성 측면에서의 중요도

시설 항목		평균	표준편차
생산환경 (5개)	기반시설(용배수로/관정시설/차양막)	2.87	0.973
	경작지(논/밭/과수원)	2.90	0.759
	저장가공시설(공동창고/집하장/농산물가공시설/저온저장고/건조장등)	2.83	0.913
	자연기반시설(저수지/목초지/마을평야 등)	3.47	0.819
	에너지자원활용시설(태양광/풍력발전시설/발효시설/축사분뇨자원화시설 등)	2.70	0.837
자연환경 (5개)	생태하천/생태습지/생태연못/생태통로	3.97	0.765
	마을숲(비보숲)	4.00	0.695
	등산로(산책로)/자연탐방로/약수터	4.00	0.830
	자연경관(호수/산/구릉지/계곡/폭포/바위/절벽)	3.83	0.889
	생태체험시설(습지공원/조류생태공원/수변공원 등)	3.93	0.907
생활환경 (7개)	문화복지시설(마을회관/경로당)	4.17	0.648
	주택시설(담장/휴담,돌담/지붕/출입구/벽체/옹벽)	3.20	0.925
	놀이휴게시설(마을공원/놀이터/마을마당/쉼터/정자)	4.03	0.556
	보행시설(마을안길/보도/가로등/조형물)	3.90	0.759
	정보화시설(전기통신/인터넷)	3.37	0.928
	안전시설(방범등/CCTV)	3.27	0.944
역사문화 환경 (5개)	생활기반시설(상하수도/오폐수/쓰레기처리장/정화시설/소각장)	3.17	1.177
	상징시설물(장승/솟대)	3.17	0.834
	전통건조물(고택/사당/사찰/서원/암자터)	3.33	0.844
	마을수목(보호수/당산목/정자목)	3.43	0.971
	문화재(사적/유적/돌무덤)	3.07	0.944
경제활성화 환경 (6개)	기타(비석/물레방아/우물/빨래터)	3.00	0.871
	체험시설(농촌체험시설/관광농원/지역산업체험시설/전통문화체험시설)	3.70	0.794
	지역특화산업시설(도농교류센터/농특산물판매장/공동소득시설)	3.60	0.621
	관광안내소	2.87	0.860
	문화관광시설(전시박물관/미술관)	3.50	0.974
	휴양시설(산림욕장/야영장/펜션)	3.63	0.850
빈집/폐교/폐교/유희토지 활용시설	3.20	0.887	

6) 정주성

- 정주성 부문에서는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시설은 문화복지시설(마을회관/경로당)(4.37), 보행시설(마을안길/보도/가로등/조형물)(4.17), 놀이휴게시설(마을공원/놀이터/마을마당/쉼터/정자)(4.13) 등의 순으로 높게 도출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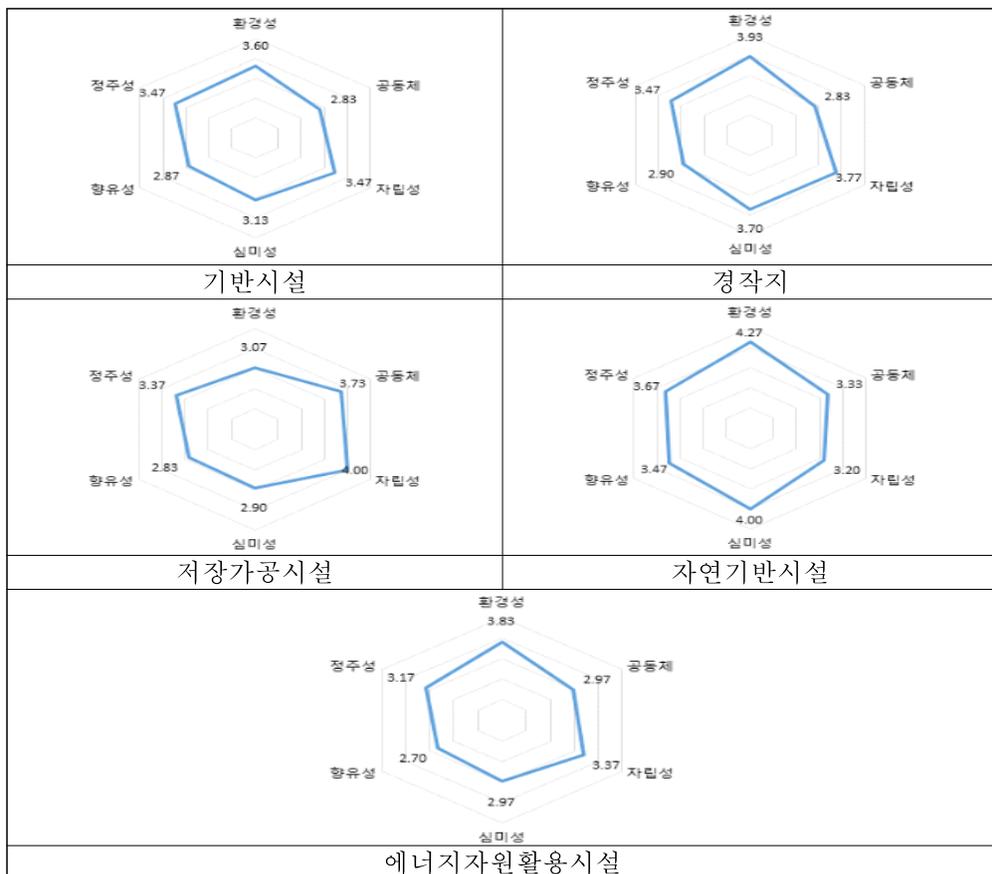
(표 6-43) 농촌마을 시설의 정주성 측면에서의 중요도

시설 항목		평균	표준편차
생산환경 (5개)	기반시설(용배수로/관정시설/차양막)	3.47	0.973
	경작지(논/밭/과수원)	3.47	0.629
	저장가공시설(공동창고/집하장/농산물가공시설/저온저장고/건조장등)	3.37	0.850
	자연기반시설(저수지/목초지/마을평야 등)	3.67	0.884
	에너지자원활용시설(태양광/풍력발전시설/발효시설/축사분뇨자원화시설 등)	3.17	1.053
자연환경 (5개)	생태하천/생태습지/생태연못/생태통로	3.60	0.770
	마을숲(비보숲)	3.70	0.915
	등산로(산책로)/자연탐방로/약수터	3.77	0.935
	자연경관(호수/산/구릉지/계곡/폭포/바위/절벽)	3.47	0.937
	생태체험시설(습지공원/조류생태공원/수변공원 등)	3.43	0.971
생활환경 (7개)	문화복지시설(마을회관/경로당)	4.37	0.765
	주택시설(담장/휴담,돌담/지붕/출입구/벽체/옹벽)	4.03	0.890
	놀이휴게시설(마을공원/놀이터/마을마당/쉼터/정자)	4.13	0.681
	보행시설(마을안길/보도/가로등/조형물)	4.17	0.913
	정보화시설(전기통신/인터넷)	3.40	0.814
	안전시설(방범등/CCTV)	3.87	0.973
	생활기반시설(상하수도/오폐수/쓰레기처리장/정화시설/소각장)	4.00	0.947
역사문화 환경 (5개)	상징시설물(장승/솟대)	3.00	0.910
	전통건조물(고택/사당/사찰/서원/암자터)	3.00	0.788
	마을수목(보호수/당산목/정자목)	3.17	0.913
	문화재(사적/유적/돌무덤)	2.77	0.774
	기타(비석/물레방아/우물/빨래터)	2.83	0.759
경제활성화 환경 (6개)	체험시설(농촌체험시설/관광농원/지역산업체험시설/전통문화체험시설)	3.43	0.971
	지역특화산업시설(도농교류센터/농특산물판매장/공동소득시설)	3.63	0.850
	관광안내소	2.83	1.053
	문화관광시설(전시박물관/미술관)	3.13	1.074
	휴양시설(산림욕장/야영장/펜션)	3.30	0.952
	빈집/폐교/폐교/유희토지 활용시설	3.30	0.988

다. 각 시설의 개념과의 연관성

1) 생산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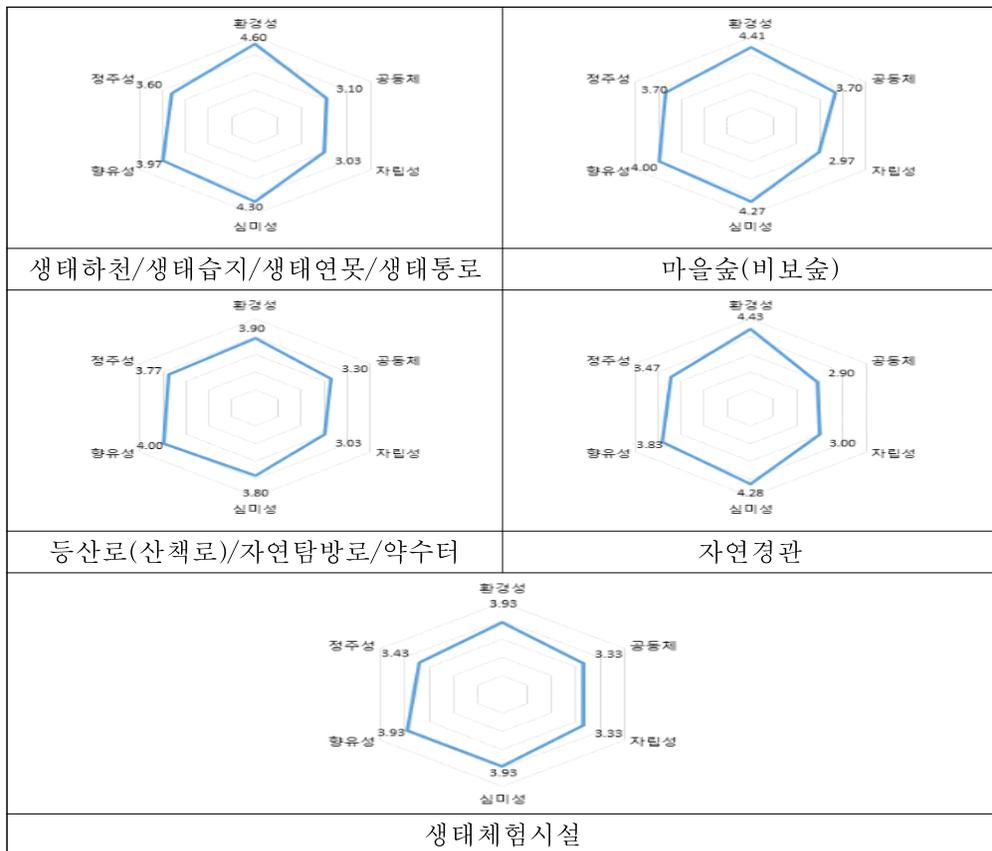
- 생산환경 시설의 중요도조사 결과 기반시설(3.60), 경작지(3.93), 자연기반시설(4.27), 에너지자원활용시설(3.83)에서는 환경성이, 저장가공시설(4.00)에서는 자립성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일반적으로 농촌에서의 생산활동이 공동체성이 높게 나올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으나 실제 결과에서는 저장가공시설, 자연기반시설을 제외한 다른 생산환경 시설에서 공동체성은 다른 항목보다 낮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음



<그림 6-18> 농촌마을 생산환경 시설의 개념에 대한 중요도

2) 자연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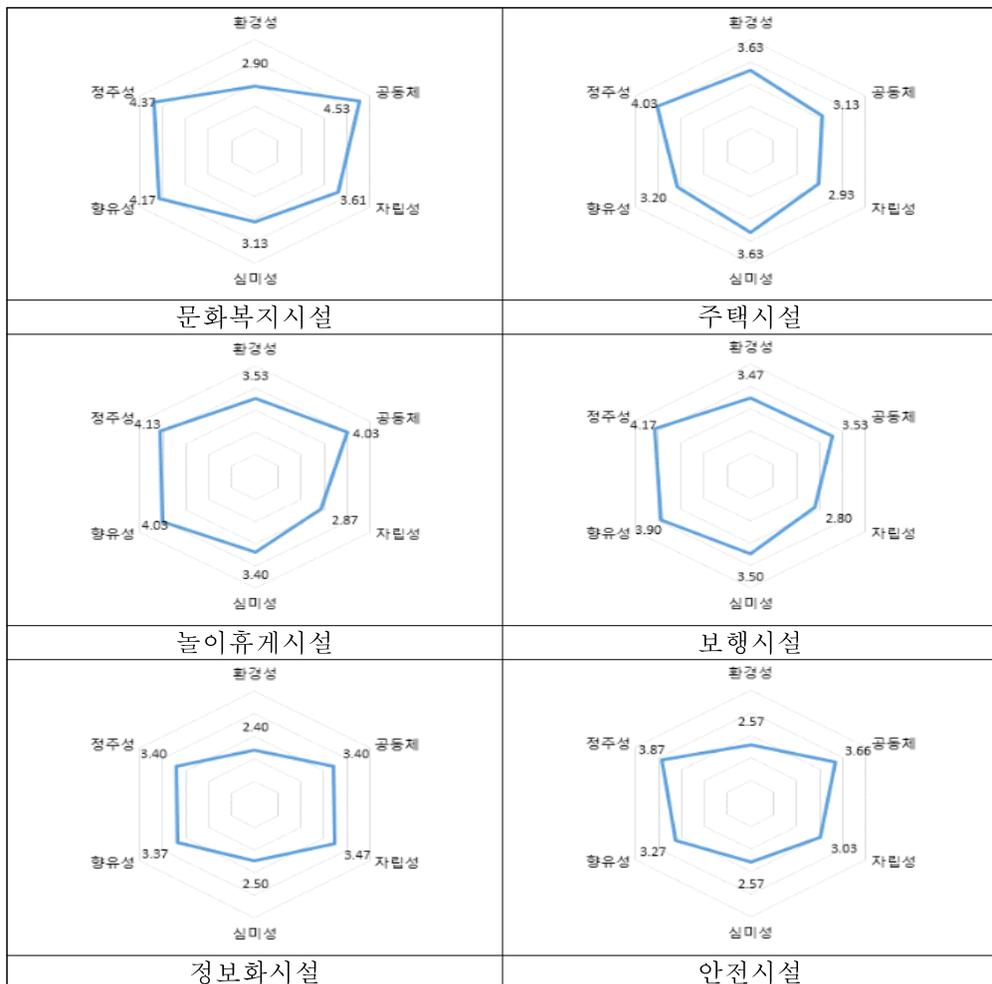
- 자연환경 시설별 개념과의 연관성 조사 결과 생태하천/생태습지/생태연못/생태통로(4.60), 마을숲(비보숲)(4.41), 자연경관(4.43)에서는 환경성이, 등산로(산책로)/자연탐방로/약수터(4.00)에서는 향유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생태체험시설(3.93)에서는 환경성, 심미성, 향유성이 동일하게 높게 나타남
- 자연환경 시설에서 환경성과 심미성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로 보이나, 향유성 또한 공통적으로 높게 나왔다는 것은 자연환경 시설이 자연성이나 심미성 외에도 일상생활에서 향유하는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시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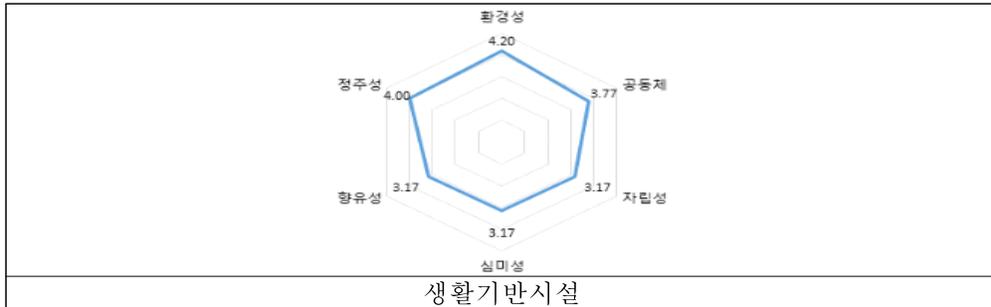


<그림 6-19> 농촌마을 자연환경 시설의 개념에 대한 중요도

3) 생활환경

- 생활환경 시설의 중요도조사 결과 주택시설(4.03), 놀이휴게시설(4.13), 보행시설(4.17), 안전시설(3.87)에서는 정주성, 문화복지시설(4.53)에서는 공동체성, 정보화시설(3.47)에서는 자립성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생활환경은 주거환경과의 연관성이 높으므로 정주성이 가장 높게 나타남. 그 다음으로 중요하게 나타나는 항목은 공동체성이며 대다수 시설에서 환경성보다 공동체성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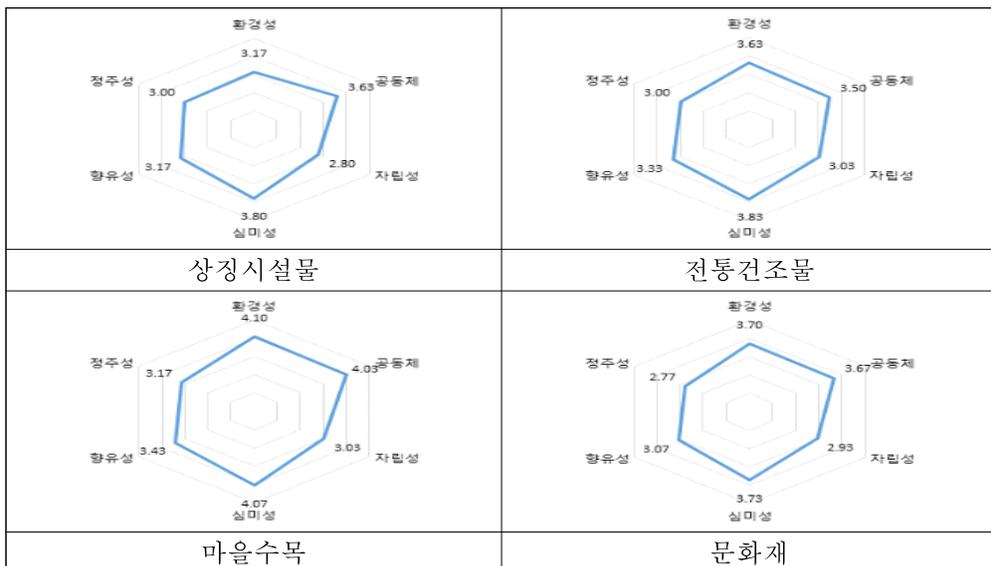




<그림 6-20> 농촌마을 생활환경 시설의 개념에 대한 중요도

4) 역사문화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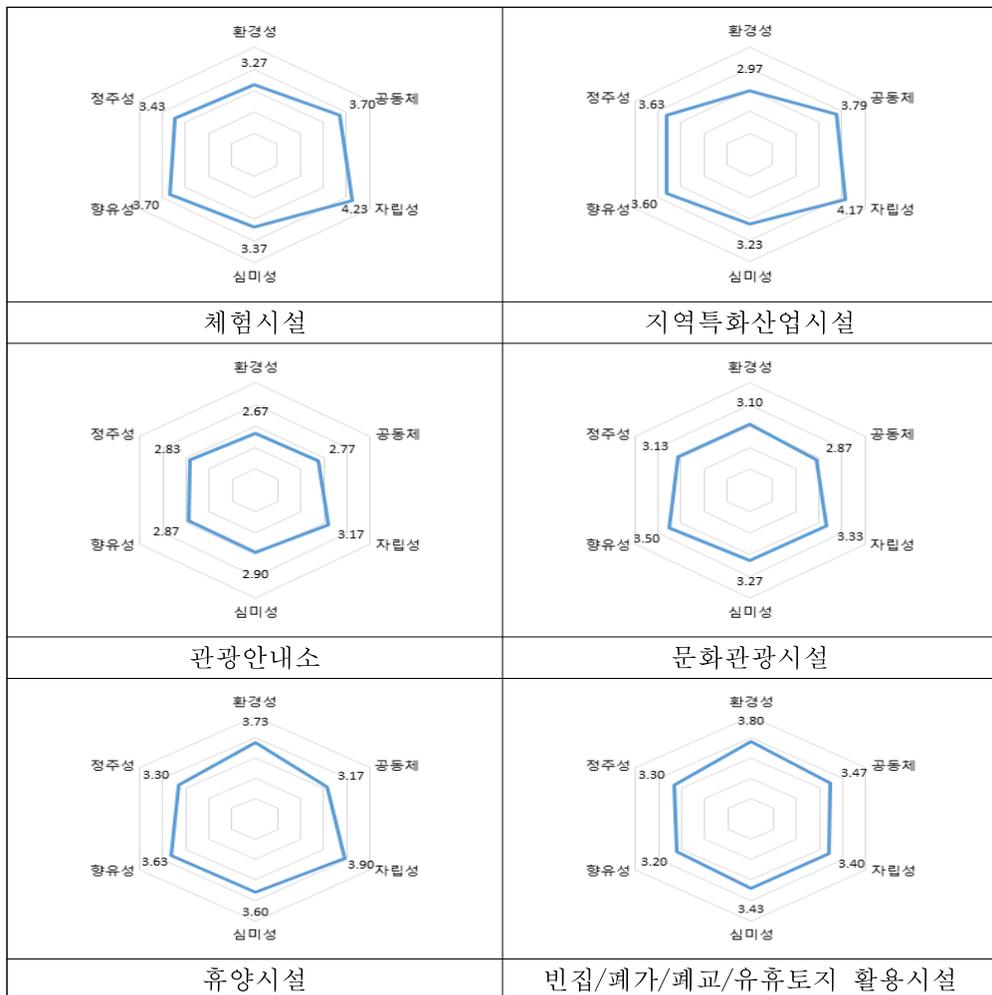
- 역사문화환경 시설의 중요도조사 결과 상징시설물(3.80), 전통건조물(3.83), 문화재(3.73)에서는 심미성, 마을수목(4.10)에서는 환경성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역사문화환경 시설에서는 일반적으로 심미성이 높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역사문화환경 시설이 갖는 시각적인 상징성을 고려할 때 자연스러운 결과로 이해할 수 있음. 주목할 점은 대다수 시설에서 향유성보다 공동체성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임



<그림 6-21> 농촌마을 역사문화환경 시설의 개념에 대한 중요도

5) 경제활성화

- 경제활성화 시설의 중요도조사 결과 체험시설(4.23), 지역특화산업 시설(4.17), 관광안내소(3.17), 휴양시설(3.90)에서는 자립성이, 문화 관광시설(3.50)에서는 향유성, 빈집/폐가/폐교/유희토지 활용시설 (3.80)에서는 환경성이 가장 높게 나타남
- 경제활성화 시설에서 자립성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로 보임. 주목할 점은 대다수 경제활성화 시설에서 향유성과 공동체성 또한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임



<그림 6-22> 농촌마을 경제활성화환경 시설의 개념에 대한 중요도

제7절 핵심 기술요소 선정

1. 평가 결과에 대한 고찰

가. ‘농촌다운 주거환경’ 개념 구성항목별 평가

- 농촌다운 주거환경 개념에 대한 우선순위 평가 결과 상위항목은 1순위 정주성, 2순위 환경성, 3순위 공동체성, 4순위 심미성, 5순위 자립성, 6순위 향유성으로 나타났고, 상위항목별 하위항목은 1순위 대중교통의 편리 및 주요도로·의료교육 등 생활서비스의 접근성 향상(정주성에 해당), 2순위 주거지 주변의 쓰레기 수거 및 오폐수 처리시스템 완비(환경성에 해당), 3순위 자연지형 훼손 최소화를 위한 지형 연속성 확보(환경성에 해당) 등 순으로 나타났음
- 상위항목과 하위항목 모두 기본적인 정주조건에 해당하는 것이 가장 높은 순위를 나타내었음. 또한 하위항목 중 2순위인 주거지 주변의 쓰레기 수거 및 오폐수 처리시스템 완비는 상위항목으로서 환경성에 해당하나, 구체적인 내용은 농촌에서 미비한 주거환경 조건이라 할 수 있음
- 상기 결과를 통해 전문가들이 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항목은 일반적인 주거환경으로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져야 하는 항목임을 확인할 수 있었음. 농촌다운 주거환경을 구성하는 항목 중 도시에 존재하지 않는 농촌 특유의 모습을 반영하는 항목은 상대적으로 낮은 우선순위를 보임. 즉, ‘농촌’다운 주거환경보다 농촌다운 ‘주거환경’이 중요하다는 의미임
- 이러한 결과는 현재의 농촌이 주거환경으로서 매우 열악함을 보여주는 것임. 기본적인 주거환경으로서의 조건을 갖추지 않은 상황에서 농촌 특유의 경관이나 특성을 강조하는 것은 향후 귀농귀촌의 새로운 인구를 유입하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하기 어려우며, 오히려

삶을 영위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을 해결하는 것이 인구 유입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의미함

- 하위항목별 1순위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환경성에서는 주거지 주변의 쓰레기 수거 및 오폐수 처리시스템 완비, 공동체성에서는 공동 참여 증진을 위한 공동시설 확보, 자립성에서는 경제적 지속성 증진을 위한 경제활성화 시설 확대, 심미성에서는 시설입지와 규모 적정성 등을 고려한 통합 토지이용계획 체계 구축, 향유성에서는 문화·판매시설 구축, 정주성에서는 대중교통의 편리 및 주요도로·의료교육 등 생활서비스의 접근성 향상으로 나타났음
- 이러한 결과를 통해 주목할 만 한 점은 첫째, 환경성, 공동체성, 자립성, 정주성 등 대부분의 항목에서 주거환경으로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조건들이 1순위로 나타났음. 여타 하위항목과 비교했을 때 1순위로 나타난 하위항목은 ‘주거환경’으로서의 기본적인 조건에 해당한다는 공통점이 있음. 둘째, 심미성에서 통합 토지이용계획 체계 구축이 1순위로 나타난 것은 농촌관련 사업의 패러다임이 전환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함. 그간 농촌관련 사업이 어메니티 자원 발굴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면, 향후에는 시설입지와 규모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토지이용계획 체계 구축이 중요할 것임. 즉 앞으로의 농촌경관 등의 정책 및 사업은 점적인 자원이나 시설 중심을 넘어 면적 관리가 중요해질 것으로 판단됨

나. 농촌다운 주거환경 시설별 평가

1) 농촌중심지

- 농촌다운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농촌중심지에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시설은 공원녹지시설과 문화복지시설, 가로교통시설 등 순으로 높게 나타남

- 하위항목별 1순위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환경성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시설은 공원녹지시설, 공동체성에서는 문화복지시설, 자립성에서는 상업시설, 심미성에서는 공원녹지시설, 향유성에서는 문화복지시설, 정주성에서는 의료복지시설로 나타났음
- 이들 시설의 공통점은 대다수가 상업시설 등 사적 영역이 아닌 공공 차원에서의 생활환경의 질적 수준과 관련된 시설이라는 것임. 농촌중심지는 농촌마을보다 상대적으로 상업시설·문화시설·의료시설 등의 생활환경이 나은 편에 속하나, 생활환경의 쾌적성 등의 질적 상태는 절대적으로 열악한 편임
- 농촌중심지는 행정구역상 농촌에 소재하나 상업시설 등의 밀집 등 농촌마을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도시에 가까운 성격을 가지고 있음. 문제는 이러한 상업시설 등의 밀집이 무질서한 형태로 이루어지면서 공원녹지시설의 확보나 문화복지시설로의 접근성, 보행로 등 가로교통의 쾌적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점임. 이러한 점에서 상기 우선순위가 높게 나타난 시설의 개선이 절실하다 할 수 있음
- 농촌중심지에서의 생활환경 각 시설의 개념과의 연관성을 검토한 결과 가로교통시설, 문화복지시설 등 대다수 시설에서는 정주성과 향유성이 높게 나타나며, 이는 생활환경의 개념상 자연스러운 결과로 볼 수 있음. 반면, 전반적으로 환경성과 심미성은 매우 낮게 나타났으며,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생활환경의 질적 상태가 매우 열악하여 이를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할 것임

2) 농촌마을

- 농촌다운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농촌마을에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시설로는 마을숲(자연환경시설), 문화복지시설(생활환경시설), 생태하천/생태습지/생태연못/생태통로(자연환경시설), 놀이휴게시설(생활환경시설)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상위 4개 시설에서 자연환경시설과 문화복지시설이 각각 2개씩 차지하고 있어 농촌다운 주거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자연환경시설과 생활환경시설의 구비가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함
- 한편, 상위 4개 중 3개(마을숲, 문화복지시설, 놀이휴게시설)은 모두 공동체와 연관되는 시설로 농촌마을에서 여전히 공동체성이 중요한 요소임을 확인할 수 있음
- 하위항목별 1순위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환경성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시설은 생태하천/생태습지/생태연못/생태통로, 공동체성에서는 문화복지시설, 자립성에서는 체험시설, 심미성에서는 생태하천/생태습지/생태연못/생태통로, 향유성에서는 문화복지시설, 정주성에서는 문화복지시설로 나타났음
- 6개 항목 중 생활환경시설인 문화복지시설이 3개 항목에서, 자연환경시설인 생태하천/생태습지/생태연못/생태통로가 2개 항목에서 가장 중요한 시설로 나타났음. 상기와 마찬가지로 농촌다운 주거환경에서 자연환경시설과 생활환경시설의 조화로운 구비가 중요함을 시사함
- 공동체성과 향유성에서는 농촌중심지와 농촌마을이 공통적으로 문화복지시설이 가장 높게 나타나 문화복지시설이 농촌 전반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그러나 농촌중심지에서는 환경성과 심미성에서 공원녹지시설, 자립성에서는 상업시설, 정주성에서는 의료복지시설이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해 두 지역의 역할과 기대하는 바가 상이함도 확인할 수 있었음
- 농촌마을에서 각 시설의 개념과의 연관성을 검토한 결과 생산환경 시설에서는 전반적으로 환경성과 자립성, 정주성 등이 높게 나타난 반면, 상대적으로 공동체성이 낮게 나타났으며, 자연환경 시설에서는 환경성, 심미성, 향유성이 공통적으로 높게 나타남. 또한, 생활환경 시설에서는 정주성과 공동체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역사문화환경 시설에서는 심미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향유성보다 공동체성

이 높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음. 경제활성화 시설에서는 자립성과 함께 공동체성과 향유성도 높게 나타남

- 각 시설의 공동체성과의 연관성을 검토할 때, 공동체성의 의미가 농업 기반에서 농촌 기반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음. 과거에는 농촌이 농업 중심의 경제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었으며, 이에 따라 농촌정책은 농업정책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음. 그러나 농업과 관련된 생산환경 시설에서는 공동체성이 다른 항목보다 낮게 나타남이 확인된 반면, 생활환경 시설, 역사문화환경 시설, 경제활성화 시설에서는 공동체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이는 최근의 농촌은 농업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공동체의 모습은 약화되는 반면, 생활공동체, 문화공동체 또는 체험시설 등 농업과 직접 연결되지 않은 경제활동을 매개로 한 경제공동체(ex>6차 산업)의 모습이 부각되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음

2. 핵심 기술요소 선정

- 농촌다운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부문별 핵심기술요소는 전문가 AHP분석 결과에 따라 상위 30%에 해당하는 기술목표의 내용을 근거로 농촌 과소화 및 고령화 이슈와 관련된 요소를 추가하여 구성함
 - 우선 고려 대상인 기술목표는 정주성 부문에 생활서비스의 접근성 향상(1순위), 환경성 부문에 쓰레기 수거 및 오폐수 처리시스템 완비(2순위) 및 지형 연속성 확보(3순위), 공동체성 부문에 공동시설확보(4순위), 정주성 부문에 안전사고 예방체계 확립(5순위) 등이 중요하게 나타남
 - 그 밖에 각 영역별로 지형 연속성 확보(환경성), 빈집, 폐교 등 인구 과소화에 따른 유휴시설 활용(공동체성), 경제활성화시설 확대(자립성), 통합적 토지이용 체계 구축 및 중심 가로망의 경관정

체성 확보(심미성), 마을 장소성 발굴(심미성), 여가시설 및 향유서비스의 다양성 증진(향유성), 노령자 친화적 주거환경 구축(정주성) 등이 중요한 요소로 확인됨

- 농촌다운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우선 개선해야 할 공간요소는 앞서 시행된 중요도 분석 결과에 따라 각 영역별 3순위까지 선정함
 - 환경성 부문에서 중심지는 공원녹지와 가로교통시설, 마을은 생태환경과 자연경관이 지형의 연속성 확보와 주거지 환경기반시설 구축에 고려되어야 할 주요 공간요소로 확인됨
 - 공동체성 부문은 공동시설확보와 빈집, 폐교 등 인구과소화에 따른 유휴시설 활용에 있어서 중심지와 마을 모두 문화복지시설이 주요한 공간 요소로 나타남
 - 자립성 부문에서는 경제활성화시설 확대를 위해 상업·금융시설, 체험 및 지역 특화산업시설의 확충이 요구됨
 - 심미성 부문에서 중심지는 공원녹지시설, 가로교통시설 및 문화복지시설, 마을은 생태하천과 자연경관 요소가 통합적 토지 이용 계획과 중심가로망의 경관 정체성 확보, 마을의 장소성 발굴 등과 관련한 주요 공간 요소로 확인됨
 - 향유성 부문은 중심지와 마을 공통적으로 문화복지시설이 여가시설의 다양성 확보와 향유서비스 증진에 주요한 공간요소임
 - 정주성 부문에서는 중심지의 가로교통시설, 마을의 문화복지시설 및 보행시설 등이 생활서비스의 접근성 향상과 안전사고예방, 노령자 친화적 주거환경 구축에 중요한 요소로 나타남

(표 6-44) 농촌다운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핵심기술요소 및 공간요소

구분	기술목표	기술요소	주요공간요소	
			중심지	마을
환경성	지형 연속성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경사면의 공사나 옹벽 토공 회피 - 지형 변곡점에 해당하는 마을 인접 산 가장자리 절개 회피 - 마을 배경 능선(공제선)이나 봉우리-마을로 이어지는 지형 연속성 단절 회피 - 마을 입구부가 넓은 평지인 경우 마을 평균 층수보다 높은 흙쌓기 토공(마을 입구부를 횡으로 가리는 토공) 회피 	공원, 녹지, 도로, 시·유·대개설, 녹가통, 교·통·시설, 및 모시	생태환경(하천, 습지, 연못, 생태로 등), 마을 숲, 자연경관(호수, 산, 계곡 등)
	주거변수의 폐수처리시스템 완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 단위 쓰레기 분리수거장(clean house) 설치와 생물학적 간이오수처리시스템 수거장의 도입 및 미관 개선 - 영농 구역 단위 농업쓰레기 집하장(임시 보관시설) 설치와 시설의 미관 개선 - 마을 혹은 근린 단위 친환경 음식물 찌꺼기 수거 위생 퇴비장 설치 - 자연녹화공법 도입, 수생태복원 등 생태하천 및 농수로 정비 - 정화능력이 높은 수생식물대를 일정 규모 이상으로 조성 -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결된 마을 하수관거 확대 설치 - 축사장 단위 오폐수 및 악취 발생 예방 수처리 시설 설치 		
공동체성	공동시설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 공동시설 활용증대를 위한 위탁 운영 및 관리 프로세스 구축 - 특색 있는 농촌재생을 위한 공동시설 조성 계획 기법 개발 및 적용 	문화복지시설, 교육/보육시설, 운동시설	문화복지시설, 놀이휴게시설, 마을상징물
	빈집, 폐교 등 인구조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 유희시설 유형별 계획·설계 기법 개발 - 지역의 '작은 거점'으로서의 유 		

	에 따른 유희시설 활용	휴시설 재생 모델 개발		
자 립 성	경 제 활 성 화 시 설 확 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희농지 등 농지임차경영 확대 - 식품기업과 농업 간 연계 강화 - 지역에서 생산한 물건 등의 지역 내 소비를 촉진 	상 업 시 설, 금 융 시 설, 문 화 복 지 시 설	저 장 가 공 시 설, 체 험 시 설, 지 역 특 화 산 업 시 설
심 미 성	통 합 토 지 이 용 계 획 체 계 구 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 취락 산지 등 농촌공간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토지이용 체계 확립 - 농촌 공간계획과 개발행위를 연계하는 계획-개발 조정 시스템 도입 - 도시관리계획과 농촌 공간계획의 연동 시스템 구축 	공 원 녹 지 시 설, 가 로 교 통 시 설, 문 화 복 지 시 설	생 태 환 경(하천, 습지, 연 못, 생 태 로 통 등), 마 을 숲, 자 연 경 관(호수, 산, 계곡 등)
	중 심 가 로 망 의 경 관 체 성 과 통 합 확 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심지 생활가로 주변 공공건축물 외관 재질 색채 조명 간관 조경의 통합성 확보 - 중심가로의 보도 차도 가로수 간관 편의시설의 통합적 설계와 운영 체계 마련 - 중심가로에서의 빈집, 폐교 등 유희시설 관리 - 가로 주변 지역 고유의 장소감을 살린 오픈스페이스 조영 기법과 네트워크 구축 - 지구단위계획, 가로설계, 건축·조경설계-시설물 환경디자인 간의 통합 운영 시스템 완비 		
	마 을 의 장 소 성 발 굴 과 유 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소성을 온전히 간직한 공간의 형태·배치·맥락화·조경 기법의 확립 - 마을 입구부의 장소성을 실현하는 보전 및 복원 기법 확립 - 전통적 마을 공간구조 및 시퀀스(공간연결의 연속성) 정비 체계 마련 - 마을의 역사문화적 스토리텔링에 기반한 공간디자인 기법 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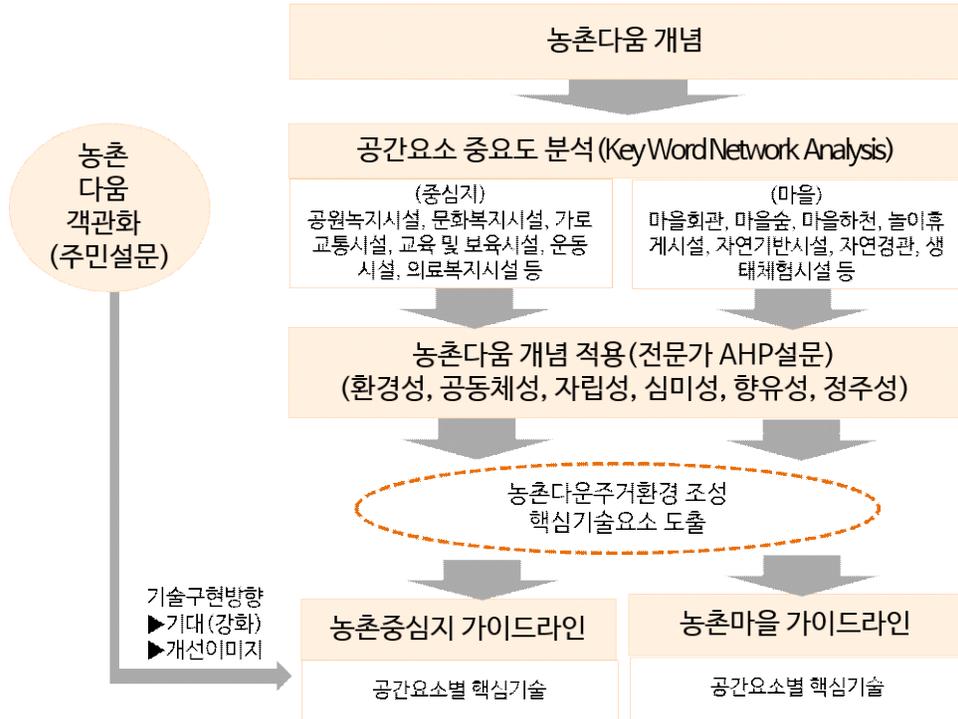
향유성	여가시설 다양성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 생활권 체계별 여가시설 종류와 규모 배치·운영 시스템 마련 - 인구 특성과 이용행태 분석에 기초한 여가시설·프로그램 도입 계획 마련 - 이용자 활동 분석에 의한 농촌형 여가공간 계획·설계 기법 개발과 보급 	문화복지시설, 운동시설, 공원녹지시설	등산로, 자연탐방로, 약수터, 문화복지시설, 놀이휴게시설
	향유서비스의 다양성 증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령층, 성별, 출신국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향유 활동 개발 - 인구적 특성을 감안한 향유서비스 전달 체계 마련 - 농촌 향유프로그램의 개발: 프로그램 다양성 평가 		
정주성	생활서비스의 접근성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서비스 접근 동선(교통) 확보 - 온라인(모바일 포함)을 통한 가상서비스 접근 기술 개발 - 노약자 및 소수자를 위한 서비스 접근 체계 확보 	의료복지시설, 가로교통시설, 교육/보육시설	문화복지시설, 놀이휴게시설, 보행시설
	안전사고 예방 체계 확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행자 안전과 편의를 구비한 도로구조 설계 기준 마련 - 노인 및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편의 시설 설치 기준 마련 - 농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행동 가이드라인 적용 		
	노령자 친화적 첨단서비스 주거 환경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령자 친화적 스마트 시스템 인터페이스 환경 구축 - 과소화 노령 인구에 적합한 원격 생활서비스 시스템 모델 구축 - 노령화 대비 마을·중심지 단위별 첨단 통신환경 구축 		

제7장 농촌다운 주거환경 조성 기술요소
적용 방안

제7장 농촌다운 주거환경 조성 기술요소 적용 방안

제1절 적용 방향

- 농촌다운 개념정의를 통해 나온 6개의 구성항목(환경성, 공동체성, 자립성, 심미성, 향유성, 정주성)을 바탕으로 농촌다운 주거환경조성을 위한 공간요소 도출 및 공간요소별 농촌다운 구성항목의 중요도 분석결과를 반영하여 적용방안을 개발함
- 본 연구에서는 농촌다운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분석된 공간요소에 대한 적용방안 개발
 - 농촌주거환경 관련 선행연구를 대상으로 빈도분석 및 키워드네트워크 분석(연도별 키워드분석, 동시출현빈도 분석, 중심성 분석 등)을 실시하여 농촌중심지와 농촌마을에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공간요소를 도출
 - 도출된 공간요소에 대하여 농촌다운 개념 항목을 적용하였을 때 중요도에 대한 전문가분석을 실시하여 농촌중심지와 농촌마을로 구분하여 공간요소에 대한 종합적인 순위결정
 - 공간구성요소별 상위그룹에 대하여 각각 중요하다고 분석된 농촌다운 개념 항목 중심으로 적용방안 작성
- 이때, 적용방법을 보존, 복원, 정비, 창출로 구분하고 4장에서 제시하는 농촌다운 객관화 내용을 반영하여 적용방안 작성



<그림 7-1> 농촌다운 주거환경 조성기술 적용

(표 7-1) 농촌다움을 지향한 주거환경 조성기술의 적용방향(중심지)

공간요소 농촌 다움개념	공원녹지시설	문화복지시설	가로교통시설
정주성	-	세부기준	세부기준
환경성	세부기준	-	세부기준
공동체성	세부기준	세부기준	-
심미성	세부기준	세부기준	세부기준
향유성	세부기준	세부기준	-

주 : 각 공간요소별로 중요하다고 분석된 농촌다운 개념 항목을 중심으로 세부기준 도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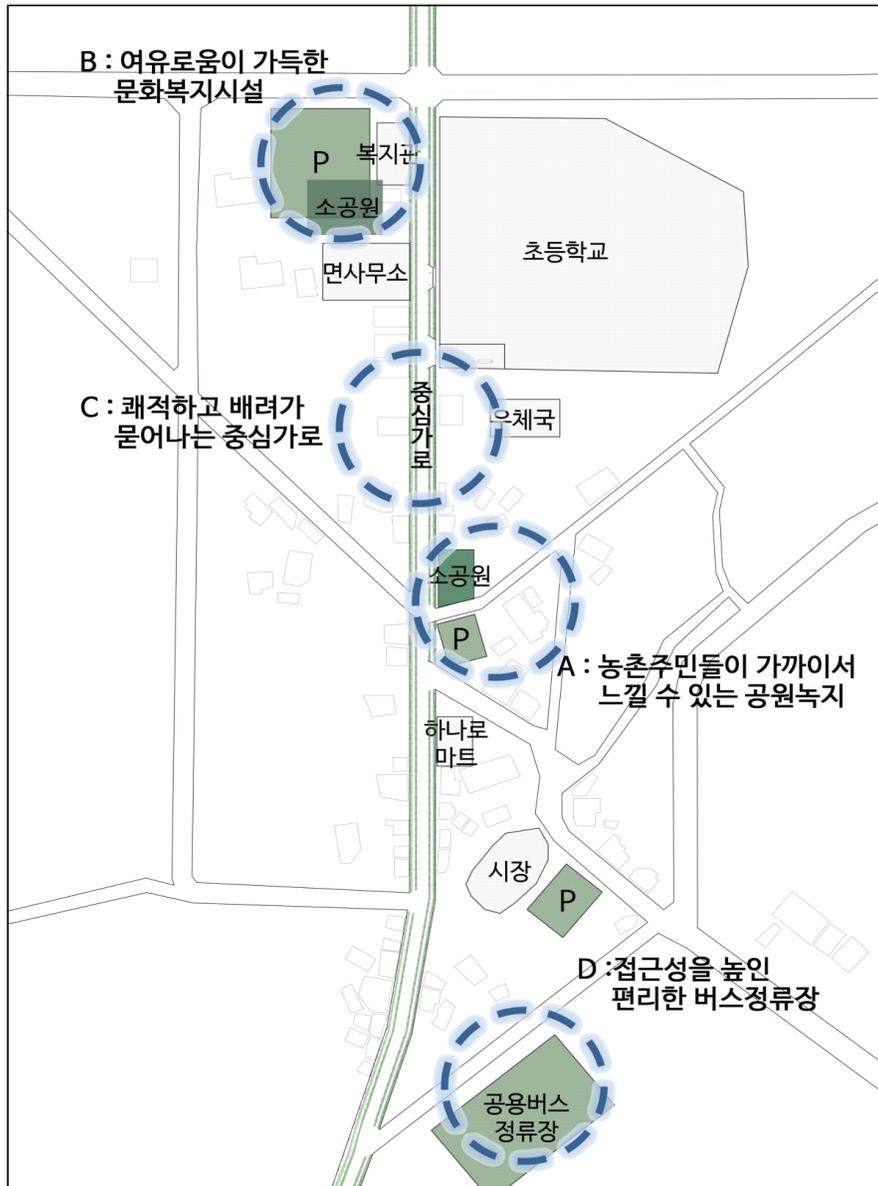
(표 7-2) 농촌다움을 지향한 주거환경 조성기술의 적용방향(마을)

공간요소 농촌 다움개념	마을회관/경로당	마을숲	마을하천
정주성	세부기준	-	-
환경성	세부기준	세부기준	세부기준
공동체성	세부기준	-	-
심미성	세부기준	세부기준	세부기준
향유성	-	세부기준	세부기준

주 : 각 공간요소별로 중요하다고 분석된 농촌다운 개념 항목을 중심으로 세부기준 도출.

제2절 농촌중심지 적용 방안

1. 기본방향



<그림 7-2> 농촌중심지에 대한 적용방향

A : 농촌주민들이 가까이서 느낄 수 있는 공원녹지

- 농촌중심지로 인해 단절된 녹지가 연속적 망을 형성할 수 있도록 가능한 많은 공원녹지를 확보함
- 다양한 연령대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을 조성
- 중심지내에 장소성을 간직한 녹지공간을 발굴하고 유지해나감

B : 여유로움이 가득한 문화복지시설

- 출신, 연령, 성별에 상관없이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 질 수 있는 공간 조성
- 문화복지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용버스정류장에서 순환버스 도입이나 도보접근이 가능하도록 함
- 문화복지시설 옥외공간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녹지로 조성하여 장소성을 높임

C : 쾌적하고 배려가 묻어나는 중심가로

- 고령자는 물론 어린이, 유모차, 장애인 등 어느 누구든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
- 농촌중심지에서 끊어진 녹지의 연속성을 살려 쾌적한 중심가로로 정비
- 지역의 고유한 감성을 반영한 중심가로를 조성

D : 접근성을 높인 편리한 버스정류장

- 배후마을에서 중심지 및 타지역으로 이동을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공용버스정류장 확충
- 공용버스정류장을 중심으로 근거리 의료, 판매 서비스 등을 집중
- 시장 등 주민들이 많이 찾는 생활서비스시설에 순환버스 도입 등 접근성을 높임



<그림 7-3> 농촌중심지에 대한 농촌다움 주거환경 기술 적용 가상도

2. 공간요소별 지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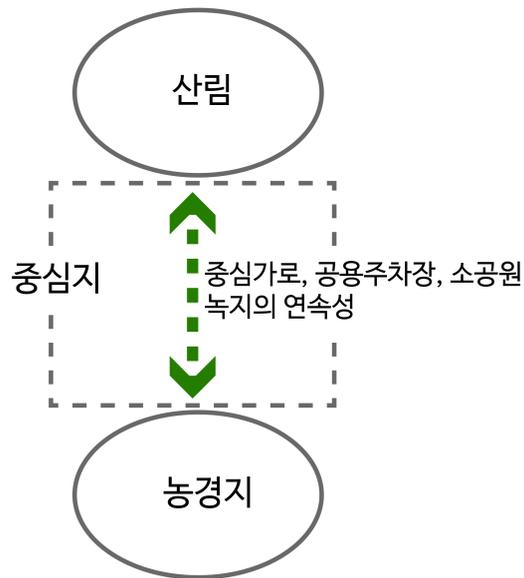
A. 농촌주민들이 가까이서 느낄 수 있는 공원녹지

① 환경성

기본속성	환경성	하부속성	생태성
기본지침	중심지에서 단절된 녹지의 연속성을 확보		
적용방법	강화	보전	복원 ○ 창출
		개선	정비

- 산과 들, 하천으로의 접근성이 좋다는 이유로 농촌중심지에 녹지보전이나 공원조성 등을 등한시 해온 결과 현재의 농촌중심지는 도시 지역보다 녹지율이 떨어지는 공간으로 변모함

- 산과 들로 이어지는 녹지의 연속성을 복원하기 위하여 중심가로에는 화단과 가로수를 조성하고 공영주차장 등을 생태주차장으로 전환
- 잡초가 무성한 건물 사이의 자투리땅이나 주차장의 구석진 장소, 학교운동장 주변의 공지들도 적절한 ‘계획’을 통해 공원화 하는 것이 바람직함



<그림 7-4> 농촌중심지에서 단절된 녹지의 연속성 확보 개념



- 중심지 가로에도 녹지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화단 등을 조성함
- 중심가로변 건축물의 경우, 지역특성에 맞는 색채를 도입
- 고령자들을 위하여 보도와 차도의 단차를 없애는 것을 적극 검토

<그림 7-5> 농촌중심지 공원녹지 관련 시뮬레이션 1



-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공간의 일부를 활용하여 소규모 공원을 조성함
- 기존 주차장은 생태주차장으로 조성함

<그림 7-6> 농촌중심지 공원녹지 관련 시뮬레이션 2



- 중심지에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면사무소의 주차장을 생태주차장으로 적극 조성함
- 침엽수보다 낙엽활엽수의 식재를 권장하며, 나무를 활용한 주민 휴게공간(한뼉공원) 등을 조성

<그림 7-7> 농촌중심지 공원녹지 관련 시뮬레이션 3

② 향유성

기본속성	향유성		하부속성		다양성	
기본지침	다양한 연령대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조성					
적용방법	강화	보전	복원	창출	○	개선 정비

- 농촌중심지 내부에 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을 적극 조성함
- 읍면소재지 주거용지(주거, 상업용지)에서 상주인구 1인당 3㎡ 이상 공원 또는 녹지를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함⁷⁰⁾
- 생활권공원으로서 소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을 설치하여 다양한 연령대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소공원: 소규모 토지를 이용하여 도시민의 휴식 및 정서 함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
 - 어린이공원: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
 - 근린공원: 근린거주자 또는 근린생활권으로 구성된 지역생활권 거주자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
- 공원을 관리하기 위하여 시장·군수는 범죄 또는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공원내 주요지점에 CCTV와 비상벨 등을 설치하도록 함
- 공원을 중심으로 다양한 행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를 공원계획에 적극 반영함



<그림 7-8> 농촌중심지내 공원녹지관련 시물레이션 4

70)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4조 및 별표 2의 그 밖의 개발계획의 녹지확보 기준 적용.

③ 심미성

기본속성	심미성		하부속성		장소성	
기본지침	기억을 간직하고 장소성이 있는 녹지공간을 보전					
적용방법	강화	보전	○	복원	창출	개선 정비

- 농촌중심지에서 장소성을 간직한 녹지공간을 보전하고 유지해나가며, 많은 사람들이 즐겨 찾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함
- 대상공간에 주민들의 요구나 사회적 양식(social pattern)을 반영하는 주민참여형 계획을 수립



- 보호수 아래 한뼘공원을 조성하여 휴게공간으로 활용하며, 농촌중심지의 장소성을 부각함

<그림 7-9> 농촌중심지 공원녹지 관련 시플레이션 5

B. 여유로움이 가득한 문화복지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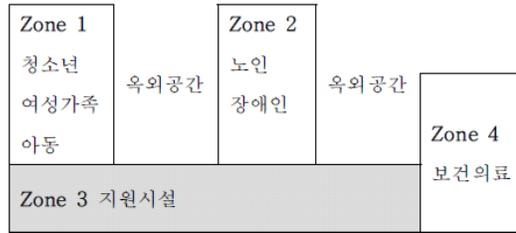
① 향유성

기본속성	향유성		하부속성		다양성	
기본지침	출신, 연령, 성별에 상관없이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 질 수 있는 공간 조성					
적용방법	강화	보전	복원	창출	개선	정비 ○

- 문화복지시설간 복합화를 할 경우, 이용자의 복합화 선호도를 고려하여 배치하고, 물리적·공간적 배려가 필요함⁷¹⁾

71) 권순정 외(2010),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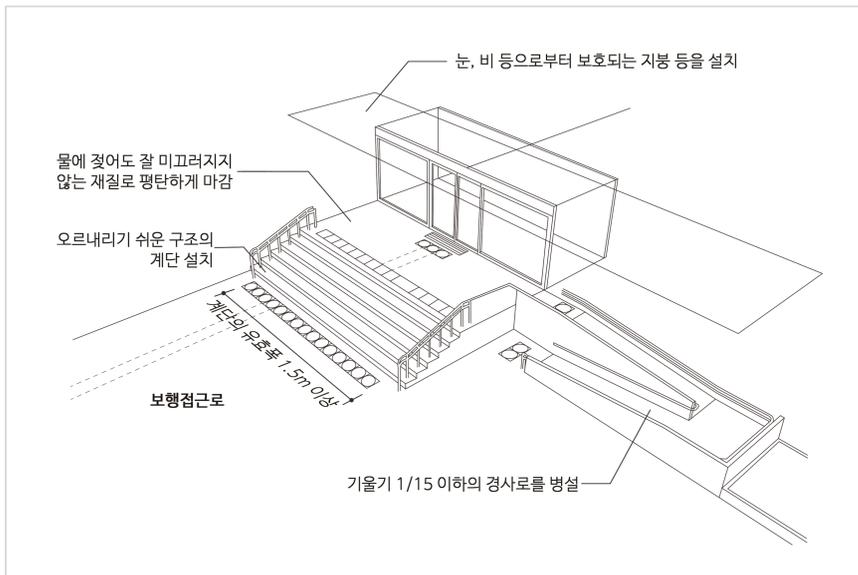
- 청소년, 여성가족, 아동관련 시설을 복합화
- 노인, 장애인 시설을 복합화



자료 : 권순정 외(2010).

<그림 7-10> 복합복지시설의 시설별 조닝계획

- 노약자, 다문화가정, 여성, 장애인 등 접근제한 그룹을 배려한 프로그램 마련
- 문화복지시설에 유니버설 디자인 기법을 도입



자료 : 경기도(2011).

<그림 7-11> 문화복지시설 진입부의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② 정주성

기본속성	정주성	하부속성	편리성
기본지침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순환버스 등 도입		
적용방법	강화	보전	○

- 여가시설 및 활동에 대한 물리적 접근성 향상 방안 마련을 위하여 버스공영터미널에서 출발하는 주요 생활서비스시설간 순환버스(저상형) 등을 도입함

③ 심미성

기본속성	심미성	하부속성	장소성
기본지침	주민들의 생활거점이 될 수 있도록 함		
적용방법	강화	보전	○

- 주민의 모임, 행사, 이벤트 등을 지원하기 위한 다목적 야외녹지공간을 조성



- 중심지에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주요 문화시설에 소공원, 어린이공원, 작은 목욕탕 등을 복합화 함
-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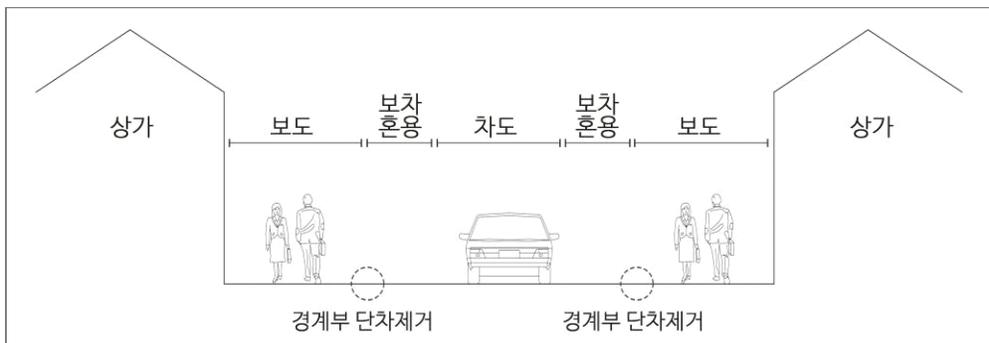
<그림 7-12> 농촌중심지 문화복지시설 관련 시뮬레이션 1

C. 쾌적하고 배려가 묻어나는 중심가로

① 정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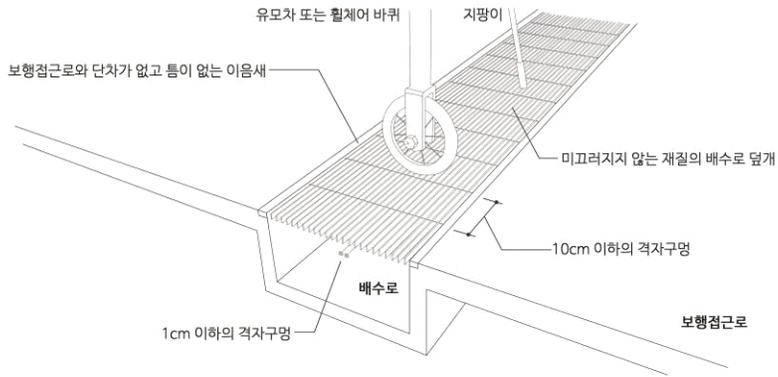
기본속성	정주성	하부속성	신뢰성
기본지침	고령친화 가로환경을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		
적용방법	강화	보전	복원
		창출	개선
			정비
			○

- 농촌중심지를 방문하는 모든 보행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연속적인 통행동선을 확보해야 하며, 가급적 경사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
- 고령자는 물론 어린이, 유모차, 장애인 등 어느 누구든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단차 없는 보도, 턱нат추기 등의 정비를 시행함
- 기존 도로의 확폭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도의 유효폭을 1.5m 이상 확보해야 하며, 유모차 등이 교행할 수 있도록 2.0m 이상 확보할 것을 권장함⁷²⁾
- 주민들의 이용 빈도가 높은 중심가로에는 고령자 등이 쉬어갈 수 있는 벤치나 공간을 적극적으로 확보함
- 가로에 설치되는 배수로에는 유모차나 휠체어바퀴, 지팡이 등이 빠지지 않도록 10cm이하의 격자구멍이 될 수 있도록 함



<그림 7-13> 차도 및 보행로의 경계부 단차제거

7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16조 3항.



자료 : 경기도(2011).

<그림 7-14>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된 배수로 덮개

② 환경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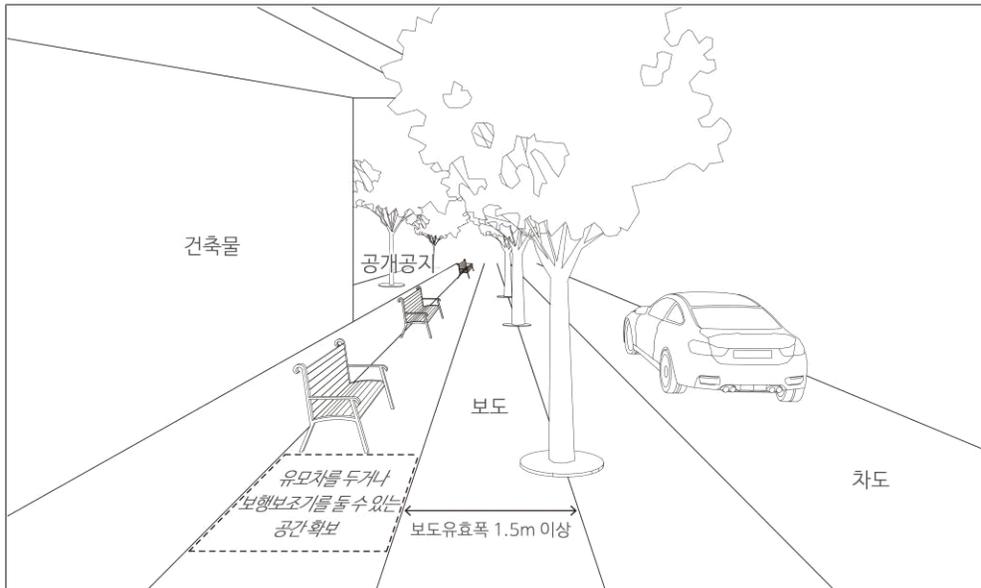
기본속성	환경성		하부속성		생태성		
기본지침	녹지의 연속성을 살리고 가로변의 적치물을 정리						
적용방법	강화	보전	복원	창출	개선	정비	○

- 공원녹지의 연속성을 살리기 위해 가로수를 조성할 경우, 그 지역에 적합한 테마수종을 선정하여 특색 있는 가로를 연출함
- 상점가 적치물을 관리하고 불필요한 가로 시설물을 정비하여 상점가 보행의 쾌적성을 높임
- 가로에 있는 소규모 유향 공간(dead space)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가로 주변 지역 고유의 장소감각을 살린 오픈스페이스를 조성하고 연결성을 확보

③ 심미성

기본속성	심미성		하부속성		경관미		
기본지침	중심가로는 지역의 고유한 감성을 반영시킴						
적용방법	강화	보전	복원	창출	개선	정비	○

- 건축물 마감벽의 노후화와 관리 소홀, 빈점포 등으로 인한 경관훼손을 개선하기 위한 주민참여형의 디자인개선사업 등의 시행을 권장함
- 지역의 역사성, 인물, 상인과 상품 등의 자원에서 지역의 스토리를 발굴하여 지역성을 제고
- 지역성이 잘 드러나게 상점가의 브랜드를 개발하고 가로 장치물, 바닥포장 등에 표시하여 가로의 역사성을 알림
- 지역의 특화된 건축물의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여러 점포가 하나의 건축재료와 건축물형태로 리모델링하도록 유도하면 상점가의 아이덴티티가 되고 브랜드가 됨
- 중심지 생활가로 주변 공공건축물 외관, 재질, 색채, 조명, 간판 조정의 통합성 확보
- 가로시설물은 필수 시설만을 최소한으로 배치
- 야간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가로시설물은 조명 일체형으로 계획하고 가로등, 사인 등을 도입



<그림 7-15> 중심가로 종합도



- 차도와 보도의 경계부의 단차를 없애고 보차혼용구간을 두어 고령자들의 이동성을 높이고 벤치 등 휴게시설을 도입
- 가로수나 화단을 적극적으로 조성하여 녹지의 연속성을 살림

<그림 7-16> 농촌중심지 중심가로 관련 시뮬레이션

D : 접근성을 높인 편리한 버스정류장

① 정주성

기본속성	정주성	하부속성	편리성
기본지침	배후마을의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공용버스정류장 설치		
적용방법	강화	보전	복원
		창출	○ 개선 정비

- 읍면소재지에는 공용버스정류장을 가급적 설치하도록 함
- 도로접근성, 상가와의 접근성, 관련시설의 인접성, 부지규모와 법적 타당성을 고려하여 몇 개의 대안 중 적합한 곳에 공용버스정류장 입지를 결정
-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신규로 설치하거나 이전할 경우, 면·읍사무소 인근보다 공용버스정류장 인근에 설치하는 것을 권장함⁷³⁾
- 공용버스정류장을 중심으로 병원, 요양센터 등 의료시설이 집중될 수 있도록 함
- 주차장 시설에 인접하여 화장실 고객서비스시설과 안내시설이 함께 배치되는 것이 좋음
- 주민들이 자주 방문하는 생활서비스 거점에는 버스정류장을 설치하고 순환버스(저상형) 도입 등을 통하여 접근성을 높임

73) 읍면단위별로 1개소씩 설치되는 보건지소의 경우 면사무소에 복합시설로 되어 있거나, 면사무소 인근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음. 실제 익산시의 보건지소를 연구한 결과를 보면, 15개의 보건지소 중 면사무소 복합시설은 3개소를 포함하여 면사무소 반경 200m내 13개소가 위치한 것으로 나타남. 또한 65세 이상 고령자의 복합만성질환자가 관절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 도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이동숙·김은영·윤충열(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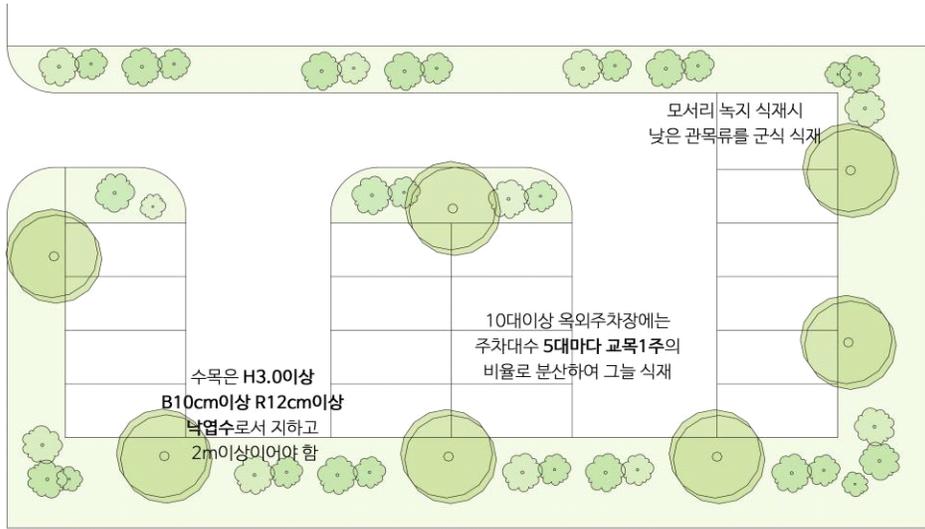
- 읍면소재지에는 공용버스정류장을 가급적 설치하도록 함
- 공용버스정류장을 중심으로 병의원, 요양센터 등 의료시설이 집중될 수 있도록 함
- 생활 SOC인 공용버스정류장은 생태주차장으로 구성하고 주민들을 위한 휴식공간 등을 확보
- 안전한 보행통로 확보

<그림 7-17> 농촌중심지 공용버스정류장 관련 시뮬레이션

② 환경성

기본속성	환경성		하부속성	생태성		
기본지침	생태주차장으로 조성하여 녹지의 연속성을 살림					
적용방법	강화	보전	복원	창출	개선	정비 ○

- 중심지내 공용주차장은 생태주차장으로 조성하고 주민들을 위한 휴식공간 등을 확보
- 안전한 보행통로 확보
- 주차 인접공간에는 나무수액(청단풍 등)이나 열매가 떨어지지 않는 수종 선정
- 10대 이상의 옥외 주차장에는 지상 주차대수 5대마다 교목 1주의 비율로 분산하여 그늘식재
- 수목은 H3.0 이상 B10cm 이상, R12cm 이상 낙엽수로서 지하고 2m 이상이어야 함
- 모서리 녹지 식재시 교목류는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모서리에서 후퇴하여 식재하고 나무 높이가 낮은 관목류를 균식하여 식재



<그림 7-18> 주차장 식재방식

(표 7-3) 주차장 도입가능 수목

주차장도입 수목		
구분	수종	
중부	교목	주목, 이팝나무, 느티나무, 회화나무, 산수유, 칠엽수
	관목	연산홍, 산철쭉, 백철쭉, 회양목, 매자나무, 명자나무, 수수꽃다리
남부	교목	아왜나무, 동백나무, 후박나무, 언나무, 서부해당화
	관목	치자나무, 남천, 목서, 돈나무, 팽팽나무

자료 : 서주환 외 11인(2015).



<그림 7-19> 농촌중심지 버스정류장 관련 시뮬레이션

제3절 농촌마을 적용 방안

1. 기본방향



<그림 7-20> 농촌마을에 대한 적용방향

A : 마을의 상징적 공간인 마을회관

- 마을의 중심에 위치하며 다양한 계층이 여러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함
- 농촌마을 고유의 정서를 표현할 수 있도록 마을회관 신축 및 정비 시 반드시 외부공간계획을 함께 수립함
- 마을회관 인근에 재활용쓰레기 분리수거장을 설치하여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

B : 자연생태계가 건강한 마을숲

- 전원주택 등 개발행위시 마을을 감싸고 있는 숲의 자연지형 훼손을 최소화함
- 마을어귀를 중심으로 농촌고유의 파노라마 경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집중관리지역을 설정함
- 마을간 옛길 등을 이용한 산책로를 조성하여 마을주민들이 건강과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함

C : 깨끗하고 푸르른 마을하천(도랑)

- 마을하천(도랑)으로 흘러드는 오폐수를 적극적으로 차단하고 수질정화식물 등을 식재
- 쓰레기 치우기, 교란생물 제거, 오염토 준설, 불필요한 시설물 철거, 수량관리 등을 통해 마을하천(도랑) 생태계를 복원함
- 마을하천(도랑)의 수량을 확보하여 원래 하천의 모습으로 복원함
- 마을하천(도랑)을 중심으로 마을공동체 활동이 가능한 친수공간 조성



<그림 7-21> 농촌마을에 대한 농촌다움 주거환경 기술 적용 가상도

2. 공간요소별 지침

A : 마을의 상징적 공간인 마을회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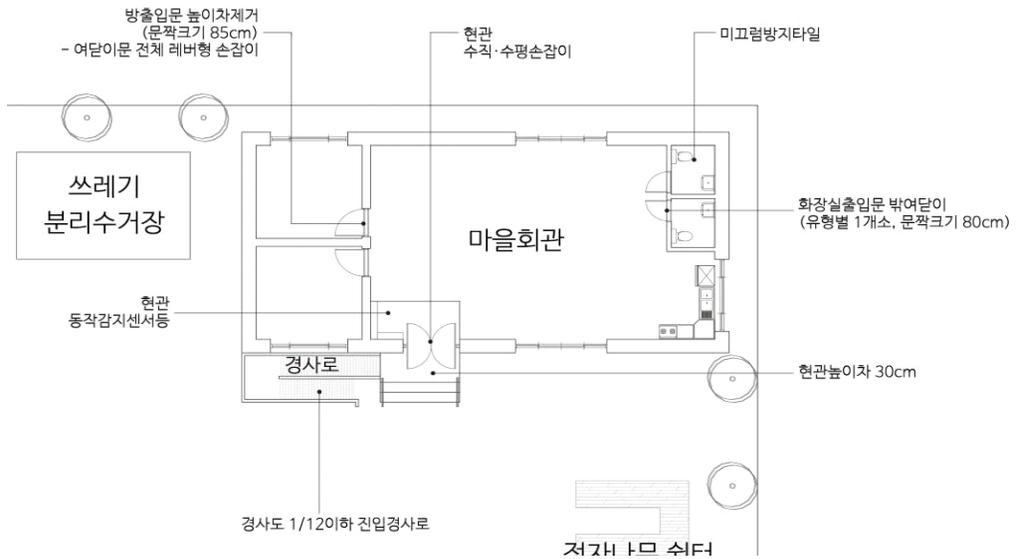
① 정주성

기본속성	정주성	하부속성	편리성
기본지침	마을의 중심성을 가지고 다양한 계층과 프로그램을 수용		
적용방법	강화	보전	복원
			창출
			개선
			정비
			○

- 마을중심부에 위치하도록 하여 접근성을 높이고, 복합기능(경로당, 주민지원센터, 정보화시설, 다문화주민 사랑방 등)공간으로 조성하여 이용률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계획함
- 마을회관을 신축하거나 정비할 시, 마을주민의 휴게 및 행사장소 등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외부공간계획을 반드시 함께 수립함
- 마을회관 입구에 마을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것을 권장함
 - 마을의 이름, 마을주요시설의 위치, 마을의 여러자원, 마을의 특성 등 마을의 전반적인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지도를 부착하여 제작함
- 마을회관 신축시 건축면적규모는 다음과 같음
 - : 마을회관 건축면적=93.15m²+(0.51x가구수)⁷⁴⁾

기본속성	정주성	하부속성	신뢰성
기본지침	다양한 연령층을 배려한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		
적용방법	강화	보전	복원
			창출
			개선
			정비
			○

- 다양한 연령층이 이용함에 따라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하여 이용의 편의성을 높임
- 마을회관 내부 방출입문은 턱이나 높이차이를 제거하고 문짝크기는 85cm⁷⁵⁾를 권장하며, 여닫이문 전체는 레버형 손잡이 설치를 권장함
- 현관의 높이차는 30cm이하로 하며, 현관문의 경우 수직·수평손잡이를 설치할 것을 권장함
- 화장실출입문은 밖여닫이로 하고 문짝 크기는 80cm⁷⁶⁾를 권장하며, 바닥에는 미끄럼방지타일을 설치함
- 마을회관에 단차가 있을 경우, 경사로를 경사도 1/12⁷⁷⁾ 이하로 설치할 것



<그림 7-22> 마을회관에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74) 서주환외 11인(2015).
 75) 한국농어촌공사(2015).
 76) 상동
 77) 상동

② 심미성

기본속성	심미성		하부속성	장소성			
기본지침	마을정체성을 보전						
적용방법	강화	보전	복원	○	창출	개선	정비

- 외부공간에 마을의 중심 커뮤니티 공간이면서 상징공간이 될 수 있도록 기존의 정자나무를 활용하거나 마을주변의 수종(교목)을 선정하고 새롭게 식재하여 향후 정자목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함
- 휴게공간에 도입되는 시설은 목재, 석재 등 자연적인 소재를 이용한 시설물을 선정하여 도입
- 충분한 그늘이 조성되도록 녹음수를 식재하여 여름에 벤치 주위에는 풍부한 그늘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마을별 특성과 주민이 선호하는 여가활동에 맞는 적정규모와 도입 시설을 결정
- 복합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공간의 다양한 배치를 유도하고, 각각의 공간별로 도입될 시설은 연령 특성을 고려하여 조성

(표 7-4) 마을회관 외부에 조성되는 휴게시설에 도입가능한 수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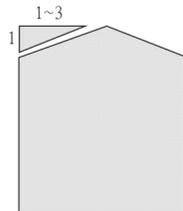
마을회관 외부 휴게시설 도입 수목		
구분	수종	
중부	교목	감나무, 매화나무, 살구나무, 배롱나무, 꽃사과, 모과나무, 느티나무, 이팝나무, 중국단풍, 층층나무, 회화나무, 청단풍, 백목련, 홍단풍, 자귀나무, 산사나무, 산딸나무, 매죽나무, 복자기
	관목	영산홍, 산철쭉, 백철쭉, 화양목, 매자나무, 명자나무, 병꽃나무, 수수꽃다리, 황매화
남부	교목	아왜나무, 동백나무, 후박나무, 언나무, 서부해당화, 석류
	관목	치자나무, 남천, 목서, 돈나무

자료 : 서주환외 11인(2015).

③ 심미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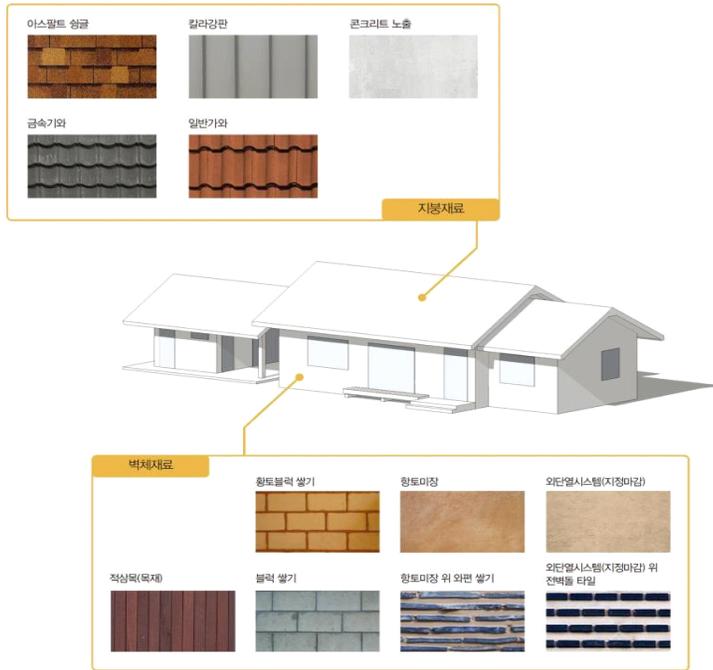
기본속성	심미성	하부속성	경관미
기본지침	농촌마을 고유의 정서를 표현		
적용방법	강화	보전	복원 ○ 창출 개선 정비

- 마을회관의 경우, 가능한 경사지붕 조성 등을 통해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함
- 경사지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르는 것을 권장함
 - 용마루를 가지는 완전한 경사지붕을 원칙으로 함
 - 경사지붕의 구배는 세로: 가로 비율이 1:1~1:3이 되도록 함⁷⁸⁾
 - 계단실 등 옥탑구조물 설치시 경사지붕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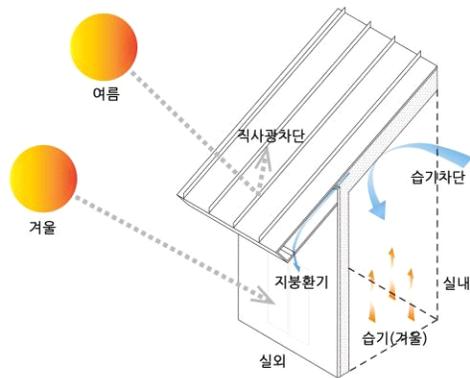
<그림 7-23> 마을회관 경사지붕 구배

78) 광교신도시, 동탄2신도시, 김포한강신도시 단독주택지 지구단위계획지침.



자료 : 한국농어촌공사(2015).

<그림 7-24> 마을회관 경사지붕 마감재 예시



자료 : 한국농어촌공사(2015).

<그림 7-25> 마을회관 경사지붕 기능

- 주변환경과 어울리는 색채, 친환경 마감재료 사용, 경사지붕 조성 등을 통해 주변 경관을 배려함

도시근교 농촌마을

예시색상표



평야부 농촌마을

예시색상표



신간부 농촌마을

예시색상표



도서어촌 농촌마을

예시색상표



강촌마을

예시색상표



자료 :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2010).

<그림 7-26> 마을회관 색채 예시

④ 환경성

기본속성	환경성		하부속성		쾌적성		
기본지침	쓰레기 분리수거시설 설치						
적용방법	강화	보전	복원	창출	개선	정비	○

- 마을 외부에는 비가림막과 차폐가 가능한 쓰레기 분리수거장을 갖추도록 함
- 쓰레기 분리수거장의 관리주체를 마을에서 명확히 하여 실용적인 관리가 되도록 해야 함



- 마을회관 외부공간에 방치되고 있는 쓰레기 분리수거시설을 농촌현실에 맞게 비가림막이 있는 재활용쓰레기 분리수거장으로 정비함

<그림 7-27> 농촌마을 마을회관 관련 시뮬레이션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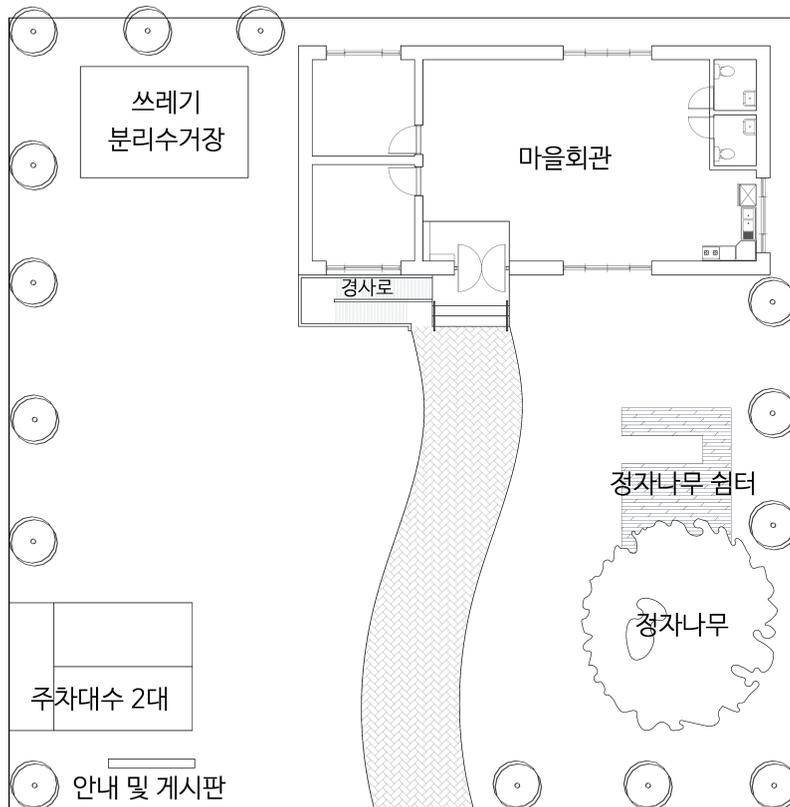
기본속성	환경성		하부속성		순환성		
기본지침	유지관리측면에서 에너지 효율성을 높임						
적용방법	강화	보전	복원	창출	개선	정비	○

- 마을회관을 신축하거나 정비할 시 유지·관리 측면을 고려하여 단열 효과가 우수하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재료를 선정함
- 마을회관은 고단열시공을 필수적으로 실시하여 에너지를 절약하고 유지·관리를 용이하게 함
- 벽체사이의 단열재는 벽체 양쪽의 온도차나 여름철의 비 등으로 습기에 젖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하여 고기밀시공을 권장함.
- 경사지붕에 적합한 지붕일체형 태양광발전 시설을 도입하는 것을 권장함



- 마을회관 증축이나 리모델링시 경사지붕을 도입하고 주변환경과 어울리는 색채를 사용
- 경사지붕을 이용하여 지붕일체형 태양광패널 설치
- 옥외공간에 대한 조경계획 등을 수립하여 휴게공간으로도 활용

<그림 7-28> 농촌마을 마을회관 관련 시뮬레이션 2



<그림 7-29> 마을회관 종합도

B : 자연생태계가 건강한 마을숲

① 환경성

기본속성	환경성		하부속성	생태성		
기본지침	자연지형 훼손을 최소화					
적용방법	강화	보전	○	복원	창출	개선 정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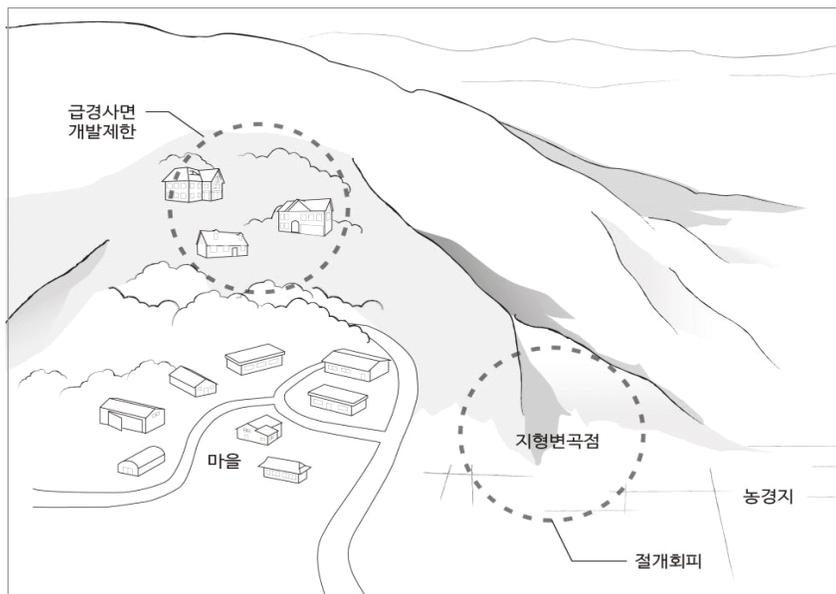
- 마을에 들어서는 전원주택단지 등 개발사업이 25% 이상 급경사면이나 3m 이상 옹벽이 생기는 개발행위의 경우 제한할 것을 권장함

(표 7-5) 경사(Slope) 기준

구 분	평탄지	완 경사지	경사지	급 경사지	험준지	절험지
기준	5°미만	5~15°	15~20°	20~30°	30~40°	45°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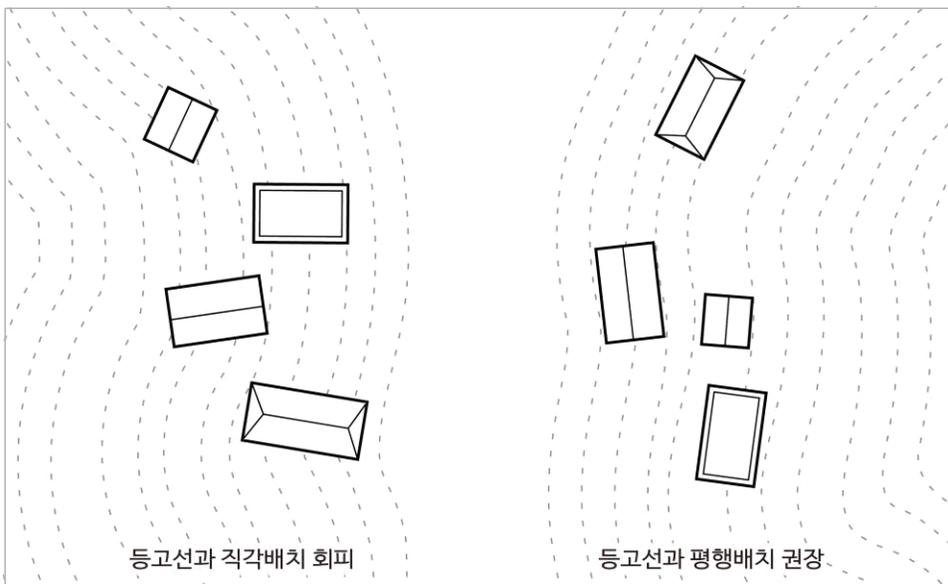
* 자료 : 건설교통부(1999).

- 지형 변곡점에 해당하는 마을 인접 산 가장자리 절개를 회피할 것을 권장함



<그림 7-30> 마을숲에 대한 자연지형의 보전 1

- 마을 배경 능선(공제선)이나 봉우리-마을로 이어지는 지형 연속성을 단절시키는 개발행위를 회피할 것을 권장함
- 건축허가·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무소를 등록한 자로 하여금 대행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으나, 마을주변의 산지에 위치하게 되는 전원주택의 경우 현장조사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조정하도록 함



<그림 7-31> 마을숲에 대한 자연지형의 보전 2

② 심미성

기본속성	심미성		하부속성	정돈성			
기본지침	농촌고유의 파노라마 경관미를 유지						
적용방법	강화	보전	○	복원	창출	개선	정비

- 농촌개발사업 추진 시 취락 경관구조를 훼손을 막기 위하여 집중 조망지인 마을 전면부(어귀길 주변)의 돌출 구조물, 대규모 토공사업 등이 들어올 경우, 마을주민들과의 협의과정을 도입
- 마을 입구부가 넓은 평지인 경우 마을 평균 층수보다 높은 흙쌓기

- 토공(마을 입구부를 횡으로 가리는 토공)은 회피할 것을 권장함
- 돌출 건축물·구조물의 색채, 재질, 형태, 입면차폐에 관한 경관디자인 기법 도입



<그림 7-32> 마을입구 집중관리지역 설정 개념도

③ 향유성

기본속성	향유성		하부속성		여가성	
기본지침	마을간 옛길 등을 이용하여 산책로를 조성					
적용방법	강화	보전	복원	○	창출	개선 정비

- 마을주민들과 방문객들이 휴식 및 건강을 위하여 이용할 수 있는 산책로를 마을뒷산 등을 활용하여 조성함
- 산책로의 노선을 결정하기 위하여 마을회의 등을 통하여 ‘옛길 찾기’ 등을 실시함
- 기존에 이용되던 길이나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여 식생훼손 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노선을 정함
- 마을의 산책로는 시종점이 같은 순환형으로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함
- 산책로가 지나가는 토지소유자 뿐만 아니라 인접토지 소유자들과 만나 산책로 이용가능여부를 확인함
- 중형단구배의 토사사면을 고려하여 급경사지는 피하며, 토양붕괴나 침식의 흔적이 있는 지역, 암반지역은 가급적 피함

- 보행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노선선형은 가급적 곡선으로 하고 노면 상태는 흙길을 우선적으로 선정함
- 절토사면이 안정각(1:1사면)을 이루는 상태에서 최소 노면폭(40cm)로 하고, 사면길이가 1m이상인 경우 흙막이를 설치하여 절토사면 길이가 1m를 초과하지 않도록 함⁷⁹⁾
- 안전시설은 미끄럽거나 경사가 심한 지역 등 주의를 요하는 지점이나 높이가 높아 떨어질 위험이 있는 지역 등에 설치함
- 시설물 설치지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를 이용함
- 산책로 종합안내판은 마을내 시종점에 부착하고, 방향유도사인을 표찰, 리본, 바닥표시 등으로 방향을 안내하며, 산책로상 특정한 지점에 주요 지점까지의 거리와 방향정보를 제공함
- 안내판의 크기와 디자인은 반드시 주위 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하며, 비와 바람, 인위적 손상 등 관리상의 문제점 등을 고려하여 제작함

C : 깨끗하고 푸르른 마을하천(도랑)

① 환경성

기본속성	환경성		하부속성	쾌적성	
기본지침	마을하천(도랑)에 흘러드는 오폐수 처리				
적용방법	강화	보전	복원	○	창출
					개선
					정비

- 마을내로 흐르는 마을하천(도랑)의 경우,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하수관거확충과 정비 등을 통해 미처리 생활하수 처리방안을 도입함.
- 마을에 거주하는 세대수가 적을 경우, 마을하수 중점 마을하천(도랑) 유입 지점 주변 공유지 또는 농지에 조성이 가능한 곳을 선별하여 인공습지를 조성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함
 - 인공습지는 강우유출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얕은 습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침전, 여과, 흡착, 미생물분해, 식생·식물에

79) 문화체육관광부(2009).

의한 정화 등 자연상태의 습지가 보유하고 있는 정화능력을 인위적으로 향상시켜 오염물질을 저감하는 시설임

- 인공습지는 일반적으로 수질처리용량을 저류하기 위한 영구연못(pool)과 소택(marsh), 확장저류공간(Extended detention)으로 구성됨
- 농경지로 흐르는 마을하천(도랑)의 경우, 농업배수가 마을하천(도랑)으로 직접 유입되지 않도록 저류지 등의 간단한 시설을 설치하고, 주민교육을 통해 농업부산물이나 농업폐기물을 버리거나 방치하지 않도록 함
- 농경지와 하천의 경계를 따라 초생대를 조성하여 비점오염원 등을 제거함
 - 초생대는 경작지 경계, 혹은 하천, 호수, 연못, 습지 등의 수변구역 경계를 따라 밀도 있게 조성된 띠 모양의 식생대를 의미하며, 주로 면상류(sheet flow) 혹은 측방흐름(lateral flow)의 유속을 감소시켜 여과, 흡착, 침전작용에 의한 비점오염 제거에 널리 이용되고 있음

(표 7-6) 하천변 양안의 완충녹지대 폭 확보기준

구분		확보기준	
		하한	적정
하천변 양안에 대한 녹지대 확보의 적정성		10m 이상	30m 이상
하상폭 1-2m	식생폭(좌우)	2m 이상	4m 이상
	식피율	40% 이상	60% 이상
하상폭 3-4m	식생폭(좌우)	4m 이상	8m 이상
	식피율	50% 이상	70% 이상

자료 : 국토해양부(2007).

- 농촌지역에서 토지이용별로 적용가능한 비점오염원 처리를 위한 구조적 저감방안은 다음 표와 같음

(표 7-7) 구조적 저감시설 적용가능한 지역

구조적 저감시설	적용가능한 지역
습식저류지	담수호 유입 강우유출수, 저수지 유입 강우유출수, 읍단위 도시, 고랭지 경작지, 골프장, 관광단지, 발경작지역
재래식 건식 저류지	담수호 유입 강우유출수, 저수지 유입 강우유출수, 읍단위 도시, 골프장, 관광단지, 발경작지역
건식 ED형 저류지	담수호 유입 강우유출수, 저수지 유입 강우유출수, 읍면 단위 도시, 발경작지역
인공습지	담수호 유입 강우유출수, 저수지 유입 강우유출수, 저수지/담수호, 상류 읍단위 도시지역, 대단위 경작 논 지역
생물포착지	문화마을, 전원주택단지
모래여과지	문화마을, 전원주택단지
침투도랑	농공단지, 농업용저수지 유입하천과 직결된 노면유출수, 문화마을, 쇼핑센터 주차장, 관광단지 주차장 및 노면유출수
건식스왈 (식생수로)	농공단지, 농업용저수지 유입하천과 직결된 노면유출수, 문화마을, 쇼핑센터 주차장, 관광단지 주차장 및 노면유출수
습식스왈 (식생수로)	집약농업지구(비닐하우스 원예단지), 축산단지, 논 강우유출수
식생여과대	농업용저수지 유입하천과 직결된 노면유출수, 쇼핑센터, 주차장
초생수로	농업용저수지 유입하천과 직결된 노면유출수, 전원주택단지

자료 : 국립환경과학원(2014).

- 적은 예산으로 마을하천(도랑)의 물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으로 지역 주민들이 직접 수생식물을 직접 식재 관리하도록 해야 함
- 마을하천(도랑)의 물을 깨끗이 하는 정화 식물은 크게 추수식물, 부엽식물, 부유식물, 침수식물 및 수질정화나무로 나누어져 있음
 - 추수식물은 뿌리는 물속 바닥에 잎과 줄기는 수면위로 뺏어 나와 있으며, 갈대, 줄, 매자기, 큰 고랭이, 부들, 창포, 미나리 등이 이에 속해 있음
 - 부엽식물은 수심 1-3미터 내에서 잎은 수면에 뿌리는 수중 바닥에 있는 식물이며, 연꽃, 수련, 가시연꽃 등이 이에 포함됨
 - 부유식물은 수면에 떠 있는 식물들을 말하며, 부레옥잠, 물옥잠,

생이가래, 개구리밥이 부유식물에 속해 있음

- 침수식물은 물에 가라앉아 있는 식물들을 말하며 나사말, 검정말, 말즘 등이 이에 속해 있음
- 그러나 부레옥잠이나 연꽃은 수질개선효과는 뛰어나나 정기적으로 관리를 하지 않을 경우, 식물 사체로 인한 2차 오염이 발생할 수 있고, 부들이나 미나리짚과 같은 식물은 번식력이 뛰어나 다른 수생식물을 성장을 억제시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식물임
- 수질정화나무는 갯버들, 버드나무, 메타세콰이어가 있음

기본속성	환경성		하부속성		생태성	
기본지침	수생태계 복원					
적용방법	강화	보전	복원	○	창출	개선 정비

- 수생태 복원을 위해서는 쓰레기를 치우고, 교란생물의 제거와 수생식물의 활착에 집중하거나 토종어류의 방류 등을 실시함
- 오랜 기간 퇴적된 오염도를 준설하되, 마을하천(도랑)의 생태계에 최소한의 영향을 미치는 범위 내에서 준설하도록 해야 함
- 농업용수 확보 및 건천화 방지를 위해 과거 설치된 콘크리트 보 또는 낙차공과 같은 구조물 중 불필요한 시설물은 철거하여 마을하천(도랑)의 단절을 개선해야 함
- 시설물 철거를 통한 여울 및 어도 설치를 우선으로 하되 이치수적 시설 기능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치를 하도록 해야 함
- 제방 관리 부실로 인해 마을하천(도랑)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제방을 자연재료를 활용하여 보완하며, 마을하천(도랑)의 제방에 다양한 식물들이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함

② 심미성

기본속성	심미성		하부속성		장소성	
기본지침	마을하천(도랑)의 수량 확보					
적용방법	강화	보전	복원	○	창출	개선 정비

- 지하수를 아껴 쓰고, 마을하천(도랑)의 물을 너무 많이 끌어 쓰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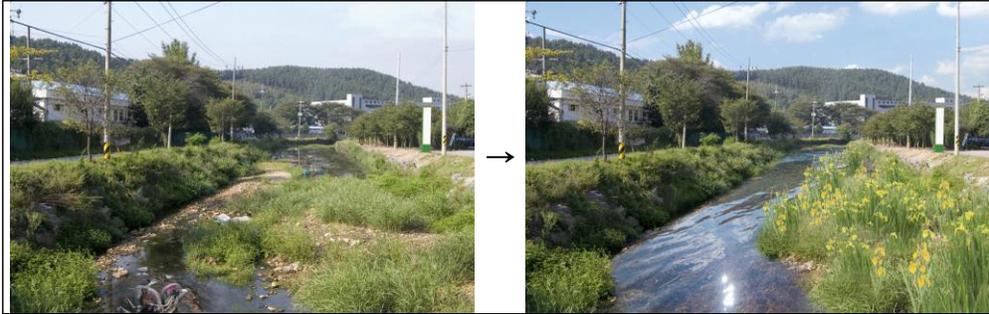
않도록 하여 마을하천(도랑)의 물이 마르지 않도록 관리함

- 정기적으로 마을하천(도랑) 안의 쓰레기 등을 치우고, 퇴적물을 제거하여 마을하천(도랑) 안의 물이 잘 흐르도록 함
- 마을하천(도랑) 주변에 둚병을 조성하여 수량을 확보함
 - 둚병은 빗물을 저장하는 창고 기능을 갖고 물이 부족할 때 활용된 수원임
 - 둚병엔 다양한 생명체가 서식하는 습지의 기능을 가지고 있음
 - 저수지 상류나 마을하천(도랑) 주변에 둚병을 조성하면 가뭄 때 마을하천(도랑)의 기능을 회복하는데 기여할 수 있음
 - 논외 바깥 고랑에 직경 3-4미터 정도의 웅덩이를 2곳 정도 파면, 한곳은 농업용수에 이용할 수 있고 한 곳은 비료와 농약이 섞인 물이 그곳에 머무르다 일부 자연 정화되어 마을하천(도랑)으로 흘러들어 갈수 있음

③ 향유성

기본속성	향유성		하부속성	여가성			
기본지침	자연친화적 수공간 조성						
적용방법	강화	보전	복원	○	창출	개선	정비

- 마을하천(도랑)을 중심으로 마을 주민들의 공동체 활동이 가능한 장소로 조성하며, 우물터 복원, 빨래터 복원, 쉼터 조성과 같은 과거 마을하천(도랑)내외 주민 공동체 활동 공간을 친수공간으로 활용 가능하도록 조성해야 함



- 마을하천(도랑)에 버려진 쓰레기를 치우고 오염토를 준설했
- 하천의 교란식물을 제거하고 수질정화효과가 큰 창포 등의 식물을 식재함
- 지하수와 마을하천(도랑)물을 아껴 써 적정 수량을 확보

<그림 7-33> 농촌마을 하천 관련 시물레이션



자료 : 환경부(2014).

<그림 7-34> 마을 하천 물순환도

참 고 자 료

<참고문헌>

(보고서)

- 건설교통부(1999).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을 위한 환경평가기준 연구.
- 경기도(2011).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경기도 디자인총괄 추진단.
- 국립환경과학원(2014). 농촌지역 비점오염원 관리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
- 국토해양부(2007). 지속가능한 신도시 계획 기준.
- 금창호·권오철(2016). 과소지역 맞춤형 행정체제 정립방안 연구. 한국 지방행정연구원.
- 김광선(2012). 농촌 공동시설의 유희화와 실태와 활용증대 방안. 한국 농촌경제연구원.
- 김동원·박준기·윤종열·박혜진(2012). 농업·농촌에 대한 2012년 국민의식 조사 결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상범 외 9인(2014). 농업 농촌경관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한 경관관리 체계 개발 : 농업 생태 특성을 적용한 경관 디자인 연구. 국립농업과학원.
- 김정연(2012). 농어촌공간정책의 재구조화와 과제. 충남발전연구원.
- 김정호 외 4인(2010). 농업·농촌 2030/2050 비전과 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농림부(2007). 2008년 농림사업시행지침서(균특회계).
- 농림수산식품부(2012). 내부자료.
- 농촌특별대책위원회(2009). 농촌정주기반 실태와 개선과제.
- 문화체육관광부(2009). 이야기가 있는 문화생태탐방로 가이드라인 연구.
- 박미란 외 8인(2017). 농어촌마을 내 주택 및 생활환경 기반시설 취약성 진단지표 개발. 한국농어촌공사.
- 변혜선(2014). 농촌 노인가구 대응형 주거환경 개선 및 공공지원 확대

방안. 충북연구원.

- 변혜선(2015). 충북 농촌마을 주택관리 개선 방안 모색. 충북연구원.
- 서주환 외 11인(2016). 농촌 공공공간 및 시설 배치 매뉴얼 개발. 농촌진흥청.
- 성주인 외 3인(2015). 한국농촌 마을의 변화실태와 중장기 발전방향 (1/5차년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성주인 외 3인(2016). 한국농촌 마을의 변화실태와 중장기 발전방향 (2/5차년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성주인·김영단(2014). 정주여건변화에 대응한 농촌주거정책 추진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심재현·엄진영·민경찬(2017). 농촌마을 과소화에 대응한 지역개발사업 유형개발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이정환 외 11인(2016). 농촌중심지 정비방안 및 계획기법 현장실증연구. 농어촌연구원.
- 이창우(2014). 농촌 과소화마을의 정주여건 개선방안 연구.
- 이창우·정용한(2013). 전라북도 농어촌 과소화마을 정주여건 개선방안 연구. 전북발전연구원.
- 정기환·문순철·민상기(1999). 농촌 인구 과소화지역의 유형별 특성과 대책.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조영재 외 3인(2014). 농촌마을 과소화·고령화에 대응한 마을재편 방안 연구. 충남발전연구원.
- 조영재 외 6(2013). 과소화·고령화에 대응한 한계마을정책 도입을 위한 기초연구. 충남발전연구원.
- (주) 사이람. 문헌정보 네트워크 분석 소개서.
- (주) 사이람. 소셜네트워크분석 활용백서.
- 주재복·박해육(2015). 과소군의 행정관리 효율화 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차주영·이상민(2012). 농어촌 경관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방향 연

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2010). 농어촌 경관이미지 형성을 위한 환경색채 적용모델 제작Ⅱ. 농어촌연구원.
- 한국농어촌공사(2010). 전원마을조성사업 공사 업무담당자 워크숍 자료.
- 한국농어촌공사(2015). 농촌주택 표준설계도 종합안내서. 농림축산식품부.
- 한상욱·임형빈(2017). 인구감소에 대응한 면소재지 정책 개선 및 정비방안. 충남연구원.
- 한석중(2012). 도시민의 농촌이주를 고려한 도농복합형마을의 개발방안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 환경부(2014). 생태도랑 복원·관리 표준모델 정립방안 연구. 낙동강유역환경청.

(논문)

- 이정훈·정희선(2014). 사회적 매체 블로그를 통한 경관 이미지의 생산과 소비 : 서울 서촌의 사례.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7(3), 123-140.
- 강영은·최동욱·홍성희·민수희·김상범·임승빈(2010). 농촌 원형경관의 문화재적 가치 속성 및 중요도 연구. 농촌계획, 16(4), 117-129.
- 권순정 외(2010). 복합복지시설의 서비스기능 및 서비스 그룹화에 관한 연구. 한국의료복지건축학회 의료·복지건축, 제16권 1호.
- 김강섭·이상정(2004). 농촌지역 개발정책의 변천과정과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건축학회논문집, 6(3), 1-14.
- 김근성(2012). 농촌마을 활성화를 위한 정주환경 계획에 관한 연구 : 양포마을 중심으로. 住居環境, 통권 제10권 제3호.
- 김묘정·최아현(2008). 농촌장수마을 공간계획에 관한 연구 : 충북 음성군 차평 1리를 사례로. 국토연구, 통권 제59권.
- 김상범 외 2인(2006). 농촌경관의 요소별 선호도 및 중요도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 학술대회 자료집(5), 136-136.
- 김한수·박혜지(2014). 예비 은퇴자의 주거환경 의식에 관한 연구 : 대

- 구시민을 중심으로. 한국주거학회논문집, 제25권 제1호.
- 김혜민·조순재·조수민(2006). 농촌마을 노인주거환경 정비 및 계획요소 도출.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 춘계학술대회.
 - 박경철(2014). 한계마을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관한 탐색적 연구 : 충청남도 금산군 사례를 중심으로. 농촌사회학회지 24(2), 7-59.
 - 박석희·이동기·윤상현(2002). 농촌다움의 의미와 측정 척도개발에 관한 연구. 농어촌관광연구, 9(1), 22-37.
 - 박정아·최병숙·강인호(2015). 농어촌 뉴타운조성사업을 토대로 본 농촌 활성화를 위한 주거환경 정책 방향. 한국생활과학회지, 제24권 제6호.
 - 배진희(2012). 주거 관련 요인이 농촌 지역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지역사회복지학, 42집.
 - 서주환·여화선·김효일(2012). 농촌 토털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디자인지식저널, Vol.24.
 - 신정숙·최만진(2014). 농촌경관계획 대상요소의 도출 및 분류 개선에 관한 연구. 住居環境, 통권 제12권 제4호.
 - 이동숙·김은영·윤충열(2017). 농촌지역 보건지소 건축의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건축학회논문집, 19권 4호.
 - 이정원·정윤희·임승빈(2006). 농촌어메니티자원의 농촌다움 특성 평가에 관한 연구. 농촌계획, 12(2), 1-9.
 - 이진숙·진은미·전택기·홍룡일(2010). 농어촌 경관이미지 형성을 위한 경관색채 가이드라인 제작. 한국색채학회논문집, 제24권 제3호.
 - 이진원·여화선·서주환(2013). 농촌디자인 가이드라인 해외 사례 비교분석 연구 : 영국, 아일랜드의 농촌 주거환경디자인 중심으로. 디자인지식저널, Vol.27.
 - 장현미 외(2012). 블로그에 자기표현적 글쓰기와 읽기 선호도가 대인적 및 사회적 신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블로그에서 공감경험의 매개적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6(2), 48-71.
 - 정원기·안영진(2016). 우리나라 한계촌락의 구조적 특성에 관한 연구 :

- 전라남도 고흥군을 사례로. 한국지역지리학회지, 22(3), 515-528.
- 정현희(2014). 농촌마을 어메니티 자원의 속성별 가치 평가 : 농촌다움의 가치평가. 농촌계획, 20(4), 243-252.
 - 조영국(2009). 수도권 한 대학생 집단의 농촌 인식 : 농촌성에 대한 담론 분석. 국토지리학회지, 43(2), 241.
 - 조영재·김두환·조은정(2015). 농촌마을의 공동화와 과소·고령화 현상의 관련성 연구 : 충남 금산군을 중심으로. 농촌계획 21(4), 85-94.
 - 조재순(2011). 전국 농가의 읍·면 거주지역별 일반적 특성과 주거환경 비교 : 2008 농촌생활지표 자료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29권 3호.
 - 조진희·박형근·모혜란·이한수(2015). 충청권 농촌지역 쇠퇴 특성 및 유형에 관한 연구. 대한토목학회논문집, 제35권 제1호.
 - 주우일·권현철(2008). 농촌지역 주거환경 질 지표측정을 통한 정책방향 설정에 관한 연구 : 거창군을 대상으로. 住居環境, 통권 제6권 제2호.
 - 최령·변혜령(2008). 유니버설디자인 관점에 따른 농촌지역 주거환경의 공간 및 사용 특성의 평가 분석. 한국주거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 최영완 외 2인(2010). 농촌마을정비시 농촌공간특성별 정비유형 분석. 농촌계획학회지, 16(2), 1-10.
 - 최영완·김영주(2013). 농촌마을 공간특성과 어메니티자원의 입지분석. 농촌계획학회지, 19(1), 81-90.
 - 황성은·강부성(2014). 귀촌 주거산업의 필요성과 효과 분석. 대한건축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논문집, 제34권 제2호.

(국외 자료)

- Carlow, VM (ed.).(2017). Ruralism : The Future of Villages and Small Towns in an Urbanizing World. Berlin : Jovis.
- Daniel(2015). Big data and analytics in higher education: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British Journal of Educational

- Technology, 46(5), 904-920.
- David Moffat(2006). New Ruralism: agriculture at the Metropolitan Edge. *Places*. 18(2). 72-75.
 - Guo et al.,(2016). Big social data analytics in journalism and mass communication : comparing dictionary-based text analysis and unsupervised topic modeling. *Journalism & Mass Communication Quarterly*, 93(2), 332-359.
 - HanChen et al.,(2016), Finding academic concerns of the Three Gorges Project based on a topic modeling approach. *Ecological Indicators*, 60, 693-701.
 - Karl, Wisnowski & Rushing(2015). A practical guide to text mining with topic extraction. *Wiley Interdisciplinary Reviews: Computational Statistics*, 7(5), 326-340.
 - Lucas et al.,(2015). Computer-assisted text analysis for comparative politics. *Political Analysis*, 23(2), 254-277.
 - OECD(2018). Rural 3.0 : A framework for rural development. OECD.
 - Sibella Kraus(2006). A Call for New Ruralism. *Frameworks*.
 - Viviers, Cornelius and Cilliers(2017). Considering New Urbanism, New Ruralism And Green Urbanism In Response To Multifunctionality : The Case Of Verkykerskop, South Africa. *WIT Transactions on Ecology and The Environment*. 223(-). 73-87.
 - Willits, F., Bealer, R., & Timbers, V.(1990). Popular Images of “Rurality”: Data from a Pennsylvania Survey. *Rural Sociology*, 55(4), 559-578.
 - 기호쿠초 홈페이지.
(<https://www.town.kihoku.ehime.jp/soshiki/kikaku/11622.html>)
 - 기호쿠초. 정주 등 지원을 위한 주택단지 정비.

- (<https://www.pref.ehime.jp/h10800/senshinjirei/documents/1-26.pdf>)
- 국토교통성(2017). 2016년도, 2017년도 행정사업 리뷰시트.
(http://www.mlit.go.jp/page/kanbo05_hy_001221.html)
(http://www.mlit.go.jp/page/kanbo05_hy_001458.html)
 - 국토교통성. 기존공공시설의 활용추진 「작은 거점」을 핵으로 한 「고향취락생활권」 형성추진사업.
(<http://www.mlit.go.jp/common/001187431.pdf>)
 - 국토교통성(2015). 작은 거점 만들기에 관한 국토교통성의 대응.
(<https://www.pref.nagano.lg.jp/shinko/kensei/shichoson/shinko/documents/kokkoushou.pdf>)
 - 내각부지방창색추진실(2016). 정든 지역에서 생활을 지속하기 위하여-지역생활을 지탱하는 작은 거점 만들기 매뉴얼.
(<http://www.kantei.go.jp/jp/singi/sousei/about/chiisanakyoten/chiisanakyoten-tebiki.pdf>)
 - 내각부지방창색추진실(2017). 2017년도 작은 거점 형성에 관한 실태조사 조사결과.
(http://www.cao.go.jp/regional_management/doc/about/h29jittaichosa.pdf)
 - 내각부(2018). 작은 거점·지역운영조직의 형성에 관한 대응.
(https://www.kantei.go.jp/jp/singi/sousei/meeting/tihousei_setumeikai/h30-01-11-shiryoku15.pdf)
 - 산인중앙신문 마스다 마사코 「히라야마 후모토」 오픈 주민운영교류카페.
(<http://www.sanin-chuo.co.jp/www/contents/1497238613887/index.html>)
 - 아키타현. 지금까지의 주요 시책 검증.
(https://www.pref.akita.lg.jp/uploads/public/archive_0000009318_00/jinkou03.pdf)
 - 오노아키라(2005). 山村環境社會學序説:現代山村の限界集落化と流域共同管理. 農山漁村文化協會.

- 오노아키라(2008). 限界集落と地域再生. 徳島新聞社.
- 오니시다카시 외 4인(2011). これで納得! 集落再生:限界集落のゆくえ. 株式會社ぎょうせい.
- 유희시설 활용지원제도 및 활용사례에 대하여, 내용 요약.
(<http://www.ecpr.or.jp/pdf/mytown117/26-27.pdf>)
- 이주체험시설 쿠루즈 랜 두 레벤 오오미시마, 내용 요약.
(<http://www.ecpr.or.jp/pdf/mytown132/2-3.pdf>)
- 재단법인 자치연합센터(2011). 외부인재 등 활용에 관한 조사연구회 보고서.
(http://www.jichi-sogo.jp/wp/wp-content/uploads/2011/06/2011_10.pdf)
- 총무성(2018). 2016년도판 과소대책의 현황.
(http://www.soumu.go.jp/main_content/000542487.pdf)
- 총무성. 과소대책의 경위·연혁.
(http://www.soumu.go.jp/main_sosiki/jichi_gyousei/c-gyousei/2001/kaaso/pdf)
- 총무성(2018). 2016년도판 과소대책의 현황(개요판).
(http://www.soumu.go.jp/main_content/000542474.pdf)
- 총무성. 과소지역자립촉진특별조치법의 개요(2000년-2010년).
(http://www.soumu.go.jp/main_content/000476787.pdf)
- 총무성. 지금까지의 과소대책법에 대하여
(http://www.soumu.go.jp/main_content/000491481.pdf)
- 총무성(2016). 2015년도 과소지역 등 조건불리지역의 취약현황 파악조사 보고서.
(<http://www.mlit.go.jp/common/001145930.pdf>)
- 총무성 지역력창조그룹지역진흥실(2017년). 지역운영조직의 형성 및 지속적인 운영에 관한 조사연구사업보고서.
(http://www.soumu.go.jp/main_content/000475610.pdf)
- 총무성(2009). 2008년도판 과소대책의 현황에 대하여(개요판).

- (http://www.soumu.go.jp/main_content/000045085.pdf)
- 총무성(2018). 과소지역취락재편정비사업 및 과소지역유희시설재정비사업 모집요령.
(http://www.soumu.go.jp/main_content/000531726.pdf)
 - 총무성. 과소지역 등 자립활성화추진교부금 교부결정.
(http://www.soumu.go.jp/menu_news/s-news/01gyousei10_02000029.html)
(http://www.soumu.go.jp/menu_news/s-news/01gyousei10_02000029.html)
(http://www.soumu.go.jp/menu_news/s-news/01gyousei10_02000001.html)
(http://www.soumu.go.jp/menu_news/s-news/01gyousei10_02000055.html)
 - 총무성. 과소지역 등 자립활성화추진교부금요강.
(http://www.soumu.go.jp/main_content/000531725.pdf)
 - 총무성. 과소지역 등 취락 네트워크권 형성지원사업 실시요강(안).
(http://www.soumu.go.jp/main_content/000531736.pdf)
 - 총무성(2017). 과소지역 등 자립활성화추진사업 교부금에 대하여.
(http://www.soumu.go.jp/main_content/000478829.pdf)
 - 총무성. 2016년도 과소지역 등 자립활성화추진교부금 과소지역 등 네트워크권 형성지원사업개요 일람.
(http://www.soumu.go.jp/main_content/000488778.pdf)
 - 총무성. 2017년도 과소지역자립활성화 우수사례표창 내용 요약.
(http://www.soumu.go.jp/main_content/000518163.pdf)
 - 총무성. 2017년도 취락지원요원 설치현황.
(http://www.soumu.go.jp/main_content/000539957.pdf)
 - 총무성 지역력창조그룹과소대책실(2018). 취락지원요원에 관한 데이터 분석.
(http://www.soumu.go.jp/main_content/000539834.pdf)
 - 총무성. 취락지원요원.
(http://www.soumu.go.jp/main_sosiki/jichi_gyousei/c-gyousei/bunken_kaikaku/02gyousei08_03000070.html)

- 총무성. 지역부흥협력대에 대하여.
(http://www.soumu.go.jp/main_content/000520754.pdf)
- 제2회 규슈권의 지역존속·재생에 관한 조사검토위원회. 성공사례 조사 결과보고서4.
(<http://www.qsr.mlit.go.jp/chiiki/koiki/pdf>)

(기타)

- Daum 사전(<http://dic.daum.net>).
- 강미나·안흥기·유미경(2015). 국민체감형 주거복지 평가지표 개발 및 활용. 국토정책 Brief 제502호.
- 경기도(2011).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 국토해양부(2007). 지속가능한 신도시 계획 기준.
- 농림부(2007). 2008년 농림사업시행지침서(균특회계).
- 법제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 법제처.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 법제처. 농어촌정비법.
- 법제처.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 법제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성주인·채중현(2012). 농촌의 과소화 마을 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이종혁 외 13(2012). 귀농·귀촌과 농촌 주거환경 정책. 귀농·귀촌 정책 연구 포럼 제3차 전문가 세미나.
- 조영재(2015). 과소화·고령화 된 농촌마을, 유형별 재편이 필요하다. 충남리포트 제170호. 충남발전연구원.
- 조영재·윤정미(2016). 농촌마을 과소화·고령화에 대응한 국내 정책사례 연구. 현안과제연구 이슈리포트(Issue Report). 충남연구원.
- 최은영·이민파·김종근(2015). 충청남도 행정통·리 마을의 최근(2005~2010년) 변화와 시사점. 충남리포트 제153호. 충남발전연구원.

- 통계청(2005, 2010, 2015). 농림어업총조사.
- 한국고용정보원(2018). 고용동향 브리프 7월호.
- 한국농어촌공사(2015). 농촌주택 표준설계도 종합안내서. 농림축산식품부.
-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6). 2016년 4월 22일 보도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히가시·츠네코(2017). 인구과소지역 대안적 교통의 모색 : 일본 사례를 중심으로. 2017 제8차 충남미래연구포럼 자료집. 충남연구원.

부 록

<부록 1> 전국 및 228개 시·군·구별 소멸위험 지수

구분	시군구	'18년 6월 인구			지방소멸위험지수					
		전체	20-39세 여성	65세 이상	'13년 7월	'14년 7월	'15년 7월	'16년 7월	'17년 7월	'18년 6월
서울	강북구	322,385	43,227	57,297	1.032	0.945	0.880	0.838	0.791	0.754
	도봉구	341,928	45,298	54,930	1.175	1.090	1.015	0.953	0.883	0.825
	종로구	153,780	22,523	26,340	0.986	0.949	0.911	0.900	0.873	0.855
	중구	126,032	19,482	21,540	1.049	1.001	0.943	0.926	0.902	0.904
	은평구	484,642	69,296	75,937	1.205	1.131	1.062	1.017	0.953	0.913
	동대문구	348,903	51,630	56,487	1.159	1.097	1.050	1.006	0.952	0.914
	성북구	440,272	63,908	66,982	1.264	1.172	1.105	1.055	0.999	0.954
	금천구	233,263	33,136	34,543	1.285	1.201	1.121	1.055	1.010	0.959
	서대문구	311,280	47,566	49,526	1.139	1.077	1.014	1.021	0.993	0.960
	용산구	229,677	35,846	36,887	1.153	1.086	1.031	1.003	0.972	0.972
	중랑구	405,551	58,826	60,534	1.315	1.233	1.158	1.096	1.034	0.972
	노원구	549,365	73,842	75,674	1.359	1.264	1.177	1.121	1.043	0.976
	구로구	407,235	60,768	59,845	1.489	1.372	1.272	1.198	1.098	1.015
	강동구	432,749	63,134	57,581	1.604	1.487	1.353	1.261	1.176	1.096
	양천구	467,151	62,796	56,633	1.557	1.449	1.355	1.291	1.196	1.109
	영등포구	369,003	60,496	54,188	1.354	1.278	1.221	1.185	1.137	1.116
	동작구	394,788	65,220	57,914	1.444	1.356	1.274	1.226	1.171	1.126
	성동구	308,066	50,095	42,026	1.394	1.324	1.257	1.213	1.208	1.192
	서초구	439,844	68,188	54,520	1.693	1.592	1.498	1.424	1.342	1.251
	강서구	600,257	98,697	77,818	1.604	1.502	1.436	1.379	1.329	1.268
	관악구	504,048	93,516	70,949	1.646	1.527	1.444	1.396	1.337	1.318
	마포구	374,691	66,512	50,050	1.514	1.447	1.427	1.400	1.358	1.329
강남구	546,952	88,818	65,876	1.902	1.776	1.671	1.571	1.453	1.348	
송파구	666,439	108,331	78,937	1.838	1.731	1.599	1.514	1.446	1.372	
광진구	355,748	62,150	44,617	1.756	1.645	1.568	1.512	1.443	1.393	
부산	영도구	121,895	12,264	28,705	0.658	0.587	0.538	0.499	0.458	0.427
	동구	87,787	9,585	21,317	0.612	0.558	0.523	0.491	0.468	0.450
	중구	43,510	5,035	10,245	0.658	0.628	0.587	0.557	0.531	0.491
	서구	110,576	12,901	24,825	0.662	0.620	0.582	0.565	0.537	0.520
	남구	277,352	33,629	49,150	0.991	0.912	0.843	0.783	0.721	0.684
	금정구	244,113	30,309	43,146	0.999	0.921	0.853	0.798	0.743	0.702
	수영구	177,896	24,993	33,106	0.968	0.889	0.858	0.834	0.785	0.755
	동래구	269,603	33,232	43,722	1.074	1.000	0.920	0.872	0.813	0.760

(계속)

구분	시군구	'18년 6월 인구			지방소멸위험지수					
		전체	20-39세 여성	65세 이상	'13년 7월	'14년 7월	'15년 7월	'16년 7월	'17년 7월	'18년 6월
부산	연제구	205,290	26,763	34,347	1.050	0.955	0.906	0.864	0.831	0.779
	사하구	330,934	41,131	51,612	1.222	1.114	1.015	0.932	0.861	0.797
	부산진구	367,628	51,371	63,962	1.076	1.002	0.947	0.896	0.842	0.803
	해운대구	411,091	51,392	61,562	1.200	1.104	1.030	0.978	0.899	0.835
	사상구	225,742	28,605	33,517	1.339	1.226	1.108	1.023	0.931	0.853
	기장군	163,110	21,071	23,347	1.062	1.116	1.096	1.050	0.971	0.903
	북구	299,979	38,370	42,134	1.342	1.220	1.127	1.088	0.998	0.911
강서구	119,105	17,687	13,635	0.895	0.946	1.132	1.298	1.369	1.297	
대구	서구	188,705	20,911	35,540	0.955	0.860	0.784	0.726	0.651	0.588
	남구	151,890	18,893	31,804	0.869	0.788	0.724	0.681	0.634	0.594
	중구	78,530	11,208	15,557	0.747	0.724	0.739	0.734	0.706	0.720
	동구	351,892	43,651	60,569	0.946	0.888	0.843	0.810	0.761	0.721
	수성구	435,468	50,871	60,168	1.144	1.076	1.001	0.954	0.896	0.845
	북구	440,142	55,864	55,711	1.399	1.290	1.204	1.135	1.057	1.003
	달서구	575,120	73,864	69,302	1.598	1.467	1.373	1.275	1.166	1.066
달성군	247,870	34,338	28,006	1.266	1.172	1.115	1.174	1.229	1.226	
인천	강화군	68,753	5,093	20,826	0.306	0.291	0.276	0.266	0.255	0.245
	옹진군	21,233	1,656	4,905	0.430	0.420	0.402	0.384	0.367	0.338
	동구	67,379	7,674	13,202	0.871	0.797	0.733	0.685	0.640	0.581
	중구	119,056	15,333	16,969	1.041	1.005	0.989	0.949	0.914	0.904
	남구	419,003	56,919	61,800	1.181	1.094	1.018	0.991	0.958	0.921
	부평구	530,682	76,123	65,233	1.578	1.497	1.408	1.346	1.262	1.167
	남동구	538,709	76,480	60,550	1.741	1.625	1.539	1.463	1.350	1.263
	계양구	316,744	44,938	32,400	2.035	1.915	1.779	1.658	1.517	1.387
	서구	532,706	75,898	48,425	2.091	1.966	1.837	1.764	1.627	1.567
연수구	339,618	48,114	30,023	1.916	1.853	1.775	1.757	1.686	1.603	
광주	동구	94,850	11,822	20,128	0.770	0.706	0.675	0.635	0.610	0.587
	남구	217,381	27,959	34,166	1.105	1.022	0.979	0.923	0.858	0.818
	북구	439,447	59,666	57,617	1.408	1.321	1.246	1.163	1.083	1.036
	서구	304,999	42,361	37,710	1.551	1.419	1.325	1.255	1.196	1.123
	광산구	404,068	56,312	34,153	2.127	2.010	1.899	1.827	1.723	1.649
대전	동구	228,034	27,835	37,914	1.102	1.017	0.917	0.850	0.790	0.734
	중구	246,755	30,717	41,046	1.060	0.984	0.905	0.853	0.796	0.748
	대덕구	184,673	22,493	24,430	1.413	1.297	1.182	1.102	1.002	0.921
	서구	487,503	71,349	53,185	1.841	1.710	1.593	1.501	1.411	1.342
	유성구	347,913	52,126	28,386	2.335	2.247	2.134	2.067	1.972	1.836

(계속)

구분	시군구	'18년 6월 인구			지방소멸위험지수					
		전체	20-39세 여성	65세 이상	'13년 7월	'14년 7월	'15년 7월	'16년 7월	'17년 7월	'18년 6월
울산	울주군	221,393	25,071	28,135	1.199	1.128	1.074	1.008	0.937	0.891
	중구	234,848	29,336	28,649	1.445	1.356	1.302	1.234	1.135	1.024
	남구	331,940	43,750	32,770	2.025	1.853	1.708	1.596	1.464	1.335
	동구	166,536	21,885	16,307	2.295	2.090	1.876	1.744	1.534	1.342
	북구	204,877	28,581	14,552	2.498	2.375	2.251	2.150	2.034	1.964
세종	세종	300,332	44,883	28,155	0.844	0.928	1.312	1.483	1.547	1.594
경기	가평군	63,076	5,731	14,574	0.493	0.466	0.440	0.427	0.413	0.393
	연천군	44,984	4,190	10,522	0.483	0.464	0.440	0.440	0.420	0.398
	양평군	115,816	10,754	26,248	0.517	0.488	0.466	0.451	0.433	0.410
	여주시	111,743	11,877	21,532	0.712	0.683	0.654	0.624	0.586	0.552
	포천시	152,226	15,522	25,918	0.793	0.750	0.711	0.682	0.637	0.599
	동두천시	96,857	11,015	17,309	0.885	0.825	0.774	0.733	0.679	0.636
	안성시	182,294	21,263	28,727	0.996	0.944	0.885	0.845	0.790	0.740
	양주시	213,388	24,824	30,092	1.125	1.042	0.977	0.933	0.878	0.825
	과천시	56,968	7,270	7,536	1.274	1.226	1.169	1.112	0.993	0.965
	의정부시	442,718	59,188	59,896	1.252	1.174	1.110	1.071	1.021	0.988
	이천시	214,584	27,701	27,500	1.293	1.219	1.145	1.116	1.055	1.007
	남양주시	676,078	86,017	84,291	1.389	1.304	1.222	1.171	1.078	1.020
	파주시	443,244	58,097	56,331	1.245	1.186	1.147	1.114	1.062	1.031
	의왕시	154,227	20,399	18,747	1.624	1.502	1.384	1.300	1.191	1.088
	용인시	1,012,575	134,777	120,474	1.510	1.423	1.334	1.265	1.184	1.119
	평택시	489,081	64,389	57,302	1.285	1.243	1.199	1.187	1.149	1.124
	광명시	330,616	45,029	39,266	1.728	1.587	1.453	1.351	1.223	1.147
	고양시	1,043,365	143,555	123,561	1.440	1.383	1.322	1.285	1.222	1.162
	광주시	355,403	48,570	41,136	1.458	1.394	1.339	1.284	1.222	1.181
	성남시	962,238	140,302	118,132	1.572	1.473	1.384	1.338	1.259	1.188
	하남시	241,680	34,059	28,479	1.264	1.159	1.156	1.227	1.255	1.196
	김포시	406,682	56,189	46,545	1.375	1.362	1.308	1.242	1.208	1.207
	구리시	201,663	28,216	23,060	1.570	1.452	1.366	1.318	1.253	1.224
	안양시	582,929	82,513	66,384	1.672	1.565	1.473	1.407	1.332	1.243
	군포시	279,141	39,140	31,040	1.793	1.684	1.580	1.487	1.363	1.261
	부천시	850,304	123,476	95,399	1.811	1.680	1.558	1.481	1.381	1.294
	안산시	664,167	91,590	61,326	2.066	1.941	1.822	1.738	1.619	1.493
	수원시	1,203,000	183,076	114,664	2.056	1.973	1.866	1.798	1.686	1.597
	시흥시	435,555	58,969	36,059	2.025	1.887	1.776	1.711	1.623	1.635
	화성시	729,939	106,052	61,040	1.848	1.740	1.727	1.762	1.734	1.737
오산시	218,635	32,711	18,008	2.478	2.350	2.174	2.036	1.878	1.816	

(계속)

구분	시군구	'18년 6월 인구			지방소멸위험지수					
		전체	20-39세 여성	65세 이상	'13년 7월	'14년 7월	'15년 7월	'16년 7월	'17년 7월	'18년 6월
강원	양양군	27,325	2,096	7,450	0.384	0.358	0.330	0.316	0.296	0.281
	영월군	40,002	3,031	10,493	0.377	0.351	0.331	0.321	0.299	0.289
	횡성군	46,503	3,716	12,217	0.371	0.359	0.345	0.337	0.318	0.304
	평창군	42,809	3,332	10,540	0.440	0.413	0.389	0.366	0.344	0.316
	고성군	28,596	2,320	7,322	0.414	0.389	0.368	0.340	0.328	0.317
	정선군	37,934	3,019	9,439	0.466	0.433	0.402	0.374	0.342	0.320
	홍천군	70,074	6,058	16,202	0.485	0.472	0.446	0.427	0.397	0.374
	태백시	45,387	4,192	9,777	0.665	0.595	0.550	0.516	0.467	0.429
	삼척시	68,673	6,788	15,286	0.577	0.552	0.518	0.488	0.462	0.444
	철원군	46,836	4,496	9,352	0.586	0.554	0.548	0.522	0.502	0.481
	화천군	25,546	2,562	5,011	0.563	0.556	0.572	0.557	0.543	0.511
	강릉시	212,989	22,531	40,532	0.736	0.685	0.652	0.622	0.585	0.556
	양구군	23,674	2,391	4,298	0.621	0.627	0.633	0.605	0.576	0.556
	동해시	91,718	9,071	16,262	0.795	0.734	0.690	0.659	0.610	0.558
	인제군	32,371	3,330	5,965	0.647	0.642	0.636	0.611	0.586	0.558
	속초시	81,727	8,595	13,625	0.813	0.761	0.722	0.696	0.653	0.631
	춘천시	280,541	35,031	44,656	0.912	0.872	0.853	0.845	0.813	0.784
원주시	342,138	43,032	46,237	1.132	1.074	1.044	1.030	0.972	0.931	
충북	괴산군	38,329	2,622	11,949	0.264	0.251	0.235	0.228	0.217	0.219
	보은군	33,876	2,397	10,549	0.268	0.257	0.248	0.248	0.237	0.227
	단양군	30,282	2,224	8,301	0.348	0.324	0.307	0.292	0.278	0.268
	영동군	49,929	4,088	14,237	0.348	0.330	0.328	0.305	0.302	0.287
	옥천군	51,723	4,216	13,954	0.407	0.377	0.361	0.340	0.317	0.302
	음성군	96,885	9,506	18,018	0.660	0.634	0.622	0.612	0.567	0.528
	제천시	135,857	13,937	26,221	0.687	0.647	0.617	0.598	0.562	0.532
	충주시	209,940	22,456	37,433	0.752	0.719	0.689	0.662	0.622	0.600
	진천군	75,848	8,458	12,121	0.714	0.682	0.668	0.668	0.685	0.698
	증평군	37,730	4,436	5,754	0.902	0.872	0.881	0.868	0.805	0.771
청주시	835,373	113,862	98,776	1.470	1.397	1.334	1.288	1.216	1.153	
충남	서천군	54,628	3,792	18,028	0.284	0.266	0.249	0.238	0.224	0.210
	청양군	32,228	2,311	10,471	0.252	0.244	0.230	0.224	0.219	0.221
	부여군	68,478	4,961	21,401	0.306	0.287	0.271	0.261	0.247	0.232
	금산군	53,599	4,076	15,042	0.365	0.341	0.325	0.310	0.286	0.271
	태안군	63,744	4,992	17,833	0.369	0.341	0.319	0.314	0.298	0.280
	예산군	80,384	6,429	22,842	0.390	0.361	0.336	0.311	0.288	0.281
	보령시	102,578	9,224	23,939	0.500	0.465	0.450	0.427	0.402	0.385

(계속)

구 분	시군구	'18년 6월 인구			지방소멸위험지수					
		전체	20-39세 여성	65세 이상	'13년 7월	'14년 7월	'15년 7월	'16년 7월	'17년 7월	'18년 6월
충 남	논산시	121,320	11,448	28,927	0.506	0.475	0.448	0.430	0.409	0.396
	공주시	107,526	10,423	25,326	0.565	0.522	0.480	0.454	0.434	0.412
	홍성군	101,406	10,340	22,172	0.482	0.458	0.451	0.479	0.484	0.466
	서산시	172,556	18,868	29,483	0.794	0.763	0.725	0.696	0.665	0.640
	당진시	167,621	18,653	28,740	0.777	0.762	0.737	0.712	0.683	0.649
	아산시	312,008	41,973	37,609	1.417	1.362	1.287	1.241	1.173	1.116
	계룡시	43,853	5,032	4,289	1.597	1.482	1.352	1.365	1.266	1.173
전 북	천안시	640,291	95,666	62,133	1.852	1.774	1.703	1.648	1.588	1.540
	임실군	29,139	2,174	9,647	0.257	0.252	0.239	0.228	0.229	0.225
	무주군	24,699	1,776	7,693	0.302	0.292	0.277	0.258	0.245	0.231
	장수군	22,920	1,672	7,133	0.288	0.286	0.272	0.262	0.252	0.234
	진안군	26,213	1,981	8,399	0.290	0.278	0.257	0.246	0.238	0.236
	고창군	57,758	4,354	17,977	0.289	0.281	0.271	0.263	0.250	0.242
	부안군	55,362	4,322	16,668	0.323	0.306	0.290	0.286	0.274	0.259
	순창군	29,414	2,434	9,239	0.285	0.272	0.264	0.268	0.264	0.263
	김제시	86,235	7,150	25,170	0.359	0.342	0.323	0.306	0.292	0.284
	남원시	82,856	7,257	21,293	0.439	0.415	0.392	0.373	0.353	0.341
	정읍시	113,115	10,137	28,695	0.447	0.420	0.395	0.378	0.365	0.353
	완주군	95,234	9,959	19,568	0.586	0.582	0.569	0.571	0.543	0.509
	익산시	296,372	34,159	50,852	0.873	0.827	0.778	0.741	0.711	0.672
	군산시	273,700	30,640	45,225	0.926	0.866	0.814	0.772	0.721	0.678
전주시	651,622	85,876	86,935	1.281	1.204	1.137	1.086	1.032	0.988	
전 남	고흥군	66,284	4,108	25,521	0.201	0.192	0.182	0.177	0.167	0.161
	신안군	41,960	2,778	14,022	0.234	0.227	0.217	0.214	0.203	0.198
	보성군	43,504	3,090	15,446	0.250	0.238	0.224	0.219	0.207	0.200
	함평군	33,973	2,410	11,479	0.243	0.237	0.232	0.226	0.220	0.210
	진도군	31,566	2,265	10,174	0.271	0.262	0.249	0.243	0.231	0.223
	곡성군	30,121	2,300	10,031	0.269	0.253	0.241	0.238	0.230	0.229
	구례군	26,966	2,009	8,463	0.279	0.268	0.262	0.259	0.248	0.237
	장흥군	39,697	3,054	12,631	0.272	0.263	0.258	0.254	0.242	0.242
	강진군	36,637	2,929	11,858	0.319	0.312	0.294	0.278	0.257	0.247
	완도군	51,865	3,984	15,778	0.300	0.286	0.280	0.272	0.261	0.253
	해남군	72,743	5,910	21,829	0.332	0.327	0.314	0.304	0.286	0.271
	담양군	47,111	4,152	13,704	0.355	0.338	0.319	0.319	0.313	0.303
	장성군	46,007	4,056	12,927	0.354	0.344	0.337	0.335	0.324	0.314
영광군	54,601	4,818	15,028	0.380	0.363	0.352	0.346	0.329	0.321	

(계속)

구분	시군구	'18년 6월 인구			지방소멸위험지수					
		전체	20-39세 여성	65세 이상	'13년 7월	'14년 7월	'15년 7월	'16년 7월	'17년 7월	'18년 6월
전남	영암군	55,158	4,776	13,799	0.457	0.441	0.419	0.396	0.366	0.346
	화순군	64,274	6,059	15,861	0.469	0.444	0.415	0.411	0.395	0.382
	무안군	82,292	8,703	16,553	0.558	0.569	0.571	0.560	0.542	0.526
	나주시	112,356	13,149	24,441	0.388	0.390	0.441	0.481	0.529	0.538
	여수시	285,158	31,542	49,020	0.853	0.799	0.754	0.722	0.675	0.643
	목포시	233,056	28,154	34,375	1.132	1.039	0.980	0.934	0.866	0.819
	순천시	279,977	34,091	40,062	1.023	0.986	0.943	0.917	0.880	0.851
	광양시	152,685	18,599	17,814	1.290	1.232	1.180	1.128	1.075	1.044
경북	의성군	53,166	3,112	20,567	0.199	0.187	0.176	0.168	0.158	0.151
	군위군	24,386	1,522	9,008	0.198	0.199	0.189	0.178	0.174	0.169
	청송군	25,874	1,642	8,921	0.233	0.219	0.213	0.209	0.195	0.184
	영양군	17,482	1,137	6,074	0.232	0.222	0.210	0.203	0.196	0.187
	청도군	43,171	2,913	15,008	0.256	0.238	0.226	0.215	0.206	0.194
	봉화군	33,177	2,171	11,012	0.251	0.238	0.223	0.214	0.204	0.197
	영덕군	38,381	2,617	13,248	0.251	0.234	0.222	0.214	0.203	0.198
	상주시	100,217	7,783	28,905	0.341	0.323	0.303	0.297	0.282	0.269
	성주군	44,745	3,500	12,996	0.343	0.330	0.310	0.300	0.284	0.269
	예천군	52,068	4,291	15,777	0.251	0.236	0.221	0.231	0.228	0.272
	고령군	33,360	2,601	9,299	0.392	0.364	0.337	0.320	0.295	0.280
	문경시	72,608	5,873	20,180	0.402	0.382	0.363	0.344	0.319	0.291
	울진군	50,454	4,194	12,981	0.376	0.370	0.359	0.353	0.340	0.323
	영천시	100,312	8,643	26,400	0.428	0.396	0.377	0.364	0.346	0.327
	영주시	107,578	9,172	26,087	0.486	0.453	0.419	0.400	0.377	0.352
	울릉군	10,010	877	2,268	0.540	0.493	0.461	0.431	0.375	0.387
	안동시	162,720	16,267	36,586	0.580	0.550	0.535	0.518	0.485	0.445
	경주시	257,137	25,571	51,809	0.674	0.623	0.586	0.557	0.519	0.494
	김천시	141,978	14,860	29,989	0.567	0.529	0.530	0.541	0.524	0.496
	포항시	511,188	57,822	75,131	1.118	1.033	0.959	0.909	0.836	0.770
경산시	259,219	32,659	39,131	1.088	1.013	0.980	0.936	0.877	0.835	
칠곡군	119,620	14,933	16,461	1.242	1.183	1.135	1.095	1.020	0.907	
구미시	422,239	61,739	34,698	2.495	2.349	2.207	2.082	1.905	1.779	
경남	합천군	46,538	2,935	17,145	0.222	0.210	0.197	0.188	0.174	0.171
	남해군	44,386	2,845	15,931	0.232	0.215	0.201	0.190	0.183	0.179
	산청군	36,183	2,467	12,035	0.239	0.227	0.219	0.208	0.207	0.205
	의령군	27,828	2,010	9,639	0.258	0.246	0.229	0.216	0.207	0.209
	하동군	47,893	3,388	14,788	0.295	0.272	0.264	0.252	0.242	0.229

(계속)

구분	시군구	'18년 6월 인구			지방소멸위험지수					
		전체	20-39세 여성	65세 이상	'13년 7월	'14년 7월	'15년 7월	'16년 7월	'17년 7월	'18년 6월
경남	함양군	40,047	2,888	12,597	0.276	0.263	0.253	0.243	0.238	0.229
	고성군	53,651	4,119	15,051	0.379	0.354	0.330	0.312	0.294	0.274
	창녕군	63,895	5,130	17,940	0.342	0.326	0.311	0.310	0.297	0.286
	거창군	62,796	5,401	16,142	0.400	0.385	0.371	0.364	0.348	0.335
	밀양시	107,159	9,134	27,157	0.450	0.417	0.397	0.381	0.364	0.336
	함안군	67,619	6,243	14,655	0.550	0.536	0.528	0.495	0.461	0.426
	사천시	114,201	11,363	22,415	0.703	0.658	0.609	0.570	0.535	0.507
	통영시	134,599	14,170	22,502	0.931	0.866	0.808	0.760	0.689	0.630
	진주시	345,989	41,772	52,390	0.994	0.933	0.897	0.874	0.836	0.797
	창원시	1,055,839	133,133	128,238	1.501	1.376	1.277	1.206	1.111	1.038
	양산시	345,055	45,628	40,530	1.415	1.344	1.265	1.213	1.176	1.126
	김해시	532,228	67,716	52,451	1.757	1.674	1.562	1.475	1.372	1.291
거제시	251,577	32,563	22,871	1.890	1.811	1.771	1.717	1.559	1.424	
제주	제주	663,526	81,377	94,661	0.944	0.915	0.904	0.892	0.871	0.860

주 : 음영은 '18년 6월 기준 소멸위험지역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2018).

<부록 2> 시설별 계획기술요소

- 농촌다운 주거환경 기술요소를 도출하기에 앞서 선행연구의 시설별 계획기술요소를 검토한 후 아래 표와 같이 정리하였음(시설명 가나다순으로 정리)

시설명	계획기술요소
가로수	마을과 도로로 단절된 녹지축을 가로수 등으로 연결
	전신주와 전깃줄의 위치를 고려하여 식재
	농경지 일대는 겨울철 먼지날림을 방지할 수 있도록 가능한 상록수를 식재
경작지	경작을 포기하고 있는 지역은 숲으로 복원하거나 농어촌 고유경관을 유지할 수 있는 다른 용도로 전환
	주변의 자연환경 및 농경지 경관과 조화
	작물수확 후에 방치된 비닐 등 폐자재에 대한 관리
공공시설물	공공공간이 마을 경관과 조화를 이루고, 지역의 특성과 역사성을 나타낼 수 있도록 디자인
	공공공간의 이용 편리성과 기능성을 고려한 계획을 수립
	자연지형을 최대한 보존하고, 농촌의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함
	이용성의 제고를 위해 디자인 측면보다는 기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계획하고 접근성이 높은 곳에 배치함
	기능이 유사한 시설들을 산발적으로 배치하기 보다는 한곳에 집약적으로 조성하여 시설의 복합성 제고
	시설 하나하나의 개별적 아름다움보다는 전체적으로 주변과의 조화는 물론 시설물간의 조화를 고려하고 색채와 형태의 통일감을 살려 농촌마을의 정체성 형성
	기능과 장소적 특성에 따른 가로시설물의 통합화
	지역의 Identity를 표출하여 상징화
	가로시설물 설치 위치 및 가로공간의 체계화

	<p>가로시설물의 위계에 따른 시설물 설치 기준을 마련하여 무분별한 가로시설물의 설치로 인한 경관 장애요소를 방지</p> <p>기존 정비 시설물과의 조화를 고려한 절제된 디자인</p>
공동화장실	<p>시설별로 이용정원을 예상하여 가능한 남녀분류형태의 쾌적한 화장실을 조성하고, 필요한 내부시설을 갖추도록 함</p> <p>물을 되도록 사용하지 않으면서, 분뇨가 자연 발효되어 유기농산물 재배에 거름으로 활용될 수 있는 시스템을 이용한 친환경화장실로 조성</p> <p>접근성과 인지성이 양호한 소공원 옆 신규 공동주차장으로 재배치하여 이용활성화를 도모함</p> <p>향후 체험장의 이용수요가 증가할 경우 체험센터 및 공동화장실 등의 규모가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p>
공원	<p>공원 내 동선이 모두 연결되는 순환체계를 갖추어 도보 및 자전거를 이용하여 다양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계획</p> <p>마을주민들이 상황에 맞는 휴양, 놀이, 문화 등을 즐길 수 있도록 공간 및 프로그램계획을 수립</p> <p>주 이용객의 연령대를 파악한 시설물 조성계획으로 지속적인 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따른 관리계획도 수립</p> <p>산책로 주변에는 유도등이나 보행등을 설치하여 야간의 활용도와 안전을 확보</p> <p>역사시설과 연계하여 공원을 조성할 경우, 역사경관의 정통성을 훼손하거나 변질시키는 디자인은 배제</p> <p>역사시설 보호차원에서 공공구역과 보호구역의 영역을 확실하게 구분</p> <p>주변자원과의 이질감이 연출되지 않도록 시설물, 식재, 색채 등을 고려한 공원조성계획을 수립</p> <p>자연재료를 이용한 접근로를 조성하여 친환경 이미지를 부각</p> <p>재활용 재료의 사용을 권장하여 경제적 이익과 환경보호를 권장</p> <p>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공간에는 건강하고 안전한 재료를 사용</p>

	마을내 역사, 문화자원이나 자연자원 등과 연계하여 조성
	역사시설 및 문화자원이 존재하는 경우 안내 및 교육관련 시설을 설치
	공원의 경관은 전반적으로 자연녹음이 우선이 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종의 다양성 보호와 식생의 연속성 유지를 위해 향토수종의 식재를 적극 권장
	숲의 자연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숲의 20~30%는 관목과 교목의 다층림으로 조성
	개방감 확보 및 공공성 제고를 위해 담장과 웬스의 설치를 지양하고, 설치가 필요한 경우 생울타리, 초화류, 화단 등 폐쇄감이 낮은 형태로 조성
	시각적인 즐거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식재 공간을 조성
	상록수와 낙엽수의 혼용 식재로 계절에 따른 변화감 연출 및 겨울철 녹지율 증대를 유도
	일조 여건을 고려한 식재계획을 통해 계절에 따라 적절한 그늘 및 일조가 제공될 수 있도록 유도
	정적인 공간, 동적인 공간 및 완충공간 등 공간의 특성에 따라 구분하여 배치함
	공원에는 이용자를 위한 시설(유희, 운동,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되 공원의 규모와 성격 그리고 주변환경을 고려하여 설치함
	출입구의 위계는 접한 도로의 폭원, 인근 토지이용현황, 주민들의 이용행태, 접근성을 고려함
	공원의 주 출입구는 1개소 이상으로 최소화하고, 5m 이상의 폭원을 확보함
	공원시설은 이용자가 편리하도록 기능과 미관에 어울리게 배치함
	진입부는 필요지점에서 입구성이 잘 드러나도록 계획하고 블라드 등 차량의 진입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물을 설치함
	포장재료는 흙다짐, 목재, 석재, 블록, 콘크리트, 아스팔트, 타일, 우레탄, 재생고무, 철재 등 공간의 성격이나 특성에 알맞

	은 재료를 사용하고 포장문양을 적절히 사용하여 공간별로 특성을 부여함
	보행로의 의자배치는 보행의 흐름과 상충되지 않도록 보행선 상에서 일정거리(1~1.5m)떨어져 배치함
	공원내 시설물 및 보행로는 장애인 편의시설 및 설비의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하고 어린이, 노약자, 임산부 등이 이용하기에 편리하게 설치함
	빗물받이 등 배수시설을 포장면이나 녹지면 등 적절한 곳에 설치하되 표면수가 모이는 포장경계부, 절곡점 등에는 배수 시설을 강화함
	도로인접지역은 가능한 3~4m 이상의 녹지폭을 확보하여 소음차단, 방풍, 방진의 기능을 부여함
	광장, 휴식공간, 산책로 등 적절한 곳에 녹음수를 식재함
	공원의 외곽부는 군락을 위주로 식재하여 정돈된 느낌을 주고 내부는 화목류와 낙엽수 위주로 식재하여 계절감을 갖게 하고 상록수의 적정비율을 유지함
	공원입구, 광장 등 주요부위에는 경관수를 식재함
	동적인 공간과 정적인 공간은 일정거리를 띄우고 수목보호대를 사용한 수목식재, 녹지 등으로 분리함
	기존 소공원의 입구를 대로변 하천에서 가로질러 진입할 수 있도록 교량(목교) 설치
	기존 소공원의 환경정비(CPTED 도입)
	소공원 내 공동화장실을 접근성과 인지성이 좋은 신규 공동 주차장 조성지역으로 재배치
	마을의 주민성향에 맞는 소공원 조성
관리시설	지역의 상징적 요소를 디자인모티브로 도입하여 지역적 특성을 나타낼 수 있도록 디자인
	통행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이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능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디자인
교량	마을의 색깔과 조화로운 형태
	농촌다움이나 자연친화적인 모습 구현

	교량에 양쪽 보도를 설치하여 교량을 지나는 사람들의 안전 및 조망권 확보
	평균 : 하천의 폭이 비교적 짧은 경우 자연재료를 선택하여 주변경관과 조화롭도록 함
	아치교 : 교각 설치를 최소화하여 우천 시 교각에 걸리는 부유물로 인한 수해를 방지, 수량이 급속하게 증가하는 계곡 지역은 필수적 항목
노인정	마을 내 소통의 결절점에 위치 ⇒ 커뮤니티 활성화
	목욕공간 제공. 소규모 목욕탕 조성으로 목욕탕 접근이 어려운 농어촌 지역 고령인구의 복지를 지원
	배리어 프리(무장애 공간). 계단, 문턱 등을 램프와 손잡이 등의 설치로 보완
	창문은 앉아서 조망이 가능한 높이로 하고, 고령자의 키를 고려하여 낮게 계획
농산물직판장 (판매시설)	기존시설은 존치하되, 마을정체성 및 인지도 향상을 위한 외부 환경개선 및 홍보기능 강화
	마을의 색깔을 반영한 디자인 제시. 마을 특산물을 디자인 모티브로 사용하거나 전통적 형태 도입
	마을특성과 판매 특산물의 종류에 따라서 적절한 규모로 계획
담장	투시성 있는 재료권장, 높이 1.2m 이하로 설치하여 거주자의 심리 안락감과 친밀감을 부여
	생 울타리 권장, 인공재료 사용 시 주택외관과 주변환경을 고려한 색채를 사용할 것
	부득이하게 차폐가 필요한 부분은 3m를 넘지 않도록 하고, 그 곳을 제외한 공간의 담장 높이는 1.5m 이내
	어린이를 고려하여 모서리가 뾰족하거나 재질이 모나게 튀어나오는 것을 지양
	마을의 색깔과 건축물의 형태를 반영하여 통일성을 부여
	시각적 개방감을 위해 열린 공간과 막힌 공간을 적절히 배치
	전체적인 조화를 위하여 주변 건축물과 자연환경을 고려한 색채 사용

	지역 이미지와 특색을 반영한 색채를 주색채로 하고 인위적인 색채는 부분적으로 사용
	자연 그대로의 소재를 사용하여 자연을 만지는 느낌을 살림
	전통담이란 돌, 흙, 관목류 등 자연의 전통 재료를 사용하여 전통적 방법으로 축조된 담으로 지역 경관에 어울리는 관례 높이(1.5m내외)와 폭(60cm내외)으로 조성
마을도로	마을 간 소통이 빈번한 도로에는 보도 설치
	단, 보행자수를 고려해 한쪽 또는 양쪽 보도를 설치
	작업차량, 농기계, 버스 등의 주차공간의 확보
	추가적 용도 : 생산물과 어구의 건조장소
마을숲	일반적으로 생태숲의 식생은 기본으로 자연천이의 원칙에 따라 단계적으로 복원
	지역 내에서 자생하는 수종을 활용하여 복원
	주변에 주민들의 휴식과 이벤트, 놀이공간으로도 활용이 가능
	역사 문화 생태적 가치가 있는 전통마을숲을 복원하여 산림경관 자원으로 육성하고, 명승지, 문화유산 등과 연계하여 경관 축 형성
	숲을 주민의 복지 휴양 쉼터로 재창조
	숲길 네트워크 조성
	산림치유시설과 수목장림 확충
	마을숲, 방풍림 등 녹지공간에는 지역 내에서 자생하는 수종을 활용하여 식재하고, 자연천이에 의해 단계적으로 복원될 수 있도록 함
	마을숲의 기능을 복원하고 보존하면서, 주민들의 휴식과 놀이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자, 벤치 등 휴게시설과 산책로를 배치함
	마을숲 내 산책로는 가능한 자연그대로의 흙포장을 이용하고, 자연생태보전 및 하부식생을 보전하기 위해 목재데크를 활용함
마을숲 내 산책로는 폭 0.8~1.0m의 소규모로 조성	

	시설물을 마을 숲과 어울리는 색채와 재료를 사용
	인간의 침해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에는 수목의 보호를 위해 마을 숲 경계나 수목 하단부에 보호책을 둘러 접근을 제한
	지역 내에서 자생하는 수종을 활용하여 복원할 수 있도록 식재
	마을 숲의 역할을 수행하는 숲의 경우, 지역 내에 자생하는 수목(소나무, 느티나무, 엄나무 등) 가운데 한 종류를 선택
마을안길	보행로 옹벽 식재 환경 및 동반 보조재 설치, 덩굴성 식물식재
	시각적, 형태적 장애물을 제거하고 포장재를 통일하여 보행환경 향상
	보차도 경계부에 띠녹지(W1.0 이상)를 설치하여 보행쾌적성 확보
	가로시설물에 공공디자인을 도입하여 정체성부여
	표식과 조각 등의 도입 시에는 가급적 목재와 석재 등 자연 재료를 사용
	가로수나 가로시설물 등을 배치 할 때 주변 농어업 생산환경에 의한 영향을 고려
	경관자원을 연계하여 경관도로를 제시하고, 경관도로의 선형은 자연지형 특성을 최대한 살림
	보차 혼용 또는 단일 차선을 통한 최소한의 확폭 및 정비
	가능한 옛길을 유지
	보도는 친환경 재료 사용
	자연스러운 기존 내부도로를 최대한 보존 유지
	보행자가 우선적으로 사용하되, 농기계와 차량 등이 통행할 경우에는 여유를 두어 폭을 확보함으로써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
	마을안길 경계부분은 시각적으로 쉽게 인지되는 부분으로 깔끔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정비
	마을안길과 접한 담장은 마을내부 가로경관을 형성하는 요소

	로 안길분위기와 연계하여 디자인 할 것을 권장
	배수관리시설, 가로등을 설치하여 보행자에게 편의를 도모
	바닥면의 배수가 불량하여 포장을 할 경우에는 보행 시 미끄러지지 않도록 투수콘, 강화마사토, 쇠석, 자연석자갈 등의 재료를 사용하여 자연미를 살릴 수 있도록 함
	경계석을 설치할 경우에는 통나무 또는 자연석 재료를 권장
	마을주민과 방문객들이 동시에 이용하는 도로로, 마을 내 경관을 감상할 수 있도록 안전과 흥미를 고려하여 디자인 함
	마을 내 주요경관과 시설을 감상하는 곳을 테마로 연결하기 위해 포장과 재료를 통일
	주거지역에는 프라이버시를 확보하고, 돌담과 흙담을 쌓아서 농어촌의 정취를 느낄 수 있도록 함
	보행유도 및 공간간의 연결기능을 부각시키면서, 경관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수종을 선정하여 식재
	화살나무, 수수꽃다리, 개나리 등은 시각과 후각적으로 흥미를 제공하여 지루하지 않게 보행할 수 있도록 함
마을안내소	마을의 색깔과 조화로운 형태
	농촌다움이나 자연친화적 모습 구현
	마을 특산물을 디자인 모티브로 사용하거나 전통적 형태 도입
	방문객들이 주도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전시 방식의 마을안내소 설치
마을입구부	마을의 얼굴이 되는 공간으로 마을의 인식성과 상징성이 나타나도록 조성
	마을 진입부는 마을과 연결된 지방도에 위치하는 경우와 마을 내부로 접근하려는 어긋길에 위치하는 경우로 나뉘는데 각 위치에 따라 디자인함
	지방도 진입부는 마을 고유이미지가 반영될 수 있는 식재 및 안내시설물 등을 설치하여 상징성을 강조
	지방도에서 진입시 차량의 통행이 원활할 수 있도록 적당한 규모의 진입부 및 진입도로를 조성

	어긋길 진입부는 수목 및 경관시설 등을 조성하여 편안한 분위기를 연출
	어긋길 진입부에 휴게공간을 조성할 경우 일정규모의 공간을 확보하여 쾌적성을 제고
	진입부 주변 포장재는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소재를 선정
	진입부에 설치하는 시설물은 자연소재를 이용하도록 하며, 인공소재 사용 시 주변환경을 고려한 색채디자인을 적용
	진입부 주변 화목류는 다양한 색의 꽃이 개화될 수 있도록 식재
	가로수의 단풍을 통해 계절별로 다양한 경관이 연출될 수 있도록 함
	지방도 진입부의 경우는 수목식재대 화단, 마을상징조형물, 마을간판, 문주 등을 조성하여 마을의 입구성을 강조
	지방도 진입부는 버스정류장과 같이 조성하여 접근성을 제고
	진입부 주변에는 경관녹지대 및 마을자생수종을 이용한 가로수를 식재하여 지방도와의 차별성을 유도
	지방도 주변 자투리공간을 활용하여 초화류 등을 식재
	어긋길 진입부는 정자목과 함께 마을안내판 및 장승, 솟대 등을 배치
	외부와의 접촉이 원활한 곳으로 노인들과 외부의 자연스런 접촉유도
	일시적 이벤트 장소 확보, 이용 빈도가 가장 높은 입구 선택
	마을의 첫인상을 표현하고 인지성을 높이기 위한 마을표지석과 풍년을 기원하는 솟대, 그리고 식재대를 설치하도록 계획
	시인성을 확보하고, 장소성을 나타낼 수 있도록 디자인
	안내시설, 상징물 등과 함께 식재계획을 수립하여 기능성 및 경관성을 제고할 수 있는 디자인 도입
마을회관	마을 청년회 등을 중심으로 젊은층들이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도입으로 이용활성화 도모
	기존 마을회관 부지에 마을회관, 마을정보센터, 농산물가공시

	<p>설, 보은센터, 숙박시설 등을 포함하는 복합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하여 시설의 집약화 배치를 도모</p> <p>마을의 색깔을 반영한 디자인 제시</p> <p>지역만의 독특한 향토성 반영</p> <p>클린 공간 마련 : 이물질을 털 수 있는 공간 마련 ex) 수도, 에어브러시 등</p> <p>마을회관 주변에 쉼터 등을 조성하여 휴식공간 및 체력단련 장소로서의 기능제공</p>
면사무소	<p>면사무소 접근성 향상을 위한 안내시설 확충 및 진입부 경관 향상</p> <p>면사무소 주변공원을 테마가 담긴 공간으로 연출하여 어우러진 경관 형성</p>
문화복지쉼터	<p>다양한 프로그램과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도록 시설 배치 계획</p>
문화여가시설 (찜질방, 체력단련실)	<p>마을 노인들의 접근이 쉽고 익숙함을 유지하는 기존 건물 이용</p> <p>기존의 마을회관, 노인정을 활용할 수 있음</p> <p>마을 내 생활적 요소로 항상 이용할 수 있도록 함</p>
민박	<p>민박을 이용하는 방문객의 수, 연령, 성별, 취미, 목적 등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 적합한 시설과 프로그램을 함께 제공</p> <p>운영자인 주인과 동일 가옥 내에서 민박이 이루어지는 생활 혼재형과 동일가옥이지만 민박 이용자들은 별도의 공간을 갖는 완전독립형으로 구분하여 조성이 가능</p> <p>외관과 내부공간 디자인도 획일적인 것보다는 자연과 조화되면서 다양한 전원적 경관이 형성되도록 하며, 외관은 같더라도 내부를 서양식과 한옥식으로 구분 조성할 수 있음</p>
버스정류장	<p>마을 특산물을 디자인 모티브로 사용하거나 전통적 형태 도입</p> <p>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마주 보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구조성을 계획</p> <p>대기 시간이 도시지역보다 긴 관계로 앉거나 기댈 수 있는 공간 마련</p>

	비바람을 피할 수 있도록 지붕 확보
	마을이나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색상 활용
	돌담이나 기와를 도입하여 농촌다움을 구현하거나, 목재를 사용하여 자연친화적 모습 구현
	마을의 바깥길(간선도로) 또는 어귀길(진입도로) 등에 위치하여, 버스가 정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
	지역성을 대표하고 마을 고유특성을 반영하여 특색있는 테마 시설로 조성
벤치	주민의 대화, 휴식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는 휴게시설로서 등의자와 평의자의 형태로 구분하여 설치할 수 있음
	인간에게 알맞은 규격으로 설치하여 편안하게 이용하도록 함
	많은 수량의 벤치를 설치하여 이용률이 떨어져서 방치되지 않도록 유의
벽면녹화	벽면녹화는 건축물의 벽면을 수목 또는 초화류로 피복하는 것으로 노출구조물의 시각적 완화 및 차폐효과, 에너지 절감 등에 효과적임
	벽면은 바람에 의해 건조가 심하므로 내건조성 수종을 도입함
	생육이 왕성하고 피복이 빠르며 병충해에 강한 식물을 도입함
	기후에 따라 표면온도변화가 심한 곳 또는 흡착이 어려운 곳은 트렐리스 등의 등반보조재 활용
	적합한 수종으로는 담쟁이덩굴, 송악, 마삭줄, 줄사철나무, 인동, 노박덩굴, 능소화 등이 있음
보차로	이용자의 안전성 및 쾌적성을 확보하고, 지역성을 나타낼 수 있도록 디자인
	주변 경관과 조화될 수 있는 친환경 소재 활용방안을 도입
	식재계획을 수립하여 연속적 경관을 형성
	자연지형조건을 최대한 보존한 상태에서 선형 도로로 조성할 것을 권장
	2차선 이상의 도로인 경우,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보행공간

	을 확보
	직선보다는 약간의 굴곡있는 기존 지형을 살려 자연스러운 형태를 유지
	보행자의 안전을 유지하고자 공간을 분리하는 보차도 설치 시, 경계부에 자연석을 활용한 경계석이나 식수대를 조성
	배수관리 시설, 가로등을 설치하여 차량과 보행자에게 편의를 제공
	마을쉼터를 설치하여 버스정류장과 함께 마을주민을 비롯한 인근마을과의 커뮤니티공간으로 활용하도록 함
	과속주행을 억제할 수 있도록 요철 및 둔덕과 같은 안전시설을 도입
	2차선 이상 국도·지방도인 경우 기존의 아스팔트 또는 콘크리트 포장을 유지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농어촌의 전형적인 흙길을 연상시킬 수 있으면서 투수성 포장 재료인 강화마사토, 강화향토, 투수콘크리트 등을 사용
	마을 입구성을 강조할 수 있는 가로수를 식재
	기존 자연지형을 활용하고, 계절별로 다양한 변화감을 줄 수 있도록 가로수 열식 및 관목과 초화류를 식재
	도로변 자투리공간에 녹지대를 조성하여 녹음을 제공
	마을 내부도로까지 수종과 식재패턴을 통일하여 공간의 연계성을 강화
	통과형의 마을내부도로인 경우에는 도로주변에 수목의 높이와 수종을 다양하게 하여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운전자가 자연스럽게 속도를 줄일 수 있도록 함
보행시설	조형성과 기능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디자인
	안전성과 내구성을 고려하여 지속가능한 디자인을 수립
	지역의 상징적 요소를 디자인모티브로 도입하여 지역적 특성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함
비탈면 녹화	가능한 자연생태로 복원
	지속으로 보존하기 한 녹화공법을 사용

	지역에 자생하면서 뿌리 활착이 좋고, 생육 속도가 빠른 수종을 식재
	건설과정에서 친환경인 마감처리가 필요
빈집	빈집은 공동시설, 귀농인 주거 등에 활용되도록 임대 정비
산림	지역문화와 지역식생의 특성을 잘 보여주는 마을숲, 비보숲, 방풍림, 목지 등에 의한 보존정비
	훼손된 산지의 면적, 형태별로 경관훼손에 대한 물리적·심미적 저감방안
	인공적인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에는 자연소재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경관을 연출
	시설지, 관광지, 거주지 주변의 근경에 해당하는 지역에 식재하여 경관림으로 조성
	거주 지역에 숲이 부족한 마을을 대상으로 생활권 마을 숲을 신규조성
산림욕장	등산로의 일부구간을 활용하거나, 침엽수림지의 숲, 계곡, 폭포 등이나 건강유지를 위해 필요한 시설들이 인접한 곳에 조성
	산림욕장 내부에 설치하는 휴게시설은 목재를 활용하되, 안전성과 내구성을 고려하여 제작 설치
산책로	마을 주변산에 위치한 오솔길, 하천이나 호수, 저수지 주변을 따라 위치한 배장길, 경작지의 농로길 등을 활용하며, 폭 0.8~1.5m 정도로 조성
	노선형식은 주요자원, 시설, 주요조망지점을 연결하여 순환형으로 배치
	자연스러운 곡선을 살리고, 시설과 식재패턴을 다양하게 하여 흥미를 유발하고 지루하지 않도록 함
	확포장보다는 도로 주변의 수목이나 잡풀, 인공적인 장애물을 제거하는 수준으로 정비
	배수관리시설, 가로등을 설치하여 보행자에게 편의를 도모
	바닥은 가능한 자연상태 그대로를 이용할 것을 권장
	배수가 용이하지 않거나, 부득이하게 포장을 할 경우에는 미끄럽지 않은 투수콘, 쇠석, 자연석자갈 등의 재료를 채택하고

	평탄한 마감으로 조성
	산책로 주변 시설물 설치 시 색채나 질감은 주변 환경과 조화되도록 함
	방문자의 위치와 산책로 코스안내를 위한 안내표지판을 설치
	산책로 연장이 긴 경우 일정구간마다 소규모 쉼터를 조성
	기존 수립대와 조화되도록 식재하고 자연스러움을 연출함으로써 편안하게 산책하면서 주변경관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함
	인위적으로 식재를 할 경우에 해당되는 식재수종으로는 소나무, 진달래, 산철쭉 등이 대체로 어울리나, 지역특성에 맞게 생육환경을 고려하여 향토수종의 교목이나 관목류를 선택하여 식재한다.
	주변지역에서 표면 배수된 빗물이 산책로로 흘러내려 보행에 지장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하며, 지형여건상 이러한 우려가 있는 곳은 표면배수시설을 설치
	마을 주변의 산세 및 경관이 수려한 곳을 이용
	노인들의 신체적 단련 및 물리적·심리적 안정감을 고려
	경관체험이나 역사체험이 이루어지는 곳도 가능함
	마을 내 어메니티 자원 이용
생산시설	기존의 경작지 중 마을 사람들의 접근이 용이한 곳
	개별적 운영보다 마을특성별 체험공간 등을 같이 연계해 시너지 유도
	축사시설은 경관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오염물질의 배출, 냄새, 소음 등을 고려
	현대화를 위한 시설 도입 시 경관과 조화될 수 있도록 배치, 형태, 색채 등에 한 기준을 제시
	시설물 배치로 인하여 서식지의 분절이 일어나지 않도록 생물종의 이동경로, 서식처의 연결성을 고려
	인공인 농어업 생산시설은 주변의 자연환경, 농경지 경관과 조화될 수 있도록
	과수원은 꽃 · 열매를 이용하여 다양한 경관체험이 가능하도록 계획

	목초지는 방목되는 가축과 함께 전원적이고, 특색 있는 경관을 창출
생태습지, 야생화군락지	생태계 기능향상 및 생물서식환경 조성을 한 식재는 자생종 식재를 원칙
	야생동물의 생태통로 설치 시 이동의 빈도, 구조물의 유형, 구조물의 규모 등을 통합적으로 고려
생태연못, 생태하천	생물 다양성 증진을 위한 곤충, 어류, 조류의 서식처 조성 방법을 이용
	연못의 가장자리형태, 수심의 변화를 주어 다양한 서식처를 조성
	연못의 호안부는 통나무와 자연석을 활용하고, 다층적인 식생을 유지
	가급적 기존식생을 바탕으로 식재
	인위적으로 복원할 경우에는 산림의 자연전이 원칙에 따라 단계적으로 복원
	복원초기에는 빨리 자라고 많은 광량을 요구하는 식물을 도입함으로써 조기에 식생피복을 이루도록 함
	토양배수 조건을 개량하고 질소고정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함
	궁극적으로 수명이 길고, 성장속도가 느리며, 내음성(음지에서 자랄 수 있는 성질)이 강한 식물들이 우위를 점하는 최상 단계에 이르도록 단계적으로 복원
	연못의 형태와 수심의 변화를 주어 다양한 생물서식 공간을 제공
	부분적으로 수심이 최소한 1.5m~2.0m가 되도록 조성
	물이 생태연못 내로 유입되고, 생태연못을 순환한 후에 유출구를 통해서 빠져나가도록 함
	연못 가운데에 수중구조물을 설치하여 조류 등의 서식처가 되도록 함
	잠자리 연못, 개구리 연못 등 특정생물의 서식환경이 있는 경우 해당 종의 생애주기 및 서식특성을 파악하여 조성
	보호펜스 설치는 최소화하되 자연 질감의 단순한 형태를 적용

하안의 일부는 모래와 자갈을 이용하여 조성
통나무와 굵은 나뭇가지를 이용하여 출수구를 나뭇잎 등이 막지 않도록 조성
동선 및 시설물은 최대한 자연소재를 사용
생태연못 주변으로 산책 및 탐방동선을 확보하여 이동의 편의성을 제공
식재수종 및 수중식물, 수생식물, 부유식물, 수변식물 등의 다양한 식생대를 조성하고, 전체적으로 자연스러운 모습을 창출하기 위하여 다층적인 군락으로 식재
수심의 차이에 따라 생육높이가 다르므로, 적절한 수종을 선택하여 식재
연못의 경계부(완충구역)에 다년생 숙근초화류 식재하고, 수변침식을 방지하여 정수능력이 있는 갈대 등을 도입
야생조류의 먹이를 제공하고, 기타 곤충류의 서식처와 은신처를 제공할 수 있는 수종을 우선적으로 선택함
연못 면적 중 수목에 의한 녹음률이 40% 이상 되도록 설계하여 피난처 제공 및 급격한 수온 변화 방지
생태연못의 형태는 가급적 부정형이며 다양한 굴곡이 나타나도록 함
방수가 필요 없을 경우에는 점착성이 강한 진흙이나 논흙 등을 이용하여 습지를 조성
방수를 실시한 경우 벤토나이트, 방수시트를 이용하며, 피복토층은 진흙이나 논흙을 이용하면 생태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함
자연형 하천으로 정비
하천경관을 정비할 때에는 수역과 그 주변지역을 통합으로 고려하고, 수위 변화의 정도를 포함하여 계획
생태하천, 생태연못, 호수 등을 조성할 때 호안 사면의 처리는 자연소재를 활용
실개천은 기존 수로·수원으로부터 선형으로 계획하고, 보행자도로·완충녹지 등을 활용하여 하천 등과 연계한 생태통로를 형성

생태통로	주변자연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기존식생을 활용
숫대. 장승	장승과 숫대의 배치방법과 제작은 마을의 안녕과 풍년을 기원하는 본래의 전통적인 상징요소의 기능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대부분 목재를 이용하고, 벽수와 같이 변용되어 식재를 활용하여 상징적으로 조성하기도 함
숙박시설	경관적으로 양호하고 마을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장소에 배치하고, 마을주민의 주 생활공간에서 다소 떨어져 있으면서, 주요도로변에서 접근이 용이한 곳에 배치하여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도모
안내시설	기존의 부족한 안내시설의 보완
	버스정류장 통합 안내시설 디자인으로 인지도 강화
	주요시설 주변으로 정체성 확보 및 인지성 향상을 위한 안내시설 설치
	쉽게 이해될 수 있게 내용에 있어 간명해야 함
	안내표지판의 유형에 따라 규격(높이와 적정크기 등)을 고려하여 이용자들에게 편의를 제공
	마을만의 고유특색을 살려 자연친화적인 재료를 사용하여 제작설치
어린이 놀이터	젊은 층의 귀농·귀촌을 활성화하고 마을체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어린이들을 위한 놀이공간 제공
	단순한 시설물 설치가 아닌 자연친화적인 테마형 어린이 놀이터 조성
어메니티자원	보전가치가 높은 농업유산 보전 관리 강화
역사건축물	기존 수목을 보존. 기존 수목을 활용한 계획을 만들고, 기존 수목의 조망을 고려하여 디자인
	역사적 건축물을 활용. 건축물의 일부만 유지할 경우 전체적인 균형을 고려하고, 전체를 보존할 수 없는 경우 특징적인 부분을 보존
	지역의 재료와 특징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지양. 형태나 의장의 직접적 차용은 피할 것
	역사적 건축물과의 조화를 모색. 지역의 재료와 색깔을 직접

	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
역사문화시설	물래방아, 정자목, 솥대 등 일상생활 속에서 사용되던 전통시설물 및 전통공간을 보존
	대상지 일대에 분포하는 역사·문화자원이 연계되어 하나의네트워드를 형성할 수 있도록 계획
	역사·문화·환경자원과 보행자도로, 자전거도로 등을 연계하여 도보및 자전거를 이용한 접근성을 제고
옥외광고물	건물과의 일체화된 디자인
옹벽/석축	주변 자연지형과 조화될 수 있도록 조성
	조화로운 경관적 연속성을 부여
	주변부에 담쟁이 등 덩굴식물이나 교목류를 식재하여 녹화
우물, 샘터, 약수터	소규모의 우물, 샘터, 약수터는 작은 물확을 설치
	자연석 쌓기를 활용, 우물, 샘터, 약수터의 형태를 복원
운동휴게공간 (게이트볼장, 배드민턴장, 휴게시설)	마을 내 중심에서 어느 정도 거리가 있어도 가능함
	마을 내 사적공간으로 노인들이 항상 이용이 가능한 곳에 조성
운송시설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안전성 및 기능성을 고려하여 디자인
	속도억제시설은 주변여건 및 도로의 종류에 따라 그 규모 및 형태를 계획
	방음벽은 인접한 주변 환경과의 조화성, 연속적으로 설치되는 방음벽의 상호연속성 등을 고려하여 디자인
위생시설	이용자들의 이용성과 관리상의 용이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디자인
	주변 환경과 어울리는 색채와 재료를 사용하여 마을 경관과 조화되도록 함
자연경관	자연지형을 활용. 사면림을 활용해 건축물을 계획고, 샘물이나 실개천을 보전
	녹지를 활용. 담이나 그물 담장을 부지 측에 배치해서 식목을 보이게 하고, 인접지 녹지와 연속해서 녹화

	수변경관을 배려. 수변에서의 경관이나 물위에서의 조망을 고려하고, 수변에 근접할 수 있도록 디자인
	자연경관 활용. 자연경관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시설을 배치하고, 자연경관이 조망될 수 있도록 건축물의 형태를 계획
	고지대, 급경사지 지역을 가능한 한 보전하며, 자연지형에 건축물을 도입할 때에는 최소한의 부지를 이용하여 지형훼손을 줄이도록 함
	보전요구 동식물 서식처, 녹지자연도, 생태자연도, 표고경사율 등을 고려하여 자연순응형으로 계획
정보시설	일체감 있는 디자인을 적용하여 통일된 이미지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함
	지역의 상징물 등을 그래픽 모티브로 적용하여 지역적 특성을 강조
	지역성을 나타낼 수 있는 소재, 식재 등을 활용하여 경관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디자인
주차시설	현지 여건 및 방문객 수를 고려하여 적정규모로 조성
	주차장의 규모는 도시계획, 공원시설 등에 나타나 있는 일반 규모와 형태기준에 준하여 설치
	주차면적은 차도를 포함하여 10대당 40~50㎡ 정도로 계획
	주차유형은 30도, 45도, 60도, 90도의 주차각도와 주차대수, 이에 따른 이용 상의 장단점을 고려하여 배치하되, 토지형태에 따라 유형을 선정
	차도 폭은 왕복일 때는 5.5m 이상, 일방일 때는 3.5m 이상으로 배치
	자동차경사로 설치 시에는 경사도가 17%이하로 하여야 함
	주차장은 대규모 면적보다는 차를 돌릴 수 있는 공간의 확보가 더 중요하며, 1.5~2.5% 정도의 배수 구배를 두어 강우 시에 대비
	필요시에 부대시설로 공동화장실, 음수대를 배치하고, 휴식공간과 녹지공간을 확보하여 놀이마당, 야영장, 농작물 건조공간 등으로도 겸용 가능하도록 함
	일반이용자들뿐만 아니라, 장애자들의 주차동선을 고려하여

	주차장을 설치
	콘크리트, 아스팔트 포장은 가급적 지양하고, 농촌경관에 어울리는 잔디블록이나 투수성 재료 등을 이용한 환경친화적 주차장설치를 유도
	잔디블록을 쓸 경우 주차의 빈도수가 적어 답압에 의한 피해를 줄일 수 있어야 하고, 배수가 잘되는 곳에 설치
	친환경적인 소재를 활용하여, 마을의 입구부분 및 시설과 인접하여 배치
	시각적 또는 소음으로 생태계나 쾌적한 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위치에 조성
	낮 시간의 높은 일조량으로 차량온도가 높아질 수 있으므로, 녹음을 제공할 수 있도록 주차장 경계부에 일정간격으로 교목을 식재
	기존 주차장은 일정 간격으로 분리대를 겸한 녹지대를 만들고, 자생수목을 군식
	주차 인접공간에는 나무수액(청단풍 등)이나 열매가 떨어지지 않는 수종 선정
	10대 이상의 옥외 주차장에는 지상 주차대수 5대마다 교목 1주의 비율로 분산하여 그늘 식재
	수목은 H3.0 이상 B10cm 이상, R12cm 이상 낙엽수로서 지하고 2m 이상이어야 함
	모서리 녹지 식재시 교목류는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모서리에서 후퇴하여 식재하고 나무높이가 낮은 관목류를 군식하여 식재
	마을진입로 주변의 자투리공간을 활용하고, 마을마당, 농작물 건조 등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
	10대당 40~50㎡ 정도의 공간이 필요
	포장은 친환경적인 재료인 잔디블록이나 투수성과 자연미를 강조하는 재료사용을 원칙으로 함
참고 및 저운 저장고	경관을 저해하는 공자체 건물의 디자인 보완. 마을의 색채로 채색하고 벽화작업
	재료를 덧대어 형태 변형이 가능

	높이에 대한 규정 제시로 차량 및 농기계의 출입이 용이하도록 함
체육공원	고령 인구의 체력 증진을 위한 체육공원 조성
	마을 주민의 접근이 용이한 중심점이나 인접한 구릉형 지대에 자연친화적 공원조성
체험관	주차장 확보. 외부 방문객으로 인한 주차문제를 반영하여 조성하되 별도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에는 검토 후 조성
	클린 공간 설치. 이물질을 털 수 있는 공간 마련 ex) 외부수도, 에어브러시 등
	마을의 색깔을 반영한 디자인 제시
	공동주차장은 친환경 그린주차장으로 조성하여 태양복사열 방지, 빗물침투를 통한 유출계수 지하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녹색 인프라 시설로 조성
축산시설	가축분뇨 자원화 정책과 병행해서 악취 저감
표지판	과도한 장식을 배제하고 단순하고 명료한 형태로 디자인
	통일성 있는 사인 구성으로 깔끔한 이미지 연출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룸과 동시에 심미적으로 세련된 경관 창출
	주변 환경에 두드러져 보이지 않는 색채계획(저명도 및 무채색 계열)
	두드러지지 않도록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지만 사인성이 요구되는 서체의 경우 색의 대비효과를 주어 강조
	농촌의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자연소재를 주재료 및 부재료로 활용할 것을 권장
	동일한 모티브를 사용하여 안내판 간의 통일감 조성
	식물이나 자연경관 등 마을의 고유한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는 요소를 도출하여 안내판의 전체적인 디자인에 반영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색상 활용
두드러지지 않도록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지만 사인성이 요구되는 경우 색의 대비효과를 주어 강조	

	<p>자연재료의 경우 제작비가 다소 많이 들어가므로, 일부 외부 포장에 적용하는 등 융통성 있는 디자인을 통해 재료의 특성을 살림</p>
	<p>마을의 특성이 반영된 소재를 선택</p>
휴게시설	<p>마을의 색깔과 조화로운 자연소재를 그대로 살린 디자인 도입</p>
	<p>부분적으로 우리나라 전통 예술품과 전통 문양, 마을의 상징적 문양을 활용하여 기둥 및 기와 등을 강조</p>
	<p>노인과 어린이들을 위하여 지면에서 마루까지의 높이를 최대한 낮춤</p>
	<p>안전을 위하여 등받이를 이중으로 조성하고 정자의 입구를 넓게 조성하여 동시이용을 최대화시킴</p>
	<p>주조색은 천연재료의 고유 색상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전 면적의 60~70% 이상 확보</p>
	<p>마을의 중심으로써의 상징감을 주기 위하여 주변 자연색과 연계된 색들 중 짙은 색채 사용</p>
	<p>중·저명도의 색채로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환경을 유도</p>
	<p>마을에서 흔히 접하는 천연 소재를 사용하여 자연과의 친밀도를 높임</p>
	<p>햇빛의 반사광을 흡수할 수 있는 천연 소재를 권장(목재, 판석 등)</p>
	<p>천연재료 자체의 무늬를 적극 활용하며, 강조부의 경우 친밀도가 높은 전통 문양을 채택</p>
	<p>이용자가 심리적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급격한 질감의 변화를 최소화</p>
	<p>정자의 형태로는 사각정, 육각정, 팔각정, 혼합형 등으로 나누어질 수 있으며, 마을특성에 맞도록 조성</p>
	<p>식재가 외부 경관 조망을 방해하지 않도록 유의</p>
	<p>건물과 연계하여 그늘을 조성하거나, 정원내의 원로나 자투리 공간 등의 한적하고 조용한 곳에 설치</p>
<p>목재로 만든 파고라 위에 등나무, 능소화, 으름덩굴, 장미, 칩, 조롱박, 수세미, 나팔꽃 등의 덩굴성 식물을 식재하여 그</p>	

	늘을 제공
	마을 정자목 위치는 노인의 신체적 활동을 고려, 분산배치
	마을 입구부분, 전망 좋은 곳, 작업 중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이용
	마을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에 조성하여 활용도를 높임
	마을 주민들이 마을회관이나 노인정 이외의 장소에서도 서로 어울릴 수 있도록 야외 쉼터 마련
	외부인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한 이미지 조성
	휴게시설은 주변경관과 어울리는 재료를 사용하여 마을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디자인
	기존 수목의 활용, 식재 도입 등을 통해 이용자에게 녹음을 제공
	마을회관에서 쉽게 인지되고 조망확보가 가능하도록 개방적으로 입구부를 조성
	바닥포장 및 시설, 식재의 개선
	마을공동시설이나 마을녹지주변에 위치한 마을 공공부지를 활용하여 조성
	마을별 특성과 주민이 선호하는 여가활동에 맞는 적정규모와 도입시설 결정
	복합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공간의 다양한 배치를 유도하고, 각각의 공간별로 도입될 시설은 연령특성을 고려하여 조성
	마을의 중심 커뮤니티공간이면서 상징공간이 될 수 있도록 조성
	공원과 차별화 될 수 있도록 소규모로 조성하고, 주변여건 및 주민들의 여가활동을 고려하여 시설계획을 수립
	쉼터에 도입되는 시설물은 목재, 석재 등 자연적인 소재를 이용한 시설물을 선정하도록 함
	목재의 경우 방부처리된 것을 사용토록 하여 내구성을 고려함
	마을 내 정자목 주변, 공공시설 주변 등 주민들이 주로 이용

	하는 장소를 활용하여 조성
	주민이 주로 선호하는 여가활동에는 각종 친목교류, 휴식을 위한 휴게공간, 간단한 체력단련시설이 도입되는 운동공간, 어린이를 위한 놀이공간, 기타 부대시설공간 등이 있으며, 각각의 마을주민의 여가활동 및 패턴을 분석하여 필요한 공간을 구성하고 도입시설을 선정
	가능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 주민들의 이용률과 커뮤니티를 높일 수 있도록 함
	기존의 정자나무나 마을 숲의 수종을 이용하고, 공간적으로 수세가 약화되고 사라진 곳은 지역특성에 맞는 교목을 선정하여 식재함
	충분한 그늘이 조성되도록 녹음수를 식재하고 향기 있는 나무, 꽃나무, 단풍드는 나무와 관목 및 초화류 등 관상가치가 높은 식물위주로 식재
	생울타리 및 수목 군식으로 공간의 위요감 조성과 녹시율 확보
	벤치 주위에는 풍부한 그늘을 제공하는 녹음식재
	정자목 주변에 평상이나 벤치 등을 배치하여 마을휴게공간으로도 활용
	야외탁자는 저습지, 먼지가 일어나기 쉬운 곳은 피하고 붕괴 및 기타 위험요소가 없는 장소에 배치
	탁자와 의자 사이는 간격을 적절히 띄워서 몸이 들어가기 쉽도록 하고, 앉았을 때 발을 편안히 놓을 수 있는 인체공학적 디자인이 요구됨

* 연구진이 기존연구를 정리하여 구성하였음

<부록 3> 주민 설문지

농촌다움 키워드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설문은 농어촌공사에서 발주한 “농촌다움 환경조성 기술요소 개발 및 적용” 연구의 일환으로 진행되며, 설문의 결과는 우리나라 농촌의 개념을 정립하고 농촌다운 주거환경을 만드는 기술요소 개발의 기초자료로 사용될 것입니다.

답변해주시는 내용은 익명으로 처리되며, 귀하의 응답 내용은 학술적인 목적 이외에는 일체 사용되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답변에는 옳고 그름이 없으며, 자유롭게 본인의 생각을 기술해주시길 바랍니다.

귀하의 도움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8년 09월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 조경계획연구실

담당교수 : 손 용 훈

설문조사 담당자 : 박준하, 윤승용, 김용진, 김연정, 이예솔

1. “농촌”하면 떠오르는 키워드나 문장은 무엇입니까?

1-1	
1-2	
1-3	
1-4	
1-5	
1-6	
1-7	
1-8	
1-9	
1-10	

2. “농촌중심지”하면 떠오르는 키워드나 문장은 무엇입니까?

2-1	
2-2	
2-3	
2-4	
2-5	
2-6	
2-7	
2-8	
2-9	
2-10	

3. “농촌마을”하면 떠오르는 키워드나 문장은 무엇입니까?

3-1	
3-2	
3-3	
3-4	
3-5	
3-6	
3-7	
3-8	
3-9	
3-10	

4. “농가”하면 떠오르는 키워드나 문장은 무엇입니까?

4-1	
4-2	
4-3	
4-4	
4-5	
4-6	
4-7	
4-8	
4-9	
4-10	

5. 농촌지역의 정주매력은 무엇입니까?

6. 농촌지역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 참가자 일반사항**

1) 귀하는 원주민/귀농인/귀촌인이신가요?()					
a) 원주민					
b) (귀농인) 원래 도시에 살다가 농촌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함					
c) (귀농인) 원래 농촌에서 살다가 도시로 이주하였고, 다시 농촌으로 귀향하여 농업 종사함					
d) (귀촌인) 원래 도시에 살다가 농촌으로 이주하여 생활함					
e) (귀촌인) 원래 농촌에서 살다가 도시로 이주하였고, 다시 농촌으로 귀향하여 생활함					
2) 귀하의 주 생활권은 어디신가요?					
a) 마을 내	b) 읍면소재지	c) 거점도시 내	d)	기타()	
3) 귀하의 나이는 어떻게 되시나요?					
a) 20대 미만	b) 30대	c) 40대	d) 50대	e) 60대	f) 70대 이상
4) 귀하의 성별은 어떻게 되시나요?					
a) 남자			b) 여자		
5) 귀하는 해당마을에서의 거주기간이 어떻게 되시나요?					
a) 5년 미만	b) 5~10년	c) 10~15년	d) 15~20년	e) 20년 이상	
6) 귀하의 직업은 어떻게 되시나요?					
a) 농업	b) 농업 외 ()		c) 무직		

* 비 고



경기도 양평군 농촌마을 REP(Resident Employed Photography)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설문은 농어촌공사에서 발주한 “농촌다운 환경조성 기술요소 개발 및 적용” 연구의 일환으로 진행되며, 설문의 결과는 우리나라 농촌의 개념을 정립하고 농촌다운 주거환경을 만드는 기술요소 개발의 기초자료로 사용될 것입니다.

답변해주시는 내용은 익명으로 처리되며, 귀하의 응답 내용은 학술적인 목적 이외에는 일체 사용되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답변에는 옳고 그름이 없으며, 자유롭게 본인의 생각을 기술해주시길 바랍니다.

귀하의 도움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8년 11월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 조경계획연구실

담당교수 : 손 용 훈

설문조사 담당자 : 윤승용, 김용진, 김연정, 이예슬

PART1. REP 조사

- (1) REP는 마을주민과 함께 연구자가 현장을 걸으면서 경관에 대한 사진과 의견을 적는 조사방법으로 30~4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 (2) 첫째, 마을회관에 모여 REP조사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합니다.
- (3) 둘째, 마을주민과 연구원이 한 조를 이루어 조사를 실시합니다. 우선 서로 인사를 나누고 지도를 보면서 팀별로 REP조사루트를 설정합니다. (조사루트 설정 가이드 : 본인집/ 마을의 대표적경관/ 좋아하는 경관/ 자랑스러운 경관/ 문제가 있거나 관리가 필요한 경관/ 활용하고 싶은 경관)
- (4) 셋째, 설정한 루트에 맞게 걸으면서 경관에 대한 사진과 의견을 수집합니다. (경관사진과 의견 8~10개 이내, 연구원의 카메라와 녹음기 활용)
- (5) 다섯째, 다시 마을회관에 도착하셔서 추가적인 의견이 있는지 확인하고 조사를 종료합니다.

PART 2. 통계처리를 위한 일반사항 (이름: , 연락처:)

1) 귀하는 원주민/귀농인/귀촌인이신가요?()					
a) 원주민					
b) (귀농인) 원래 도시에 살다가 농촌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함					
c) (귀농인) 원래 농촌에서 살다가 도시로 이주하였고, 다시 농촌으로 귀향하여 농업 종사함					
d) (귀촌인) 원래 도시에 살다가 농촌으로 이주하여 생활함					
e) (귀촌인) 원래 농촌에서 살다가 도시로 이주하였고, 다시 농촌으로 귀향하여 생활함					
2) 귀하의 주 생활권은 어디신가요?					
a) 마을 내		b) 읍면소재지		c) 거점도시 내	
d) 기타()					
3) 귀하의 나이는 어떻게 되시나요?					
a) 20대 미만		b) 30대		c) 40대	
		d) 50대		e) 60대	
f) 70대 이상					
4) 귀하의 성별은 어떻게 되시나요?					
a) 남자			b) 여자		
5) 귀하는 해당마을에서의 거주기간이 어떻게 되시나요?					
a) 5년 미만		b) 5~10년		c) 10~15년	
		d) 15~20년		e) 20년 이상	
6) 귀하의 직업은 어떻게 되시나요?					
a) 농업		b) 농업 외 ()		c) 무직	

본 연구에서 농촌다운 주거환경은 개별주거지(사적영역)를 제외한 이를 둘러싼 공공영역의 물리적 환경을 말합니다. 아래 표는 농촌다운 주거환경에서 물리적 환경에 대해 정책적 중요도 평가를 위한 내용입니다.

기본속성	기술 목표
환경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연지형 훼손 최소화를 위한 지형 연속성 확보 지역단위의 환경적 지속성 증진을 위한 에너지 자립 기반 구축 주거지 주변의 쓰레기 수거 및 오폐수 처리시스템 완비
공동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적 안전망 확보를 위한 사회복지인프라 확충 공동참여 증진을 위한 공동시설 확보 빈집, 폐교 등 인구과소화에 따른 유희시설 활용
자립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제적 지속성 증진을 위한 경제활성화 시설 확대 도농교류를 위한 시설 및 프로그램 확대 사회적 지속성 증진을 위한 협동조합·사회적 기업 활성화
심미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설입지와 규모 적정성 등을 고려한 통합 토지이용계획 체계 구축 주택, 시설의 노후정도 및 가로 녹지의 연속성 등 중심 가로망의 경관 정체성과 통합성 확보 어메니티 자원 등 마을의 장소성 발굴과 유지
향유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원, 휴게시설 등 여가시설 다양성 확보 다문화지원시설 등 향유서비스의 다양성 증진 문화기술(High CT) 도입한 문화·판매시설 구축
정주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중교통의 편리 및 주요도로·의료교육 등 생활서비스의 접근성 향상 자연재해 및 일상생활 위협으로부터의 안전사고 예방 체계 확립 노령자 친화적 첨단서비스 주거환경 구축

[1] 귀하는 “농촌다운 주거환경”을 물리적으로 조성함에 있어서 이하 기본속성 중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항목	매우 중요 (7)	(6)	중요 (5)	(4)	약간 중요 (3)	(2)	중요 (1)	(2)	약간 중요 (3)	(4)	중요 (5)	(6)	매우 중요 (7)	항목
환경성														공동체성
환경성														자립성
환경성														심미성
환경성														향유성
환경성														정주성
공동체성														자립성
공동체성														심미성
공동체성														향유성
공동체성														정주성
자립성														심미성
자립성														향유성
자립성														정주성
심미성														향유성
심미성														정주성
향유성														정주성

[2] 귀하는 “농촌다운 주거환경” 기본속성 중 ‘환경성’에 관련된 항목 중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항목	매우 중요 (7)	(6)	중요 (5)	(4)	약간 중요 (3)	(2)	동등 (1)	(2)	약간 중요 (3)	(4)	중요 (5)	(6)	매우 중요 (7)	항목
자연지형 훼손 최소화를 위한 지형 연속성 확보														지역단위의 환경적 지속성 증진을 위한 에너지 자립 기반 구축
자연지형 훼손 최소화를 위한 지형 연속성 확보														주거지 주변의 쓰레기 수거 및 오폐수 처리시스템 완비
지역단위의 환경적 지속성 증진을 위한 에너지 자립 기반 구축														주거지 주변의 쓰레기 수거 및 오폐수 처리시스템 완비

[3] 귀하는 “농촌다운 주거환경” 기본속성 중 ‘공동체성’에 관련된 항목 중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항목	매우 중요 (7)	(6)	중요 (5)	(4)	약간 중요 (3)	(2)	동등 (1)	(2)	약간 중요 (3)	(4)	중요 (5)	(6)	매우 중요 (7)	항목
사회적 안전망 확보를 위한 사회복지인프라 확충														공동참여 증진을 위한 공동시설 확보
사회적 안전망 확보를 위한 사회복지인프라 확충														빈집, 폐교 등 인구과소화에 따른 유희시설 활용
공동참여 증진을 위한 공동시설 확보														빈집, 폐교 등 인구과소화에 따른 유희시설 활용

[4] 귀하는 “농촌다운 주거환경” 기본숙성 중 ‘자립성’에 관련된 항목 중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항목	매우 중요 (7)	(6)	중요 (5)	(4)	약간 중요 (3)	(2)	동등 (1)	(2)	약간 중요 (3)	(4)	중요 (5)	(6)	매우 중요 (7)	항목
경제적 지속성 증진을 위한 경제활성화 시설 확대														도농교류를 위한 시설 및 프로그램 확대
경제적 지속성 증진을 위한 경제활성화 시설 확대														사회적 지속성 증진을 위한 협동조합·사회적 기업 활성화
도농교류를 위한 시설 및 프로그램 확대														사회적 지속성 증진을 위한 협동조합·사회적 기업 활성화

[5] 귀하는 “농촌다운 주거환경” 기본숙성 중 ‘심미성’에 관련된 항목 중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항목	매우 중요 (7)	(6)	중요 (5)	(4)	약간 중요 (3)	(2)	동등 (1)	(2)	약간 중요 (3)	(4)	중요 (5)	(6)	매우 중요 (7)	항목
시설입지와 규모 적정성 등을 고려한 통합 토지이용계획 체계 구축														주택, 시설의 노후정도 및 가로 녹지의 연속성 등 중심 가로망의 경관 정체성과 통합성 확보
시설입지와 규모 적정성 등을 고려한 통합 토지이용계획 체계 구축														어메니티 자원 등 마을의 장소성 발굴과 유지
주택, 시설의 노후정도 및 가로 녹지의 연속성 등 중심 가로망의 경관 정체성과 통합성 확보														어메니티 자원 등 마을의 장소성 발굴과 유지

[6] 귀하는 “농촌다운 주거환경” 기본속성 중 ‘향유성’에 관련된 항목 중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항목	매우 중요 (7)	(6)	중요 (5)	(4)	약간 중요 (3)	(2)	동등 (1)	(2)	약간 중요 (3)	(4)	중요 (5)	(6)	매우 중요 (7)	항목
공원, 휴게시설 등 여가시설 다양성 확보														다문화지원시 설 등 향유서비스의 다양성 증진
공원, 휴게시설 등 여가시설 다양성 확보														문화기술(High CT) 도입한 문화·판매시설 구축
다문화지원시설 등 향유서비스의 다양성 증진														문화기술(High CT) 도입한 문화·판매시설 구축

[7] 귀하는 “농촌다운 주거환경” 기본속성 중 ‘정주성’에 관련된 항목 중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항목	매우 중요 (7)	(6)	중요 (5)	(4)	약간 중요 (3)	(2)	동등 (1)	(2)	약간 중요 (3)	(4)	중요 (5)	(6)	매우 중요 (7)	항목
대중교통의 편리 및 주요도로·의료교육 등 생활서비스의 접근성 향상														자연재해 및 일상생활 위험으로부터 의 안전사고 예방 체계 확립
대중교통의 편리 및 주요도로·의료교육 등 생활서비스의 접근성 향상														노령자 친화적 첨단서비스 주거환경 구축
자연재해 및 일상생활 위험으로부터의 안전사고 예방 체계 확립														노령자 친화적 첨단서비스 주거환경 구축

2. 농촌다운 주거환경 시설⁸⁰⁾에 대한 중요도

농촌다운 주거환경 시설은 6가지 기본속성을 기준으로 ‘마을’과 ‘중심지’를 구분하여 각 시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마을시설

시설항목		환경성 중요도					공동체성 중요도					자립성 중요도				
		매우 낮다 (1)	낮다 (2)	보통 (3)	높다 (4)	매우 높다 (5)	매우 낮다 (1)	낮다 (2)	보통 (3)	높다 (4)	매우 높다 (5)	매우 낮다 (1)	낮다 (2)	보통 (3)	높다 (4)	매우 높다 (5)
		생산 환경	기반시설(용배수로/관정시설/차양막)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경작지(논/밭/과수원)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저장가공시설(공동창고/집하장/농산물가공시설/저온저장고/건조장등)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자연기반시설(저수지/목초지/마을평야 등)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에너지자원활용시설(태양광/풍력발전시설/발효시설/축사분뇨자원화시설 등)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자연 환경	생태하천/생태습지/생태연못/생태통로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마을숲(비보숲)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등산로(산책로)/자연탐방로/약수터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자연경관(호수/산/구름지/계곡/폭포/바위/절벽)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생태체험시설(습지공원/조류생태공원/수변공원 등)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생활 환경	문화복지시설(마을회관/경로당)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주택시설(담장/휴담,돌담/지붕/출입구/벽체/옹벽)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놀이휴게시설(마을공원/놀이터/마을마당/쉼터/정자)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보행시설(마을안길/보도/가로등/조형물)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정보화시설(전기통신/인터넷)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안전시설(방범등/CCTV)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생활기반시설(상하수도/폐수/쓰레기처리장/정화시설/소각장)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역사 문화 환경	상징시설물(장승/솟대)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전통건조물(고택/사당/사찰서원/암자터)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마을주목(보호수/당산목/정자목)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문화재(사적/유적/돌무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기타(비석/물레방아/우물/빨래터)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80) 본 설문지에서의 주거환경 시설은 기준문헌(2005년-2018년)에서 도출된 모든시설을 종합한 후, 빅데이터분석을 통해 높은 빈도수와 시설간의 연결성을 분석하여 연구진이 1차로 선정한 시설임

경제 활성 환경	체험시설(농촌체험시설/관광 농원/지역산업체험시설/전통 문화체험시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지역특화산업시설(도농교류 센터/농특산물판매장/공동소 득시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관광안내소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문화관광시설(전시박물관/미 술관)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휴양시설(산림욕장/야영장/ 펜션)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빈집/폐가/폐교/유희토지 활 용시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시설항목		심미성 중요도					향유성 중요도					정주성 중요도				
		매우 낮다 (1)	낮다 (2)	보통 (3)	높다 (4)	매우 높다 (5)	매우 낮다 (1)	낮다 (2)	보통 (3)	높다 (4)	매우 높다 (5)	매우 낮다 (1)	낮다 (2)	보통 (3)	높다 (4)	매우 높다 (5)
생산 환경	기반시설(용배수로/관정시설/ 차양막)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경작지(논/밭/과수원)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저장가공시설(공동창고/집하 장/농산물가공시설/저온저장 고/건조장등)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자연기반시설(저수지/목초지/ 마을평야 등)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에너지지원활용시설(태양광/ 풍력발전시설/발효시설/축사 분뇨자원화시설 등)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자연 환경	생태하천/생태습지/생태연못/ 생태통로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마을숲(비보숲)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등산로(산책로)/자연탐방로/ 약수터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자연경관(호수/산/구름지/계 곡/폭포/바위/절벽)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생태체험시설(습지/조류생태 공원/수변공원 등)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생활 환경	문화복지시설(마을회관/경로 당)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주택시설(담장/지붕/출입구/ 벽체/옹벽)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놀이휴게시설(마을공원/놀이 터/마을마당/쉼터/정자)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보행시설(마을안길/보도/가 로등/조형물)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정보화시설(전기통신/인터넷)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안전시설(방범등/CCTV)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생활기반시설(상하수도/오폐 수/쓰레기처리장)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역사 문화 환경	상징시설물(장승/솟대)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전통건조물(고택/사당/사찰/ 서원/압자터)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마을수목(보호수/당산목/정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경제 활성 환경	자목															
	문화재(사적/유적/돌무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기타(비석/물레방아/우물/빨래터)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체험시설(농촌체험시설/관광농원/지역산업체험시설/전통문화체험시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지역특화산업시설(도농교류센터/농특산물판매장/공동소득시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관광안내소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문화관광시설(전시박물관/미술관)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휴양시설(산림욕장/야영장/펜션)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빈집/폐가/폐교/유희토지 활용시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2] 중심지시설

시설항목	환경성 중요도					공동체성 중요도					자립성 중요도				
	매우 낮다	낮다	보통	높다	매우 높다	매우 낮다	낮다	보통	높다	매우 높다	매우 낮다	낮다	보통	높다	매우 높다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가도교통시설(주차장/도로/대중교통(버스정류장,철도))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의료복지시설(병의원/보건소/요양센터/건강관리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교육/보육시설(초중고/농업인교육/평생교육)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운동시설(체육관/게이트볼장/테니스장/심신단련장)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문화복지시설(목욕탕/다목적회관/커뮤니티센터)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공원녹지시설(근린공원/야외광장/잔디광장)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사회복지시설(취약계층/영세민주거지원/청소년지원)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상업시설(상점/식당/시장)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금융시설(농협및은행)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기타(목공소/농약상/철물점/가스/사료취급점/농기계수리소)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유희 및 대규모 개발시설(공장/폐광활용)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시설항목		심미성 중요도					향유성 중요도					정주성 중요도				
		매우 낮다 (1)	낮다 (2)	보통 (3)	높다 (4)	매우 높다 (5)	매우 낮다 (1)	낮다 (2)	보통 (3)	높다 (4)	매우 높다 (5)	매우 낮다 (1)	낮다 (2)	보통 (3)	높다 (4)	매우 높다 (5)
		생활 환경	가로교통시설(주차장/도로/ 대중교통(버스정류장,철도))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의료복지시설(병의원/보건소 /요양센터/건강관리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교육/보육시설(초중고/농업 인교육/평생교육)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운동시설(체육관/게이트볼장 /테니스장/심신단련장)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문화복지시설(목욕탕/다목적 회관/커뮤니티센터)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공원녹지시설(근린공원/야외 광장/잔디광장)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사회복지시설(취약계층/영세 민주거지원/청소년지원)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상업시설(상점/식당/시장)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금융시설(농협맞은행)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기타(목공소/농약상/철물점/ 가스/사료취급점/농기계수리 소)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유흥 및 대규모 개발시설(공 정/폐광활용)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3] 위의 시설 이외의 농촌다운 주거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시설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기술하여 주십시오.

구 분		시 설
1	생산환경	
2	자연환경	
3	생활환경	
4	역사문화환경	
5	경제활성화 환경	

3. 농촌다움과 관련된 어휘 목록 작성

[1] ‘과거와 현재’를 가정하여 ‘농촌’하면 떠오르는 단어나 문구를 7개 정도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단어 혹은 문구
1	
2	
3	
4	
5	
6	
7	
☞추가기입	

[2] ‘미래 농촌’ 모습이 어떠해야 할지 관련된 단어나 문구를 7개 정도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단어 혹은 문구
1	
2	
3	
4	
5	
6	
7	
☞추가기입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참 여 연 구 원

목 차	소 속	성 명
제1장 서론	농어촌연구원	윤상헌
제2장 선행 연구 동향	농어촌연구원	윤상헌
	서울대학교 산단	손용훈
	협성대학교 산단	임정언
제3장 농촌 과소화 실태	농어촌연구원	윤상헌 임상봉
제4장 과소화 대응 정책 및 사업	농어촌연구원	홍상원 이향미 김진환
	동명대학교	김홍기
제5장 농촌다움 개념 정립 및 평가	협성대학교 산단	이상문 윤원근
	서울대학교 산단	손용훈 윤승용 김용진 김연정 이예솔
제6장 농촌다운 주거환경 조성 기술요소 개발 및 현실 적합성 평가	협성대학교 산단	이차희 임정언
제7장 농촌다운 주거환경 조성 기술요소 적용방안	협성대학교 산단	전영옥 최식인 박준하

주 의

1. 이 보고서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아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에서 수행한 연구보고서입니다.
2.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원의 공식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발 행 처

연구과제명 : 농촌다운 주거환경 조성 기술요소 개발 및 적용 방안 연구(I)	
발 행 일	2018. 12
발 행 인	장 중 석
발 행 처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
주 소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해안로 870 전 화 031 - 400 - 1700 FAX 031 - 409 - 6055
■ 이 책의 내용을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단, 이 책의 출처를 명시하면 인용이 가능합니다.	